

한국무역의 역사

한국무역의 역사

최광식 외 5명 지음

한국무역의 역사

발행처 ·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발행인 · 김재철

지은이 · 최광식 외

발행일 · 2004년 12월 31일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한국무역센터 1803호

공급처 · 청아출판사

비매품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키워드는 세계화, 신기술, 동아시아 시대, 그리고 무역입국입니다.

1200년 전 장보고 대사는 당시 농업에만 의존하던 경제체제에서 바다로의 진출과 무역입국을 추진함으로써 시대 상황을 뛰어넘는 발전 전략을 모색했고 실천한 선각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토나 인구 측면에서 작은 나라의 비전은 작으면서도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며, 이런 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국가간 행한 조공형태의 무역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즉 이제까지 무역하면 서구세계에서 발생하여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보고 대사를 중심으로 한 신라상인은 바이킹이 활동하던 시기와 동일한 시대인 9세기 초에 신용거래가 수반된 매우 발전된 민간무역을 행하였습니다. 이는 지중해 도시국가와 이슬람 상인이 지중해나 서남아시아에서 행한 무역활동을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업적을 인정한 고(故) 에드워드 라이샤워 교수는 그의 저서 《엔닌의 중국순례기(Ennin's Travels in Tang China)》에서 장보고 대사를 해상상업제국의 무역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보고 대사가말로 우리나라에서 종합상사를 경영한 시초이며 진정한 의미의 국제무역을 한 최초의 무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무역입국을 통한 경제발전전략은 장보고 대사의 국제무역전략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에서는 우리 민족의 해상활동과 무역을 포함한 대외진출에 관한 사료를 발굴 정리하는 등 학술활동을 통하여 장보고 대사의 진취적이고 대외지향적인 사고와 해상경영을 통한 무역입국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킬 것입니다. 나아가 해양입국, 무역입국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소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해온 경험과 학문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료에 흠어져 있는 무역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이렇게 훌륭한 무역분야 사료집이 발간되도록 애쓰신 고려대학교 최광식 박물관장과 관련 연구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12월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재철

서론—한국무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1장 선사 및 초기국가시대(고조선·부여·삼한 시기)의 무역

1. 선사시대와 청동기시대의 교역 · 37

1) 선사시대의 교역 · 37

(1) 선사시대란 · 37

(2) 선사시대의 생업경제와 교역 · 38

2) 청동기시대의 교역 · 46

(1) 청동기시대와 예맥문화권 성립 · 46

(2) 청동기시대의 교역 · 50

2. 초기국가시대(고조선·부여·삼한)의 교역 · 59

1) 고조선과 부여의 교역 · 59

(1) 고조선 교역망의 확대 · 59

(2) 부여의 대외교역 · 69

2) 국가형성기 고구려와 옥저·동예 · 72

(1) 국가형성기 고구려에 있어서의 전쟁과 교역 · 72

(2) 옥저·동예사회와 대외교역 · 79

3) 삼한사회의 성장과 대외교역 · 83

(1) 삼한사회의 성장 · 83

(2) 삼한 교역망의 형성과 발전 · 85

2장 삼국시대의 무역

1. 삼국시대 무역형태와 무역품 · 99

1) 무역형태 · 99

2) 무역품 · 101

2. 4세기 무역체계의 변화 · 113

1) 낙랑·대방군 중심의 동아시아 해상무역체제 · 113

2) 목지국의 쇠퇴와 백제의 부상 · 119

3) 신라의 국가성장파 무역 · 131

4) 가야에서의 무역체계의 변천 · 141

3. 5~6세기 동아시아의 정세변화와 무역 · 149

1) 고구려의 반격과 백제의 시련 · 149

2) 해양강국 재건을 위한 백제의 노력 · 151

3) 신라의 동해 제해권 확보와 한강 유역 점령 · 154

3장 남북국시대의 무역

1. 남북국시대 무역형태와 무역품 · 173

1) 무역형태 · 173

(1) 공무역 · 173

(2) 사무역 · 177

2) 무역품 · 178

(1) 신라의 무역품 · 178

(2) 발해의 무역품 · 186

- 2. 8세기 공무역체제의 성립과 운영 · 191
 - 1) 남북국시대 무역네트워크의 성립 · 191
 - 2) 당나라의 경제체제와 조공무역 · 195
- 3. 공무역의 쇠퇴와 사무역의 발달 · 199
 - 1) 동아시아 삼국의 정치 · 사회 혼란 · 199
 - 2) 해상세력의 성장 · 203
 - 3) 조선술 · 항해술의 발달 · 216
 - 4) 청해진 설치의 의미 · 223
- 4. 청해진의 효과와 무역질서의 변화 · 227
 - 1) 청해진의 효과와 그 영향 · 227
 - 2) 9세기 후반 교역질서의 변화 · 233

4장 고려시대의 무역

- 1. 고려시대 무역과 그 특징 · 247
- 2. 오대십국 여러 나라와의 무역 · 252
- 3. 송과의 무역 · 257
 - 1) 교역의 조건 · 257
 - (1) 문화적 욕구 · 257
 - (2) 왕래의 편이성 · 259
 - 2) 외교무역 · 262
 - (1) 송에 전해진 물품 · 262
 - (2) 고려에 전래된 물품 · 267
 - 3) 송과의 일반무역 · 271

- 4) 문화교류 · 277
- 4. 요와의 무역 · 282
 - 1) 사신의 왕래와 무역 · 282
 - 2) 요와의 무역품 · 286
 - 3) 각장 설치 문제 · 289
- 5. 금과의 무역 · 291
 - 1) 외교무역 · 291
 - 2) 사신 일행의 무역 · 294
 - 3) 각장과 밀무역 · 299
- 6. 원과의 무역 · 301
 - 1) 외교무역 · 301
 - (1) 원에 전해진 물품 · 301
 - (2) 고려에 전해진 원의 물품 · 305
 - (3) 원의 공물 요구 · 309
 - (4) 사신 일행의 무역 · 314
 - 2) 일반무역 · 316
 - (1) 대원무역의 기반 · 316
 - (2) 무역품 · 319
 - (3) 교역 담당자와 왕실의 사무역 참여 · 322
 - 3) 대원무역의 특수성 · 324
 - (1) 보초의 통용 · 324
 - (2) 구휼곡(救恤穀)의 유출입 · 326
- 7. 기타 여러 나라의 무역 · 329
 - 1) 여진과의 무역 · 329
 - 2) 일본과의 무역 · 335

- 3) 아라비아와의 무역 · 339
- 8. 마치며—새로운 무역 관계의 설정을 위한 갈등 · 341

5장 조선시대의 무역

들어가는 말 · 347

- 1. 상인과 무역의 흐름 · 351
 - 1) 상인과 무역 · 351
 - (1) 시전상인 · 351
 - (2) 개성상인 · 357
 - (3) 의주상인과 동래상인 · 362
 - 2) 조선 인삼 · 일본은 · 중국 비단의 흐름 · 365
 - (1) 조선 인삼 · 365
 - (2) 동북아시아 경제의 허브(Hub), 조선 · 368
 - (3) 산에서 캐는 ‘삼’, 밭에서 기르는 ‘가삼(家蔘)’ · 371
- 2. 조선 전기 대외무역 · 377
 - 1) 중국과의 무역 ·
 - (1) 15세기 명나라와의 무역 · 377
 - (2) 16세기 사무역 발전과 은무역 · 382
 - 2) 일본과 여진과의 무역 · 387
 - (1) 일본과의 무역 · 387
 - (2) 여진과의 무역 · 392
 - (3) 유구 · 남만과의 무역 · 394
- 3. 조선 후기 대외무역 · 398

- 1) 중국과의 무역 · 398
 - (1) 전쟁과 변경무역 · 398
 - (2) 17세기 역관 주도의 중개무역 · 408
 - (3) 18세기 사행무역 구조와 상인의 경쟁 · 421
 - (4) 18세기 후반 사상무역과 모자 수입무역 · 437
 - (5) 19세기 홍삼무역과 무역정책의 한계 · 442
- 2) 일본과의 무역 · 448
 - (1) 왜관 설치와 대일무역의 재개 · 448
 - (2) 17세기~18세기 중반 개시무역과 교역품 · 457
 - (3) 18세기 중엽 이후 수출품의 변화와 대일무역 · 460
- 3) 무역 규모와 무역정책 재평가 · 462
- 4. 조공체제 무역사의 재인식 · 475

6장 개항기의 무역

- 1. 세계체제 편입과 협정관세체제 · 481
 - 1) 강화도조약과 무관세체제 · 481
 - 2) 불평등조약하의 협정관세체제 · 485
 - (1) 서양과의 통상조약과 관세문제 · 485
 - (2) 중국과의 통상조약과 관세문제 · 491
 - (3) 일본과의 통상조약 개정과 관세문제 · 493
- 2. 무역 규모의 확대와 무역시장의 변화 · 495
 - 1) 일본의 무역독점과 실재적 내용 · 495
 - 2) 중국과 일본의 무역경쟁 · 498

- 3) 청일전쟁 후 일본·중국의 경쟁, 기타 국가의 진출 · 503
- 3) 러일전쟁 발발 이후 수출입국의 다변화 · 506
- 3. 상품구성의 특징 · 510
 - 1) 수출상품 · 510
 - (1) 곡물수출 · 510
 - (2) 금은수출 · 513
 - (3) 기타 중요 상품 · 516
 - 2) 수입상품 · 519
 - (1) 섬유제품을 주로 한 상품 수입 · 519
 - (2) 기타 중요 상품 · 527

7장 일제하의 무역

- 1. 식민지 무역정책의 변화 · 535
 - 1) '특별관세정책'의 실시 · 535
 - 2) '관세동화정책'의 실시 · 540
 - 3) '무역진흥정책'의 실시 · 545
 - 4) '전시무역통제정책'으로의 전환 · 549
- 2. 무역시장의 협소화 · 557
 - 1) 일본의 무역독점의 강화 · 557
 - (1) '특별관세정책' 시기 무역규모의 확대와 수출의 급증 · 557
 - (2) '관세동화정책' 시기 무역규모의 정체와 대일 종속의 심화 · 561
 - (3) '무역진흥정책' 시기 수출의 확대와 무역수지의 변화 · 565
 - (4) '무역통제정책' 시기 무역규모의 축소와 무역수지의 악화 · 570

- 2) 수출입시장의 아시아 편중 · 576
 - (1) '특별관세정책' 시기 수출입시장의 아시아 편중화 · 576
 - (2) '관세동화정책' 시기 수출입시장의 아시아 편중 심화 · 581
 - (3) '무역진흥정책' 시기 수출입시장의 다변화 · 585
 - (4) '전시무역통제정책' 시기 엔블록무역으로의 편중과 제삼국무역의 악화 · 593
- 3. 식민지적 상품구조의 특징 · 602
 - 1) 수이출입 상품구조의 식민지성 · 602
 - 2) 수이출입 중요 상품의 추이 · 605
 - (1) '특별관세정책' 시기 수이출입 중요 상품 · 605
 - (2) '관세동화정책' 시기 수이출입 중요 상품 · 611
 - (3) '무역진흥정책' 시기 수이출입 중요 상품 · 616
 - (4) '무역통제정책' 시기의 수이출입 중요 상품 · 622
 - 3) '쌀이출 좁쌀수입' 구조와 조선의 식량문제 · 627

결론—한국무역사의 전개와 발달

- 1. 선사시대 및 초기국가의 교역 · 641
- 2. 삼국 및 남북국시대의 무역 · 652
- 3. 고려시대의 무역 · 664
- 4. 조선시대의 무역 · 674
- 5. 개항기의 무역 · 678
- 6. 일제강점기 무역 · 682

* 참고문헌 · 688

서론

최광식(고려대학교)

한국무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 책은 우리나라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 가운데 무역에 관한 내용을 통해 교훈과 의미를 찾아보고자 서술하였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활발한 해상활동을 하여 왔다. 이 활발했던 해양문화의 전통이 유교와 농경문화의 유행, 서구 근대문명의 도입과 함께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바야흐로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 동북아시아의 중심, 나아가 태평양시대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려는 현시점에서 과거의 한민족에 의해 행해졌던 무역사의 정리와 서술은 해양문화의 전통과 해외진출의 좌표를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간에 나왔던 한국무역에 관한 개설서들은 무역학적인 입장이나 해양학적인 입장 등 특정 시각에 치우쳐 서술되어, 한국 무역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이에 각 시대별 무역사 전공자들에 의한 한국무역사의 서술은 무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종합정리를 가능하게 하리라고 기대된다.

인류의 역사는 수렵(狩獵)과 농업시대를 거쳐 현재의 공업과 상업시대를 이룩하게 되었다. 공업과 상업위주의 경제체제가 수렵과 농업 위주의 경제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후자가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자급자족제도인 데 비해서 전자는 분업과 교환의 상호의존제라고 할 수 있다. 분업이 더 심화되고 교환의 영역이 더 넓어지면서 보다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간은 모든 지혜를 동원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꿈이 콜럼버스와 마젤란을 낳게 하였고 결국은 신대륙의 발견과 이로 인한 온갖 인류의 영욕(榮辱)을 수반하게 되었다.

일찍이 영국의 A. 스미스는 《국부론(國富論)》에서 한 사회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그 시장의 크기에 제한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시장이 너무 협소하면 그 경제는 그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인류의 역사는 내륙교통수단의 한계에 얽매어 침체한 사회보다는 내수로(內水路)나 해운(海運)에 의하여 좀 더 넓은 시장을 가질 수 있었던 사회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영어의 'trade' 가 '지나간 자취' '항로(航路)' 등을 뜻하는 'track' 과 '걸다' '밟다' 는 뜻을 가진 'tread' 에서 유래한 것만 보아도 무역이란 어떤 길이나 항로를 따라가서 물건을 교환하는 행위(truck&barter)를 뜻한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무역이란 용어는 고대 중국의 고전인 《사기(史記)》에 나오는 '以物相貿易' 및 《십팔사략(十八史略)》에 나오는 '貿易衣服回轉數周' 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貿)와 역(易)은 매매 또는 교환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사시대 이래 고대-고려-조선-근대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중국, 일본 등의 여러 나라와 활발한 교역 또는 무역을 행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무역상대국은 서양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제한되어 있었고, 또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조선시대부터는 무역의 관건이 되는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자나 어부들은 천민으로 취급받았다. 더욱이 상류층이나 다른 생계수단을 가진 자들은 이 분야에 진출하지 않아 한국의 무역은 위축되었으며, 결국 대원군의 쇄국주의로 현대문명으로의 개화가 그만큼 늦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무역의 발전사는 자기 영토 내에서의 산물로 만족하지 않고 자국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나라와 서로 교역하여 살아갔을 때가 더 부강했던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자국 영토 내에 부존자원이 빈곤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외국과의 교역이란 곧 생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교역이란 좁은 의미로는 물물교환을 뜻하지만 넓게는 상거래와 물물교환을 포함하는 무역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각 지역별로 생산되는 자원과 물품, 기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교역활동은 일정한 조직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우리 역사에서 대외교역이 나타나는 시기는 이미 고조선 단계로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본격적인 교역은 고대국가가 성립한 이후 국가의 주도로 조공무역이 이루어지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조공무역에서 남북국시대에는 사무역이 성행하게 된다. 이 시기의 이와 같은 해상무역의 성행은 한국 전근대사를 통틀어 매우 특이한 양상이며 또한 정치세력의 변동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문제이다. 또한 이 시기는 유럽에서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해상과 육상을 통한 중세의 세계무역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발해와 신라도 세계 무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¹⁾

1) 尹載元, 2002, 《南北國時代 貿易研究》,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처음으로 남북국시대의 해상활동에 주목하였던 것은 1920년대 일본인 학자들이었다. 특히 일본인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는 일본에서는 明治時期 이래 대외팽창 분위기와 관련하여 대외관계사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일본 승려 엔닌(圓仁)의 9세기 전반기의 여행기로 유명한 《入唐求法巡禮行記》가 전해지고 있었던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 시기 이들의 연구는 대체로 신라 말기 신라인들의 중국, 일본을 무대로 한 활발한 해상활동에 대해 단편적인 사실들을 지적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당시 신라의 항해술, 조선술 등이 일본에 비해 월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후 장보고를 중심으로 하여 신라 후기의 무역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한 시기는 8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특히 1990년대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0년대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해양대학교 장보고연구소 등의 가세 이후로는 양적·질적인 면에서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고려시대 무역의 형태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국가 간의 공식 외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조공무역’과 순수한 상인 사이의 교역인 호시(互市) 등을 들고 있으며,²⁾ 최근의 연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³⁾

즉 고려시대에도 송·요·금·원 등 중국의 여러 나라에 대한 사대

외교가 있었고,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사신이 가서 조공에 해당되는 방물(方物)을 바쳤으며, 중국의 사절이 와서 고려 국왕을 책봉했던 것은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요가 쇠약해지자 송에서는 고려에 보내는 사절을 요에게 사용하던 국신사(國信使)라는⁵⁾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송·요·금 등의 나라에서는 고려 국왕이나 태후의 생일을 비롯해 다양한 명목의 사신들이 왔다. 이런 점들은 전통적인 조공질서에서 천자의 나라가 제후 또는 조공국가에 대해 하던 의례와 어긋나는 것이었다. 고려는 조공제도의 이상을 표명하면서도 실제로 국가의 존립을 위한 실리적인 정책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원 간섭기 이전의 고려는 결코 모범적인 조공국(Model Tributary)은 아니었다.⁶⁾

게다가 고려와 여진의 관계는 거꾸로 고려가 여진의 조공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그 밖에 일본·송 상인·아라비아 상인의 고려에 대한 무역도 형식상 여진과의 관계에 준하여 시행되었다. 고려가 종주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외교관계는 대체로 여진에서 고려를 찾아오는 일방적인 것이었고, 그 주요한 목적은 고려와의 물품 교환이었다.

이러한 동북아의 대외관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된 것은 13세기 몽골 제국이 동아시아지역을 정복하여 통일된 원 제국을 형성하면서부터이다. 고려는 원에 조공국가로서 모든 의무를 져야 했고 그 뒤를 이은 명도 원과 고려의 형식을 그대로 계승하려고 하였다.⁷⁾

2) 金庠基, 1937, 〈麗宋貿易小考〉《震檀學報》7: 1948《東方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69~71쪽.

3) 이정희는 공무역과 사무역으로 나누고 공무역의 중심은 사행무역을 포함하는 조공무역이 중심이라고 한다(이정희, 1997, 〈高麗前期 對遼貿易〉《지역과 역사》4: 18~19쪽). 좀 더 내용을 세분해서 설명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구분은 거의 같다고 생각된다.

4) 沈載錫, 2002, 《高麗國王 冊封 研究》, 혜안.

5) 피터 윤, 2002, 〈서구 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 중심적 문화론 비판〉《아세아 연구》109, 279쪽.

6) 피터 윤, 2002, 〈앞의 글〉, 278~281쪽.

7) 피터 윤, 1998, 《Rethinking the Tribute System》, UCLA, 133~149쪽.

이로써 고려와 중국 사이에 있었던 외교상 호혜주의는 사라지고 조공은 형식이나 명분이 아닌 수행해야 할 의무가 되었다. 고려말 명이 1년치 공물을 따져서 정확히 5년간 밀렸던 공마를 요구하였고,⁸⁾ 고려에서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은⁹⁾ 바뀐 외교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원 간섭기 이전 고려 무역의 특징을 들면, 사무역이 거의 배제된 국가 또는 왕실 중심의 무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와 함께 국왕의 권위를 높이는 정치적 기능도 하였다. 태조를 비롯한 역대 왕들은 해상무역으로 성장한 호족의 후예답게 국제관계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었던 것이다. 하지만 고려가 원에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됨에 따라 자연히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고 국가 간에 이루어졌던 무역의 양상도 크게 변화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었다. 끝으로 명의 등장으로 외교무역에 새로운 형태가 정립되기 시작하였으나 정형을 이루지 못한 채 고려가 멸망하였다.

조선시대 대외무역사 연구는 단지 무역 현황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상업계의 변동과 역사성 규명에 목적을 두고 있다. 조선의 경제정책은 건국 초기에 내세운 ‘중농억상(重農抑商)’의 이념적 기초를 바탕으로 펼쳐졌다. 따라서 조선시대 상업활동을 통한 자본의 집적과 경제변동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고 인식되었다.¹⁰⁾

그러나 조선 후기 대외무역 과정에서는 무역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국내 유통구조를 장악하며, 축적된 자본을 생산부문에 재투자하는

상인층이 생겨났다.¹¹⁾ 또한 조선정부도 대외무역에 정책적 대응을 보임으로써 재정적 수입을 얻고자 하였다.¹²⁾

그럼에도 조선 후기 대외무역을 ‘자본주의 이행기 무역’으로 적극 평가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조선시대 무역을 기본적으로 ‘사대교린(事大交隣)’이란 정치외교체제에 부수된 활동으로 ‘적자무역’ 혹은 ‘사치품무역’으로 평가하려는 시각 때문이다. 이에 대외무역사 연구는 국내 상업계 연구성과에 비하면 연구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는 그 동안의 연구사적 검토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¹³⁾

그러나 1990년대와 2000년대 접어들면서 조선시대 무역사 연구는 발전적 경향을 보였다. 대청·대일무역 모두에서 17세기와 개항 이전 19세기를 다룬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구체적 자료의 발굴을 통해 상인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노력도 진행되었다.¹⁴⁾ 또한 대외무역과 국내 유통 부문과의 관련성이 일부 밝혀지고 개항기와의 연결성 문제가 제시되면서 연구 분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이미 16세기 조선은 중국과 일본을 잇는 은무역(Silver

8) 《高麗史》 권135 우왕 9년 11월.

9) 《高麗史》 권135 우왕 10년 윤10월.

10) 전해중, 1966, 〈청대 한중조공관계 종고〉 《진단학보》 29·30: 전해중, 1970,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11) 대표적인 연구만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강만길, 1973, 《조선 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학교 출판부: 유승주, 1970, 〈조선 후기 대청무역의 전개과정—17·8세기 부연역관의 무역활동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8: 김종원, 1999, 〈근세 동아시아 관계사 연구—조청교섭과 동아삼국교역을 중심으로—〉, 해안: 이철성, 2000, 《조선 후기 대청무역사연구》, 국학자료원.

12) 이철성, 2000, 《조선 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13) 吳美一, 1987, 〈조선 후기 상품유통 연구현황〉 《韓國中世社會 解體期的 諸問題》(下), 한울: 劉元東, 1991, 〈朝鮮後期 商業史 研究現況〉 《朝鮮後期 社會經濟史研究入門》, 民族文化社: 崔完基, 1994, 〈朝鮮後期 經濟史研究의 動向과 特性〉 《韓國史論》 24, 1994, 국사편찬위원회(崔完基, 1997, 《테마로 읽는 朝鮮의 歷史》, 느티나무에 재수록: 高東煥, 1995, 〈상품유통경제의 발전〉 《한국역사입문》 ②, 풀빛: 李勛相, 1996, 〈朝鮮後期〉—回顧와 展望: 韓國史學界 1993~1995 《歷史學報》 152 등이 있다.

14) 이철성, 2002, 〈조선 후기 무역사 연구 동향과 전망〉 《조선 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이후 연구 동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성과는 이 글을 참조했다.

Trade) 중간매개자로 자리매김했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중개무역을 통해 막대한 상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청)중국물화↔(조선)인삼·잡화와 중국물화↔(일본)왜은이 교환되는 무역구도를 형성해 나간 것이다. 17세기 후반 청·일 간 직교역의 영향으로 중개무역이 쇠퇴했다. 그러나 국제무역으로 성장한 조선상인들은 사무역을 통해 무역이익을 축적하며 책문무역과 왜관무역을 주도해 나갔다. 조선정부도 무역상의 이익을 세금으로 전환하여 재정 보충의 방법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18세기 후반 실시된 모자무역과 홍삼무역을 공식화하는 포삼제 실시의 연결고리가 규명된 것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19세기 전반 포삼제의 운영 방식과 포삼제의 규모 그리고 무역상인의 존재도 밝혀졌다. 18세기의 대외무역을 통해 자본을 집적한 상인이 단순히 상업자본을 집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삼재배업과 홍삼가공업 및 광산경영으로 그들의 자본을 투입하고 있었던 결과였다. 19세기 홍삼무역을 조선무역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이다. 조선정부는 1797년(정조21) 처음 120근을 중국과 공식 무역한 이후 불과 50년 만에 홍삼무역량을 4만 근까지 인정했다. 그 결과 조선 왕조는 홍삼에서만 중국과의 외교상에 필요했던 방물·세폐에 소용되는 비용을 훌쩍 넘는 세금을 거두고 있었다. 조선은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기술과 저장 기간을 늘리는 홍삼 증포 기술을 바탕으로, 은화의 유출을 막고 중국의 완제품 및 원료재를 들여와 국내 상업계와 수공업 및 광업부문을 자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대외무역은 한국자본주의화에 큰 동인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작은 해답은 조선정부의 무역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조

선정부는 홍삼무역에서 매년 20만 냥에 이르는 재정 수입과 말굽 모양의 중국 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홍삼무역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다시 사역원 경비와 왕실재정 등에 대부분 재투입되었고, 국가 재정확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19세기 후반 정부의 대청무역정책은 조선의 자유무역 상인이라 할 수 있는 개성상인과 의주상인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중세적 특권을 이용하여 홍삼무역을 독점하려는 역관과 서울상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펼쳐 나갔다.

결국 조선 후기 대청무역은 전 시기를 걸쳐 국내 상업세력의 성장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19세기에도 특권 상인이었던 역관·서울상인 위주로 무역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었다. 그 결과 폭넓은 사상충을 비합법적인 상인의 범주에 머무르게 하였으며, 무역세 수취를 통한 국가재정 확보를 뒤로 돌리는 한계를 노출했다. 조선의 대청무역이 국내 상업계와 산업부문에 침투하여 경제변동을 이끌어내지 못한 원인은 결국 조선정부의 대청무역정책의 폐쇄성에서 찾아진다고 하겠다.

조선 후기 대외무역사는 중세사회의 경제적 변동을 포착해내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향후 조선무역사 연구는 근대 이후 무역의 변화과정을 시각에 넣는 연구가 필요한 한편, 구체적인 상인의 연구로 한국상업사의 문화를 규명하는 작업도 아울러 요구된다.

개항기의 무역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조일무역의 약탈적 성격을 밝히는 것에 집중되었다. 강덕상은 쌀값이 일본 국내시세에의 변화에 의해 강하게 지배되고 일본상인의 투기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밝혔다.¹⁵⁾ 한우근은 쌀의 국외유출 과정과 그 영향을 살폈다. 특히 세곡의 잠매

15) 姜德相, 1983, 〈이씨조선 개항 직후에 있어서 朝日무역의 전개〉 《甲申甲午期の 近代變革과 民族運動》, 청아출판사.

행위와 방곡령의 발생을 곡물유출과 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하고 곡물수출로 인한 쌀값 등위가 농민생활을 위협함으로써 농민전쟁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¹⁶⁾ 김경태는 불평등조약의 성립과 그 개정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 〈조일통상장정〉 제6칙의 ‘미곡사(米穀事)’라는 것을 조선과 일본의 조약원문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분석하여 일본 쪽의 자의적 해석으로 곡물수출이 가능했음을 밝혔다. 또 미곡문제를 외압의 실체로 자각한 조선정부가 1880년대 초 불평등조약 개정과 관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다루기도 했다.¹⁷⁾

미곡수출에 대해서는 방곡령과 관련된 것이 주목받았다. 김경태와 요시노(吉野誠)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의 자료를 사용하여 대표적 방곡령사건으로 불리는 황해도와 함경도의 방곡사건을 면밀히 추적하여 이 시기 방곡령의 실태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해줬다. 하원호는 문호개방 이후의 방곡령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한 바 있다.¹⁸⁾

곡물수출과 관련하여 무역조건의 변화를 주목한 연구도 있다. 최유길은 수출품의 상대가격이 수입품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종래 개항기 조일무역에서 일본측의 약탈성만을 강조하던 연구방식을 재검토하게 했고 이 시기 대외무역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다.¹⁹⁾

최태호는 개항기 무역구조를 전반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개항기의 무역을 곡·면교환체제라고 개념을 규정한 후 외국상인의 무역주도권을 놓고 무역사의 시기구분을 했다.²⁰⁾ 1기는 개항 직후부터 일본이 독점한 시기이며 관세가 없던 무관세시대, 2기는 1883년 청국 등 여러 나라와 통상장정이 체결되어 청과 일본상인이 대립하던 청일쟁패기, 3기는 청일전쟁에서 ‘한일합병’까지의 일본패권기로 나누었다. 최태호의 곡·면교환체제는 무라카미(村上勝彦)가 청일전쟁 이후의 조일무역을 무역량의 변화에 초점을 주어 미·면교환체제로 불렀던 것을 보완한 측면이 있다.²¹⁾ 무라카미의 ‘미·면교환체제’라는 개념은 식민지화 이후의 ‘농업식량원료산지’라는 것을 염두에 둬으로써 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호개방 이후의 고유한 성격을 표현하기에는 미흡함이 많다고 비판받고 있다.

문호개방 이후의 지역무역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홍순권은 개항 이후 1895년에 이르는 시기의 부산의 무역과 상업을 살폈다. 부산의 무역은 1880년을 전후하여 크게 두 시기로 나누었다. 부산은 1880년 이전까지는 조선무역을 독점했고, 그 이후는 원산과 인천이 개항됨으로써 독점적 지위가 상실되고 중국의 등장으로 일본과 더불어 교역상대국이 양분되었다.²²⁾

최근 종래 문호개방 이후 무역사 연구가 일제 이후 ‘농업식량원료산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 무역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고 비판하면서 곡물의 수출 확대와 곡가 상승을 통해 농업생산구조가 변화했음

16) 韓治勳, 1970, 《韓國開港期の 商業研究》, 一潮閣.

17) 김경태, 1972, 〈대일불평등조약 개정문제발생의 일전제-개항전기의 미곡문제에 본 외압의 실태〉 《이대사원》10: 김경태, 1972, 〈개항직후의 관세권회복문제-부산해관 수세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8: 金敬泰, 1975, 〈不平等條約 改正交渉의 展開〉 《韓國史研究》11.

18) 김경태, 1994, 〈갑오이전 방곡령사건과 일본의 부당배상 요구〉 《국사관논총》53: 吉野誠, 1993, 〈개항기의 곡물무역-인천에서의 방곡령사건을 중심으로〉 《근대조선공업화의 연구》, 일조각: 하원호, 1985, 〈개항후 방곡령실시의 원인에 관한 연구〉(상)(하) 《한국사연구》49, 50·51합집.

19) 최유길, 1972, 〈이조개항직후의 조일무역의 동향〉 《아세아연구》15-3: 최유길, 1973, 〈19세기말엽 한국무역에 관한 추계 및 분석〉 《경제논집》2-3.

20) 최태호, 1992, 〈개항기의 무역구조와 무역물가에 관한 연구-개항기의 穀綿교환체제를 중심으로〉 《허선도선생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일조각.

21) 村上勝彦(정문종 역), 1984, 《식민지》, 한울.

22) 홍순권, 1994, 〈근대 개항기 부산의 무역과 상업〉 《항도부산》11,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을 분석한 주목할 만한 연구가 나왔다. 이 연구는 문호개방 이후의 무역을 단순히 일본과의 관계만을 설정해 놓고 식민지적 무역구조가 이미 이 시기에 확립되었다는 것을 비판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적어도 개항장 주변에서는 면포의 원료인 면작을 포기하고 쌀과 콩을 재배하는 경향이 확산되었고 이와 함께 지주제의 강화, 지주층의 토지소유 확대도 진행되었다는 것이다.²³⁾

이 밖에도 개항기의 무역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²⁴⁾ 그런데도 개항기 전체를 설명한 연구서는 없는 상황이다. 이 글은 한국무역사에서 개항기가 갖는 역사적 의의를 고려하면서 조선무역의 전체 상황을 개괄하고자 한다.

일제하 조선무역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朝鮮貿易史》²⁵⁾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식민지 무역의 양적 팽창에 초점을 맞추어 양적 팽창 속에서 무역구조도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전제하면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양적 팽창의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일제시대 관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식민지개발론’에 근거한 이러한 평가는 식민모국과 식민지를 불문하고 모든 경제정책은 산업 발달을 촉진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식민지 경제정책의 목적도 수탈보다는 식민지 주민을 위한 산업기초를 만드는 데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식민모국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²⁶⁾

《朝鮮貿易史》의 ‘식민지개발론’ 또는 ‘무역발전론’적 식민지경제상은 해방 후 安秉直, 鄭道泳, 李相球, 車耕權, 吳相洛, 安台鎬, 朴眞嬉, 李大根 등에 의해²⁷⁾ 적지 않게 비판되었다. 비판의 요점은 조선은 조선 후기 이래 내재적 근대화를 추진했지만 식민지가 됨으로써 식민모국인 일본의 경제적 목적만을 위하여 식료 및 원료의 공급지이자 완제품 시장으로서의 역할, 자본투하시장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수탈당했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는 대개 일제하의 조선무역을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이후의 3단계로 나누면서도 조선의 무역이 일본에 대한 식료품과 원료품의 공급지이자 일본의 완제품 판매지로서 역할을 다함으로써 전형적 식민지 성격에는 변화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일제하의 무역은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무역이라는 한계 때문에 경제발전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도 별반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교우위의 원리에 입각한 국제 분업도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미곡경제하의 조선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연구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朝鮮貿易史》의 내용을 전거로 《朝鮮貿易史》를 비판했고 무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개괄적인 통계정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단순히 식민지경제의 수탈성만 밝히는 작업으로

23) 河元鎬, 1997, 《韓國近代經濟史研究》, 신서원.

24) 하원호, 앞의 책의 연구사 부분 참조.

25) 朝鮮貿易協會 編, 1943, 《朝鮮貿易史》, 朝鮮貿易協會. 이 책은 朝鮮貿易協會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책으로 第一部 併合以前 朝鮮貿易의 概觀, 第二部 併合後 朝鮮貿易의 發展, 第三部 朝鮮貿易政策의 變遷, 第四部 朝鮮의 貿易金融과 陸海運, 附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찬자는 川合彰武, 工藤三次郎, 高橋英夫, 田村浩, 山地靖之, 松村大進, 松永鴻, 澁谷禮治, 澁谷恒治郎, 鈴木武雄 등이다.

26) 山本美越乃, 1925, 《改訂植民政策研究》, 弘文堂, 358쪽.

27) 安秉直, 1965, 〈日本植民統治의 經濟的 遺産에 관한 研究〉《經濟論集》, 서울대 한국경제연구소; 鄭道泳, 1966, 〈日帝下의 韓國貿易〉《大同文化研究》3, 성균관대 大同文化研究院; 李相球, 1968, 《韓國貿易의 近代的 發展過程》, 高麗大 博士學位論文: 車耕權, 1971, 〈日帝下에 있어서 韓國의 貿易政策—關稅政策을 중심으로—〉《日帝의 經濟侵奪史》, 玄音社; 吳相洛, 1973, 〈20世紀 韓國貿易史〉(其1, 其2)《經營論集》, 서울대 경영대학; 安台鎬, 1973, 〈우리나라 植民地 經濟의 形成內容과 貿易推移에 대한 考察〉《論文集》6, 한국외국어대; 朴眞嬉, 1993, 〈解放前과 後의 貿易構造 變化에 관한 研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李大根, 1995, 《韓國貿易論》, 法文社.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최근 안병직은 초기의 연구경향과는 다른 관점에서 일제시대 경제사를 연구하고 있다.

는 식민지 조선경제에 대한 일제의 정책과 장악도를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없고 수탈구조의 실상과 변화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격적인 무역사 연구는 아니지만 安秉直과 호리(堀和生)는 조선의 무역추세가 시종일관 일제에 포섭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나 일본제품의 유입이 조선공업을 전체적으로 위축시킨 것이 아니고 또 거꾸로 조선공업의 발전이 일본제품의 유입을 대체하고 구축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결국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과 조선 내의 생산이 병행되었다는 것이다.²⁸⁾ 이 연구는 일제하의 조선에서 수탈과 개발이 병존했다는 견지에서 생산과 무역관계를 밝히려 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을 선진자본주의로의 과도적 단계인 중진자본주의 단계라고 평가하면서 그 과정의 구체적인 양상과 그것을 규정한 국내적, 국제적 조건을 조선 후기, 식민지기, 해방 후를 관통하는 논리로 해명하려고 했다. 즉 일제의 수탈 속에서도 조선경제가 '내재적'으로 발전하여 8·15 이후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하의 조선경제가 왜곡 내지 수탈되었다는 수탈론만으로는 한국자본주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전까지의 연구가 주로 경제왜곡과 수탈을 강조했던 것에 반해 식민지하에서도 개발(근대화)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새로운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식민지개발론' 시각이 추적하는 조선 후기, 식민지기, 해방 후를 관통하는 현대 한국자본주의의 전체상은 조선 후기의 정체성, 식민지배에 의한 경제발전과 이를 토대로 한 해방 후의 경제

성장이라는 연결로 설명되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한편 李承烈은 1930년대 '조선공업화와 수출'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²⁹⁾ 그는 1930년대의 수출은 식료품과 원료품이 주요 수출품이었던 1920년대와 달리, 매우 미미하지만 조선인 자본가계급도 공산품을 생산하면서 수출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30년대 수출무역을 통해서 조선경제가 발전하고 있었다는 安秉直과 호리(堀和生)의 논리를 인정하고 윌러스틴의 세계체제론³⁰⁾을 조선에 대입시켜 조선이란 지역이 반주변부로 상승했다고 하면서도, 일본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조선인 자본가가 반주변부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安秉直과 호리의 연구가 단순히 1930년대 조선경제가 수출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었다는 논리를 넘어 그 속에서 조선인 자본가는 그 발전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³¹⁾ 그러나 그도 인정했듯이 전체 무역규모에서 미미한 비율을 차지한 수출에서의 성장만으로 전체 조선경제가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발전했다고 보기에는 많은 한계가 따른다.

일제하 조선무역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조선무역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발전된 모습을 띠었다는 《朝鮮貿易史》와 이

29) 李承烈, 1997, 〈1930년대 朝鮮의 수출증가와 朝鮮工業界의 동향〉 《金容燮教授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3 韓國近現代의 民族問題와 新國家建設》, 지식산업사.

30) 나종일, 1992, 《세계사를 보는 시각과 방법론》, 창작과 비평사 참조. 윌러스틴은 오늘날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하나의 세계체제로 핵심부와 주변부, 반주변부의 삼중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31) 이러한 그의 연구는 개별 사례연구를 통하여 조선인 자본가가 일제하에서도 성장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연구와 대비되는 것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개별 자본가가 아닌 조선인 자본가 전체가 구체적으로 일제하 조선경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28) 安秉直·堀和生, 1993, 《近代朝鮮工業化의 研究》, 一潮閣, 20쪽.

를 비판한 논저로 구분된다. 다만 《朝鮮貿易史》를 비판한 논저들은 단순히 조선무역의 식민지성을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증적 차원에서의 일제하 조선무역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朝鮮貿易史》의 수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송규진은 일제하 조선무역이 양적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朝鮮貿易史》의 평가를 일방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양적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현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말기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밝혔다.³²⁾ 또한 질적 구조의 측면에서도 《朝鮮貿易史》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조선무역의 질적 변화가 있었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음을 일본으로의 편중현상과 수출입시장의 협소화, 상품종류별 구성과 수이출입 상품의 내용을 분석해 밝혔다.

일제하 조선무역이 양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은 대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지만 재검토의 여지도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구체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양적 성장 이면의 역사성과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질적 구조의 측면에서는 대일편중현상과 수출입시장의 협소화, 상품종류별 구성과 수이출입 개별상품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조선무역의 식민지성을 정리해 보아야 한다. 이제 일제하 조선무역에 대한 연구는 식민지 지배가 단순히 조선의 경제를 왜곡 내지 수탈했다는 관점을 뛰어넘어 일제의 수탈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조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분석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대략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무역을 선사와 초기 국가시대, 삼국 및 남북국시대, 고려, 조선, 근·현대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가 학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고, 각 시대별 집필자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서술의 일관성은 약간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초로 역사적인 면에서 한국의 무역을 통시대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2) 송규진, 2001, 《日帝下の 朝鮮貿易研究》,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院.

1장

선사 및 초기 국가시대(고조선 · 부여 · 삼한 시기)의 무역

박경철(강남대학교)

1. 선사시대와 청동기시대의 교역

1) 선사시대의 교역

(1) 선사시대란

선사시대(先史時代)란 인류가 도구, 즉 연모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대체로 250만 년 전부터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이전까지의 문자 기록이 없던 시기를 지칭한다.

한반도(韓半島)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60~50만 년 전 구석기 시대부터이다. 이때는 지질학적으로는 제4기 홍적세(第4紀 洪績世)로서, 네 번의 빙하기(氷河期)와 세 번의 간빙기(間氷期)를 거치는 등 기후와 지형의 변화가 매우 심한 시기였다.¹⁾

한국(韓國) 구석기시대 주민들의 발자취는 우리 민족의 형성과 직접

1) 金元龍, 1986,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7~10쪽; 任孝宰, 1992, 《韓國古代文化의 흐름》, 集文堂, 43쪽.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의 선주민(先住民) 역사의 흔적으로 이해함이 바람직하다.

지구는 지금부터 1만 년 전부터 충적세(沖積世)로 접어들면서, 기온 상승과 함께 지금과 비슷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문화, 즉 신석기문화를 가꾸어 나가게 되었으니, 이 시기가 바로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이다. 한국의 신석기시대는 기원전 6000년경부터 시작되어 지역적 특색을 지니면서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와 시베리아 신석기문화 담당 주민의 실체는 고아시아족(Palio-Asiatics)이다. 이들은 분명히 우리 민족과는 이질적인 존재로서 역사 전개 면에서도 각기 상이한 여정(旅程)을 밟게 된다. 그러나 한국 신석기문화는 시간적으로 청동기문화와 연결된다. 따라서 고아시아족 계열의 문화요소는 우리 민족문화 형성과정에 하나의 잠류(潛流)하는 줄기로서 그 문화의 내용을 더욱 다양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였던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선사시대의 생업경제와 교역

선사시대의 생업경제

구석기시대 인류는 타제석기를 사용하면서, 수렵·채집경제(狩獵·採集經濟)에 바탕한 ‘식량채집단계(食糧採集段階: food-gathering stage)’의 삶을 영위하였다. 또 신석기시대 인류는 새로이 성립한 농경을 배경으로 진흙을 빚어 불에 구워 만든 그릇인 토기라는 새로운 조리(調理)와 저장수단을 개발·활용하기 시작하고, 돌을 갈아서 만든 마제석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신석기혁명(新石器革命: the Neolithic Revolution)’이라 지칭될 만큼 인류 문화발전사에 혁

명적인 새로운 전기(轉機)가 마련된 때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서의 농경의 시작은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감안할 때 기원전 2000년경 신석기시대 말기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²⁾ 그러므로 농경을 바탕으로 한 ‘식량생산단계(食糧生産段階: food-production stage)’가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기원전 12~10세기 이후 청동기시대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선사시대의 생업경제(生業經濟: subsistence economy)의 바탕 틀 역시 수렵·채집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 인류학계는 사회진화(社會進化) 혹은 사회적 복잡성(社會的 複合性: social complexity)의 진전상을 “가족단계사회(무리·군)⇒국지적 집단(부족 단계)⇒군장사회(지역집단: 단순/복합)⇒국가[family level society(the band)→the local group(the tribal level)→the chiefdom(the regional group: simple/complex)→the state]”라 파악하고 있음이 일반적인 추세이다.³⁾

수렵·채집생활을 영위하던 선사시대 인류가 가족단계사회(무리·군)에 속해 있었음은 널리 인정되는 사실이다. 이는 또 우리의 선사시대 주민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일 것이다.

오늘날의 인류학자들은 ‘가족단계(the family level)’의 사회가 수렵보다는 오히려 채집을 으뜸가는 식량원(食糧源)으로 삼는 가까운 친족관계(親族關係: kinship relationships)에 기초한 소규모 사회집단(social groups)의 비공식적이면서도 친밀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⁴⁾

2) 任孝宰, 1992, 〈앞의 책〉, 43쪽.

3) Timothy Earle, 1994, 〈Political Domination and Social Evolution〉, Edited by Tim Ingold, 《Companion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Humanity · Culture and Social Life》, New York: Routledge; 朴京哲 譯, 1999, 〈政治의 支配와 社會進化〉《史叢》50, 高大史學會, 170쪽.

4) Timothy Earle, 1994, 〈앞의 글〉, 176쪽.

선사시대의 교역

K. Polanyi는 인류의 경제조직은 ‘호혜체계(互惠體系)’ · ‘재분배체계(再分配體系)’ · ‘시장체계(市場體系)’라는 세 개의 기본적인 체계로 구성된다고 본다.⁵⁾

그 첫 번째 단계인 ‘호혜체계’는 호혜성(互惠性: reciprocity)에 바탕한 동등자(同等者) 사이의 교환(交換: exchange)인 선물(贈物: gifts)에 기초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선사시대 주민들 사이의 물질 교류는 선물교환으로 개념되는 호혜성의 바탕 위에서 행해졌을 것이다. 호혜는 한 사람의 거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부(富)의 전달이 아닌 거래자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표상(表象)해 주고 있다. 이 경우 호혜의 기본단위는 가족과 친족이 된다.⁶⁾

이 경우 교역이라 함은 재분배(redistribution)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호혜적인 물물교환(物物交換)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역은 개인이나 인접지역에 있는 소규모 집단 사이에 이루어지는 물자의 교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선사시대 이후 보편화되는 무역(貿易: trade)은 “원거리(遠距離)에 있는 큰 규모의 집단 간에 전문적(專業的)으로 생산된 재화(財貨)를 취득하거나 넘겨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⁷⁾ 따라서 선사시대 교역의 기본 골은 개인 간 혹은 소규모 집단 사이의 호혜적인 물물교환이었다.

오늘날 인류학계는 특히 후기 구석기시대로 들어오면서, 장거리에

걸친 교역 혹은 교환경제망의 등장을 시사하는 여러 고고학 자료의 존재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내륙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는 바다조개의 껍질이나 수백 km 떨어진 곳이 원산지인 원료를 사용한 도구의 존재 등은 그러한 자원 확보를 위하여 집단과 집단 사이에 일정한 사회문화망(sociocultural network)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음을 엿보게 해준다.

이러한 현상은 그 이전 단계까지 인구 밀도는 매우 낮았기 때문에 한 집단은 사방 수백 km 정도의 넓은 지역을 이동하며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시기 이후부터 그러한 넓은 지역에 대한 한 집단의 독점적 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생존에 필요한 자원은 상당 부분 집단과 집단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 의하여 획득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조직망의 유지는 자연적 재난이나 사회적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에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적응의 수단으로서도 필요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후기 구석기시대의 종말기에 다가오면서 공통적인 문화요소가 매우 넓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된 이유는 선사인류의 행위가 고립된 개별집단의 차원을 벗어나 보다 넓은 공간에 걸쳐 다 집단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동북아시아에서는 켜기형 석핵(石核)을 최후의 산물로 남기는 세석인박리기법(細石刃剝離技法)이 14,000 B.P.를 전후하여 등장하는데, 이 기법은 불과 1,000~2000년 사이에 티베트(Tibet)에서 몽고(蒙古), 동북 시베리아 및 한국과 일본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걸쳐 급속히 퍼졌던 것이다.⁸⁾

5) Peter Burke, 1992, 《History and Theory》: 박차섭 옮김, 1994, 《역사학과 사회이론: 현대의 지성85》, 문학과지성사, 113~114쪽.

6) G.A.Gregory, 1994, 《Exchange and Reciprocity》, ed. by Tim Ingold, 《Companion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Humanity, Culture and Social Life》, New York: Routledge, pp. 920~924.

7)李清圭, 2003, 〈韓中交流에 대한 考古學的 接近: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까지〉《韓國古代史研究》32, 한국고대사학회, 100~101쪽.

8) 이선복, 1988, 《고고학 개론》, 이론과 실천, 195~196쪽.

그렇다면 선사시대 당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무리 외의 집단들과 인적·물적 교섭 내지 교류를 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오늘날 우리 학계가 수행한 선사문화 유적지(遺蹟址)와 유물(遺物)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성과는 그 문화유형(文化類型)에 있어 일정한 시·공간적 경향성(傾向性)이 적지 않음을 쉽게 확인케 해준다. 이 사실은 당시의 소집단들 사이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인적·물적 교섭 내지 교류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흑요석(黑曜石)은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마그마 기원의 자연유리 이자 수석(燧石), 곧 부싯돌과 더불어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질 좋은 유리 구조의 암석이다(〈도1〉 참조). 이 돌은 원석을 때려 날카로운 날을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박리(剝離)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구석기시대 이래 도구 제작에 즐겨 사용되었다.⁹⁾ 곧 흑요석은 석기가 사용되던 선사시대에 있어 전 인류에게 중요



〈도1〉 부산 동삼동/통영 연대도 출토 흑요석

9) 이선복·이용일, 1996, 〈흑요석 석기의 지화학적 특성에 대한 예비 고찰〉 《韓國考古學報》35, 韓國考古學會, 173~174쪽.

한 전략자원(戰略資源)으로 각광받았던 것이다. 이 점은 한국 선사시대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흑요석은 지역마다 결정구조(結晶構造) 등 성분상 차이를 보이므로, 그 성분 분석을 통하여 산출지(產出地)를 밝힐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 간의 교류·교역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¹⁰⁾

한때 우리 학계는 강원도(江原道) 양양(襄陽) 오산리(鰲山里)에서 출토된 흑요석의 결정구조를 분석한 결과, 그 산지가 백두산(白頭山)으로 추정되어 일시 주목받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이 오산리를 포괄하고 있는 한반도 동북 해안 지방·흑룡강(黑龍江) 유역 일대는 즐문토기문화에 선행하는 선즐문토기문화를 특징으로 하되 다른 지역의 그것들과 분별되는 신석기 토기문화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분석이 정확하다면, 백두산의 흑요석을 매개로 하는 오산리·동북 해안 지방·흑룡강 유역 일대가 모두 포섭된 일정한 문화교류권(文化交流圈) 혹은 교역권(交易圈)의 상정(想定)이 가능해 질 수도 있는 까닭이었다. 곧 흑요석 같은 희귀자원이 반경(半徑) 수백 km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에 걸쳐 분배될 수 있는 모종의 사회경제망(社會經濟網)이 신석기시대 초부터 존재했거나, 아니면 수렵채집집단의 이동 양식이 그 넓은 지역에 걸쳐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실로부터 당대의 사회경제 조직이나 집단구성 양식, 혹은 이동 양식 등 여러 복잡한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가 결코 같은 의미 일 수 없는 수많은 가설(假說)과 모형(模型)이 제시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된 신석기시대 생활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¹¹⁾

10) 장경희·강현숙·강민기·이숙희·이선재·윤희상 편저, 1994, 《한국 미술문화의 이해》, 예경, 91쪽.

11) 이선복·이용일, 1996, 〈앞의 글〉, 176~177쪽.

그러나 오늘날 학계는 시료(試料)인 오산리 흑요석과 비교 대상이 된 ‘백두산 원석’의 실체가 불분명함을 들어 그 분석 결과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최근 우리 학계는 이 문제와 관련, 오산리를 포함하여 의정부시(議政府市) 민락동·홍천군(洪川郡) 하화계리·공주시(公州市) 장기면 하봉리라는 네 곳에서 출토된 흑요석을 고고자료(考古資料)로, 경북(慶北) 의성(義城) 금성산·추가령지구대 철원(鐵原) 궁평리라는 두 곳의 화산유리산지(火山琉璃產地)를 비교자료로 일련의 희토류원소분석(稀土類元素分析)을 시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흑요석 관련 고고자료들은 시·공간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진 네 지점에서 발견되고 있음에도 모두 같은 산지에서 채집된 원석(原石)에서 만들어진 자료이다. 그러나 이들이 화산유리 산지 두 곳에서 채취되었을 가능성은 현재로는 거의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만일 이 연구결과를 그대로 따른다면, 직선거리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양양 오산리와 공주 하봉리에서, 또 홍천·의정부·공주라는 너른 지역에 걸쳐 고고학적으로 같은 시기라 해도 좋을 유적에서 동일 산지의 흑요석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구석기시대 최말기 고인류(古人類) 행동양식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곧 구석기시대 말과 신석기시대 초 동안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동일 산지의 흑요석이 분포한다는 점은 당시의 수렵채집 집단에게 이 자연유리는 매우 중요한 전략자원이었고, 이를 의식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흑요석은 당시 수렵채집 집단이 계절적이며 주기적인 이동 과정에서 산지를 방문해 채취하는 방식으로 획득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모종의 사회경제적 관계를 통해 산지로부터 전달받는 형태를 취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¹²⁾

부산(釜山) 동삼동(東三洞)에서 일본 조문토기(縄文土器)와 함께 이키(壹岐) 섬의 흑요석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석기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어쩌면 후자일 가능성도 전혀 부인할 수만은 없다.

이 점에 비추어 당시 한반도의 주민들 사이에는 생태적 적응전략상의 유사성이 존재하였고, 이에 따른 개개 집단 사이의 호혜적인 물물교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큼을 상정해 본다. 또 한국 남해안 유적지의 흑요석의 산출지가 일본 규슈(九州) 지방의 그곳이 사실이라면, 이 사례를 통해 바다라는 장애물을 넘어 행해진 교류·교역의 존재를 추정함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 사실은 신석기시대에 이르러 당시 주민 집단들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의 폭과 깊이가 상상 이상으로 넓고 다양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우리 학계 일각에는 우리 민족 형성과정에서, 신석기시대 즐문토기인과 청동기시대 무문토기인 사이의 흡수·동화·통합 과정에 있어서의 평화적 국면에 주목하는 견해가¹⁴⁾ 있어 눈길을 끈다. 곧 이 견해는 즐문토기문화에서 무문토기문화로의 이행 과정에서 상호 간의 문화요소를 교환한 사실을 시사하는 고고학적 자료가 적지 않음에 근거하고 있다.

이 견해는 그 예로서 즐문토기가 무문토기의 태토(台土)인 모래·활석가루·석면을 자기의 그것으로 채택한 점과 팽이형토기(기원전 7세기 이후 한반도 서북 지역의 무문토기)의 구연부에 즐문토기식 사선

12) 이선복·이용일, 1996, 〈앞의 글〉, 176-186쪽.

13) 장경희·강현숙·강민기·이숙희·이선재·윤희상 편저, 1994, 〈앞의 책〉, 91쪽; 이선복·이용일, 1996, 〈앞의 글〉, 175쪽 및 註(1).

14) 金元龍, 1986, 〈앞의 책〉, 58-59쪽.

(斜線) 무늬를 시문한 사실 및 경기도 양주(楊州) 수석리(水石里) 집자리 유적에서 즐문무늬문화 전통의 냇들을 이용한 석기들의 존재를 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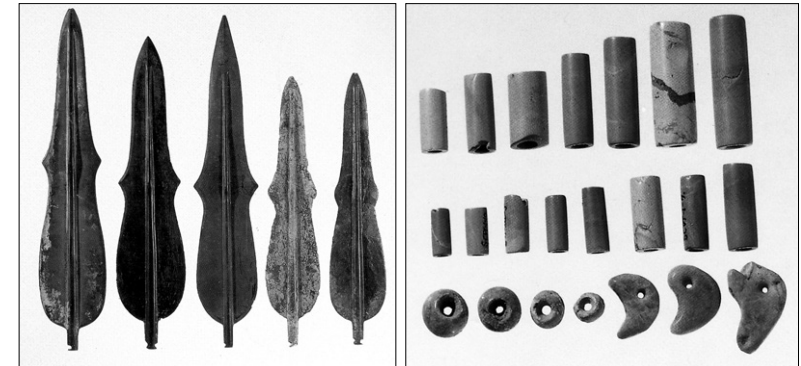
이러한 사실은 선사시대 말기 이질적인 주민집단(ethnic group) 사이에서도 물질 자원의 교류, 즉 교역뿐 아니라 문화와 기술(technology)을 나누어 갖는 인적 자원의 교류가 그치지 않았음을 짐작케 해준다.

2) 청동기시대의 표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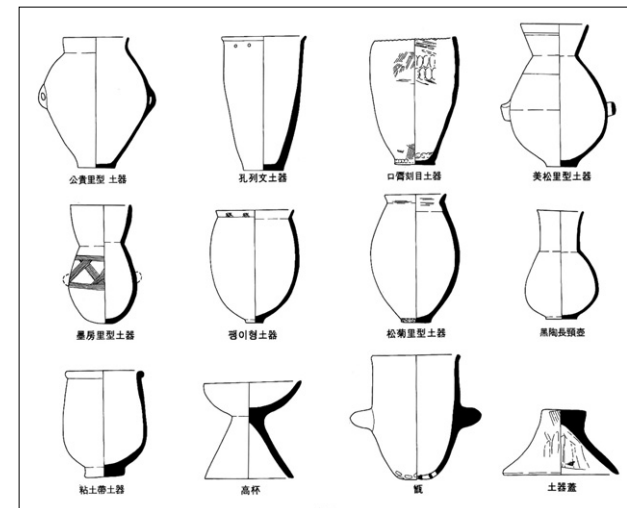
(1) 청동기시대와 예맥문화권 성립

기원전 12~10세기경부터 예맥(濊貊)이라 일컬어지는 새로운 주민집단이 무문토기(無文土器) 및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다뉴조문경(多紐粗文鏡)을 그 표지유물(標識遺物)로서,〈도2〉 및 〈도3〉 참조) 또 중심묘제(中心墓制)로서 석관묘(石棺墓)와 지석묘(支石墓)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만주와 한반도에 그 존재를 드러내게 된다. 이들 알타이어족 계통의 예맥족들이 신석기문화 담당주민인 고아시아족을 흡수·동화·통합하는 과정이 곧 우리 한민족(韓民族) 형성 과정과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당시 농경이라는 안정적 식량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그 잉여(剩餘)의 재분배기제(再分配機制)가 가동(稼動)됨에 따라 사회적 분화도가 제고되고, 이에 따른 권력(權力)과 계층(階層)이 발생하게 됨에 이르러, 제 집단 간의 상호 교호작용(交互作用)은 물론 조직화된 무장충돌(organized and armed conflict)마저 빈번히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도2〉 예맥문화권의 비파형동검·옥·다뉴조문경



〈도3〉 예맥문화권의 지역별, 시기별 무문토기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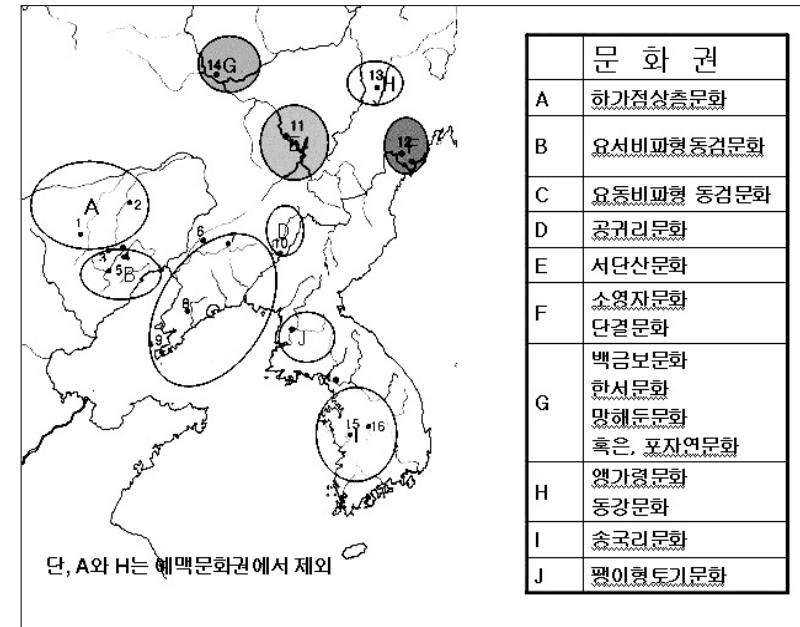
특히 정치인류학계는 국가가 형성되기 바로 전 단계인 이 시기 정치적 조직체(polity)를 군장사회(君長社會: chiefdom)라 지칭하고 있다.¹⁵⁾ 군장사회란 군장을 지배자로 또 그의 혈연집단을 중핵으로 하는 지연(地緣)에 바탕한 지역집단(地域集團: regional group)을 일컫는 것이다.¹⁶⁾

예맥문화권(濊貊文化圈)은 요서(遼西) 지방에서 비파형동검문화가 기원전 10세기경 성립한 뒤, 기원전 7~8세기경 이래 요녕(遼寧) 지역에서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별 생태적·지정학적·생업경제적 조건에 적응한 ‘발전의 불균등성’이나 생태적 적응전략의 차별성에 따라 이형동질적 종족·주민집단으로 분별되면서, 여러 하위문화권으로 분화·발전해 나간다(〈지도1〉 참조).

청동기시대 예맥문화권의 중심지역은 태자하(太子河)와 혼하(渾河)를 중심으로 하는 요하(遼河) 유역 곧 요동(遼東) 지방이다. 또 이곳에서의 예맥을 향유 주체로 하는 요동비파형동검문화(〈지도1〉상의 C)는 훗날 고조선(古朝鮮)의 기저문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송화강(松花江) 유역 서단산문화(西團山文化)(〈지도1〉상의 E)는 훗날 부여(扶餘·夫餘)의 기저문화로서, 또 백금보/한서문화(白金寶/漢書文化)는 ‘탁리국(挾離國)’의 문화로서 부여의 그것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종래에 추론되어 온 바 있다. 그런데 부여사 전개 및 그 고고문화와 관련되어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포자연식문화(泡子沿式文化)’이다. 따라서 최근 학계 일각에서는 이 고고문화를 탁리국의 문화로 보고 있다.

15) 金貞培, 1986, 《韓國古代의 國家起原과 形成》, 高麗大學校出版部.

16) 朴京哲, 1997, 〈B.C.1000年紀 後半 積石塚築造集團의 政治的 存在樣式〉《韓國史研究》98, 韓國史研究會.



〈지도1〉 예맥문화권의 지역 별/시기 별 전개상

한편 공귀리유형문화(公貴里類型文化)(〈지도1〉상의 D)는 고구려의 선형문화 혹은 기저문화로서 거론될 수 있다.¹⁷⁾ 그리고 소영자문화·단결문화(小英子文化·團結文化)(〈지도2〉상의 F)는 옥저(沃沮)의 바탕이 되는 문화로 그 구실을 다하였을 것이다.¹⁸⁾

그러나 앵가령/동강(鶯歌嶺/東康文化)(〈지도1〉상의 H)만은 숙신/읍루(肅愼/挾婁)의 문화로서 예맥문화권의 범주에서 제외된다.¹⁹⁾

17) 황기덕, 1984, 《조선의 청동기시대》,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9~10·54~65쪽; 藤口健二, 1986, 〈朝鮮無文土器と彌生土器〉《彌生文化の研究》3, 東京: 雄山閣, 148~149쪽; 東潮, 1995, 〈高句麗以前の東北アジア〉《高句麗の歴史と遺跡》, 東京: 中央公論社, 71쪽.

18) 董學增·李澍田, 1984-2, 〈略談西團山文化的族屬問題〉《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53~57쪽.

19) 董學增·李澍田, 1984, 〈앞의 글〉.

한편 팽이형토기문화(〈지도1〉상의 J)는 고조선 중심이동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논자들에 의해 이를 ‘후기고조선’에 선행하여 존재했던 예맥계의 문화라 이해되어지고 있다. 또 송국리유형 문화(松菊里類型文化)(〈지도1〉상의 I)는 한반도 중·남부 지방에서의 수전농경의 확산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훗날 삼한(三韓)의 선행문화로서 이해할 수 있다.²⁰⁾

(2) 청동기시대의 교역

예맥문화권의 역내교역

K.Polanyi가 인류의 경제조직으로 거론한 두 번째 단계의 것은 ‘재분배체계(再分配體系: redistribution system)’이다. 이는 재분배에 기초하는 바, 사회적 위계질서(位階秩序)에 의거하여 운영된다.²¹⁾

이 점에 비추어, 청동기시대 예맥문화권 내에 자리 잡게 된 재분배 경제구조란 지배와 피지배라는 권력관계에 바탕한 집단 내부의, 또 이들 집단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성립한다. 따라서 예맥문화권 내부, 지역별 제 집단 간, 그 집단 내 하위집단 사이의 정치·경제·문화·사회적 발전 수준에 있어 불균등성의 존재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된다.

이러한 발전의 비대칭성(非對稱性)은 만주와 한반도라는 너른 지역 곳곳에 분포하는 예맥계 제 주민집단 사이, 그 내부 하위집단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가 종래 예상해 오던 수준 이상으로 활성화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이 경우 한 집단의 수장(首長)은 교역을 통하여 획득한 외부 집단의

재화를 다시 자기 지배권 아래의 각 세대(世帶)에게 하사하게 된다. 특히 두 집단 간에 있어서의 사치품(奢侈品) 교역은 각 집단의 엘리트 사이에서만 행해지는 까닭에, 수장은 교역에서 얻은 사치품을 자기에 대한 충성의 대가인 권위재(權威財) 혹은 위세품(威勢品: prestige good)으로서 수여(授與)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²²⁾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인적·물적 교류 양상을 예맥문화권 역내교역(域內交易)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맥문화권 내 지역별 주민집단 간의 문화적 상관성은 생태적·지정학적·생업경제적 친연성(親緣性)에 바탕한 종족적 정체성을 함께 나누며 요동을 중심(center)으로 그리고 송화강 유역과 압록강(鴨綠江) 중류 유역 및 대동강(大同江) 유역을 주변부(periphery)로 하는 정치·경제·문화적인 재분배 연망(連網: network)이 형성·운영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연망을 매개로 제 집단 간의 인적·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지식·기술·정보의 교호작용이 교역의 형태를 띠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송국리유형 문화는 한반도 남부 금강(錦江) 유역 일대의 수전농경문화(水田農耕文化)를 대표하는 지역문화인바, 위에서 말한 지역 문화들과는 생업경제의 상이성에서 비롯된 일정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도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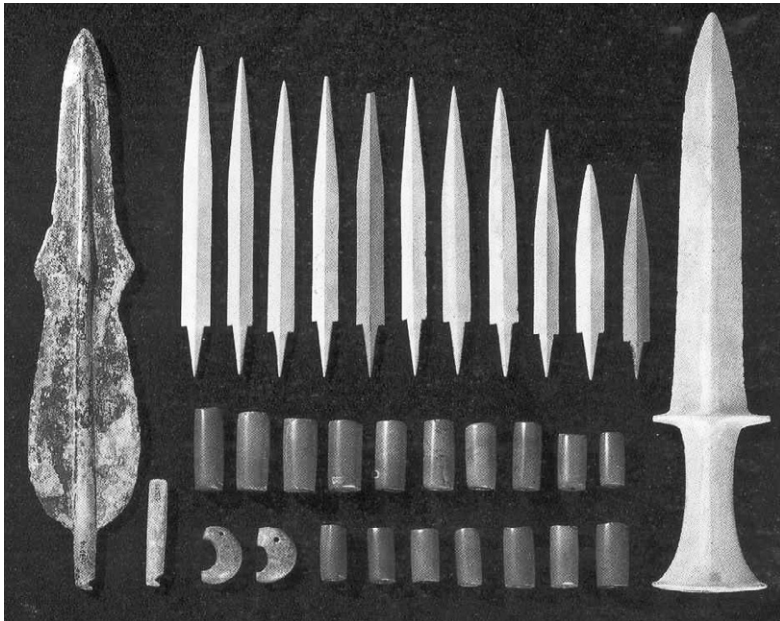
그런데 이 송국리유형 문화권 내부의 제 하위집단 간에서도 일정한 존재양태의 차별성이 드러나고 있어 새삼 주목된다.

이 문화의 대표적 유적지로는 부여(扶餘) 송국리·논산(論山) 마전

20) 李弘鍾, 1996, 《청동기사회의 토기와 주거》, 서경문화사, 12~47쪽.

21) Peter Burke, 1992, 《앞의 책》, 113~114쪽.

22) Peter S. Wells, 1980, 《Culture contact and culture change: Early Iron Age central Europe and the Mediterranean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



〈도4〉 부여 송국리 유적지 출토 유물

리(麻田里)·서천(舒川) 도삼리(道三里) 유적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송국리 유적과 마전리 유적은 모두가 농경 유적으로, 특히 후자의 경우 수전 유구(遺構)까지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송국리 석관묘에서는 비파형동검과 옥(玉)이 공반(共伴)된 반면, 마전리의 그것에서는 비파형동검에 갈음하여 마제석검(磨製石劍)과 옥이 출토되었다. 이 점은 송국리 집단의 정치·경제적 역량이 마전리 집단의 그것에 비하여 우월함을 엿보게 해준다. 그리고 이 사실은 같은 문화권역(文化圈域) 내부의 제 집단 간 상위집단에서 하위집단으로의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지식·기술·정보의 분배가 이루어졌고, 또 그것은 부등가교환(不等價交換)이라는 교역의 형태를 띠고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해준다.

한편 서천 도삼리 유적은 금강 하구(河口)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데, 농경 관련 도구가 거의 확인되지 않음이 주목된다. 또 이곳에서 발굴된 방어(防禦)를 위한 구조물인 구상유구와 목책(木柵)의 존재는 이곳에 거주하던 주민집단의 존재양태와 관련,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곧 이 도삼리 유적지는 선진문화의 수입과 전파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당시 해상과 금강 수계에 있어 교통의 요충지로 기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²³⁾

이 도삼리 유적의 존재는 강과 바다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교통 장애요인보다는 촉진요인이 됨을 새삼 환기시켜 주는 좋은 보기이며, 아울러 그 시기의 교역 통로를 짐작케 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 송국리유형 문화권 내부의 제 집단은 상호 간 힘의 위계 질서 및 역할 분담에 따른 교역을 행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이 송국리유형문화권은 예맥문화권 내 다른 문화권, 또는 비예맥문화권과의 일정한 교역마저 수행하고 있었을 것이다. 도삼리 유적은 이러한 교역망 운영을 위한 일정한 거점이 경영되고 있었음을 엿보게 해준다.

예맥문화권과 유목문화권 간의 교역

청동기시대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은 농경문화권의 중원(中原) 및 유목문화권(遊牧文化圈)의 몽고고원(蒙古高原)－시베리아 일대로서 만주와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는 그 중심에서 방사(放射)되는 문명의 빛에 의해 그 역사의 여명(黎明)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문화는 몽고고원－시베리아 일대 유목청동기문화에서 비롯된 예맥 청동기문화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예맥 청동기문화의 표지유물인 비파형동검의 가장 오래된 형식의 동검이

23)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 2003, 《舒川 道三里遺蹟(略報告)》, 14쪽.

요서비파형동검 문화권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 점은 요서 대릉하(大凌河) 유역의 예맥계 주민들이 노로아호산(努魯兒虎山) 이북 내몽고(內蒙古) 지방을 점이지대(漸移地帶)로 하여 유목계 주민들 및 그들의 문화와 항시 접촉·교류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교류 및 정보·기술의 교환 기제(機制: mechanism)가 양측 주민들 간에 작동하고 있었을 것이다.

기원전 7~8세기경 예맥계 요서비파형 동검문화권의 십이대영자유형(十二臺營子類型) 문화와 유목문화인 하가점상층문화권(夏家店上層文化圈)은 공시적(共時的)으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그 성격을 달리하는 문화상을 시현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점의 비파형동검이 하가점상층 문화의 대표적 유적지인 영성(寧城) 남산근(南山根) 101호 석곽묘(石槨墓: 1963년 발굴)에서 여섯 점의 유병식검(有柄式劍)·공병식검(鑒柄式劍)·유엽형검(柳葉形劍)과 공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접한 양측 주민 상호 간의 문화 및 인적·물적 교류가 행해지고 있었음을 엿보게 해준다.²⁴⁾

예맥문화권과 중원문화권 간의 교역

청동기시대 예맥문화권의 원류가 유목문화권에서 비롯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문헌 및 고고학 자료들은 당시 한·중(韓中) 사이 곧 예맥문화권과 중원문화권(中原文化圈) 간에도 일정한 교류 및 교역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²⁵⁾

당시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사이의 주민 이동과 생업기술의 전달은 지석묘와 범씨 자료의 존재를 통하여 묘도열도(廟島列島)로 이어지는

황해(黃海) 상의 해상루트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화남(華南) 지방에서 발원하였다고 생각되는 도작(稻作)의 증거가 요동반도의 대취자(大嘴子) 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주민 이동 없이도 토기의 장식적 속성이 전파될 수 있으며, 도작 기술의 정보도 교류될 수 있으나, 관계지리적(關係地理的)인 위치로 보아 묘도열도로 연결되는 해상교통로를 통하여 주민의 이동은 물론 적어도 주민과의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예맥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전국시대(戰國時代) 이전의 금속유물을 통한 교류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예맥문화권에서 중국문화권으로의 문화 전파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지석묘와 석관묘가 산동반도 일대에서 확인되는 점이 주목된다. 지석묘의 경우, 대체로 전형적인 탁자식(卓子式)은 없고 변형된 그것으로서 요동반도와 한반도 서북 지방 지석묘의 후기형으로 이해된다.²⁶⁾ 이것들은 지리적인 위치로 보아, 요동반도와 교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바, 묘제의 특성상 주민이동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비파형동검은 요하 서쪽으로 하북성(河北省)에 이르기까지 여러 점이 발견된다. 비파형동검 단계에 요하 동쪽지방과 중국의 교류는 기본적으로 요서지역을 경유할 수밖에 없다. 하북성 지역의 비파형동검이 예맥문화권으로부터 직접 건너간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요하→대릉하(大凌河)→난하(灤河)로 이어지는 내륙교통로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발해만(渤海灣)을 끼고 도는 연안항로를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24) 朴京哲, 1999, 〈앞의 글〉, 241~243쪽.

25) 청동기시대 한·중간의 교류와 교역의 실태에 관해서는, 이청규, 2003, 앞의 글, 105~119쪽.

26) 李慧竹·王青, 2002, 〈후기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중국 산둥 지역과 한국간의 교류〉《白山學報》64.

기원전 4세기 이전의 비파형동검 단계 시기 청천강(淸川江) 이남 지역에서 중국계 유물이 확실하게 나온 예가 없다. 황해도 고산리(孤山里) 무덤에서 나온 중국 도씨검(桃氏劍)이 전국(戰國) 시대 초의 것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 연대도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 자체가 방제품(倣製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전국시대 중국 연(燕)의 영역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미 전국 이전에 발해만을 끼고 발전하였을 육상루트·해상루트를 고려할 때 일정한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하겠다.

기원전 3세기 이전의 청동기시대에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전북(全北) 완주(完州)에서 중국 도씨검이 대량 매납된 예가 있다.²⁷⁾ 이들 도씨검은 중국 제(齊) 나라의 생산품이므로, 화남지방으로부터 공해(公海) 상의 루트를 거쳐 직접교류된 것이라고 주장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목(物目)의 유통과정이 안정되거나 반복되는 교역이라고 하기에는 유사한 맥락의 자료가 더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설혹 서해 공해상으로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1회성 혹은 표류성 항해의 소산일 가능성이 많다.

중국제 동검은 한반도 남부 지방에서는 완주 출토 사례 이외에 함평(咸坪) 초포리(草蒲里) 목관묘(木棺墓) 유적에서도 확인되었다. 이곳에서는 세형동검과 세문경(細文鏡)·청동방울 등 기원전 2세기 대의 재지계(在地系) 청동기가 부장되었는바, 동 유물과 공반하는 중국제 동검은 방제품일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그 방제품이 이미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제작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기술 정보의 교류 혹은 장인(匠人)의 이주가 어떠한 경로에서든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

하여 준다 하겠다.

영남(嶺南) 지역의 대중국 교류관계가 기원전 3세기 이전에 이루어진 고고학적 증거는 없으며, 더군다나 기원전 2세기 위만조선 단계 이전에 중국 물자가 유입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교역

日本の 조몬 만기(縄文 晩期)와 야요이 전기(彌生 前期)는 한국의 청동기시대와 공시적으로 병존하던 시기였다. 특히 일본의 야요이 시대는 한반도 농경문화가 파급되고, 청동기·철기의 유입이 함께 이루어진 시기였던바, 각 지역별로 새로운 정치조직체가 형성되는 등 일본 고대국가 성립의 여명이이기도 하다

한반도 남부에 거주하던 집단의 이주에 의한 순수농경과 관련된 일차적인 파급과 청동기·철기를 둘러싼 이차적인 파급이 이러한 야요이 문화가 탄생하게 된 배경으로 꼽힐 수 있다. 특히 농경을 기반으로 한 취락(聚落)의 대형화와 그에 따른 지배계층의 출현이 이차적인 파급이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거론된다.

그런데 처음 청동기가 일본에 등장한 시기는 야요이 전말기(前末期)로, 이들의 분포 근처에는 점토대토기(粘土帶土器) 출토지가 반드시 존재한다. 때문에 점토대토기 집단이 이들 청동기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점토대토기는 중국 동북부 지역으로부터 한반도 북부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중남부 이남 그리고 일본의 북규슈(北九州)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 중 한반도의 점토대토기 집단이 직접 일본에 청동기를 공급하였다.

또 이렇게 한반도 청동기가 일본으로 보급된 것은 한반도에서의 새

27) 鄭相石, 2001, <금강유역 세형동검문화의 발전과 도씨검> 《韓國古代史研究》22, 한국고대사학회.

로운 농경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본의 새로운 정치세력이 이를 계기로 영농집단(營農集團)과 취락 구성의 변화에 힘입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지배계층은 이미 한반도 청동기문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한반도지역의 지배계층이 그의 대리교역인(代理交易人)을 파견하게 되었다.

이들 교역인은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각 지역에 독자적인 활동영역 곧 식민지적(植民地的) 교역장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또 이들 교역인이 거주한 영역은 각 지역 통치자로부터 안전과 독립적인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배려를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교역거점은 각 지역 지배계층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비교적 대등한 입장에서 교역을 행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교역거점에서 교역인은 각 지역의 지배자 혹은 그 대리인과만 거래를 행하였을 것이다.

한편 이들 교역인은 청동기의 제작을 알고 있는 집단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규슈의 토생(土生) 유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 지역에서 청동기를 직접 제작해서 공급하였을 수도 있다. 또 이들에 의해 공급된 청동기가 일부 지배계층에 의해서만 점유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교역물품이 청동기에만 국한된 것인지 그리고 그 반대급부가 무엇이었던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²⁸⁾ 일본 야요이 문화의 발전과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예비하는 전기는 청동기를 매개로 한 한·일 양국의 지배 집단 상호 간의 교역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이다.

28)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흥중, 2002, 《青銅器를 둘러싼 韓·日 交易》 《해양교류의 고고학》, 제26회 전국고고학대회 발표요지문, 36~44쪽.

2. 초기국가시대(고조선·부여·삼한)의 교역

1) 고조선과 부여의 교역

(1) 고조선 교역망의 확대

고조선의 국가 형성

우리 민족사는 청동기시대의 발전과 갈등 속에서 축적된 역동성을 바탕으로 철기시대(鐵器時代)로 계기적(繼起的) 진전상을 보이면서(도 5 참조) 마침내 기원전 4세기 말~3세기 초 이래 ‘고조선(古朝鮮)’이라는 국가(國家: state)의 성립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학계 일각에서는 이 시기 예맥문화권의 선진 지역인 요동 지방에서 초기국가/원생국가(初期國家/原生國家: pristine state)인 고조선이 형성된 것으로 본다.²⁹⁾ 그러나 우리 학계 일반은³⁰⁾ 대체로 고조선의 국가 형성 시점을

29) 金貞培, 2000, 〈앞의 글〉, 79쪽.

30) 盧泰敦, 1990, 〈앞의 글〉; 李清圭, 1993, 〈앞의 글〉.



〈도5〉 예맥문화권의 세형동검·다뉴세문경 등 유물(대전 과정동 유적지 출토)

기원전 2세기 초의 위만조선(衛滿朝鮮)의 성립에서 구하고 있다.

오늘날 학계는 고조선 국가 형성과 관련, 국가라는 고도의 정치적 복합체 형성 요인을 농경·전쟁·교역에서 찾고자 함이 일반적이다.³¹⁾

31) 이 문제에 관한 종합적 고찰은, 姜奉遠, 1998, 〈원거리 무역의 이론과 방법론: 복합사회 형성과정 연구와 관련하여〉 《韓國考古學報》39, 韓國考古學會.

위만조선은 역사상 그 실체가 최초로 분명히 드러나는 국가로서, 그 성립과 관련, 전쟁과 교역에 각각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전자의 경우, 위만조선 국가의 성립은 제한된 영역 안에서의 인구 증가, 그리고 그러한 인구압에 대처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도식 속에서 이 문제 해명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³²⁾ 후자의 경우, 위만조선이 한반도 북쪽의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 잡음으로써, 그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한 '중심지무역(中心地貿易: central place trade)'으로 막대한 흑자를 보고 이를 토대로 국가를 성립시키고 성장시켰다고 파악한다.³³⁾

기원전 3세기 이전 고조선 교역의 실상

먼저 기원전 3세기 이전 고조선 교역의 실상은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³⁴⁾

발조선(發朝鮮)이란 정가와자(鄭家窪子)유형 문화를 향유하는 심양(瀋陽)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예맥계 주민집단으로 추정된다. 춘추시대(春秋時代)인 기원전 7세기 이후 발조선은 문피(文皮), 곧 표범가죽을 매개로 산둥(山東) 지방의 제(齊)나라와 교역을 하였고, 같은 계통의 요동 지역의 주민들은 자(煮), 즉 구운 소금을 가지고 북경(北京) 일대의 연(燕)나라와 교역을 행하고 있었다.³⁵⁾ 따라서 발조선으로 인식됐던 요동의 예맥계 제 집단들은 제·연 등 중원 제 세력과 원거리 교역

32) 金貞培, 1977, 〈앞의 글〉, 35~45쪽.

33) 崔夢龍, 1983, 〈韓國古代國家形成에 對한 一考察: 衛滿朝鮮의 例〉 《金哲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62~77쪽; 崔夢龍, 1985, 〈古代國家成長과 貿易: 衛滿朝鮮의 例〉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65~75쪽.

34) 기원전 3세기 이전 고조선과 중원간의 교류와 교역의 실태에 관해서는, 이청규, 2003, 〈앞의 글〉, 107쪽.

35) 《管子》卷24, 輕重甲篇 第 80.

의 메커니즘(mechanism)을 무리 없이 가동·운용할 수준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사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아래에서 논하고 있는 비파형동검 등은 그러한 무역의 방증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곧 발해만을 건너 남쪽으로 산둥반도에서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예가 있는바, 산둥성 서하현(栖霞縣) 행가장(杏家庄) 무덤 2호묘에서 출토된 것이 그것이다.³⁶⁾ 이 무덤은 제나라에 편입된 내국(策國) 엘리트 세력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파형동검 등 청동무기의 경우는 그것이 무덤의 부장품으로 발견된다고 하면, 사무역(私貿易)에 의해 교류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지만, 일종의 의례용 위세품으로서 공무역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 하겠다.

기원전 3세기 고조선의 교역과 명도전

기원전 3세기가 되면 연(燕)의 동진으로 요동 지역까지 중국의 거점이 구축되면서, 종전의 고조선지역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역의 네트워크에 편입되었는데, 명도전(明刀錢) 관계 이른바 연화보-세죽리유형(蓮花堡-細竹里類型) 문화의 존재가 그것을 입증하여 준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청천강 이북선까지 남하하며, 대량 매납(埋納)된 화폐로 보아 경제적인 교역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³⁷⁾

명도전이 출토되는 곳으로는 집자리·무덤 그리고 매납 유적이 있는데, 특히 매납 유적에서는 그것이 수천 매씩 출토되기도 했다. 그러

36) 吳江原, 2001, 《春秋末 東夷系 萊族 木槨墓 출토 琵琶形銅劍》《韓國古代史研究》23, 한국고대사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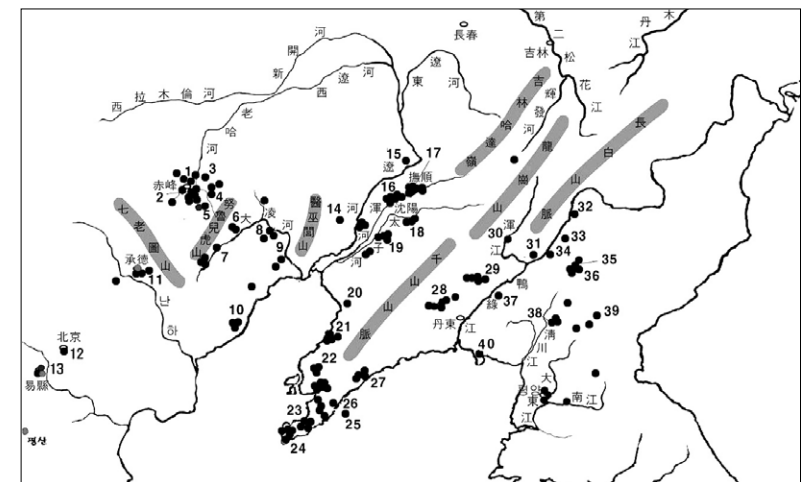
37) 명도전과 고조선 교역문제에 대해서는, 李清奎, 2003, 〈앞의 글〉, 108~110쪽; 박선미, 2000, 〈기원전 3~2세기 遼東지역의 古朝鮮문화와 明刀錢유적〉《先史와 古代》14, 韓國古代學會; 박선미, 2001, 〈遼河 以東의 明刀錢遺蹟과 燕의 관련성 문제 검토〉《典農史論》7.

한 명도전 매납 유적은 내륙으로 다소 들어간 산곡(山谷)에 주로 분포한다. 그 맥락으로 보아, 그것은 화폐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매납된 것으로 추정된다(〈지도2〉 참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대량의 퇴장(退藏)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 일종의 전란(戰亂)과 같은 정황 아래에서 은닉·보관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명도전이 연에서 주조(鑄造)한 화폐가 분명하다면, 연이 붕괴하거나, 그 화폐의 효용가치(效用價值)가 없어진 시점에 매납되었을 것이다.

연(燕)의 요동군이 설치되었을 당시 요하 유역에는 고조선의 잔류집단이 있었다. 이들은 연의 정치·군사적 영향 하에서 연의 철기·화폐를 수용했다. 또 이들은 중원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요동군의 재분배 기능을 매개로 한 간접무역에 의하여, 요동군치(遼東郡治)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직접무역을 통하여 입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지세력(在地勢力)이 중국의 발달된 철기·도기(陶器)를 입수한 사



〈지도2〉 명도전 등 화폐 유적 분포도

례가 본계(本溪) 상보촌(上堡村) 무덤 유적이다. 이 무덤은 재지계(在地系) 세형동검과 점토대토기와 함께 연의 철기와 회색도기(灰色陶器)가 부장된 석곽묘(石槨墓)이다. 이들은 그러한 철기·도기를 교역하는 수단으로써 연에서 주조하고 통용을 권장한 명도전을 활용한 것이다.

이 경우 명도전의 분포 범위가 동일한 교역권이며, 집중 분포되는 지점은 교통로의 거점지(據點地)로 이해되고, 이들 출토지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곧 교역의 네트워크로 추정될 수 있다. 그러한 화폐를 활용한 교역이 어렵게 된 것은 연의 붕괴 혹은 요동군의 기능이 무력화된 것과 관련이 있으리라 본다.

이른바 연화보-세족리유형의 문화는 연의 영향 아래에서 보급된 것으로, 연의 붕괴 이후 변화가 있었으리라 추정되지만, 진제국(秦帝國)시대, 그리고 진·한 교체기(秦漢交替期)에도 지속적으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진·한 교체기에 고조선 영역으로 들어오기 전, 상하장(上下障)에 머물렀던 위만 집단은 사적 무역 형태를 취하여 중국 물품을 수입하였을 것이다. 한편 요동 지역에 전국 만기의 조(趙)나라 명문(銘文)이 있는 청동기가 출토된 바 있는데, 동 명문의 청동기 또한 명도전 관련 교역로를 경유해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위만조선의 교역과 전쟁

기원전 2세기 이후 위만조선(衛滿朝鮮) 단계에 이르면 한·중 간의 교류 사실은 연하도(燕下都)의 귀족무덤에서 발견되는 세형동과(細形銅戈)와 평양(平壤)에서 발견되는 진과(秦戈)를 통해서 확인된다. 동과의 교류는 양 지역 간의 직접교류 혹은 직접무역이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또 그 교통로는 발해만을 끼고 육상 저지대 루트, 연안항로, 그리

고 묘도열도를 통한 해상항로 등 여러 루트가 있었을 것이다. 양 지역 간의 교류는 정치적·경제적인 측면에서 요하 유역에 진출한 요동군(遼東郡)과 같은 중국 거점세력의 직·간접 통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으며, 그것은 전 단계에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 시스템의 수용 결과이다.³⁸⁾ 따라서 하북성 연하도 신장두(辛庄頭) 30호 묘에 부장된 세형동과³⁹⁾는 원거리교역(遠距離交易: long distance trade)을 통한 교류의 산물이었음이 분명하다. 요하 유역에 현재까지 세형동과가 발견된 예가 없고, 요하 내륙의 중간을 경유한 고고학적 증거가 아직 없으므로, 직접교역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공해상을 통해서 곧바로 원거리 교역했다고 보기보다는 앞서 연의 시대에 확보된 교통로, 특히 연안항로를 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많다 하겠다. 연안항로는 서북해안을 거쳐 요남지구(遼南地區) 해안선을 따라 간 다음에 줄곧 발해만을 끼고 화북 지역까지 가는 루트가 주로 선택되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요남지구를 거쳐 징검다리 식으로 나 있는 묘도열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식도 있다.

앞서 진과 이외에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한군현(漢郡縣) 설치 이전의 전국계 혹은 한계 유물로서는 거마구(車馬具) 등의 위세품 등을 들 수 있다. 평양 토성동(土城洞) 486호 무덤의 전한경(前漢鏡) 또한 한군현 설치 이전의 것으로, 실제 이 무덤의 연대는 기원전 1세기대로 추정되지만, 수입(輸入)된 시점은 위만조선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⁴⁰⁾

위만조선은 주변 삼한(三韓) 지역과의 중심지무역의 거점으로서 기

38) 위만조선과 한 세력과의 교역에 관해서는, 李清圭, 2003, 〈앞의 글〉, 111~113쪽.

39) 村上恭通, 2002, 〈遼寧式銅劍・細形銅劍文化と燕〉《東夷世界の考古學》, 青木書店.

40) 高久健二, 2002, 〈樂浪郡と三韓〉《韓半島考古學論叢》.

능하였다. 삼한 지역과 위만조선의 교역·교류와 관련,⁴¹⁾ 한때 위만조선은 한의 외신(外臣)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주변 동이(東夷)를 관리하면서 무역의 이익을 취하도록 보장받고 있었던 것이다.

부여 합송리(合松里)·당진(唐津) 소소리(素素里)·장수(長水) 남양리(南陽里) 등지에서는 세형동검과 함께 목관묘(木棺墓) 유적에서 전국계 철기가 공반되는데, 이 형식의 철기는 요하 유역의 연(燕) 문화권에서 제작되고 성행한 것이다.⁴²⁾ 이 유물은 중국 문화권에 편입된 요동 지역으로부터 직·간접의 교류 혹은 교역의 결과로서 대동강 유역의 위만조선을 경유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 현재까지 전국계 철기는 금강 유역과 삽교천(插橋川) 지역 등의 마한(馬韓)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삼한 지역에서의 대중국 문화권과의 직접 혹은 간접적 교류의 주체는 세문경과 함께 부장되는 청동기 부장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당시 세문경의 출토지는 대동강 유역으로부터 그 이남에 걸쳐 분포하는데, 당시 지역집단의 수장이 통제하던 무역상의 주요 거점의 존재를 표시해 주고 있다. 이들 거점 간에 조성된 교류 네트워크 중 1차적인 교류거점은 현재까지는 금강·삽교천·영산강(榮山江) 유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 지역의 청동기와 함께 연철기가 동반되고 있다.

한편 기원전 2세기 말 왕검성 공위전(王儉城 攻圍戰)을 전후하여 한 제국(漢帝國)과 위만조선 사이에 벌어진 국제 갈등과 충돌은 교역과

전쟁의 상관관계 및 그 선차성(先次性)을 잘 보여주고 있다.⁴³⁾

기원전 2세기 말에 이르러 위만조선은 동북아시아 방면의 유력한 무장세력(armed power)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위만조선은 지리상 이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군사력만 뒷받침해 준다면 이들 무역로의 관리·통제가 가능하게 되어 상당한 중간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위만조선을 중간거점으로 한 교역방식이 고고학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이미 위만조선과 한강 이남의 삼한 지역, 특히 한반도 서남부와와 교류 네트워크는 양 지역의 수장묘(首長墓)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형식의 세형동검·세문경 관계 무덤 유적을 통해서 확인된다. 한편 위만조선의 국력 신장과 더불어 주변 예맥계 제 집단의 발전 또한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위만조선과 일방적인 상하관계를 감수하던 진번(眞番)·임둔(臨屯)을 비롯한 ‘기방소읍(其旁小邑) 들은⁴⁴⁾ 우거왕대에 이르러 그 기반(羈絆)을 벗어나 한과의 직접적 통교를 꾀하는 ‘진번방중국(眞番旁衆國)’⁴⁵⁾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만조선과 한 제국 사이에 증폭되던 이 방면에서의 교역망 통제를 둘러싼 갈등은 기원전 2세기 후반 우거왕(右渠王)대에 이르러 예(濊)나 변진(弁辰)의 조공로(朝貢路)나 교역로를 차단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위만조선은 흉노(匈奴)와의 제휴를 모색하면서,⁴⁶⁾ 주위 예맥계 제 집단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킴을 통하여 독자적 세력권(勢力圈) 정립 가능성을 모색하던 중,⁴⁷⁾ 마침내 자기를 ‘흉노(匈奴)의 왼쪽

43) 朴京哲, 1998, 〈‘高句麗社會’의 發展과 政治의 統合 努力: 國家形成期 高句麗史 理解를 위한 前提〉《韓國古代史研究》14, 한국고대사학회, 286~288쪽.

44) 《史記》卷115, 朝鮮列傳 55.

45) 金貞培, 1983, 〈辰國의 政治發展段階〉《領土問題研究》1,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6, 〈앞의 책〉, 272~275쪽.

46) 東伐朝鮮 起玄菟樂浪 以斷匈奴之左臂(《漢書》卷73, 列傳43, 韋賢傳).

47) 金貞培, 1977, 〈앞의 글〉, 35~45쪽.

41) 李清圭, 2003, 〈앞의 글〉, 115~116쪽.

42) 李南珪, 2002, 〈韓半島 初期鐵器文化의 流入 樣相: 樂浪 設治 以前을 중심으로〉《韓國上古史學報》36, 韓國上古學會.

어깨'로 인식하던 한 제국과의 전면적 군사대결을 벌이면서 붕괴되어 갔던 것이다.

결국 위만조선과 한의 전쟁은 이러한 교역로 통제권에 바탕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위만조선의 과욕과 주변 예맥계 제 집단의 성장 그리고 한 제국의 이 방면에서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발발(勃發)하였던 것이다.⁴⁸⁾

특히 한 제국은 위만조선의 존재를 흉노 제압이라는 당시 자국의 제일의적 세계정책(世界政策)에 있어 큰 걸림돌로 인식, 위만조선의 이 지역에서의 패권 장악과 숙적 흉노와의 연계 가능성을 좌시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당시 교역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앞선 자국의 전략적(戰略的) 구도의 관철과 관련된 국제정치적 상황 인식이 위만조선 공멸(攻滅)을 위한 군사행동(軍事行動)과 직결되는 선차성을 가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고조선을 선두로 한 부여·삼한 등 예맥계 제 집단의 정치적 성장은 교역권(交易圈)의 확대와 동아시아 교역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 시기 이래 고조선을 중심으로 한 예맥계 제 집단은 여러 부문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며 동아시아의 국제적 재분배시스템으로 관념되는 '조공-책봉체제(朝貢-冊封體制)'를 빌미로 압박해 오는 한 세력의 패권주의(霸權主義)에 대한 길항(拮抗) 작용을 벌이면서, 꾸준히 자기 발전의 길을 추구하고자 하였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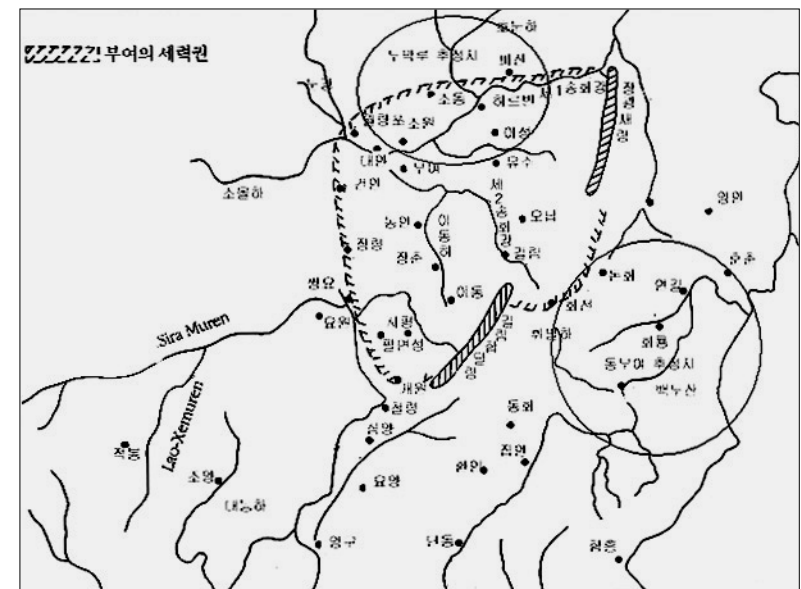
48) 崔夢龍, 1983, 〈앞의 글〉, 68-69쪽.

(2) 부여의 대외교역

부여는 '예족(濊族)'을 주체로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기원전 3세기 이후에서 기원전 2세기 말 사이에 '국가(state)'를 형성, 서기 494년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걸친 국망(國亡) 직전의 상황을 감내하면서도 의연히 그 국명(國命)을 보전해 왔다(〈지도3〉 참조).

부여의 자기 존립을 위한 재생산구조(再生産構造)의 기반은 농업(農業)을 기축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농업기술은 국가형성기의 '수풀경작' 단계에서 국가형성 이후 '단기휴경(短期休耕)' 단계로 진입하는 수준이었고, 그 농업 경영양식 또한 매우 시원적(始原的)·제한적인 소경영양식(小經營樣式)을 기조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농업·목축업(牧畜業)·수공업(手工業) 등을 바탕으로 한 부



〈지도3〉 3세기경 부여국의 세력권(강역) 추정도

여의 경제적 기반 자체는 지극히 자기충족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또 그 수탈기제(收奪機制) 및 그 운영의 실상 또한 대단히 원심성(遠心性)이 강한 자기소모적·분산적 특성을 가졌던 것이다.⁴⁹⁾

이러한 부여의 교역은 대외관계 속에서 그것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맺으며 진전되었다. 부여는 국초 이래 늦어도 서기 3세기 전반까지 장광재령(長廣才嶺) 이동의 목단강(牧丹江) 중·하류 유역을 주지(住地)로 하는 읍루족(挾婁族)에 대한 지배권(支配權)을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부여는 이들에게 공납제(貢納制)에 의한 인적·물적 수탈을 광범위하게 행하고 있었다.⁵⁰⁾

그러나 이러한 부여의 읍루에 대한 지배 및 수탈기제는 그다지 확고한 것도 아니었고, 또 실효적으로 기능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다. 결국 이들에 대한 중국적 지배권은 보다 강고한 군사역량을 구사하는 고구려의 손아귀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부여는 이러한 와중에서 서기 1세기 이래 고구려의 군사적인 주도권 하에서 수세적인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당시 철(鐵)과 더불어 전략물자로서 중시된 것은 말(馬)이었다. 부여는 스텝로드(steppe road)를 따라 ‘신마(神馬)’라 상찬 받던 ‘명마(名馬)’ 곧 북아시아의 스텝마를 받아들여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사육·관리하고, 자기 군사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자원화하는 데 부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부여의 건국 주도집단인 ‘동명

집단(東明集團)’이 일정한 기마(騎馬) 전투역량을 갖춘 세력이었던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한편 부여와 고구려 사이의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던 서기 1세기 초반에조차 부여인들 가운데 일부가 국가의 금령(禁令)을 어기면서까지 고구려에게 이 말을 방매(放賣)한 사실은⁵¹⁾ 당시 국가 간에 행해지던 말 밀매(密買)의 실상과 더불어 부여의 원심성을 엿보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근 고고학계는 기원전 2세기~서기 3세기 후반 송화강 유역 일대에 부여뿐만 아니라 선비(鮮卑) 유적이 혼재(混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⁵²⁾ 이 점과 관련, 부여의 세력권에 속했음에도 유목문화계의 유물이 공반되는 서풍(西豐) 서차구(西岔溝) 유적이나, 유수현(榆樹縣) 노하심(老河深) 유적 등의 존재가 주목된다. 이 유적지들은 부여가 선비와 지속적인 화전(和戰) 양면 관계 속에서 그들과 일정한 물적·인적 교류를 해왔음을 말해주고 있다.⁵³⁾ 이 경우 양자 사이 교역의 매개물이 말이었음은 당연히 추론할 수 있다.

이후 부여는 고구려·선비의 집요한 군사적 위협 앞에 시종일관 노출되었고, 그 결과 국가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대한유착노선(對漢癒着路線)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부여가 그 왕 사망시 현토군(玄菟郡)으로부터 받아 온 옥갑(玉匣)으로 장례를 치른 사실은 현토군의 존재가 부여의 주요 국가의례(儀禮)까지 통제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단계에 이르러 부여와 한 세력 간의 교역은 조공관계를 빙

49) 부여에 관해서는, 朴京哲, 1992, 〈扶餘史展開에 關한 再認識試論〉《白山學報》40, 白山學會; 朴京哲, 1994, 〈부여사의 전개와 지배구조〉《한국사2: 원시사회에서 고대사회로-2》, 한길사; 朴京哲, 1996, 〈扶餘國家의 支配構造 考察을 위한 一試論〉《韓國古代史研究》9, 韓國古代史研究會; 宋鎬最, 1997, 〈부여〉《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50) 《三國志》卷30, 魏書30, 列傳30 東夷 挾婁傳.

51)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3 年 및 5 年條.

52) 박양진, 1998, 〈族屬 추정과 夫餘 및 鮮卑 고고학 자료의 비교 분석〉《韓國考古學報》39, 韓國考古學會.

53) 오영찬, 1999, 〈榆樹 老河深 유적을 통해 본 부여 사회〉《한반도와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 대학교출판부.

자한 일방적인 부등가교환 형태의 수탈로 전화되어 갔음을 짐작케 한다. 이 경우 한인(漢人)들이 부여에서 조공과 교역이라는 미명하에 획득하고자 한 것은 명마·적옥(赤玉)·초피(貂皮)·미주(美珠) 등이었을 것이다.

2) 국가형성기 고구려와 옥저·동예

(1) 국가형성기 고구려에 있어서의 전쟁과 교역

고구려 사회와⁵⁴⁾ 교역

기원전 1000년기(年紀) 후반 이후 압록강 중류 유역 일대 적석총의 집중적 축조라는 돌출현상은 이 지역 맥계 제 집단의 응집력이 현저하게 제고됨으로써 그들이 고구려 국가형성 전사(前史)에 있어 하나의 주체로서 그 존재를 뚜렷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음을 뜻한다(〈도6〉 참조).

기원전 2세기 초 이래 고구려 사회는 위만조선의 국세팽창 기도에서 비롯된 이 방면에서의 새로운 정세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곧 자강도(慈江道) 시중군(時中郡) 노남리(魯南里) 간평(間坪) 유적의 주거지(住居址)의 구조와 토기가 청천강(淸川江) 유역 세죽리(細竹里) 유적의 그것들과 같다는 점⁵⁵⁾과 명도전 유적의 분포는 청동기시대에서

54) 우리 학계 일각에서는 고구려가 '국가(國家: state)'로서 흥기하기 이전 곧 기원전 3세기~기원전 1세기 후반 압록강 중류 유역과 그 지류인 혼강(渾江)·독로강(禿魯江) 유역 일대에서 적석총을 축조하던 맥계 제 세력집단 그 자체 혹은 그들의 존재양태를 '고구려 사회(高句麗社會)'라 지칭한 바 있다(朴京哲, 1996, 《高句麗의 國家形成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43~103쪽).

55) 《압록강·독로강유역 고구려유적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제13집》, 198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67~68쪽.



〈도6〉 집안의 산성하 고분군의 적석총 때

철기시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청천강→독로강→압록강 중류 유역의 하천선을 따라 양 지역 간의 혹종의 문화적·경제적 연결망이 구축되었음을 엿보게 해준다. 따라서 위만조선이 자기 국가 성장의 밑바탕으로써 조성·축적했던 군사역량을 중심으로 한 선진적 측면은 이미 고도의 군사화(軍事化) 경향이 확산되고 있던⁵⁶⁾ 고구려 사회의 성장에 상당한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기원전 2세기 말 위만조선을 공멸한 한, 즉 전한(前漢)은 다른 군현의 건치 1년 뒤인 기원전 107년에야 비로소 압록강 중류 유역의 지정학적(地政學的)·전략적 우위성을 자기 측에 확보하고, 고구려 사회 곧 '구려만이(句麗蠻夷)'의⁵⁷⁾ 성장과 정치적 통합노력을 제어하고자 하는 정책적 구도 하에 현도군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56) 朴京哲, 1997, 《앞의 글》, 12~30쪽.

57) 玄菟·樂浪 武帝時置 皆朝鮮穢貉·句麗蠻夷(《漢書》卷28, 地理志 8下2).

《삼국지》동이전(東夷傳) 고구려조(高句麗條)의 ‘책구루(幘溝婁)’ 관련 기사⁵⁸⁾ 기원전 75년 제1차 현토군 축출 이후 한의 이 지역에서 의 실질적 영향력이 급격히 위축되어 가고 있던 시기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당시 현토군의 수현(首縣)인 고구려현의 현령(縣令)은 고구려 사회의 각급 수장들을 개별적으로 파악, 그들로 하여금 자기 현이 관장하는 ‘조공무역’에 참여케 함으로써, 교역을 매개로 고구려 사회를 구성하는 제 집단의 분할지배를 피하였던 것이다. 즉 현토군은 고구려 사회의 각급 집단 수장들이 한군현에 귀복하는 대가로 이들의 자기 집단 내에서의 또는 타 집단에 대한 한 제국(帝國)의 권위를 빌미로 ‘위의(威儀)’를 과시할 수 있는 ‘고(鼓)·취(吹)·조복의책(朝服衣幘)’과 같은 권위재는 물론 악공(樂工) 같은 ‘기인(技人)’까지 공급하였다. 한은 이를 통하여 이 지역에 대한 한 문화의 침투·확산을 도모하였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권위의 최상위 창출자로서의 독점적 위상을 점하고자 하였던 것이다.⁵⁹⁾ 현토군은 이런 조건하에서 교역 장소·시기·품목·교환율 등의 결정권을 자기 측에 유보한 채⁶⁰⁾ 개별 집단별로 차등적인 교역조건을 강요함으로써 고구려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아래서 현토군과 고구려 사회와의 관계는 교역을 지렛대로 하여 한 세력의 주도 하에서 설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한반도 서북부와 요녕 지방에 설치된 현토군을 비롯한 한군현들은 고구려 사회가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주변 지역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58) 《三國志》卷30, 魏書30 列傳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條.

59) Peter S. Wells, 1980, op.cit., pp.5~8.

60) Peter S. Wells, 1980, op.cit., pp.7~8.



〈도7〉 환인의 혼강에서 바라 본 오녀산성(홀승골성)



〈도8〉 집안의 국내성 서벽

증증하는 인구와 한정된 가경지(可耕地)의 압력에 부담을 갖고 있던 고구려 사회는 이 지역으로 진출해 오는 한 세력을 자기 발전의 명에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⁶¹⁾ 따라서 이러한 외압을 극복하고 고구려 사회 내에 접충(接踵)하는 제 갈등과 분열의 효율적 수렴·실효적 통합을 담보·추진하기 위한 보다 고양된 정치적 존재양식의 창출, 곧 국가형성을 지향하는 움직임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⁶²⁾

국가형성기 고구려의 교역과 전쟁

고대국가는 일반적으로 정착 농경을 자기 재생산구조의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낮은 생산성은 국가권력의 집중도를 제고하는 데 있어 하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렇게 취약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고대국가 팽창의 전형적 경로는 언제나 적극적 군사행동(military action)을 수반한 ‘옆으로의(lateral) 길’, 곧 지리적 정복(geographical conquest)이었다.⁶³⁾

고대국가 고구려의 군사적 팽창정책은 피정복지의 확대와 피지배주민을 증대시키는 과실을 획득하고, 공납을 매개로 한 인적·물적 자원 추출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권력 기반의 공고화와 그 집중의 가능성을 담보해 주는 역할을 다하였다.⁶⁴⁾ 또 그렇게 조성·축적된 국가권력의 인적·물적 자원은 역으로 국가의 군사잠재력으로 전화되어 새로운 군사적 팽창을 기약해 주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61) Song Nai Rhee, 1992, 〈Secondary State Formation: The Case of Koguryo State〉 《Pacific Northeast Asia in Prehistory: Hunter—Fisher—Gatherers, Farmers and Sociopolitical Elites》, Iman: Washington StateUniversity, p.194.

62) 朴京哲, 1998, 〈앞의 글〉, 297~319쪽.

63) P.Anderson, 1990, 《Passages from Antiquity to Feudalism》, 유재건·한정숙 共譯, 《고대에서 봉건제로의 이행》, 창작과 비평사, 26~27쪽

64) Perry Anderson, 1990, 〈앞의 책〉, 64쪽.

그러므로 고구려의 지배집단은 전쟁을 자신들의 주체적인 생존조건으로 인식하고, 고구려 사회의 군사적 편제화와 더불어 그 군사역량을 제고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이렇게 ‘군사국가·병영국가(garrison state)’화한 고구려는 주변 제 세력에 대한 군사적 팽창정책을 관철시켜나가는 한편,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내부적인 통합의 계기로 삼아 국가권력의 집중을 꾀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고구려사 전개의 향방은 그 사회의 내재적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군사행동의 총화인 전쟁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형성기 고구려의 경제정책은 말·철 같은 전략물자와 식량 등 물적 자원과 군사적 부庸집단(附庸集團) 같은 인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군사잠재력 기반의 조성·축적에 최우선 순위가 두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국초 이래 강행된 전방위적 군사팽창 정책의 전략적 동선(動線) 역시 이 점과 무관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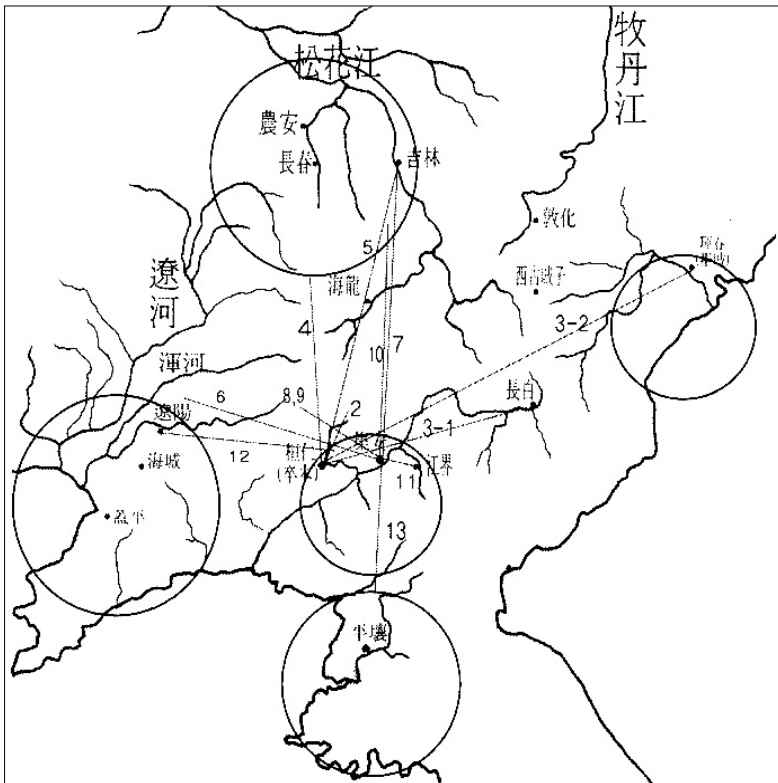
국가형성기 고구려는 그 대외교역품을 피정복지에서의 공납(貢納)을 수탈기제로 한 자원 약탈을 통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즉 고구려는 북옥저(北沃沮) 지방 등을 군사적으로 제압한 후 그 지역의 특산물을 수탈,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한인(漢人)들에게 전매(轉賣)함으로써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당시 선비(鮮卑) 등 유목세력들은 한(漢) 세력의 금수(禁輸) 조치로 말미암아 철기 획득에 부심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북옥저의 철을 당시 이들의 말과 교환하는 마철교역(馬鐵交易)을 행함으로써 자기 기병(騎兵) 전력의 확충을 꾀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⁶⁵⁾

그러나 이 당시 고구려에게 가장 확실한 이윤이 보장되는 교역 형태

65) 朴京哲, 1996, 〈앞의 글〉, 226쪽.

당시 신이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에 입각, 물질적 급부를 대가로
오환(烏丸)·선비를 자기 대외정책의 용병(傭兵)으로 구사한 예가 적
지 않았다.⁶⁷⁾



66)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明王 31年條. 朴京哲, 1996, 〈앞의 글〉, 166~167쪽.

(67) 《三國志》卷30, 魏書30 列傳30 烏丸·鮮卑·東夷傳 烏丸 ㄹ 鮮卑條.

따라서 고구려에 있어서 전쟁은 농경과 교역에 갈음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부문의 수요·공급을 창출함으로써 전 사회에 있어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옥저사회의 발전과 교역

옥저(沃沮)는 고조선·부여·고구려·동예와는 청동기시대 이래 ‘예맥문화권’으로 지칭되는 동질적 기저문화를 나뉘어 가진 ‘예맥족’의 한 분지 집단으로 파악된다. 또 그것은 각기 그 지역적 분포상에 따라 두만강 유역 및 연변(延邊) 지방 그리고 연해주(沿海州) 남부 지역 일대의 ‘북옥저(北沃沮)’와, 함경남도(咸鏡南道) 및 함경북도 남부 일대를 ‘동옥저(東沃沮)=남옥저’로 분별·파악될 수 있다.⁽⁶⁸⁾

한편 동옥저는 그 지정학적 제 조건이 다방면으로 작용하는 외압(外壓)의 존재와 상승작용(相乘作用)을 일으키면서 정치적 통합을 위한 상호 간의 연결 노력을 가로막아, 제 읍락(諸邑落)을 중심으로 하는 점재(點在)·고립적인 ‘국가(state)’ 성립 단계 이전의 정치적 조직체(polity)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곧 당시의 옥저의 정치적 존재양식은 ‘군장사회(君長社會: chiefdom)’ 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발전의 지체가 그대로 옥저사회 그 자체 경제역량의 낙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만이 아님은 물론이다.

당시 옥저인들은 전작(田作) 중심의 농업을 자기 생존을 위한 재생산기반으로 삼았고, 나아가 소정의 직조업을 통한 맥포(貂布)생산에 종사했었다. 또 이들은 어로(漁撈)와 제염업(製鹽業)을 중심으로 한 수산업 분야에도 상당한 진전상을 보이고 있었다. 더구나 북옥저 지역은 동북 만주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농업조건이 양호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철(鐵) 자원의 확보가 용이한 지역이었음이 주목된다.

그러나 정치적 구심체로서의 ‘국가’를 형성한 바 없는 옥저인들은 조직적 군사역량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옥저사회는 한(漢) 세력이나 고구려의 ‘교역’을 빙자한 부등가교환이나 공납(貢納) 등을 빌미로 한 경제적 수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옥저는 일찍부터 위만조선(衛滿朝鮮)·한 세력의 영향권 하에 편입된 바 있었다. 특히 현존하는 중국측 사료가 적시하고 있는 한군현의 이 지역에 대한 분리지배 정책과 경제적 수탈의 결과 옥저사회에서의 국가형성 노력이 좌절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한 고구려의 진출상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고구려는 동옥저 지방의 제 읍락 거수(渠帥: 우두머리)들, 곧 ‘대인(大人)’들을 ‘사자(使者)’로 삼아 이들을 중간 매개기구로 한 공납적 수탈기제를 운영하였다. 또 고구려는 자국의 핵심 지배계층인 ‘대가(大加)’들로 하여금 이 과정을 통제토록 함으로써 자기 국가권력의 경제적 기반 확대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고구려는 그 지배계층이 자기 국내의 ‘하호(下戶)’를 혹사함과 유사한 방식으로 고구려 국가 자체가 이 동옥저 주민들에 대해 물적·인적 수탈을 행하고, 또 이들을 ‘노복(奴僕)’처럼 인식·처우하고 있었던 것이다.⁶⁹⁾

동예사회의 성장과 교역

동예(東濊)의 입지는 강원도(江原道) 북부 지방 및 한반도 북부의 중앙 고원지대로 비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 동예 역시 고조선·부여·고구려·옥저와는 그 기저문화를 같이 하는 예맥계 집단이었다.⁷⁰⁾

동예는 옥저와 마찬가지로 개개 읍락을 정치적·경제적 기저단위로 하는 여러 정치조직체들이 병존하는 ‘군장사회’ 단계의 사회였던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동예는 고조선·한(漢) 세력의 침투기도 및 그들의 분리지배 정책 하에서 ‘국가(state)’ 형성이라는 정치적 결집 노력이 좌절되었고, 마침내 서기 56년 동옥저를 습복시키고 이 방면으로 진출해 오는 고구려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고구려의 동예에 대한 지배는 비록 서기 246년 위(魏)군의 고구려 공격에 호

68) 이 옥저와 관련된 기본 사료는 《三國志》卷30 魏書 30 列傳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條이다. 이 문제에 관한 종합적 고찰은, 박경철, 1994, 〈보론: 옥저·동예·읍루〉《한국사2: 원시사회에서 고대사회로-2》, 한길사, 139~144쪽; 李賢惠, 1997, 〈옥저와 동예〉《한국사4: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국사편찬위원회, 246~258쪽.

69) 《三國志》卷30, 魏書 30, 列傳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條.

70) 동예에 관한 사료는 《三國志》卷30, 魏書30 列傳30 烏丸·鮮卑·東夷傳 濊條가 있다. 우리 학계의 이 문제에 관한 종합적 고찰은, 박경철, 1994, 〈앞의 글〉, 144~147쪽; 李賢惠, 1997, 〈앞의 글〉, 235~245쪽.

응한 한군현 세력의 출병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이 없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꾸준히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동예인들이 시간 측정과 역(曆)에 관한 지식을 전제로 한 별자리를 관찰하여 농사에 있어 풍흉을 예언하였다는 점과 누에를 쳐서 명주실을 뽑아내고 마포를 짚다는 점 등은 당시 이들의 농경기술 수준과 직조기술이 상당 수준 진전되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아울러 ‘무천(舞天)’이라는 제천행사의 존재 또한 당시 동예사회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동예인들이 수공업과 수산업 및 수렵에도 일정한 관심을 할애하고 있었음은 그 특산물로서 거론되는 ‘낙랑단궁(樂浪檀弓)’과 ‘반어피(班魚皮)’와 ‘문표(文豹)’ 및 ‘과하마(果下馬)’ 그리고 마포(麻布)·견(絹)의 존재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동해안 지역의 경우 기원전 2세기 이전에 중국과 간접 혹은 직접교류의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위만조선 단계에 대동강 유역과의 교류망이 확립되었던 것은 양양(壤陽) 등지에서 출토된 세문경 등의 청동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그러한 교통로의 거점이 낙랑군이 설치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되었을 것이지만, 아직 중국 동경과 같은 위세품을 부장한 무덤 유적이 조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낙랑도기(樂浪陶器)는 강릉(江陵) 등지의 집자리 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이 지역에는 한군현 지역과의 무역이 행해지고 있었고, 이러한 동해안 루트가 영남의 진·변한(辰弁韓)과 왜(倭)와의 교류거점지로서도 활용됐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⁷¹⁾

71) 이청규, 2003, 〈앞의 글〉, 118쪽.

3) 삼한사회의 성장과 대외교역

(1) 삼한사회의 성장

《삼국지(三國志)》의 한조(韓條)는⁷²⁾ 기원전 3세기에서 서기 3세기 사이의 한반도 남부 지방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그곳에는 ‘삼한 78 국(國)’이라 일컬어지던 제 정치세력이 할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 78개나 존재하던 삼한의 ‘국(國)’ 가운데 상당수의 실체는 그 말의 참된 의미에 있어 국가(state)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정치발전 단계 수준은 국가가 형성되기 바로 전 단계 수준의 정치조직체(polity)인 군장사회(chiefdom)에 해당하는 것이라⁷³⁾ 볼 수 있다.

또 혹자(或者)는 이러한 삼한의 ‘국’의 실상을 중심이 되는 ‘국읍(國邑)’과 ‘여러 읍락(邑落)’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완결된 단위정치체’로 파악하기도 하는 데,⁷⁴⁾ 세간에서는 이를 흔히 성읍국가(城邑國家) 혹은 ‘소국(小國)’이라 지칭하기도 한다.⁷⁵⁾ 이러한 삼한 78개 국 가운데 진한(辰韓)의 사로국(斯盧國)이 신라(新羅)로, 마한(馬韓)의 백제국(伯濟國)이 백제(百濟)로, 변한(弁韓)의 구야국(狗邪國) 등이 가야제국(加耶諸國)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삼한은 한반도 남부의 고대국

72) 《三國志》卷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條.

73) 金貞培, 1986, 〈앞의 책〉.

74) 權五榮, 1995, 〈앞의 글〉.

75) 朴京哲, 2001, 〈漢城期百濟 龍仁地方의 存在樣態〉《白山學報》61, 白山學會, 70쪽.

76) 삼한에 관한 사료는 《三國志》卷30, 魏書30 列傳30 烏丸·鮮卑·東夷傳 韓條가 있다. 우리 학계의 이 문제에 관한 종합적 고찰은, 趙法鍾, 1994, 〈삼한사회의 형성과 발전〉《한국사2: 원시사회에서 고대사회로2》, 한길사, 151~216쪽; 李賢惠, 1997, 〈앞의 글〉, 261~307쪽.

가 형성의 모체가 되었던 것이다.⁷⁶⁾

그런데 이렇게 한반도 남부 주민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하였던 군장 사회에서 국가로의 정치조직체 수준의 계기적 진전은 그 원인을 농경·전쟁·교역에서 찾고자 함이 일반적이다. 곧 한반도 남부 지방은 기원전 6~4세기경 송국리유형 문화를 중심으로 수전농경(水田農耕)이 확산된다. 이때부터 가경지와 용수(用水) 확보 문제를 둘러싼 각 집단 사이의 갈등이 빈발하게 된다. 청동기시대 후기 내지 철기시대에 접어들면서 산상입지(山上立地)의 취락(聚落) 즉 고지성(高地性) 취락이 현저하게 늘어남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사실이다.⁷⁷⁾

이런 농경의 확산과 빈발하는 제 집단 간 조직화된 무장충돌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 집단의 이합집산(離合集散)과 정치세력화가 진전된 결과, 삼한 78 ‘국(國)’이라는 제 군장사회가 성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 군장사회의 누적적 통합·정복 과정에서 방출된 역동성(dynamics)이 국가형성의 에너지가 된다.⁷⁸⁾ 어떤 집단의 정치적 존재양식은 고도의 복합적 정치적 조직체인 ‘국가(state)’ 수준까지 고양됨을 계기로 하여 그 삶이 질양 면에 있어 종래와는 차원을 달리하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⁷⁹⁾ 그런데 당시 한반도 남부 지방의 삼한사회 제 군장사회(국)의 국가로의 발전에 자극제이자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기원전 2세기 말 한반도 서북부 지방에 한 제국이 설치한 낙랑(樂浪)이라는 군현(郡縣)의 존재였다.

(2) 삼한 교역망의 형성과 발전

삼한의 한군현과의 교역

삼한사회는 조공(朝貢) 형식으로 교역 허가를 얻고, 군현 내 시장(市場)이나 호시(互市)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교역하고 또 문화를 습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식 철제무기가 드문 것은 그 유통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금수물목(禁輸物目)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 당시 이루어진 교역의 정치적 성격의 한 면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삼한과 낙랑의 교역은 조공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그 실상은 종래 위만조선과 그 배후지(背後地) 사이에 행해진 교역 형태를 답습(踏襲)한 것이었다.⁸⁰⁾

당시 삼한의 제국(諸國) 곧 제 군장사회의 수장인 군장들은 자기 집단 내 제 경제활동의 중심적인 조정자로서 모든 재화·용역(用役)의 조성·축적·재분배를 관장하고 있었다.⁸¹⁾ 그런데 삼한사회 제 군장의 경제잉여 추출은 당시의 낮은 농업생산성 때문에 실효적 무장충돌의 수행과 외부세력과의 교역에 있어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에서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당시 교역은 군사행동에 수반되는 기회비용(機會費用)을 감안할 때 가장 용이한 부(富)의 조성·축적 방법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종래 삼한사회의 제 군장은 외부세력과의 교역 기회를 독점, 그 교역조건을 임의로 규정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잉여 획득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⁸²⁾

특히 그는 이러한 교역품을 자기 하위단위 집단들에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제 하위단위

77) 權五榮, 1997, 〈한국 고대의 취락과 주거〉《韓國古代史研究》12, 한국고대사학회, 55~56쪽.

78) 朴京哲, 2003, 〈앞의 글〉, 48~49쪽.

79) Timothy Earle, 1994, 〈앞의 글〉.

80) 尹龍九, 1999, 〈三韓의 朝貢貿易에 대한 一考察: 漢代 樂浪郡의 交역형태와 관련하여〉《歷史學報》162, 歷史學會, 18~19쪽.

81) Peter S. Wells, 1980, *ibid.*, p.7.

82) Peter S. Wells, 1980, *op.cit.*, pp.7~8.

집단의 수장들 역시 이러한 교역품을 자기 아래의 여러 하부 구성단위 집단이나 세대(世帶)들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군장들이 외부세력과의 교역에서 획득한 권위재나 사치재도 이러한 재분배 기제를 통하여 자기 휘하 하위단위 집단의 제 수장이나 제 하부구성 단위집단의 실력자들에게 이전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 군장사회의 군장은 이 점에 힘입어 본래부터 갖고 있던 물리적 폭력이라는 현실적 권력과 경제력에 더하여 사회적 권위의 최종적 담보자(擔保者)로서의 역할까지 수행케 됨으로써 자기 집단 내의 기존 계서적 구조·질서를 안정적·실효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군현은 임의로 설정한 교역조건하에서 기존 제 군장사회의 계서적 구조·질서를 의도적으로 간과(看過)하면서 군장사회 급 집단뿐 아니라 그 하위단위 집단 심지어는 제 하부구성 단위집단의 실력자들과 개별적으로 또 차별적으로 교역을 행하였을 개연성(蓋然性)이 크다.⁸³⁾ 그 결과 제 군장사회 군장들은 이제껏 누리왔던 교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군현의 이러한 교역을 매개로 한 분할지배 정책은 무엇보다도 나름대로 유지되어 왔던 제 군장사회를 축으로 유지·운영되던 삼한사회의 계서적 구조·질서의 동요를 유발하는 교란요인화(攪亂要因化), 각급 집단 간의 갈등·분열을 증폭·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군현의 교역을 빌미로 한 분할 지배정책은 삼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또 실효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한군현의 정책이

실제로 삼한사회 제 집단 내부의 기존 위계질서를 교란시키고 이들 간의 정치적 통합노력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⁸⁴⁾

그러나 삼한사회의 일부 군장사회는 이러한 외압(外壓)을 극복하고, 한군현과의 교역을 통해서 획득한 선진적 정치 경험과 문화 능력에 바탕하여 국가형성으로의 자기 발전을 향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삼한에 들어 온 선진문물의 실체가 한문화(漢文化) 그 자체가 아니라, 낙랑 지역에서 재래의 세형동검문화(細形銅劍文化)에 의하여 지역화한 이른바 ‘낙랑문화’ 혹은 ‘낙랑산 물품’이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는 아닐 것이다. 곧 이 경우 낙랑 지역이 삼한사회의 생활양식에 적응할 문화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조공’은 이를 획득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던 것이다.⁸⁵⁾

그러면 당시 삼한사회와 한군현 사이에 행해진 교역의 실상을 고고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⁸⁶⁾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중국 문물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은 기원전 1세기 한군현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그 교류의 대부분은 중국 지역과의 직접교류보다는 한군현과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그 거래 품목은 중국 지역에서 생산된 물자와 한군현 지역 현지에서 생산된 물품 등이었다. 또 중국 내군상인(來郡商人)과 낙랑의 재지상인(在地商人), 그리고 삼한의 재지상인의 활동이 활발하였음은 남해안과 제주도(濟州道)에서 발견되는 한(漢)대 화폐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84) 朴京哲, 1998, 〈앞의 글〉, 302 및 303-304쪽.

85) 尹龍九, 1999, 〈앞의 글〉, 19쪽.

86) 삼한사회와 한군현 간의 교역에 관한 기본적 고찰은, 李清圭, 2003, 〈앞의 글〉, 116-122쪽.

83)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三國志》卷30, 魏書30 列傳30 烏丸·鮮卑·東夷傳 韓傳).

교역루트는 크게 연안항로와 육상루트가 확립되었을 것인바, 전자는 철 등의 물품을 대상으로 한 교역루트, 후자는 위세품 등의 물품을 통한 조공무역 루트로서 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기원전 1세기대 한군현 시기에 와서도 한반도 서남 및 중부의 마한 지역은 아직 그 교역의 증거가 영남 지역만큼 풍부하지 못하다. 이는 기원 전후한 시기에 삼한 지역에서 한군현과 가장 근접한 마한 지역과의 교류가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원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기원 전후한 시기의 중국계 유물로는 해안과 도서(島嶼) 지역에서 발견되는 한대 화폐(貨幣) 유적이다. 해남(海南) 군곡리(郡谷里)에서는 1~2점이 발견되었지만, 거문도(巨文島) 유적에서는 수백 매가 묶음으로 매납된 채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화폐 유적으로 전남의 남부 해안이 서기 1세기 단계에 중요한 무역루트였음을 알 수 있다.⁸⁷⁾ 그런데 서해안 지역이 현재 이 교역망에 포섭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고학적 증거가 없는바, 이 점은 동 지역이 경유지일 뿐 교역에 적극 참여하거나 그것에 대한 통제를 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기원 전후한 시기의 한대 화폐 유물이 서해안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서기 2~3세기경의 후한(後漢)대에 들어서서는 천안(天安) 청당동(淸堂洞) 등지의 무덤 유적에 곡봉형청동대구(曲棒形靑銅帶鉤)와 금박 유리제 옥 등의 중국제품이 확인된다.⁸⁸⁾ 이들이 일종의 위세품이어서 공무역 혹은 조공무역을 통해서 입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못하지만, 사무역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그것이 최상급의 곡봉형대구가 아닌 것을 보아 최고 엘리트 간의 무역이 이루어진 것은 아

니었을 것이다.

이처럼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2세기까지는 아직 대중국 교류의 고고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나, 그 전후의 문헌사적 상황을 볼 때, 꾸준한 교류가 지속되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그러다가 3세기에서 4세기 이후에는 중국과의 직접무역의 증거가 많이 확보된다.

풍납토성(風納土城)에서 발견되는 전문토기(錢文陶器)·금동과대(金銅鈐帶), 그리고 원주(原州) 법천리(法泉里)의 양형청자(羊形靑瓷)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바야흐로 한강(漢江) 유역과 삼고천 유역의 한반도 중부와 남부 서해안 지역이 중국과의 직접무역의 거점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당시 '주호(州胡)'라 지칭되던 제주도(濟州島) 지역은 제주시 산지향(山地港)에서 신(新) 왕망(王莽) 때 오주전(五銖錢)·화천(貨泉)·대천오십(大泉五十)·화포(貨布)가 일괄 출토된 바 있다. 또한 제주 시내에 역시 똑같은 세트의 신(新)대 화폐가 발견되었는데, 원래는 산지향 것과 동일 지점에서 출토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둘 다 무덤이 아닌 매납 유적에서 발견되었는데, 전자는 동검 부속구(銅劍 附屬具)와 한식경(漢式鏡)이 함께 출토되었다.

이 중국 유물을 남긴 주인공이 떠돌아다니는 중국계 혹은 제주 이외의 외지상인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남해안과 제주 사이의 100km가 넘는 해상루트에 익숙한 재지세력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겠다.

이 유적들이 제주 재지세력의 매납 유적이라 하고, 그 물품의 입수가 한군현과의 교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거리상으로 보아 한반도 남부 지역을 매개지로 하여 교역을 행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 그 무역항(貿易港)의 후보로서는 전남(全南)과 경남(慶南) 서부에 걸치는 남해안 도서지역이 가장 유력한데, 한대 화폐가

87) 李賢惠, 1998, 〈三韓 및 三國의 交易활동〉《韓國 古代의 生産과 交易》, 一潮閣.

88) 韓純植, 1997, 〈天安 淸堂洞遺蹟을 통해 본 馬韓의 對外交渉〉《馬韓史의 새로운 인식》.

발견되는 거문도와 해남 군곡리 유적이 그 대표적인 후보지일 것이다. 실제로 제주도 토기가 해남 군곡리와 삼천포시(三千浦市) 늑도(勒島)에서 발견되는바, 이들 무역항을 통해서 중국물품을 교역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러한 교역은 조공무역 혹은 공무역이라기보다는 사무역에 가까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한군현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무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그러한 증거가 제주시 삼양동(三陽洞) 집자리 유적에서 발견된 중국제 환옥(還玉)과 청동화살촉 등인데, 전자의 경우 특히 위세품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더욱 그러한 추정을 가능케 한다.

문헌기록에 기원(紀元)을 전후하여 영남 지역으로 중국계 주민들이 이주하여 왔다고 하나, 이를 고고학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하다. 영남 지역에서의 기원 전후한 중국 유물로 대표적인 것은 대구(大邱) 지산동(池山洞)·경주(慶州) 조양동(朝陽洞)·창원(昌原) 다호리(茶戶里)·영천(永川) 아은동(漁隱洞) 등지의 무덤 유적에서 발견되는 한식(漢式) 거울이다. 이러한 금호강(琴湖江) 유역과 형산강(兄山江) 상류 경주 지역의 중국계 유물은 지리상의 관계적 위치로 보아 육상루트를 통하여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육상루트는 특히 진한(辰韓)의 조공루트였을 것이다. 기록상 진·변한 지역의 많은 수장들이 조공하였다는 교통로는 육상루트로서, 그 교통로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은 조공무역의 담당자나 그 대리인들일 것이다. 그 루트가 이미 청동기시대부터 조성된 것임은 중요한 교통로 거점마다 지석묘군(支石墓群)이 분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알 수 있다.

한편 남해안 지역에서는 기원 전후한 시기의 화폐 유물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 화폐 유물 또한 전남 해안의 그것처럼 대부분이 신의 왕망 대 것이다. 이들 화폐 유물의 출토 지점을 근거로 서기 1세기를 전후하여, 무역의 교통로로서 육상루트와 해상루트가 각각 별도로 양립되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영남 내륙에 위치한 지역집단의 경우는 육상루트를 더 선호하였을 것이고, 해안 지역의 경우에만 연안항로를 통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육상루트는 조공무역의 주요 루트였을 것인바, 외부와의 연결 루트가 산으로 둘러싸인 영남 내륙 지역의 경우 지리에 밝은 현지인이 아닌 일반상인이 왕래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외부상인이 활동하기 용이한 곳은 교통로를 찾아가기 비교적 용이한 연안항로이다. 연안항로를 택한 상인은 낙랑 거주 한인계(漢人系) 상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낙랑상인은 나아가 일본 왜의 땅까지 진출하였음이 기록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변·진한과 낙랑과의 무역이 상층 엘리트 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낙랑의 중간 이하의 계층과 이루어졌다는 점은 철제 장검(長劍)과 철모(鐵矛)의 교류를 통해서 추론된다.⁸⁹⁾ 낙랑 지역에서는 기원전 1세기대에 보급되는 철제장검이 영남 지역에 서기 2세기 이후나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한의 대외무역 물품에 대한 일정한 통제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해 준다. 실제로 낙랑군 현지에서 발견되는 상당한 양의 중국제 물품인 칠기(漆器)·옥기(玉器)·도기(陶器)·금공제품 등 등이 거의 삼한 지역에서 출토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삼한과 낙랑 사이의 무역이 매우 한계가 있는 것이었음을 시사해 준다.

89) 高久健二, 1997, 〈낙랑군과 삼한의 교섭형태에 대하여〉《문물연구》1.

삼한의 해상 교역거점

여기서 남해안 지역이 중국과 왜의 교역의 중간거점으로서 중심지 교역(中心地交易)의 역할을 하였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⁹⁰⁾

서기 3세기 이전 일본의 중국과의 조공무역은 낙랑과 대방(帶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문헌기록에서 적시하고 있다. 왜(倭)가 남해안 지방을 중간교역의 거점으로 활용하였을 것이며, 그 중에서 김해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한다.⁹¹⁾ 이 점은 구야국(狗倭國) 혹은 금관가야(金官伽倻)의 발전과 관련하여 그렇게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그 무역루트는 김해 이외의 여러 지점에 분산되어 있고, 실제로 경남 서부 지역의 함안(咸安)·고성(固城)·삼천포(三千浦) 등지가 무역항으로 이용되었음은 그곳에서 출토된 많은 왜계 유물이 증거해 준다.

그러한 무역항의 고고학적 증거로서 최근에 발견된 삼천포 늑도(勒島)의 발굴성과가 중요하다.⁹²⁾ 늑도에서는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1세기까지의 유적으로 재지계의 많은 유물과 함께, 이 시기 중국의 반량전(半兩錢)과 낙랑도기, 그리고 일본계 야요이토기(彌生土器)도 다량 출토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동지점이 중국계 상인과 왜인(倭人) 사이의 일종의 중계무역의 항만(港灣)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늑도의 항구 유적은 일본의 이키(一岐) 섬의 하루노츠치 유적과 비교가 된다. 하루노츠치 유적에서는 재지유물과 함께 중국계와 삼한계 유물이 다량 출토되고, 항만 시설도 확인되어, 동 지점이 일종의

무역항으로서 발달했음이 고고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그 규모가 큰 배후기반(背後基盤)의 환호취락(環壕聚落) 시설이 발견되고, 농경지 등의 생산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도 확인된다.

늑도 유적에서도 많은 집자리가 발견되지만, 이곳은 그 마을의 규모나 배후의 기반시설이 미약하여 이키 섬처럼 규모를 갖춘 국(國), 곧 군장사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자체 식량생산기반이 없는 늑도는 주변 육지부에서 식량을 공급받아야 했다. 따라서 이러한 식량 조달을 담당했던 세력이 늑도의 교역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점에서 늑도에서 가까우면서도 농경지를 갖춘 사천(泗川) 이금동 유적이 주목된다. 이곳에서 기원전 4세기경의 원형(圓形) 주거지와 대형 고상가옥(高床家屋)과 지석묘 등 상당한 정치세력 집단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들 주민집단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이금동 세력은 오랫동안 이 늑도에서의 교역을 주도하였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한반도 철기문화가 본격화되면서, 이 지역의 정치·경제의 중심지가 낙동강 일대로 옮겨간 것이 국제무역항 늑도의 생명을 다하게 하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⁹³⁾

물론 이 늑도 유적이 자유 무역항으로서 인접 세력집단의 통제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김해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김해만(金海灣)에 자리한 항만 유적은 김해를 거점으로 한 세력의 통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고고학적 증거가 김해 양동리·대성동·봉황대(鳳凰臺) 등지에서 확인된다.

서기 3세기경 변·진한은 철을 중국과 왜 그리고 동예에 수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보면 변·진한 지역이 적어도 철에 관한

90)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청규, 2003, 〈앞의 글〉, 122~124쪽.

91) 李在賢, 2000, 〈加耶地域出土 銅鏡과 交易體系〉《韓國古代史論叢》9.

92) 李健茂, 2001, 〈勒島遺蹟을 통해 본 古代 國際交流〉《勒島遺蹟을 통해 본 韓·中·日 古代文化 交流》.

93) 李健茂, 2001, 〈앞의 논문〉: 정종목, 2001, 〈2천 년 전의 국제무역항 늑도〉《역사스페셜》2, 효형출판, 51~70쪽.

한 원거리교역의 거점인 것처럼 보인다. 철은 또한 그러한 원거리교역의 화폐처럼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변·진한 지역에서는 화폐로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판상철부(板狀鐵斧) 등의 철기가 다량 발견된다. 따라서 낙동강(洛東江) 하구와 남해안 연안항로가 교차하는 김해지역이 재분배 혹은 중심지무역의 거점으로서 기능하였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기원전 1세기 이후 남해안 지역에는 무역의 거점·무역항(貿易港)이 형성되었는바, 김해처럼 군장사회의 지배세력의 통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늑도의 경우처럼 군장사회의 중심세력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해안 도서지역에 발달한 무역항이 모든 물자교역의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였기보다는 중간의 경유지로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하겠다. 그것은 일본 규슈 지역에서 확인되는 중국계 물품이 한국의 것보다 적지 않은 사실과 왜의 대중국 직접 교류의 문헌기록이 방증해 준다.

삼한의 철 교역

삼한의 교역이 동아시아 세계에서 차지하는 유의미성의 한 측면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당시에 행해진 철(鐵) 교역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⁹⁴⁾

《삼국지(三國志)》에 따르면,⁹⁵⁾ ‘변진’ 지역에서 철이 산출되고, 한(韓)·예(濊)·왜(倭)가 모두 이를 취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그것은 중국에서의 전(錢)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철은 화

폐가치를 가지고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철은 철광석(鐵鑛石)이 아니라, 철소재(鐵素材)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한(漢) 및 삼국시대(三國時代)에는 화폐경제가 발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 간의 거래에서 화폐는 사용되지 않았다. 또 중국의 경우에도 철판(鐵板)이 화폐를 갈음하여 유통되고 있었다.

변진과 낙랑·대방은 철과 관련 수요-공급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 그것은 군사적인 지배-피지배관계가 아닌 교역관계였던 것이다. 다만 시기에 따라서 조공관계적인 성격을 띠기도 했던 것이다.

왜는 변진에서 철광석 등을 채굴(採掘)·제련(製鍊)한 것이 아니라, 매매(賣買)를 통해서 철 소재를 입수했던 것이다. 그 소재는 철판이나 철괴(鐵塊)였을 것이다.

판상철제품(板狀鐵製品)이라는 철 소재는 농공구(農工具)를 제작하기 위한 최적의 것으로서, 나중에는 무기·무구(武具)의 제작에 유효한 철정(鐵錠)으로 변화되었다. 낙동강 유역이 이 철정의 개발지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기·무구의 소재로서 철정이 교환가치·화폐가치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 철정의 출현과 소멸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같은 시기의 일이며, 철정은 교환가치를 가지고 양 지역에서 유통되었다. 철정은 한반도의 경주 및 낙동강 유역과 영산강 유역에 분포한다. 또 일본 열도에서는 규슈(九州)에서 관동(關東) 지역까지 분포하며, 특히 근기(近畿) 지방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열도의 철정은 그 형태나 두께에서 볼 때, 신라보다는 낙동강 유역이나 영산강 유역에서 공급되었다고 추정된다. 금관가야·안라가야(安羅加耶)·영산강 유역의 마한과 왜는 철정의 수요-공급관계를 매개로 하나의 경제권(經濟圈)을 형성하고 있었다.

94) 東潮, 1995, 〈弁辰과 加耶의 鐵〉《가야연구소 학술총서1》,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95) 弁辰……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三國志》卷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條).

서기 3세기 이래 한반도의 철정은 국제무역에 있어 비교우위(比較優位)의 원리에 의해 왜의 쌀·소금·노동력·동(銅) 등과 교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삼한의 우월한 철 생산기반은 동아시아 세계, 특히 일본 열도의 왜에 대한 철 소재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자임하게 만들었다. 삼한이 왜에 수출한 철 소재의 형태도 농공구 제작에 필요한 판상철제품에서 무기·무구 제작에 없어서는 안 될 철정으로 바뀌어 갔다.

이에 따라 삼한은 왜의 정치적 성장에 필요한 무력 기반 조성의 열쇠를 쥐는 존재로 전화(轉化)해 갔던 것이다. 이 점에서 삼한과 왜 사이에 행해진 철 교역이 갖는 동아시아 세계에서의 정치적 유의미성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2장 삼국시대의 무역

윤재운(고구려연구재단)

* 선사 및 초기국가시대의 무역에 사용된 사진은 다음의 책을 참조했습니다.

〈도1〉 송호정, 2002, 《아! 그렇구나 우리역사: 원시시대》, 고래실, p.174.

〈도2〉 國立中央博物館, 1992, 《韓國의 靑銅器文化》, 汎友社, p.19.

〈도3〉 國立中央博物館, 1993, 《韓國의 先·原史土器》, 辛酉, p.26.

〈도4〉 國立扶餘博物館, 1993, 《국립부여박물관》, (주)삼화출판사, p.14.

〈도5〉 國立中央博物館, 1992, 《韓國의 靑銅器文化》, 汎友社, p.28.

〈지도1〉 朴京哲, 〈濊貊·扶餘와 高句麗의 正體性에 關한 研究〉, 高句麗研究會, 《高句麗研究18: 高句麗 正體性》, 2004, 12.

〈지도2〉 박선미, 2005. 2. 18, 〈戰國~秦漢 초기 화폐자료 검토: 고조선 화폐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고조선사연구회 제2회 연구발표회.

〈지도3〉 박경철 외 9인, “고조선·단군·부여”, 고구려연구재단, 2004. 11. 1, p.126.

〈지도4〉 朴京哲, 2002. 12, 〈高句麗人 ‘國家形性’ 認識 試論〉, 《韓國古代史研究》28, 한국고대사학회, p.68.

1. 삼국시대 무역형태와 무역품

1) 무역형태

삼국시대 무역의 중요 대상은 중국과 왜(倭: 일본), 서역(西域) 등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것은 대중국 무역이었다.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이 중국산 물품을 획득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조공(朝貢)과 책봉(冊封)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조공을 하고 관작(官爵)과 인수(印綬)를 받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조공사절을 가장하거나, 이를 수행한 사상인(私商人)의 출입을 통해 물품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¹⁾

하지만 삼국시대 전기(기원전 1세기~기원후 3세기까지)의 주요 무역상대국이었던 한(漢)나라의 경우는, 공·사무역을 엄밀히 구별하기

1) 李賢惠, 1994, 〈三韓의 對外交易體系〉《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一潮閣: 1998, 《韓國古代의 생산과 交易》, 一潮閣, 265~280쪽.

어렵다.²⁾ 즉 한(漢)·위(魏)대에는 조공사절을 가장하거나, 이를 수행한 이민족 사상인의 출입이 빈번하였던 것이다. 이후 삼국시대 후반(기원후 4세기~7세기)이 되면, 공무역과 사무역의 구별이 전 시기보다는 명확해지게 된다.

조공무역의 구체적 내용은 어떠했을까. 한나라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공이란 황제의 덕화(德化)에 감응하여 신하의 예를 행하는 의식이다. 따라서 조공을 바치는 자는 신하로서의 의무가 따르고, 황제는 이에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속한 조공자는 정해진 기일에 자신 또한 대리인을 시켜, 통솔하고 있는 호구수와 영토를 그린 도적(圖籍)을 제출하고, 세금의 형태로 토산 방물(方物)을 바쳐야 했다.

이민족의 조공은 실상 ‘중상(重賞)’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특히 ‘예궐(詣闕)’ 할 경우 ‘박래후사(薄來厚賜)’ 해야 함은 물론 조공사절의 호송과 숙박에 따른 경비까지 부담했으므로 가능한 ‘예부(詣府)’ ‘예군(詣郡)’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공은 변군현(邊郡縣)이나 해당 영호관부(領護官府)에서 이루어졌다. 예군(부)에 따른 회사(廻賜)의 구체적 내용은 인수의책(印綬衣幘)의 사여를 통한 호시(互市) 등 군(부)내에서의 교역허가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공은 무역거래의 허가요건이자, 그에 따라 사여된 인수의책이 호시에의 출입증과 같은 것이었다.

호시는 정기시가 아니라 일정한 기일에 개설된 임시시장이었다. 때문에 별도의 호시가 마련되지 않더라도 군현 내 여러 시장에서 호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여겨진다. 호시교역은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여

겨진다. 이곳에 주변민족의 특산물이 모여들었고 여기에 원거리 무역을 행하던 민간상인과 조공사절을 사칭한 사상인의 출입이 빈번하였기 때문이다. 《한서》지리지에 나오는 낙랑으로 들어온 ‘내군가인(內郡賈人)’의 존재나, 삼한과 왜지에서 조공과 무역 업무를 담당한 이른바 ‘사역(使譯)’ 층이 호시무역에 참여한 민간상인들로 생각된다.³⁾ 호시교역의 예로는 책구루(幘溝婁)를 들 수 있다. 즉 현도군이 군의 동쪽 경계에 작은 성을 쌓고 조복(朝服), 의책(衣幘)을 그곳에 두어 해마다 고구려인이 와서 가져가게 하였다는 일명 책구루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를 호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삼국지》동이전 고구려조의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와 현도군과의 사이에 조공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도 책구루를 통한 교역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호시라는 중계지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대군현 무역은 조공무역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훨씬 약화된 자유로운 형식의 물자무역이었다고 하겠다. 낙랑군에서도 조공을 장려할 목적으로 호시가 개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무역형태상 호시에서의 무역과 조공무역은 차이가 있으며⁴⁾ 호시가 낙랑, 대방군의 경계에도 설치되어 삼한인들이 이곳에 왕래했었는지는 알 수 없다.

2) 무역품

삼국시대의 무역품에 관한 기록은 그다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삼

2) 全海宗, 1970,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100쪽.

3) 尹龍九, 1999, 〈三韓의 朝貢貿易에 대한 一考察—漢代 樂浪郡의 交역형태와 관련하여—〉《歷史學報》162, 7~8쪽.

4) 權五重, 1992, 《樂浪郡研究》, 一潮閣, 160쪽.

국사기》나 중국 기록에 남아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거의가 ‘방물(方物: 특산물)’을 바쳤다가 ‘사절단을 파견했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얼마 안 되는 자료에 나와 있는 주요 물품과, 고고학 발굴성과를 통해 나온 유물 등을 통해 삼국시대 무역에 관한 편린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철

고구려는 일찍부터 중국을 비롯한 대륙 여러 나라들에 철을 대량으로 수출하였다. 특히 철은 선비족을 비롯한 유목민족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물건이었다. 본래 고구려는 말 사육을 자기 사회 재생산구조의 기반으로 영위하는 유목민족이 아니었던 만큼 철에 버금가는 전략자원인 말 공급 기반 확보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고구려는 국초부터 그 우월한 철 생산력을 매개로⁵⁾ 한(漢) 세력의 철 유출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⁶⁾ 그것의 획득에 관심이 깊은 스텝(steppe) 제 세력과⁷⁾ 마철교역(馬鐵交易)을 행하였으리라⁸⁾ 추정된다.

당시 선비(鮮卑)는 호마(好馬)⁹⁾를, 거란(契丹)은 거란말(契丹馬)¹⁰⁾을, 지두우(地豆于)는 명마(名馬)를 산출하고 있었다. 대체로 이 말들은 스텝 지대의 말들로서 서구의 말보다 외모는 볼품이 없지만, 그 강인성

과 지구력에 있어서는 가히 ‘신마(神馬)’라 호평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¹¹⁾ 특히 거란의 말은 소형인 까닭에 평야 지대인 화북(華北) 지방에는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숲이 울창한 산림 지대에서 주행하기에 좋았다.¹²⁾ 이 점에 비추어, 광개토왕이 노획한 말들은 이후 고구려의 기병전력 구성에 큰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또 고구려는 송화강 유역의 안정적 경영을 기함과 동시에 초원길(steppe road) 동쪽 일부를 확보, 내륙아시아를 포함한 여러 유목문화권과의 교류를 촉진하며, 전략물자인 말 공급 기반의 확대를 목적으로 명마를 산출하는 지두우(地豆于)로 진출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는 이 스텝마들을 처음에는 마철교역(馬鐵交易)을 통해서, 또 이들 이종족을 힘으로 제압한 이후에는 공납이나 부등가 교환을 담보로 하는 교역의 형식을 가지면서 경제외적 강제가 개입된 사실상의 공납을 통해서 다수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¹³⁾

한편 변·진한 지역에서 생산된 철은 판상철부(板狀鐵斧)나 철정(鐵鋌)의 형태로 주변국과 한군현에 공급하거나 대내적으로도 유통되고 있었다. 판상철부는 쇄도끼(鐵斧)로 쓰였으며 중간소재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¹⁴⁾ 이에 비해 철정은 삼국시대와 일본 고분시대(古墳時代)에 출토되는 췌기 형태(楔形)의 철판을 지칭한다. 이것은 양측선이 평행하거나 좁아지다가 칼날부 가까이에서 급격하게 벌어지며 칼날부가 직선형이다. 따라서 쇄도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철기의 중간소재이면서 화폐로 쓰였다고 한다.¹⁵⁾

5) 李龍範, 1966, 〈高句麗의 成長과 鐵〉《白山學報》1, 86쪽; 朴京哲, 1988, 〈高句麗 軍事力의 再檢討〉《白山學報》35, 158~159쪽.

6) 塞外民族에 대한 鐵供給 문제를 보는 漢族의 입장은 “加以開塞不嚴禁網多漏精金良鐵皆爲有”(《後漢書》卷90 列傳80 鮮卑傳)에 잘 나타나 있다.

7) 당시 steppe 세력의 鐵에 대한 관심과 그 획득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護雅夫, 1981, 〈鐵冶の謎〉《騎馬民族國家》, 講談社, 120~127쪽; 內田吟風, 1975, 〈烏丸・鮮卑の源流と初期社會構成〉《北アジア史研究》, 鮮卑・柔奴・突厥篇, 東朋社, 43~44쪽 참조.

8) 松田壽男, 1979, 〈絹馬交易に關する史料〉《內陸アジア史論集》(第一), 國書刊行會, 4~5쪽.

9) 《後漢書》卷20 列傳10 祭彤傳.

10) 《唐會要》卷72 ‘諸蕃馬印’條.《唐會要》卷72 ‘諸蕃馬印’條.

11) 神馬當從西北來(《史記》卷123 列傳63 大宛傳).

12) 李在成, 1996, 〈古代 東蒙古史研究〉, 法仁文化社, 54쪽.

13) 朴景철, 2003, 〈高句麗 異種族支配의 實相〉《韓國史學報》15.

14) 宋桂鉉, 1995, 〈洛東江下流域의 古代 鐵生産〉《伽倻諸國의 鐵》, 신서원, 135~139쪽.

15) 東潮, 1995, 〈弁辰과 加耶의 鐵〉《伽倻諸國의 鐵》, 신서원.

② 유리

유리제품은 크게 유리장식품과 유리용기로 대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리생산은 구슬을 비롯한 장식품에서 시작하여 제조법과 기법의 발달에 따라 각종 형태의 용기제작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견되는 장식용 유리제품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형태의 다양성이다. 관옥(管玉: 통형 구슬)을 비롯해 환옥(丸玉: 둥근 모양 구슬), 환옥(還玉: 고리모양 구슬), 화형옥(花形玉: 꽃잎 모양 구슬), 각형옥(角形玉: 모난 구슬) 등 형태가 다종다양할 뿐만 아니라 운주(雲珠)·행엽(杏葉), 팔찌, 요패(腰佩) 등에 여러 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용도의 다양성과 제작기술의 숙련성을 의미한다.

둘째로 여러 계통 유리의 복합적 존재양상이다. 납-바륨계 유리가 대부분이지만 군곡리 패총 출토의 초록색 투명 사각 관옥은 소다계 유리로 밝혀졌다. 한편 경주시 조양동 목곽묘와 제주시 용담동 웅관묘 출토의 남색 구슬은 산화칼륨을 14.5%, 그리고 서울 석촌동 적석총 부근에서 채집한 갈색 구슬은 산화칼륨을 6.95% 함유하고 있어 칼륨(포타슘)계 유리에 속하는가 하면, 공주 무령왕릉 출토의 동자상은 알칼리계 유리에 속한다.

이와 같이 다른 계통 유리가 공존하는 현상은 생산지나 원산지가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납-바륨 유리와 칼륨계 유리는 중국산이거나 중국 소재를 수입하여 제작한 것이고, 소다계 유리는 서방 로만글라스의 수입품일 것이다. 또한 보편적인 남색·녹색 계열의 구슬 외에 동남아시아에서 성행한 적색이나 적갈색 계열의 소옥(小玉)과 금박구슬이 나타난 것은 동남아시아와의 교류관계를 시사해준다.¹⁶⁾

신라 적석목곽분 출토 유리제품들은 알칼리 성분의 후기 로만글래스(Roman glass)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왕릉급 무덤의 출토품들은 황남대총 남분에서 5개, 황남대총 북분에서 5개, 서봉총에서 3개, 천마총에서 2개, 금관총에서 2개, 경북 월성군 안계리 4호분에서 1개, 경주 월성로 가-13호분에서 2개 등이며, 그 밖에 경주 이외 지역 출토품은 합천 옥전 M1호분 고분의 1개가 더 있다. 이들은 모두 기형(器形)도 다양하고, 유리의 질도 뛰어나 동양 삼국에서 단연 으뜸의 수장품으로 꼽히고 있다. 대부분 지중해 동안 유역에서 4세기를 중심연대로 늦어도 5세기 전반에 걸쳐 유행했던 물건들이다. 이들 작품의 분포상황을 보면 거의가 지중해 연안에서 북상하여 흑해와 코카서스 지역, 남시베리아와 카자크 초원 등 스텝 지역과의 관련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¹⁷⁾

특히 금령총과 합천 옥전에서 각각 출토된 유리잔들의 경우, 로마의 식민지였던 쾰른(Köln)의 특산품인 반점문완(斑點紋碗)의 양식과 동일하여 흥미를 끌고 있다. 이것들은 지중해 동안에서 제작된 작품일 수도 있겠으나, 직접 쾰른→동유럽→흑해→스텝루트를 거쳐 신라에까지 전해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¹⁸⁾

③ 도자기

도자기는 비단과 함께 중국 문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중국과 주변국의 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¹⁹⁾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의 유물에서부터 중국제의 청자가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16) 정수일, 2001, 《쉴크로드학》, 창작과비평사, 233~235쪽.

17) 李仁淑, 1993, 《韓國의 古代琉璃》, 도서출판 창문, 22~41쪽.

18) 권영필, 1997, 《쉴크로드 미술—중앙아시아에서 한국까지—》, 열화당, 157쪽.

19) 三上次男, 1977, 《陶磁の道》.

제의 청자는 삼국 중에서도 특히 백제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백제 지역에 남아 있는 중국 도자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백제가 무역대상국으로 삼았던 중국의 각 나라를 중국 도자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3세기에서부터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까지는 남조·북조 모두와 무역을 했으며, 이후에도 수·당을 상대로 꾸준히 무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중국산 도자기는 백제가 중국 동진과 공식적으로 외교하던 때는 물론, 그 이전에 제작된 서진대의 도자기부터 당대에 생산된 도자기까지 무역되어 왔다. 이들 대부분은 백제 왕실 중심의 외교 산물인 측면이 강하여 백제의 고토(故土) 중에서도 수도가 자리한 곳을 중심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문헌에 기록된 백제와 중국 간의 빈번한 교류관계 기사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알려진 부여 부소산성과 익산 왕궁평성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들은 백제의 꾸준한 대중국 관계는 물론 다각화된 외교 루트를 통한 무역도자기로서의 면모도 아울러 엿볼 수 있다.²⁰⁾

이와 반면에 삼국시대 신라의 경우는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중국 절강성 덕청요(德淸窯)계 흑갈유반구병(黑褐釉盤口瓶)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후 신라 후기에는 여러 유적에서 중국 도자기가 출토되었다.²¹⁾ 이는 신라는 6세기대에 비약적인 영토확장을 통해 대중국·대일본 루트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무역이나 대외교섭에 제한을 받는 처지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0) 李蘭英, 1998, 〈百濟지역 출토 中國陶瓷研究—古代의 交易陶瓷를 중심으로—〉《百濟研究》28.

21) 신라후기의 유적에서 나온 중국 도자기는 다음 장인 남북국시대의 무역에서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일단 생략한다.

〈표〉 백제 지역 출토 중국 도자기²²⁾

유물	출토지	시대	비고
1 黑褐釉 錢文 陶器片	서울 몽촌토성	한성시대	西晉 298年銘磚 伴出
2 黑褐釉 錢文 陶器片	충남 홍성 신금성		322년 이전 작품
3 靑瓷羊形器	강원 원성 법천리 석곽묘		4세기 후반~5세기 초의 德淸窯産
4 黑釉盤口瓶片	서울 몽촌토성		南朝의 越州窯계통
5 靑瓷耳附壺片			
6 靑瓷접시			
7 黑褐釉 硯片			
8 靑瓷四耳壺	서울 석촌동 3호분 동쪽 고분		
9 靑瓷盤口壺・黑釉盤口壺片	서울 석촌동 고분		4세기 중반
10 靑瓷天鵝壺	傳 충북 청주		358년 이전 작품
11 靑瓷盤口壺	충남 천원 화성리 백제 고분		341~348년 이전 작품
12 靑瓷耳附盤口壺片・黑褐釉壺片	전북 부안 죽막동		
13 靑瓷硯	傳충남지역 출토		南朝의 越州窯계통
14 白磁蓋 6개	공주 무령왕릉	웅진시대	
15 靑瓷 六耳罐			
16 黑釉 四耳 盤口瓶			德淸窯産
17 靑瓷四耳罐			5세기 후반
18 靑瓷耳附罐片	부소산성 남문터		
19 兩耳罐 A	東門址 판축 柱孔內	사비시대	683년 이전
20 罍A			
21 罍B			
22 罍C			683년 이전
23 兩耳罐 B	軍倉址 동편 土壙		
24 多足形 벼루			
25 靑瓷獸足形 벼루			7세기 초
26 靑瓷耳付壺片	부소산성 남문지		
27 靑瓷耳付壺片			
28 靑瓷耳付罐			
29 靑瓷耳付罐	부소산성 동문지		
30 靑瓷耳付壺片			
31 靑瓷耳付罐		부소산성 남문지	
			5세기 말~6세기 초

22) 李蘭英, 1998, 〈百濟지역 출토 中國陶瓷研究—古代의 交易陶瓷를 중심으로—〉《百濟研究》28에 나오는 표1-4 내용을 정리한 것임.

④ 견직물

삼국시대에는 이미 직조법이 크게 발달하여 국내의 특산품을 수출하기도 하였으며 발달한 양잠법과 직조법 등을 일본에 전해주기도 하였다.

먼저 고구려에서는 일찍부터 직조업이 발전하였다. 《위서》에 “옷은 포(布)와 비단 및 가죽으로 만든다.”²³⁾는 기록 등으로 보아 견직물, 마직물, 모직물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평안남도 남포시 용강군 대안리 제1호 묘의 벽에 그려져 있는 여성이 옷감을 직조하는 모습의 기직도(機織圖)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비록 고분벽화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으나 직기의 모습과 직물을 제작하는 사람이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인 것까지 확실하며 직조하는 모습이 벽화에 그려져 있다는 것은 당시 직조업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²⁴⁾

그리고 《한원》에 오색금(五色錦), 운포금(雲布錦), 자지힐문금(紫地纈紋錦) 등을 제작하였다는 기록과, 《수서》에 해마다 한 사람의 세금으로 포 5필과 곡식 5섬씩을 징수하였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금(錦)과 같은 고급 견직물은 관청 궁정수공업에서 제작되었지만 마직물은 농민들의 가내수공업으로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백제에서도 직조기술은 발전하였다. 백제왕이 남녀 노에 1,000명과 가는 베(細匹) 1,000필을 바쳤다는 광개토왕릉비의 기록을 통해서 백제에서도 일찍부터 제직이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⁵⁾ 그리고 대다수 농민들은 직조수공업에 종사하였으며 조세와 공물을 포, 비단, 명주실,

쌀 등의 알곡과 직조품들로 징수하였다²⁶⁾고 하므로 견직물과 마직물의 직조기술이 상당 수준이었으며 관청수공업과 민간수공업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루어진 제직기술과 직조품은 일본 및 중국으로 전래·수출되었으며, 중국과의 무역에 관한 기록으로는 《삼국사기》에 무왕 38년(637) 당나라에 철갑옷을 등을 보내고 그 답례품으로 금포(錦袍)와 채색비단 3,000단을 받은 기록과, 《위서》에 북위(北魏)에 금(錦)과 포를 보낸 기록, 그리고 《唐書》에 백제가 당과의 무역에서 고급비단, 정밀하게 짠 베천, 수산물, 과하마, 각종 무기 등을 수출하였다는 기록 등이 있다.

일본과의 무역을 보면 전지왕 14년(418)에 일본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백금(白錦) 10필을 주었고, 찾아오는 일본사신에게 오색 채견(綵絹) 1필을 주었으며, 《일본서기》에 웅략천황(雄略天皇) 7년(463) 백제의 금부(錦部) 정안나(正安那)가 도일하여 일본하내 도원에서 한금(韓錦)을 제작하여 일본금부련(日本錦部連)의 시조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에서도 견직물과 마직물의 제직이 발달하였다. 시조 혁거세거서간 17년(기원전 41)에 왕과 왕비가 6부를 순행하며 백성들에게 농사와 양잠을 장려하였으며, 파사이사금 3년(기원후 82)에도 농사와 양잠을 장려한 기록으로 보아 건국초기부터 견직업의 장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서 생산된 직물은 자가 수요 및 조세, 공물용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화폐의 역할도 겸하였으며, 7세기 중엽에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곡식 값이 떨어지는 관계로 수도 경주 도성안의 시장 물가가 포 1필 값이 벼로 30섬 또는 50섬이나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23) 《魏書》卷100, 列傳88, 高句麗.

24) 홍희유, 1989, 《조선상업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5-27쪽.

25) 손영승·조희승, 1990, 《조선수공업사》, 공업종합출판사, 142쪽.

26) 《隋書》卷27, 百濟本紀 5, 武王 38년.

이것은 포가 농민들의 가내수공업으로 직조되어 상품으로 활발하게 유통되었음을 의미한다.²⁷⁾ 신라의 견직물은 국외로 수출되기도 하였다. 흘해이사금 20년(329)에는 견 1,460필을 일본에 수출하였고, 진덕왕 4년(650)에는 왕이 신라금(新羅錦)에 오언시 태평송(太平頌)을 써서 당나라에 선물로 주었으며, 진덕왕 5년(651)에는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금총포(金總布)를 선물하기도 하였다.²⁸⁾

⑤ 담비가죽

고구려는 말갈로부터 군사력 징발 외에도 양질의 ‘담비가죽(貂皮)’을 공납이나 교역을 통해 획득하였다. 이 초피는 거란이나 고막해(庫莫奚)에서 생산되는 문피(文皮)에 비해 중국에서 매우 고가로 거래되는 품목이었다.²⁹⁾ 따라서 고구려는 잉여분의 담비가죽을 중원 방면에 전매(轉賣)함을 통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었다. 실위(室韋)의 담비가죽³⁰⁾ 역시 이런 방식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492~499년경 문자왕대에 거란인들이 고구려의 비호 아래 북위의 변경민들을 노략질한 사건³¹⁾은 고구려가 자기들의 지배 하에 있는 거란인들의 군사력을 이용해 인신약취(人身掠取)를 통하여 인신매매(人身賣買)나 자신들의 영농(營農)에 종사시킴을³²⁾ 통하여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음을 엿보게 해준다.

27) 홍희유, 1989, <앞의 책>, 26쪽.

28) 권영숙, 2002, <고대 복식과 직물> 《강좌 한국고대사》6—경제와 생활—,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406~409쪽.

29) 李在成, 1996, <앞의 책>, 139쪽의 註64.

30) 《魏書》卷100 列傳88 失韋條.

31) 李在成, 1996, <앞의 책>, 178~179쪽.

32) 李在成, 1996, <앞의 책>, 154쪽의 註111.

⑥ 구리거울(銅鏡)

동경이란 동판의 표면을 잘 다듬고 문질러 얼굴이 비치게 하는 것인데, 특히 동양에서는 그 뒷면에 갖가지의 아름다운 무늬나 길상어(吉祥語) 등을 새겨 장식하였다. 따라서 그것이 거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후대에 와서도 금속공예적인 측면에서 주조기법이나 장식기법뿐만 아니라 무늬에서 나타나는 사상적인 의미나 명문대(銘文帶)에서 보이는 글자나 자구에 대하여서도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³³⁾

조공무역, 즉 공무역을 통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 가운데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이 동경이다. 중국에서는 실용품으로 사용되던 동경이 삼한 지역에서는 세문경(細文鏡)을 대신하여 신지(臣智)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상당기간 선호되고 있었기 때문에 동경이 조공무역의 중요무역품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³⁴⁾

철기를 비롯한 한문화의 유입을 불러온 삼한시대 이후에는 위만의 세력과 한반도 북쪽에 들어온 낙랑을 비롯한 한사군의 설치 등 철기의 공급과 함께 무역의 범위와 계층이 확대되어 한경(漢鏡)의 유입이 용이해진 것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낙랑고분에서 한경의 출토가 다른 유물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동경 자체의 전파가 용이했던 것으로 보는 견해³⁵⁾도 제기되었다. 한편 철기의 보급은 금속공예 기법의 발달을 불러오게 되고 그와 함께 한경을 쉽게 모방하여 제작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밖에도 지배계층의 구조적 변화를 들 수가 있을 것이며 정치적으로 사회변혁을 불러오면서 차츰 동경은 실용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한경은 우리나라의 경우

33) 李蘭暎, 2003, 《高麗鏡 研究》, 도서출판 신유, 10쪽.

34) 李賢惠, 1998, <앞의 책>, 269쪽.

35) 高久建二, 1999, 《樂浪古墳文化研究》, 學研文化社.

거의 모든 시기에 걸쳐 방제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³⁶⁾

이상의 주요 무역품들 외에도 백제가 당에 수출했다고 하는 명광개(明光鑑)·칠갑·조부(彫斧) 등을 무역품으로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명광개는 갑옷에다 황색칠을 한 백제의 특산품이었다.³⁷⁾ 이와 함께 중국에서는 도서, 각종 문화용품 들도 적지 않게 수입하였다. 이외에 고구려와 신라도 각종 불교관련 용품이나 사치품, 문화용품 등을 중국에서 수입하였다.

36) 李蘭暎, 2003, 〈앞의 책〉, 88~89쪽.

37) 洪思俊, 1972, 〈文獻에 나타난 百濟産業〉《百濟研究》3, 49~50쪽.

2. 4세기 무역체계의 변화

1) 낙랑·대방군 중심의 동아시아 해상무역체제

동아시아 국제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한(漢)이 위만조선을 멸하고 그 중심지인 대동강 하류지역에 낙랑군을 설치하면서부터였다. 원래 한(漢)은, 국경 밖 오랑캐의 침략을 막아주고 남쪽 군장(君長)들의 천자 알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조건부로 하여 위만조선을 외신국(外臣國)으로 공인해 준 바 있었다. 그러나 위만조선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남쪽 여러 나라의 천자 알현을 방해했다. 그리하여 한은 기원전 109년에 위만조선을 공격하여 1년 만에 멸망시키고, 여기에 낙랑군을 설치하여 남쪽 한(韓)·예(濊)·왜(倭)와의 무역 중개 역할을 맡게 하였다. 한반도와 일본 규슈 및 관서 지방에 이르는 연안의 무역항로를 따라서 화천(貨泉)·대천(大泉) 및 오수전(五銖錢) 등의 고대 중국 화폐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낙랑군 설치 이후 동아시아 국제무역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가를 반영하는 것이다.³⁸⁾

〈표〉 남한 출토 중국화폐

유적	화폐종류/수량	시기
서울 풍납동	오수전(五銖錢) 1	
삼천포 늑도(勒島)	반양전(半兩錢) 1	전한대(前漢代)
창원 다호리(茶戶里) 1호분	오수전(五銖錢) 3	기원전 1세기 후반
성산패총(城山貝塚)	오수전(五銖錢) 1	
해남 군곡리패총(郡谷里貝塚)	화천(貨泉) 1	
여천 거문도(巨文島)	오수전(五銖錢) 980	기원후 1세기
제주 산지항(山地港)	오수전 4, 화천 11, 화포(貨布)1, 대천오십(大泉五十) 2	기원후 1세기
김해 회현리패총(會峴里貝塚)	화천 1	
경산 임당동(林堂洞) A-1 121호분	오수전 1	기원전후
임당동 E 132호분	오수전 1	기원전후

그런데 이후 낙랑군에 대한 한(漢)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남쪽의 한예(韓濊)의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2세기 후반경에는 낙랑군의 민들이 한국으로 대거 유입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한때 낙랑군의 역할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요동 지방에서 독자세력을 구축해오던 공손씨는 3세기 초에 낙랑군의 남부에 대방군을 별도로 설치하여 강력한 대한(對韓) 통제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2-1. (후한의) 환제(桓帝)·영제(靈帝)의 말기에(146~185) 한예(韓濊)가 강성하여 군현(郡縣)이 통제하지 못하자 많은 백성들이 한(韓)의 나라로 들어갔다. 건안(建安) 중에(196~220) 공손강(公孫康)이 둔유현(屯有縣) 이남의 황폐한 지역을 나누어 대방군(帶方郡)을 만들고 공손모(公孫模)·장창(張敞) 등을 보내어 유민(遺民)을 불러모아 군대를 일으켜서 한예(韓濊)를 정벌하자, 옛 백성이 차츰 돌아오고 이후 왜(倭)와 한(韓)이 드디어 대방군(帶方郡)에 복속되었다.³⁹⁾

38) 姜鳳龍, 2002, 〈고대 동아시아 海上交易에서 百濟의 역할〉 《韓國上古史學報》38, 77쪽.

39) 桓靈之末(146~185)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196~220)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

위 사료에서 보이듯이 후한 말기 중국 정세의 혼란상황에서 중국 군현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한·예가 강성해지면서 낙랑군은 지배 인구가 격감되는 등 거의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에 공손강은 낙랑군을 나누어 대방군을 설치하고 태수를 파견하여 군현을 재정비하면서 한·예 세력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대방군의 설치시기는 대략 공손강이 공손탁의 뒤를 이은 204년에서 조조의 오환정벌이 이루어져 서변의 위협이 높아지는 시기인 207년 사이로 추정된다.⁴⁰⁾

그러나 공손씨 정권의 낙랑군·대방군 경영의 목표는 군현기반의 복구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낙랑군·대방군을 통한 주변 제 종족에 대한 통제력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과거 낙랑군이 주변 지역에 미쳤던 영향력은 곧 한(漢)의 중앙 정부의 정치적 권위와 중원 지역과 연결되는 교역체계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요동의 지방군벌에 불과한 공손씨 정권은 이러한 메리트를 제공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가 한계성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공손씨 정권 아래에서 낙랑군·대방군은 과거와 같은 주변 제 종족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고 보인다.

물론 공손씨 정권의 주변세력에 대한 통제력이 한(漢)대에 비하여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고구려나 한반도의 제 세력 및 왜 등이 중원과의 직접 연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손씨 정권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⁴¹⁾

地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 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三國志》卷30 韓傳).

40) 임기환, 2000, 〈3세기~4세기초 위(魏)·진(晉)의 동방정책-낙랑군·대방군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36, 7쪽.

41) 임기환, 2000, 〈앞의 논문〉, 9~10쪽.

이후 얼마 안 되어 238년에는 공손씨가 위에게 토벌되어, 낙랑과 대방군에 대한 관할권은 위에게로 돌아갔다. 위는 낙랑과 대방을 통해 한·왜를 강력하게 통제함과 동시에 중국의 선진문물을 보급하는 교량역할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갔다.

2-2. 왜인은 대방군(帶方郡) 동남쪽 바다 가운데 있다. …(중략)… 대방군에서 왜(倭)에 이르는 (노정은 다음과 같다) 해안을 따라 한국(韓國)을 지나 동남쪽으로 가면 왜의 북쪽 구야한국(狗耶韓國)에 이르고, 다시 바다를 건너면 대마국(對馬國)에 도착한다.⁴²⁾

2-3. 경초(景初) 중에, 명제(明制)가 몰래 대방태수 유흔(劉昕)과 낙랑태수 선우사(鮮于嗣)를 보내어 바다를 건너가 2군을 평정하였다. 한(韓)의 여러 나라의 신지(臣智)에게 읍군(邑君)의 인수(印綬)를 더해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읍장(邑長)을 주었다. 그 풍속이 의책(衣幘)을 좋아하여 하호(下戶)도 군에 나아가 조알(朝謁)할 적에 모두 의책을 빌려 입으며, 스스로 인수와 의책을 입은 자가 1,000여 인이다.⁴³⁾

사료 2-2에는 위(魏) 관할 하의 낙랑·대방군에서 왜의 여인국인 사마대국(邪馬臺國)에 이르는 연안 무역항로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동아시아 해상무역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42) 倭人 在帶方東南大海之中 依山島爲國邑 … 從郡至倭 通海岸水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耶韓國 七十餘里 始渡一海 千餘里至對馬國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30 倭人傳).

43)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三國志》卷30 韓傳).

사료 2-3에 나오듯이 위는 공손씨 정권에 대한 정벌전의 일환으로 낙랑·대방군도 접수하게 되는데, 군사행동 자체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낙랑군·대방군이 공손씨 정권의 배후 기지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벌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됨은 당연하지만 이후 위는 공손씨 정권과는 다른 입장에서 주변세력에 대한 통제력의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그런데 위의 대한(對韓)·대왜(對倭) 정책은 차이가 있었다. 먼저 위는 왜(倭) 여주(女主) 비미호(卑彌呼)에게 왜국 사회의 외교적 대표권을 공인해 줌으로써, 그 영도력을 후원해 주었다. 238년에 왜의 비미호에게는 대방태수를 시켜 ‘친위왜왕(親魏倭王)’의 작호와 이를 공인하는 금인자수(金印紫綬)를 전하게 하였으며, 비미호의 사신들에게는 솔선중랑장(率善中郎將)·솔선교위(率善校尉) 등의 작호와 이를 공인하는 은인청수(銀印靑綬)를 내렸다.⁴⁴⁾ 이러한 작호와 인수 혹은 의책(衣幘) 등은 낙랑·대방을 통한 대한무역권(對韓貿易權)을 공인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는 낙랑·대방군과 맞닿아 있던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오히려 분열정책을 펴나갔다. 사료 2-3에 나오듯이 인수를 차고 의책을 착용한 자가 천여 인이라는 것을 보면 이런 정책은 일단 한의 여러 국가에게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공손씨 정권이 낙랑군·대방군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는 중원 지역과의 교섭이나 교역이 단절됨으로써 한의 제 국가들이 본래 낙랑군·대방군에 요구하고 있는 목적을 채울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낙랑군·대방군을 통하여 다시 중원 지역과 연결됨으로써 이전의 교역체계를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

44) 《三國志》魏書 東夷傳 倭人條.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위의 동방원정은 단지 배후의 위협세력을 제거함에 그치지 않고 만주와 한반도 제 세력에 대한 또 다른 실리적 목적이 있었음을 간취할 수 있다. 즉 위의 중앙정부가 변방 군현조직을 회복함과 함께 주변 제 국가와의 교류·교역체계를 직접 장악하려는 태도였다. 삼한의 경우 인수와 의책을 착용한 자가 천여 인이라는 기록을 보면 위는 중원과 한 지역과의 교역망을 회복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삼한 지역에 대한 분열책을 동시에 진행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 지역에서 세력확장을 꾀하던 백제국이나 목지국 등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정으로 마한과 변한·진한 등은 왜와 소규모의 직교역을 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그 중 변한의 철은 한·왜 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주요 무역품이자 그 자체가 화폐로도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국(國)간의 무역에서도 꽤 각광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세기 단계까지는 마한보다는 오히려 가야와 신라가 왜의 주요 무역과 트너로서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라는 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왜와의 무역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에 전하는 왜인 호공(瓠公)의 신라 도래 설화나 《삼국유사》에 전하는 신라인 연오랑·세오녀의 왜 도래설화 등은 초기 단계에 신라와 왜 사이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였음을 엿보게 한다. 뿐만 아니라 3세기 말 혹은 4세기 초에 이르면, 신라는 포상팔국(浦上八國)의 난에 직면하여 난관에 빠진 금관국(金官國)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여 원군을 보냄으로써 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갈 기회를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던 마한은, 낙랑·대방군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가야·왜와의 관계에서는 신

라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이래저래 국제 무역관계에서 소외·고립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⁴⁵⁾

2) 목지국의 쇠퇴와 백제의 부상

전술했듯이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된 마한은 결국 낙랑·대방에 대한 도발행위를 일으켰다. 246년경에 마한이 감행한 기리영(岐離營) 공격 사건이 그것이다.

백제는 목지국(目支國) 주도의 기리영 공격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친낙랑·대방정책을 취함으로써, 점진적인 세력확대를 꾀하였고 낙랑·대방과의 전쟁으로 실세한 목지국의 마한 영도권을 탈취하려 하였다. 백제의 의도는 적중하였고, 결국 백제는 3세기 후반경에 마한을 병탄하고 범마한권의 영도국가로 떠오를 수 있었다. 대개 백제 책계왕(責稽王: 286~298)대의 일로 추정된다.⁴⁶⁾

이후 백제는 평주(平州)와 동이교위(東夷校尉)를 신설하여 강력한 동방정책을 추진한 진(晉)의 강력한 동방정책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서진의 동방정책의 기조는 위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만 274년에 유주(幽州)를 분할하여 평주(平州)를 설치함과 함께 동이교위를 둔 점은 주목된다. 물론 평주 설치 이후에도 동방정책의 중심은 여전히 위관(衛瓘)이나 장화(張華)가 활동한 유주였다. 따라서 평주자사가 겸임하였던 동이교위의 기능도 마찬가지로 상황이었다. 기록상 동이교위의 설치 이미 위 초기로 올라가지만 실질적인 기능은 거의 수행하

45) 姜鳳龍, 2002, 〈앞의 논문〉, 78~79쪽.

46) 姜鳳龍, 2002, 〈앞의 논문〉, 82쪽.

지 못하였는데 진대 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태강(泰康) 6년(285)에 부여가 선비 모용씨에 의해 격파되자 하감(何龕)으로 동이교위를 교체하고 부여의 복구를 추진케 하면서⁴⁷⁾ 동이교위⁴⁸⁾의 역할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요동에서의 선비 모용씨의 남하가 두드러지면서 동이교위는 과거 선비를 감호하던 오환교위의 역할까지 겸하는 등 그 활동의 폭이 확대되었다.

이후 동방정책의 중심은 이전의 ‘유주-낙랑·대방·현도’의 체계에서 동이교위가 직접 통괄하는 체계로 바뀌게 되었다. 이제 현도·낙랑·대방군은 이전의 중개 기능조차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대 동방정책의 중심이 낙랑·현도군이었던 것과는 달리 위·진대에 유주나 평주의 동이교위가 주도하게 된 것은 지방제도와 관련이 있다. 즉 한 대의 군현중심 체제와는 달리 위·진대에 주자사(州刺史)의 지방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61년에 낙랑군(혹은 유주)을 통해 위와 교섭하였던 한의 세력은 285년경부터는 직접 동이교위를 매개로 진의 중앙정부와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후 낙랑군·대방군의 군현 기능은 급격히 쇠퇴해 갔다.⁴⁹⁾

《진서》에 보이는 서진과 마한의 잦은 교섭은 고고학적 실물로서 뒷받침되고 있다. 중서부 지방의 마한 지역에서는 서진 물품이 상당수 발견되는데 한대(漢代) 유물이 영남지방에 편중되어 발견되는 현상과 대조적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청자 호자(虎子)는 서진제로 판단되는데 개성출토로 전해지고 있다. 역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전 웅천

47) 《晉書》卷89, 夫餘傳.

48) 동이교위에 대해서는 權五重, 1992, 〈앞의 책〉 참조.

49) 임기환, 2000, 〈앞의 논문〉, 24~25쪽.

〈표〉 진서(晉書)에 보이는 대중국교섭

			본 기	마 한 조	진 한 조
咸寧	2년(276)	2월	東夷8國 歸化		
		7월	東夷17國 來附		
	3년(277)	是歲	東夷3國 來附	復來	
	4년(278)	3월	東夷6國 來獻	又請來附	
		是歲	東夷9國 來附		
太康	원년(280)	6월	東夷10國 歸化	其王頻遣使入貢方物	其王遣使獻方物
		7월	東夷20國 朝獻		
	2년(281)	3월	東夷5國 朝獻	其王頻遣使入貢方物	復來朝貢
		6월	東夷5國 來附		
	3년(282)	9월	東夷29國 歸化 獻期方物		
	7년(286)	8월	東夷11國 來附	又頻至	又來
		是歲	馬韓等 11國 遣使來獻		
	8년(287)	8월	東夷2國 來附	又頻至	
	9년(288)	9월	東夷7國 詣校尉來附		
	10년(289)	2월	東夷11國 來附	又頻至	
		是歲	東夷絶遠20餘國 來獻		
太熙	원년(290)	5월	東夷7國 朝貢	詣東夷校尉何龕上獻	
永平	원년(291)	是歲	東夷17國 詣校尉來附		

(熊川) 출토 서진제 청자 타호(唾壺)도 주목된다. 발굴품으로는 서울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전문도기(錢文陶器)를 비롯한 시유도기(施釉陶器)편, 홍성 신금동에서 출토된 시유도기편이 있다. 최근에 서울 풍납토성 내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전문도기를 비롯한 각종 시유도기류의 출토량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경당지구에서는 전문도기를 포함한 대형의 시유도기류가 완형과 편을 합해 모두 수십 개체분에 달함으로써 청자류를 압도하여 풍납토성 내부에서 전문도기를 비롯한 시유도기의 사용량이 막대하였음을 보여준다.

시유도기는 일반적으로 기고(器高) 80cm, 구경(口徑) 40cm, 저경(底徑) 30cm 전후의 크기에 타원형의 동체, 말린 입술, 평저, 청회색, 벽심, 흑갈색유, 구연부에 달린 4개의 귀(耳), 동체에 시문된 선문(線文)과 거치문(鋸齒文) 등을 특징으로 하며 시기적으로는 서진, 지역적으

로는 절강(浙江)·강소(江蘇) 일대를 중심 무대로 한다.

전문도기는 시유도기의 일종으로서 관(罐), 혹은 웅(甕)의 어깨 부위에 전문(錢文)을, 복부 이하에는 격자문(格子文)을 타날한 후 시유한 것이다. 시유도기가 남중국을 무대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에 비해 전문도기의 출토예는 중국에서도 드문 편이다. 전문도기의 시기는 서진, 지역은 남중국으로 수렴되는 점에 특징이 있다.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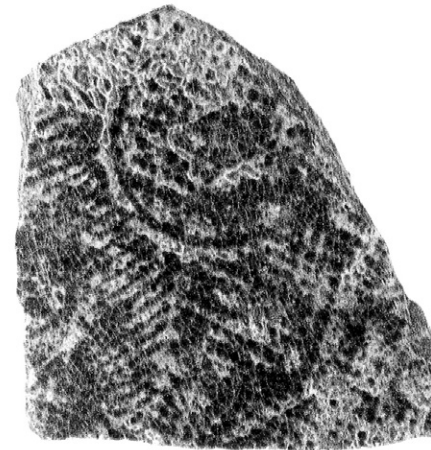
그 밖에 풍납토성 경당지구 101호 수혈출토 오수전도 이 시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익산 삼기면 연동리 대봉사 출토 동경은 연대에 대해서 후한⁵¹⁾과 서진,⁵²⁾ 위경(魏鏡)설⁵³⁾ 등이 있으나 서진설이 타당한 듯하다.

이상에서처럼 《진서》의 관련기사나 서진대 물품의 존재양상을 볼 때 3세기 후반 백제를 중심으로 한 마한 지역의 세력이 적극적으로 원거리 무역을 실행하였음이 분명하다. 3세기 후반이라는 시점은 백제국이 대외교섭에서 여타의 마한 제국을 압도하는 우월성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면서 내부적으로는 권력의 강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표상은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에서 볼 수 있다. 특히 규모면에서 한반도 최대의 성곽인 풍납토성은 몽촌토성과는 달리 평지에 축조된 관측토성이기 때문에 동원된 인력과 물자의 양이 막대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성곽을 축조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을 갖추었다는 것은 백제국의 권력집중도가 여타 마한 제국에 비해 탁월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제부터는 마한의 구성분자로서의 백제국이 아닌 초월적 백제

로 상승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정치권력의 성장이 대서진 교섭의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상호 작용을 일으켰음에 틀림없다.



서울 풍납토성 출토 초두(鐵斗)



서울 몽촌토성 출토
전문도기편(錢文陶器片)

50) 권오영, 2001, 〈백제국(百濟國)에서 백제(百濟)로의 전환〉《역사와 현실》40, 40~43쪽.

51) 金貞培, 1986, 《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고려대학교 출판부, 232~233쪽.

52) 洪思俊, 1960, 〈全北 益山出土 六朝鏡〉《考古美術》1-1: 柳佑相, 1966, 〈胎峰寺出土 晉鏡에 대한 小考〉《湖南文化研究》4.

53) 朴淳發, 2001, 〈馬韓 對外交渉의 變遷과 百濟의 登場〉《百濟研究》33.

서진물품의 유입은 백제국 지배세력의 위세품으로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제국의 물질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서진의 동기(銅器)와 도기(陶器), 자기(磁器)는 백제 토기의 기종과 기형, 기법에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즉 시유도기는 백제의 대용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백제 토기의 주요 특성 중의 하나인 견부(肩部) 문양대(文樣帶)도 서진 도자기에서 유래하였다고 판단된다.⁵⁴⁾

한편 중국에서 전문도기의 출현이 전(錢)에 대한 과도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백제 지역에서 전문도기와 전문와당(錢文瓦當)까지 출현하는 현상은 물질적 측면은 물론이고 정신적 측면까지 중국의 영향을 받을 정도로 밀접한 교섭이 이루어진 증거로 보기도 한다.⁵⁵⁾

진과 마한·진한과의 활발한 교섭은 291년을 끝으로 더 이상 관련기가 보이지 않는다. 291년 8왕의 난으로 시작된 진 중앙의 혼란이 지방은 물론 주변 이민족의 동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특히 요동 지역에서 선비족의 득세에 따른 동이교위의 약화는 이를 매개로 하는 진과 삼한과의 교섭로의 단절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진 중앙정부의 정치적 권위와 교역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은 오히려 마한과 진한 내의 정치적 변화를 초래할 계기가 되었다. 책계왕(責稽王) 때만 하여도 대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⁵⁶⁾ 백제가 분서왕(汾西王) 7년(304)에는 낙랑군과 대립하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⁵⁷⁾ 285년 이래 변군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한 낙랑군·

대방군은 중원과 요동 지역으로부터의 지원을 잃게 되면서 급속도로 쇠퇴해 갔다. 따라서 양군은 이민족의 통제나 교역 창구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고, 고구려나 백제의 성장에 따라 그 소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관구검의 공격으로 타격을 입었던 고구려는 그 동안 국력을 회복한 후 요동의 정세가 혼란한 틈을 타서 중국 군현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게 된다. 302년 현도군에 대한 공세를 시작으로 311년에는 요동과 낙랑군을 잇는 요충지인 서안평을 공취하였고, 이어서 313년부터 315년까지 낙랑군·대방군·현도군을 차례로 복속하였다. 이로써 중국세력 동방정책의 전진기지로서의 변군(邊郡)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중국세력과 동이세력과의 관계가 이제는 국가 대 국가의 새로운 외교교섭 단계로 접어들어가게 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⁵⁸⁾

그런데 낙랑·대방군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대외적 관심사는 엇갈렸다. 먼저 고구려의 주요 관심사는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데 두어졌다. 이러한 고구려의 관심사는, 미천왕이 302년에 현도군을 공격하고, 311년에 요동으로 통하는 길목인 서안평을 공격하였으며, 그 여세를 몰아 낙랑과 대방을 공략하여 이를 축출했던 일련의 과정에서 엿볼 수 있다. 즉 고구려는 교역거점의 확보라는 차원보다는 대륙진출을 위한 배후의 위협세력을 정리한다는 의도가 더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백제의 주요 관심사는 낙랑과 대방이 수행해 오던 동아시아 국제무역의 중개를 대신 주도하려는 데에 두어졌다. 그리고 이를

54) 권오영, 2001, 〈앞의 논문〉, 48~50쪽.

55) 門田誠一, 2001, 〈百濟と南北朝時代の中國との交渉〉《古代の河内と百濟》, 144쪽.

56) 《三國史記》卷24, 責稽王 即位年條.

57) 《三國史記》卷24, 汾西王 7年 春二月條.

58) 임기환, 2000, 〈앞의 논문〉, 30~31쪽.

실현한 것은 346년에 즉위한 근초고왕이었다. 근초고왕은 수차례 신라와 사신을 교환했으며,⁵⁹⁾ 366년에는 가야의 탁순국(卓淳國)을 통해서 왜국과도 통교관계를 공식 개설하여,⁶⁰⁾ 선진문물의 제공자역을 자임하였다. 이는 가야에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대왜 교역을 주도해 오던 신라에게 커다란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그리하여 신라는 367년에 백제가 왜에 보내는 사신선을 약취하여 신라의 물건인양 왜에 제공하려다가 들통 나는 어이없던 일을 저지르기도 했는데,⁶¹⁾ 이는 당시 초조해하던 신라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백제와 가야와 왜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져 갔고, 신라의 외교적 소외·고립화는 더욱 심화되어 갔다. 이를 바탕으로 백제는 369년에 가야 7국을 평정하고 서남해 지방 해로의 요지인 침미다례를 점령하여⁶²⁾ 연안항로상의 요충지를 선점하였다. 그리고 역시 연안항로의 요충지인 옛 낙랑·대방의 땅을 두고, 선비족의 침입을 받아 수세에 몰려 있던 고구려와 일대 격전을 치렀다. 이러한 군사 대결에서 백제가 결정적 승기를 잡게 된 것은, 백제 근초고왕과 태자 근구수가 3만의 정병을 이끌고 평양성으로 진군하여 대적하는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부터였다. 이로써 백제는 낙랑·대방군의 고지에 대한 주도권을 거머쥐게 되었으며, 마침내 낙랑·대방군이 주도해 오던 동아시아 국제교역을 대신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근초고왕은 ‘백제를 매개로 하는 동아시아 교역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갔다. 이런 맥락에서 《송서》와 《양서》 등에 나

오는, 백제가 요서군(遼西郡)·진평군(晋平郡)의 2군을 점거하고 여기에 백제군(百濟郡)을 설치했다는 기사는⁶³⁾ 백제가 당시 중국 대륙에 해양 거점을 두었던 사실의 반영으로 볼 것이다.

백제와 동진과의 관계는 특히 각별하였다. 근초고왕은 372년 정월에 처음 동진(東晋)에 사신을 파견하여 외교관계를 개설하였고,⁶⁴⁾ 같은 해 6월에는 동진으로부터 ‘진동장군(鎭東將軍) 영낙랑태수(領樂浪太守)’를 제수받기도 하였다.⁶⁵⁾ 이는 백제가 동진의 대(對)한(韓)·왜(倭) 교역의 중개역을 공식 위임받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백제와 동진과의 교역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풍납토성에서 동진 계통의 초두(鑹斗)가, 그리고 석촌동 고분에서 동진의 청자와 배짚는 노가 출토된 것이야말로, 백제와 동진 사이의 활발한 문물교류의 실상을 잘 반영해 준다.

이렇게 되자 가야와 왜의 대중국 교역은, 이전에 낙랑·대방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이제는 백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왜왕은 낙랑과 대방이 축출된 이후 왜국 사회를 영도해 가는데 긴요하게 쓰이던 선진문물의 공급이 단절되어 곤란을 겪고 있던 차에, 백제가 교역 중개활동을 재개하자 이를 적극 환영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백제는 일본 열도에도 해양 거점을 개설하고 왜왕과 긴밀한 교역관계를 맺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369년에 백제의 근초고왕이 왜왕에게 보냈다는 칠지도(七支刀)는 그 대표적인 물증이 되겠다.⁶⁶⁾

백제의 대가야 무역 또는 왜와의 무역을 주도한 사람으로 《일본서기

59) 《三國史記》卷24, 近肖古王 21년·23년조.

60) 《日本書紀》卷9, 神功紀 46년 3월조.

61) 《日本書紀》卷9, 神功紀 47년 4월조.

62) 《日本書紀》卷9, 神功紀 49년조.

63) 《宋書》卷97, 列傳57, 東夷 百濟條; 《梁書》卷54, 列傳48, 東夷 百濟條.

64) 《晉書》卷9, 簡文帝 2년 春正月條.

65) 《晉書》卷9, 簡文帝 2년 6월조.

66) 姜鳳龍, 2002, 〈앞의 논문〉, 83-85쪽.

《日本書紀》에 보이는 목라근자(木羅斤資)가 주목된다. 즉 《일본서기》 신공 49년조에 백제의 가야 정벌을 지원한 ‘왜장(倭將)’ 목라근자라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 주(註)에 목라근자는 “백제의 장군이다.”라고 하였으며, 이때의 전공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인 목만치(木滿致)가 “임나(任那)에 전권(專權)할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왜군의 주요 지휘관인 목라근자는 실제로는 ‘백제의 장군’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의 가문은 가야 경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세기 후반의 인물인 목협만치가 일본으로 건너가 소아씨(蘇我氏) 가문을 태동시켰다고 할 때, 그의 조상인 목라근자를 왜인이라 하면서도 백제장군이라고 하는 다른 기록이 《일본서기》에 남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일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목라근자가 백제와 왜 사이를 오가며 일종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의 국적에 관한 모순된 기록이 나온 것이 아닌 가도 생각된다. 즉 백제 근초고왕의 가야 정벌 당시 목라근자가 왜군 동원의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실제 왜군을 이끌고 왔으므로, 백제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출신을 왜인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후 목씨 가문은 목라근자의 아들인 목만치대에 와서는 백제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구이신왕모(久爾辛王母)와 상음(相淫)할 정도로, 그 영향력을 깊숙이 미치는 신진 귀족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만치의 세력기반은 백제의 대외 창구인 기문(己汶) 지역을 포함한 지역으로 보인다. 516년 백제가 기문에서 왜의 물부련(物部連) 등을 맞아 입국시키는 임무를 목협불마갑배(木脇不麻甲背)에게 맡긴 것은, 섬진강 유역의 기문이 본디 목씨가 세력권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 3년 전인 513년 기문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백제와 가야연맹의 일원인 반과국(伴跬國)이 분쟁을 빚었고 왜 세



전북 부안 죽막동 제사 복원 그림



부안 죽막동 출토 5-6세기의 제사토기

력까지 개입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특히 이 문제에 왜 세력이 개입하게 된 데는 목씨계로서 대화정권의 호족인 소아씨의 연고권 주장이 깔려 있었으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목씨가는 섬진강 유역의 대왜 교역창구를 매개로 일본 열도와와의 부단한 상업무역으로써 성장하였고, 또 백제왕실과 왜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⁶⁷⁾

한편 4세기당시 백제의 활발한 해상무역을 보여주는 근거로 전라북도 부안(扶安) 죽막동(竹幕洞) 제사유적이 주목된다. 죽막동 제사유적은 변산반도의 서쪽 끝 해안절벽 위에서 발견되었다. 절벽 끝에서 위도를 바라보며 서 있던 수성당 뒤편의 시누대숲 속에는 삼국시대의 토기와 함께 석제 모조품이 깔려 있었고, 주변의 경작지에서도 삼국시대의 토기와 후대의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이들 유물을 통해 이 유적은 바다와 관련된 제사행위가 이루어진 신앙유적으로 볼 수 있다.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삼국시대부터 유적 주변에 상당한 정치적·군사적 거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 이곳을 지나던 선박들이 항해상의 지표로 이용할만한 해안선상의 높은 산과 수많은 섬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삼국간의 해상왕래선상에 위치해 있어 수많은 삼국의 선박들이 지나다녔을 것이다.

제사행위가 가장 활발히 행해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삼국시대의 제장(祭場)은 발굴구역 20×15m 내의 평탄면 일부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사의 대상은 해양신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서도 항해신(航海神)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기가 4세기 중반부터 삼국 말인 7세기 전반에 속하는 것들이 뒤섞

인 채로 출토되었는데, 이는 백제 근초고왕대 이래 국가제사의 제장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금속유물이 대부분 무기와 마구류가 출토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군사적 성격을 지니는 제사의례의 장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일전쟁 직후에는 유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는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가 이곳을 국가제사 체계 안에 재편성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제사는 고려시대-조선시대를 걸쳐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수성당제(水聖堂祭)로 보아, 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항해의 안전과 풍어(豐漁), 마을의 안녕을 빌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또 수성당의 상량문 기록으로 보아 19세기 중반까지는 분명한 제당(祭堂)을 갖고 제사를 행했다고 할 수 있다.⁶⁸⁾

이처럼 백제의 근초고왕은 중국대륙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의 요소요소에 해양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해상무역을 주도해 갔던 것이니, 그 규모와 체계성, 그리고 적극성의 측면에서, 항로의 길목을 장악하고 중개무역을 일삼던 이전의 위만조선과 낙랑·대방군의 그것을 크게 능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위력은 그의 왕자인 근구수왕대까지 지속되었다.

3) 신라의 국가성장파 무역

신라는 경주분지에 자리 잡고 있던 사로국(斯盧國)이 주변의 국들을 흡수·통합하면서 성립된 국가였다. 《삼국지》권30, 동이전 한조에 의

67) 李道學, 1991, 〈百濟의 交易網과 그 體系의 變遷〉《韓國學報》63, 83-85쪽.

68) 河孝吉, 1998, 〈韓國 西海岸一帶의 海洋信仰〉《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研究》, 國立全州博物館; 崔光植, 1998, 〈百濟의 國家祭祀와 竹幕洞 祭祀遺蹟의 性格〉, 〈앞의 책〉.

하면 적어도 3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사로국은 진한을 구성하는 12개 국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로국의 정치적인 위상에 큰 변화가 초래된 시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중반에 걸치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사로국이 속해 있었던 진한의 교역상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사로국에 의한 진한의 재편과정과 신라의 국가성장 또는 발달과정에 있어서의 무역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진한 시기의 교역은 무엇보다도 교통로 내지는 교역로의 개척을 필수로 한다. 진한 시기의 무역은 국(國)과 국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체와의 사이에서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과 국을 연결하거나 다른 정치체를 연결하는 교통로가 먼저 개척되었을 것이다. 육상교통로는 주로 저지대와 지구대를 따라서 개척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해안 지방의 경우 육상루트는 해안 저지대를 따라 형성되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함남 지역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루트인 추가령지구대가 그 예가 될 것이며 동해안의 경우 태백산맥이 해안을 따라 가파르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해안 저지대 교통로가 일찍부터 형성되었을 것이다. 함경도 지역의 예(濊) 세력들은 이 추가령지구대를 이용하여 한강 유역의 마한 세력과 교역을 하거나 또는 동해안 저지대루트를 이용하여 낙동강 유역으로 와서 철을 교역해 갔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내륙 교통로 외에 강을 이용한 루트도 적극 이용되었을 것이다. 강을 이용한 교통로의 중심지는 대체로 강 지류가 만나는 지점과 강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었다. 강 지류가 만나는 경우로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한강 중류지역과 낙동강과 황강이 만나는 낙동강 중류지역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강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는 낙동강 하구의 김해지방, 영산강 하구의 영암지방, 금강 하구의

군산지방, 한강 하구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군현과의 교역이나 중국 본토 및 왜와의 교역은 바다로 통하는 원거리 교역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중국 군현과의 교역은 대동강 유역에서 출발하여 서해안과 남해안을 거쳐서 낙동강 유역에 이르는 루트가 주로 이용되었다. 이 루트는 섬을 징검다리로서 하는 연안항로였다. 늑도 유적에서 나온 다양한 물품들은 이 지역이 교역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이 루트는 중국 군현과 왜가 교역할 때도 활용되었다.

진han에서 초창기 교역의 모습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기사이다.

2-4. 나라에서 철이 나온다. 한(韓)·예(濊)·왜(倭)가 모두 와서 사간다. 여러 시장에서 사고 팔 때 철을 사용하는데 중국에서 철을 사용하는 것처럼 한다. 또한 (낙랑·대방) 두 군(郡)에도 (철을) 공급한다.⁶⁹⁾

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진한에 시장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각 국마다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둘째는 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철을 사용하였는데 이 철은 화폐처럼 교환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변한과 진한의 철은 한·예·왜가 모두 와서 수입해 갔으며 중국 군현에도 공급되는 중요한 물건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철이 당시 중요한 교역품으로서 기능을 하였음을 알게 한다.

이처럼 교역에 사용된 철이 이른바 철정(鐵錠)일 것이다. 이 철정은

69)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鐵 又以供給二郡(《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 韓條).

고분에서는 판상철부(板狀鐵斧)의 형태로 나오는 철소재인데 기원전 1세기경의 다호리 1호 목관묘에서 판상철부 다발묶음이 출토되었고, 기원후 1세기대의 사라리 130호 목관묘에서 70매, 기원후 2~3세기경의 김해 양동리 162호·235호 목곽묘에서는 30~40매가 출토되었다. 이들 판상철부는 10매 단위로 부장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화폐 대신의 거래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철정은 《일본서기》에도 기사가 보인다.

2-5. 당시에 백제 초고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후하게 대접하였다. 그리고 5색 채(綵)와 견(絹) 각 1필, 각궁전(角弓箭)과 철정 40매를 예물로 주었다.⁷⁰⁾

백제는 왜에서 온 사신에게 비단과 각궁전과 더불어 철정 40매를 주었다. 이는 철정이 교역에 사용된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교역 가운데 중국 군현과의 교역은 공적인 교역과 사적인 교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적인 교역에서는 중국 군현이 수여한 인수(印綬)와 의책(衣幘)이 교역을 할 수 있는 신표(信標)로 기능을 하였다. 그런데 《삼국지》 동이전에는 각 정치체마다 특산품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특산품은 중국 군현과의 공식적인 교섭에 사용된 물품들이었을 것이다.

한편 왜(倭)의 야마토국(邪馬臺國)이 위(魏)와 교섭할 때 생구(生口)와 반포(斑布) 그리고 단궁시(短弓矢)와 같은 무기류도 공식적인 교섭에서 예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로 보아 진한의 경우도 생구나

70) 時百濟肖古王深之歡喜而厚遇焉 仍以五色綵絹各一匹及角弓箭并鐵四十枚 幣爾波移(《日本書紀》卷9 신공기 46년조).

포와 같은 물품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반면에 중국 군현은 주변국의 군장들에게 작호를 수여하면서 인수와 의책을 사여하고 동시에 사물(賜物)도 주었다. 중국 군현이 진한 제국의 군장들에게 읍군(邑君)이나 읍장(邑長)의 작호(爵號)를 주면서 함께 준 사물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위신재(威信財)이다. 위신재는 지배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인데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도 있지만 외국에서 받은 것도 있었다. 이 위신재 가운데 중국 산은 공적인 교역에서 주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위신재로는 먼저 한식경(漢式鏡)을 들 수 있다. 이 한식경은 영천 어은동, 경주 조양동 5호분, 김해 양동리 고분군, 창원 다호리 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다. 그리고 천안 청당동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제 곡봉형대구(曲棒形帶鉤)와 금박제(金箔製) 유리구슬과 같은 위신재도 중국과의 교역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 다양한 견직물도 사물(賜物)로 주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중국 군현과의 교역에는 공적인 교역과 더불어 사적인 교역도 행해졌다. 사적인 교역의 모습은 다음의 사료에 보인다.

2-6. 그 풍속이 의책(衣幘)을 좋아하여 하호들이 군현에 이를 때는 모두 의책을 빌려 입고 왔다. 스스로 인수(印綬)와 의책을 착용한 자가 천여 명이었다.⁷¹⁾

이상에서 보이듯이 군현에 출입하는 자의 수가 그만큼 많았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사적인 교역도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71)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 千有餘人(《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 韓條).

도 하다. 이러한 사적인 교역에서 수출한 물품으로는 일차적으로 철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염사착(廉斯鑛) 설화에서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벌목하러 온 것에서 미루어 볼 때 목재도 중요한 교역품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한다. 이외에 진한에서 생산된 견직물이나 면포(綿布) 등도 교역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진한이 중국 군현에서 수입한 물품이 무엇이었는지는 고고학 자료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 고고학 자료로 볼 때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으로는 먼저 생활용기로서의 회색도기(灰色陶器)를 들 수 있다. 회색도기인 낙랑도기는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하여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제작·보급되었는데 기원 전후한 시기에 남한 지역에서는 아직 자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회색도기는 낙랑으로부터의 수입품이었을 것이다.

한편 전남 거문도와 제주도 산지항에서는 수십 내지 수백 매의 왕망전(王莽錢)이 발견되었고, 또 해남 군곡리 패총과 마산 성산패총 및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왕망전은 신(新)나라 왕망 때에 대량으로 발매되고 정책적으로 중국 이외의 지역에도 통용이 강요되었다고 한다. 이 왕망전 역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거나 교역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시기에는 왜와의 교역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왜와의 교역은 교통로상에서 볼 때 낙동강 하구를 비롯한 남해안 지역이 중심이 되었다. 이 시기의 왜는 철을 수입해 갔다. 이외에 왜의 각 지역에서 출토되는 한반도계 유물 가운데는 교역을 통해 전해진 것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진한이 왜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왜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항아리·광형동모(廣形銅牟)·야요이식 토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교역을 누가 관장하고 통제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교역에 대한 통제 및 감시는 정치권력의 성장과도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역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았고 이러한 이익을 누가 챙기느냐는 정치적 힘을 강화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진한이 교역을 어떻게 감시·통제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이는 당시 진한과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왜(倭)의 경우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왜에서 대외교역을 감시·감독하는 기구로는 일대솔(一大率)이 있었다. 일대솔은 여왕국 이북에 특별히 설치한 것이었는데 그가 근무하는 곳이 이도국(伊都國)이었다. 이 이도국에는 왜의 여왕이 중국 군현이나 제한국에 파견한 사신들이 머물렀던 곳이다. 또한 동시에 중국 군현에서 왜에 파견한 사신들이 최종 목적지인 야마대국으로 가기 전에 먼저 머물렀던 곳이다. 이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또 야마대국까지 가는 도중에 공적인 교역 외에 사적인 교역도 행해졌던 것이다. 일대솔은 외국에서 파견되어 오는 사신들을 응대하고 또 이들과 교역을 하는 제국을 총괄하고 검찰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이다. 이 일대솔을 임명한 것은 당시 일본의 맹주국인 야마대국이었으므로 일대솔의 설치는 야마대국이 대외교역권을 장악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변한의 경우 이 시기의 맹주국은 구야국(狗婁國)이었으므로 구야국이 대외교역과 관련한 감시기구들을 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한의 경우 주도권을 가진 세력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2세기 이후에 오면 경주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다른 지역보다 우월하므로 사로국(斯盧國)이 진한의 주도권을 장악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외교역과 그 감시기구는 사로국에서 관장하지 않았을까 한다.⁷²⁾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선진지역인 낙랑·대방 두 군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던 기존의 교역망의 혼란을 가져왔다. 이는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변동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왕의 교역체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간에 교역주도권을 놓고 극심한 대립 갈등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이 결국 삼한사회 전반에 걸치는 정치적 통합운동으로 나아가게 하였을 것이다.

3세기 중엽까지만 하더라도 삼한 제국과 중국 군현과의 교역 등에는 일반적으로 해로가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신라에 의한 계립령(鷄立嶺)이나 죽령(竹嶺)의 개통⁷³⁾은 육상교통로의 중요성이 보다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그 동안 변진 지역에서 진행된 일련의 교역주도권을 둘러싼 정치적인 대립이 일단락된 결과라 생각된다. 이제는 해상중심 교역 일변도에서 벗어나 육상교통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어 갔으니 그를 주도한 것이 바로 사로국이었다. 변진의 내륙과 낙동강 상류 지역을 장악하는 정치적인 승리자가 바로 사로국이었던 것이다.

육상교통로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된 사정은 교역수단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왕의 교역에서 해상교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철이 중요한 교역의 매개물이었던 데서 기인한 결과였다. 철은 중량이 많이 나가므로 육상교통의 중요한 수단인 도로나 우마차 등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시에 다량의 이동이란 불가능하다. 그에 비하면 해상교통은 다량의 철을 한꺼번에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던 것이 금은(金銀)이 교역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⁷⁴⁾ 양상이 바뀌게 되었다. 금은은 철과는 달리 소량으로도 고가의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이제는 교역활동에서 해상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 원거리 상업활동도 가능하게 하였다. 해로를 통한 상업활동의 주된 대상지는 원칙적으로 낙랑·대방 두 군이었으나, 그것이 소멸된 시점에서는 보다 원거리까지의 상업활동이 필요하였고 육로를 통한 원거리 교역을 가능하게 한 것은 금은의 사용에 기인한 바가 컸다고 보여진다.

물론 기존의 해상교통로를 장악하고 철을 중요한 교역수단으로 삼아 왔던 금관국 중심의 교역권이 일시에 소멸된 것은 아니며 그 명맥은 한동안 유지되었던 것 같다. 아마도 이 기간에 금관국(구야국)을 중심으로 한 재편이 이루어져 보다 강고한 정치적 결합체로서 가야 제 세력이 성립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나 이들은 변화된 교역체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던 탓에 사로국 중심의 교역권에 비하여 이후 발전이 뒤떨어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⁷⁵⁾

4세기 단계에 왜가 신라를 자주 침략하였다. 이때 왜가 신라를 침략한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금은을 획득하기 위해서였다고 추정된다. 이에 신라는 왜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360년대에 고구려가 백제를 압박하자 백제는 가야세력과 왜, 동진과 통교하고 나아가 신라와 화친조약을 체결하여 대응하였다. 이때 신라는 고구려의 직접적인 침략위협을 받지 않았지만, 백제와 화친하면 그의 침략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군사력을 왜의 침략에 집중시킬 수

72) 노중국, 2002, 〈辰·弁韓의 政治·社會구조와 그 운영〉《진·변한사연구》, 경상북도, 268~277쪽.

73) 《三國史記》卷2, 阿達羅尼師今條.

74) 十一年 春二月 下令 農者政本 食惟民天 諸州郡修完堤防 廣闢田野 又下令 禁民間用金銀珠玉(《三國史記》卷1, 逸聖尼師今).

75) 朱甫墩, 1996, 〈麻立干時代 新羅의 地方統治〉《嶺南考古學》19, 16~23쪽.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백제와의 우호를 과시함으로써 왜의 침략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백제의 요구에 응하였던 것이다. 신라와 백제의 관계는 373년 독산성주의 망명사건을 계기로 소원해졌다.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에게 대패한 고구려는 백제를 협공하기 위하여 신라와의 연결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고구려는 신라가 백제와 소원해진 틈을 타서 신라에 접근하였다. 이때 신라 역시 백제가 가야세력·왜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그들 연합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고구려와의 연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두 나라는 377년 무렵에 화친조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구려와 신라가 한편이 되고 여기에 백제-왜-가야 연합세력이 맞서는 국제질서가 성립되었다.

4세기 중·후반에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서로 연합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였던 현실은 신라가 경상도지역을 대표하는 강력한 국가체로 성장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는 4세기 전반에 신라가 가야세력을 압도함으로써 가능하였다. 280년대에 한군현의 한(韓) 지역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구야국(금관가야) 중심의 교역체계가 상당히 위축되었다. 이 틈을 타서 사로국이 낙동강 방면으로 진출하여 구야국을 압도하고 낙동강 수로를 통제하였다. 변한의 중심체였던 구야국의 약화는 3세기 말이나 4세기 초반에 경남 해안 지역에 위치한 포상팔국의 반란을 초래하였고 반란을 진압하는 와중에서 가야세력에 대한 신라의 정치적 간섭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후 가야세력은 신라의 압력을 견제하기 위해 왜나 백제와의 연결을 적극 모색하였고, 왜 역시 새로운 교역루트의 개척을 위하여 금관가야 이외의 가야세력이나 백제와의 연결을 도모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4세기 후반의 국제관계는 포상팔국의 난 이후 신라의 가야세력에 대한 압박, 이에 대한 가야세

력, 왜의 외교적 대응에서 연원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신라는 이처럼 4세기 전반부터 낙동강 수로를 이용한 중계무역을 통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였다. 나아가 4세기 후반~5세기에 걸쳐 신라의 핵심 지배세력인 왜부 소속 김씨왕실은 사왜부를 통합하여 그들의 권력기반을 확장한 다음 국왕의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집권력을 강화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민을 효율적으로 요역에 징발하거나 그들에게서 여러 가지 물자를 수취하는 통치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였다. 4세기 후반 대외교섭에서 공식적으로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한 점, 대수장(大首長)을 의미하는 마립간(麻立干)을 왕호로 사용한 점, 그리고 핵심지배세력이 대형의 적석목곽분을 무덤으로 조영하였던 측면 등은 신라가 4세기 후반부터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내부의 통합을 제고시키면서 성장하였던 사실을 대변해주는 주요 징표들로서 주목된다고 하겠다.⁷⁶⁾

4) 가야에서의 무역체계의 변천

일반적으로 가야(加耶)의 전신인 변한의 중심세력은 김해 구야국(狗倭國)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김해세력이 경주세력과 함께 경상도 일대의 유력한 양대 세력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을 든다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김해의 지리적 특성과 경상도지역의 철자원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집약된다. 즉 당시의 가장 인기 있는 무역품이 철이었고, 경상도지역에서는 당시의 기술개발에서 개발이 용이한

76) 전덕재, 2000, 〈4세기 국제관계의 재편과 신라의 대응〉 《역사와 현실》36.

철자원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었다는 것이 기본적인 요인이다. 이에 못지않게 주목되는 것은 김해의 지리적 위치가 낙동강 중상류 각지로 통하는 관문인 동시에 서해 및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해로상의 요지라는 점이다.⁷⁷⁾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서 창원 다호리 1호분에서 출토된 성운문거울(星雲文鏡)과 오수전(五銖錢), 김해 패총에서 출토된 왕망전(王莽錢), 창원 성산 패총에서 나온 오수전, 김해 양동리 162호분에서 출토된 후한시대의 내행화문 거울(內行花文鏡)과 사유조문 거울(四乳鳥文鏡), 양동리 322호분에서 출토된 동정(銅鼎), 함안 사내리 고분에서 출토된 전한경(前漢鏡)을 본뜬 소형 청동거울(倣製鏡), 김해 대성동 23호분에서 나온 방격규구사신 거울(方格規矩四神鏡) 등은 낙랑과의 교역을 입증해 주는 것들이다.

반면에 김해 지내동 웅관묘에서 부장된 대상구연토기(埴狀口緣土器)나 김해 부원동 패총에서 나온 이단구연 호형토기(二段口緣壺形土器), 창원 삼동동 2호 석관묘에서 나온 청동화살촉(銅鏃), 김해 양동리 200호분에서 출토된 폭넓은 청동투갑창(廣形銅鏃), 고성 동외동 패총의 폭넓은 청동투갑창, 김해 예안리 31호분에서 출토된 내만구연호(內彎口緣壺), 김해 대성동 13호분에서 나온 바람개비형 청동기(巴形銅器), 벽옥계 돌화살촉(碧玉製石鏃), 18호분에서 나온 가락바퀴식 모양 석제품(紡錘車形石製品)등의 왜계 문물은 왜와의 교역 또는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3세기까지의 가야는 낙랑으로부터 무기나 귀중품 등을 사다가 낙동강 수로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경상 내륙지역 곳곳에 팔든지 또는 쓰시

마와 이키를 거쳐 규슈 등의 왜지에 팔아서 막대한 중개무역 이익을 보았고, 그러한 교역은 그들의 철 생산과 더욱 큰 규모로 이루어졌을 것이다.⁷⁸⁾

이러한 기준에서 변한사회 내에서의 김해지역의 비중과 위치를 조 명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교역 가치가 높은 특정자원의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삼국지》의 기록을 보면 “나라에서 철이 나오는데, 한(韓)·예(濊)·왜(倭)가 모두 와서 취한다.”라고 하여 철을 생산하는 국들이 진한인지 변한인지 또는 양쪽 모두인지 불확실하다. 다만 “여러 시장에서 철을 사용하는데, 중국에서 철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고, 두 군(郡)에 공급한다.”라는 설명을 통해 철을 매개로 주변 여러 세력 사이에 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자가 상호 교역되었던 상황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지리적인 여건들을 살펴보면 변한의 국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경상남도 해안 일대와 낙동강 중하류 연안으로 대별된다. 이 가운데 경남 해안 일대의 국들은 서해, 남해,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해로상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교역물자의 운송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김해지역과 거의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동래, 김해 지역이 일본 열도와 거리 면에서 상대적으로 가깝고, 대한해협을 건너는 출발지점이 되기는 했으나 마산, 고성, 사천, 하동 등지가 왜(倭) 또는 중국 군현과 접촉하는 데 지리적으로 특별히 불리하거나 소외되었을 이유는 없다. 그리고 《삼국지》 기록에서도 보이듯이 낙랑, 대방군 지역으로부터 김해에 이르기까지는 선박들이 해안선을 따라 연안항해를 하였다. 그러므로 경남 일대의 국들은 모두가 지리적으로 외부세력과의 접촉이 용이한 개방 상태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즉 철 자

77) 李賢惠, 1998, 〈앞의 책〉, 297~298쪽.

78) 김태식,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2-가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푸른역사, 89~92쪽.

원과 지리적인 조건만으로는 고성, 사천, 마산, 동래 등 경남 해안 일대의 변한 소국들이 김해중심의 무역체계의 하부단위로 편제되어야 할 필요성은 희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국사기》의 포상팔국(浦上八國)의 가라(加羅) 침략 기사를 보면 경남 해안 일대의 국들은 3세기 이후가 되면 오히려 구야국에 대해 경쟁적인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상팔국 가운데 위치비정이 가능한 것은 창원의 골포(骨浦), 고성의 고사포국(古史浦國), 사천의 사물국(史勿國) 등이나 이들은 명칭 자체에서 암시되듯이 해상교통의 중요지점에 위치한 경남 해안 일대의 변한국들로 추정되며, 이들이 김해세력에 도전하였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변한 세력들 가운데서도 낙동강을 통해 남해안과 연결되는 강안(江岸) 좌우의 세력들 즉 양산, 밀양, 창녕, 합천, 고령, 성주 일대의 국들은 남해안 세력과는 사정이 달랐을 것이다. 이들이 대외접촉을 위해 해안으로 출로를 모색한다면 하구의 김해라는 관문을 거칠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김해와 같은 교역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3세기 구야국 수로집단의 세력기반과 활동성격은 이와 같이 변한 사회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구야국이 다른 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세력이라는 것은 인정될 수 있으나, 변한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존재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곧 3세기 변한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대외적인 교역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3세기 후반 진(晉)에 보내는 건사(遣使) 행렬에서 변한이 빠진 것도 마한, 진한과는 달리 변한 사회에는 다수의 국에 대해 대외적 교역활동을 장악하는 조직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데 한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교역중심지의 다원화추세는 제철기술이 확산되면서 철원료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이를 보급하는 공급원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3세기 단계에 포상팔국으로 표현된 해로상의 국들이 구야국에 대해 위협적인 존재로 대두하는 것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해석될 여지가 크다.⁷⁹⁾

변한사회의 성격은 3세기 후반~4세기대를 거치면서 중요한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문헌상으로는 자료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다가, 360년 이후가 되면서 구체적인 변화내용이 기록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313년과 314년에 걸친 낙랑, 대방군의 축출은 한반도 및 일본 열도 내의 세력들에게는 대중국 무역의 일차적 구심점의 소멸을 뜻한다. 특히 변한 지역에서 중국 군현은 다량의 철을 사가는 수요자인 동시에 중요무역품의 공급주체로 기능하였다. 그러므로 중국 군현 축출로 이 지역에 유입되던 중국계 물자가 크게 감소하였으리란 추정은 어렵지 않다. 이러한 특정무역품의 공급단절과 무역상대의 소멸은 전반적으로 이 지역의 무역활동 자체를 후퇴시키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은 고고학 자료를 통해 알 수가 있다. 1~3세기 동안 경남 일대의 분묘에서 풍부하게 발견되는 유리제 장신구들이 4세기대에 들어오면 일정기간 사라지거나 크게 감소한다. 반면에 4세기 후반~4세기 전반 경상도 고분에서는 북방계 갑주(甲冑)가 부장되기 시작한다.⁸⁰⁾ 문헌기록상으로는 아직 신라와 고구려의 접촉관계는 보이지 않지만 경

79) 李賢惠, 1998, 〈앞의 책〉, 299~302쪽.

80) 4세기 전반 내지는 그 이전으로 편년되는 경주시 정래동고분에서 출토된 단갑(短甲)과 경주시 월성로 29호분 출토 단갑은 이 시대 새로이 등장하는 북방계 무기로서 이와 동일한 계통의 투구가 김해 예안리에서 발견되었다.

주 월성로 고분에서는 고구려계 녹유(綠釉)토기가 출토되어 양국의 통교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지배계층의 분묘 부장품의 종류가 바뀐다는 것은 국제간에 거래되던 물품, 무역루트, 무역상대자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중국계 물자의 공급단절과 북방계 유물의 등장은 소극적이거나 고구려 및 신라를 통해 유입되던 새로운 무역품과 이를 매개로 재구성된 새로운 무역루트의 출현을 암시한다.

문헌기록상으로도 무역관계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자료가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4세기에 들면서 왜의 신라 침략 기사가 중단되고 신라와 교빙(交聘)하거나, 신라에 청혼하여 응락을 받는 등, 기원후 345년까지 약 반세기 동안 양자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일본서기》에도 신공기 원년과 5년조에 왜(倭)와 신라가 처음 직접 통교한 내용이 실려 있다.

4세기 전반대의 변화는 중국계 물자를 대신하는 새로운 무역루트의 출현과 고구려-신라-왜라는 무역루트의 개척, 그리고 이로 인한 가야사회의 무역활동 위축으로 집약된다. 중국 군현 축출 이후 대방고지(帶方故地)를 두고 고구려와 대립하던 백제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366년 신라에 래빙(來聘)하고, 368년 신라에 양마(良馬)를 보내는 등 신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근초고왕이 전남 지역의 마한세력에 대한 정복을 발판으로, 가야 지역의 진출을 시도하고, 대왜(對倭) 무역루트 확보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신라와 경쟁적인 관계에서 대립하였다.⁸¹⁾

백제와 신라의 대립구조하에서 나타나는 가야세력의 추이를 보면

81) 李賢惠, 1998, 〈앞의 책〉, 303~305쪽.

처음 백제가 왜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매개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은 김해의 구야국이 아니라 탁순국(卓淳國)이다. 그리고 백제·왜가 신라, 가야를 공격할 때 거점으로 삼은 곳도 탁순국이다. 탁순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대구,⁸²⁾ 칠원⁸³⁾ 등 경상 내륙 지방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문헌기록상 탁순국은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해로상의 중요지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반면 창원설⁸⁴⁾의 경우 이곳은 동래, 울산과 함께 조선시대 왜관(倭館)이 두어진 삼포(三浦) 중의 하나인 내이포(內而浦)가 위치했던 곳으로 해로 교통상 남해안으로부터 일본 열도에 이르는 중요 출발지점의 하나로서 탁순국에 비정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이와 같이 탁순국을 경남 창원 일대로 비정할 경우, 무역문제에서 가야세력권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나누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서부 경남 해안 지역과 김해세력권과의 구분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백제·왜의 공격대상이 된 7국은 경남 일대의 다른 국들과 달리 그 대부분이 김해의 세력기반으로서 이들은 신라중심의 무역기반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370년대까지도 김해의 세력은 낙동강 하류 일대의 중요 국들을 무역기반으로 하여 고구려-신라계의 무역권에 동참하면서 이 전시대의 독자성과 선진성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김해의 무역기반은 369년 백제·왜의 도전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고, 이 지역을 통해 남해안 및 일본 열도로 통하는 무역루트를 장악하려던 신라의 시도도 일시 위축된 것으로 생각된다.

82)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47쪽.

83) 津田左右吉, 1913, 〈任那疆域考〉《朝鮮歷史地理》11, 151쪽.

84) 今西龍, 1970, 《朝鮮古史の研究》, 349~352쪽; 金廷鶴, 1983, 〈加耶史의 研究〉《史學研究》37, 50쪽.

이후 신라는 결국 백제와 대립관계에 있던 고구려군을 끌어들이므로써 낙동강 하류 연안의 가야 각국에 대한 무역권 확보에 일단 성공하였다. 4세기 말엽에 이르면서 낙동강 동안(東岸)토기군의 존재가 출현하고, 이로 인해 김해, 부산지역이 동안권에 흡수되어 지역적 특성을 상실한다는 사실, 그리고 성주 지역의 토기와 묘제가 모두 낙동강 동안의 대구지역과 동일계통으로 나타나는 것 등은 모두 김해의 세력기반이 와해되면서 이 지역의 무역권이 재편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 신라계와 백제계 무역루트가 경쟁하는 이러한 와중에서도 마산, 고성, 사천, 진주 등지의 경남 해안 일대의 국들은 여전히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백제, 왜, 신라 및 낙동강 서안 일대의 가야 각국들과 독자적인 무역활동을 진행하면서 개별적인 세력중심지로 발달하고 있었다. 이는 곧 가야세력권 내에 백제-가야-왜라는 독자적인 무역루트가 공존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이후 고구려의 압력이 가중되고 고령세력의 주도하에 경상 내륙 지방의 가야 각국들이 결집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역학관계를 형성해 나갔다.⁸⁵⁾

결국 3세기대의 구야국(狗倭國)은 남해안 지역에서 관문사회(關門社會: Gateway community)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면서 물자의 집산(集散)과 보급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4세기대에 들어와서 낙랑·대방군의 축출로 변진의 철과 중국산 물자를 매개로 하는 구야국 중심의 국제무역 체계가 후퇴되고 고구려-신라-가야-왜로 연결되는 새로운 무역루트와 창원의 탁순국을 매개로 백제-가야-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역루트가 개척되었다고 할 수 있다.

85) 李賢惠, 1998, 〈앞의 책〉, 314~315쪽.

3. 5~6세기 동아시아의 정세변화와 무역

1) 고구려의 반격과 백제의 시련

백제의 해양강국으로의 부상은 고구려의 일시적인 후퇴와 신라의 어쩔 수 없는 묵인 하에서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만약 고구려의 반격이 가해지고 신라가 이를 부인하는 행동 표시를 할 때는 의외로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소수림왕대부터 준비된 고구려의 대반격은 광개토왕대부터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동북과 서북으로 비려와 거란족을 정벌한 연후에, 남으로 백제를 향한 공격 자세를 취하였다. 백제와 가야와 왜의 무역망에 포위되어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있던 신라의 내물왕은 392년에 왕족인 실성(實聖)을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는 질자(質子)외교를 통해서 외교적 고립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이어 396년에 남으로 백제를 공략하기 시작하여 58성 700촌을 점령하는 대전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되자 백제 주도의 해양무역망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해오

던 왜는 기왕의 무역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한 고구려의 남진과 신라의 대고구려 결탁의 추세를 지켜보면서 군사적 위협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차에, 왕자까지 동원하여 상황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실감나게 설득해 오는 백제의 적극적인 외교공세에 설복당하여, 결국 백제의 정치·군사적 연대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를 계기로 백제와 왜는 일종의 군사적 동맹관계로까지 발전하였다. 두 나라는 적대해 오던 신라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한편, 고구려에 대해서도 바다를 통해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중국-백제-가야-왜로 이어지는 이전의 해양무역질서를 회복하려 하였다.

413년에 왕위 오른 장수왕은 평양천도를 계기로 본격적인 남하정책을 펼쳐 나갔다. 그리하여 급기야 475년에 고구려는 백제 수도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기에 이르렀고, 백제는 금강 변에 위치한 웅진으로 천도해 갔다. 이로써 고구려는 신라와 가야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함에 이어 백제와 왜를 압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4세기 후반에 고구려의 기세를 꺾고서 동북아 국제 해양무역을 주도하려던 백제의 꿈과 야망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갔다.

한편 고구려의 반격을 받아 백제 주도의 국제무역망이 무너져가자, 그간 백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국의 선진문물을 공급받아오던 왜는 백제 주도의 반고구려 국제연대에는 동참하되, 한편으로 백제를 통하지 않는 대중국 직교역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즉 3세기의 전설적 여왕 비미호(卑彌呼)의 이름이 《삼국지》에 명기된 후에 중국사서에 사라졌던 왜왕의 이름이 5세기에 들어 재등장한 것에서 이러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송서(宋書)》·《남제서(南齊書)》 등의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찬(讚)·진(珍)·제(濟)·흥(興)·무(武) 등의 ‘왜오왕(倭五王)’이 그것이다.⁸⁶⁾ 왜의 이러한 대중국 무역의 독자적 시도는 영산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는 장고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 해양강국 재건을 위한 백제의 노력

고구려의 한성점령은 한반도 연안항로의 경색을 더욱 부채질했고, 당연히 동북아 국제무역은 더욱 위축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여러 국가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반고구려 여론은 더욱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는 당분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고구려 국제연대망의 구축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무령왕은 501년에 즉위하자 먼저 동성왕을 죽인 백가(昔加)의 세력을 타도하고, 투항하는 백가를 백강에 던져 버렸다.⁸⁷⁾ 그리고 왕 4년에 마나군(麻那君)을, 그 이듬해엔 아들 사아군(斯我君)을 왜에 파견하여⁸⁸⁾ 왜와의 관계 복원에 적극성을 보였다. 509년에는 왜가 사신을 보내왔으며, 이후에 양국 간의 사신·학자·장군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⁸⁹⁾ 508년에는 탐라와도 처음으로 통교 관계를 개설했다.⁹⁰⁾ 이로써 무령왕은 우선 남방의 항로만은 완전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⁹¹⁾

이를 바탕으로 무령왕은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

86) 姜鳳龍, 2002, 〈앞의 논문〉, 85-87쪽.

87) 《三國史記》卷26, 武寧王 卽位年條.

88) 《日本書紀》武烈紀 6·7년조.

89) 《日本書紀》繼體紀 3년, 6년 4월·12월, 7년 6월조.

90) 《日本書紀》繼體紀 2년 12월조.

91) 姜鳳龍, 2002, 〈앞의 논문〉, 92-93쪽.

으며,⁹²⁾ 중국 남조의 梁과도 자신감 넘치는 통교를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즉 521년에 무령왕은 양(梁)에 표문을 올려 고구려를 여러 차례 무찔렀음을 과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양서(梁書)》에는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다.”⁹³⁾고 적고 있다.

웅진 천도 이후 백제는 한성 함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왕실의 권위 회복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대중국 교섭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당시 일본 열도와 남중국과의 교섭은 ‘북규슈—한반도의 서남해안—발해만—산둥반도—남경’으로 이어지는 항로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백제 또한 대남조(對南朝) 교섭에 있어서 이 항로를 이용하였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이 항로는 고구려연안을 통과하는 연안항로였으므로, 백제의 남조교섭은 고구려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476년 “3월에는 사신을 송(宋)에 보내어 조공하려고 하였는데, 고구려가 이 길을 막아서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와 484년에는 “7월에 내법좌평 사약사(沙若思)를 시켜 남제(南齊)에 가서 조공하게 하였는데, 약사(若思)가 서해 중에 이르러 고구려병을 만나 가지 못하였다.”라는 기사에서 보이듯이, 백제는 고구려 수군의 대중국 항로의 차단으로, 국제적 고립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백제는 478년 왜왕 무(武)의 상표문에 보이듯이, 백제에 도착한 왜사(倭使)를 ‘방(舫)’이라고 표현된 대형 선박을 이용하여 유송(劉宋)으로 보낼 정도의 수송능력과, 또 488~490년 해전에서 알 수 있듯이 북위(北魏)선단을 격파할 정도의 뛰어난 해상전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백제는 중국 남조정권과 활발하게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백제와 중국 남조와의 활발한 교섭은 문헌이나 고고학 자료를 통해

92) 《三國史記》卷26, 武寧王 즉위년 11월, 2년 11월, 7년 10월, 12년 9월.

93) 《梁書》列傳 諸夷 百濟條.

알 수 있다. 먼저 문헌에서는 성왕이 양(梁)에 사신을 파견하여 모시박사(毛詩博士), 열반경(涅槃經) 등의 경의(經義)에 밝은 학자 및 공장(工匠)·화사(畫師)를 요청하여 실현된 것이라든지, 그 뒤 강예박사(講禮博士)를 청하자 육후(陸詡)가 백제로 온 사실 등은 양과의 관계가 긴밀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고고학 자료에서도 보이는데, 무령왕릉의 구조와 그 부장품이 양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과, 익산 입점리 고분군에서 남조의 청자가 출토된 점에서도 입증이 된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입점리 지역은, 그 지리적 위치로 보아 수도의 관문을 방어 방비하는 것 외에 대중국 무역 기지로서의 역할도 하였으리라 짐작된다.

〈표〉 웅진시대의 대중관계

번호	연도	기 년		주요내용	출전
		백제	중국		
1	476	문주왕 2년	원휘 4년	조공(송)	삼국사기
2	480	동성왕 2년	건원 2년	조공(남제)	南史
3	480			봉책(남제)	
4	484			기타 청구(남제)	삼국사기
5	484	동성왕 6년	영명 2년	허가(남제)	
6	484			조공(남제)	
7	486	동성왕 8년	영명 4년	조공(남제)	
8	488	동성왕 10년	영명 6년	전쟁(위)	南齊書
9	490			전쟁(위)	
10	490	동성왕 12년	영명 8년	관작청구(남제)	
11	490			봉책(남제)	
12	490			봉책(남제)	
13	495	동성왕 17년	건무 2년	관작청구(남제)	
14	495			봉책(남제)	
15	502	무령왕 2년	천감 1년	봉책(양)	梁書
16	512	무령왕 12년	천감 11년	조공(양)	
17	521	무령왕 21년	보통 2년	조공(양)	冊府元龜
18	521			봉책(양)	
19	522	무령왕 22년	보통 3년	조공(양)	梁書
20	524	성왕 2년	보통 5년	봉책(양)	
21	534	성왕 12년	중대통 6년	조공(양)	

해양강국을 재건하려는 백제의 꿈은 무령왕대에 이루어졌다. 신라·가야·왜, 그리고 중국 왕조와의 연맹관계를 회복·강화하고, 고구려를 군사적으로 압도하면서, 서해와 남해의 연안항로를 재개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백제는 다시 강국이 되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고 동아시아 국제무역을 주도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성왕대까지 이어졌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곧 바로 신라의 도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즈음 신라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특히 532년에 금관가야를 복속시켜 해양문화와 해양진출의 맛을 실감하던 중이었다. 그리하여 백제와 신라는 서로 라이벌 관계를 강하게 의식하면서도, 연안항로의 경색 국면 타개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해 의기투합하여 고구려의 공격에 힘을 합쳤다.

마침내 551년에 백제와 신라 군대의 고구려 공격에 의해 백제는 한강하류지역을, 신라는 한강상류지역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진흥왕의 공격에 허를 찔린 백제는 성왕이 554년의 관산성(오늘의 충청도 옥천)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한강 하류 지역도 신라 차지이 되었다. 신라의 한강 유역 점령과정과 의미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다시 살펴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신라는 중국과 연결할 수 있는 해양 통로를 확보하였으며, 삼국통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로 백제는 다시 좌절에 빠졌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3) 신라의 동해 제해권 확보와 한강 유역 점령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라의 질적 변화는 4세기부터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질적 변화가 정치체제에 반영되어 왕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국가의 체제가 완성된 것은 중고기(中古期)라고 할 수 있다. 중고기란 《삼국유사》에서 법흥왕대부터 진덕여왕대에 이르는 약 140년간을 지칭한 용어인데, 이 시기는 흔히 고대국가의 성립기라 부르고 있다.⁹⁴⁾ 이 중에 고대국가 체제의 근간이 완성된 시기가 지증왕대와 법흥왕대이다. 물론 이후 진흥왕·진평왕·선덕여왕·진덕여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정치제도는 보완·정비되고 무열왕과 문무왕대에는 또다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지만, 중고기 정치체제의 근간은 법흥왕대의 율령으로 일단락된다고 할 수 있다.

법흥왕대에는 지증왕대의 업적을 토대로 병부의 설치, 율령의 반포, 불교의 공인, 상대등의 설치, 금관가야의 병합, 연호의 사용 등 국가체제의 정비와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일련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들 정책의 의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라가 대내적으로는 왕권이 확립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대등한 국가임을 내세우면서도 또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이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진흥왕대(540~576)에는 정복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고구려가 소수림왕대의 대내적인 정비단계를 거쳐 광개토왕·장수왕대에 이르러 광범위한 영역을 확보하여 동아시아의 강자로 등장하는 것과 비슷하다.⁹⁵⁾

신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삼국 가운데 대중국 교섭이 가장 늦었으며, 고구려의 안내로 대중국 교섭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신라가 처음으로 중국(前秦)과 교섭할 시기인 내물왕(356~402) 때는 고구려의 광개토왕(391~413) 때여서 그 정치적 간섭을 받고 있어, 고구려 사신을

94) 金哲俊, 1990, 《韓國古代國家發達史》《韓國古代史研究》, 서울대 出版部, 51쪽.

95) 이우태, 1997, 〈신라의 융성〉《한국사》7-삼국의 정치와 사회Ⅲ 신라·가야-, 국사편찬위원회.

따라 당시 서역문물의 집합소인 장안에 갈 수 있었다.⁹⁶⁾ 신라는 전진과의 교섭 이후 법흥왕 8년(521)의 양나라와의 교섭까지 140여 년간 중국과 교섭이 없었으며, 그 후 진흥왕 25년(564) 이후 진나라와의 계속된 교섭까지 중국과의 관계가 없었다.

이상에서 5~6세기 신라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무역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검토해 보겠다. 신라의 영토확장 또는 대외교섭의 루트 확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동해안 지역으로의 진출을 통한 동해 해상권의 장악, 한강 유역의 점령을 통한 황해 해상권의 장악, 가야 지역으로의 진출을 통한 대왜(對倭) 교섭루트의 확보 등이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동해안 지역의 점령과 울릉도의 복속을 통한 동해해상권의 장악이다. 고구려에 예속되어 어염(魚鹽)을 바쳤던 동예(東濊)가 신라에 의해 위협을 받자 고구려는 어염 등의 해산물의 확보라는 측면의 문제 못지않게 동해 제해권의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신라 눌지왕대 이후 고구려 장수왕과 문자왕의 통치시기가 되면서 고구려의 동해안 진출이 본격화되고, 울진·영해·영덕 지역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연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해안 지역은 5세기 내내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6세기대에 접어들어 신라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다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신라는 경주의 지역적 위치가 동해 바닷가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왜구의 침입에 대한 적절한 대응, 나아가 동해안 제해권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

기 때문에 암각화에 나타나는 해양문화의 기반을 갖고 있었던 집단이 활동할 공간이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석탈해의 등장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해양 및 어로문화의 기반을 수용한 신라는 동해안 지역으로의 진출에 일찍이 관심을 기울여 지증왕대에 오면 삼척에 悉直州, 강릉에 阿瑟羅州 설치, 阿尸村에 소경을 설치하고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을 정벌함으로써 동해의 제해권과 동해안 지역을 확보하였다.

신라의 동해안 제해권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은 지증왕대의 이사부에 의한 우산국정복 사건이다. 이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7. 우산국이 귀부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기로 했다. 우산국은 명주(溟州)의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 섬으로 혹은 울릉도라고도 한다. 면적은 사방 100리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항복하지 않다가 이찬(伊漣) 이사부(異斯夫)가 하슬라주(何瑟羅州)의 군주(軍主)가 된 뒤 우산인들이 어리석고 사나우므로 위력으로써 복속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계략으로 복종시키기로 했다. 곧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서 전선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이르러 거짓말로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맹수를 풀어 모두 밟아 죽일 것이다.”고 하였다. 그 나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곧 항복하였다.⁹⁷⁾

2-8. 우산국이 가장 왕성했던 시절은 우해왕이 다스릴 때였으며, 왕은 기운이 장사요, 신체도 건장하여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주름잡고 다녔다. 우산국은 작은 나라지만 근처의 어느 나라보다 바다에서는 힘이 세었다. 당시 왜구는 우산국을 가끔 노략질하였는데 그 본거지는 주로

96) 申滢植, 1991, 《新羅와 西域》《新羅文化》8, 121쪽.

97) 《三國史記》卷4, 智證王 13년 6월.

대마도였다. 우해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대마도로 가서 대마도의 수장을 만나 담판을 하였고, 그 수장은 앞으로 우산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항서를 바쳤다. 우해왕이 대마도를 떠나 올 때 그 수장의 셋째 딸인 풍미녀를 데려와서 왕비로 삼았다. 우해왕은 풍미녀를 왕후로 책봉한 뒤 선정을 베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치를 좋아했다. 풍미녀가 하는 말이면 무엇이든 들어주려 했다. 우산국에서 구하지 못할 보물을 풍미녀가 가지고 싶어 하면, 우해왕은 신라에까지 신하를 보내어 노략질을 해 오도록 하였다. 신하 중에 부당한 일이라고 항의하는 자가 있으면 당장에 목을 베거나 바다에 처넣었으므로, 백성들은 우해왕을 매우 겁내게 되었고 풍미녀는 더욱 사치에 빠졌다. “망하겠구나.” “풍미 왕후는 마녀야.” “우해왕이 달라졌어.” 이런 소문이 온 우산국에 퍼졌다. 신라가 쳐들어오리라는 소문이 있다고 신하가 보고를 하였더니, 우해왕은 도리어 그 신하를 바다에 처넣었다. 왕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자는 죽였다. 이를 본 신하는 되도록 왕을 가까이하지 않으려 했다. 풍미녀가 왕후가 된 지 몇 해 뒤에 우산국은 망하고 말았다.⁹⁸⁾

2-7에 의하면 우산국은 면적이 사방 100리에 불과하지만 지세가 험난하였고 사람들은 용맹하여 신라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던 하슬라주 군주의 위력으로도 복종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계략으로 복종시켰다고 했다. 신라의 동해안 지역 장악은 삼국통일의 역량확보에 기반이 되었으며, 당시 하슬라주의 군주는 최전방의 군사집단이요 최정예부대의 지휘자였을 것이다. 신라의 최전방 군사력으로써 우산국을 정벌하기에 용이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산국의 군사력과 문화가 상

당히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2-8은 우해왕과 왕비인 풍미녀에 관한 설화이다. 이 설화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온 과정도 불분명하고 또 그 내용도 많이 윤색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첫째 우산국에 관한 설화가 울릉도에서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는 점이고, 둘째 우산국과 왜구의 본거지인 대마도의 관계 설정—혼인동맹에 대한 점이다. 전자는 우산국의 존재에 대해서 울릉도민의 자긍의식 발로의 소산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후자는 해상세력 국가인 우산국과 대마도—왜국의 혼인동맹을 상징하고 있는 우해왕과 풍미녀의 혼인과정을 밝혀주고 있다는 점이다.⁹⁹⁾

이 설화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우산국이 대마도를 정벌하는 등 동해안 지역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삼척, 강릉 등 동해안에 면한 지역을 확보한 신라의 지증왕으로서는 동해안 제해권을 확보하지 않는 한 동해안 지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며, 이로 인해 결국 우산국의 정벌에 나서게 되었을 것이다.

신라는 우산국정벌을 통해 동해의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이후 법흥왕대의 沙伐州 군주 파견, 금관국 복속, 진흥왕대의 한강 유역·낙동강 유역의 확보·안변에 比列忽州 설치·가야 정벌·북한산비·함흥 지역의 황초령비·마운령비 등 진흥왕 순수비의 설치와 같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¹⁰⁰⁾

신라무역사에서 또 들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은 한강 유역 점령이다.

99) 김윤곤, 1998, 〈우산국과 신라·고려의 관계〉 《울릉도·독도의 종합적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30쪽.

100) 김皓東, 2001, 〈삼국시대 新羅의 東海岸 制海權 확보의 의미〉 《大丘史學》65, 33~35쪽.

98) 울릉문화원, 1997, 《鬱陵文化》2, 146~148쪽.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한 진흥왕(540~576)이 등장할 무렵 고구려는 왕위계승 문제로 왕실의 내분이 일어나 국내정세가 불안한 시기였다. 한편 이 무렵 백제는 성왕(聖王)이 수도를 웅진(熊津)에서 사비로 천도하고, 밖으로 양(梁)에서 새로운 문물을 흡수하였으며, 왜(倭)와도 친선을 두터이 하였다. 그리고 신라와는 가야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고구려의 남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내정비와 신라와의 친선을 바탕으로 고구려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의 땅을 회복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먼저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사이의 군사 충돌을 틈타 백제와 고구려 영역을 잠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진흥왕 11년(550) 백제와 고구려가 도살성(道薩城: 천안 또는 증평 근처)과 금현성(金峴城: 전의)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틈을 타서 이사부가 두 성을 빼앗았다.¹⁰¹⁾ 550년 1월 백제의 고구려 도살성 공격 및 3월 고구려의 백제 금현성 공격과 관련된 《삼국사기》 기사에 신라의 움직임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백제와 고구려 사이의 도살성·금현성 전투에서 두 나라 군세가 쇠진한 틈을 타서 이 두 성을 차지했다는 것은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충돌에 신라도 개입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⁰²⁾ 이는 모두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요충지가 되는 곳으로 이 지역의 확보를 위해 고구려와 백제가 공방을 벌이는 동안 신라가 이를 모두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라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고구려·백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백제의 입장으로는 곧 벌어질 한강 유역에 대한 신라와의 합동 공격을 위해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고구려는 당시 왕위계승을 둘러싼 내분과 대외적으로 돌궐의 흥기로 인한 상황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어쨌든 진흥왕 12년(551) 신라와 백제는 한강 유역의 공격에 나서게 된다. 신라는 거칠부 등 여덟 장수를 보내 죽령(竹嶺) 이북 고현(高峴) 이내의 10개 군현을 탈취하였고, 백제는 평양을 격파하였다. 이번 군사행동에서도 역시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을 먼저 공파하자, 신라는 그 승세를 타고 죽령 이북의 10개 군현을 공략한 것이다.



단양적성비

101) 《三國史記》卷4, 眞興王 11年條.

102) 鄭雲龍, 1996, 《5~6世紀 新羅 對外關係史 研究—高句麗·百濟·伽倻關係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25~126쪽.

6세기 전반 고구려의 군사적 압박을 극복한 신라 세력의 팽창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551년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파악되는 단양 신라적성비(丹陽新羅赤城碑)이다. 이 비가 있는 적성산성은 남한강의 상류·하류 방면 및 죽령·벌령 등을 공제할 수 있는 수륙 교통의 요충에 자리 잡고 있다. 또 산성의 동단은 산의 정상부로부터 완만하게 뻗어 내려가는 능선에 해당되며, 성 외부에서 가장 쉽게 성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죽령 방면의 교통로와 연결된다.¹⁰³⁾

이 비는 신라가 6세기 전반의 어느 시기엔가 죽령을 넘어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단양지역을 공취하고 적성산성을 경영했음을 알려준다. 이는 곧 신라가 영월—단양—충주로 이어지는 고구려의 작전선을 차단하며 중원지방을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⁰⁴⁾

그리고 백제가 공취한 지역에 대해 《일본서기》 흠명천황 12년조에 한성(漢城)·평양(平壤) 등의 6개 군을 취하였다고 했으니 이는 한강 하류 지역으로 현재의 서울을 포함한 지역일 것이다. 이로써 백제는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한강 유역의 옛 땅을 되찾게 된 것이다.

나제 동맹군이 한강 유역에 진출함으로써 고구려의 대나제(對羅濟) 전선은 중원 고구려비의 건립 이후 최대로 북상되었다. 고구려의 입장에서 더 이상 나제동맹군의 고구려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더욱이 양원왕(陽原王) 8년(552)부터 벌어진 서부 및 북부 국경선 방면에서의 거란·돌궐과의 압력과 분쟁으로 고구려는 더욱 여력이 없었다.

《삼국유사》 권1 진흥왕조에 “이전에 백제가 신라와 더불어 군사를

합쳐 고려를 정벌하려고 도모하였다. 이에 대해 진흥왕이 말하기를 나라의 흥망은 하늘에 달렸는데 만약 하늘이 아직 고구려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바랄 수 있겠는가 이에 이런 말을 고구려에 통보하니 고구려가 그 말에 감격하여 신라와 통호하였다. 그런 까닭에 (백제군이) 침공해 왔다.”라고 나온다. 그런데 위의 《삼국유사》 기사는 신라와 백제와의 전쟁의 원인으로 신라가 고구려와 통호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다. 고구려는 신라와 밀약 혹은 묵시적 동의에 힘입어 나제동맹 파괴 행위와 함께 한강 유역 장악 의도를 현실화하려 하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551년 신라와 백제의 동맹군이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수 유역을 분할 점령하였으며, 2년 뒤인 553년 신라는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지역을 점령하였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554년 백제는 대가야군 및 왜와 합세하여 신라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에 나섰다. 결국 554년 나·제 간의 관산성(지금의 옥천) 회전은 나제동맹 와해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며, 이후 신라의 한강 유역 영유는 부동의 기정사실이 되었다.¹⁰⁵⁾

새로이 확보한 한강 유역을 통치하기 위해 신라는 이 지역에 신주(新州)를 설치하고, 진흥왕 16년(555)에는 왕이 친히 북한산에 순행하여 강역을 확정지었는데, 현재 서울에 있는 진흥왕의 북한산비는 이때에 세운 것이다.

동왕 18년에는 신주를 폐하고 북한산주(北漢山州)를 두었으며, 동왕 29년에는 북한산주(北漢山州)를 폐하고, 남천주(南川州: 오늘날의 이천)를 설치하였다가 진평왕(眞平王) 16년(594)에는 남천주를 폐하고 다시 북한산주를 두었다.

103) 車勇杰·趙詳紀, 1991, 《丹陽 赤城 地表調査報告書》, 충북대학교 박물관, 25쪽.

104) 朴京哲, 2000, 〈中原文化圈의 歷史的 展開—그 地政學的·戰略的 位相 變化를 中心으로—〉《先史와 古代》15, 288쪽.

105) 朴京哲, 2000, 〈앞의 논문〉.

이렇게 자주 주(州)를 폐하고 설치한 것은 주의 주치(州治)를 옮긴 데 지나지 않는데, 이는 신라가 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매우 고심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생각된다. 신라로서는 한강 유역을 실질적인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했던 것이며, 이는 고구려가 이 지역을 남진 정책의 기지로 삼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라도 북진정책의 기지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제는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하였고, 고구려도 잃어버린 한강 유역을 다시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신라의 북변을 침입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영양왕때 온달 장군의 출정이다. 온달은 자청하여 군대를 이끌고 오면서 맹세하기를 “계립현(鷄立峴)과 죽령(竹嶺)이서의 땅을 우리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며 비장한 각오로 출발하였으나, 아단성(阿旦城: 단양의 영춘면) 싸움에서 적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다.

신라의 한강 유역 점령은 경제적·군사적 팽창의 계기가 되어 대가야 정벌로 결실을 맺었다. 더구나 한강 유역은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 있어서 최후로 당군을 축출시킨 곳으로 신라는 한강 유역 경영에 큰 비중을 두었다.

무역과 관련한 한강 유역의 점령의미는 바다를 통한 대중국(對中國) 통로의 확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고구려나 백제는 이 지역을 상실한 후 당항성을 통해 신라의 대중통로의 차단을 시도했던 것이다.

2-9. 8월에 백제가 고구려와 공모하여 당항성을 막고 신라의 대당통로를 끊으려 하여, 왕이 당 태종에 위급함을 알렸다.¹⁰⁶⁾

106) 《三國史記》卷5, 善德王 11年.

위의 기사에서 당항성의 중요성을 살필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내용이 《구당서(舊唐書)》에도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대중통로의 확보는 고립에 빠진 신라로 하여금 외교적 활동을 통해 국가를 수호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백제는 항상 서해안 일대를 봉쇄하여 신라인의 대중교섭을 저지하려 했던 것이다.

결국 진흥왕 14년(553)의 한강 유역 확보는 신라의 중국관계 나아가 무역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진흥왕 재위 25년에 북제에 조공하여 책봉을 받은 이후 26년부터는 진(陳)나라에 매년 입조(入朝)함으로써 조공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리하여 진흥왕 때만도 북제에 3회, 진에 6회 사절을 파견하였으며, 진평왕 때에도 2회의 조공사절단이 진에 파견되었다.

한편 국인(國人)의 추대로 왕이 된 진평왕은 수나라와의 외교관계를 맺기 전인 재위 15년까지 위화부(位和府)·선부(船府)·조부(調府)·승부(乘府)·영객부(領客府) 등 5개의 중앙부처를 신설하여 왕권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¹⁰⁷⁾ 무엇보다도 진평왕은 상대등 노리부와 병부령 김후직 등 친위세력을 중심으로 진지계(眞智系)를 견제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강화시켰으며, 재위 16년 이후 적극적인 친수(親隋)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가운데 선부는 배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부서로 한강 유역의 확보를 기반으로 한 신라의 해외진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진평왕대의 활발한 해외교류의 일단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다음 사료에 보인다.

107) 李基白, 1974, 〈稟主考〉《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41쪽; 李晶淑, 1986, 〈新羅 眞平王代의 政治的 性格〉《韓國史研究》52, 19~22쪽; 金杜珍, 1990, 〈新羅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改革〉《震檀學報》69, 19~21쪽; 李明植, 1990, 〈新羅中古期の 王權強化過程〉《歷史教育論集》13・14, 325쪽.

2-10. 9년 7월에 대세(大世)와 구칠(仇柒)이라는 두 사람이 해외로 갔다. 대세는 내물왕의 7세손으로 이찬 동대(冬臺)의 아들인데, 자질이 준수하여 어렸을 때부터 큰 뜻을 가지고 교류를 하던 담수(淡水)스님과 말하기를, “신라의 산골 속에서 일생을 보낸다면, 저 바다의 넓음과 숲의 큼을 알지 못하는 연못 속의 물고기·새장 안의 새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내 장차 배를 타고 바다로 가서 오·월(중국 남부 지방)로 들어가 스승을 찾고 명산에서 도(道)를 구하려 한다. 만일 보통사람을 면하여 신선을 배울 수 있다면 바람을 타고 상공 밖으로 날아갈 터이니, 이야말로 천하의 장관일 것이다. 그대는 나의 뜻을 따르겠는가.”라 하였다. 담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마침 구칠이라는 사람을 만나니 (사람됨이) 절도가 있었다. 드디어 그와 더불어 남산에 있는 절에 놀러갔다.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쳐 낙엽이 마당의 고인 물 가운데 뗏다. 대세가 구칠에게 말하였다. “내 그대와 함께 서쪽으로 갈 뜻이 있으니 지금 각기 앞세 하나씩을 취하여 이를 배라고 하여, 누가 먼저 가고 뒤에 갈 것인지를 해보자” 조금 있다가 대세의 앞이 먼저 앞에 왔다. 대세가 웃으며 “내가 먼저 갈 것이다.”라 하였다. 구칠이 화를 내면서 “나 또한 남자인데 못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였다. 대세가 (비로소) 그와 더불어 갈 수 있음을 알고, 가만히 자기의 뜻을 말하였다. 구칠이 이에 “이야말로 나의 소원이다.”하고, 드디어 서로 뗏을 삼아 남해에서 배를 타고 떠나간 후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¹⁰⁸⁾

위의 사료에 따르면 진평왕대에 대세와 구칠이라는 사람이 큰 뜻을 가지고 중국 남부 지방인 오·월로 갔다고 한다. 이 기록은 한강 유역

의 점령을 통해 대중국 교섭의 루트 확보를 바탕으로 한 신라인의 해외진출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생각된다.

이후 신라가 대중국 교섭에서 고구려·백제에 비해 우위를 점하였음은 당으로 파견한 사절단의 회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진평왕 43년(621)에 당에 처음으로 사절단을 파견한 이래 진평왕 54년(632)까지 12년간 8회에 걸쳐 사절이 파견되었으며, 선덕왕 16년간(632~647)에 10회, 진덕왕 8년간(647~654)에도 9회, 그리고 무열왕 8년간(654~661)에도 6회, 문무왕 8년간(고구려 정벌까지)에도 3회의 사절단이 파견되었다. 당의 건국에서 고구려정벌 이전까지 신라의 사절파견 회수는 총 37회로, 같은 기간 고구려의 25회(영류왕 재위기간 15회, 보장왕 재위기간 10회), 백제의 22회(무왕 재위기간 15회, 의자왕 재위기간 7회)를 크게 상회한다.

5~6세기 신라 무역사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건은 가야 지역으로의 진출이다. 6세기에 들어오면 가야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크게 변하였다. 한강 유역을 잃은 백제는 그 보상을 낙동강 유역의 가야 땅에서 찾으려 하여 이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꾀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백제의 움직임은 신라를 자극하게 되었다. 더욱이 백제가 신라를 견제할 목적으로 가야에 대한 강한 야욕을 품고 있던 왜를 끌어들이게 되자 가야 여러 나라는 또 다시 격렬한 국제관계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백제의 적극적인 가야 진출에 대해 가야 여러 나라의 맹주인 대가야가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법흥왕 9년(522) 대가야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혼인을 요청한 것은 바로 백제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신라에 접근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신라는 이 제의를 받아들여 이찬 비조부(比助夫)의 누이동생을 대가야에 보냈다.

108) 《三國史記》卷4, 眞平王 9年.

그 이후 이찬 비조부의 누이와 함께 가야 지역으로 파견된 신라인 종자(從者) 100명의 공복(公服)이 문제가 되어 대가야와 신라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신라는 한 때 동맹을 파기하고 왕녀를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¹⁰⁹⁾ 이러한 요구는 대가야에 의해 거부되지만 신라는 이를 빌미로 8개의 성을 함락시켰다. 이렇게 가야의 동남부 지역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킨 신라는 법흥왕 19년(532)에 드디어 김해의 금관가야를 병합하게 된다.¹¹⁰⁾

신라의 금관가야 정복 당시 주목되는 점은, 투항한 금관국의 지배층에 상당히 우대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에서는 금관국의 왕인 구해(仇亥)에게 본국의 땅을 식읍으로 하사하여 그 지배권을 허용한 것처럼 기록하였으나, 실상은 《삼국유사》¹¹¹⁾에 나오는 대로 구해의 형제인 탈지(脫知)에게 금관국의 지배를 맡기고 구해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경주로 이주시킨 것이 사실일 것이다. 신라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복속 지배층의 최고지배자를 본래의 지배기반으로부터 유리시켜 더 이상 위협세력으로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라고 볼 수도 있다.¹¹²⁾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낙동강과 남해안의 교통상의 요충지이자 대왜(對倭) 무역창구인 김해 금관가야의 지배층을 포섭하려는 의미가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신라에 복속된 여러 군장들에게 저택과 전장을 하사하여 경주에 머무르게 한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이었던 구해의 아들 무력(武力)과 그의 아들인 서현(舒

玄), 그리고 그 아들 김유신 등처럼 신라의 지배층인 진골에 편입된 경우는 없었다.

무역루트로서의 가야의 위치에 대해서는 한반도-일본으로 이어지는 루트뿐만 아니라 요동 지방-한강 유역-낙동강 지역-일본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시아 무역루트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라는 가설이 제기된 바 있다. 즉 소백산맥을 분수령으로 하여 북서쪽으로 흐르는 남한강과 남쪽으로 흐르는 낙동강이 있는데, 이 두 하천은 영남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원거리 무역로의 발달에 매우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하천은 조령(鳥嶺)을 경계로 40km 떨어져 있지만, 이것을 연결하면 대략 500km의 종관수송로(縱貫輸送路)가 한반도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그것을 전제로 낙랑군과 변진·진한 지역 및 왜국과의 사이에 원거리 무역로가 존재하였다고 한다.¹¹³⁾

가야의 지정학적 위치를 검토할 때, 이 같은 가설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야의 입지는 낙동강 하류에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왜에 접하는 워크포인트(work-point)에 위치하여 대안의 왜에 대한 물자유통의 집산지로서, 왜에게는 선진문물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창구로서 기대되는 곳이었다.¹¹⁴⁾ 나아가 동북아시아 무역로의 중요 거점 가운데 하나였다.

이후 신라는 관산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여세를 몰아, 가야 지방에까지 손을 뻗쳐 다음해인 진흥왕 16년(555)에는 비사벌(오늘날의 창령)에 하주(下州)를 설치하였다. 신라는 북방에 대한 조치를 어느 정도 강화한 다음에, 진흥왕 22년(561)에 이르러 창녕지역에 진흥왕 및 사방

109) 《日本書紀》卷17, 繼體天皇 23년 3월.

110) 《三國史記》卷4, 법흥왕 19년.

111) 《三國遺事》卷2, 紀異2, 駕洛國記.

112) 이우태, 1997, 〈앞의 책〉.

113) 崔永俊, 1990, 《嶺南大路—韓國古道路의 歷史的 地理的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14) 李成市, 2002, 《新羅의 國家形成と加耶》《倭國と東アジア—日本の時代史 2—》, 吉川弘文館, 280쪽.

군주가 모여 무력시위를 하고, 다음해에 이사부가 이끄는 군대가 가야 연맹의 근거지인 대가야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결국 신라는 중고기 때 국가체제의 정비와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일련의 정책을 통해 영토확장을 하였다. 활발한 영토확장을 통해 한강 유역,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안 지역, 낙동강 하류의 가야 지역을 석권한 신라는, 대중국·대왜무역의 루트를 장악하여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졌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물류·무역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3장 남북국시대의 무역

윤재운(고구려연구재단)

1. 남북국시대 무역형태와 무역품

1) 무역형태

(1) 공무역

남북국시대의 무역형태는 크게 무역을 행한 주체에 따라 공무역(公貿易)과 사무역(私貿易)으로 나눌 수 있다. 공무역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조공(朝貢)과 책봉(冊封)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물자교역과, 호시(互市)를 통한 교역활동이 그것이다.

먼저 조공무역에 대해 살펴보면, 조공이란 원래 주(周)의 종법적(宗法的) 봉건제도(封建制度)안의 핵심지배 근간이었던 천자의 제후통제 및 결속을 도모·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지배수단이었다.¹⁾

초기 중국에 있어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의례에 불과하였던 조공은

1) 李春植, 1969, 〈朝貢의 起源과 意味〉《中國學報》10, 7~9쪽.

진한(秦漢)의 고대제국을 거치면서, 정치적·의례적 의미의 조공이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실질적 조공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외관계로서의 조공은 출발부터 중국적 천하질서의 좌절과 확대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지니게 되었으며, 이후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특수한 외교질서로서 성립되어, 왕조의 성격과 힘의 강도에 따라 신속(臣屬)을 전제로 한 실질적 조공관계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분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관계가 되기도 하는 전형적인 외교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적 대외질서로서의 이념적 조공이 4세기 이후에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중국과의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국가의 외방(外方)에 대한 조공관계의 설정은 이웃나라에 의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를 의사조공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조공은 일회적 복속관계가 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항속적인 조공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는 드물었다.²⁾

조공에 대해서는 주로 정치적 관점에서만 이해되어 왔으나 이에 못지않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해석도 필요하다. 단순히 중국왕조가 주는 관작(官爵)이나 인수(印綬) 그리고 의복 등이 집단 자체 내에서의 지배자나 지도자의 정치·사회적인 권위를 높여주는 효과 때문만이 아닐 것이며 보다 실질적인 목적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중국정부만이 취급하는 일정한 물품을 획득하는 데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공(朝貢)과 하사(下賜)의 형식을 통해 물자교역이 가능하였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³⁾

2) 徐榮洙, 1987, 〈三國時代 韓中外交의 전개와 성격〉《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 三知院, 102~104쪽.
3) 李賢惠, 1994, 〈三韓의 對外交易體系〉《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1998, 《韓國 古代의 생산과 敎역》, 一潮閣, 266쪽.

남북국시대 조공사절이 당에 입조(入朝)할 경우, 당에서 그들에 대한 대우를 총괄하는 것은 예부(禮部)이고, 주객랑중(主客郎中)이 그 중심이었다. 홍려시(鴻臚寺)·전객서(典客署)는 그 중에서 주로 장안(長安)에서 그들의 접대를 예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관할하는 것이었다.

조공사절이 당에 도착하면, 그들은 변경주현(邊境州縣)에서의 조사→중앙으로부터 입경(入京) 허가자 리스트의 도착→입경자(入京者) 상경(上京)→장안 도착→영빈관 입소→환영의식 출석→황제알현일의 전달→황제알현→당으로부터의 국서(國書)수여→선물 수령→귀국할 때의 의식→대기하는 사람들과의 합류→귀국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외국사절로부터 당에 건너온 물품은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 ‘황제수번사표급폐(皇帝受蕃使表及幣)’에 ‘폐(幣)’⁴⁾와 ‘정실(庭實)’⁵⁾이라고 기록되었듯이 두 종류의 헌상품이 존재하였다. 또한 당으로부터의 답례품도 연회장에서 주는 물품과는 별도로 사절의 귀국 환송장에서 사물(賜物)의 수여가 있어서, 이것도 외국으로부터 두 종류의 헌상품에 대응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당의 조공무역 관리를 보면 조공관계를 맺은 국가의 명단은 예부(禮部) 주객랑중(主客郎中)과 홍려시·전객서에서 기록하였고, 무역품목·액수는 호부(戶部)가 기록하였다. 또 물품의 보관은 태부시(太府寺)가 관리하였다.⁶⁾

위에서처럼 하사(下賜)와 조공(朝貢)의 형식을 통해 상당량의 물자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조공(朝貢)과 관작(官爵), 인수(印綬)의

4) 幣단 帛 같은 비단을 중심으로 하는 方物, 貢獻品을 말한다.

5) 庭實이란 정원에 가득 찬 貢物이란 의미다.

6) 石見清裕, 1997, 〈唐代外國貿易・在留外國人をめぐる諸問題〉《魏晉南北朝隋唐時代史の基本問題》; 1998,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汲古書院, 505~508쪽.

수역을 통한 중국 정부와 신라·발해 사이의 물자교류형태를 조공무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공무역은 교역형태상 직접적인 교섭에 의한 교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직접 접촉에 의한 교역’은 교역과정에 제3의 중개인이나 중개장소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 같은 무역형태에서는 교역활동이 정치지배자에 의해 조직되고 통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⁷⁾ 아울러 조공무역은 칼 폴라니(Karl Polany)가 언급한 증여교역에 해당한다.⁸⁾

다음으로 조공무역과 구별되는 것으로 호시(互市)를 통한 교역을 들 수 있다. 호시의 설치와 운영은 중국 황제의 허가에 의해 소재지 정부나 관인의 관리와 감독아래 행해졌다. 일반적으로 호시에서 교환하는 것은 말이나 소·낙타 등이었다. 남북국시대의 예로는 이정기(李正己) 일가가 지배하던 시기의 치청번진(淄靑蕃鎭)과 발해사이의 교역을 들 수 있다. 이때 당이 주는 것은 발해 지배층이 필요한 견(絹)·백(帛) 등의 직물이어서, 소위 ‘견마무역(絹馬貿易)’이라고도 불렸다.⁹⁾

7) Lamberg-Karlovsky에 따르면 무역은 직접접촉에 따른 무역(direct contact trade), 교역(exchange), 중심지무역(central place trade)등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첫번째의 ‘직접접촉에 의한 무역’은 교역을 위해 두 개의 다른 장소간에 직접 얼굴을 대하면서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의 교역은 상품이 피져나감에 있어 어떤 뚜렷한 조직이나 특수한 자원에 대한 표준화된 가치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이다. 세 번째의 중심지무역은 상품이나 자원이 필연적으로 몇몇 중계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나타난 경우이다(崔夢龍, 1985, 〈古代國家成長과 貿易〉《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57~61쪽).

8) 한편 Karl Polany의 무역형태 구분법에 따르면, 무역은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첫째는 증여교역이다. 이는 대체로 의례적인 것이며 상호간의 선물교환이나 사절 교환, 수장 또는 왕들의 정치적 행위 등을 포함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관리교역 또는 조약교역이다. 이 경우에는 수입의 이해득실이 쌍방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교역은 정부 또는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규칙에 의해서 조직된다. 셋째는 시장교역이다. 여기서는 교환이 당사자를 서로 맺어주는 통합의 형태가 된다. 이 경우의 교역조직은 수요·공급·가격기구에 따라서 생겨나게 된다고 한다(Karl Polany, 1977, *The Livelihood of Man*, Academic Press: 朴賢洙譯, 1983, 《人間의 經濟》I, 도서출판 풀빛, 141~144쪽).

9) 馬一虹, 1999, 〈渤海と唐の關係〉《アジア遊學》6, 52쪽.

(2) 사무역

남북국과 중국·일본과의 관계에는 조공관계 이외의 것이 있었다. 즉 양국의 적대관계와 또 조공관계와 관련이 없는 사무역 내지는 사적 접촉이 있었다.¹⁰⁾ 교역의 형태면에서 조공무역이 공무역의 범주에 든다면 상인들의 활동에 의한 교역은 사무역으로 대비할 수 있다.¹¹⁾ 이외에도 조공사절단으로 간 사람 중에 개인적으로 한 무역이나 해상세력에 의한 것도 사무역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¹²⁾

사무역의 첫번째 유형으로는 외교사절을 통한 부대적 무역을 들 수 있다. 조공에 의한 부대적 무역이 발달된 것은 조공 자체의 성질로 보아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공무역에서 무역범위가 확대된 데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¹³⁾ 즉 조공에 의한 부대적 무역은 공식적인 업무를 위해 파견된 외교사절단에 의해 공식적인 업무가 끝난 뒤에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조공무역의 활성화는 곧 조공에 부수하는 사무역의 발달로 직결된다.

사무역을 경영한 세력의 두번째로는 지방세력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장보고(張保皋), 강주(康州: 오늘날의 진주)에

10) 全海宗, 1970,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30쪽.

11) 金庠基, 1934·1935, 〈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對하여〉《震檀學報》1·2: 1948, 《東方文化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1쪽.

12) 權惠永은 公貿易(朝貢貿易)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보았다. 즉 외국에 파견된 사절단에 의해 행해지는 일반적인 형태, 官市를 통한 무역, 838년에 일본의 遣唐大使 藤原常嗣가 약품과 향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監國信 春道永藏과 判官 長岑高名을 揚州에 보내어 물건을 구입하려고 한 것과 같은 밀무역의 경우로 나누어 보았다(權惠永, 1997, 《古代韓中外交史》, 一潮閣, 274~278쪽). 필자와는 달리 외교사절단의 공식적인 교역외의 것도 公貿易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朝貢 즉 公貿易에 의해 거래된 물품은 왕실이나 국가 재정에 귀속되지만, 조공 사절단들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물건은 개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私貿易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3) 金庠基, 1987, 〈朝貢의 經濟的 意義〉《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 三知院, 51~52쪽.

서 활약한 왕봉규(王逢規), 금주(金州: 오늘날의 김해)의 이언모(李彦謨), 개성 지방의 왕건(王建)집안, 나주(羅州)의 나주오씨(羅州吳氏) 집안, 울산의 박윤웅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정주(貞州)에서 서해의 해상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유천궁(柳天弓), 압해도(壓海島)의 능창(能昌) 등도 해상무역을 전개한 지방세력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사무역을 경영한 세력으로는 민간무역업자, 즉 상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장춘(長春),¹⁴⁾ 발해의 민간무역업자 이광현(李光玄)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나 일본 육국사(六國史)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사무역은 주체에 의해 공무역에 의한 부수적 무역, 지방세력에 의한 무역, 민간무역업자, 즉 상인들에 의한 무역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무역품

(1) 신라의 무역품

현재 남아 있는 자료의 거의 대부분이 공무역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무역에서 거래된 무역품도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 공무역은 많은 경우가 관무역(官貿易)의 한 형태이고, 조공품(朝貢品)·회사품(回賜品)과 민간무역에 있어서 수출입품과는 일치되는 경우가 많았

기 때문이다.¹⁵⁾ 신라와 중국과의 무역에 서로 거래된 물품은 신라가 중국 조정에 바친 방물(方物)과 중국이 그들에게 내린 하사품(下賜品)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먼저 중국에서 신라에 건너온 물품을 살펴보면, 금(錦)·채(綵)와 같은 고급견직물류가 주종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고급견직물들은 문헌상 진평왕 43년(621)에 처음 전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660년경에 가면 왕실에서 ‘당견(唐絹)’을 부의(賻儀)로 건넨 정도로 그 거래량은 늘어났다고 보여진다.¹⁶⁾ 이외에 금대(錦帶)·앵무새·은·대접 등 주로 사치품이었다.

다음으로 신라에서 중국에 보낸 물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신라의 대중국 수출품

서기	중국	신라	貿易品	出典
723	開元 11	聖德王 22	果下馬, 牛黃, 人蔘, 頭髮, 朝霞細, 魚牙細, 鏤鷹鈴, 海豹皮, 金, 銀	冊府元龜, 唐會要, 三國史記
730	開元 18	聖德王 29	小馬, 狗, 金, 頭髮, 海豹皮	三國史記, 冊府元龜
748	天寶 7	景德王 7	金銀, 六十總布, 魚牙紬, 朝霞紬, 牛黃, 頭髮, 人蔘	唐會要
773	大曆 8	惠恭王 9	金銀, 牛黃, 魚牙紬, 朝霞	三國史記, 唐會要, 冊府元龜
810	元和 5	憲德王 2	金銀佛像, 佛經, 幡	三國史記
869	咸通 10	景文王 9	馬, 金銀, 牛黃, 人蔘, 大花魚牙錦, 小花魚牙錦, 朝霞錦, 四十升白疊布	三國史記

구체적인 품목들은 문헌에 잘 나타나 있지 않다. 단지 ‘견사헌방물(遣使獻方物)’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 그러나 위의 표를 통해 볼 때, 당시 신라의 대중국수출품은 소위 방물(方物)인 특산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신라의 대외교역품은 첫째 말·개 등의 생물

14) 《三國遺事》卷3, 塔像4 敏藏寺條.

15) 全海宗, 1968, 〈中國과 韓國〉《東方學志》9: 1977,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14쪽.

16) 李晶淑, 1993, 〈新羅 眞平王代의 對中交涉〉《釜山女大史學》10·11合輯, 97쪽.

과, 둘째 금은(金銀) 및 그것으로 만든 제품, 셋째 비단(緋緞)·세포(細布)와 같은 고급직물(高級織物), 넷째 해표피(海豹皮) 등의 짐승가죽과 우황(牛黃), 인삼(人蔘), 두발(頭髮) 등의 약재를 들 수가 있다.

금은세공품이나 견직물들은 내성(內省)에 설치된 수공업관청¹⁷⁾들에 의해 제작된 것이었다. 《삼국사기》직관지(職官志)에 의하면 내성관하에 수공업관청들로서는 본피궁(本彼宮), 금전(錦典), 철유전(鐵鑪典) 등을 포함한 20여개 관청들이 있었으며 어룡성(御龍省)산하 수공업관청들로서는 기전(綺典), 마전(磨典), 석전(席典) 등을 포함한 10개의 관청들이 있었다.¹⁸⁾ 즉 궁중수공업은 진평왕 44년(622) 내성사신(內省私臣)을 설치하여 삼궁(三宮)을 관할케 하면서 성립하였는데, 그것은 각 궁(宮)의 생산체계를 국왕 직속의 내성에 귀속시키는 과정이었다. 그 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역역체계(力役體系)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신문왕 1년(681) 본피궁을 수반으로 하는 생산공정별로 관사를 증치(增置)·조정(調整)하여 일련의 분업화된 체계로 정비하였다.

이들 궁중수공업관사에서 생산한 물품은 주로 궁중 왕족의 생활용품이나 진골귀족·투항왕족에게 사여하는 물품 및 대중국무역품 등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신라 하대 무렵에 서역(西域) 또는 중국의 사치품이 신라에 유입되면서 궁중수공업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었고¹⁹⁾ 그 결과 궁중수공업의 폐쇄적 운영만으로는 더 이상 왕실

귀족의 사치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폐쇄적인 궁중수공업기술이 사회저변에 보급되어 사회적 분업이 확대되고 궁중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제외한 각종 물품을 공부(貢賦) 등의 형태로 수취함으로써 물장성(物藏省)이 생산을 맡는 관사로 확대되었던 듯하다. 즉 왕실의 사적 경영의 성격이 강한 궁중수공업이 조세제와 국가의 통치체제에 바탕을 둔 관영수공업에 통합되었음을 의미한다.²⁰⁾ 신라하대에는 궁중수공업 내지 관영수공업과는 별도로 각 지방에서의 사적수공업이 성행하기도 하였다.²¹⁾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양양에서 나온 ‘선원원종(禪林院鐘)’에는 왕실 이외의 지배계급에서 왕명에 의하지 않고 지방에서 불사(佛事)를 한 첫 기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음으로 9세기부터 활성화된 사무역의 무역품에 대해 살펴보겠다. 전술했듯이 9세기 전반기에 있어서 신라의 해상교역에 원동력이 된 것은 장보고 등의 존재였다. 당시 활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들 교역선(交易船)이 ‘월주요 청자(越州窯靑瓷)’의 적출지(積出地)인 절강성 명주(明州)를 주요 근거지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시대에 신라상인의 교역왕래에 의해 유입된 기술 중에서 도자기 제작기법의 전파를 추정할 수 있다. 원래 중국의 본격적인 청자의 제작은 당의 8세기경부터 소성(燒成)되어졌으며, 그 중심은 절강성 여조현(余姚縣) 상림호반(上林湖畔)의 요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완제품은 주로 명주에서 수출하고 있었다.²²⁾

17) 홍희유는 신라의 관청수공업을 집사성계통의 중앙관청수공업에서 조직운영하던 협의의 관청 수공업과 내성계통의 관청들에서 조직운영하던 궁정수공업의 두체계로 분류하고 전자는 국가에서 직접 수요되는 필수품들을 후자는 주로 왕과 궁정귀족들의 사치품을 생산해내었다고 한다(홍희유, 1989, 《조선중세수공업사연구》, 지양사, 20~21쪽).

18) 三池賢一, 1971, 《新羅內廷官制考》上 《朝鮮學報》61, 38~40쪽; 홍희유, 1989, 《앞의 책》, 30~32쪽.

19) 《三國史記》卷33, 雜志2, 色服條는 당시 신라 풍속의 사치와 외국품을 선호하는 사회적 풍조를 경계하여 골품제사회의 질서를 회복코자 한 것이었다. 이 제규정에 나타난 물품을 통해 볼 때, 평인의 경우에도 絹·錦·紬·布로 의복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고, 특히 瑟瑟·孔雀尾·翡翠毛·

枕香 등은 서역물건으로 고급사치품이었다(李龍範, 1969,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 商人의 貿易品》 《李弘植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新丘文化社).

20) 朴南守, 1993, 《統一新羅 宮中手工業의 運營과 變遷》 《南都泳博士古稀紀念史學論叢》, 54~57쪽.

21) 秋萬鎬, 1992, 《나말러초 새김돌(塔碑)건립에 보이는 사찰장인》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3, 167~168쪽.

22) 吉岡完佑, 1979, 《高麗靑磁의 發生에 關한 研究》, 崇田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4, 《고려청자의 출현》 《張保臯 해양경영사연구》, 도서출판 李鐵, 321~322쪽.

신라에서 청자가 생산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으로는 고급문화수요층의 증가, 당대후기(唐代後期) 중국도자문화의 자극, 청동기의 대체품으로 자기의 수요 증가, 차의 성행으로 음차용(飲茶用) 자기(磁器)의 수요 증가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청자요지는 해무리굽을 동반하는 요지(서해안 중남부 전역에 분포)와 해무리굽이 없고 일반형굽만 존재하며 음각의 시문기법(施文技法)이 행해진 요지(窯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무늬 없는 음식기명(飲食器皿)을 다량 생산한 곳으로 후자는 음각문(陰刻文)이 시문(施文)된 다양한 기종을 생산한 곳으로 규정지를 수가 있다.

당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무늬가 없는 것이 중심이었고, 해무리굽이 공존하였던 시기는 월주요나 형주요(邢州窯)·정요(定窯)에서도 당대후기였으며, 말기에 이르러 음각기법이 나타나며 오대(五代)에 와서 해무리굽이 소멸하고 음각문양이 크게 성행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전자가 당대후기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자는 장보고의 무역선단이 활약하던 9세기 전반에 한반도 전 지역을 공급대상으로 하여 다량 생산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²³⁾

이외에 최치원의 저작인 《계원필경(桂苑筆耕)》²⁴⁾에 나오는 ‘해동인형삼(海東人形蓼)’이나 ‘해동실심금(海東實心琴)’은 신라산(新羅産)임이 확실하기 때문에,²⁵⁾ 다른 물품들도 상당수의 신라산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신라와 당간의 사무역의 무역품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료로서 가치가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23) 崔健, 1987, 《韓國 靑磁 發生에 관한 背景의 考察》《古文化》31.

24) 《桂苑筆耕》卷10, 幽州李可舉太保: 《桂苑筆耕》卷18, 獻生日物狀 五首·端午節獻物狀 二首; 《桂苑筆耕》卷18, 謝正段狀.

25) 인삼의 경우는 발해·신라 두 나라 모두 중국에 수출한 것이 확인된다. 쥬의 경우는 正倉院에 ‘新羅琴’이 남아 있어, 《桂苑筆耕》을 통해 볼 때, 중국에도 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당의 서울 장안에는 거의 만에 가까운 서역인(西域人)이 거주하고 있었다. 천보연간(天寶年間: 742~755) 이후에 급증하여 780년경에는 장안에만도 50,000여 명에 이른다. 해양교통의 발달로 인해 인도 양을 넘어 상업시장을 자바, 수마트라에서 다시 캄보디아까지 확대한 이슬람상인들이 당의 중기 이래 광주에서 양주까지 무역로를 개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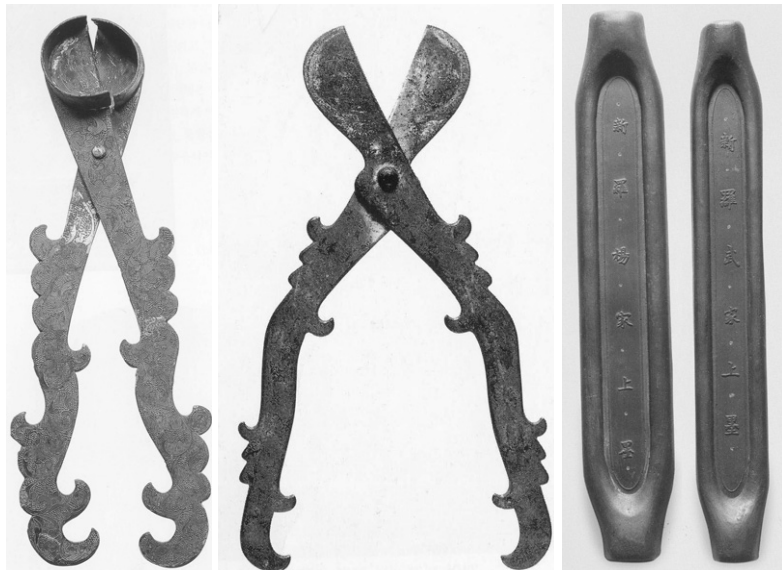
당시 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공사절단 이나 구법승(求法僧), 유학생들을 계속 파견하던 신라는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 서역의 문물, 특히 지배층들의 기호품이나 사치품들을 반입·수용하였다. 이미 경주는 장안에서 크게 유행하던 서역품(西域風)의 정취를 닮아가고 있었다. ‘35금입택(三十五金入宅)’으로 표현되던 특수 부유층들이 사치성 소비재를 제공해 주는 이슬람상인들²⁶⁾의 왕래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무역거점 ‘번방(蕃坊)’을 구축하고 무역권을 확대해 가던 이슬람 상인들이, 세계무역사의 새로운 단계에 가담하고 있었던 신라인 무역업자와 재당신라인들과도 자연스런 상거래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삼국사기》잡지(雜志)에 기재된 색복(色服), 거기(車騎), 기용(器用), 옥사(屋舍) 등 각 방면의 기사에서 신라에 전래된 서역문물의 품명과, 그것들이 신라인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서역산 물품 가운데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는, 유향(乳香: Frankincense)·안식향(安息香: Styrax Benzion)·자단(紫檀)·침향(沈香: Aquilaria Agallocha) 등의 향료와, 슬슬(瑟瑟: 에메랄드)·옥(玉)과 같은 보석류, 구수(毬毬)·

26) 원성왕릉으로 추정되는 괴릉과 흥덕왕릉 앞에 남아 있는 무인상은 부리부리한 눈이나 이국적인 얼굴윤곽과 복식 등으로 볼 때, 서역인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金理那, 1998, 〈조각〉《한국사》9, 국사편찬위원회, 520쪽).

답등(答等)·계(鬘)와 같은 모직물, 공작·비취새의 깃털, 말의 사료로 쓰인 목숙(苜蓿: 거여목, 개자리), 바다거북의 등껍질인 대모(玳瑁) 등을 들 수 있다.²⁷⁾

신라의 대일무역품은 쇼소인(正倉院²⁸⁾)에 남아 있는 것과 《일본서기》 등의 사료를 통해 알 수가 있다. 신라와 일본의 공식관계는 776년(혜공왕 12년) 이후 두절된다. 일본이 7세기 초부터 8세기 중엽까지 신라와의 무역에서 구매한 신라물품은 다양하며 고가품들이었다. 불상·불



경주 월지 출토 금동(金銅) 가위와 일본 쇼소인 소장 금동 가위

일본 쇼소인 소장 신라묵(新羅墨)

27) 李龍範, 1969,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商人의 貿易品〉《李弘植博士 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新丘文化社: 무함마드 간수, 1992, 《新羅·西域 交流史》, 檀國大學校出版部.

28) 正倉院은 현재 日本東大寺에 속해 있는 것으로 北·中·南 三倉으로 되어 있는데 북창과 중창은 勅封創이고 남창은 綱封倉이라 한다. 勅封은 천황의 勅使 입회하에 개폐할 수 있는 것이고 綱封은 절의 三綱의 입회하에 개폐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여기 收藏된 보물은 7차에 걸쳐서 入藏된 것인데 1차부터 5차까지는 756년부터 758년 사이에 들어간 것이고 6차는 814년에 일부를 出藏하고 그 대신 넣은 것이고 7차는 950년경에 東大寺絹索院의 雙倉에 있던 절에서 사용하던 重要器物을 南倉에 옮긴 것이라 한다. (南豐鉉, 1976, 〈第2 新羅帳籍에 대하여〉《美術資料》19, 32쪽).

구(佛具)를 비롯하여 향료(香料)·약재(藥材)·안료(顏料)·금속물(金屬物)·무기·상아(象牙)·고급비단·동물·조류(鳥類) 등 신라에서 생산되는 물산뿐 아니라 멀리 서역·동남아·중국 등지에서 산출되는 상품들이 두루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신라무역상들의 중개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신라의 대일본수출품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신라의 대일본 수출품

연도	연도		무역품	비고
	신라	일본		
598	眞平王 20	推古 6년 8월	孔雀	出典: 《日本書紀》 《續日本紀》
616	眞平王 38	推古 24년 7월	佛像	
623	眞平王 45	推古 31년 7월	佛像·金塔·舍利·大灌頂幡·小幡	
647	眞德女王1	大化 3년	孔雀·鸚鵡	
671	文武王 11	天智 10년 6월	水牛·山雞	
680	文武王 20	天武 8년 10월	金·銀·鐵·鼎·錦·絹·布·皮·狗·驛·駱駝·刀·旗	
682	神文王 2	天武 10년 10월	金·銀·銅·鐵·錦·絹·鹿皮·細布·霞錦·幡·皮	
686	神文王 6	天武 14년 5월	馬·犬·鸚鵡·鵲	
687	神文王 7	朱雀 원년 4월	細馬·驛·絹·鍍金器·金·銀·霞錦·綾羅·金器·屏風·鞍皮·絹布·藥物	
688	神文王 8	持統 2년 2월	錦·銀·絹·布·皮·銅·鐵·佛像·彩絹·鳥·馬·彩色	
689	神文王 9	持統 3년 4월	金銅阿彌陀像·金銅觀世音菩薩·金銅大勢至菩薩像·彩帛·錦·綾	
719	聖德王 18	養老 3년 閏7월	驛馬	
732	聖德王 31	天平 4년 5월	鸚鵡·鳩鵲·獨狗·驢·驛	

위의 표 가운데 공작은 인도차이나·말레이시아·미얀마·자바·중국 남부 등지에서 서식하는 새로, 신라 국내에서 자생하는 동물이 아니다. 《삼국유사》 권3의 남백월이성조(南白月二聖條)에 “연지화장(蓮池華藏)에 천성(千聖)이 앵무·공작과 함께 놀며 서로 즐겨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나오는 것을 볼 때, 공작은 앵무와 연지화장의

천성이 함께 노는 새로, 말하자면 불교세계의 새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구곡(鳩鵲)·낙타(駱駝) 등도 마찬가지로 신라산 동물이 아니다.

결국 신라의 대일무역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시장권 아래서 거래되던 이역물품(異域物品)의 중개무역과 신라산 수공업품의 수출을 통해서, 신라의 선진의식과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에의 수출품은 금속공예품·금은동(金銀銅) 및 직물공예품(織物工藝品)·견직물·약재·애완용 생물 등은 대체로 한국 내에서의 생산품이었고, 반면 중국에서의 수입품은 공예품(工藝品)·견직물·남해품(南海品)·차·서적 등이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나 서역산 물품을 중국을 통해 중개무역한 것이 많은 것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품은 대부분 자국산(自國産)이었지만 중국에서의 수입품 가운데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남해품(南海品)이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무역품은 대부분 생필품과는 거리가 먼 사치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생필품이 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중세유럽과 비교하여 볼 때 무역이 경제전반에서 가지는 비중이나, 무역을 통한 상인층의 정치사회적 성장이라는 측면 등에서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⁹⁾

(2) 발해의 무역품

발해의 대외무역품은 일본과 중국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발해의 무역품

	渤海→日本	渤海→唐
수출품	貂皮, 大虫皮, 熊皮, 人蔘, 契丹大狗, 犬, 玳瑁酒杯, 金銅香爐	馬, 羊, 鷹鵠, 海豹皮, 貂鼠皮, 白兔皮, 熊皮, 虎皮, 海東青皮, 麝香, 髮, 革, 人蔘, 白附子, 黃明, 白密, 松子, 瑪瑙杯, 紫瓷盆, 布, 細布, 褥六, 金製佛像, 銀製佛像, 熟銅, 魚, 乾文魚, 鱸魚, 鯨鯢, 昆布
	日本→渤海	唐→渤海
수입품	綵帛, 綾, 絁, 綿, 絹, 錦, 羅, 絲, 黃金, 水銀, 金漆, 海石榴油, 水精念珠, 檳榔樹扇	帛, 絹, 粟, 金銀器, 金帶, 銀帶, 魚帶

이상과 같이 발해의 일본과 당에 대한 수출품이 다른 이유는 첫째로, 일본에 34회, 당에 100회 이상 파견된 사절과견회수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즉 사절과견단의 회수의 차이에 따라 남아 있는 사료의 양이 차이가 나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로 보다 중요한 원인은 책봉체제하에 있었던 발해와 당의 교섭과 당의 주변국가인 일본과의 대등한 교섭이라는 국가관계의 차이 때문이었다. 당에서 발해에 증여한 물품 중에 섬유제품이되는 서위(敍位)에 수반하는 금은대(金銀帶)·어대(魚帶)나 금은기(金銀器) 등이 두 나라 관계를 상징한다. 일본에서는 견제품(絹製品)이 증여되었지만, 때때로 요구에 응하여 금속가공에 필요한 황금이나 수은·납방산 빈랑선(檳榔扇) 등이 사절에 증여되었다.³⁰⁾

셋째로 발해가 일본과 당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이 다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해의 남부와 동부에서는 멧누에를 길러 고치로부터 실을 뽑아 솜을 만들어 각종 주(綢)와 주(紬)를 짰다. 그 중에서도 남경 남해부(南京 南海府)의 옥주(沃州)는 유명한 풀솜 생산지였다. 풀솜은 뽕나무에 나는 멧누에의 고치에서 실이 되지

29) 魏恩淑, 1995, 〈나말 무역사 연구동향과 과제〉《貿易評論》2, 慶星大學校 貿易研究所, 174쪽.

30) 小嶋芳孝, 1999, 〈渤海の産業と物流〉《アジア遊學》6, 66쪽.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명주 비단이 생산되는 모든 곳에서는 모두 이 풀숨이 생산되었지만 옥주의 풀숨이 가장 질이 좋았던 것 같다. 또한 상경 용천부의 용주(龍州)는 솜실로 짠 주(紬)가 유명하였다. 용주에서 주가 생산된 것은 이곳에 모인 발해의 지배계급의 강한 수요에 연유한 것이지만, 주원료인 면이 옥주에서의 생산량으로는 부족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도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원료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에 의존함에 따라 품종이나 수량에 큰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¹⁾

따라서 발해는 섬유제품의 원료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일부는 국내 수요로, 일부는 대외수출품으로 가공하였던 것이다.

한편 최근 소그드인의 활약을 지적한 연구성과에 의하면, 발해는 동방뿐만 아니라 서방사회와도 교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러시아의 샤부꾸노프(E. Shavkunov)는 이러한 연해지방이나 남시베리아 등에서 발견되는 중앙아시아계의 은화·거울·장식품, 혹은 중국 동북에 있었던 집락이나 민족의 이름 등 고립된 자료에서 멀리 러시아의 세미레체를 기점으로 하여 알타이, 서시베리아, 서몽골을 거쳐 스루혼강에 도착하고, 오흐·케루젠강 수계로 통하고, 아무르강(흑룡강)과 송화강, 우수리강과 동북아시아의 내륙 각지로 들어가는 소그드인들의 교역로가 열려 있었다고 하는 장대한 가설을 주장하였다. 실크로드와는 별도로 중앙아시아에서 극동에 이르는 이 교역·교류의 길을 상인 캐러밴이 발해 등지에서 가지고 온 모피에 연유하여 ‘흑초(黑貂)의 길’이라 부르고 있다.³²⁾

31) 임상선, 1996, 〈발해의 사회·경제구조〉《한국사》10-발해, 국사편찬위원회, 167쪽.

32) E·V·シャフクノフ, 1998, 〈北東アジア民族の歴史におけるソグド人の黒貂の道〉《東アジアの古代文化》96.

일본으로 온 발해사가 동남아시아산 바다거북의 껍질인 대모(玳瑁)로 만든 술잔이나 중국 남서지방의 고지에 서식하는 사향사슴에서 채취되는 사향을 가지고 온 것도 공식 사절이 개재했는지 아닌지는 자세하지 않지만 당을 중계로 하는 해륙 양방의 원거리교역과 이를 담당할 상인이나 캐러밴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³³⁾

발해의 수출품에서는 수령(首領)의 역할이 주목된다. 발해의 지방행정구역의 책임자는 수령이었다. 발해의 수령은 수렵·목축·어로로 중심으로 하는 주민의 생산활동이나 집단질서를 통솔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일상적인 물류·교역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해외무역활동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9세기 이후 일본으로 파견된 사절단 가운데 수령 65인이 영역을 확대한 선왕(宣王) 시대의 주(州)의 총수 62와 독주주(獨奏州) 3의 합계와 같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발해의 견당사(遣唐使) 구성원은 단지 ‘사(使)’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외에 왕자·세자(世子)·왕의 조카 등의 왕족, 수령·대수령(大首領), 관리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발해는 지역을 대표하는 이들 수령층을 외교·무역에 이용하는 것으로 그 지배자로서의 사회적 신분과 이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재편하였다. 발해의 국가구조는 이 영역에 특유한 지리·자연조건과 밀접한 수렵·어로·목축이라고 하는 생산형태로 규정되어 각자의 수령을 매개로 한 지역지배 혹은 수령의 지방관리화를 국가형태의 기본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³⁴⁾

발해의 수공업은 국가 수요를 위한 관청수공업과 함께 전업적 수공

33) 鈴木靖民, 1999, 〈발해와 일본·당의 무역〉《장보고와 21세기》, 해안, 50-51쪽.

34) 鈴木靖民, 1999, 〈앞의 글〉, 45-46쪽.

업자와 농민들의 가내 수공업으로 이루어진 민간수공업도 존재하였다. 6부 가운데 수공업과 관련된 부서는 지부(智部)와 신부(信部)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부는 무관들의 인사행정과 지도·말·수레 및 무기들을 취급하였고, 신부는 산림·하천과 호수·수산자원과 둔전·토목축 사업을 담당하였다. 한편 지방의 중요 군관구들에서도 무기를 자체 생산·수리하기 위한 무기수공업장을 조직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신부는 고려시기의 공조(工曹)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말기에 공부(工部)로 불렸다. 이 밖에 국왕의 의복, 수레와 관련된 일을 취급하는 관청으로서 전중시(殿中寺)도 있었다.³⁵⁾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발해의 무역품은 중국의 경우 의례용 물품을 주로 수입하였고, 수공업제품과 농산물 같은 특산물을 주로 수출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주로 특산물을 수출하고, 원재료를 많이 수입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품들은 발해의 토성(土城)이나 도성(都城)을 통해 교환하고, 가공하였다. 이러한 물품의 집산·가공·유통에는 재지세력이었던 수령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5) 홍희유, 1989, <앞의 책>, 69-81쪽.

2. 8세기 공무역체제의 성립과 운영

1) 남북국시대 무역네트워크³⁶⁾의 성립

남북국시대 당시 세계에 있던 4개의 광역시장권 가운데 신라와 발해가 속해 있던 곳은 중국시장권이다. 이 중국시장권의 중심국가인 중국과 그 안에 있던 여러 나라와 민족을 연결시켜주던 역할을 하던 것이 바로 조공(朝貢)이다.

신라·발해·일본·베트남 등 중국의 주요한 관계국들에게 조공체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일원적으로 기능하지 않았고, 중화관의 공유와 그 탈취 등의 수용뿐만 아니라 저항이나 자립의 과정도 존재한다. 또

36) 이하에서는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경제적 域圈간의 사람·물자의 이동 체계를 가리키는 것(浜下武志, 1997,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岩波書店), 또는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성격인 '관계성(relations)' 자체에 기초하여 다양한 연결 기능(신축·확장·팽창·가변·재편성·상호보완)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개념(家島彦一·김정환 옮김, 2003, <서양에서 본 아시아> 《바다의 아시아》1-바다의 패러다임-, 다리미디어)으로, '貿易網'이라는 개념은 기존연구성과들에서 交易體系·交易網 등으로 쓰이던 개념으로 신라나 발해 같이 국내에 한정된 경우만을 '貿易網'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 러시아 등과 중국과의 관계는 이와는 달리 중국에 영향을 주거나 호시교역(互市交易: 대등한 교역)을 행하는 등 북서주변부에 있어서 조공관계의 기능은 중국 동쪽의 여러 나라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동아시아의 공간적 범위는 중국과의 가깝고 먼 것에 따라 나라별로 구분되었다. 조공관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드러나는 관계로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유구(琉球)나 쓰시마(對馬島) 등의 중계적·매개적 기능은 중시되지 않았다. 동아시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부 즉 위성적인 중화권이 배치되고 서로가 다각적으로 중계지를 매개로 연결하는 복합적 지역관계도 있었다.

중화질서(中華秩序)에 기초한 통치형태의 특징은 그 안에 간접통치·조공통치가 있고 동시에 대등관계도 존재하는 등 여러 통치원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화이질서 전체를 통괄하는 이념이 중화(中華)였다. 즉 중화이념은 여러 통치이념을 포섭하기 위해 보다 추상화



중국 산둥성에 있는 등주성 전경

하고 확장된 중심(中心)－주연(周緣)관계를 둘러싼 통괄적 이념이고, 구심적이기보다는 오히려 포괄적·중개적이다.³⁷⁾

이러한 조공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동아시아 무역망을 형성시킨 전제이고, 조공무역에 수반한 사무역의 확대를 촉진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 내 교역의 주요한 루트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시장권이라는 광역시장 안에는 여러 지역시장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신라와 발해와 관련 있는 것만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산둥반도 일대의 교역권이다. 이는 장보고로 대표되는 신라상인들의 활약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신라상인의 활약은 재당신라인사회와 재일신라인사회를 기반으로 하였다. 당과 일본에는 7세기 이래 신라 유민이 이주하여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시기에 유민이 발생한 것은 통치기강의 문란과 토지의 집중화현상에 따른 부산물이었다. 게다가 자연재해라는 요인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³⁸⁾ 이들 유민들은 때로 도적화하기도 했고 지방세력의 휘하에 들어가 사병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중 일부는 중국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³⁹⁾ 특히 이들은 재당신라인사회나 재일신라인사회에 흡수된 것으로 생각된다.

당에서의 신라인촌락은 초주·해주를 비롯한 회하유역과 산둥반도 일대에 많았고, 일본에서의 신라인사회는 규슈(九州)와 하모야국(下毛野國)·무장국(武藏國)·미농국(美濃國)·근강국(近江國)·준하국(駿河國) 등에 있었다. 재당신라인사회는 ‘신라방(新羅坊)’ 또는 ‘신라촌

37) 浜下武志, 1997, 《앞의 책》, 5~11쪽.

38) 《三國史記》에 나오는 신라의 자연재해는 총 143회인데 그중 신라하대에 해당하는 8·9세기에는 각각 29·16회로 다른 세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申滄植, 1981, 《三國史記研究》, 一潮閣, 187~188쪽).

39) 《三國史記》卷10, 憲德王 8年, 春正月條.

(新羅村)이라 하였는데, 인구가 많은 외국인 거주구역인 ‘번방(番坊)’의 하나였다. 재일신라인사회는 신라군(新羅郡) 또는 도전군(度田郡)이라 불렸다. 재일신라인들은 주로 거주 지역 근처의 연안무역에 종사하고 있었고, 재일신라인들은 일본정부가 필요로 하는 각종 바다 관련 고급인력(통역관·선원·노 젓는 사람 등)을 제공해 주었다. 즉 해외 신라이민사회가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소규모 지역시장을 관장한 연안무역상인이었다면 장보고로 대표되는 광역시장을 담당하는 무역상인도 존재했던 것이다.⁴⁰⁾ 이외에 앞에서 이연효·이광현 같은 발해상인들의 존재도 주목된다. 이상의 신라·발해상인들에 의해 산동반도에서 행해진 무역은 황해를 주무대로 행해졌기 때문에 ‘황해무역권(黃海貿易圈)’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경우이다. 중국의 경우에 비해서 빈도수나 양은 적지만 대일본무역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일본무역의 장소는 크게 두 곳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다자이후(大宰府)를 중심으로 하여 신라사절단과 신라상인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해 사절단에 의해 일본의 동북부 지방의 발해객원·객관에서 행해진 경우이다. 전자는 대한해협을 거쳐 일본의 서쪽지역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서부일본무역권(西部日本貿易圈)’으로 정의하고, 후자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행해졌기 때문에 ‘동해무역권(東海貿易圈)’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공무역(공무역)의 발전은 중국 주변 여러 나라들의 사무역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8~10세기 사무역의 발전은 이전 시기의 공무역 발달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朝貢을 매개



일본 다자이후 옛터

로 형성된 남북국시대 무역 네트워크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시장과 각 지역에 형성된 지역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남북국시대의 무역과 관련된 지역시장은, 중국 중심의 광역시장 아래 ‘황해무역권(黃海貿易圈)’, ‘서부일본무역권(西部日本貿易圈)’, ‘동해무역권(東海貿易圈)’ 등이었다.⁴¹⁾

2) 당나라의 경제체제와 조공무역

역사 이래 동서문물 교류의 주요 통로였던 실크로드(Silk Road, 絲綢之路)는 당나라 후기에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는 무엇보다 경제적 번

40) 尹載云, 1996, 〈9世紀前半 新羅의 私貿易에 관한 一考察〉《史叢》45.

41) 尹載云, 2002, 《南北國時代 貿易研究》, 고려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尹載云, 2003, 〈8~9세기 동아시아의 교역-장보고의 청해진활동을 중심으로-〉《白山學報》66.

영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우선 전통 산업인 농업 부문에서 농업 생산력이 증진되었다. 개간을 통한 농경지 확대, 수리 관개의 확충, 신품종의 도입에 따른 품종의 다양화가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켰고, 이로 인한 농촌 경제의 활력은 특산물과 잉여생산물에 기반을 둔 상업적 농업을 발전시켰다.

상업의 발달은 도시의 발달을 가져오는 등 일련의 경제적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까지 실크로드를 통한 서역 물자의 수송에 의존했던 수급 기반의 한계를 초래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물자 수송이라는 혁명적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농업 생산력의 발달은 먼저 농기구 발달에서 찾을 수 있다. 축력과 견인력, 소형의 농기구 등의 등장으로 심경(深耕)이 가능해졌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개 농기구도 발달하여 생산성이 눈부시게 향상되었다. 또한 윤작 체제가 고도화되어 이년삼모작(二年三毛作)과 이모작(二毛作)이 보급되었고, 이를 향상된 시비 기술과 파종 기술이 뒷받침했다. 뿐만 아니라 경작 품종의 다양화와 신품종의 보급으로 특히 미곡의 생산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농업 생산력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잉여 농산물의 상품 작물화이다. 또한 농가의 부업이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이는 상업의 발달로 이어졌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시설에 대한 투자도 있었다. 우선 역전제도(驛傳制度)를 발전·정비하고 운하를 보수·정비했다. 개원통보(開元通寶)의 주조에서 보듯이 화폐를 통일하고, 도량형에 있어서도 통일적 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조庸조(租庸調) 세법을 정비하여 일반 농민들까지도 유통 경제에 편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상업을

직접 담당하는 전업적 상인세력 내지 중간층이 대두하여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이른바 부상층(富商層)의 관계(官界)로의 진출은 당시에 나타난 뚜렷한 사회 변화 중 하나였다.

상업 발달이 도시화 현상을 가져온 것은 물론이다. 그간의 관리·부호·지주의 거주지이자 행정적·정치적인 성격이 강했던 고대 도시는 점차 상업 내지 상공업에 기반을 둔 경제적 기능이 강화된 도시로 변화해 갔다. 이와 함께 유통 경제의 보급·확산, 상인 활동의 장으로서 지방에서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상업 유통 기구가 형성됨으로써 농산물의 집하(集荷)와 유통, 원격지 상품의 농촌으로의 침투가 용이해졌다.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당나라 시대에 국제간의 무역은 조공무역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조공무역은 정부가 통제하고 운영하는 수출입 무역으로 일종의 공무역이다. 당나라 전기까지는 조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중국이 조공무역을 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중화(中華) 사상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안보상의 이유였다.

중국은 넓은 지역을 통치했지만 주변의 많은 이민족들에게 예워싸여 있었다. 중국은 언제나 이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중국으로서는 이들과의 조공무역을 통해 서로 오가면서 적대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게 유리했다. 중국의 조공무역은 중화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었지만, 주변국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외교 수단이기도 했다.

조공 제도는 진한(秦漢) 시대에 부분적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시대를 거치며 제도화되었고 수당(隋唐) 시대에 이르러 더욱 발전했다. 중국과 주변국 간의 대외 교역은 공식적으로 조공을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을 통한 견사공헌(遣使貢獻)은

일종의 해상무역이고 사행선단(使行船團)은 무역선이라 할 수 있었다.

조공무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조공국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자 중국의 주변국들은 중국에 조공 사신을 더 많이 파견하려고 했다. 초기에는 조공무역은 국경을 접하거나 인근에 있는 국가에 한정되었으나, 조공무역의 이익이 널리 알려지면서 조공국은 보다 확대되었다. 특히 당나라 중반에 이르러서는 인도와 중동 일대의 서역까지 확대되었다.

한반도에서 중국과의 공무역이 시작된 것은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이 당에 조공사(朝貢使)를 파견하면서부터이다. 중국은 주변 국가와의 대외무역에서 공무역인 조공 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인의 사무역은 엄격히 금지했다. 조공을 통해 주변 국가는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입하고 왕공(王公)·귀족의 정치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경제적 이권을 독점할 수 있었고, 양자 간에 이루어지는 물화(物貨) 교환을 전제로 경제적 욕구도 만족되었으므로 조공무역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농업 경제의 발달에 따른 상공업의 발전은 점차 조공무역 체제를 변화시켰다. 특히 당나라 중·후기를 거치면서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한 상업 발달은 농촌 경제력을 향상시켰고, 경제력의 향상은 소비재의 수요를 증폭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번진이 발호하자 당 왕조를 지탱해 왔던 조공무역은 쇠퇴하고 사무역이 발달하게 되었다.

3. 공무역의 쇠퇴와 사무역의 발달

1) 동아시아 삼국의 정치·사회 혼란

중대(中代)의 마지막 왕인 혜공왕(惠恭王: 765~780)대에 대공(大恭)의 난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와중에서 김양상(金良相)이 정권을 장악하자 김지정(金志貞)이 혜공왕의 편에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그러나 김양상·김경신 등에 의해 진압되고 혜공왕도 살해되었다. 이렇게 하여 부활된 나물왕계(奈勿王系)인 김양상이 선덕왕(宣德王)으로 즉위하였다. 이때부터 이른바 하대(下代)가 시작되었다.⁴²⁾ 그러나 실질적인 하대는 나물왕의 후손으로서 선덕왕대의 상대등이었던 김경신이 원성왕(元聖王)으로 즉위하면서 시작되었다.

신라 하대에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왕족의 분지화(分枝化)이다. 원성왕의 즉위가 태종무열왕계(太宗武烈王系)인 김주원(金周元)을 배제

42) 李基白, 1958,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社會科學》2: 1975,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233~237쪽.

하면서 이루어진 만큼 신라의 하대 정권은 부활된 나물왕계인 원성왕 계에 의하여 유지되었다. 이러한 근친왕족 중심의 정치운영방법은 왕권을 장악하기 위한 권력투쟁을 심화시켰다. 그 결과 빈번한 왕위교체로 인한 왕족의 분지화는 왕위계승이 가능한 진골귀족가계(眞骨貴族家系)의 확대를 가져왔다. 게다가 오묘제(五廟制)의 확립은 직계와 방계의 차별성을 강조하여 가계단위의 왕위쟁탈전을 격화시킴으로써 몰락귀족층을 유발하였다. 이로써 왕족으로부터 분화한 진골가계집단이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바탕으로 권력투쟁의 사회적 단위로 기능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⁴³⁾ 이러한 사회현상이 중앙집권체제를 동요시킨 원인이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부의 집중화이다. 귀족들은 본래 관직복무에 대한 대가로 녹읍(祿邑)을 받고 있었다. 녹읍은 일정한 지역의 토지뿐 아니라 그곳 주민들에 대한 노동력의 징발까지도 허용되어 있었다.⁴⁴⁾ 반면 관료전과 녹봉은 귀족들의 인신지배(人身支配)를 배제한 것이다. 녹읍은 신문왕(神文王) 9년(689) 문무관료전과 녹봉으로 대체되기도 하였지만 경덕왕 16년(757) 다시 부활되었다. 그리하여 귀족들은 다시 일정한 지역의 토지뿐 아니라 그 지역의 농민들까지도 지배하게 되었다. 이외에 귀족들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나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신분·지위 또는 관직을 획득한 자들에게는 식읍이 주어졌다.

이렇게 귀족들은 녹읍과 식읍이라는 토지를 합법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대에 접어들면서 중앙정계의 혼란과 더불어 귀족들

의 토지소유는 급격히 증대되어 갔다. 그리하여 전장(田莊)이라 불리는 대토지소유가 형성되었다.⁴⁵⁾ 당시의 대토지소유는 귀족들뿐 아니라 승려나 사원에 의해서도 행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승려나 사원의 전장은 대개 왕이나 귀족의 토지기증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것은 애장왕(哀莊王)이 2,500결(結)이나 되는 토지를 사원에 시납(施納)하고 있는 데서도⁴⁶⁾ 알 수 있다. 또 승려들도 개인적으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은 지증(智證)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헌강왕(憲康王) 5년(879)에 500결이나 되는 자신의 전지(田地)를 봉암사에 희사(喜捨)하고 있다.⁴⁷⁾

세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인구의 지역이동이다. 이 현상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유민의 발생이다. 이것은 통치기강의 문란과 토지의 집중화현상에 따른 부수적인 산물이기도 하였다. 게다가 자연재해라는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⁴⁸⁾ 이들 유민들은 때로 도적화하기도 했고 지방세력의 휘하에 들어가 사병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 중 일부는 중국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⁴⁹⁾ 특히 이들은 재당신라인사회나 재일신라인사회에 흡수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신라에서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당의 정세를 살펴보겠다. 당은 8세기 중엽 '안사(安史)의 난'

43) 李基東, 1980, 〈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歷史學報》85: 1984,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54쪽.

44) 姜晉哲, 1969, 〈新羅의 祿邑에 대하여〉《李弘植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新丘文化社: 1980, 〈高麗土地制度史研究〉, 一潮閣, 13쪽.

45) 金昌錫, 1991, 〈統一新羅期 田莊에 관한 연구〉《韓國史論》25.

46) 朝鮮總督府 內務部 地方局編, 1911, 《朝鮮寺刹史料》上, 493쪽.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 참고.

李弘植, 1968, 〈羅末의 戰亂과 緇軍〉《史叢》12·13合輯: 1973,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552쪽.

47) 《朝鮮金石總覽》, 鳳岩寺智證大師寂照塔碑.

48) 신라의 자연재해는 총 143회인데 그중 신라하대에 해당되는 8·9세기에는 각각 29·16회로 다른 세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申滢植, 1981, 《三國史記研究》, 一潮閣, 187~188쪽).

49) 《三國史記》卷10, 憲德王 8年 春正月條.

(755~763)을 겪으면서 지방의 통제가 해이해졌고, 그 결과 지방에서는 번진세력(藩鎮勢力)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고구려계 유민출신인 이정기(李正己)·이납(李納)·이사고(李師古)·이사도(李師道)로 이어지는 이씨 일가의 세력이다. 이들은 당에 반기를 들고 신라와 해상교통이 편리한 산둥반도 전역을 장악하여, 3대 55년간(765~819)이나 치외법권적인 번진세력으로 당내(唐內)의 소왕국으로 군림하였다.⁵⁰⁾ 이들은 평로치청평로절도사겸압신라발해양번사(平盧淄青節度使兼押新羅渤海兩蕃使)가 되어 치(淄)·청(靑)·등(登)·래(萊) 등 15개주를 소유하고 신라와 발해를 상대로 통상무역을 진행하였다.⁵¹⁾

당에서는 중엽이후 남방의 해로를 통하여 다수의 아라비아상인들이 와서 광주(廣州)·양주(揚州)·천주(泉州) 등의 항구가 번영하였다. 그래서 당 이후에는 이 지역에 시박사(市舶司)가 두어졌지만, 당에서는 714년에 광주에 영남시박사(嶺南市舶司)가 두어진 것이 확인 될 뿐이다. 당대(唐代)에는 시박사(市舶司)는 아직 상설되지는 않았고, 보통 지방관인 절도사·자사가 외국선을 관리하여 수시(收市)·진봉(進奉)을 관장하였다.⁵²⁾ 따라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된 이유도 있겠지만, 관무역에서 사무역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있었던 당의 현실 아래서 이정기 일가와 같은 사무역이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라는 8세기 진골귀족들의 전면적인 도전으로 9세기에는 진골귀족들의 연합체를 형성했다가 후삼국시대가 등

장하였다. 한편 당은 안사의 난을 거치면서 각지에 번진세력이 발호(跋扈)하고 있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의 상황이었다. 따라서 세 나라 모두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통제력이 느슨해진 때였으므로, 거리(巨利)를 탐내는 민간무역업자들이 조정(朝廷)의 금령(禁令)을 피해 무역활동에 쉽게 종사할 수 있었다.

2) 해상세력의 성장

앞에서 서술했듯이 신라는 8세기 후반부터 정치·사회·경제 등 전반적인 변화가 오고 있었다. 예컨대 골품제도의 동요로 연속적인 왕위의 쟁탈전과 지방반란이 일어났고, 9세기에는 극심한 천재지변, 진성여왕의 실정(失政)과 농민봉기(農民蜂起), 6두품세력에 의한 유교정치사상의 진흥과 반신라적 동향 등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중앙의 지배력은 점차 약화되어 갔으며, 지방에 대한 통제력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지방의 촌주 등 세력가들은 스스로 성주·장군이라 칭하면서 그 지역의 군사·행정·재정권을 갖는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였다.

당시의 지방세력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첫째로 기근과 조세 등에 시달려 생활형편이 어려운 농민과 초적(草賊)·적고적(赤袴賊) 등을 규합한 세력[기휙(箕萱)·양길(梁吉)·궁예(弓裔)], 둘째, 토착적인 기반을 갖는 촌주 등 토호 또는 중앙에서 좌천 또는 추방되거나 정치적 열세로 밀려나 왕실에 반기를 든 세력[홍술(洪述)·견금(堅金)·선필(善弼)·박수경(朴守卿)·순식(順式)], 셋째, 대외무역을 통하여 해상경제력을 갖는 세력[장보고(張保臯)·왕봉규(王逢規)·왕건(王建)·이

50) 金文經, 1975, 〈唐代 藩鎮의 한 研究—高句麗遺民 李正己一家를 中心으로〉《省谷論叢》6: 1984, 《唐代的 社會와 宗教》, 崇田大學校 出版部.

51) 《舊唐書》卷124, 列傳74, 李正己.

52) 堀敏一, 1993,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世界》, 岩波書店, 266쪽.

언모(李彦謨), 넷째, 비장(裨將)으로서 지방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세력(甄萱) 등으로 구분된다.⁵³⁾ 이들 세력의 등장은 신라 하대 골품제도의 동요로 왕위쟁탈전이 격화되어 왕권이 미약해지고 사회가 혼란해지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9~10세기에 들어와서 6두품 출신들의 반신라적 움직임과 천재지변의 극심 등의 시대적 혼란에 편승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상의 제 세력 중에서 해상무역을 담당한 세력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해 보겠다. 우선은 지방세력이 아닌 중앙권력층의 무역경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중화(中華)의 사상(思想)을 가지고 있던 중국은 주위의 제 세력에 대해서 대등한 국교를 인정치 않았다. 따라서 그 사절의 파견은 반드시 번속국(藩屬國)의 종주국(宗主國)에 대한 입공(入貢)의 형식을 채택하였고, 공물(貢物)에 대하여 반드시 회사(回賜)의 명분으로 물품을 하사하였다. 공사양물간의 경제적 평가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지 않았고, 중국천자의 은혜를 과시하는 의미로 많은 양을 하사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公事)에 있어서 무역관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라의 사신선(使臣船)도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이 국제수호의 외교목적과 함께 무역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황제에게 바쳐지는 조공품(朝貢品)은 황제개인의 수입으로 되었고, 국가재정이 아니라 제실재정(帝室財政)으로 되었다. 회사품(回賜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공국(朝貢國)의 국왕(國王)이나 수장개인수입(首長個人收入)으로 되었다. 따라서 신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앞에서 언급한 지방세력층의 무역경영이다. 여기에 속하는

53) 金哲堧, 1964, 〈後三國時代の支配勢力の性格〉《李相伯博士回甲紀念論叢》: 1990,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358쪽.

부류로는 장보고(張保臯)·왕건(王建)·왕봉규(王逢規)·이언모(李彦謨) 등을 들 수 있다. 장보고의 경우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보고⁵⁴⁾는 828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당(唐)에서 귀국하였다. 그가 귀국한 동기로는 우선 노예무역의 방지를 들 수 있다. 그가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한 동기가 신라 근해에 출몰하여 신라인을 약매(掠賣)하는 중국인 노예무역선을 소탕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아도 그는 이미 무녕군에 복무하던 시절 동포들이 중국 해적선에 강제로 끌려와 도처에서 매매되는 현장을 목격하곤 의분을 느꼈다고 한다.⁵⁵⁾

당시 노예무역은 당조정의 거듭된 금령(禁令)에도 불구하고 성행했다. 이른바 ‘신라노(新羅奴)’는 중국 연안지대 곳곳에서 매매되고 있었다. 신라에서는 이 문제를 중요시하고 당에 신라인 약매행위(掠賣行爲)를 단속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당은 816년에 신라인을 노예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령을 내린바 있다.⁵⁶⁾ 그러나 금령에도 불구하고 노비약매(奴婢掠賣)는 결코 근절되지 않았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뒤 4개월 뒤인 828년 10월에 평로군절도사(平盧軍節度使) 설평(薛

54) 《三國史記》〈新羅本紀〉에는 ‘弓福’, 《三國遺事》에는 ‘弓巴’로 나온다. 이에 반해 《唐書》〈朝鮮傳〉에는 ‘張保臯’로 나오고, 《續日本後紀》 및 《唐求法巡禮行記》에는 ‘張寶高’로 나온다. ‘궁복’이나 ‘궁파’의 끝자는 흔히 신라계 이름에서 아이를 의미하는 ‘보’의 訓借字로 볼 수 있다면 곧 ‘활보’ 즉 활 잘 쏘는 아이의 뜻으로 그의 궁술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여진다(盧泰敦, 1978, 〈羅代之門客〉《韓國史研究》20·21, 57쪽). ‘張保臯’는 중국식 성씨인 張을 함께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당측의 사료에서만 나온다. 따라서 이 경우는 그의 渡唐 이후 그곳 생활에서 적응하는 가운데 중국식 성씨를 취하면서 改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字와 諱으로 보아 대체로 弓에서 弓변의 張이라는 姓이 福에서 保臯라는 이름이 연유했다고 생각된다(今西龍, 1933, 〈慈覺大使入唐求法巡禮行記を讀みて〉《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304~305쪽). 끝으로 ‘張寶高’는 일본측자료에서만 나온다. 이는 ‘張保臯’의 同音異字의 표기로써 海商의 성격을 반영하는 富를 상징하는 명칭이라고 생각된다. 즉 그가 훗날 해상으로 성공한 후 스스로를 격상하는 의미에서 改名하였던 것인데, 그 이전을 잘 알지 못하는 일본에서만은 최후의 姓名만이 전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金光洙, 1985, 〈張保臯의 政治史의 位置〉《張保臯의 新研究》, 63쪽).

55) 《新唐書》卷220, 東夷傳.

56) 《冊府元龜》卷42, 帝王部仁慈門 元和 11年條.

奉)이 올린 상주(上奏)에 따라서 황제가 821년 3월 11일자의 금칙(禁勅)의 단행을 명하고 있는 것⁵⁷⁾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동기 이외에 당시 번진(藩鎭)의 사정도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사도 등 조정에 반항적인 번진군벌을 토벌한 뒤 당은 821년부터 번진병사의 수효를 점차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군사비 삭감정책은 과중한 재정부담으로 시달리고 있던 강회방면(江淮方面)의 제진(諸鎭)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다른 강회(江淮)의 번진들과 마찬가지로 장보고가 속해 있던 무녕군도 감군정책(減軍政策)이 실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장보고가 군을 떠나게 된 동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⁵⁸⁾

《삼국사기》에 의하면 828년(흥덕왕 3) 4월에 장보고가 중국에서 돌아와 흥덕왕을 알현하고 사졸(士卒) 1만인으로써 완도(莞島)에 설진(設鎭)했다고 한다.⁵⁹⁾ 여기서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은 갑자기 장보고가 청해진에 1만이라는 적지 않은 병력과 청해진 설치를 어떻게 허락 받을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장보고가 흥덕왕을 직접 알현하고 청해진 설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중이었던 김우징(金祐徵)의 도움이 있었다는 추측은 일찍이 있어 왔다.⁶⁰⁾ 그리고 김우징의 심복인 김양(金陽)은 흥덕왕 3년에 고성군(固城郡) 태수(太守)로 재직하다가 이어 중원(中原) 대윤(大尹)을 거쳐 무주도독(武州都督)으로 전임되어 재직한 바가 있다.⁶¹⁾ 따라서 흥덕왕대에 청해진 설치를 전후로 하여 시중인 김우징, 무주도독 김양과 청해진대사인 장보고 사이

에는 어떤 모종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해진의 설치 허가에 대해서는 당과의 관계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은 발해의 건국 후 신라가 발해를 남쪽에서 견제해 줄 것을 바라게 되고 당과 발해와 신라의 공동해역이라고 할 수 있는 황해의 해양지배력의 향방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증거로 당이 신라왕에게 내린 ‘영해군사(寧海軍使)’라는 관작을 들 수 있다.⁶²⁾

아울러 청해진의 설치에는 평로치청절도사(平盧淄青節度使)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⁶³⁾ 해운압신라발해양면사(海運押新羅渤海兩蕃使)로서는 황해해상무역을 원활하게 수행해서 교역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를 통한 세수(稅收)가 증대되어 재정이 튼튼해지므로 황해 해상무역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나당일 삼국항로의 주요거점에 무역기지를 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평로치청절도사는 당에서 활동 중이던 장보고가 신라로 진출하여 청해진을 중심으로 무역기지를 확보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만한 논거로서 평로치청절도사가 신라 양민들이 납치되어 노예로 팔리고 있는 사실을 황제에게 보고하고 이를 칙령으로 금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을 들 수 있다. 황제가 이를 수락하여 노예거래 금지령을 내린 것과 장보고가 흥덕왕을 알현하여 신라인이 노예로 팔

57) 《唐會要》卷86, 奴婢 太和 2年 10月條.

58) 浦生京子, 1979, 〈앞의 글〉, 49~50쪽.

59) 《三國史記》卷10, 興德王 3年 4月條.

60) 尹炳喜, 1982, 〈新羅 下代 均貞系의 王位繼承과 金陽〉《歷史學報》96, 68~69쪽.

61) 《三國史記》卷36, 地理志3에 의하면 莞島는 陽武郡에 속하며 양무군은 武州의 관할하에 있다.

62) 浜田耕策, 1999, 〈新羅王權と海上勢力—特に張保皇の清海鎭と關聯して—〉《東アジア史における國家と地域》, 刀水書房, 456~457쪽.

63) 王杰, 1994, 《中國古代對外航海貿易管理史》, 大連海事大學出版社; 민성규·최재수, 2001, 〈唐나라의 貿易管理制度와 黃海海上貿易의 管理機構〉《해상왕 장보고의 국제무역활동과 물류》,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156~159쪽에서 재인용.

려가고 있다는 사실과 이를 막기 위해 완도에 진(鎭)을 설치할 것을 주청(奏請)하여 흥덕왕의 승낙을 받아내는 것이 일맥상통하고 있다.

특히 장보고의 해상무역이 주로 평로절도사 산하의 산동반도 일대의 신라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장보고 스스로가 재당활동기간 중 적산 등 평로절도사 산하에서 재당신라인을 이끌고 무역활동에 종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으로 장보고는 평로절도사와 업무상 매우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때문에 청해진 설치에는 당의 평로치청절도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하나 논거로서 들 수 있는 것은 신무왕즉위(神武王即位) 축하사절단의 파견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의하면 평로절도사는 신라의 정치정세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즉 《입당구법순례행기》 839년 6월 28일조에 의하면 “당나라의 천자가 새로 즉위한 왕을 축하하기 위하여 신라에 사신으로 보냈던 청주병마사(靑州兵馬使)⁶⁴⁾ 오자진(吳子陳)과 최부사(崔副使), 그리고 왕판관(王判官) 등 30여 명이 절로 올라와 함께 만나 보았다.”라고 한다. 신무왕이 민애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것이 그해 윤정월(閏正月)이므로 왕의 즉위시점과의 사이가 4~5개월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신라외교의 일선창구담당관인 평로절도사는 황해해상무역과 깊은 관련이 있고, 장보고의 신라에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은 바로 황해해상무역의 안정에 깊은 관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평로절도사로서는 장보고가 관여한 왕위쟁탈전의 성공을 빨리 기정사실화하여 장보고의 지위를 확고히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신라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파견하는 사절단의 책임자가 청주병마사 오자진이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오자진은 평로절도사의 바로 밑의 부하이며, 무관직이다.

다음으로 청해진 설치와 관련하여 우선 군졸 1만 명의 성격이 문제가 된다. 김헌창의 대란을 겪은 지 몇 해 지나지 않은 당시에 신라조정이 변경해안지대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제공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장보고가 신라 국왕으로부터 현지 완도의 변민(邊民) 1만 명을 규합할 수 있는 양해를 받아 내어 일종의 민군조직(民軍組織)으로써 청해진을 설치한 것이 아닐까 한다.⁶⁵⁾ 혹은 장보고는 828년 4월 이전에 이미 완도지방에서 자신의 세력기반을 구축한 뒤, 국왕을 알현하여 자신의 세력을 조정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것인지도 모른다.⁶⁶⁾ 그 뒤 청해진이 국가의 공식기구라기 보다는 장보고의 사병집단적 성격을 농후하게 띠게 된 근본이유도 이 점에 있었다고 생각된다.⁶⁷⁾

장보고의 공식 직명(職名)은 청해진 ‘대사(大使)’ 인데, 신라의 무관(武官) 또는 외관(外官) 명칭에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골품제도 및 관등제도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는 일종의 예외적인 관직으로서, 어쩌면 중앙정부의 행정적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난 특수한 자격으로서 장보고 개인에 의해서 사용되었고, 또한 조정에서도 이를 묵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장보고는 중국에 있을 때 절도사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흔히 쓰여진 대사라는 명칭에 유념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당회요(唐會要)》에 의하면, 절도대사(節度大使)·진수대사(鎭守大

64) 청주는 이 당시 치청절도사의 회부였으므로 오자진의 관직명은 치청절도병마사로 기술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김문경 역주, 2001,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183쪽).

65) 金庠基, 1948, 《앞의 글》, 22쪽.

66) 浦生京子, 1979, 《앞의 글》, 51쪽.

67) 李基東, 1985, 《張保臯와 그의 海上王國》《張保臯의 新研究》, 100쪽.



현재의 장도 전경

使)·관찰대사(觀察大使) 등의 예가 많이 보이고 있다.⁶⁸⁾

끝으로 청해진의 관할영역을 살펴보겠다. 청해진이 설치되었던 완도는 현재 군소재지가 섬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나 장보고가 활동할 당시에는 장좌리(長佐里) 일대가 중심지였다. 완도군은 크고 작은 많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술했듯이 장보고는 군사 1만 명으로 청해진을 지켰다. 그러나 장도(將島)나 장좌리 일대로서는 1만여 군사를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⁶⁹⁾ 2000년에 이 지역의 총인구는 67,039명이고 그 가운데 남자는 모두 33,429명 정도이다.⁷⁰⁾ 따라서 완도

는 청해진의 총사령부가 위치하였던 곳으로 보이며, 그 관할영역은 오늘날의 완도군(莞島郡)·강진군(康津郡)·해남군(海南郡) 등을 비롯한 광범한 지역에 해당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⁷¹⁾

한편 청해진의 폐쇄 이후에 각지에서 군소해상세력들이 독자적으로 대중국무역을 전개하였다. 강주(康州)에서 독립된 세력으로 성장한 왕봉규(王逢規)는 경명왕(景明王) 8년(924)에 후당(後唐)에 사신을 보내어 자신을 절도사로 칭하였다.⁷²⁾ 이는 대외적으로는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서해안 무역활동을 원활하게 전개하여 경제적인 부를 획득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한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강주의 전역으로 세력기반을 확대해 나가던 왕봉규는 경애왕(景哀王) 4년(927) 4월 이후부터 경순왕(敬順王) 2년(928) 사이에 벌어진 고려와 후백제간의 공방전 속에서 몰락하고 강주는 경순왕 2년(928) 견훤에 의해 점령되었다.⁷³⁾

한편 금주(金州)의 군사책임자인 이언모(李彦謨)는 '사마(司馬)'인 동시에 중국 등주(登州)의 지후관(知後官)으로 장보고의 세력기반이었던 적산촌이 속해있던 등주와 금주와의 연락업무를 맡아보면서 금주의 경제적인 무역활동은 물론 신라의 외교적인 연락사무도 맡아보았다.⁷⁴⁾ 당시 이언모로 하여금 무역활동을 추진케 한 김해의 호족세력은 소율희(蘇律熙)로서 그는 특히 선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효공왕대에 이르러 김해지방이 선종의 요람지로서 명성을 날리게 했다.

왕건가문의 경제적 기반에 대해서는 종래 대중국 해상무역이 지적

68) 浦生京子, 1979, 〈앞의 글〉, 52~53쪽.

69) 長佐里 인근 竹靑里일대의 지명에 군사적인 색채를 띤 것이 많아 주목이 된다. 예컨대, 군마를 기르고 군마가 쉬던 장소였다는 '마골창', 군마 말먹이 먹이던 곳이라는 '비죽골', 군사들의 훈련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장군배기', 군선·상선의 제작장소였다는 '부수원(浮舟叟苑)', 장보고가 말을 타고 올라 청해진 일대를 내려다보며 정황을 살폈다는 '장군암(장군바위)' 등이다(김의일, 1999, 〈죽청리지명〉 《장보고와 21세기》, 해안, 201~206쪽).

70) 莞島郡, 2000, 《완도군 통계연감》.

71) 鄭泰憲, 1985, 〈淸海鎮과 他軍鎮과의 比較적 考察〉 《張保皋의 新研究》, 194~196쪽.

72) 《三國史記》卷12, 景明王 8年條: 《冊府元龜》卷972, 外臣部17 朝貢5 後唐莊宗 同光2年 1月條.

73) 《三國史記》卷50, 列傳10, 甄萱.

74) 《冊府元龜》卷976, 外臣部20, 後唐 明宗 天成 2年 3月 乙卯條.

되어 왔다.⁷⁵⁾ 그러나 당시 대중국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은 반드시 성(姓)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왕건 가문은 성을 관칭(冠稱)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과의 무역에 참여했을 가능성보다는, 해안을 따라 항해하면서 782년 신라가 평산(平山) 지역에 설치한 폐강진(溟江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신라 귀족과 상업활동을 벌임으로써 부를 축적⁷⁶⁾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나주(羅州) 지역에서도 해상무역을 통한 정치세력이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왕건의 부인이었던 나주오씨 집안은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경우로 보인다. 그리고 고려의 건국에 있어 이 지역이 중요하였던 것은 왕건이 궁예의 장군으로 강력한 해군력을 토대로 후백제의 배후인 나주 지역에 군사적 거점을 마련하여 후백제를 고립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⁷⁷⁾

한편 수도 경주의 외항으로서 일찍부터 활발한 국내외 무역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던 울산에서는 10세기 초반경에 호족으로 등장하고 있던 박윤웅이 달천철광과 수공업장을 장악함으로써 군사적 기반과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여 호족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⁷⁸⁾

3-1. 군산도(群山島)는 만경현의 서쪽바다에 있는데, 주위는 60리이다. 벼랑이 있어 선박을 감출 만하며, 무릇 조운(漕運)으로 왕래하는 자는 모두 이곳에서 순풍을 기다린다. 섬 가운데는 마치 군주(君主)의 무덤(陵)과 같은 대총(大塚)이 있다. 근세에 이웃 고을 수령이 그 무덤을 파내

어 금은기명(金銀器皿)을 많이 얻었는데, 사람들이 고발하자 도망쳤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4, 전라도 만경현(萬頃縣) 산천

해로의 요충인 고금산도에 군주의 무덤과 같은 대총(大塚)이 있고, 거기에서 많은 금은기명(金銀器皿)이 나왔다고 한다. 이 대총(大塚)의 주인공은 지방 관리가 아니라 호족이었을 것이고, 그 호족이 해상무역에 기반을 두었다면 바다의 호족이었을 것이다. 이같이 해상에서 활약한 사람들은 해도(海島)나 연해안의 요지에 근거를 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주로 선박 등을 소유하고 해상생활자 사이에서 지배적인 힘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역을 통한 이윤은 그들 자신의 치부(致富)나 관료권력층과의 결합 강화 등에 쓰였고, 관료와의 결합을 바탕으로 해상생활자사이에서 세력을 확장했을 것이다.⁷⁹⁾ 이외에도 정주(貞州)에서 서해의 해상활동을 통해 부를 형성한 유천궁(柳天弓),⁸⁰⁾ 압해현(壓海懸)의 적수(賊首)였다는 능창(能昌)⁸¹⁾ 등도 해상무역을 전개한 지방세력으로 볼 수 있다.

3-2. 발해인과 철리(鐵利) 총 1,100여 인이 교화를 사모하여 내조(來朝)했다. 출우국(出羽國)에 안치하여 옷과 양식을 주어 돌려보냈다.

— 《속일본기(續日本紀)》 권16, 천평(天平)18년, 746

사료 3-2는 새로 포섭한 말갈 제 부족을 회유하기 위해 발해왕권에 의해 교역단 같은 것이 조직되고, 그것이 발해의 국가적 사절의 일원

75) 朴漢尙, 1989, 〈羅末麗初의 西海岸交渉史研究〉《國史館論叢》7, 61~62쪽.

76) H. W. KANG, 1986, 〈Wang Kon and the Koryo Dynastic Order〉《韓國文化》7, 167~169쪽.

77) 朴漢尙, 1985, 〈羅州道大行臺考〉《江原史學》1: 文秀鎭, 1987, 〈高麗建國初의 羅州勢力〉《成大史林》4: 鄭清柱, 1991, 〈新羅末 高麗初의 羅州豪族〉《全北史學》14.

78) 具山祐, 1992, 〈羅末麗初의 蔚山地域과 朴允雄〉《韓國文化研究》5.

79) 日野開三郎, 1961, 〈羅末三國の鼎立と對大陸海上交通貿易〉(4)《朝鮮學報》20, 103~105쪽.

80) 《高麗史》卷88, 列傳1 神惠王后 柳氏.

81) 《高麗史》卷1, 世家1 太祖.

으로서 대외무역에 정기적으로 참가해 가는 초기단계의 일이라고 추측된다. 772년 이후 779년까지 발해의 5회의 대일본사절이 여러 점에서 이례적이고, 대규모화한 것은 발해의 말갈 제 부족에 대한 정치적 통합 과정에 관한 것이어서 이 시기의 대일본외교에 있어서의 혼란은 바로 이와 같은 발해의 정치과정을 미묘하게 반영한 것이었을 것이다.⁸²⁾

세 번째로 해상무역을 경영한 세력으로는 민간무역업자, 즉 상인을 들 수 있다.

3-3. 우금리(禹金里)에 사는 가난한 여자 보개(寶開)에게 장춘(長春)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바다의 장사꾼을 따라 나가더니 오래 되어도 소식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민장사(敏藏寺) 관음보살 앞에 가서 7일 동안 기도했더니 장춘이 갑자기 돌아왔다. 그 동안의 연유를 물으니 장춘이 대답했다. “바다 가운데서 회오리바람을 만나 배는 부서지고 동료들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지만, 저는 널판 쪽을 타고 오(吳)나라 바닷가에 닿았습니다. 오나라 사람이 저를 데려다가 들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스님 하나가 마치 고향에서 온 것처럼 은근히 위로하더니 저를 데리고 같이 가는데, 앞에 깊은 도랑이 있어 스님은 저를 겨드랑이에 끼고서 도랑을 뛰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가물가물하는데 우리 집 말소리와 우는 소리가 들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저녁때에 오나라를 떠났는데, 이곳에 도착한 것이 겨우 술시(戌時)였다. 이때는 바로 천보(天寶) 4년 을유(乙酉: 745년) 4월 8일이었다.

— 《삼국유사》 권3 탑상(塔像)4 민장사

82) 李成市, 1997, 《東アジアの王權と交易》, 青木書店, 146~147쪽.

우금리에 살던 보개라는 여인의 아들인 장춘이 상인을 따라 중국에 갔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경주에 살던 장춘의 존재를 통해, 장춘이 속한 상단이 대중국 해상무역에 종사했음을 알 수 있다.

발해의 민간무역업자로는 이광현(李光玄)을 들 수 있다. 최근 중국 학계에서 도교 경전인 《도장(道藏)》속에 이광현이라는 사람의 저작이 확인되었는데, 그가 발해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⁸³⁾ 이에 따르면 이광현은 어려서 고아가 되었고, 재산이 거만(巨萬)에 달했지만, 구도(求道)를 위해 약관(弱冠)에 출향(出鄕)한다. 그는 출향(出鄕)후 청사회서지간(靑社淮澌之間)을 왕래하며 화역(化易)하는 마을 사람들의 배에 타고 다니며 진인(真人), 도사(道士)를 찾다가 실패하고, 24세경에 귀향하였다고 한다.⁸⁴⁾ 따라서 이광현은 중국 남부 지역을 기반으로 일본과의 무역에 종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8세기 이후 정치적 혼란을 틈타 신라 각지에서 지방세력이 성장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장보고로 대표되는 해상세력의 성장은 사무역발달의 중요한 계기였다. 당시 무역경영층은 크게 중앙 및 지방관료층과 해상세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앙관료층은 전시기와 마찬가지로 조공이라는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이윤을 얻을 수 있었고, 지방관료층들은 독자적인 루트를 통해 해상무역을 전개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그리고 서남해안연안의 민간무역업자들도 해상무역에 종사해 큰 이윤을 얻었으리라 생각된다.

83) 朱越利, 1993, 〈唐氣功師百歲道人赴日考一以‘金液還丹百問訣’爲據一〉《世界宗教研究》3期,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王勇, 1999, 〈渤海商人李光玄について〉《アジア遊學》6.

84) 임상선, 2000, 〈‘渤海人’李光玄과 그의 道教書 檢討〉《韓國古代史研究》20, 656쪽.

3) 조선술 · 항해술의 발달

지금까지 신라시대 이전의 주선(舟船)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이러한 점은 신라배에 관한 자료가 매우 희귀하며 그것을 해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배에 관한 고고학적 자료는 5~6세기 삼국시대의 것으로 알려진 배모양토기(舟型土器)와 1975년 안압지에서 발견된 배가 전부이다. 그러나 삼국시대 이후로 우리나라는 중국대륙과 해로를 통하여 활발히 내왕하였고, 장보고의 선단이 한중 · 한일 간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점들과 고려초기에는 누선(樓船)이라 이를 만든 대형군선(大型軍船)과 1,000석을 실을 수 있는 조운선(漕運船)인 초마선(哨馬船)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9세기 당시에 조선술이 상당히 발달된 것으로 생각된다.⁸⁵⁾

일반적으로 중국을 비롯하여 동양 고대선(古代船)의 모양은 방두(方頭) · 방소(方艚) · 평저(平底)였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1960년 3월 당대(唐代)의 양주현(揚州縣)에서 대형 평저목선(平底木船: 길이 24m, 너비 4.3m, 깊이 1.4m)과 배 바닥이 둥글고 좁은 원저목선(圓底木船: 길



배모양 토기

85) 金在瑾, 1984, 《韓國船舶史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86) 강소성문물공작대, 1961~6, 〈揚州施橋發見了古代木船〉《文物》, 52쪽.

이 13.65m, 너비 0.75m, 깊이 0.56m)이 발굴되었다.⁸⁶⁾ 그리고 1973년 6월 당대(唐代)의 양주 해릉현(海陵縣) 여고진(如皋鎮) 굴항(掘港) 부근에서 인양된 당초의 목선(木船: 길이 17.32m, 너비 2.58m, 깊이 1.6m)도 방두 · 방소 · 평저형으로 전자와 동일한 기술로 조선되었다.⁸⁷⁾

그런데 당대에 이미 평저선보다 원양항해에 편리한 저원면고선(底圓面高船: 배 밑이 둥글고 갑판이 높은)도 건조되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중국 고대의 목범선(木帆船)은 대체로 네 개의 선형이 있다. 즉 사선(沙船) · 복선(福船) · 광선(廣船) · 오선(烏船)이 그것이다. 사선은 주로 강소 이북에서 많이 이용되었고 복선은 복건(福建), 광선은 광둥(廣東), 오선은 절강 등 양자강 이남지방에서 이용된 선형이다. 사선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지만 복선 · 광선이 언제부터 건조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시가교 고선(古船)의 예를 통해 볼 때, 당대에 이미 첨저선(尖底船)이 출현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선은 중국 고대의 전형적인 선형으로 비단 강소 이북의 해양에서만 아니라 복건 · 광둥 등 남양해역에서도 이용되었다. 중소형의 화물선 · 어선 등으로도 많이 쓰였고, 또 주변국가에도 널리 전파되었다. 신라선(新羅船)이나 완도선(莞島船)도 그러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⁸⁸⁾ 그러나 청해진이 설치된 시기에는 신라에도 원양항해에 적합한 원저선이 이용되었으리라는 짐작이 간다. 신라선단이나 나당일 삼국을 종횡무진 왕래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원양항해에 있어서도 일본이나 중국 남조와의 오랜 교역경험을 통하여 조류 · 바람 · 해류 등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였다. 특히 간만의 차이가 심한 우리나라 남해안 · 서해안의 해운에 있어서는 조류도

87) 南京博物院, 1974~5, 〈如皋發見的唐代木船〉《文物》, 84쪽.

88) 金在瑾, 1981, 〈中世의 船舶에 대하여〉《文化財》14, 文化財管理局, 120쪽.

나 해류도가 없었던 시절, 범선들은 밀물과 썰물의 현상을 잘 알아야 험한 해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배의 키는 동양 고유의 선미현수타(船尾懸垂舵: slung-type axial vertical rudder) 형식으로 되어 있어 서양 배의 측타(側舵: side rudder) 양식에 비하여 배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월등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하의 조정이 자유로워 우리나라 연안 항해에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⁸⁹⁾

계절풍과 풍력을 이용한 항해도 크게 발전했다. 서해에서 겨울철(12월~2월) 바람은 북서 및 북풍이 주류를 이루며 봄철(3월~5월)이 되면 점차 남풍으로 바뀐다. 여름철(6월~8월)은 봄철과 비슷하며 서남풍이 분다. 가을철(9월~11월)은 남풍이 다시 북서풍으로 바뀌는 계절이다. 그러므로 신라에서 당으로 출발하는 시기는 가을철이 가장 적당하며, 당에서 돌아오는 시기는 늦은 봄에서 여름철이 가장 적당하다. 법흥왕 이후 중국 남조와의 교역이나 많은 학문승들의 당 나들이도 이와 같은 계절풍을 잘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9세기 이후가 되면 항해술의 발달로 역풍을 이용한 항해도 많아졌다.⁹⁰⁾

이상에서 9세기 당시의 조선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당시 신라인들은 동아시아해역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예는 《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즉 9세기 중엽까지 일본은 견당사(遣唐使)라는 조공사절단을 파견하였는데 그 조공선의 항해기술지도는 신라인이 담당하고 있었고, 838년에 당에 파견된 일본 조공선이 가는 길에 조난하였는데 올 때는 신라인선원이 운항하는 선박에 의하여 839년에 귀국하였으며, 엔닌도 신라선으로 일본에 귀환할

것을 기약하고 있다가 847년에 실제로 신라선으로 귀국하였다. 항해술의 발달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조공사가 839년에 귀국할 때, 선박의 조달과 항해요원의 확보를 재당신라인에게 의뢰하였는데, 신라인들은 9척의 배와 60인의 수수(水手: 선원)를 마련하였다.⁹¹⁾ 배의 조달과 고급항해기술자를 60명이나 동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의 항해술이 높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중국 및 일본 간의 항로가 신라인에 의하여 잘 완비되어 있었고, 양국 간의 교통·통신은 매우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신라인의 항로지배에 대하여 중국인들은 깊은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⁹²⁾

셋째, 전술했듯이 신라선의 기동력은 대단히 탁월하였으며, 강풍이나 악조건의 해상이라도 능히 극복하여 신속하게 항해할 수 있었다. 847년 9월 2일 정오에 산둥반도를 출발한 신라선은 다음날 새벽에 한반도 서해안의 해역에 이르렀고, 9월 10일에는 기타큐슈에 도착하였는데,⁹³⁾ 이러한 속도는 오늘날의 항해기술수준에 비추어 보아도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동아시아의 제해권을 신라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빈번히 왕래하는 신라선에 비하면, 중국 및 일본의 무역선은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보이는 한에 있어서는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무역선 선원의 대다수가 신라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신라인들은 중국내의 연안 수송까지 담당하고 있었다.⁹⁴⁾

91) 《入唐求法巡禮行記》卷1, 開成 4年 3月 22日條.

92) Reischauer, 1955, Ennin's Travels in Tang China, Ronald Press Company, p.266.

93) 《入唐求法巡禮行記》卷4, 會昌 7年 9月 2日條.

94) Reischauer, 1955, ibid, p.85.

89) 金在瑾, 1985, 《張保臯時代の貿易船과 그航路》《張保臯의新研究》, 莞島文化院, 127쪽.

90) 金文經, 1998, 《해상활동》《한국사》9—통일신라—, 국사편찬위원회, 303~304쪽.

다음으로 9세기 당시 신라와 발해의 무역선단이 이용했을 대중국항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반도와 중국대륙을 연결하는 고대 항로는 북중국항로(北中國航路)와 남중국항로(南中國航路)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북중국항로는 요동반도와 한반도의 연안을 거치는 연안항로와 산둥반도와 황해도 사이를 직접 횡단하는 황해횡단항로(黃海橫斷航路)로 구분되고, 남중국항로(南中國航路)는 중국 남북부의 연해안과 한반도의 서해안을 따라 내왕(來往)하는 연안항로와 중국 본토와 한국 남단 간에 가로놓인 동중국해(東中國海)를 가로지르는 항로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북중국항로(北中國航路) 가운데 요동연안항로(遼東沿岸航路)는 산둥반도북부(山東半島北部)와 요동반도의 최단거리인 노철산수도(老鐵山水道)를 반드시 건너는 것이고, 한편 남중국항로(南中國航路) 중 북방경유항로는 중국 남부에서 연안을 따라 산둥반도까지 와서 두 갈래 북중국항로 중 어느 하나를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북중국항로와 남중국항로는 노철산수도경유항로⁹⁵⁾와 황해횡단항로⁹⁶⁾를 포함하는 북로(北路)와 동중국해사단항로(東中國海斜斷航路)를 포함하는 남로(南路)⁹⁷⁾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일무역항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당·일 교통로에는 남로와 북로(北路: 일명 渤海路)가 있다고 한다.⁹⁸⁾

95) 申滢植은 《新唐書》卷43下, 志33下, 地理7下 嶺南道條 에 나오는 “唐置霸靡諸州 皆傍塞外或寓名於夷落 而四夷之與中國通者甚衆 (中略) 其入四夷之路與關戍走集最要者七 一曰營州入安東道 二曰登州海行人高麗渤海道 三曰夏州塞外通大同雲中道”라는 기사를 근거로 이 항로를 고려말해항로라고 부르고 있다(申滢植, 1989, 《韓國古代의 西海交涉史》《國史館論叢》2, 7쪽). 尹明喆은 이 항로를 환황해연근해항로라고 정의하고 있다(尹明喆, 2000, 《新羅下代の 海洋活動研究－해양환경 및 대외항로를 중심으로－》《國史館論叢》91, 219쪽).

96) 申滢植은 백제에 의해서 개척되고 신라의 공식적인 朝貢路였던 이 항로를 신라항로라고 부르고 있다(申滢植, 1989, 〈앞의 글〉, 9-19쪽). 尹明喆은 이 항로를 황해중부횡단항로라고 정의하고 있다(尹明喆, 2000, 〈앞의 글〉, 223-229쪽).

97) 윤명철은 이 항로를 황해남부사단항로라고 정의하고 있다(尹明喆, 2000, 〈앞의 글〉, 230-232쪽).

북로는 나니와[難波]—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시모노세키[下關]—백제연안(百濟沿岸)—황해(黃海)—등주(登州)로 이어지는 것이고, 남로는 대개 하카대[博多]—오도열도(五島列島)—동중국해(東中國海)—장강구(長江口)로 이어지는 교통로이다. 이 두 교통로는 거리에 있어서 남로가 북로보다 짧다. 뿐만 아니라 정박하는 곳이 많은 북로는 비용과 날짜가 많이 걸리는 반면, 남로는 비용과 날짜가 덜 걸린다. 그러므로 일본은 사활을 걸고 남로를 개척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 시기는 701년 이후로서, 일본이 신라와의 관계악화로 신라 영해를 통과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자체 개발한 항로가 남로였다. 8세기에 들어오면서 일본이 남로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북로에서보다 큰 위험을 동반하였고, 또 그러한 많은 경험을 통하여 북로의 이용이 대체로 안전을 보장받는 교통로로 인정되고 있었다.

당과 일본이 소위 북로(발해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물론 독자적인 항해가 있었을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백제인 혹은 신라인이 동승하여 그 안내에 따라 항해하고 있는 것은 항해술의 미발달이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아직 연안항해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데 있다 할 것이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서남해안에서의 밀של물작용과 지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데 연유하여 해로를 숙지하고 있는 신라인을 동승시킨 것이라 생각된다.⁹⁹⁾

98) 王韓五, 1959, 《中國日本交通史》, 臺灣商務印書館, 70-71쪽.

99)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밀של물작용 현상은 祖江(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한 곳)을 기점으로 크게 4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① 祖江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과 康津郡의 葛頭山 서쪽까지로 밀של물작용은 최고 11m에서 최저 3-4m. ② 葛頭山으로부터 金海 앞바다까지로 최고 4m, 최저 2m. ③ 金海로부터 蔚山 앞바다까지를 제 3지역으로 하며 최고 2m, 최저 1m. ④ 蔚山東北의 해안 지방으로 밀של물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4개 지역 중 해상교통상 가장 요충지가 되는 곳이 제 1지역이다. 이 지역은 좁은 목을 이루는 데다 풀(바다 속에 모래가 쌓여서 물이 얇은 곳)과 등(물 속에 있는 암석이 숨겨졌다 보였던 하는 곳)이 숨겨져 있고, 좁은 목인 만큼 밀של물작용이



후쿠리(福浦)항 전경—발해 사절단이 도착했던 항구

이외에 발해와 일본 간의 항로는 크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해 북부 횡단항로는 일본과 발해교섭의 초기에 주로 이용된 것으로 그다지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았고, 동해 북부 사단항로는 고구려항로를 계승한 것으로 발해의 대일사절단에 의해 거의 전시기에 걸쳐 이용된 것으로 정치적인 루트였다고 할 수 있다. 동해중단항로는 일본에 도착하는 지역으로 보아 국제교역의 성격이 강한 루트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해주항로는 주로 말갈인들을 위주로 한 민간인들의 무역에 많이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⁰⁰⁾

특이하게 일어난다. 심한 썰물일 경우 맞은 편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3각파도를 일으켜 조난사고의 위험을 주는 곳이다. 특히 제 1지역이 끝나는 곳에 완도가 위치하고 있고, 또 크고 작은 섬들이 다도해를 이룸으로써 밀물때의 이용이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장보고는 이 지역 출신으로 이런 바다의 지형적 특성에 익숙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方東仁, 1985, 〈淸海鎮의 戰略的 位置〉《張保皋의 新研究》, 170~173쪽).

100) 尹明喆, 1999, 〈渤海의 海洋活動과 東亞의 秩序 再編〉《高句麗研究》6—발해건국 1300주년—, 학연문화사.

요컨대 원양항해에 적합한 무역선의 건조와 바다의 여러 지형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및 고급항해기술자의 다수 확보는 사무역 발달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청해진 설치의 의미

828년 청해진의 설치를 계기로 당과 일본에 형성되어 있던 재당신라 인사회와 청해진, 재일신라인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일련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즉 당에는 7세기 이래 고구려 및 신라 유이민이 이주하여 재당신라 인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당에 건너가 무녕군 소장으로 일단의 성공을 거둔 장보고는 이 재당신라인사회를 자기통제 아래 뒀으로써 중국 내에 기반을 다지게 된다. 재당신라인사회에 거주하던 신라인들은 주로 바다와 관련된 생업에 종사하면서 장보고무역선단의 주요 구성원이 된다. 그는 당시 동아시아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던 완도에 거점을 마련하고 항로를 장악하여 중개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8세기 중엽 이래 일본은 당·신라와 공적인 관계는 사실상 끊겨서 무역의 관리를 다자이후(大宰府)에 일임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장원제(莊園制)의 발달에 의해 재지세력(在地勢力)에 의한 치외법권적(治外法權的)인 장원 안에서의 사무역이 증가하고 있었다. 게다가 사치스런 생활을 하고 있던 궁정귀족들의 박래품(舶來品: 수입품)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백제의 멸망이후 건너간 유이민과 자연재해로 인해 이주한 신라인들에 의해 재일신라인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장보고는 재일신라인사회와 청해진 및 재당신라인

사회를 연결하는 일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단기간에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¹⁰¹⁾

한편 신라에 의한 해상무역장악의 결과로 주목되는 사건이 발해의 대일본 사절단의 파견 시기이다. 대일무역은 처음에는 발해가 주도했던 듯하다. 그 가운데서도 771년(혜공왕 7년)의 사절이 325인이라는 전에 없던 수효로 일본에 간 것은 무역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²⁾

일본에서 발해에 의한 중개무역이 번영을 구가한 것은 보귀연간(寶龜年間: 770~781년) 이후 9세기 초 무렵까지의 기간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동안은 발해 사절이 왕래한 횟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이며,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 826년(흥덕왕 원년)에는 12년마다 한 번씩 조공하는 원칙이 발해에 제시되고 있다.¹⁰³⁾ 그러나 828년(흥덕왕 3년) 청해진 설치 이후 발해 사절의 도착은 시간적으로 멀어졌다.

이러한 발해 사절의 왕래 횟수가 감소되는 것과 거의 표리를 이루는 것이 신라선(新羅船)의 출현이다. 일본과 신라와의 공적인 교통의 단절 후 흥인연간(弘仁: 810~823년)으로부터 상선이 나타나고,¹⁰⁵⁾ 840년(문성왕 2년) 왕래한 장보고¹⁰⁶⁾로 대표되는 활발한 다자이후무역(大宰

〈표〉 발해 중흥기¹⁰⁴⁾ 발해 사절의 일본 왕래

차수	출 국 시 기	귀국시기	사 절 단	관직·관등	비 고
19	宣王 建興2년(819)		李承英		方物을 바침
20	宣王 建興4년(821)		王文矩		方物을 바침
21	宣王 建興6년(823) 11월		高貞泰		別貢物, 契丹 大狗 2口, 倭子 2口 등을 바침
22	宣王 建興8년(825) 12월		高承祖 외 103인		大使이하 梢工 이상 絹綿을 차등있게 하사
23	宣王 建興10년(827) 정월		王文矩 외 100인		
24	大彝震 咸和 12년(841)	842년 4월	賀福延 등 105인		私獻方物
25	大彝震 咸和 19년(848) 12월	849년 4월	王文矩 외 100인		信物을 바침
26	大虔晃 3년(859) 1월	859년 6월	烏孝愼 외 104인		
27	大虔晃 4년(860) 1월		李居正 외 105인		
28	大玄錫 원년(871) 12월		楊成規 외 105인	慰軍 大將軍	大蟲皮7장·豹皮6장·熊皮7장·蜜5斛 등을 바침, 私交易을 함
29	大玄錫 6년(876) 12월	877년 6월	楊中遠 외 105인	政堂省	玳瑁酒盃 등을 바치려 했으나 거절당함
30	大玄錫 12년(882) 11월	883년 3월	裴璆 등 105인	孔目官	方物을 바침 私交易을 금함
31	大玄錫 21년(891)		王龜謀		
32	大玄錫 24년(894)		裴璆		

※ 위의 표 가운데, 차수는 발해의 대일본사절단의 전체 차수가운데 일련번호임.

府貿易)이 전개되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대외적으로 극히 폐쇄적인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무역의 관리를 다자이후(大宰府)에 일임하고 있었다.

위의 표는 발해 중흥기 발해 사절의 일본 왕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표에서 주목되는 점은 청해진이 설치된 828년에서 장보고가 암살되는 841년까지 발해 사절의 일본 왕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장보고의 청해진에 의한 동아시아 해상무역 장악에 의해 그 이전시기까지 활발했던 발해 사절의 일본 왕래¹⁰⁷⁾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7) 尹載云, 2001, 〈앞의 논문〉의 〈표〉 왕권 강화기 발해 사절의 왕래와 〈표〉 왕권 동요기의 발해 사절 참고.

101) 尹載云, 1996, 〈9世紀 前半 新羅의 私貿易에 관한 一考察〉《史叢》45.

102) 東野治之, 1984, 〈日唐間における渤海の中繼貿易〉《日本歴史》438, 吉川弘文館.

103) 《類聚國史》卷194, 殊俗·渤海下, 天長 3年 3月 戊辰朔條.

104) 발해의 중흥기는 宣王때부터 大玄錫까지의 시기를 말한다(尹載云, 2001, 〈渤海의 王權과 對日貿易〉《韓國史學報》11, 高麗史學會).

105) 《日本後紀》卷21, 弘仁 2年 8月 甲戌: 《日本後紀》卷22, 弘仁 3年 春 正月 甲子: 《日本後紀》卷22, 弘仁 3年 3月 己未朔: 《日本後紀》卷22, 弘仁 3年 9月 甲子: 《日本後紀》卷24, 弘仁 5年 10月 丙辰: 《日本後紀》卷24, 弘仁 5年 10月 庚午.

106) 《續日本後紀》卷10, 承和 7年 12月 癸卯.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은, 장보고·신라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보여진다. 821년에 발해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왕문구가 일본 귀족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공급하여, 그들과의 교역을 적극 전개해 나가자, 일본이 발해와의 사사로운 교역을 금지하면서 관리가 이를 어기면 무거운 죄로 처벌하고, 서민이 어겼을 경우에는 100대의 매로 대신한다는 법을 정한 것¹⁰⁸⁾은 발해와의 외교를 크게 제한하였음을 의미한다.¹⁰⁹⁾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해는 당과의 외교를 적극 강화해 나간다. 즉 선왕은 818년부터 822년까지 2년마다 열렸던 대당외교를 824년부터 829년까지 매년 전개해 나갔다. 이처럼 발해가 집중적으로 당에 사신을 파견한 이유는 당과의 외교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컸기 때문이다. 장보고는 일본뿐만 아니라 산둥 지방을 무대로 하여 주변지역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대규모 해상무역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해의 대당외교 또한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등주에 신라관(新羅館)과 발해관(渤海館)이 설치된 것은 발해와 재당신라인, 특히 장보고와의 경쟁관계를 짐작케 해준다. 이러한 상황은 선왕의 다음 왕인 대이진(大彝震) 시기에도 계속된다.

결국 왕권동요기의 혼란 와중에서 즉위한 선왕은 말갈부족의 재정복과 지방행정구역의 완비를 통해 ‘해동성국(海東盛國)’이란 호칭을 들을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그러나 828년 청해진의 설치를 계기로 한 장보고에 의한 해상무역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 발해는 대당외교나 무역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108) 《類聚三代格》卷18, 夷俘并外蕃人事.

109) 朴眞淑, 1998, 〈渤海 宣王代の 對日本外交〉《韓國古代史研究》14, 韓國古代史學會, 408~424쪽.

4. 청해진의 혁파와 무역질서의 변화

1) 청해진의 혁파와 그 영향

장보고의 해상왕국이 몰락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신무왕의 즉위에 무력을 동원하여 개입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결정적 사건은 역시 자신의 딸을 문성왕의 두 번째 왕비로 들여보내려다가 성사되지 못한 것에 원망을 품고 있다가 염장에게 살해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신무왕의 즉위에 공을 세우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장보고에 대하여, 일부 고위직에 있는 인물들이 중앙 정치 무대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장보고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 또한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에는 장보고가 846년(문성왕 8년)에 살해당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신당서》 신라전(新羅傳)에 당나라와 장보고의 왕래가 841년 이후에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나, 《속일본후기》의 장보고 사망 연대 및 《입당구법순례행기》 등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장보고

는 841년에 염장에게 살해당한 것이 확실하다. 문성왕에게는 본래 박 씨 성의 왕비가 있었다. 그런데 장보고는 딸을 문성왕의 둘째 왕비로 들여보내려다 좌절되어 살해되었지만, 위흔(魏昕)이라는 이름도 사용한 김양은 장보고가 죽은 뒤인 842년(문성왕 4년) 3월에 자기의 딸을 국왕의 둘째 왕비로 결혼시켰다.

이 과정에서 아마 김양과 장보고의 알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출신 성분은 미미하지만, 국왕으로부터 진골(眞骨) 귀족급에 해당하는 상당한 예우를 받는 장보고가 점차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딸마저 왕비로 만들려 하자, 중앙 정치 무대에 강력하게 대두하는 장보고의 영향력을 우려한 김양이 염장을 이용하여 장보고를 제거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견해로는 청해진 설치 이후 해상무역권을 박탈당했던 서남해안 일대의 여러 작은 세력들이, 장보고 딸과 문성왕의 혼인 문제가 발생하자 중앙세력과 결합하여 장보고를 제거하였을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장보고를 살해한 염장이 본래 청해진지역을 관할하는 무주 출신이었으며, 신무왕 즉위 이후 공로를 인정받아 무주를 다스리는 두 번째 서열인 주조(州助)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즉 염장 자신도 해상세력 출신이었으나, 장보고의 등장으로 위축되었던 인물이라고 파악하는 것이다.

여하튼 딸과 국왕의 혼사 문제로 인하여 장보고가 피살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장보고의 사망과 함께 청해진 해상왕국은 몰락하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청해진은 염장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보인다.

이것은 《속일본후기》에 염장이 자신의 부하인 이소정(李少貞)을 일본에 보내어, 장보고 당시 일본으로 가져간 무역품을 돌려달라고 요구

하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이창진 같은 사람이 염장에 대항하여 군사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장보고 사망 이후 장보고의 추종 세력들은 대부분 제거되거나 뿔뿔이 흩어졌다. 예를 들어, 한때 대당매물사로 활동했던 최훈(崔暉)은 당나라 연수(漣水)의 신라방으로 망명하였다. 또 일부는 일본으로 망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청해진 해상왕국은 일시 염장에 의해 관리되었지만, 장보고가 이루어 놓았던 군사적 기반이나 해상 교역망(交易網)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염장 정도의 인물로는 장보고의 뒤를 이어 동북아시아 해상무역권을 장악해 온 청해진을 관리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염장은 장보고와 같은 거대한 해상왕국을 이루고 유지하기 보다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서남해안을 자신의 세력 근거지로 확보하여 이득을 취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신라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국익과는 관계없이 또 하나의 반정부(反政府) 지방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 중앙 정부는 851년(문성왕 13) 2월에 청해진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것은 장보고가 염장에게 살해된 지 9년 남짓만의 일이었다. 중앙 정부는 청해진을 없애고, 그곳의 주민 집단을 단체로 벽골군(碧骨郡: 지금의 김제)으로 이주시켰다. 이렇게 특정지역의 백성들을 단체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사민(徙民)이라고 한다. 고대 사회에서의 사민은 몇 가지 이유에서 행하여졌다.

첫째는 중요지역에 소경을 설치하는 경우, 경주 사람들을 그곳으로 옮겨 중앙 고급문화가 지방으로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사민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는 새로이 영토를 개척하여 통치 영역을 확장하였을 경우, 새로운 땅에 백성들을 이주시켜 정착토록 함으로써 행정적으로 완전히 영역화 하기 위한 사민이 있다. 셋째는 반란을 일으켰을 경우 그

곳 사람들을 단체로 생소한 다른 곳으로 옮겨 원래의 거주지에서 갖고 있었던 토착적인 기반을 빼앗아버리기 위한 사민이 있다. 따라서 청해진을 없애고 그곳 백성들을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군으로 옮긴 것은 세 번째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떠한 토착적 세력 기반을 박탈하기 위해 신라 중앙 정부가 청해진 백성들을 벽골군으로 옮겼는가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청해진이 장보고의 세력 근거지였기 때문에, 청해진 백성들을 벽골군으로 옮긴 것은 장보고의 잔여 세력들을 토착지역에서 분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청해진을 없애고 백성들을 벽골군으로 옮긴 것은 장보고가 사망한 지 9년이 지나서이다. 장보고의 청해진 해상왕국 세력들을 자신들의 근거지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했다면, 장보고 사망 직후 사민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해진의 해체와 백성들에 대한 사민은 장보고가 사망한 9년 후에 있었다. 또 장보고의 추종 세력들은 이창진처럼 염장을 없애고 청해진 해상왕국을 부활시키려 하다가 죽임을 당했거나, 당나라나 일본 등지로 망명을 떠났다. 아마 장보고 사망 이후에도 청해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청해진 해상왕국의 중요 인물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여타 내륙 지방의 경우와는 달리, 청해진 해상왕국의 사람들은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장보고의 사망 및 염장의 등장과 동시에 바다를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 떠났을 것이다.

따라서 851년에 청해진을 해체하면서 벽골군으로 사민시킨 대상들은 아마 염장 세력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장보고의 해상왕국 시절부터 청해진에 거주하던 백성들도 일부 벽골군으로 사민되었을 것이지만, 청해진 해체와 사민의 주요 목적은 청해진에 근거

하여 점차 세력을 키워가던 염장 집단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이다. 장보고 해상왕국 세력의 힘을 경험해 본 신라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군사·행정 편제에 의해 설치된 여타 군진과는 다른 청해진에서 염장이 점차 세력을 확장할 경우, 장차 장보고와 같은 세력으로 성장할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해진 해체와 벽골군으로의 사민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828년(흥덕왕 3) 3월 장보고의 건의에 의해 설치되었던 청해진은 851년 2월에 23년의 역사에 종말을 고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838년(민애왕 원년) 12월에 장보고가 김우징을 도와 민애왕에 대한 반기를 들기까지, 거의 11년 동안 장보고는 청해진을 근거로 하여 동북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를 잇는 삼각 중개 무역의 중추를 담당하였다. 이 시기가 실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해상무역을 석권하였던 장보고 해상왕국의 전성기였다. 839년 신무왕의 즉위와 계속되는 문성왕의 즉위로 장보고는 명예와 정치적 입장에서 생애 절정기를 맞았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시기가 바로 청해진 해상왕국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단서가 열린 때였다.

장보고는 841년 11월에 염장에게 피살되었으니 해상왕국을 이룬 거의 14년 만의 일이었다. 이후 염장에 의해 9년 남짓의 기간 동안 청해진은 존속되었으나, 더 이상 해상왕국의 명성을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동북아시아 바다를 석권했던 장보고 해상왕국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기간은 한 때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해상왕국을 건설하였으나, 결국은 지나치게 정치 현실에 깊숙이 개입한 대가로 치러야 했던 청해진 해상왕국의 쓸쓸한 마지막 모습이었다. 정치 논리와 권모술수에 익숙하지 못한 거대 해상왕국이 혼란한 정치 상황

의 와중에 휩쓸려 힘찬 파도의 마지막 물거품처럼 사라져 간 것이다.¹¹⁰⁾

청해진의 혁파는 장보고에 의한 무역독점이 해소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해상세력이 대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해상세력은 호족중의 일부로 보여지는데, 강주(康州)의 왕봉규, 금주(金州)의 이언모(李彦謨), 울산의 박윤웅, 개성지방의 왕건, 나주 오씨, 영암 최씨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신라 중앙정부에 의한 무역 장악노력(해상요충지의 여러진)도 보이고 있고, 민간무역업자들의 등장도 엿보인다. 결국 각계각층에 의한 무역활동이 나타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청해진혁파의 영향으로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신라에 의한 동북아시아 무역독점의 주도권이 바뀐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에 왕래한 상인의 명단과 일본에서 출토되는 도자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본의 코로칸(鴻臚館)이 처음 보이는 것은 847년 입당승(入唐僧) 엔닌(圓仁) 등이 귀국한 사료로, ‘코로칸 앞에 이르렀다’라고 나온다. 그 후 코로칸은 정관연간(貞觀年間: 859~876년)에 집중해서 보이지만, 1091년 대송 상인(大宋商人) 계거간(季居簡)이 다라니경을 비교한 기사를 최후로 모습을 감춘다. 따라서 홍려관의 전신인 쓰꾸시관(筑紫館) 시대를 포함하여 홍려관이 두어진 시기는 400년이고, 외교기관과 교역의 거점으로서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 오랜 기간을 도자무역(陶瓷貿易)의 관점으로 나누면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시기는 8세기 말에서 9세기 전반으로 신라상인이 중심이었던 시기이다. 둘째 시기는 9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전반으로, 중국에서 당상인이 교역의 중심을 담당하던 시기이다. 이같이 시기구분하는 것은 각 시기의 도자무역 상인이 다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10) 최광식외, 2003, 《천년을 여는 미래인 해상왕 장보고》, 청아출판사, 259~265쪽.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일본에 간 상인관련 자료이다. 9세기의 1/4분기와 그 이전 8세기대에 당상인의 내항사료는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승화연간(承和年間: 834~847년)까지 일본에 간 상인은 당·신라인이 혼재하고 있어서, 그 뒤에 일반적인 당상인 만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초기 무역도자기의 출토지가 평성경(平城京)과 다자이후(大宰府) 관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후자에 많다는 점이다. 이런 실태는 신라사가 가져온 화물이 평성경(平城京)과 대부분은 코로칸(鴻臚館)에서 매매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자이후를 중심으로 서해도(西海道) 관청이나 관내 사원에서 수입화물(일본에서는 舶載貨物이라고 했다)의 유통도 가능했을 것이라 추측된다.¹¹¹⁾

2) 9세기 후반 교역질서의 변화

청해진의 혁파는 장보고에 의한 무역독점이 해소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해상세력이 대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장보고의 사후 그 세력에 속했던 이들의 동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타나며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4. ...장보고가 죽고 그의 부장(副將) 이창진(李昌珍) 등이 반란을 일으키고자 함에, 무진주(武珍州) 별가(別駕) 염장(閔丈)이 군사를 일으

111) 尹載云, 2002, 《南北國時代 貿易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켜 토벌하여 평정하였으므로 지금은 이미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적의 무리들이 망을 빠져나가 문득 당신들 나라에 도착하여 백성들을 소란스럽게 할까 두렵습니다. 만약 그 쪽에 도착한 배 중에서 공식문서를 가지지 않는 자가 있으면, 청컨대 있는 곳에 엄히 명하여 심문하여 붙잡아 들이십시오. … 또 말하기를 “이충(李忠) 등은 회역(廻易)의 일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나라에서 난리를 만나 무사히 도착할 수 없어 다시 쓰꾸젠(筑前)에 온 것이다. 그 후 어려계(於呂系) 등이 귀화하여 와서 ‘우리들은 장보고가 다스리던 섬의 백성입니다. 장보고가 작년 11월 중에 죽었으므로 평안하게 살 수 없는 까닭에 당신 나라에 온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 《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 권11, 승화(承和) 9년 정월 10일 을사

3-5. 일찍이 청해진(淸海鎭) 병마사(兵馬使)였던 최훈십이랑(崔暉十郎)을 만났다. 등주(登州) 적산원(赤山院)에 머물러 있을 때 한 차례 서로 만났다. (중략)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가 신라에 이르렀을 때 국난(國難)을 만나 도망하여 연수(漣水)에 이르러 머물고 있었다.

— 《입당구법순례행기》 권4, 회창(會昌) 5년 7월 9일

3-4 사료는 842년 염장의 부하였던 이소정(李少貞)이 회역사(廻易使) 이충(李忠)의 물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본정부가 논의한 내용이다. 염장의 요구에 대한 일본정부의 조치는 결국 이충 등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것이었지만, 이들이 보인 반염장 태도로 보아 그들이 신라로 돌아갔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사료 3-5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훈(崔暉)이 망명하여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연수현(漣水縣)은 재당신라인들의 중심지였다. 그가

재당신라인들이 거주하면서 교역활동을 하던 해운교통지 연수현에 망명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견당매물사(遣唐賣物使)로 활동했던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재당신라인들의 친장보고(親張保臯) 성향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는 곧 재당신라인들이 장보고가 암살 당한 후 신라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9세기 전반에 비해 후반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당과 일본 간 교역질서의 또 다른 특징은 9세기 전반까지 계속하여 당과 일본 간의 교역을 주도했던 신라상인들이 850년대 초에 당상인과 혼재(混在)하는 양상을, 그 이후에는 사료에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853년 발해인으로 추정되지만 당인(唐人)으로 기록된 이연효(李延孝)와 함께 당과 일본을 왕래했던 신라인 왕초(王超)의 기록 이후에는 일본 역사서에 신라인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¹¹²⁾

이외에도 국적이 혼동되어 표기된 경우가 주목된다. 우선은 흠량휘(欽良暉)를 들 수 있다. 엔닌이 귀국하기 위해 일본으로 돌아가는 선편을 수소문하던 중 847년 6월에 당인(唐人) 강장(江長)과 신라인 김자백(金子白), 흠량휘, 김진(金珍)¹¹³⁾ 등이 소주(蘇州)에서 일본으로 갈 것이라는 편지를 받고, 이들의 배를 이용하여 귀국하게 된다.¹¹⁴⁾ 이렇게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신라인으로 나오던 흠량휘는 《원진전(圓珍傳)》에는 ‘대당국상인(大唐國商人)’으로 나오고 있다.¹¹⁵⁾ 862년 장지신(張支

112) 南漢鎬, 1997, 〈9世紀 後半 新羅商人의 動向〉 《靑藍史學》創刊號, 한국고원대학교靑藍史學會, 134-135쪽. 여기서 서술한 國籍은 日本史書에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日本史書에는 신라인·발해인이 확실한 경우에도 唐人으로 서술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것은 일본에 입국할 당시에 본인들의 주장에 의거해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13) 《續日本後紀》卷17, 承和 14年 10月 甲午條에는 ‘唐人 42人’으로 되어 있어 김진이 신라인이 아니라 당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114) 《入唐求法巡禮行記》卷4, 大中 元年 6月 9日.

115) 김문경 역주, 2002, 《엔닌의 入唐求法巡禮行記》, 중심, 522쪽.

信)¹¹⁶⁾과 동행했던 김문습(金文習)의 경우 《두타친왕입당략기(頭陀親王入唐略記)》에서는 당나라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신라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¹⁷⁾

〈표〉 민간상인의 일본왕래¹¹⁸⁾

선주(船主)와 선원	출발장소	도착장소	출발일시	도착일시	동승자	출전
唐人 張賞濟 新羅人 王請·李信忠		出羽國 (漂着)		弘仁10년 (819)		入唐求法巡禮行記
唐人 李隣德	明州		承和9년(842)		惠萼	入唐求法巡禮行記
唐人 李處人	肥前 值嘉島		承和9년 8월(842)		惠運	安祥寺惠運傳
新羅人 張公靖 등 26人	楚州	長門國	承和10년(843)	同 12월 癸亥	仁好, 順昌	入唐求法巡禮行記, 續日本後紀
日本人 神御井 등	明州		承和 14년4월(847)			入唐求法巡禮行記
新羅人 張支信, 元淳 등 37人	楡州 望海鎮	肥前國 值嘉 島 那留浦	承和 14년 6월 22일(847)	同 6월 24일	惠運, 仁好, 惠萼	安祥寺惠運傳, 續日本後紀
新羅人 金珍 등 44人, 唐人 江長·新羅人 金子白·欽良暉· 金珍	蘇州 松江口	肥前國 鹿島	承和 14년 5월 11일(847)	同 9월 10일	圓仁, 惟正, 性海, 丁雄万	入唐求法巡禮行記
唐商人 53人				嘉祥 2년 8월(849)		續日本後紀
唐客 徐公祐	明州	鴻臚館	大中 6년(852)			高野雛筆集
新羅商人 欽良暉				仁壽 2년 閏8월(852)		智証大師傳
唐人 秀英覺, 陳太信	廣州		齊衡 3년(856)			智証大師將來目錄
渤海人 李延孝	明州	值嘉島 旻美樂	天安 2년 6월 8일(858)	同 6월 19일	圓珍	大師傳
발해인 李延孝 등 43人	明州			貞觀 4년 7월 23일(862)		日本三代實錄
新羅商 張支信	明州		貞觀 5년 4월(863)		賢眞, 惠萼, 忠全 등	頭陀親王 入唐略記
唐商 詹景全			貞觀 6년(864)			上智慧輪三藏決疑表

116) 《속일본후기》에는 張友信으로 기록되어 있다(卷17, 承和 14年 7月). 일본의 많은 사서에는 장지신을 당나라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는 항해업자일 뿐만 아니라 조선업에도 관여하고 있다(《頭陀親王入唐略記》). 그런데 장우신은 재당신라인으로 생각되는 점이 많다. 그것은 당대 당·일 무역업자간의 통역업무는 대부분 신라사람이 맡았는데 장우신이 원래 '통사 장우신'이었던 것으로 보면 명주에 거점을 둔 재당신라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김문경, 2002, 〈앞의 책〉, 523쪽).

117) 김문습의 경우에는 당나라에는 없는 고유의 신라성씨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신라인으로 보

자, 그렇다면 재당(在唐) 발해와 신라상인들은 장보고 사후(841년) 왜 당나라 국적을 칭하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는 9세기 후반에 당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신라상인들이 장보고 사후 신라에 대한 반감과 함께 860년대 이후 보다 유리하게 일본과 교역하기 위해 스스로를 당상인이라 칭하면서 다자이후(大宰府)를 중심으로 일본의 관리하에 대일교역활동을 전개하였을 것으로만 생각했다.¹¹⁹⁾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산동 반도에 세력기반을 가지고 대두한 장보고의 신라에서의 입장은 불안정하고, 따라서 그 인격에 의해 지탱해온 청해진체제에 의지해온 일본의 외교관계나 교역제도도 당연히 안정되지 않았다. 841년에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다 죽자, 신라의 소란과 무역관계의 파산에 의해 다자이후(大宰府)나 세토나िका이[瀬戸内海] 지역에 혼란이 생겨 일본 정부는 842년 8월에 신라인 입국을 금지하고, 고로칸(鴻臚館)에서 신라인과의 무역관계를 폐쇄하는데 이르렀다.

이리하여 842년 교역통제에 의해 다자이후 고로칸에서 배제된 신라 연해지역의 상인집단 일부는 다른 교역장소를 찾거나, 해적이 되어 일본 연해안에 출몰하였다.¹²⁰⁾ 즉 재당신라인은 국적을 당으로 하여 일본

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李炳魯, 1996, 〈고대일본 열도의 '신라상인에 대한 고찰'—장보고 사후를 중심으로—〉《日本學》15,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6쪽).

118) 龜井明德, 1992, 〈앞의 글〉, 134~135쪽의 표와 木宮泰彦, 1955, 《日華文化交流史》, 富山房, 123~127쪽 표 참조. 龜井明德의 논문은 唐商人으로 표기된 李延孝를 馬一虹, 1999, 〈渤海と唐の關係〉《アジア遊學》6, 52쪽에 의거 발해인으로 수정한다. 아울러 장지신은 《續日本後紀》에는 장우신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장우신은 재당신라인으로 생각되는 점이 많다. 그것은 당대 당·일 무역업자간의 통역 업무는 대부분 신라 사람이 맡아왔는데 장우신이 원래 '통사 장우신'이었던 것으로 보면 명주에 거점을 둔 재당 신라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김문경 역주, 2002, 《엔닌의 入唐求法巡禮行記》, 중심, 523쪽). 한편 欽良暉를 龜井明德은 唐人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入唐求法巡禮行記》에 신라인으로 나오고 있어 정정한다(卷4, 大中 元年 6月 9日).

119) 南漢鎬, 〈앞의 논문〉, 135쪽.

120) 山崎雅雄, 2001, 〈九世紀日本の對外交易〉《アジア遊學》26, 93쪽.

정부의 신라인 입국 금지 조치를 피할 수 있었지만, 신라국내에 기반을 둔 신라상인들은 이를 피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무력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3-6. 다자이후(大宰府)가 “지난달 22일 밤, 신라해적선 2척이 하카다[博多, 지금의 후쿠오카]를 침입하여 부젠국(豊前, 지금의 후쿠오카현의 동반부와 오이타현의 북부 지방)의 연공(年貢)인 견면(絹綿)을 탈취하여 도망하였으므로 병사를 동원하여 추격하였으나 잡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 권16, 정관(貞觀) 11년 6월 15일

3-7. 이날 다자이후(大宰府)의 관리를 문책하는 칙령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제국(諸國)의 공조사(貢調使)들은 동시에 같이 출발하여야 하며, 서로 거리를 두지 말고 무리를 지어 항해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젠국 만은 혼자서 먼저 출발하여 신라해적의 표적이 되어 약탈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관물(官物)을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킨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이전의 역사에 있었는지 살펴보아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하생략)”

— 《일본삼대실록》 권16, 정관(貞觀) 11년 7월 2일

860년대까지 일본에서의 무역을 주도해 온 주체는 당나라의 산둥반도 또는 한반도의 서남부에 근거한 지역세력, 즉 민간상인층이었다. 이들 신라상인은 한반도의 서남해를 거점으로 하여 당나라와 일본을 왕래하면서 교역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상인(엄밀하게 말하면 순수 당인과 재당신라인)이 정관기(貞觀期: 859~876년)부터 당일

간을 본격적으로 왕래하면서 교역을 행하게 됨에 따라 당나라와 신라상인 간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 바로 869년의 신라인 해적사건이다.

위와 같은 신라해적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당시 다자이후에 거주하면서 순수한 교역활동에 종사하고 있던 신라상인들까지도 이 해적사건에 연루되어 일본정부로부터 철저한 탄압을 받았다는 것이다.

3-8. 다자이후(大宰府)에 칙령을 내려, 신라인 윤청(潤淸)·선견(宣堅) 등 30명과 원래부터 다자이후 관내에 거주하던 무리들이 통과하는 지방에서는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여 경도(京都)로 압송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다자이후에서, “신라해적이 공면(貢綿)을 약탈하였을 때 윤청 등에게 그 혐의를 씌어 그들을 구금하였다. 하지만 다이조강(太政官)은 은혜를 베풀어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하여 추방토록 하였다. 그러나 윤청 등은 순풍을 얻지 못하고 귀국을 하지 못하였다. 그때 대마도사(對馬島司)가 신라인 7명이 표착하였다는 신라의 소식을 보고하였다. 다자이후에서는 예에 따라 식량을 주어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좁고 작은 신라가 흉독함이 이리와 같이 사나우며, 또한 최근 대마도사람인 복부을미마려(卜部乙屎麻呂)가 신라에 구금되어 있다가 도망을 와, 신라병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그의 말을 참조한다면 대마도에 표착한 7명은 정탐을 하기 위해 일부러 표착하였다고 말하였을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게다가 윤청 등은 오랫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교역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경비가 허술함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금 그들을 보낸다면 적에게 우리의 약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다자이후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무리들도 겉으로는 귀화한 것처럼 행동하나 속으로는 언제나 역모를 품고 있어 만약 침입이 있으면 반드시 내응할 것이다. 따라서 바람을

기는 천장(天長) 원년(824) 8월 20일의 격지(格旨)에 의거하여 그들을 모두 무쓰(陸奥, 현재의 동북 지역)의 빈땅으로 이주시켜 그들의 간심(奸心)을 끊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여, 이에 따랐다.

— 《일본삼대실록》 권17, 정관(貞觀) 12년 2월 20일

869년의 신라해적사건을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일본 지배층은 신라 상인들을 탄압하여 무쓰 등으로 강제이주시켰으며, 다자이후에서 신라 상인과 교섭을 가졌던 일본인 관인들과 호족층조차도 모반사건에 연루시켜 추방령을 내렸던 것이다.¹²¹⁾

일본 사서에 보이는 신라해적 관련기사의 특징은, 첫째로 해적의 습격은 893·894년에 집중해 있다는 점, 둘째로 그들은 처음에 마쓰우라(松浦)군·대마도(對馬島) 등 서海道(西海道) 지역을 습격하였으나, 점차 산은도(山隱道)·산양도(山陽道)까지 북상하고 있다는 점, 셋째로 여전히 신라해적의 습격이 일본지배층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협을 주고 있다는 점 등이다.

893년경부터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한 신라해적의 움직임은 한반도에 있어서 후삼국시대의 국내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이유는 첫째로, 이 시기 일본의 조정에서 의논된 견당사(遣唐使) 파견 정지의 문제와의 관련이며, 다른 하나가 실은 이쪽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한반도의 국내정세의 현격한 변화이다.

830년대에 파견된 ‘승화견당사(承和遣唐使)’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견당사(遣唐使)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생사의 기로에서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894년 ‘관평견당사(寬平遣唐使)’로 임명된 사람들

의 의식 속에도 당연히 그러한 관념이 있었다고 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들이 당나라에 파견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의 수단으로서 신라해적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 한 가지 해적습격이 일시적이었던 이유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의 정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892년부터 한반도의 혼란상태를 야기한 ‘재지세력(在地勢力)’ 또는 해상세력은 점차 고려와 후백제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들은 삼국 간의 세력다툼에, 특히 왕건과 견훤간의 해상전에 동원되었다. 그것이 관평기(寬平期: 889~898년)에 일본을 침입했던 해적집단이 감소된 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된다.¹²²⁾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9세기 초까지 국가의 관리하에서 전개되었던 신라의 대외교역질서는 청해진의 설치를 계기로 장보고의 청해진과 재당신라인·재일신라인을 기반으로 한 상인들이 주도하는 대외교역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장보고가 암살되면서 그를 정점으로 했던 대외교역질서는 변화를 맞게 된다.

대외교역을 담당했던 세력들의 변화양상으로는 먼저, 장보고 사후 청해진을 통해 계속 대외교역을 장악하려 했던 염장의 의도에 대해 청해진의 잔존세력들이 반발하면서 신라상인의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와 함께 9세기 후반 재당신라인들은 당과 일본 간의 교류에서 신라를 경유하지 않고 남로¹²³⁾를 이용하여 일본과 직접 교역활동을 전

122) 李炳魯, 1996, 〈寬平期(890년대) 일본의 대외관계에 관한 일고찰〉 《日本學誌》16, 啓明大學校 國際學研究所 日本學研究室, 32~34쪽.

123) 9세기 전반까지 당과 일본을 연결하는 주된 교역로인 北路는 847년 입당승 圓仁이 귀국할 때까지도 이용되었다. 북로는 당에서 출발하였을 때 산둥반도에서 곧바로 서해를 횡단하여 한반도 서해안에 이르게 되며, 서해안을 따라 남하한 후 남해안을 거쳐 對馬島, 九州에 이르기 때문에

121) 《日本三代實錄》卷13, 貞觀 8年 7月 15日: 《日本三代實錄》卷16, 貞觀 11年 10月 26日: 《日本三代實錄》卷18, 貞觀 12年 11月 13日: 《日本三代實錄》卷18, 貞觀 12年 11月 17日.

개하였다. 그들은 신라에 대한 반감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보다 유리하게 교역을 하기 위해 스스로를 당사인이라 칭하면서 교역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신라내 해상세력들은 청해진 혁파 이후 대외교역의 중심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보다 확대된 시장을 배경으로 독자적인 교역활동을 전개하면서 성장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이것이 일본 역사서에 나오는 신라해적사건(新羅海賊事件)이라고 생각된다.

진성여왕 3년(889)에 상주지방에서 터진 농민반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신라의 쇠퇴는 결정이 되고 끝내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써 후삼국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런데 후백제와 고려의 건국자들이 모두 해상활동의 경험자였던 것은 주목되는 점이다. 즉 견훤(甄萱)은 신라 말 젊은 군인으로 서남해안의 해상경비 곧 해방(海防) 임무에 종사하다가 농민반란이 터지자 세력을 모아 후백제를 세웠다. 한편 왕건(王建)은 바로 송악지방의 해상무역업자의 가문에서 태어나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의 부하가 되어 주로 수군(水軍)을 지휘, 군공(軍功)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정주(貞州)

로부터 남하하여 서해안 일대를 공제하면서 영산강 하구 나주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후고구려 조정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영산강 하구에서 가까운 압해도(壓海島)에 근거를 갖고 있던 능창(能昌) 등을 비롯한 다도해상의 해적 소탕에도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혜성(檣城), 영암(靈巖), 나주, 진도 등 서해안 일대의 해상세력가들을 자신의 휘하에 집결시킬 수 있었다.

다만 그는 궁정 쿠데타를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개창했고, 이에 따라 그에 협력한 많은 해상세력가들이 개성에 와서 궁정의 귀족 관료가 됨으로써 그들의 활동무대인 바다를 등지게 된 것은 장보고 시대의 상황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요컨대 왕건에 의한 해상세력 통합작업은 해상세력의 청산작업으로 귀결되고 만 것이다. 더욱이 궁정 귀족이 된 이 서남해안 지역 출신 해상세력은 혜종(943~945) 말년에 일어난 왕위 계승 쟁탈전에서 패배함으로써¹²⁴⁾ 마침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말았다. 소위 여송무역(麗宋貿易)의 주도권을 남중국 상인들이 장악하게 된 사정의 이면에는 이 같은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¹²⁵⁾

서해 횡단을 제외하고는 계속 육지를 따라 항해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전이 보장된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南路는北路와는 달리 일본에서 출발하였을 때 值賀島를 지난 뒤 양쯔강 유역에 이르기까지 표지물이나 대피할 곳이 없는 상태로 항해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일본이 당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북로가 선호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라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852년을 기점으로 당과 일본의 왕래에北路가 이용된 예는 보이지 않고 전적으로南路를 이용하게 된다(坂上早魚, 1988, 〈九世紀の日唐交通と新羅人—圓仁の“入唐求法巡禮行記”を中心として—〉《Museum Kyushu》28, 10~11쪽). 이런 이유에 대해 장보고의 죽음을 계기로 청해진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된 대외교역 담당자의 활동거점이 청해진에서부터 중국과 일본 등 교역대상국과 보다 쉽게 교역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져 갔다고 추측한 견해가 있다(南漢鎬, 〈앞의 논문〉, 133쪽). 그러나 이는 청해진의 혁파 후 염장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재당신라인들이 신라영해지역인 서남해안을 피하기 위해南路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124) 姜喜雄, 1977, 〈高麗 惠宗朝 王位繼承亂의 新解釋〉《韓國學報》7, 一志社; 鄭清柱, 1996, 《新羅末 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25) 李基東, 1997, 〈羅末麗初 南中國 여러 나라와의 交涉〉《歷史學報》155, 歷史學會, 12~13쪽.

4장
고려시대의 무역

이진한(고려대학교)

1. 고려시대 무역과 그 특징

무역은 국가나 민족 간의 물자교류를 말한다. 본래 전근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하는 경제였고,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근대 사회의 무역은 그다지 발달될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무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예물로서 각국의 특산물이 오갔으며, 국경지역의 장사에서 상호 필요한 물품의 교환이 있었으며, 때로는 배를 이용해 여러 나라를 왕래하며 무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무역을 운영이나 주체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간여하는 무역과 개인이 참여하는 무역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조공무역(朝貢貿易)¹⁾·관무역·공무역·국가무역·관인무역(官

1) 조공무역은 중국과 주변 여러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朝貢關係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그런데 조공관계란 제후국에서 중국에 조공하는 일방적인 것을 말하므로 잘못된 것이며, 冊封朝貢關係라고 해야 양방향의 상호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어디까지나 차등관계였다고 한다(김

認貿易)·공인무역(公認貿易) 등이 있고, 후자에는 부대무역(附帶貿易)·사신무역·사무역·민간무역 등이 있다고 한다.

이 구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역의 주체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지만, 사신무역·부대무역의 경우와 같이 국가 간의 공식 외교에 파견된 사신의 무역은 완전히 사무역이라고 할 수 없고, 공무역의 성격이 개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관무역·부대무역·공인민간무역·밀무역²⁾ 또는 관무역·사신무역·민간무역³⁾ 등의 구분이 시도되고 있다.⁴⁾

고려시대의 무역의 형태도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국가 간의 공식 외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조공무역’과 순수한 상인 사이의 교역인 호시(互市) 등을 들고 있으며,⁵⁾ 최근의 연구도 이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⁶⁾

필자가 고려시대의 무역을 일별한 바에 의하면 불법적인 밀무역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간섭이나 영향이 배제된 사무역은 전혀 없는 것 같다. 또한 조공무역이라는 표현은 고려시대 외교의 실상과 상응하지 않아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고려시대에도 송·요·금·원

등 중국의 여러 나라에 대한 사대외교가 있었고,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사신이 가서 조공에 해당되는 방물(方物)을 바쳤으며, 중국의 사절이 와서 고려 국왕을 책봉했던 것은⁷⁾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요가 쇠약해지자 송에서는 고려에 보내는 사절을 요에게 사용하던 국신사(國信使)라는⁸⁾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송·요·금 등에서는 고려 국왕이나 태후의 생일을 비롯해 다양한 명목의 사신들이 왔다. 이런 점들은 전통적인 조공질서에서 천자의 나라가 제후 또는 조공국가에 대해 하던 의례와 어긋나는 것이었다. 고려는 조공제도의 이상을 표명하면서도 실제로 국가의 존립을 위한 실리적인 정책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원 간섭기 이전의 고려는 결코 모범적인 조공국(Model Tributary)은 아니었다.⁹⁾

게다가 고려와 여진의 관계는 거꾸로 고려가 여진의 조공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그 밖에 일본·송 상인·아라비아 상인의 고려에 대한 무역도 형식상 여진과의 관계에 준하여 시행되었다. 고려가 종주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외교관계는 대체로 여진에서 고려를 찾아오는 일방적인 것이었고, 그 주요한 목적은 고려와의 물품 교환이었다.

이러한 동북아의 대외관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된 것은 13세기 몽골 제국이 동아시아 지역을 정복하여 통일된 원 제국을 형성하면서부터이다. 고려는 원에 조공국가로서 모든 의무를 져야 했고 그 뒤를 이은 명도 원과 고려의 형식을 그대로 계승하려고 하였다.¹⁰⁾ 이로써 고려와

한규, 1999, 〈머리말〉《한중관계사 1》, 아르케, 25~27쪽. 그렇다면, 조공무역도 책봉조공무역이 되어야 하겠으나 이것도 고려시대 외교를 설명하는 데는 적절하지 못하다. 고려와 요·금 사이의 사신 교환을 보면 책봉·조공을 위한 것은 극히 적어서 심지어 친선사절의 의미가 있는 고려 왕 및 왕태후의 생일에 대한 사신도 있었으므로 차등관계라고 할 수 없다.

2) 全海宗, 1979, 〈中世 韓中貿易形態 小考〉《韓國과 中國》, 知識産業社, 128~131쪽.

3) 朴漢男, 1994, 《高麗의 對金外交政策 研究》, 成均館大 博士學位論文, 161쪽.

4) 이상의 무역의 형태에 대한 정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李貞熙, 〈고려 전기 對遼貿易〉《지역과 역사》4, 17~18쪽.

5) 金庠基, 1937, 〈麗宋貿易小考〉《震檀學報》7: 1948 《東方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69~71쪽.

6) 이정희는 공무역과 사무역으로 나누고 공무역의 중심은 사행무역을 포함하는 조공무역이 중심이라고 한다(이정희, 1997, 〈앞의 글〉, 18~19쪽) 좀 더 내용을 세분해서 설명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구분은 거의 같다고 생각된다.

7) 沈載錫, 2002, 《高麗國王 冊封 研究》, 혜안.

8) 피터 윤, 2002, 〈서구 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 중심적 문화론 비판〉《아세아 연구》109, 279쪽.

9) 피터 윤, 〈앞의 글〉, 278~281쪽.

10) 피터 윤, 1998, 《Rethinking the Tribute System》, UCLA, 133~149쪽.

중국 사이에 있었던 외교상 호혜주의는 사라지고 조공은 형식이나 명분이 아닌 수행해야 할 의무가 되었다. 고려 말 명은 1년치 공물을 따져서 정확히 5년간 밀렸던 공마를 요구하였고¹¹⁾ 고려에서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은¹²⁾ 바뀌어진 외교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원 간섭기 이후 조공의 규정성이 강화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형식에 불과하였으므로 고려시대 전체를 조공무역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실상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많다. 대신에 좀 더 포괄적으로 ‘외교무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뜻을 정확히 표현한다면, ‘외교 의전상의 무역’이나 ‘외교 의례상의 무역’이 맞겠다. 왜냐하면 고려와 송·요·금 등의 사이에는 고려의 방물사와 중국의 책봉사 이외에도 무수한 사신이 왕복하면서 물품의 교역이 이루어졌고, 거의 모든 외교적 활동에 물품의 교환이 있었기 때문이다.¹³⁾

실제로 종주국을 찾아서 황제를 만나든지 제후국의 국왕을 만나든지 알현하는 과정에서 사신들은 일정한 물품을 교환하기 때문에 외교무역이 되는 것이다. 그 경우 사신들의 개인적인 무역도 포함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사행무역의 범주로 다루었다. 또한 고려와 여진·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외교적 교섭도 왕을 만나는 절차

가 포함되고 물품의 현상이 있었으며, 고려와 이들 나라의 외교는 정치적인 것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주요한 목적이었는데, 외교무역은 외교를 가장한 무역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원 간섭기 이전 고려 무역의 특징을 들면, 사무역이 거의 배제된 국가 또는 왕실 중심의 무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와 함께 국왕의 권위를 높이는 정치적 기능도 하였다. 태조를 비롯한 역대 왕들은 해상무역으로 성장한 호족의 후예답게 국제관계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었던 것이다. 하지만 고려가 원에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됨에 따라 자연히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고 국가 간에 이루어졌던 무역의 양상도 크게 변화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었다. 끝으로 명의 등장으로 외교무역에 새로운 형태가 정립되기 시작하였으나 정형을 이루지 못한 채 고려가 멸망하였다.

11) 《高麗史》 권135 우왕 9년 11월.

12) 《高麗史》 권135 우왕 10년 윤10월.

13) 전해종의 연구에 의하면, 고려시대 중국 여러 나라의 외교가 과연 조공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먼저 송과의 조공관계는 북방 민족 국가와의 조공관계로 말미암아 부차적인 것이었다. 북송 초기를 제외하고 사신의 왕래도 간헐적이며, 조공제도 자체의 경제적·의식적·정치적 의미는 미약한 것이었다. 이것은 남송시대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며, 이때의 조공 관계는 거의 실질이 없는 것이었다. 요·금과의 관계는 사신의 왕래가 잦으며, 고려의 왕이나 왕태후의 생일에 사신을 보내는 것과 같이 조공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사행이 등장한다. 원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지배성이 강한 관계로서, 따라서 양국의 조공관계는 그러한 관계에 종속되는 문제였다고 한다(전해종, 〈앞의 글〉, 40~50쪽). 결국 어느 경우에도 전형적인 조공 관계를 찾을 수 없으므로 조공무역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2. 오대십국 여러 나라와의 무역

오대 10국과의 무역은 대부분 국가 간의 외교적 형식을 갖추며 이루어졌으므로 사절의 왕래를 통해 고려에서 중국에 바치는 조공품과 그에 대해 회사하는 방식으로 무역이 진행되었다. 이 시기 고려에서 보낸 물품이 비교적 자세히 확인되는 것으로는 929년 후당에 보낸 사례와 944년(혜종 2) 후진의 사례가 있다.

먼저 전자에서는 은향사자은로(銀香獅子銀爐)·금장반루(金裝銀鑊)·운성도검(雲星刀劍)·마필·금은웅조구(金銀鷹條鞵)·백저(白苧)·백전(白氈)·머리카락·인삼·향유(香油)·은루전도(銀鑊翦刀)·검발(鉗鉞)·송자(松子)¹⁴⁾ 등이 있었다. 후자의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비단 옷감, 갑옷, 침구와 활, 화살, 칼, 비수 등으로 화려한 문양과 장식을 한 수공예품이었다.¹⁵⁾

이 가운데 황제에게 바치는 옷감과 복식류, 도검류 등은 전문적인

14) 《五代會要》권30, 高麗, 後唐 天成 4년 8월.

15) 《高麗史》권2 〈世家〉 혜종 2년.

기술 수준으로 보아 관영수공업장(官營手工業匠)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이다.¹⁶⁾ 그리고 포·삼·머리카락·검자·향유·송자 등은 일반 백성들이 국가에 바친 공납 가운데 좋은 것만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¹⁷⁾

한편 혜종대에 황제에게 보낸 예물에 대해서는 ‘패금(貝錦)으로 문채(文彩)를 이루니 동화(櫛華)가 무색할 정도며 광비(筐篋: 공물을 담은 광주리)를 모두 열어보니 다 진기한 것이로다. 또 병기는 잘 정돈되어 있고 갑옷은 대단히 아름다워 정묘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라거나 ‘병장기는 견고하고 직물의 문양은 미려(靡麗: 美麗)하며 저마(苧麻)는 눈 같이 희고 영험한 약은 신통하였다. 머리장식과 노리개의 진기함과 향유에는 명품이 많았다.’ 라는 표현을 하며 극찬하고 있다.¹⁸⁾

물론 당시 후진의 정권이 취약한 상태에서 먼 바다를 건너 많은 물품은 보내준 고려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의례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물(貢物)의 명칭을 보건대 단순한 비단이 아니라 다양한 색으로 염색을 하고 거기에 금과 은으로 문양을 새겼고, 검의 경우에도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여러 가지 문양을 넣는 등 매우 많은 정성이 들어간 정교한 공예품이었다.¹⁹⁾

반면 후진의 사신이 고려에 오면서 함께 가져왔던 국신물로는 책갑(冊匣), 머리띠, 자물쇠, 요[褌], 상, 책상 등의 수공예품과 침구와 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²⁰⁾ 주로 왕이나 왕실에서 사용될만한 귀한 물건들로 여겨지는데, 고려에서 보낸 물품과 비교할 때 포나 송자와 같은 일

16) 徐聖鎬, 1997, 《官營手工業》《高麗前期手工業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31쪽.

17) 《高麗史》권2 〈世家〉 혜종 2년.

18) 《高麗史》권2 〈世家〉 혜종 2년.

19) 고려에서 보낸 물품의 명칭을 보면 가장 끝에 그 물건의 명칭이 있고, 그 앞에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품을 들여 정교하게 만든 것임을 알려준다.

20) 《高麗史》권2 〈世家〉 혜종 2년.

반적인 공물들은 없었다. 중국의 사신이 고려에 올 때 물품을 가져오는 것 역시 상례였다고 생각되며, 이 사례를 통해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혜종대의 사신 파견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고려에서 중국으로 가는 사행의 목적이 방물을 바치는 것인지, 책봉에 대한 사례인지 등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해도 반드시 많은 물품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국 간에 물품이 오가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거의 모든 외교 사신의 왕래에 적용되었을 것이다.

이후 광종대인 960년과 961년에는 후주와의 사이에 대규모 교역이 있었다. 960년에 후주에서 상서수부원의랑(尙書水部員外郎) 한언경(韓彦卿)과 상련봉어(尙輦奉御) 김언영(金彦英)을 보내어 비단 수천 필을 가지고 와서 고려의 구리와 교역하여 갔다.²¹⁾ 다음해 봄에는 좌승(佐丞) 왕궁(王兢)과 좌윤(佐尹) 황보위광(皇甫魏光)이 후주에 가서 좋은 말, 직성(織成), 의오(衣襖), 활, 칼 등을 바쳤고, 가을에는 《별서효경(別序孝經)》, 《월왕효경신의(越王孝經新義)》, 《황령효경(皇靈孝經)》, 《효경자웅도(孝經雌雄圖)》 등을 바쳤다. 그해 겨울에는 후주에 구리 50,000근과 자백수정(紫白水精) 2,000개를 보냈다.²²⁾

두 해에 걸친 교역을 통해 상당량의 구리가 후주로 전해졌다. 이는 후주의 세종이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 장적(帳籍)에 오르지 않은 사찰을 철폐하고 동불·범종을 부수어 전과 무기를 주조하던 때로 구리의 수요가 많았으며,²³⁾ 실제 고려에서 수입한 구리를 이용하여 조광윤이 중국을 통일하고 송을 건국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²⁴⁾ 어쨌

든 이때의 교역은 후주의 요구에 따라 조공무역과 별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 간의 교역으로 공무역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²⁵⁾

이 시기의 무역은 외교 사신을 통한 조공무역이 중심이었는데, 광종 9년과 10년에는 후주의 요청에 따라 국가 간의 교역 형태로 구리가 교환되었다. 또한 오월에서 오백나한상(五百羅漢像)에 도입되었고,²⁶⁾ 《별서효경(別序孝經)》 등의 책이 후주의 요청에 따라 고려에서 보내졌는데, 문화적인 교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 밖에 고려에서 관인을 포함한 상단(商團)을 보내 중국에 가서 교역한 사실도 있다. 924년(태조 7) 고려에서 관압장(管押將) 노흔(盧昕) 등 70인을 파견하여 후당의 등주(登州)에서 교역을 행하였고²⁷⁾ 같은 해 10월에도 사람을 보내 후당의 청주에서 교역을 하였다고 한다.²⁸⁾ 모두 고려 정부에서 상업적 목적을 갖고 파견한 사례로 보인다. 고려 초에는 공식적인 외교 이외에도 국가의 공인을 받은 상선단이 무역에 참여하였다.²⁹⁾

즉 왕건의 선대가 서해안의 무역을 통해 성장하였고, 마침내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되었지만 왕이 된 후에는 국가차원에서 외교의 형식을 빌어 해상무역을 계속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 왕실은 해상무역가의 후손답게 외교를 통해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한편 경제적인 실리

24) 김한규, 1999, 《契丹과 女眞이 遼東과 中國을 統合한 시기의 韓中關係》 《한중관계사 I》, 아카넷, 412쪽.

25) 이 시기 양국 간에 공무역을 크게 행했던 것은 정치, 외교적인 단계를 넘어 경제적인 면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羅鍾宇, 1995, 〈5대 및 송과의 관계〉 《한국사》 15, 국편위, 284쪽).

26) 《高麗史》 권1 〈世家〉 태조 6년 6월 계미.

27) 《冊府元龜》 권999 互市.

28) 《冊府元龜》 권999 互市.

29) 이러한 일은 태조대부터 성종초까지 계속되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983년(성종 2) 최승로의 비판이 있었다(《高麗史節要》 권2 성종 원년 하4월).

21) 《高麗史》 권2 〈世家〉 광종 9년 5월.

22) 《高麗史》 권2 〈世家〉 광종 10년.

23) 김상기, 1959, 〈고려 광종의 치세〉 《국사상의 제문제》 2, 국편, 90쪽.

를 취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배경에는 신라 말 강주(康州) 지역의 왕봉규(王逢規)나 왕건의 선대처럼 해상무역을 하는 세력이 국가 권력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력의 무역을 금지하고 사대교린 관계에 입각한 국가 간의 공식적인 무역 관계를 위주로 무역정책을 운영하였다고 한다.³⁰⁾

30) 森克己, 1959, 〈日・宋の高麗との私獻貿易〉《朝鮮學報》14, 554~555쪽.

蔡雄錫, 1988, 〈高麗前期 貨幣流通의 기반〉《韓國文化》9, 116쪽.

3. 송과의 무역

1) 무역의 조건

(1) 문화적 욕구

고려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금에 비해 송과 활발한 무역을 진행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송의 발달된 정치 제도와 문물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송은 비록 요나 금에 대해 군사적으로 패배하여 세공(歲貢)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문화적으로는 훨씬 앞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고려에서 송의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어서 송의 중추원, 삼사 등의 제도가 신속히 수용되어 실행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의 교역은 상대국에 없는 특이한 토산물의 거래이지만, 실제로 고려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발달된 정치제도와 문화 등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일만한 나라는 요나 금이 아닌 송이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고려할 때 고려의 입장에서는 요나 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황제라고 해야 하며, 송에 대해서는 초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송에 대해서만 황제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송을 문화적으로 동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목종 때 송에 사신으로 갔던 이부시랑(吏部侍郎) 주인소(朱仁紹)가 송 황제에게 ‘고려 사람이 중국의 문화를 사모하나 거란에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였다’는³¹⁾ 것은 그러한 사정을 알려준다. 군사력으로는 요나 금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중심축이었으나 고려에서 진정으로 외교를 맺고자 하는 나라는 송이었다. 그 송이야말로 고려가 모범을 삼을만한 진정한 황제의 나라로 생각했으며, 송의 문물에 관심이 많았다. 그 결과 송에서 유입되는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이 선진문물이었던 것이다.

‘북으로 대요와 사귀고[交] 남으로 대송을 섬긴다[事]’는³²⁾ 표현과 같이 요에 대한 사대는 변란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부득이 사대관계를 맺은 대상에 불과했다. 반면 고려가 섬겼다고 하는 송은 문화적으로 앞서 진정으로 흠모할 만한 나라였으며, 고려인들이 자신을 오랑캐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화이관(華夷觀)과 무관하지만 송을 중화로 인식하였다.³³⁾

그러므로 고려에선 항상 송의 선진 문물을 동경하여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071년(문종 25) 고려와 송의 외교재개도 이런 배경 속에 이루어졌다. 본래 그 일은 거란을 견제하려는 송에 의해 외교적으로 주도되었지만, 고려로서도 송의 선진 문물을 공식적으로 획득할 수 있

는 경제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호응하여 성사될 수 있었다.³⁴⁾

(2) 왕래의 편이성

고려에서 북방의 요·금에 조공하기 위해서는 육로를 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물품을 운송하는데 장애가 많았다. 하지만 송의 경우 북쪽이 요나 금에 의해 막혀있으므로 자연스럽게 해로를 통해 접근하게 되었다.³⁵⁾ 북송 시기에는 예성강에서 중국 등주(登州)로 향하는 북선향로(北線航路)가 자주 이용되었고 주요 항구는 웅진과 정주(貞州) 등이었다.³⁶⁾

993년(성종 12)에 고려 사신 백사유(白思柔)와 함께 고려에 파견되었던 송의 직사관(直史館) 진정(陳靖)과 비서丞(秘書丞) 유식(劉式)의 경로를 보면, 동모(東牟)에서 팔각해(八角海) 포구로 가 백사유가 탄 선박 및 고려의 배사공들을 만나 그 배를 타고서 지강도(芝岡島)를



한해무늬동경

34) 김한규, 1999, 〈앞의 글〉 《한중관계사 I》, 아카넷, 389~390쪽.

35) 고려시대 송과의 해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金庠基, 1937, 〈麗宋貿易小考〉 《震檀學報》7: 1948 《東方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金渭顯, 1978, 〈麗宋關係와 그 航路考〉 《關大論文集》6.

姜吉仲, 1991, 〈南宋과 高麗의 政治外交와 貿易關係에 대한 考察〉 《慶熙史學》16·17.

申採湜, 1997, 〈10~13세기 東아시아의 文物交流—海路를 통한 麗·宋의 文物交易를 중심으로〉 《中國과 東아시아 世界》, 國學資料院.

36) 《增補文獻備考》 권35 〈輿地考〉 23 關防 4, 海路.

31) 《高麗史》 권3 〈世家〉 목종 2년 冬10월.

32) 《高麗史》 권11 〈世家〉 숙종 6년 8월 을사.

33) 안병우, 〈고려와 송의 상호인식과 교섭: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 《역사와 현실》43, 92~93쪽.



달리도선 발굴현장

출발하였다. 이어 순풍에 큰 바다를 향해하여 이틀 후에 웅진 포구에 닿아 육지로 올라갔고, 다시 해주까지 160리, 염주(閔州: 塩州)까지 100리, 배주(白州)까지 40리를 가고, 거기서 40리를 더 가서 고려의 도읍에 도착했다고 한다.³⁷⁾

바다에서 순풍을 만나면 이들이 소요되었고 웅진에서 개경까지 240리를 육지로 간 셈인데, 송에서 출발한 것을 포함해도 닢새 이상은 소요되지 않았던 것 같다. 만약 예성항 벽란도 포구로 직접 도착했다면 더 단축될 수 있었다.³⁸⁾ 이것은 같은 시기 요와 왕래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할 뿐 아니라 시간도 적게 드는 것이었다.

37) 《宋史》 권487 高麗傳.

3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3 黃海道 白川郡.

웅진에서 개성으로 오는 해로 상에 장산곶이 위험하므로 황해도 연안을 따라 항해하지 않고, 육로를 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남송이 건국된 뒤 자주 이용되었던 남선향로는 송의 사신과 함께 고려에 왔던 서경(徐兢)의 견문기인 《고려도경》에 왕복 일정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서경 일행이 바다로 나선 것이 음력 5월 24일이고 예성항에 다다른 것은 6월 14일로 약 21일이 소요되었고, 귀로는 7월 16일에 배를 타서 7월 26일에 도착하여 바닷길만 42일이 걸렸는데, 도중에 약 12일 정도를 풍랑으로 항해하지 못하였다. 고려로 향하는 주요 여정은 호두산(虎頭山), 심가문(沈家門), 매잠(梅岑), 봉래산(蓬萊山), 백수양(白水洋), 황수양(黃水洋), 흑수양(黑水洋), 협계산(夾界山), 배도(排島), 흑산도(黑山島), 죽도(竹島), 군산도(群山島), 부용창산(富用倉山), 마도(馬島), 대청서(大靑嶼), 자연도(紫燕島), 예성항이었다. 송으로 향하는 주요 여정은 흑산도까지는 같았으나 이후 수주산(秀州山), 동서서산(東西胥山), 낭항산(浪港山), 소주양(蘇州洋), 울항(栗港), 초보산(招寶山), 정해현(定海縣)이었다.

당시 항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람은 송에서 고려로 항할 때는 남풍을, 송으로 되돌아 올 때는 북풍을 이용하였다.³⁹⁾ 결국 송에서 고려로 오는 항로의 경우 명주에서 흑산도까지는 서쪽으로 항진하다가 우리 영역인 흑산도에 다다르고, 그곳에서부터 군산·자연도·예성항으로 이어지는 서해 연안 항로로 바뀌게 되었으며, 귀로는 오는 길의 반대가 되었다.

《송사》에 기록된 북선향로의 여정은 바닷길로 이틀, 《고려도경》의 남선향로는 21일이었는데, 이것을 고려와 송 사이의 항해 기간으로 곧바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항해술은 바람에 의존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출발 후 도착 기간은 기상 여건에 따라 크게

39) 《高麗圖經》 권34 〈海道〉 1, 《高麗圖經》 권39 〈海道〉 5.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다를 통한 송과 고려 간의 사행은 육지로 이동하는 거리를 줄여서 사신들의 동행 물품을 옮기기에는 더 좋다는 유리한 점도 있다. 북선향로로 왔을 경우 육로는 웅진에서 개성까지 약 2~3일 정도, 남선향로를 이용할 때는 예성항에서 개성까지는 하루 안에 도착하는 거리이다. 실제로 서금 일행은 두 척의 대형 선박인 신주(神舟) 2척과 일반 선박인 객주(客舟) 6척 등 모두 8척에 사신 일행과 예물을 싣고 왔다.⁴⁰⁾ 이것은 말에 의존해서 짐을 운송하던 고려의 교통 현실에서 훨씬 편한 것이었으므로 양국 간에는 많은 예물이 오갈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고려와 송은 요 또는 금이 있어 육로를 통한 직접교류는 어려웠으므로 불가피하게 해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송의 사신과 상인들의 해로 이용은 일정을 줄여주었을 뿐 아니라 많은 짐을 동반할 수 있어 교역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2) 외교무역

(1) 송에 전해진 물품

전근대 사회에서 국가 간의 사신이 오갈 때 국신물 또는 방물이 함께 전달되는 것이 상례였던 것 같다. 그러므로 단순히 ‘방물을 바치기 위해’ 또는 ‘대성악을 내려준 것을 사례하기 위해’ ‘고려의 사신이 송에 파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신과 함께 많은 폐물(幣物)이나 예물이

보내졌다.’고⁴¹⁾ 이해된다. 그것은 송나라의 사신도 같아서 황제가 고려 국왕에게 주는 많은 선물도 함께 동반되었을 것이다.

먼저 고려에서 송에 보낸 물품을 살펴보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열해보면 말(馬)과 갑옷,⁴²⁾ 유동기(鎭銅器),⁴³⁾ 금선직성(金線織成), 용봉안복(龍鳳鞍幘), 수룡봉안복(繡龍鳳鞍幘),⁴⁴⁾ 어의, 금요대(金腰帶), 금사라, 금화은기(金花銀器), 색라(色羅), 색릉(色綾), 생라(生羅), 생릉(生綾), 복두사(幘頭紗), 모자사(帽子紗), 계병(鬍屏), 화룡장(畫龍帳), 대지(大紙), 먹(墨), 기장(器仗), 세궁(細弓), 효자전(孝子箭), 세전(細箭), 안비(鞍轡), 세마(細馬), 산마(散馬),⁴⁵⁾ 금합(金合), 반잔(盤盞), 주자, 홍계의배(紅鬪倚背), 홍계육(紅鬪褥), 장도, 생중포, 삼, 송자(松子), 향유, 안비, 나전장차(螺鈿裝車)⁴⁶⁾ 등이 있었다. 품목별로는 복식류, 옷감, 그릇, 말과 마구류, 갑옷, 종이, 활과 화살, 도검, 침구류, 향유, 인삼, 송자 등으로 분류된다. 그 가운데 비교적 자세한 내역을 보이는 것이 문종 26년 6월의 기사로, 송 황제의 조서에서 고려에서 보냈다고 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어의(御衣), 홍계편복(紅鬪便服), 금요대(金腰帶), 금속대(金束帶), 금합(金合), 금반잔(金盤盞), 금주자(金注子), 금사라(金鎚鑼), 홍계의배(紅鬪倚背), 황계의배(黃鬪倚背), 홍계육(紅鬪褥), 황계육(黃鬪褥), 세궁(細

41) 폐물은 방물과 같이 정기적으로 제후국에서 황제의 나라에 바치는 물품이며 단순 옷감 등의 화폐적 가치가 있는 재화류였다. 예물은 특정한 사안으로 황제에게 입조할 때 정성을 담아 가져가는 것으로 재화류 뿐만 아니라 황제들의 복식이나 황후의 복식 등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42) 《高麗史》 권2 〈世家〉 경종 2년 춘3월.

43) 《高麗史》 권18 〈世家〉 의종 18년 3월 임인.

44) 《高麗史》 권4 〈世家〉 현종 5년 8월 갑자.

45) 《高麗史》 권9 〈世家〉 문종 34년 추7월 癸亥.

46) 《高麗史》 권9 〈世家〉 문종 34년 추7월 癸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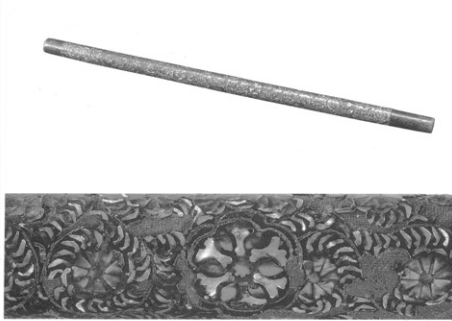
40) 《高麗圖經》 권34 〈海道〉 1.

弓), 효자전(孝子箭), 세죽전(細鐵箭), 도금하고 은으로 장식한 계기장(鬍器仗), 백은으로 장식한 흑피기장(黑皮器仗), 도금하여 은으로 장식한 백피기장(白皮器仗), 은으로 장식한 장도(長刀), 세마(細馬), 안장, 향유(香油), 송자(松子), 인삼, 생중포(生中布), 생평포(生平布)⁴⁷⁾

세부적인 물품을 보면 매우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물품은 여러 가지 화려한 문양을 넣은 보자기, 수건, 자루, 비단 등에 의해 싸여져 보내졌다.⁴⁸⁾ 이것을 품목별로 분류하면 황제의 복식, 침구 기명(器皿), 활과 화살, 기장(器仗: 병기와 의장), 장도, 말과 안장, 인삼 등의 특산물, 포 등이었으며, 황제의 위엄을 높이기 위한 것과 더불어 고려의 특산물과 더불어 세폐(歲幣)의 의미인 다량의 포류(布類)로 구성되었다. 황제를 위한 수공예품, 특산물, 세폐로 나뉘는 방식은 혜종 때

고려에서 보냈던 품목과 같은 것으로 아마 대중국 공물의 기본 구성이었을 것이다.

송에 보내진 공물은 고려의 대표적인 수공업 제품들이었다. 특히 나전기



나전대모국당초무늬불자

47) 《高麗史》 권9 〈世家〉 문종 26년 6월 갑술.

48) 이때의 포장은 '金箔을 입힌 붉은 비단 겹보자기, 은으로 아로새겨 장식한 검은 漆 상자에 넣어 금은으로 도금한 자물쇠로 채우고 이를 한데 싸서 紅梅花를 수놓은 비단 겹수건, 홍매화로 수놓은 비단 겹보자기, 은으로 아로새긴 무게 80냥의 갑에 담아 수놓은 붉은 비단 겹보자기, 은으로 아로새겨 장식한 검은 칠을 한 칼집에 넣어 채색 비단, 금은으로 도금한 장식품과 모직으로 만든 크고 작은 다래와 언치, 붉은 비단으로 만든 鞍褥 등에 수놓은 붉은 비단 겹수건' 등이었다. 군이 보지 않아도 그 수식어만으로도 매우 화려했음을 알 수 있다(《高麗史》 권9 〈世家〉 문종 26년 6월 갑술).

구(螺鈿器具), 용수석, 문피, 부채, 붓, 먹 등은 고려의 특산물로서 높은 기술 수준을 인정받았고, 금은으로 장식된 장도는 일본도와 더불어 송나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황칠과 유황도 명성이 있었다.⁴⁹⁾ 결국 송에 없거나 희귀하면서도 수준 높은 공예품들이 조공의 형식으로 바쳐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수공예품은 국가 또는 왕실의 전문 장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제아문공장별사(工匠別賜) 규정에 의하면 군기감·중상서·장야서·도교서·상의국·잡직서·액정국·상승국·대복시, 내궁전고 등에 소속된 여러 장인의 명칭과 그에 대한 별사액이 규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장도장행수배용부위(長刀匠行首陪戎副尉)·지장행수부위(紙匠行首副尉)·은장지유전전(銀匠指諭殿前)·복두장진직동정(幘頭匠殿直同正)·화장행수교위(靴匠行首校尉)·안비장지유부위(鞍轡匠指諭副尉)·안육장행수교위(鞍褥匠行首校尉)⁵⁰⁾ 등은 명칭으로 보아 각각 장도, 종이, 은세공품, 복두, 화, 안육, 안비 등을 만드는 장인이다.

그런데 1년에 10석 이하의 쌀을 공장별사로 받은 것을 보면 가장 훌륭한 솜씨를 가진 장인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들이 만들었을 물품과 송에 보내었던 물품의 종류가 거의 일치하는데, 황제에게 보내는 물품은 당대 고려 최고의 장인이 만들었을 것이므로 공물의 제작자였을 가능성이 크다.⁵¹⁾ 이들이 평소에 각 관서에 소속되어 자신들의 역을 수행하다가 사신이 가게 되고 보낼 품목이 결정되면 국가의 명을 받아 필요

49) 金庠基, 1937, 《麗宋貿易小考》(《震檀學報》) 7: 1948 《東方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69~71쪽, 76~77쪽.

김한규, 1999, 〈앞의 글〉, 414쪽.

50) 《高麗史》 권80 〈食貨志〉 3 녹봉 諸衙門 工匠別賜.

51) 徐聖鎬, 1997, 〈官營手工業〉(《高麗前期手工業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47~48쪽.

한 물품을 만들었던 것 같다. 그 밖에 인삼, 송자, 향유, 백저포 등은 일반 백성들에게 호별로 부담되었던 상공(常貢) 또는 별공(別貢)⁵²⁾ 가운데 가장 우수한 품질의 것으로 선별된 것이었다.⁵³⁾

그 밖에 은도 주목되는 수출품이었다. 송에서는 국내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함께 동이슬람권과의 교역에서 중국 유출 현상과 주변 제국들에 대한 막대한 세폐(歲幣) 및 사여로 인해 막대한 은 산출량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은값의 폭등 현상이 있었으며, 동전을 대신하여 은화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은의 재화적 가치는 높아져서 고려에 왔던 송의 사신은 고려 국왕과 사람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은으로 바꾸어 돌아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행무역의 형태뿐만 아니라 조공품으로서 많은 양의 은이 송으로 유출되었을 것이다.⁵⁴⁾

한편 1132년(인종 10)에 송에 갔던 예부원외랑 최유청(崔惟淸)과 합문지후 심기(沈起)는 금 100냥, 은 1000냥, 능라 200필, 인삼 500근을 바쳤는데, 그 중에서 최유청이 개인적으로 바친 것만도 그 1/3은 되었으며, 송의 황제가 그들을 불러들여 접견하고서 최유청·심기 등에게 금대 2대를 하사하였다고 한다.⁵⁵⁾ 다른 때와 달리 금과 은, 능라, 인삼 등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을 바쳤다는 점이 주목된다. 송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는 특수한 예이며, 아울러 사신이었던 최유청이 많은 재화를 개인적으로 헌납한 것도 사행무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료이다.⁵⁶⁾

52) 예를 들어 인삼의 경우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경기의 영평현, 충청도의 충주, 단양, 경상도의 언양, 안동, 전라도 태인 등 여러 곳에서 산출되고 있었다고 한다.

53) 채응석은 고려시대 대외 수출품 가운데 국내산물의 내용이 국가의 수취체제와 지배층의 피지배층에 대한 강제적 교역품목과 거의 일치한다고 하였다(蔡雄錫, 〈앞의 글〉, 101~111쪽).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다. 다만 외교무역에 의해 교환되는 물품은 후자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었을 것이다.

54) 蔡雄錫, 〈앞의 글〉, 113~114쪽.

55) 《宋史》권487 高麗傳 紹興 2년 윤4월.

송의 사신도 사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078년 송의 사신 안도(安燾)와 진목(陳睦) 등은 고려 국왕 등에게 의대·안마와 더불어 금은보화와 미곡·잡물(雜物) 등을 받았고 잔치에 소요되는 음식까지 줄여서 은으로 교환하여 가서 고려 사람들이 그들의 탐욕스러움을 비난했다고 한다.⁵⁷⁾ 그러나 이 경우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사서에 기록되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송의 사신이 오면 특별히 시전이 열려 합법적으로 무역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⁵⁸⁾ 사행무역은 사신의 중요한 권리였던 것이다.⁵⁹⁾

(2) 고려에 전래된 물품

송에서 고려에 전래된 것 역시 귀중한 것이 적지 않았다. 고려에서 여러 가지 화려한 물품을 바치면, 황제도 그에 준하여 고려에 회사품을 주었는데, 비단 1만 필에 해당하기도 했다고 한다.⁶⁰⁾ 그리고 고려에 오는 송의 사신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예물을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 물품의 명칭이 기록된 것은 매우 적었다.

대체로 의대(衣帶)·필단(匹段)·금옥기(金玉器)·궁시(弓矢)·안마(鞍馬),⁶¹⁾ 금기(錦綺)·의착(衣著)·은기(銀器),⁶²⁾ 용봉차(龍鳳茶),⁶³⁾ 금

56) 고려의 사신단이 송나라 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선물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摺疊扇이라는 부채이다. 鴉青紙에 本國豪貴, 婦人鞍馬, 물가의 그림, 화목, 물새 등을 그려 넣은 부채로서 정교한 것으로써 명성이 있었다(《圖書見聞誌》(郭若虛)권6 近事 〈高麗國〉). 한편 사행무역에 대해서는 금과의 무역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57) 《高麗史》권9 文宗 32년 7월 을미.

58) 《高麗圖經》권3, 貿易.

59) 사행무역에 대해서는 금나라 편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60) 丸龜金作, 1962, 〈高麗と宋との通交問題(2)〉《朝鮮學報》18, 59~60쪽.

도은기(金鍍銀器)·잡색필단(雜色匹段)·산마(散馬),⁶⁴⁾ 침향(沈香)을 담은 금합(金盒)·은합(銀盒)⁶⁵⁾ 등이 있었다. 그리고 고려에서 문종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원과 약재를 청하자 많은 진귀한 약재를 보내주기도 하였다.⁶⁶⁾

그 가운데 문종 32년 6월 송의 사신이 가져왔던 물품의 종류가 전부 기록되어 품목을 분석할 수 있는데, 그 물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았다.

국왕의(國王衣)로 지춧빛 꽃무늬 비단 겹 공복 1령과 옅은 색 꽃무늬 비단 한삼(汗衫), 붉은 꽃무늬를 수놓은 비단 겹 삼침(三襷), 붉은 꽃무늬 수놓은 비단 겹 포두(包肚), 붉은 꽃무늬 수놓은 비단 허리띠(勒帛), 백면(白綿)으로 짠 비단 겹바지, 장화, 옥(玉) 16과 도(稻)·누진(鑲塵)·백희(百戲)·해아(孩兒)·두미(頭尾) 등 모두 열 가지로 대모(玳瑁)를 장식하고 금띠를 두른 붉은 가죽에 못[釘]을 친 요대, 투서(透犀)가 17·도(稻)·두미(頭尾) 등 모두 열 가지로 대모(玳瑁)를 장식하여 금띠 두른 붉은 가죽에 못을 친 요대, 말, 대모(玳瑁) 채찍, 녹아(碌牙) 채찍, 금으로 꽃을 새긴 은그릇, 뚜껑이 있는 완(盞), 가는 열선(列仙)·천하악훈문(天下樂暈文)·잡화훈문(雜花暈文)·가는 합라운안(合羅雲鴈)·가는 반구운안(盤毬雲鴈)·가는 찬안운지(欖鴈雲地)·굵은 족사금조(簇四金鵬)·굵은 취모사자(翠毛獅子)·굵은 황사자(黃獅子)·굵은 보소(寶昭) 등의 문양이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의 천금(川錦), 명황(明黃)·남황(藍黃)·옅은 분

홍·짙은 분홍·행황(杏黃)·치황(梔黃)·옅은 색깔·매홍(梅紅)·자주색·운벽(雲碧) 등 여러 가지 색의 꽃무늬 비단, 대룡(大綾)·소능(小綾)·꽃무늬 사(紗), 백초(白綃)

별사(別賜): 용차(龍茶), 봉차(鳳茶), 행인(杏仁)으로 빻은 법주(法酒), 금을 아로새긴 붉고 누런 녹아박판(碌牙拍板), 붉고 누런 아적(牙笛), 붉고 누런 아필률(牙筆簞), 용촉(龍燭), 봉촉(鳳燭).⁶⁷⁾

이상의 물품들을 분류하면 고려 국왕에게 주는 어의를 비롯하여 복식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비단 옷감들이 주요 품목이었으며, 별사품으로는 차, 술, 악기, 초 등이 있었다. 송에서 전래된 이 물품이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없지만, 수식된 문구를 보건대 고려에서 송에 보낸 것보다는 훨씬 정교하고 화려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물건을 싸거나 담아서 보낸 보자기와 자루, 갑 등은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었던 것 같다.⁶⁸⁾ 복식이나 금은장식물 등과 옷감의 염색 및 수예에 있어 송의 기술이 고려보다 앞서 있었음을 알려주며, 고려의 수공업 발전에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다. 즉 송에서 전래된 수공업품은 고려의 장인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장인들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고려의 수공업

67) 《高麗史》 권9 〈世家〉 문종 32년 6월 정묘.

68) 보자기 등의 문양과 장식이 고려의 것보다 우수했다는 사실은 그 앞에 붙은 많은 수식어를 통해 알 수 있다.

금은 잎사귀로 장식한 漆匣, 紅透背袋에 넣어서 수놓은 붉은 비단 겹보자기, 홍투배대에 넣어서 수놓은 비단 보자기 1조로 싸서 도금한 갑, 매 근을 금은으로 도금한 竹節合子에 넣어 明金 5채(綵)로 장식하고 腰花板朱漆匣에 담아서 붉은 꽃무늬 비단 겹보자기, 각각 금은으로 도금하고 꽃무늬를 아로새긴 병에 넣어 명금 5채로 장식하고 腰花板朱漆子에 담아서 붉은 꽃무늬 비단 겹보자기, 梅紅과 茸枝에 금은으로 도금한 鐸子를 달고 살아있는 색깔의 금막 자루에 넣어 明金 5채로 장식한 요화판주칠갑(《高麗史》 권9 〈世家〉 문종 32년 6월 정묘).

61) 《高麗史》 권12 〈世家〉 숙종 8년 6월 임자.
62) 《高麗史》 권9 〈世家〉 문종 34년 추7월 췌亥.
63) 《高麗史》 권13 〈世家〉 예종 7년 冬10월 경인.
64) 《高麗史》 권15 〈世家〉 인종 6년 6월 기사.
65) 《高麗史》 권18 〈世家〉 의종 17년 추7월 을사.
66) 《高麗史》 권9 〈世家〉 문종 33년 추7월 신미.

수준을 높이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송 황제가 준 선물은 고려 국왕의 권위를 높이는 데 이용되었다. 회사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복식류였고, 특히 문종 32년 6월에는 송의 신종이 의(衣), 공복(公服), 한삼, 바지, 서대(犀帶) 등 복식 일체를 보내준 바 있었다.⁶⁹⁾ 문화적으로 숭모했던 송 황제가 보내 준 화려한 장식의 옷과 장신구를 입은 고려 국왕의 모습은 그 자체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중국 황제의 책봉은 고려 국왕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이었다.⁷⁰⁾ 그것은 송·요·금 어느 왕조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신료들이나 일반 백성들에게 가시적이며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황제의 책봉 자체가 아니라 황제가 준 복식이었다. 그것이 송과의 외교관계를 통해 고려 국왕이 얻고자 했던 중요한 목적의 하나였다고 이해된다.

그리고 송과 고려 사이에 외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왕래하는 비용과 물품을 주고받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고 송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꽤 컸던 것 같다. 그러므로 고려와의 외교를 중단하는 이유로 송의 명주(明州)와 월주(越州) 사람들이 사신의 접대에 시달리고 송의 중앙 정부에서는 고려왕에게 하사한 것을 포함하지 않고도 수만 냥이 들었다고 하였다.⁷¹⁾

그것은 이후 고려에서 사신이 오는 것은 무역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는 소동과의 인식과도 상통한다. 그는 고려가 승려 수개(壽介)를 파견하여 황제의 축수를 비는 금탑을 기증하려고 한 데 대해 그것을 받으면 고려에 주는 회사품을 마련하기 어렵고, 만약 받기만 하고

보답이 없으면 이로(夷虜: 고려)는 성품이 탐욕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다.⁷²⁾ 또한 그는 고려의 송과의 외교 목적이 많은 이익(厚利)을 취하는데 있다고 비판하였다.⁷³⁾

고려가 송에 바친 물품의 가치와 송에서 준 물품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송나라 사람들이 고려와의 외교에 너무 많은 재정적 손실이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은 확실하다.⁷⁴⁾ 반대로 고려는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송과의 외교를 재개하려고 한 고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인 것이었음을 알려준다.

3) 송과의 일반무역

고려의 대송무역은 대요·대금 무역과 다른 성격이 있다. 후자는 공식적인 외교 사절의 교환 과정에서 무역이 있었던 데 반하여 전자의 경우 그 이외에 민간 상인과의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송에서 고려에 대해 적극적인 무역을 하였던 배경은 송대에 이르러 중국의 상업자본이 발전된 것, 대식국을 비롯한 동남아 및 아라비아 지역과의 무역이 성했다는 점, 송의 무역정책이 해외무역을 장려함으로써 국가 수입의 증진을 꾀하였던 점이 있다.⁷⁵⁾

그와 동시에 고려에서도 송의 문화에 대한 동경심이 많았고 송 문물

69) 《高麗史》 권72 〈興服志〉 冠服 王冠服 文宗 32년 6월.

70) 沈載錫, 2002, 〈諸國家間 책봉의 기능과 그 성격〉 《高麗國王 冊封 研究》, 혜안, 282~283쪽.

71) 《宋史》 권487 高麗傳.

72) 《蘇東坡集》 奏議6 〈論高進奉第二狀〉.

73) 《蘇東坡集》 奏議6 〈論高進奉第二狀〉.

74) 고려에서 보낸 물품과 송에서 가져온 물품의 양은 서로 비슷하였다는 견해도 있다(홍희유, 1989, 〈고려시기 상업과 화폐유통의 장성〉 《조선상업사(고대·중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07~108쪽).

75) 金庠基, 1986, 〈宋商의 活動〉 《新編 高麗時代史》, 서울대 출판부, 152~153쪽.

의 수입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비록 요·금의 정치적 압박을 받아 송과 외교를 단절한 상황에서도 송상의 입국을 허락하고 무역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결국 고려와 송 양국이 무역을 하고자 하는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졌으므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고려는 신라 말 호족들과 같이 국제 무역에 참여하면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의 무역을 제한하고 국가에서 무역을 독점하였으며, 대신 외국 상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⁷⁶⁾ 개정 근처의 예성항을 개방하였다. 이로 인해 고려와 송의 사무역을 주도한 것은 송상이었다.

그들은 1020년(현종 12)에서 1278년(충렬왕 4)에 이르기까지 약 260여 년 동안 약 120여 회에 걸쳐 적어도 5,000여 명이 왔었다. 보통 7·8월에 서남계절풍을 이용하여 고려에 온 이들은 북풍을 이용하여 되돌아갔으나 11월 보름의 팔관회에 참석하기 위해 10·11월에 역풍을 무릅쓰고 오기도 하였다.⁷⁷⁾ 그만큼 고려와의 무역이 그들에게는 중요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무역 이외에 고려와 송이 외교적으로 단절된 시기에는 정치적 활동도 활발히 하였다. 1128년 3월 송 고종의 즉위교서를 전한 사람은 송상의 강수(綱首) 채세장(蔡世章)이며 그 후에도 송 황제의 밀지와 국제 정보가 송상을 통해 전달되었던 것이다.⁷⁸⁾

송의 상선은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외교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고려를 왕래하였다. 한때 거란과의 무역에 종사하는

송상을 막기 위해 송에서 고려와의 무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도 했으나 그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왕래했다고 한다.⁷⁹⁾ 이처럼 고려에 온 송상은 무역을 위해 때로는 외교 통로로서, 양국 간의 교류에 큰 기여를 하였다.

송상은 우두머리인 도강(都綱)을 중심으로 선단을 이루고 고려의 예성항에 와서 고려 국왕에게 헌상품—토물·방물 등—을 바쳤다.⁸⁰⁾ 이들이 바쳤던 물품 가운데 특이한 것으로는 백한(白鵠),⁸¹⁾ 화목(花木),⁸²⁾ 앵무(鸚鵡)·공작·이화(異花),⁸³⁾ 등이 있었으며 진귀한 물건을 통해 국왕의 환심을 사고자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후 무역을 했다는 기사는 없지만 송상이 국왕에게 헌상품을 바치는 것은 무역을 허락받기 위한 절차였다고 이해된다.⁸⁴⁾

그런데 송상이 고려에 와서 무역을 하는 것을 고려측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 같다. 고려의 국왕을 직접 대면하여 방물을 바치면서 합법적인 무역의 권한을 획득하고, 고려 국왕은 송상이 장차 거두게 될 이익의 일부를 떼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그와 더불어 고려 국왕은 송상의 알현을 받고 헌상을 받음으로써 대외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높일 수 있었는데,⁸⁵⁾ 팔관회에서는 송의 상객(商客)이 참여하였고 아예 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송의 강수(綱首)’가 공

79) 徐炳國, 1973, 〈高麗·宋·元의 三角貿易考〉《白山學報》15, 90~91쪽.

80)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朔 宋泉州商都綱林萬等五十五人 來獻土物(《高麗史》 권5 〈世家〉 德宗 二年 8月).

宋商陳諒等六十七人 獻土物(《高麗史》 권6 〈世家〉 靖宗 二年 秋七月 辛巳).

81) 《高麗史》 권13 〈世家〉 예종 8년 5월 무자.

82) 《高麗史》 권14 〈世家〉 예종 15년 6월 신묘.

83) 《高麗史》 권18 〈世家〉 의종 11년 추7월 戊子.

84) 森克己는 이러한 형식의 무역을 私獻貿易이라고 규정하였다(森克己, 〈앞의 글〉, 556쪽).

85) 송 상인의 방물 헌상 절차는 나말여초 호부층들에 의해 할거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역에 대한 국왕의 권위를 확보하려는 상징이었다고 한다(蔡雄錫, 〈앞의 글〉, 117쪽).

76) 森克己, 1959, 〈日·宋の高麗との私獻貿易〉《朝鮮學報》14, 554~556쪽.

77) 김상기, 〈앞의 글〉, 161~163쪽.

78) 김상기, 1959, 〈해상의 활동과 문물의 교류—예성항(禮成港)을 중심으로—〉《국사상의 제문제》4, 국편위: 1974, 《동방사논총》, 서울대출판부, 442~446쪽.

물(貢物)을 바치게 함으로써 더욱 그 효과를 크게 할 수 있었다.⁸⁶⁾ 송상은 고려 왕실에 경제적 이득을 주었을 뿐 아니라 국왕의 정치적 권위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송상이 가져온 물품은 비단·자기·금박·약재·차·서적·악기 등 송의 산물과 향약·침향·서각(犀角)·상아 등 서남아 여러 나라와 교역해온 중계 무역품이 있었다. 이 물품은 고려의 금·구리·인삼·호랑이 가죽·물소가죽·황칠(黃漆)·유황 등 특산물과 비단·저마(苧麻)·백지·향유·나전기구(螺鈿器具)·금은장도·낭미필(狼尾筆)·송연묵(松煙墨) 등 수공업품과 교환되었다.⁸⁷⁾ 그 밖에 여지(荔枝)·서화·사직품(絲織品)·차잎·약물 등이 수입되었고, 고려의

술·화폐·연적·마납의(磨納衣)·구리그릇·초석(草蓆)·화로·부채 등이 송상에게 거래되었다.⁸⁸⁾

그 밖에 동전도 무역을 통해 고려에 유입되어 국내에서 발행된 화폐와 함께 통용된 것은 그 유물이 발견되는 것을 통해 확인되며,⁸⁹⁾ 대각국사 의천을 섬겼던 승려 혜소(惠素)가 ‘장



천안출토 중국동전

86) 《高麗史》 권6 〈世家〉 정종 즉위년 11월 경자.

87) 김상기, 〈앞의 글〉, 162~163쪽.

88) 黃寬重, 1992, 〈宋·麗貿易與文物交流〉 《震檀學報》, 71·72합, 341~346쪽.

89) 정용범, 1997, 〈高麗時代 中國錢 流通과 鑄錢策—성종과 숙종 연간을 중심으로〉 《지역과 사회》 4, 103~107쪽.

김한규, 1999, 〈앞의 글〉, 415쪽.

사배[商舶]에서 남방의 설탕(砂糖)을 구하고자 했던 기록에서,⁹⁰⁾ 장사배는 송 상인의 배였고 설탕은 중계무역으로 고려에 전해진 것이었다.⁹¹⁾ 이처럼 다양한 물품이 송 상인에 의해 고려에 전해졌는데, 특히 공예품은 수공업에 큰 자극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 제조 방법도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각별히 중시되었다.⁹²⁾

이와 반대로 송상에 의해 고려에서 송에 전해진 물품으로 유명한 것이 적지 않았다. 특히 종이는 삼한지(三韓紙),⁹³⁾ 계림지(鷄林紙),⁹⁴⁾ 고려지 등으로 불리었으며 중국 촉(蜀) 지역에서 생산되는 종지와 비견되며 곱고 빛이 난다는 칭송을 받았다.⁹⁵⁾ 고려 종이의 유통 범위는 송의 수도 및 항구 주변에서만 아니라 장강 안쪽에서도 유통되면서 그 성가를 높였다.⁹⁶⁾ 그리고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으로 만드는 먹은 고려에서 잘 만들어 중국에 공물로 포함되어 있고,⁹⁷⁾ 고려 사신들의 송의 문인에 대한 선물로 사용되었으며,⁹⁸⁾ 먹의 원료인 그을음(煤, 油煙)과⁹⁹⁾ 고려의 벼루(高麗硯),¹⁰⁰⁾ 선등(禪燈),¹⁰¹⁾ 도기로 만들어진 화로인 고려로(高麗爐)¹⁰²⁾ 등도 유명하였다.

90) 《補閑集》 卷中.

91) 丸龜金作, 1962, 〈高麗と宋との通交問題(2)〉 《朝鮮學報》18, 72~73쪽.

92) 김한규, 〈앞의 글〉, 421쪽.

93) 《緯略》(高似孫) 권12 〈韓子答〉.

94) 《東觀餘論》 下(黃伯思) 〈跋章草鷄林紙卷後〉.

95) 《負喧野錄》 하 〈論紙品〉.

96) 池田溫, 1989, 〈新羅·高麗時代 東亞地域紙張의 國際流通에 關하여〉 《大東文化研究》23, 195~196쪽.

97) 《本草衍義》(寇宗奭) 권14 墨.

98) 《蘇軾文集》 卷70 題跋 〈記李公澤惠墨〉.

99) 《東坡文集》 卷70 題跋 〈書王君佐所蓄獸〉 《東坡文集》 卷70, 題跋 〈書別造高麗墨〉.

100) 《硯史》(米芾) 〈高麗硯〉.

101) 《洞天清錄》(趙希鵠), 禪燈.

102) 《松隱集》(曹勣) 卷28 〈高麗爐一枚 寄虎丘紹老 爲說偈言〉.

또한 송의 여러 곳에서도 인삼이 생산되었지만, 특정한 질병의 치료에는 고려의 인삼이 가장 좋았을 뿐 아니라 실제 효험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송에서 사신이 고려에 오면 인삼을 선물로 주기도 하였다.¹⁰³⁾ 그 밖에 고려의 약재로 두충, 백부자, 마자, 금, 동, 고려경(高麗磬), 신구수준(神龜壽樽), 은우, 삼각고려화병, 고려동병, 대동분(大銅盆), 우어표(牛魚鰓), 고려지담(高麗紙贖)¹⁰⁴⁾ 등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들 물품은 조공품으로 사용되었던 만큼 일반 상업적 무역에서도 중국인들에게 전해졌다고 생각된다.

도자기도 송의 애호를 받던 물품이었다.¹⁰⁵⁾ ‘도기의 청색을 고려인들이 비색(翡色)이라고 한다. 근년 이래로 제작이 정교해지고 색과 윤택함이 더욱 뛰어나다’는¹⁰⁶⁾ 평가를 받았던 고려의 도자 기술은 본래 중국에서 받아들인 것이었지만, 고려의 장인들이 상감 기법 등을 창안함

으로써 세계적인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였다.¹⁰⁷⁾

그러므로 중국인들은 감서(監書)·내주(內酒)·단연(端硯)·징묵(徵墨)·낙양화(洛陽花)·건주차(建州茶)·촉금(蜀錦)·정자(定磁)·진



함주명동제방형경

103) 張東翼, 2000, 《宋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 출판부, 374~382쪽.

104) 張東翼, 〈앞의 책〉, 387~391쪽.

105) 金漢圭, 〈앞의 글〉, 454~4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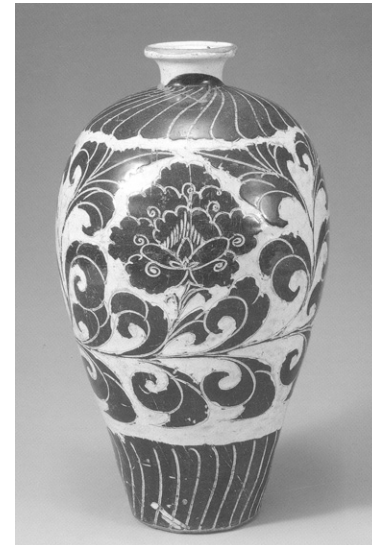
106) 《高麗圖經》 권32 器皿.

107) 高裕燮, 1954, 《高麗靑瓷》, 乙酉文化社, 39쪽.

崔淳雨, 1975, 〈高麗時代의 陶磁〉 《韓國美術全集》9, 同和出版社, 7쪽.

동(晉銅)·서마(西馬) 등과 함께 천하제일의 명품에 넣고 극도의 칭송을 하였다.¹⁰⁸⁾

고려의 자기가 이와 같이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서공(徐兢)과 같이 고려를 방문한 사람들의 영향도 있었지만, 송상들에 의해 중국에 전달된 것이 더 큰 몫을 했다고 생각된다.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고려의 조공품에서는 도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므로 대부분의 전달 경로는 무역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방증으로 원의 영파(寧波)를 출발하여 일본으로 향하다가 1323년에 침몰된 무역선의 발굴 결과 고려자기가 있었다는¹⁰⁹⁾ 점을 들 수 있다. 시기적인 차이는 있었으나 고려청자가 송 상인과 교역되어 송나라 사람들에게 매매되었다고 생각된다.



백유흑화모란당초무늬매병

4) 문화교류

고려와 송의 무역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활발한 문화교류였다.¹¹⁰⁾ 비록 그 당시 송이 문치주의에 빠져 군사력 강화를 소홀히 하였다가

108) 朱雲影, 1963, 〈中國工業技術對於日韓越的影響〉 《大陸雜誌》26-2, 189~190쪽.

109) 鄭良謨, 1991, 〈新安海底遺物을 통해 본 14世紀 東아시아의 陶磁文化〉 《震檀學報》71·72합, 388~392쪽.

거란과 금에 패하여 막대한 세공을 바치는 형국이었지만, 정치제도나 사회문화 분야는 가장 앞서 있었다. 대외관계에서 요·금과는 달리 송에 대해서는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고려가 북쪽의 거란과 국경을 접하면서도 송과 외교관계를 맺고, 요의 압력으로 송과 외교를 끊고서도 송의 상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역을 했던 것은 바로 송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1058년(문종 12) 8월에 왕이 탐라(耽羅)와 영암(靈巖)에서 재물을 베어 큰 배를 만들어 장차 송과 외교를 재개하고자 할 때,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에서 ‘우리나라는 문물예악(文物禮樂)이 흥하여 행해진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상선이 끊임없이 와서 진보(珍寶)가 날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에 대하여서는 실로 도움 받을 것이 없습니다.’라며 반대하자 왕이 받아들였다.¹¹¹⁾ 내사문하성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는 송에서 들어온 예악문물이 널리 행해지고, 그 나머지 진귀한 보물들은 상선을 통해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고려의 송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어쨌든 고려는 송에서 선진 문물을 많이 수입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서적이었다. 983년(성종 2) 5월에 박사 임노성(任老成)이 송에서 〈태묘당도(太廟堂圖)〉·〈사직당도(社稷堂圖)〉·〈문선왕묘도(文宣王廟圖)〉 등의 그림과 《태묘당기(太廟堂記)》·《사직당기(社稷堂記)》·《제기도(祭器圖)》·《칠십이현찬기(七十二賢贊記)》 등을 가져왔다.¹¹²⁾ 이 시기는 성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관제를 개편하고 유교화되던 시기

였으므로, 사신을 보내 필요한 그림과 서적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전래된 그림과 서적들은 실제로 태묘·사직당·문선왕묘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이용하였을 것이며, 그것은 유교 군주로서 성종의 권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후 1022년(현종 13) 5월에 한조(韓祚)는 송의 황제가 하사한 《성혜방(聖惠方)》·《음양이택서(陰陽二宅書)》·《건흥력(乾興曆)》·《석전(釋典)》 등을 가져왔고,¹¹³⁾ 1027년 8월에 송의 강남 사람 이문통(李文通) 등이 579권의 서책을 바쳤다.¹¹⁴⁾ 1090년(선종 7) 12월에는 《문원영화집(文苑英華集)》이 들어왔고,¹¹⁵⁾ 1098년에는 송의 《개보정례(開寶正禮)》가 도입되어 있었다.¹¹⁶⁾ 1101년 6월에 왕하(王覿)와 오연충(吳延寵)이 송 황제가 하사한 《태평어람(太平御覽)》 1,000권을 가져왔다.¹¹⁷⁾ 1151년(의종 5) 6월에는 보문각학사(寶文閣學士) 등이 《책부원구(冊府元龜)》를 교정한 사실이 있었다.¹¹⁸⁾

그리고 1192년(명종 22)에는 송의 상인이 와서 《태평어람》을 바치자 백금 60근을 하사하고, 아울러 최선(崔詵)에게 명하여 잘못된 바를 고치게 하였다.¹¹⁹⁾ 서적의 도입은 외교 과정에서 황제의 하사 형식으로 가져오거나 송상이 고려의 왕에게 바치는 형식이었다. 이처럼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도입되는 서적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는 고려의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송상이 《태평어람》을 바쳤다고 했고, 그 대가로 백금 60근을 받은 것은 고려의 주문을 받아

110) 고려와 송 간의 문화교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李丙燾, 1960, 《韓國史 中世篇》, 을유문화사, 392~401쪽.

羅鍾宇, 1995, 〈앞의 글〉, 290~294쪽.

111) 《高麗史》 권8 〈世家〉 문종 12년 8월 을사.

112) 《高麗史》 권3 〈世家〉 성종 2년 하5월 갑자.

113) 《高麗史》 권4 〈世家〉 현종 13년 5월 병자.

114) 《高麗史》 권5 〈世家〉 현종 18년 8월 丁亥.

115) 《高麗史》 권10 〈世家〉 선종 7년 12월 임진.

116) 《高麗史》 권11 〈世家〉 숙종 3년 12월 병신.

117) 《高麗史》 권11 〈世家〉 숙종 6년 6월 병신.

118) 《高麗史》 권17 〈世家〉 의종 5년 6월 임신.

119) 《高麗史》 권20 〈世家〉 명종 22년 8월 계해.

책을 구입해주면서 일정한 상업적 이익을 노린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서적과 더불어 불교 경전이 전해진 것도 주목된다. 고려는 불교 국가답게 여러 차례 불교 경전을 수집하고, 때로는 대장경판을 조성하기도 하였으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송에 필요한 경전을 요청하였던 것 같다. 그 결과 991년(성종 10) 4월에 한언공(韓彦恭)이 대장경을 가져왔으며,¹²⁰⁾ 1083년(문종 37) 3월 대장경이 고려에 들어오자 왕은 태자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였으며¹²¹⁾ 1087년(선종 4) 3월에 송상 서전(徐戡) 등 20인이 와서 〈신주화엄경판(新註華嚴經板)〉을 바쳤다.¹²²⁾ 또한 983년 송에서 조성된 《개보칙판(開寶勅板)》이 도입되어 초조대장경의 저본이 되었고,¹²³⁾ 1118년(예종 13) 4월에는 정국안화사(靖國安和寺)가 개창되자 송 황제로부터 능인전(能仁殿)의 편액을 받았으며, 아울러 16나한(羅漢)의 소상(塑像)을 받기도 하였다.¹²⁴⁾ 이러한 송에서 전래된 경전과 불상은 고려 불교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송에서도 없어진 서적들이 있어 고려로 되돌아오는 사실편에 총 113종 5,006권의 목록을 주고 구해주거나 전사해줄 것을 청하였다.¹²⁵⁾ 이 가운데 고려에서 몇 편을 구해주었는지 알 수 없으나 송에서 요청한 내용으로 보아 고려에 적지 않은 서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는 송의 선진 의술을 받아들이는데도 적극적이었다. 문종이 풍비증(風痺症)을 앓아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의사와 약을 송 황제에 청하였다. 이에 송에서는 나라에 의사와 약을 구하였는데, 송에서는 합문

통사사인(閤門通事舍人) 왕순봉(王舜封)과 한림의관(翰林醫官) 형조(邢誥)를 보내어 치료를 돕게 하고 아울러 100가지 품목의 약재를 보내왔다.¹²⁶⁾ 의술과 관련되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한림의관 형조로 생각되는데, 그는 문종의 치료를 담당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려 의관들에게 송의 의술을 전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고려에 들어온 약재가 100가지나 되었다고 하는데, 단순히 약재만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약재의 효능에 설명이 없다면, 그것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약재를 구별하고 그 효능을 알게 됨으로써 치료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다. 그 후 1101년 5월에 송에 갔던 임의(任懿)와 백가신(白可臣)이 황제의 하사품으로 의서인 《신의보구방(神醫補救方)》을 받아 돌아왔다.¹²⁷⁾ 한편 《고려도경》에는 문종 때 사신을 보내 의술을 배워갔으나 정통하지 못하다고 했으며, 1118년(예종 13) 고려에서 송에 의직을 내리어 가르쳐주기를 청하므로 송에서 남줄(藍苗)을 보냈다고 한다. 특히 고려에서는 약재를 중요시 여겨 다른 재화는 물물교환 하였으나 약만큼은 간혹 전보(錢寶)로써 교역하였다고 한다.¹²⁸⁾ 고려 의술의 발전이 송에 의존하는 바가 컸음을 알 수 있다.

120) 《高麗史》 권3 〈世家〉 성종 10년 하4월 경인.

121) 《高麗史》 권9 〈世家〉 문종 37년 3월 기축.

122) 《高麗史》 권10 〈世家〉 선종 4년 3월 갑술.

123) 李丙燕, 〈앞의 책〉 395쪽.

124) 《高麗史》 권14 〈世家〉 예종 13년 하4월 임신.

125) 《高麗史》 권10 〈世家〉 선종 8년 6월 병오.

126) 100여 가지 약재와 別賜로 牛黃·龍腦·朱砂·麝香 등이 있었으며, 약을 복용할 때 쓸杏仁으로 빛은法酒도 함께 보내왔다(《高麗史》 권9 〈世家〉 문종 33년 추7월 辛未).

127) 《高麗史》 권11 〈世家〉 숙종 6년 5월 갑신.

128) 《高麗圖經》 권16 官府 藥局.

4. 요와의 무역

1) 사신의 왕래와 무역

송과의 무역이 사신의 왕래를 통한 무역과 송상을 통한 무역으로 이원화되었으나 요와의 그것은 외교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이 주를 이루었던 것 같다. 특히 사신의 왕래가 송에 비해 매우 잦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에서 고려에 보낸 사신은 동경지례사(東京持禮使)·횡선사(橫宣使)·책봉사·칙제사(勅祭使)와 고려왕의 생신사(生辰使) 등이 있었다.

이에 비해 고려에서 요에 파견된 사신은 매우 많아서 약 30여 종류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방물사(方物使: 進奉使)·하정사(賀正使: 正旦使)·사계문후사(四季問候使)·절일사(節日使)·태후생신사·동경지례사(東京持禮使) 등의 정기 사절과 거란의 보빙사(報聘使)·횡선사·책봉사·칙제사 등에 사은사(謝恩使) 및 회사사(回賜使), 거란의 개원(改元), 책례거행(冊禮舉行)에 대한 축하 사절 등이 있

었다. 이 가운데 방물사·고주사·사은사 등의 명칭은 송과 같으나 그보다 훨씬 다양한 사신이 거란에 파견되었다.¹²⁹⁾

고려의 사신이 너무 자주 찾는 것에 부담을 느낀 요는 1022년에 동경지례사 이극방(李克方)을 보내 '춘하계문후사(春夏季問候使)'를 한 번씩만 보내되 천령절하례사(千齡節賀禮使)와 정단사(正旦使)와 동행하도록 하고 추동계문후사(秋冬季問候使)도 한 번씩 보내되 태후생신하례사(太后生辰賀禮使)와 동행하도록 하였다.¹³⁰⁾ 이것은 1년에 7차례 가야할 고려의 사신을 두 차례로 묶어 한꺼번에 오도록 한 조치로 고려의 사신이 자주 왕래함에 따라 사행길 주변에 사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사신의 수는 춘계문후사와 하계문후사를 합쳐 춘하계문후사로, 추계문후사와 동계문후사를 합쳐 추동계문후사로 하였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이후에도 고려에서 가는 사신의 종류는 더 많아졌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여러 명목의 사신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행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아질수록 고려에서는 더욱 더 큰 이득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먼저 요나라 책봉사의 경우 고려에서 왕을 책봉한 뒤 그에 걸맞는 복식을 하사하였고, 1063년에는 요에서 고려 국왕뿐만 아니라 왕세자도 책봉하고 그에 게 복식을 하사하였다.¹³¹⁾

다음으로 고려 국왕의 생신에 대한 거란의 사신인데, 요의 입장에서 고려는 조공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22년 7월에 현종의 생신을 축하한 것을 비롯하여¹³²⁾ 고려 국왕의 생신 또는 태후의 생신에 사신을 보

129) 朴漢男, 1995, <북방민족과의 관계> 《한국사》15, 국편위, 336쪽.

130) 《高麗史》 권4 <世家> 현종 13년 8월 庚子.

131) 《高麗史》 권8 <世家> 문종 19년 하4월 계사, 경자, 계묘.

내왔다. 1085년(선종 2) 9월에는 요의 어사중승(御史中丞) 이가급(李可及)을 보내 와 생신을 축하하였는데 기일(期日)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기도 하였다.¹³³⁾ 본래 황제가 제후의 생신에 사신을 보내 축하하는 것도 특별한 사례였으나 고려 사람들은 기일이 늦은 것을 따질 정도로 당연히 여겼던 것이다.

이처럼 횡선사와 고려왕생일사의 파견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종주국인 요에서 보내는 정기 사신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당시 고려와 요의 외교적 관계는 고려측의 일방적인 사신 파견이 아닌 쌍무적인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¹³⁴⁾ 그런데 하생신사(賀生辰使)는 성격상 생신을 축하하는 사절이기 때문에 황제가 축하의 대상인 고려 국왕 또는 태후에 주는 많은 선물이 있기 마련이었다. 횡선사 역시 황제의 정규 사신이 있기 때문에 하사품이 없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요의 사신이 고려에 올 때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고려에서 요에 가는 사신은 많은 물품을 가져가지만 적지 않은 회사품을 바랄 수 있었다. 방물사는 그 자체의 목적이 순수하게 방물과 폐물(幣物) 또는 납폐물(納幣物)을¹³⁵⁾ 바치는 것이 목적이었다. 또한 황제 또는 황태후의 생신사절이나, 국호나 연호를 고친 것을 하례하는 사신, 동지나 원단을 축하하는 사신 등은 경축일을 경하하는 의미에서 많은 물품을 가져가게 되었다.¹³⁶⁾ 사신의 표문은 그것을 하례하

는 뜻을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방물이나 하례품은 그 뜻을 선물로써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특별한 날에 멀리서 축하의 뜻을 담아 온 사신들에게 대국인 요의 황제는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하례의 표를 올리고 선물을 보내준 고려 국왕에게 회사품을 하사하고, 사신들에게는 수고의 대가를 주었다. 결국 요의 사신이 고려에 오든지, 아니면 고려의 사신이 요에 가든 상관없이 고려는 외교를 통해 요의 귀중한 물품들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고려에서는 여러 가지 명목을 들어 사신의 수를 늘리게 되었다.

그러나 외교에 의한 무역이 일방적으로 고려에게만 유리했던 것은 아니었다. 요에서 많은 수의 사행을 허락한 것은 거란에서도 고려와의 교역이 절실했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로 1043년(정종 9)에 온 요의 사신은 책봉사 소신미(蕭愼微)·부사 한소문(韓紹文)을 비롯하여 130인이 왔는데,¹³⁷⁾ 이것은 순수한 사절의 수라고 이해하기 어렵다. 사신중 상당수가 무역을 목적으로 고려에 동행한 사람들로 여겨지며, 그 수로 보아 활발한 교역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요에서도 고려와 외교를 통해 실속을 찾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132) 《高麗史》 권5 〈世家〉 현종 14년 추7월 계해.

133) 《高麗史》 권10 〈世家〉 선종 2년 9월 임자.

134) 박한남, 〈앞의 글〉, 337쪽.

더 나아가 고려의 수요에 의해 성립되었던 고려·송의 관계와 달리, 고려·요의 외교는 요의 정치·군사·경제·문화적 필요에 의해 성립되고 유지되었다는 해석도 있다(김한규, 〈앞의 글〉, 385~386쪽).

135) 遣韓彥卿 如契丹 納幣(《高麗史》 권3 〈世家〉 成宗 15년 춘3월).

是月 契丹以前王薨 還納幣之物(《高麗史》 권3 〈世家〉 穆宗 元年 하4월 임자).

136) 기거사온과 연호를 청하러 갔던 김원충이 납폐물을 가져갔다는 사실은 돌아올 때 가져온 거란 황제의 조서를 통해 확인된다(《高麗史》 권6 〈世家〉 정종 4년 하4월 무진, 《高麗史》 권6 〈世家〉 정종 4년 추7월 갑인).

137) 《高麗史》 권6 〈世家〉 정종 9년 11월 신사.

2) 요와의 무역품

고려와 요 사이에 활발한 사신 교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고 간 물품을 검토해보자. 그것은 송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고려사》에는 매,¹³⁸⁾ ‘금흡병(金吸瓶)·은약병(銀藥瓶)·복두(幘頭)·사저포(紗紵布)·공평포(貢平布)·뇌원차(腦原茶)·대지(大紙)·세묵(細墨)·용수등석(龍鬚簾席)’ 등이 있었고, 《거란국지(契丹國誌)》에는 금기(金器)·금포두(金抱肚)·금사라(金紗羅)·금안비마(金鞍轡馬)·자화면주(紫花錦紬)·백면주(白錦紬)·세포(細布)·조포(組布)·동기(銅器)·법청주초(法淸酒醋)·뇌원차(腦元茶)·등조기물(藤造器物)·성형인삼(成形人蔘)·무탄목도이(無炭木刀儻)·세지(細紙)·묵(墨)¹³⁹⁾ 등과¹⁴⁰⁾ 황선사에 대한 답례로 갱미(粳米: 쌀) 500석·나미(糯米: 찹쌀) 500석과 직성오채어의(織成五彩御衣)가 있었다.¹⁴¹⁾

송에 보낸 것과 비교하건대 황제의 복식과 칼 등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을 요에는 보내지 않았고, 송에서 평판이 좋았던 먹, 종이, 인삼 등은 포함되었다. 사행의 종류에 따라 그 납폐물이 달랐을 것이지만 이 내용만을 볼 때 그릇류와 각종 비단과 베, 인삼 등 세폐로서의 성격을 차지하는 것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송과 주고받은 물품들이 비교적 화려하고 많은 장식이 가미되어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수공업 제품이었으나 요에 보낸 것들은 고급이기는 하지만 단순 수공업품이어서, 양국 간의 차이를 찾을 수 있다.

138) 《高麗史》 권3 〈世家〉 성종 14년 춘2월 기묘.

139) 박한남과 이정희는 細紙墨을 하나로 보고 있으나 송에 보낸 조공품 등을 참고하건대, 세지와 묵이 되어야 할 것이다(박한남·이정희, 〈앞의 글〉).

140) 《契丹國誌》(葉隆禮) 권21, 外國進貢禮物.

141) 《契丹國誌》(葉隆禮) 권21, 外國進貢禮物.

그리고 요로부터 받은 물품으로는 국왕 및 태자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요에서 고려 국왕이나 왕태자를 책봉한 뒤 그 지위에 맞는 복식이나 의례품 등이 함께 하사하는 것이 상례였던 것 같다. 그리하여 3차례의 전쟁이 끝나고 외교가 재개되기 시작한 1022년(현종 13)부터 책봉 조서와 더불어 수레·의복·의물(儀物) 등을¹⁴²⁾ 보내왔다. 그 후에도 구류관(九旒冠)·구장복(九章服)·옥규(玉圭)·옥책(玉冊)·상로(象輅)·의대(衣櫛)·필단(匹段)·궁전(弓箭)·안마(鞍馬),¹⁴³⁾ 구류관·구장복(九章服)·옥규,¹⁴⁴⁾ 왕여로(王輿輅),¹⁴⁵⁾ 인수(印綬)¹⁴⁶⁾ 등이 있었다. 또한 왕세자에게는 구류관·구장복·아홀(牙笏)·죽책(竹冊)·혁로(革輅)·의대·필단(匹段)·안마·궁전(弓箭)·술¹⁴⁷⁾ 왕세자 거로¹⁴⁸⁾ 등이 있었다.

그 외에 일찍이 태조대에 거란에서 낙타와 모전(毛氈) 등이 보내졌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며, 993년 소손녕(蕭遜寧)과 담판에 성공한 서회는 거란의 진영에서 되돌아 올 때 낙타 10수(首)·말 100필·양 1,000두와 면기라환(綿綺羅紈) 500필을 선물로 받았다.¹⁴⁹⁾

한편 《거란국지》에는 고려에서 보낸 물품으로 서옥요대(犀玉腰帶)·금도안비마(金塗鞍轡馬)·산마(散馬)·궁전기장(弓箭器仗)·세금(細錦)·기(綺)·라(羅)·릉(綾)·의(衣)·착(著)·견(絹)·양·술·과자 등이 보인다. 비단옷감과 양·술·과자 등은 일반 하사품이고,

142) 《高麗史》 권4 〈世家〉 현종 13년 하4월.

143) 《高麗史》 권8 〈世家〉 문종 19년 추4월 경자.

144) 《高麗史》 권72 〈輿服志〉 冠服 王冠服 문종 19년 4월.

145) 《高麗史》 권72 〈輿服志〉 輿輅 王輿輅 靖宗 9년 11월.

146) 《高麗史》 권72 〈輿服志〉 印章 王印章 靖宗 9년 11월.

147) 《高麗史》 권8 〈世家〉 문종 19년 추4월 계묘.

148) 《高麗史》 권72 〈輿服志〉 輿輅 王世子輿輅 文宗 11년 3월.

149) 《高麗史》 권94 徐熙傳.

그 외에는 고려 국왕의 복식과 의장에 관련된 것들이었다.¹⁵⁰⁾ 특히 거란사(契丹絲)는 그 품질이 우수하여 그것으로 만든 거란의 모직물은 고려 지배층의 방한 의류로 인기가 있었으므로 1185년(명종 15) 궁중에 전사가 떨어지자 서북면병마사로 하여금 금의 상인과 밀무역을 통해 거란사 500 속(束)을 구매하게 할¹⁵¹⁾ 정도였다.¹⁵²⁾

그 밖의 물품으로 대장경이 주목된다. 송이 태조와 태종대에 국가적 사업으로 대장경 조판을 추진하였고, 요는 이에 맞서 중국의 고승을 초빙하여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마침내 1059년에 마무리하였다. 그 결과로 인쇄된 대장경은 1064년(문종 17),¹⁵³⁾ 1099년(숙종 4),¹⁵⁴⁾ 1107년(예종 2)¹⁵⁵⁾ 등에 고려에 보내졌는데, 요 황제의 고려 국왕에 대한 회사품의 하나였다. 특히 1차로 대장경을 완성한 이후 추가로 조판된 대장경을 준 것은 고려가 송과의 국교를 재개한 것에 대한 화유책이었다고 한다.¹⁵⁶⁾

요컨대 요에서 왕의 복식과 의장을 주요 물품으로 준 것은 고려 국왕을 제후 또는 황제에 대한 왕의 지위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거란의 복식과 의물을 하사하여 고려 국왕이 거란의 신하가 되었음을 드러내게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고려 국왕의 입장에서는 문화적으로

동경하던 송 황제의 하사품에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형식적으로 송에 대해 형의 나라였던 요 황제의 하사품을 사용하는 것은 황제의 권위를 가탁하여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3) 각장 설치 문제

고려와 요의 무역이란 측면에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각장(樵場)이다. 각장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양국의 백성들이 필요한 물품을 교역하는 호시장(互市場)이다.¹⁵⁷⁾ 1005년(목종 8)에 요의 국경에 진무군(振武軍)과 보주(保州)에 각장이 설치되었으나¹⁵⁸⁾ 1010년(현종 1)에 요의 침입으로 폐쇄되었다.¹⁵⁹⁾ 이후 1014년 요가 보주와 정주를 취하고 각장을 설치하였지만¹⁶⁰⁾ 이것도 요의 3차 침입으로 기능을 상실하였을 것이다.¹⁶¹⁾

그 뒤 1086년(선종 3)에 요가 압록강변의 보주에 각장을 설치하려 하자 고려는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데 가장 중요한 골자는 994년 요와 고려가 맺은 협정에서 보주를 고려의 영토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곳에 각장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¹⁶²⁾ 왜냐하면 고려의 입장에서 그 동안 영토 분쟁이 되어 왔던 보주에 요의 각

150) 고려와 요 사이에 주고받았던 무역품의 개별적인 설명은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이정희, 1997, 〈高麗前期 對遼貿易〉《지역과 역사》4: 2000, 《고려시대 세계의 연구》, 국학자료원, 300~318쪽.

朴漢男, 1996, 〈12세기 麗金貿易에 대한 검토〉《大東文化研究》31.

151) 《高麗史》권20 〈世家〉 명종 15년 춘정월 辛丑.

152) 이정희, 〈앞의 글〉, 313~315쪽.

153) 《高麗史》권8 〈世家〉 문종 17년 3월.

154) 《高麗史》권11 〈世家〉 숙종 4년 하4월 정해.

155) 《高麗史》권12 〈世家〉 예종 2년 춘정월 경인.

156) 김영미, 2002, 〈11세기 후반~12세기 초 고려·요 외교관계와 불경교류〉《역사와 현실》43, 58~59쪽.

157) 고려시대 각장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이미지, 2003, 〈高麗 宣宗代 樵場 문제와 對遼 관계〉《韓國史學報》14, 78~84쪽.

158) 《遼史》권60, 〈食貨志〉 下 統和 23년.

159) 丸龜金作, 1937, 〈高麗と契丹・女眞との貿易關係〉《歷史學研究》5-2, 64~65쪽.

160) 《遼史》권38, 〈地理志〉 2 東京道 保州 宣義軍.

161) 이미지, 〈앞의 글〉, 96~97쪽.

162) 《高麗史》권10 〈世家〉 선종 5년 9월.

장이 서고 그곳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요의 영토임을 승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¹⁶³⁾ 이러한 이유에서 고려는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마침내 1088년에 요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 각장의 설치를 포기하겠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해옴으로써¹⁶⁴⁾ 각장을 둘러싼 외교 분쟁은 종결되었다.

163) 이미지, 〈앞의 글〉, 92~94쪽.

164) 《高麗史》 권10 〈世家〉 선종 5년 11월.

5. 금과의 무역

1) 외교무역

대금무역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요무역에서와 같이 외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고려에서 금에 가는 사신으로는 방물을 바치는 진봉사(進奉使), 천수절 및 만수절 등 금황제의 생일에 절일사, 동지와 신년하례에 하정사, 고려왕의 생일에 사신을 보낸 데 대한 사례로 하생일사, 3년에 한 번씩 보내는 횡선사에 대한 답사로 사횡선사가 있었으며, 비정기적인 사절로는 사책봉사·고주사·사선유사(謝宣諭使: 謝宣慶使)·하등극사·칙제사(勅祭使: 國喪의 조문) 등이 있었다. 반대로 금에서 고려에 보내는 사신으로는 고려왕생일사·횡선사와 의전문제나 국내 정세를 알리기 위한 선유사(宣諭使: 선경사), 고려왕을 책봉하기 위해 오는 책봉사 등이 길일을 택하여 고려에 왔다.

홍사와 관련되어 고려에 오는 금의 사신은 제전사(祭奠使: 칙제사)·조위사(弔慰使: 慰問使)·기복사(起復使)·낙기복사(落起復使)

등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례로 고려에서는 사직제사(謝勅祭使)·사기복사(謝起復使)·사낙기복사(使落起復使) 등이 파견되었으며, 금에 흉사가 발생하면 봉위사(奉慰使)·제전사(祭奠使)·회장사(會喪使)·하등극사(賀登極使) 등의 사절이 가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고려가 금에 파견한 사신의 종류는 요의 그것에 비해 적었으나 정기 사행을 중심으로 횡수는 오히려 더 많아졌는데,¹⁶⁵⁾ 그만큼 양국 간의 조공과 회사를 통한 물품 교류 기회와 양이 더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1199년(신종 2) 4월에 고려에 오는 책봉 사절단의 규모는 정사·부사와 더불어 상절(上節) 18명·산상절(散上節) 14명·중절(中節) 27명·하절 100명이었고, 수레 21대, 말 14필, 강담부(綱擔夫) 100명 등 총 261명으로¹⁶⁶⁾ 요의 두 배가 되는 규모였다. 금에서 온 수레 21대와 말 14필, 강담부 100명이라는 것을 통해 그들이 적지 않은 물품을 고려에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고려에서도 금황제의 하사품에 답례를 해야 하고, 총 261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절단에게 선물의 종류와 양은 다르겠지만 선물을 해야 했다는 점에서 고려측의 재정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고려가 금보다 많은 지출을 했으리라 여겨지지 않는다. 금과 고려와의 관계 속에서 사신 왕래 횡수의 증가와 왕래 사절단의 규모가 요에 비해 커졌다는 것은 그에 비례해서 무역의 규모도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제 양국 간에 외교무역을 통해 오고간 물품은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해보자. 시기적으로 후대인 금의 경우에 오히려 구체적인 자료가 적어 실체를 알기가 더욱 어렵다. 고려 국왕의 책봉에 따른 복식과 의물

을 준 사례로 1142년에는 구류관(九旒冠)·구장복(九章服)·옥규(玉珪)·금인(金印)·옥책(玉冊)·상로(象輅)·말·의대(衣櫛)·필단(匹段)·기용(器用), 안비마(鞍轡馬)·산마(散馬) 등이 있었다.¹⁶⁷⁾ 1172년에는 구류관·구장복·옥규·옥책·금인·타뉴상로(馳紐象輅)·말·의복·세의착(細衣著)·세궁(細弓)·주흡대전(周翕大箭)·안비마·산마 등이었고,¹⁶⁸⁾ 책봉과 별도로 옥대를 바친 경우도 있었다.¹⁶⁹⁾ 이 사례를 보건대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요와 비슷한 것들이었는데, 고려 국왕을 책봉한 뒤에는 그 지위에 걸맞는 격식에 맞추어 물품을 보내는 것이 상례였던 것 같다.

그 밖에 금의 회사품으로는 의대·서(犀)·견(絹)·필단 등이 있었고, 양 2,000두를 보낸 경우도 있었다. 횡선사를 통해 전해지는 양은 거란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사신단이 고려에 오면서 함께 양 2,000두를 끌고 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 고려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 만큼 그 재화적 가치도 매우 컸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반해 고려에서 금에 보내진 것으로는 1130년(인종 8) 고주사의 예물이었던 어의·의대·은기·차 등이 있고, 그밖에 청자지(靑磁紙)도 확인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물품의 내용과 양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송 또는 요의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하고 있는 형편이다.¹⁷⁰⁾

165) 朴漢男, 1993, 〈使臣往來를 통해본 對金外交政策〉《高麗의 對金外交政策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20~154쪽.

166) 《高麗史》 권21, 신종 2년 4월 을유.

167) 《高麗史》 권17 〈世家〉 인종 20년 5월 경술.

168) 《高麗史》 권21 〈世家〉 명종 2년 5월 임신.

169) 《高麗史》 권19 〈世家〉 명종 6년 11월 임자.

170) 朴漢男, 1996, 〈12세기 麗金貿易에 대한 검토〉《大東文化研究》31, 100~108쪽.

2) 사신 일행의 무역

금과의 무역에서 주목되는 것이 사신들의 사적인 무역이다. 사신은 국가의 명을 받아 외국에 파견된 자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책임자를 선발하였다. 송에 파견된 사신을 예로 들면, 학식과 인물, 청렴도 등의 기준에 맞는 인물들이 임명되었다.¹⁷¹⁾

사신으로 뽑혀 외국에 가는 것은 관인들에게 자랑스런 일이고 때로는 대국의 벼슬까지 받는 영예를 누릴 수 있겠지만,¹⁷²⁾ 사행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먼저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경을 출발하여 송·요·금의 수도까지 왕복하는 것은 많은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기후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송에 파견되었던 사신이 이용했던 바닷길은 풍랑을 만나 좌초될 위험이 상존하였다.¹⁷³⁾ 그리고 육로를 이용했던 요·금의 사행도 말을 타고 여러 일행과 함께 수십 일을 가야 하는 고된 여정이었다.

게다가 사행이 안전한 귀국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요의 2차 침입이 있던 1010년에 요에 사신으로 갔던 진적(陳頤)·이예균(李禮均)·윤여(尹餘)·왕좌섬(王佐暹) 등은 1014년까지 귀국하지 못하고 억류되었다.¹⁷⁴⁾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을 안고서 국가를 위해

외국으로 가는 사신에게 국가에서 대가를 주어야만 했다.¹⁷⁵⁾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국가에서는 사행에 참여하는 정사·부사 등의 사신과 그 일행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급부는 없었다. 대신 사신 및 그 일행들이 고려의 물품을 가져가서 사행지역 상인과 무역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주었던 것 같다.¹⁷⁶⁾

“사명(使命)을 받들고 금에 가는 자가 무역의 이익을 노려 토산물을 많이 가져가니, 운반하는 폐단으로 역리(驛吏)가 이를 괴로워하므로 개인적인 물품의 휴대에 일정한 액수만을 두고 그것을 위반하는 자의 관직을 빼앗도록 하자.”는 명종대 재추의 건의에 왕은 허락하였으나 곧 예전대로 되돌아갔다고 한다.¹⁷⁷⁾ 이 기사에서 언급된 폐단은 많이 가져가는 것이지 가져가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으며, 휴대품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마저도 다시 폐지되고 있다. 그리고 숙종대 소태보가 군사들에게 정찰하도록 하고 무역의 이익을 얻게 하자는 것 역시 사신 및 수행원이 각자 무역할 것을 가져가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보상을 하자는 것이다.

요와 고려를 오간 사신 사이에도 개인적인 물품의 하사 또는 사적인 교역이 있었다. 요의 동경회례사(東京回禮使) 고수(高遂)가 사적으로 능라(陵羅)와 채단(彩緞)을 매우 많이 바쳤고, 고려왕으로부터 술과 음식 및 의대를 하사받았다.¹⁷⁸⁾ 한편 요의 황제가 고려의 사신에게 준 것

171) 朴龍雲, 1996, 〈高麗·宋 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韓國學報》82: 〈高麗社會의 여러 歷史像〉, 신서원, 168~184쪽.

172) 예를 들어 송에 사신으로 갔던 한언공은 容儀가 節度에 맞다 하여 金紫光祿大夫·檢校兵部尚書·兼御史大夫를 제수받았다(《高麗史》 권93 韓彦恭傳).

173) 송에 가던 柳洪 등은 풍랑을 만나 배가 전복될 지경에 이르게 되어 가져가던 많은 공물을 잃게 되었으나 황제가 특별히 용서해줄 것을 고려 국왕에게 청하고 있다(《高麗史》 권9 〈世家〉 문종 33년 추7월 辛未). 그리고 1133년에 韓惟忠과 李之氏도 洪州 해상에서 좌초될 뻔하였고(《高麗史》 권16 〈世家〉 인종 11년 2월 을사), 서경도 배로 돌아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 위기에 처했다가, 간신히 송에 도착하였다(《高麗圖經》39, 海道).

174) 《高麗史》 권4 〈世家〉 현종 5년 6월 경신.

175) 서경은 바닷길이 험난하지 않다면 조정에 돌아와 후한 상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高麗圖經》39, 海道). 그 뜻을 뒤집어보면 그 어려움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176) 송에 간 고려의 사신도 공물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뒤에는 使館 안에서 상품을 진열하여 무역하였다(《東坡集》 권34, 奏議 〈論高麗買序利害劄子〉). 또한 고려에서도 송의 사신이 오면 특별히 市廛이 열렸음을 전하고 있다(《高麗圖經》 권3, 貿易).

177) 《高麗史》 권 20 〈世家〉 명종 13년 8월.

178) 《高麗史》 권10 〈世家〉 현종 원년 5월 계축.



여진문자명동경

은 《거란국지》에 그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다. 사신에게는 금 도은대 2조, 의 2습, 금기(錦綺) 30필, 색견 100필, 산마 5필, 궁전기장 2부와 술과 과일을 주었다. 그와 더불어 고위사절의 종인(從人)에게는 백은대(白銀帶) 1조, 의 1습, 견 20필, 마 1필, 자릉대삼(紫綾大衫) 1령을,

하위 사절의 종인에게는 의 1습, 견 10필, 자릉대삼 1령을 주었다.¹⁷⁹⁾

선종 때 중서시랑평장사 소태보(邵台輔)는 “요에 들어가는 사신으로 하여금 (북방 변경의 성에서 고생하는 장사들 가운데) 장건(壯健)한 자를 가려 겸종(謙從)을 삼아 인하여 거란 강역의 사세를 정찰케 하는 한편 (그 대가로) 호시의 이가 있으면 사람마다 반드시 다투어 하고자 할 것입니다.”라고 건의하였다. 사신뿐만 아니라 그들을 수행하고 호위하는 자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물품을 가져가서 거란의 물품과 교역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주장이다. 국가에서 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무역을 통해 그 보상을 찾으라는 것이다.

고려의 사행무역은 꽤 활발하였다. 사신이나 수행원으로 외국에 가게 되면 그들의 지위에 따라 황제로부터 적지 않은 하사품을 받게 된다.¹⁸⁰⁾ 이것은 어려운 여정을 거쳐 온 사신을 위로하며 치하하는 의미

로 황제나 그 당시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어서 때론 아주 적을 수도 있었다.

이에 반해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들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정사와 부사는 국가에서 보내는 공물이나 납폐물 이외에 자신들이 준비한 개인적인 헌상이 있었으며, 그것은 송과 요의 사신 접견 의례에 포함된 공식적인 행사였다. 대표적으로 1132년에 송에 갔던 최유청은 국가에서 보낸 금 100냥, 은 1000냥, 능라 200필, 인삼 500근 이외에 개인적으로 바친 것이 그 1/3이 될 정도였으며 황제로부터 금대를 받았다고 한다.¹⁸¹⁾

금에 파견된 사신도 이와 같은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은 보답을 해야 하는 금측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1165년에 금의 세종(世宗)이 고려 사신이 개인적으로 예물을 바치는 것을 상례로 삼은 것은 송이나 하(夏)의 사신들에게 없는 전례(典禮)라 하여 폐지하였던¹⁸²⁾ 것이라 생각된다. 1165년 이전 고려의 사신이 금 황제에게 많은 선물을 하였음이 확인되며, 그것은 금과 다른 나라 사이에는 없으며 오직 고려와의 관계 속에서만 있었다고 한다. 최유청의 사례를 보면 개인적인 헌납은 송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었음이 확인되며, 송에서도 고려 국왕에게 주는 것 이외에도 고려의 사신을 접대하는데 수만 냥이 든다고 하였는데,¹⁸³⁾ 그 수만 냥에는 사신 및 그 일행에 대한 특사품이 포함되리라 여겨진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송유인이)참지정사로 올라갔다. 구례에 재상이 봉사(奉使)하여 금에

179) 《契丹國誌》(葉隆禮) 권21, 外國 進貢禮物.

180) 거란이 고려 사신들에게 준 선물이 비교적 자세히 나타나 있다. 사신에게는 금도은대 2조, 의 2습, 금기(錦綺) 30필, 색견 100필, 산마 5필, 궁전기장 2부와 술, 고위사절의 종인(從人)에게는 백은대(白銀帶) 1조, 의 1습, 견 20필, 마 1필, 자릉대삼(紫綾大衫) 1령을, 하위 사절의 종인에게는 의 1습, 견 10필, 자릉대삼 1령을 각각 주었다(《契丹國誌》(葉隆禮) 권21, 外國 進貢禮物).

181) 《宋史》 권487 高麗傳 紹興 2년 윤4월.

182) 《金史》 권38, 《禮志》 11 外國使人見儀.

183) 《宋史》 권487 高麗傳.

가면 그 종자(從者)는 정한 액수가 있는지라 상업의 이익을 바라는 자는 사신에게 은 여러 근을 뇌물 준 뒤에야 따라가게 되었다. 내시낭중(內侍郎中) 최정(崔貞)이 생일회사사(生日回謝使)가 되매 송유인이 한 종을 데리고 갈 것을 부탁하였으나 때에 최정이 재화로써 얻은 자가 이미 수가 많으므로 능히 보충하지 못하였다. 종이 주인의 세력을 믿고 드디어 갔으나 금나라 사람이 검열하고 이를 돌려보냈으므로 최정이 돌아온 뒤 연좌하여 면직되었다.¹⁸⁴⁾

이 기사에서 언급되었듯이 종자가 되기 위해 은 여러 근을 썼다는 것은 그 만큼 실제 종자가 되었을 때는 훨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종자가 이렇진대, 정식 사절은 그 보다 큰 이익의 실현이 예상된다. 또한 사신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종자를 정할 권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송·요·금 어느 나라이든지 사신으로 가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국가에서는 개인적인 물품의 휴대와 교역을 허용하므로 해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였던 것도 사실이었다. 왕실이나 관인층 모두에게 사신의 왕래는 이득을 주는 사업이었다는데 공감감이 있었던 것 같다. 그 결과 요가 있었음에도 송과 다시 통교하고, 요에 이어 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명목의 잦은 사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재정의 소모와 백성들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여 사신의 파견 횟수를 줄이자는 건의가 없이, 그대로 수백 년간 유지되었던 것은 실제 사신으로 가는 관인층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었기 때문이었다.

184) 《高麗史》 권128 鄭仲夫傳附 宋有仁

3) 각장과 밀무역

요에서 여러 차례 고려와의 국경에 각장을 설치하고 무역을 하려하려 했으나 고려측에서 응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고려와 금과의 사이에는 각장이 설치되고 실제 교역이 이루어졌다. 이후 각장에 의한 무역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12세기 초 금의 선무사(宣撫使) 포선만노(蒲鮮萬奴)가 요동에서 반란을 일으켜 대진(大眞)을 건국하자, 이로 인해 쌀이 부족해진 금에서는 고려에 두 차례 첩을 보내 쌀을 팔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려는 변방의 관리로 하여금 거절하게 하였다.

이에 1215년(고종 3)부터 금나라 사람들이 병란과 물자 고갈로 인하여 다투어 진보(珍寶)를 가지고 의주·정주(靜州)의 관외(關外)에 와서 미곡을 매매하였다. 이때 은 1정(錠)에 쌀 4-5석을 바꾸었으므로 상인들이 다투어 많은 이익을 바라고, 비록 국가—고려—에서 비록 엄한 형벌을 하고 물화를 물수하였음에도, 탐욕하고 부정하는 것을 꺼리지 않아 몰래 매매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다.¹⁸⁵⁾

내용을 보건대 고려가 금의 미곡 매매 요청에 대해 응하지 않자, 의주와 정주의 관 밖에서 쌀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결국 이때는 각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려의 매매 금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려 영토 바로 밖에서 미곡의 호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고려의 무역에 대한 입장도 예전 요 때와 같이 금지하는 것이었다. 압록강 이북 지역이 포선만노의 반란으로 전란의 와중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있는 듯한데, 각장의 무역이 중단되어 있었던 것만은

185) 《高麗史》 권22 〈世家〉 고종 3년 7월 병술.

분명하다. 그 뒤 1218년 금의 강력한 요구로¹⁸⁶⁾ 각장이 재개되었다.¹⁸⁷⁾

그런데 1224년에 포선만노가 편지를 보내 본국—동진—은 청주(靑州)에 귀국은 정주(定州)에 각각 각장을 두어 이전대로 매매할 것(依前賣買)을 요청하였다.¹⁸⁸⁾ 이전대로 매매하자는 것은 얼마 전까지 고려와 금 양국에 설치했던 각장의 예에 준거하여 운영하자는 뜻이므로 각장의 교역이 일시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제의로 다시 설치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편 이 사료에서 상인들이 엄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익을 노려 몰래 금과의 무역을 하고 있다는 데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밀무역도 있었다. 그러한 예로서 1101년(숙종 6) 정주장(定州長)의 금남(今男)이 관고의 철갑(鐵甲) 4부(部)를 훔쳐서 동여진에게 팔았다가 사실이 발각되어 처형된 바가 있었다.¹⁸⁹⁾ 이처럼 국경지역 가까운 곳에서는 국가의 감시를 피해 주변 국가나 민족들과의 밀무역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사례는 발각되어 처벌되더라도 금남과 같이 관고의 물건을 훔친 경우가 아니라면 보고되지 않고, 따라서 역사적 기록으로도 남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186) 《金史》 권15, 〈本紀〉 15, 宣宗 興定 2년 4월 계축.

187) 朴漢男, 〈앞의 글〉, 115쪽.

188) 《高麗史》 권22 〈世家〉 고종 11년 정월 무신.

189) 《高麗史》 권11 〈世家〉 숙종 6년 6월 신축.

6. 원과의 무역

1) 외교무역

(1) 원에 전해진 물품

고려가 종주국인 원에 대하여 제후국으로서의 의무인 조공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러므로 고려의 특산품인 방물이 원 황제에게 헌상되었는데, 그 종류와 물품의 양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아무래도 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 이전 송·요·금에 비할 바 없이 컸기 때문에 고려에서 조공을 보낼 때 훨씬 많은 정성을 들여 준비했다. 그에 따라 종류도 훨씬 다양해지고 양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물품들은 다음과 같다.¹⁹⁰⁾

190) 공물의 배열은 가능하면 연대순으로 하되, 두 번 이상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였다.

추주포(麤紬布),¹⁹¹⁾ 세포(細布),¹⁹²⁾ 금은(金銀) · 질 좋은 구슬(好珠子) · 수달피(水獺皮) · 아남(鵝鵲) 및 좋은 의복(好衣服),¹⁹³⁾ 황금 · 백금 · 유의(繻衣),¹⁹⁴⁾ 나견(羅絹) · 능주(綾紬) · 금은주기(金銀酒器) · 화침(畫簪) · 화선(畫扇),¹⁹⁵⁾ 금종(金鍾) · 금우(金盃) · 백은종(白銀鍾) · 은우(銀盃) · 진자라(眞紫羅),¹⁹⁶⁾ 황칠(黃漆),¹⁹⁷⁾ 호랑이 가죽,¹⁹⁸⁾ 화문대석(花文大席),¹⁹⁹⁾ 인삼,²⁰⁰⁾ 환도(環刀),²⁰¹⁾ 제주산 목의(木衣) · 포(脯) · 오소리 가죽 · 들고양이 가죽 · 누런 고양이 가죽[黃猫皮] · 노루 가죽 · 말안장,²⁰²⁾ 피화(皮貨) · 저포(苧布),²⁰³⁾ 금화옹기(金畫甕器) · 탐라 쇠고기,²⁰⁴⁾ 소유(酥油: 양과 소의 젖으로 만든 油),²⁰⁵⁾ 화불(畫佛),²⁰⁶⁾ 세저포(細苧布),²⁰⁷⁾ 직문저포(織紋苧布),²⁰⁸⁾ 용석(龍席) · 죽점(竹簾),²⁰⁹⁾ 웅고피(熊羔皮)²¹⁰⁾

종류별로 분류하면 모시 · 비단 등의 옷감류, 금종 · 은우 등의 금속

공예품, 금화옹기 등 도자기류, 수달피 등의 가죽류, 화문석 등의 가내 수공업품 등과 더불어 쇠고기와 소유 등 축산가공품이 있었다. 옷감 · 금속공예품 등은 그 이전과 같지만, 육류 및 유제품과 동물 가죽 등 몽고인들의 식성 및 옷 입는 습성과 관련되어 추가된 것이었다.²¹¹⁾

그 밖에 요(鷄),²¹²⁾ 웅(鷹),²¹³⁾ 전견(敗犬),²¹⁴⁾ 꿩,²¹⁵⁾ 말²¹⁶⁾ 등도 있었다. 이와 같은 동물류는 송 · 요 · 금에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말은 몽고 군사 전술상 필요한 것이었으며, 그 나머지는 상류층의 사냥 풍습과 관련되어, 그들의 수요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상은 원나라 또는 황제에게 바친 것이었지만, 별도로 황태후에게는 해채(海菜) · 건어(乾魚) · 건포(乾脯)를,²¹⁷⁾ 황태자에게는 금선(金鑊) · 주종(酒鐘) · 선(鑊) · 진자라(眞紫羅) · 대모초자(玳瑁鞘子)²¹⁸⁾ 등이 전해진 것도 확인된다. 그리고 고려를 찾은 사신들에게도 선물이 제공되었는데, 1353년(공민왕 2) 원의 사신을 전송하면서 구례에 따라 재추(宰樞)가 백은(白銀) 2정, 저마포(苧麻布) 각 9필, 능(綾) 3필을 주었으나 받지 않았다고 한다.²¹⁹⁾ 원의 사신 일행을 보낼 때는 관례적으로 전별의 뜻을 담아 물품을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물품이 고려를 침입한 몽고군의 지휘관들에

191) 《高麗史》권22 〈世家〉 고종 8년 8월 갑자.
192) 《高麗史》권22 〈世家〉 고종 11년 춘정월 무신.
193) 《高麗史》권23 〈世家〉 고종 18년 12월 갑술.
194) 《高麗史》권23 〈世家〉 고종 18년 12월 경진.
195) 《高麗史》권23 〈世家〉 고종 19년 하4월 임술.
196) 《高麗史》권26 〈世家〉 원종 5년(1264) 5월 기축.
197) 《高麗史》권28 〈世家〉 충렬왕 2년 11월 계축.
198) 《高麗史》권28 〈世家〉 충렬왕 3년 6월 경신.
199) 《高麗史》권29 〈世家〉 충렬왕 5년 3월 갑인.
200) 《高麗史》권29 〈世家〉 충렬왕 5년 동10월 무술.
201) 《高麗史》권29 〈世家〉 충렬왕 6년 2월 기묘.
202) 《高麗史》권31 〈世家〉 충렬왕 21년 윤4월 기미.
203) 《高麗史》권31 〈世家〉 충렬왕 22년 5월 경오.
204) 《高麗史》권31 〈世家〉 충렬왕 23년 춘정월 임오.
205) 《高麗史》권31 〈世家〉 충렬왕 23년 11월 무인.
206) 《高麗史》권32 〈世家〉 충선왕 2년 12월 갑인.
207) 《高麗史》권34 〈世家〉 충숙왕 5년 추7월 을해.
208) 《高麗史》권35 〈世家〉 충숙왕 9년 9월 을묘.
209) 《高麗史》권37 〈世家〉 충정왕 원년 3월 갑진.
210) 《高麗史》권38 〈世家〉 공민왕 2년 춘정월 무자.

211) 金渭顯, 1990, 〈麗元間の 物貨交流表〉 《人文科學研究論叢》, 명지대.
張東翼, 1994, 《高麗後期外交史研究》, 一潮閣, 136쪽.
張東翼, 1994, 〈여 · 원 관계의 전개〉 《한국사》20, 국편위, 301~302쪽.
金東哲, 1996, 〈대외무역〉 《한국사》19, 국편위, 395~396쪽.
212) 《高麗史》권25 〈世家〉 원종 4년 5월 임인.
213) 《高麗史》권28 〈世家〉 충렬왕 원년 6월 임인.
214) 《高麗史》권29 〈世家〉 충렬왕 8년 하4월.
215) 《高麗史》권31 〈世家〉 충렬왕 23년 춘정월 임오.
216) 《高麗史》권31 〈世家〉 충렬왕 22년 5월 갑오.
217) 《高麗史》권32 〈世家〉 충선왕 2년 12월 갑인.
218) 《高麗史》권34 〈世家〉 충선왕 3년 2월 정미.
219) 《高麗史》권38 〈世家〉 공민왕 2년 추7월 병술.

게 고려 국왕의 선물로써 전달되었다. 그 물품으로는 만루봉개주자(滿
鏤鳳蓋酒子)·대잔(臺盞), 세저포(細苧布)·성마(騁馬: 붉은색 말)·은
도금장안교자(銀鍍金粧鞍橋子)·만수첩(滿繡韉),²²⁰⁾ 황금·금주기(金酒
器)·백은·은주식기(銀酒食器)·은병(銀瓶)·사라금수의(紗羅錦繡
衣)·자사오자(紫紗褌子)·은도금요대(銀渡金腰帶)·주포유의(紬布襦
衣)·달피·금식안자구마(金飾鞍子具馬)·산마(散馬)·세저포(細苧
布)·능사(綾紗),²²¹⁾ 대소잔반(大小盞盤)·의주(衣紬)·저포(紵布),²²²⁾
은·가포(加布)·추포(麤布)·마안(馬鞍)·마영(馬纓),²²³⁾ 금은기명(金
銀器皿)·필단(匹段)·화선(畫扇)·화침(畫簪),²²⁴⁾ 피폐(皮幣),²²⁵⁾ 나주
(羅紬)·입대(笠帶), 은준(銀樽)·은항(銀缸)·주과(酒果)²²⁶⁾ 등이 있었
다. 몽고의 침략을 그치기를 바라며 보낸 것으로 그 물품들이 황제에
게 전해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귀중품을 많이 전달한
것은 몽고 장수의 압박이 강했을 뿐 아니라 하루속히 침략군이 물러나
고려에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절실함 때문이었다.

원과의 외교는 원의 일방적 지배성이 강한 관계였기 때문에²²⁷⁾ 무역
도 형식적 의례에 불과했던 그 이전의 조공무역과 달리 각종 규제가
많았고, 그들의 요구를 채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1259년(고종 46) 태자가 몽고에 입조하면서 300여 필의 말에 국신(國
驢)을 싣고 갔으며, 그 비용은 문무 4품 이상이 은을 각각 1근씩 내고 5

품 이하가 포(布)를 차등 있게 내어 충당하게 하였다고 한다.²²⁸⁾ 고려에
서 싣고 가는 양이 매우 많았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으로 그 비용을 충
당하지 못해 관인들에게 과렴(科斂)을 거두기까지 이르렀다. 예전의
조공무역이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있었다면, 원에서는 그 반대였
다. 왜냐하면 고려에서 황제에 대한 충성을 담아 성의껏 조공물을 마련
하여 바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분량 이상을 만족시켜야 했기 때
문이었다. 이것이 외교무역사적인 측면에서 전기와 가장 변화된 부분
의 하나였다.

(2) 고려에 전해진 원의 물품

송·요·금 등과의 외교를 통한 중국 물품의 유입은 비교적 단순하
여 사신이 왕래하며 전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원에서 고려에
전해지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물론 양국 간의 외교 과정에서
황제가 고려의 국왕 및 왕비에게 하사하는 것은 전과 같아서 양,²²⁹⁾ 금
면주사(金綿走絲)·색견(色絹)·말·궁시(弓矢),²³⁰⁾ 중금(重錦),²³¹⁾ 저울
과 저울추,²³²⁾ 골(鶻),²³³⁾ 해동청(海東靑),²³⁴⁾ 만자해아(蠻子海牙),²³⁵⁾ 약물
(藥物),²³⁶⁾ 진주로 장식한 옷(眞珠衣),²³⁷⁾ 왕의 옥대(玉帶)와 왕비 금포(金

220) 《高麗史》 권23 〈世家〉 고종 18년 12월 정축.
221) 《高麗史》 권23 〈世家〉 고종 18년 12월 경진.
222) 《高麗史》 권23 〈世家〉 고종 18년 12월 을묘.
223) 《高麗史》 권23 〈世家〉 고종 18년 12월 정묘.
224) 《高麗史》 권23 〈世家〉 고종 19년 하4월 임술.
225) 《高麗史》 권23 〈世家〉 고종 29년 동12월 경오.
226) 《高麗史》 권24 〈世家〉 고종 46년 6월 경진.
227) 全海宗, 1970,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50쪽.

228) 《高麗史》 권24 〈世家〉 고종 46년 하4월 갑오.
229) 《高麗史》 권25 〈世家〉 원종 4년 8월 갑자.
230) 《高麗史》 권26 〈世家〉 원종 11년 2월 임오.
231) 《高麗史》 권28 〈世家〉 충렬왕 2년 추7월 정유.
232) 《高麗史》 권28 〈世家〉 충렬왕 2년 추7월 계축.
233) 《高麗史》 권28 〈世家〉 충렬왕 3년 동10월 을유.
234) 《高麗史》 권28 〈世家〉 충렬왕 4년 2월 경오.
235) 《高麗史》 권29 〈世家〉 충렬왕 6년 3월 무오.
236) 《高麗史》 권29 〈世家〉 충렬왕 8년 8월 병술.
237) 《高麗史》 권30 〈世家〉 충렬왕 15년 3월 경인.

袍),²³⁸⁾ 앵무,²³⁹⁾ 송나라 비각 소장 서적,²⁴⁰⁾ 화금자기(畵金磁器),²⁴¹⁾ 왕의(王衣),²⁴²⁾ 검,²⁴³⁾ 선온(宣醢: 술),²⁴⁴⁾ 부거(浮車),²⁴⁵⁾ 등을 찾을 수 있다.

복식류, 활과 화살, 수레 등은 원의 책봉을 받은 고려 국왕의 권위를 위한 것이며, 만자해아 등은 희귀품으로 황제의 특사품이었다고 생각된다. 양은 몽고의 유목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고, 금면주사·색견·중금 등의 옷감류는 고급스러운 것이었지만 재화의 성격이 있었다.

왕실에는 황제의 하사품 이외에 원 황실의 딸들이 고려 국왕과 혼인하면서 가져오는 물품도 있었다. 1309년(충선왕 복위 2) 충선왕비인 계국대장공주(薊國大長公主)는 은과 금기(錦綺: 비단)로 장식한 수레 2량에 50량의 수레가 뒤따라왔다. 그 전장(氈帳: 장막)은 크고 작은 것이 있었으며, 큰 것은 수레에 14장을 실을 만하였다. 거기에 적재해온 것은 김옹(金翁) 1개, 종(鍾) 2개, 대종자(大鍾子) 6개, 지리마종자(只里麻鍾子) 패란지종자(字欒只鍾子) 및 잔아(盞兒) 각 10개, 은찰사마(銀札思麻) 14개, 번병(番瓶) 2개, 대종자(大鍾子) 지리마종자(只里麻鍾子) 각 10개, 패란지종자(字欒只鍾子) 14개, 찰라잔아(察刺盞兒) 찰혼잔아(察渾盞兒) 각 6개, 관자(灌子) 2개, 저자로자(猪觜瀘子) 및 호로(胡蘆) 각 1총(摠), 금 40정 29냥, 은 68정 34냥이었다.²⁴⁶⁾

그 내용을 보건대 매우 화려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충렬왕비가 되어

고려에 왔던 제국대장공주나 그 이후의 여러 원의 황녀들도 이에 못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원나라 최고 수준의 복식을 하고 수레를 탔으며, 이들이 가져온 각종 기물(器物)도 당대 최고의 공예품이었다. 이들의 고려 생활은 고려의 왕실이나 상층 귀족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고려 국왕에 대한 원 황제의 하사품으로 현물이 아닌 원의 화폐를 준 것도 주목된다. 황제는 고려에 파견되는 사신에게 은폐(銀幣),²⁴⁷⁾ 저폐(楮幣),²⁴⁸⁾ 초(鈔)²⁴⁹⁾ 등을 보내 고려 국왕으로 하여금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게 하기도 하였다. 특히 원에서 초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한 번에 1만 정을 주는²⁵⁰⁾ 등 여러 차례 많은 액수의 초를 보낸 바 있다.

처음에 전함의 건조비 등으로 유입된 보초(寶鈔)는 단순한 군표(軍票)에 불과했으나 점점 원경제권에 통용되는 공통 화폐적인 성격이 많아졌다.²⁵¹⁾ 고려에서는 여전히 은병이나 포(布) 등 현물화폐가 주된 교환수단이었으나,²⁵²⁾ 고려가 원의 정치적 영향을 받고 동일 경제권 안에 들었던 데다가 은의 부족에 따라 은화의 주조가 어려워지면서 보초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²⁵³⁾ 고려에서 교환수단으로서 기능하였기 때문에 현물을 대신하여 하사한 것이었는데, 그 이전까지 없었던 황제의 하사품이었다.

한편 고려의 사신이나 공훈을 세운 자들에게 황제의 하사품이 전달되기도 하였다. 1269년(원종 10) 7월에 일본에 갔다가 왜인과 함께 돌

238) 《高麗史》권30〈世家〉충렬왕 15년 추7월 임오.

239) 《高麗史》권30〈世家〉충렬왕 19년 6월 기축.

240) 《高麗史》권34〈世家〉충숙왕 원년 추7월 갑인.

241) 《高麗史》권105 趙仁規傳.

242) 《高麗史》권34〈世家〉충숙왕 5년 11월 무진.

243) 《高麗史》권38〈世家〉공민왕 원년 하4월 정미.

244) 《高麗史》권35〈世家〉충숙왕 12년 12월 을미.

245) 《高麗史》권36〈世家〉충혜왕 후3년 3월 경진.

246) 《高麗史》권89 后妃 薊國大長公主.

247) 《高麗史》권31〈世家〉충렬왕 21년 하4월 무인.

248) 《高麗史》권32〈世家〉충렬왕 27년 3월 계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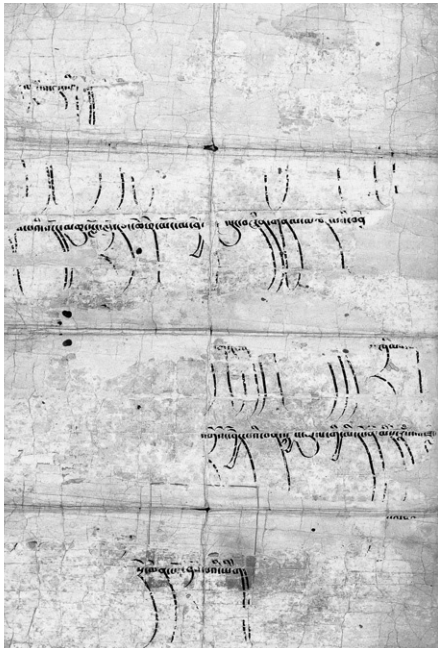
249) 《高麗史》권38〈世家〉공민왕 원년 8월 무오.

250) 《高麗史》권32〈世家〉충렬왕 27년 3월 계묘.

251) 李能植, 1949, 〈麗末鮮初의 貨幣制度〉《震檀學報》16, 154쪽.

252) 李康漢, 2001, 〈고려 후기 元寶鈔의 유입 및 유통실태〉《韓國史論》46.

253) 金東哲, 1996, 〈상업과 화폐〉《한국사》19, 국편위, 412쪽.



티베트 문법지

아와 황제를 알현한 신사전(申思佺) 등에게 필백(匹帛)을 주었다.²⁵⁴⁾ 1270년 홍규(洪奎)는 임유무(林惟務) 정권을 제거하는데 참여하고 이어 세자와 함께 원에 갔는데 황제가 금포(錦袍)·안마(鞍馬)를 하사하였다.²⁵⁵⁾ 1273년(원종 14)에 순안공(順安公) 종(琮)이 원에 가서 황제의 즉위를 축하하고 황제로부터 백금 500근과 저포 800필의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²⁵⁶⁾

1273년 7월에 황제의 명령을 받고 입조한 김방경에게 금안(金鞍)과 채복(綵服)과 금·은이 주어졌으며,²⁵⁷⁾ 1280년(충렬왕 6) 일본정벌에 참여하는 김방경 및 장사들에게 원의 활·화살·검(劍)·백우갑(白羽甲) 및 활·갑주(甲冑)·반오(絆褸: 군복)가 하사되었다.²⁵⁸⁾

또한 합단(哈丹)의 침입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운 김흔(金忻)·한희유(韓希愈) 등에게 황제가 궁시(弓矢), 안(鞍), 옥대(玉帶), 은 1정을 상으로 주었다.²⁵⁹⁾ 원 황제가 내린 물품은 당시 세계 최고 강국의 천자가

준 선물이므로 그것을 받은 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으며, 일본 정벌에 참여한 자들에게 내려진 선물은 군사들도 해당되었으므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였기 때문에 그만큼 문물교류에 미친 영향도 컸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원 황제의 특별한 하사를 받은 사례를 보면 무신정권을 붕괴시켜 개경환도를 실현시켰다든지, 삼별초의 항쟁을 평정하거나 합단의 침입을 물리쳤다든지 하는 일이었다. 주로 고려의 국내 문제를 해결한 것과 관련되므로 고려에서 포상을 해야 더 옳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황제가 그들을 치하하고 상을 준 것은 당시에 고려와 원이 정치·군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3) 원의 공물 요구

고려와 원과의 관계는 군사적인 침공과 뒤이은 지배·복속의 정치적인 연속을 주축으로 형성되었으므로 호혜적인 무역거래보다는 압제를 받은 고려의 희생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²⁶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려에 직접 공물의 품목과 양을 정하여 요구하는 것이었다. 요·금과 외교에서 고려가 방물을 바칠 때는 정성이 중요할 뿐 구체적으로 그 물품의 종류나 품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몽고는 그들이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고 그 품질을 문제 삼았다.

예를 들어 고려와 몽고가 외교를 시작한 직후인 1221년(고종 8) 8월에 몽고의 저고여(著古與) 등은 수달피 1만 령·세주(細絀) 3천 필·세저(細苧) 2천 필·면자(綿子) 1만 근·용단묵(龍團墨) 1천 정(丁)·필

254) 《高麗史》 권26 〈世家〉 원종 10년 추7월 갑자.

255) 《高麗史》 권106 洪奎傳.

256) 《高麗史》 권91 順安公琮傳.

257) 《高麗史》 권27 〈世家〉 원종 14년 추7월 을미.

258) 《高麗史》 권104 金方慶傳.

259) 《高麗史》 권104 金方慶傳附忻, 《高麗史》 권104 韓希愈傳.

260) 張東翼, 1994, 〈여·원관계의 전개〉 《한국사》20, 301쪽.

(筆) 2백 관(管) · 종이 10만 장 · 자초(紫草) 5근(觔), 홍화(紅花) · 남순(藍荀) · 주홍(朱紅) 각 50근, 자황(雌黃) · 광칠(光漆) · 동유(桐油) 각 10근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예전에 고려에서 보냈던 추주포(麤紬布)를 품안에서 꺼내 고려 국왕 앞에 내던졌다.²⁶¹⁾ 이처럼 국왕에 대한 외국 사신의 결례와 공물 요구를 경험하지 않았던 고려의 조정은 적지 않게 당황하여 그 대책을 논의했으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 침략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고종은 기뻐하지 않았다고 한다.²⁶²⁾

이런 요구는 군사적 침입을 배경으로 한 강제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고려와 중국 간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도록 하였다. 즉 중국의 여러 나라가 고려의 독립성을 인정하였으나, 외교상 형식적으로 군신 관계에 준하는 조공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정치 · 군사적으로 예측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제후국으로서의 조공으로 바꾸라는 것이 몽고의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몽고의 요구는 강제적인 것이었고 고려에게는 의무가 되었다.

몽고의 요구는 군사적 침입이 시작되면서 더욱 가중되었다. 1231년 12월에는 몽고에서 고려에 대해 100만 군인의 의복을 진상하고, 진품의 보라색 비단 1만 필, 수달피 2만 개, 관용마(官用馬) 중에서 1만 필의 대마(大馬)와 1만 필의 소마 및 왕손과 대관인(大官人)들의 자식들을 포함한 사내아이 1천 명, 계집아이 1천 명 등을 보내 황제에게 인증을 받도록 하라고 하였다.²⁶³⁾ 고려의 형편상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몽고는 고려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던 것 같다.

이때 고려 입장에서는 몽고가 그 요구를 철회해 주도록 설득하는 것

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그러므로 1253년 몽고가 금 · 은 및 수달피 · 저포 등을 요구하였을 때, 고려에서는 사신을 보내 금 · 은은 산출되지 않는 것이며, 수달피도 전쟁으로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몽고의 양해를 구하였다.²⁶⁴⁾

그런데 비슷한 일이 1271년(원종 12) 6월에도 일어났다. 고려사람 이추(李樞) 등이 원 황제에게 금칠(金漆) · 청등(靑藤) · 팔랑충(八郎虫) · 비목(樅木) · 노태목(奴台木) · 오매(烏梅) · 화리(華梨) · 등석(藤席) 등이 고려에서 생산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황제가 이 말을 믿고 필자적(必闕赤) 목구(墨狗) · 이추 등 7인을 보내와 고려에서 그 물품들을 구하여 보낼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금칠은 현재는 구하기 어려우므로 있는 것만 보내고, 비목 · 청등 · 팔랑충 등은 남해안에서 산출된다 하니 확인하겠으며, 노태목 · 해죽(海竹) · 동백(冬栢) · 죽점(竹簾)은 있는 대로 바치겠고, 아울러 오매 · 화리 · 등석은 원래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송의 상인으로부터 산 것이 약간 있으므로 이것을 모두 진봉(進奉)하겠다고 하였다.²⁶⁵⁾

여러 진귀한 물품을 바치라는 황제에 명령에 대해 고려에서는 보내지 못하는 사정을 말하고 노력을 다하여 구하는 바를 보내겠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의 대처는 이유야 어떻든 황제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이 또 다른 압력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고려에게는 큰 정치적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황제 또는 원의 특정 공물 요구는 강제성이 있었던 것이다.

원에서 직접 사신을 보내 특정 물품을 보내도록 요청하는 일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해당되는 물품들은 대목(大木),²⁶⁶⁾ 궁실재목,²⁶⁷⁾

261) 《高麗史》 권22 〈世家〉 고종 8년 8월 기미.

262) 《高麗史》 권22 〈世家〉 고종 8년 8월 정해.

263) 《高麗史》 권23 〈世家〉 고종 18년 12월 갑술.

264) 《高麗史》 권24 〈世家〉 고종 40년 11월 무술.

265) 《高麗史》 권27 〈世家〉 원종 12년 6월 을묘, 《高麗史》 권130 趙彝傳附 李樞.

화옹피(火熊皮),²⁶⁸⁾ 어상재향장목(御床材香樟木),²⁶⁹⁾ 금,²⁷⁰⁾ 화살·활촉,²⁷¹⁾ 쇠(鐵),²⁷²⁾ 진주,²⁷³⁾ 환도(環刀),²⁷⁴⁾ 전함 900소(艘),²⁷⁵⁾ 말,²⁷⁶⁾ 탐라 향장목(香樟木),²⁷⁷⁾ 조골(鵲鵲),²⁷⁸⁾ 은,²⁷⁹⁾ 청사(靑砂)로 된 옹(甕)·분(盆)·병(瓶),²⁸⁰⁾ 불경지(佛經紙),²⁸¹⁾ 피폐(皮幣),²⁸²⁾ 안장(鞍裝),²⁸³⁾ 문저포(紋苧布),²⁸⁴⁾ 옹고피(熊羔皮),²⁸⁵⁾ 창재(槍材),²⁸⁶⁾ 모피(毛皮)²⁸⁷⁾ 등이 있었다. 그 종류를 보면 무기류, 귀금속, 가죽류, 목재, 고급 종이, 자기류 등 고려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것들로서 원에서는 귀한 것들이었고 정식의 조공 품목에 해당되는 것들도 많았다.

원의 요구에 고려 정부와 백성들은 그것에 맞추기 위해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아야 했다. 특히 조윤통(曹允通)과 같은 부원배의 농간이 개

재되었을 때, 그 고통은 더 심하였다. 그는 황제의 명령을 받아 인삼을 채취하러 다니면서 조금 부패한 것이나 흠 땅에서 난 것이 아니거나 기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대신 은폐(銀幣)를 거두어서 개인적인 이익을 채우니 백성이 괴로워하였으므로 충렬왕은 사신을 보내 폐해를 전하고 고려에서 자진해서 보내게 하도록 호소하였다.²⁸⁸⁾

물론 1274년(원종 15)에 남송 양양부(襄陽府)의 신편(新編) 군인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원의 사신이 관견(官絹) 1,640단(段)을 가지고 왔고,²⁸⁹⁾ 1280년(충렬왕 6)에는 일본 정벌에 참여할 군사들을 위한 병량(兵糧)의 마련을 위해 원에서 견(絹) 2,000필을 가지고 와 쌀을 바꾸기도 하였다.²⁹⁰⁾ 공녀나 병량을 구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직접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1285년(충렬왕 11) 6월에 원에서 “법물(法物: 불교 용구)인 종경(鐘磬)과 동경(銅鏡), 고동병(古銅瓶), 솥(鼎)과 숙동기물(熟銅器物)을 제외한 그 남은 것으로 모든 동전과 생동기물(生銅器物)이 있을 것이니 황제의 명령의 도달로부터 100일 내에 모두 지방관에 납입하라.”고 명하였다가 곧 취소하기도 했다.²⁹¹⁾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원의 일방적인 수취에 비교해서 매우 드문 일이었다. 이처럼 원의 직접적인 수탈이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원과의 관계에서 조공은 황제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정성이며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원칙은 적용될 수 없었다. 고려의 원에 대한 조공은 반강제적인 의무였으며, 그것도 부족하면 직접 원하는 물품들을 수탈해 가는 대상이 고려였다.

266) 《高麗史》권27〈世家〉원종 13년 3월 경오.
267) 《高麗史》권27〈世家〉원종 13년 12월 임진.
268) 《高麗史》권27〈世家〉원종 14년 춘정월 임술.
269) 《高麗史》권27〈世家〉원종 14년 3월 임오.
270) 《高麗史》권27〈世家〉원종 14년 5월 기묘.
《高麗史》권28〈世家〉충렬왕 3년 12월.
271) 《高麗史》권28〈世家〉충렬왕 2년 춘정월 병자.
272) 《高麗史》권28〈世家〉충렬왕 2년 춘정월 기묘.
273) 《高麗史》권28〈世家〉충렬왕 2년 6월 임신.
274) 《高麗史》권28〈世家〉충렬왕 3년 하4월 정묘.
275) 《高麗史》권29〈世家〉충렬왕 5년 6월 신축.
276) 《高麗史》권29〈世家〉충렬왕 5년 동10월 기해.
277) 《高麗史》권29〈世家〉충렬왕 9년 춘정월 계해.
278) 《高麗史》권30〈世家〉충렬왕 12년 9월 신사.
279) 《高麗史》권30〈世家〉충렬왕 15년 2월 임술.
280) 《高麗史》권30〈世家〉충렬왕 15년 8월 무오.
281) 《高麗史》권35〈世家〉충숙왕 후7년 추7월 병진.
282) 《高麗史》권37〈世家〉충목왕 즉위년 5월 기유.
283) 《高麗史》권37〈世家〉충목왕 즉위년 8월 계미.
284) 《高麗史》권37〈世家〉충목왕 원년 5월 갑신.
285) 《高麗史》권37〈世家〉충목왕 원년 추7월 임진.
286) 《高麗史》권131 崔濡傳.
287) 《高麗史》권38〈世家〉공민왕 3년 5월 신사.

288) 《高麗史》권123 曹允通傳.
289) 《高麗史》권27〈世家〉원종 15년 3월 임인.
290) 《高麗史》권29〈世家〉충렬왕 6년 11월 기유.
291) 《高麗史》권30〈世家〉충렬왕 11년 6월 기유.

원에 조공을 바치고 고려를 책봉하는 사신이 왕래하고 그 과정에서 물품이 오고간 것은 분명하지만, 원에서 고려에 주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았다. 당시 고려는 원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으며 진상품에 대하여 원조정은 간혹 많은 물품을 하사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였다.²⁹²⁾ 따라서 요·금을 상대할 때와 같이 외교를 통해 왕실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는 어려웠다. 고려 전기와 후기를 비교하면 정치·사회적으로도 달라진 것이 많았지만, 외교와 무역사적 측면에서도 양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사신 일행의 무역

원에 대한 정치적인 종속성이 강화되고 국가 차원에서 외교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 감소되었지만, 사행무역이 많은 이익을 보장해 주었다는 것은 그 이전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당시에 사행무역의 실정은 원종대 원에 사신으로 갔던 주영량(朱英亮)의 뇌물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1265년(원종 4) 4월에 예빈경(禮賓卿) 주영량(朱英亮)과 낭장 정경보(鄭卿甫)가 원에 가서 표와 방물을 바치고²⁹³⁾ 8월에 귀국하였다.²⁹⁴⁾ 그런데 그해 12월에 주영량과 정경보가 17인에게 뇌물을 받고 사절단으로 참여시켜 원에 가서 무역을 하도록 하였다가 발각되었다. 이에 17인에게서 받은 은병 170구와 진사(眞絲) 7백 근을 몰수하고 두 사람 모두 섬에 유배하였으며 주영량에게는 은 9근을, 정경보에게는 7근을

각각 추징하였다고 한다.²⁹⁵⁾

이 기사를 보건대 정사나 부사가 되면 사절에 참여할 자를 선발하는 권한이 있었던 것은 송이나 금에 갈 때와 같았으며,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는 점도 유사하다. 왜냐하면 뇌물액이 17명으로 받은 뇌물을 평균하면 1인당 은병 1구와 진사 약 40근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뇌물을 바치고서라도 사절단에 끼고자 했던 것은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사건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사와 부사가 함께 처벌되고 부당한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도 이루어지지만, 실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건화되지 않고 지나가는 때가 더 많았을 것이다.

사신 일행의 활발한 무역은 충렬왕이 원에 갈 때 구성된 대규모 사절단에서 확인된다. 1284년(충렬왕 10) 왕과 왕비가 원에 갈 때는 1,200명의 사절과 은 630여 근, 저포 2,440필, 저폐 1,800정을 가져갔고,²⁹⁶⁾ 1296년에도 신하 233명과 검종(僉從) 590명, 말 990마리를 동반하였다.²⁹⁷⁾ 이때 수행원들 사이에서는 개인적인 무역을 하거나 상인과 결탁하여 무역을 하였다.²⁹⁸⁾ 때로는 원에서 돈을 빌려서 무역을 하기도 했던 것 같다. 1295년 윤4월에 원의 사신이 와서 “원 태종대부터 매매하는 사람들이 관전(官錢)을 대출하여 이전(利錢: 매매하여 남은 돈)으로 원본을 갚지 않고 서로 은닉하는 자가 많다. 내외 관원은 매매인을 찾아 잡아서 그 이전을 수취하여 수에 따라 천부사(泉府司)에 납부하게 하며, 만일 매매인의 은닉한 것을 보고 알리는 자가 있으면 상을 줄

292) 위은숙, 1997, 〈원 간섭기 對元貿易〉 《지역과 역사》4, 90-91쪽.

293) 《高麗史》 권25 〈世家〉 원종 4년 4월 갑인.

294) 《高麗史》 권25, 〈世家〉 원종 4년 8월 갑자.

295) 《高麗史》 권25, 〈世家〉 원종 4년 12월 임술.

296) 《高麗史》 권29, 충렬왕 10년 4월 경인.

297) 《高麗史》 권31, 〈世家〉 충렬왕 22년 9월 정해.

298) 안병우, 1993, 〈고려시대 수공업과 상업〉 《한국사》6, 한길사, 140쪽.

것이다.”라고 하였다.²⁹⁹⁾

이것은 고려의 사신들이 원에 가서 돈을 빌려 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치로써 사신 일행으로 참여한 자들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 가능한 많은 무역을 하기 위해 원의 관전까지 빌렸다가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신의 왕래에 부수되는 사행무역은 원에 가는 사신 일행에게도 매우 중요한 무역의 기회였음이 틀림없다.

2) 일반무역

(1) 대원무역의 기반

일반무역은 외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개인이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와 교역하는 것을 말한다. 고려와 원 사이의 무역이 비교적 활발하여 원의 상인이 고려에 와서 무역을 하는 사례도 많았지만, 고려인들도 원에 가서 무역하는 것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원의 수도 연경의 조운 집결지인 통주(通州) 관내의 완평현(宛平縣)에는 고려인 집단 거주지인 고려장(高麗莊)이 있었으며 이곳은 신라방(新羅坊)과 유사한 것으로 원에서 상업하던 고려인의 집단 거주지로 여겨진다.³⁰⁰⁾

고려와 원을 오가는 상인은 크게 육로를 이용하는 상인인 거상(車商)과 바다로 왕래하는 선상(船商)이 있었다.³⁰¹⁾ 그러므로 무역로는 육

로와 해로가 나뉘어지는데, 육로는 개경에서 북경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었다.³⁰²⁾ 해로는 북로와 남로가 있었다. 북로는 옹진반도에서 산둥반도의 등주로 서진하는 직선 항로와 예성항을 출발하여 서해안, 발해만, 중국 동북연안을 거쳐 등주에 도착하는 항로가 있었다. 남로는 개경에서 출발하여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다가 흑산도로 가서 거의 정서진하여 회하(淮河) 입구에 도착하고, 연안을 따라 봉래(蓬萊)를 지나 강남의 명주(明州: 영파)에 이르는 것이다.

소요 시일은 순풍을 타면 편도에 2~3일에 도착할 수 있었으나 위험 부담이 컸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품을 빨리 옮겨야 할 때는 해로를 이용했으나 간단한 화물이나 사람의 왕래는 육로를 택하였다.³⁰³⁾ 항로는 발해만을 경유하는 북로를 제외하고는 전기에 송으로 가던 항로와 같았다.

그런데 원의 황제가 고려와 원 사이에 왕래의 편의를 위해 해운을 두고 고려에서 운영하도록 제안하였으나, 정가신(鄭可臣)은 그것이 오히려 고려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할 것이라며 반대하였다.³⁰⁴⁾ 이 기사가 강남의 양곡을 운반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고려에서 바닷길로 원과 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서해 해상무역의 주도권은 송과의 무역과 같이 송상으로 불리던 원의 해상이 장악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해로를 이용하여 원과 무역하고 있었던 것은 원의 상세(商稅) 규정에서 확인된다. 원에서는 수입화물에 대

299) 《高麗史》권31 〈世家〉충렬왕 21년 閏4월 기미.

300) 張東翼, 〈앞의 책〉, 148쪽.

301) 《謹齋集》권1, 夢歎 夢貢多弊故云.

302) 高柄翊, 1970, 〈征東行省의 研究〉《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대출판부, 136쪽.

303) 陳高華, 1991, 〈元朝與高麗의 海上交通〉《震檀學報》71·72합.

張東翼, 〈앞의 책〉, 142~143쪽.

304) 《高麗史》권105 鄭可臣傳.

해 1/10~1/15의 추분(抽分: 市舶稅)과 동시에 1/30의 상세를 거두었고, 두 가지 세금을 완납해야 원에서 무역을 할 수 있었다. 1295~1296년 무렵에 충렬왕이 주시랑(周侍郎)을 보내 무역하려 하니 시박사에서 추분 3/10을 징수하려 하였는데, 강절행성우승(江浙行省右丞) 사요(史耀)는 고려 화물에 대해 시박사는 면제하고 상세만을 받도록 청하였다.³⁰⁵⁾ 이에 대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우대하려고 한 것을 볼 때 고려의 상선이 강남 지역에 많이 출입했다는 것과 관련되었다고 생각된다.³⁰⁶⁾ 그런데 충렬왕이 보낸 것이므로 원 황실과 인척 관계였던 점을 배려한 것일 수도 있다. 자주 오지 않는 지역에 대해 세금의 혜택을 주었다고 해석해야 옳은 것이 아닐까.

또한 고려에서 생산된 물품이 원과 무역되었다는 사실은 신안 해저에서 발견된 원의 무역선의 유물을 통해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원의 영파(寧波)를 출발하여 일본으로 향하던 이 배는 1323년에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며³⁰⁷⁾ 7점의 고려자기가 발굴되었는데, 고려의 우수한 도자기들이 상대적으로 기술이 낮았던 일본에 중계무역의 형태로 전해졌던 것이었다.³⁰⁸⁾ 그리고 비단 고려의 도자기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도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던 원을 거쳐 여러 나라로 전해졌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요컨대 원과의 사무역을 송과의 그것과 비교하면, 송에서 고려를 찾는 해상은 많았으나 원의 그것은 매우 적었으며, 그에 반해 고려에서 송에 갔던 배보다는 고려에서 원으로 갔던 배가 조금 늘어났다. 고려



신안선 복원 모형

와 송이 해로에 의존한 것은 요·금에 의해 육로가 차단되었던 데 비하여 고려와 원 사이에는 그런 장애가 없어 육로가 더 발달했기 때문이다.³⁰⁹⁾

(2) 무역품

다음으로 무역품을 검토해보자. 고려에서 원에 전해진 것으로는 차·화문석·먹·종이·그릇·모시·삼베·비단·송자·행인(杏仁)·말·인삼·복령(茯苓)·석유리(石溜璃)·웅장(熊掌) 등이 있었으며, 화문석과 소나무 잎을 태워 만든 가산묵(柯山墨), 등잔용 석유리, 종이, 모시 등이 인기가 있었다.³¹⁰⁾ 고려자기 역시 품질이 우수하여 일

305) 《牧庵集》(姚燧)《福建行省平章政事史公神道碑》.

306) 陳高華, 〈앞의 글〉, 355쪽.

307) 尹武炳, 1988, 〈木牌〉《新安海底遺物(종합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308) 鄭良謨, 1991, 〈新安海底遺物을 통해 본 14世紀 東아시아의 陶磁文化〉《震檀學報》71·72합, 388~392쪽.

309) 高柄翊, 1991, 〈麗代 東아시아의 海上通交〉《震檀學報》71·72합, 304~305쪽.

310) 陳高華, 1991, 〈앞의 글〉, 357~358쪽.

張東翼, 〈앞의 책〉, 148쪽.

金東哲, 〈앞의 글〉, 400쪽.

부가 원을 거쳐 일본에 수출되었다.³¹¹⁾ 그 가운데 모시·인삼·말은 3대 품목이라고 할 만큼 비중이 컸다.

고려의 모시 짜는 솜씨는 매우 우수하였는데, 충렬왕대 한 여승이 만든 흰 모시는 ‘매우 가늘고 섬세하여 매미의 날개와 같았으며 꽃무늬도 있었다’고 표현될 정도였다.³¹²⁾ 모시의 품질이 원에 비해 손색이 없었을 뿐 아니라 모시에 무늬를 새긴 문저포(紋苧布)는 원에서 생산되지 않는 극상품이었으므로 주요한 수출품이 되었다.³¹³⁾ 인삼은 중요한 약재임에도 중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되어 수입의 수요가 많았는데, 만주산보다는 고려산이 훨씬 약효가 뛰어났기 때문에 고려로부터 조공물에 포함되었고 이 시기에는 사무역에서도 거래되었다.³¹⁴⁾ 말은 원 간섭기를 거치면서 사육 기술이 발전하고 종자 개량이 진행되면서 좋은 말을 기르게 되어, 종전의 말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화하였다.³¹⁵⁾

도자기는 이 시기에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수출품이었다. 고려자기의 화려함은 조인규와 원 황제가 나눈 다음과 같은 일화로도 알 수 있다.

일찍이 조인규가 금으로 그린 자기(畵金磁器)를 바치자, 원 세조(世祖)가 묻기를 “금으로 그린 것은 그것을 굳게 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조인규는 “다만 채색으로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답하자, 세조가

다시 “그 금은 가히 다시 쓸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조인규는 “자기는 쉽게 파손되는 것이므로 금도 함께 훼손되는 것이니 어찌 다시 쓸 수 있겠습니까.”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세조는 그 대답을 잘하였다 하여 “이제부터는 자기에 금으로 그린 것은 바치지 말라.”고 명했다.³¹⁶⁾

이후 세조의 명령에 따라 사치스럽게 금을 사용하여 자기를 만든 것은 중지되었겠지만, 세조가 관심을 갖고 물어볼 만큼 훌륭하였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려자기의 우수성으로 원나라 사람에게 애호되어 상인들에 의해 송으로 수출되고 그 일부가 중계무역의 방식으로 일본에까지 전해졌다.³¹⁷⁾

수입된 것으로는 견직물 이외에 사주(絲綢)·서적·옥그릇·향료 등이 있었으며, 향료는 아라비아에서 수입된 것을 중계무역한 것이었다.³¹⁸⁾ 견직물은 고려에서도 많이 수출된 바 있으나 원의 것이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많이 유입되었으며, 대부분은 국내에서 소비되었고 그 일부는 일본과의 교역에 이용되었다.³¹⁹⁾

그 밖에 원과의 교역에 사용되었던 통역 참고서인 《노걸대(老乞大)》에 기록된 고려의 수입품에는 갓끈류, 바늘, 약재, 화장품과 화장용기, 빗과 장신구, 각종 칼과 생활용구, 놀이기구, 각종 장식용구, 도량형기, 직물류, 서적 등이 있었다. 이들 물품은 고가의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이용되는 실용품 위주였다.³²⁰⁾

311) 鄭良謨, 〈앞의 글〉, 388~392쪽.

312) 《高麗史》 권89, 齊國大長公主傳.

313) 홍희유, 1989, 〈고려시기 상업과 화폐유통의 장성〉 《조선상업사(고대·중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24~125쪽.

314) 원과의 인삼 무역이 많은 이득을 가져오자 船商과 車商이 다투어 인삼을 사들여 먼 곳에서 높은 가격에 되팔았으며, 관가에서조차도 이러한 이익을 탐하였다고 한다(위은숙, 〈앞의 글〉, 68쪽).

315) 위은숙, 〈앞의 글〉, 64~66쪽.

316) 《高麗史》 권105 趙仁規傳.

317) 鄭良謨, 〈앞의 글〉, 388~392쪽.

318) 陳高華, 〈앞의 글〉, 358쪽.

張東翼, 〈앞의 책〉, 148쪽.

金東哲, 〈앞의 글〉, 400쪽.

319) 위은숙, 〈앞의 글〉, 71~72쪽.

320) 위은숙, 〈앞의 글〉, 72~73쪽.

(3) 교역 담당자와 왕실의 사무역 참여

이 시기의 무역을 주도한 자들은 정치권력과 부를 동시에 갖춘 왕실이나 권문·세족이었고, 상인들이 그들과 결탁하여 이익을 나누어 가졌다. 고려 전기와 비교하여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상인 출신으로 정치적인 출세를 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는 남궁신(南宮信), 손기(孫琦), 이인길(李仁吉) 등이 있는데, 상업을 통해 얻은 부가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³²¹⁾ 고위직에 오르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왕실에서 재정의 확보를 위해 무역에 힘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자 왕실에서는 무역의 편의와 포상의 의미에서 상인들의 지위를 높여주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왕실에서 공무역의 범주를 벗어나 사무역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도 고려 후기 무역에 나타난 특징의 하나였다. 그 한 예로써 충렬왕이 익도부(益都府)에서 마포 14,000필을 판매하였으며³²²⁾ 1278년(충렬왕 4) 전대장군 윤수(尹秀)가 왕의 명령을 받고 북경에서 말을 사왔다.³²³⁾ 그의 왕비인 제국대장공주는 송자(松子)·인삼 등을 강남에 매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³²⁴⁾

특히 충혜왕은 개인적 재산을 모으는 일에 많은 힘을 기울여 1342년(충혜왕 후3) 남궁신(南宮信)으로 하여금 포 2만 필과 금·은·보초로서 중국의 유주(幽州)·연주(燕州)에서 무역하였으며,³²⁵⁾ 8월에는 임회

(林會)·윤장(尹莊) 등에게 내고의 재화를 팔아오게 하였고, 그 다음달에는 상인들을 원에 보내 내탕금(內帑金)으로 장사하게 하였다.³²⁶⁾

이와 같이 국왕이 무역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왕권 강화책의 일환이었다.³²⁷⁾ 그러나 현실적인 배경은 고려 전기와 같이 외교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이전의 방식은 상국에서 받는 회사품이 적지 않아서 고려가 사행횟수를 많이 늘려가면서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즉 외교를 주체적으로 운영하면서 형식으로 필요했던 조공이나 회사를 이용하여 많은 이득을 취했으나 원과의 관계에서는 재정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조공품을 무한정 늘리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원 황제의 회사품이나, 원에서 고려에 방문한 사신들이 가져오는 공식 물품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³²⁸⁾

결국 공식적인 외교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힘들게 되자 사적인 일반무역에 관심을 갖고 무역을 전개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왕실의 기금을 원본으로 삼아 상인들로 하여금 무역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다만 왕이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인이 무역하는 핵심이 되고 일부 국가기관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외교와는 무관한 사적인 상행위였다고 이해된다.

321) 고려시대 상인은 賤事良人 계층으로서 일반 민과 구별되었으며, 한직의 규제가 있었다(金蘭玉, 1998, 〈고려시대 商人의 身分〉《한국중세사연구》: 2001, 〈고려시대 천사·천역 양인 연구〉, 신서원, 177~182쪽).

322) 張東翼, 〈앞의 글〉, 303쪽.

323) 《高麗史》권28 〈世家〉충렬왕 4년 5월 신축.

324) 《高麗史》권89, 齊國大長公主傳.

325) 《高麗史》권36, 〈世家〉충혜왕 후3년 3월 병신.

326) 《高麗史》권36, 〈世家〉충혜왕 후4년 3월 신미 및 9월 병술.

327) 金塘澤, 1994, 〈高麗 忠惠王과 원과의 갈등〉《歷史學報》142, 11~13쪽.

328) 張東翼, 〈앞의 글〉, 302쪽.

3) 대원무역의 특수성

(1) 보초의 통용

고려에서 보초를 사용한 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276년(충렬왕 2) 낭장 이인(李仁)을 원으로 보내 행궁(行宮)의 비용을 청구하고 또한 은을 가지고 초(鈔)로 바꿨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³²⁹⁾ 여기에서 1276년에 이미 초를 알고 그것을 바꾸려했다는 점에서 그보다 조금 이른 시기부터 고려에서도 유통되었다고 추정된다.

그 후 1309년(충선왕 1) 10월에 원에서 지대은초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고려에 반포하였고, 1311년(충선왕 3) 6월에는 원이 사신을 보내 중통(中統)·지원(至元)의 초법(鈔法)을 복구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³³⁰⁾ 원에서 보초의 통용의 방침이 바뀔 때마다 즉시 고려에 사신을 보내 알리는 것은 보초의 주요 사용지역에 고려가 포함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³³¹⁾

그러므로 왕이나 승려 등의 원 왕래 비용을 마련하거나 군사비의 조달 등에 보초를 이용하였고, 1353년(공민왕 2)에는 잦은 전란을 없애고자 민천사(旻天寺)에서 인왕도량(仁王道場)을 설하자 왕이 보초 100정

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지폐에 불과한 보초가 충분히 화폐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³³²⁾

특히 원에서는 고려에서 전함을 수리하고 물건을 구매하거나 사신을 보내 행사를 치르는 경우 그 비용으로 보초를 보냈다. 예를 들어 1283년 2월에 3,000정을 보내 전함을 수리하게 하였고,³³³⁾ 1292년(충렬왕 18) 역우(驛牛)를 가져간 데 대한 보상으로 초 1,000정을 보냈으며,³³⁴⁾ 1300년 12월에는 향 15근과 필단(匹段) 20필, 견(絹) 300필, 초 864정을 가져와서 장경(藏經)을 전독(轉讀)하였다.³³⁵⁾ 1310년 6월에 금자로 장경 쓰는 것을 돕기 위해 황태후(皇太后)가 금박(金薄) 60여 정을 보냈고,³³⁶⁾ 이어 사경이 완성되자 초 5,800정을 하사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상을 주었다.³³⁷⁾ 1325년(충숙왕 12) 12월에 충숙왕비가 죽자 원에서 보초 100정과 선운(宣醢) 20항아리를 하사하여 조위하였다.³³⁸⁾ 또한 1354년(공민왕 3) 6월에는 장사성(張士誠) 난의 진압을 위해 출정하는 장졸들에게 나누어줄 보초 6만 정을 보내왔다.³³⁹⁾

원에서 보낸 보초는 고려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대가, 행사 비용, 고려왕비에 대한 조위금, 장졸들에 대한 격려 등으로 사용되었다. 원에서는 운반의 편의를 염두에 두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고려에 보초를 보내어도 그것이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는 점이다. 고려에

329) 《高麗史》 권28 〈世家〉 충렬왕 2년 3월 갑술.

330) 《高麗史》 권34 〈世家〉 충선왕 3년 6월 계묘.

331) 원의 보초 유통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 자세하여 참고하였다.

李能植, 1949, 〈여말선초의 화폐제도(1)〉 《震檀學報》16, 160~163쪽.

井上貞夫, 1992, 〈高麗朝の貨幣—中世東アジア通貨圈を背景にして〉 《靑丘學術論集》2,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위은숙, 2001, 〈원 간섭기 寶鈔 유통과 그 의미〉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韓國中世史學會, 583~584쪽.

李康漢, 2001, 〈고려 후기 元寶鈔의 유입 및 유통실태〉 《韓國史論》46.

332) 《高麗史》 권38 〈世家〉 공민왕 2년 3월 계사.

333) 《高麗史》 권29 〈世家〉 충렬왕 9년 2월 무신.

334) 《高麗史》 권30 〈世家〉 충렬왕 18년 춘정월 병진.

335) 《高麗史》 권31 〈世家〉 충렬왕 26년 12월 갑오.

또한 1303년 2월에 장경을 전독할 때에는 官素 15표리, 점경리아견 300필, 黃香 15근, 초 615정 25냥을 가져왔다(《高麗史》 권32 〈世家〉 충렬왕 29년 2월 정해).

336) 《高麗史》 권32 〈世家〉 충선왕 2년 6월 임자.

337) 《高麗史》 권34 〈世家〉 충선왕 3년 8월 계사.

338) 《高麗史》 권35 〈世家〉 충숙왕 12년 12월 을미.

339) 《高麗史》 권38 〈世家〉 공민왕 3년 6월 병오.

서 행사를 치를 경우 은이나 현물이 없어도 보초만으로도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었다는 뜻이다. 더욱이 금자로 장경을 쓰는 데 이바지한 자들에게 초 5,800정, 장사성의 난을 진압하러 가는 군사들에게 보초 6만정이 각각 하사되었는데, 이때 보초를 받는 사람들 상당수가 장인(匠人)이나 일반 병사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였을 것이므로 그 사용자 및 보초 유통의 확대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원에서 유입된 보초는 고려에서도 유통되었지만, 1314년 6월에 보초 250정을 주고 원의 경적 만권을 구입하였다고 한 사례에서³⁴⁰⁾ 나타나듯이 원과의 무역에서 자주 사용될 개연성이 높은 것이었다.³⁴¹⁾ 보초는 그 자체가 고액이었으므로 고려에서 화폐로서 활발하게 기능하기 어려웠던 대신에 운반이 용이해 원과의 무역에 자주 이용될 소지가 많았다. 1342년 충혜왕이 사람을 보내 원의 유주·연주에서 무역하게 할 때 금은과 더불어 보초를 가져가게 한 것도³⁴²⁾ 그 때문이었다.³⁴³⁾

(2) 구휼곡(救恤穀)의 유출입

무역사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문제가 쌀의 유출입에 관한 것이다. 고려와 원 사이에는 흉년이 들었을 경우, 적지 않은 쌀이 원으로 유출되거나 고려로 유입되었다. 1280년 5월에 고려에 가뭄과 황재(蝗災)가 들자 원의 중서성에서 쌀 1만 석을 들여오게 하였다.³⁴⁴⁾

340) 《高麗史》 권34 〈世家〉 충숙왕 원년 6월 경인.

341) 위은숙, 〈앞의 글〉, 75~77쪽.

342) 《高麗史》 권36 충혜왕 후3년 3월 병신.

343) 최근에는 원의 보초가 고려의 화폐 유통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이강한, 〈앞의 논문〉).

1289년 2월에는 요동의 곡식이 제대로 수확되지 못하여 인민들이 굶게 되자 고려의 양곡 10만석을 가져다 구제하도록 하였다.³⁴⁵⁾ 1292년 윤6월과³⁴⁶⁾ 1293년 6월에는 각각 10만 석의³⁴⁷⁾ 강남미를 가져다 굶주린 고려의 백성을 구휼하였다. 그리고 1294년 12월에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강화도에 옮겨놓았던 강남쌀 10만 석 가운데 5만 석을 요양과 심양 지역의 기아를 돕는 데 사용하였다.³⁴⁸⁾

원에서 기근이 들면 고려의 쌀을 공급하고, 반대로 고려의 흉년에는 원의 곡창지대인 강남의 쌀을 들여다 구제하는데, 10만석이 오가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대가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아마 무상으로 주고받은 것이라면 무역이 아니라 원조인 셈인데, 당시 고려와 원이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했음을 알려준다.

실제로 1289년 요동에 흉작이 들었을 때 원에서 그 대책을 의논하면서 ‘강남(江南)은 험하고 멀어서 배로 운반하는 양곡을 공급하여 널리 나누어주기 어려우나 요동이 고려와 접경하였으니 바라건대 그곳에서 양곡 10만 석을 마련하여 가져다가 구제케 하소서’라는 건의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주장을 한 사람은 적어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요동과 고려 사이에 국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며 다만 지리적인 가까움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고려를 사실상 원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³⁴⁹⁾ 그러한 인식으로 인해 고려와 원 사이에는 특별한 대가 없이도 10만 석이나 되는 엄청난 양곡이 무역의 형태가 아닌 국내

344) 《高麗史》 권29 〈世家〉 충렬왕 6년 5월.

345) 《高麗史》 권30 〈世家〉 충렬왕 15년 2월 병인.

346) 《高麗史》 권30 〈世家〉 충렬왕 18년 윤6월 신묘.

347) 《高麗史》 권30 〈世家〉 충렬왕 17년 6월 갑신.

348) 《高麗史》 권31 〈世家〉 충렬왕 20년 12월 경인.

349) 《高麗史》 권30 〈世家〉 충렬왕 15년 2월 병인.

간의 구휼곡으로서 오갈 수 있었던 것이다.

고려와 원 사이의 무역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조공품은 원의 요구를 많이 반영하여야 하고 양도 충분해야 했다. 때로는 그것도 모자라 원에서 직접 사신을 고려에 파견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가기도 하였다. 반면에 원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고려 국왕과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고려에서 바치는 것보다는 적었던 듯하다.³⁵⁰⁾ 때문에 송·요·금을 상대할 때와 같이 외교무역으로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보초의 통용은 원 경제의 영향이 고려에 직접 미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당시 고려는 유통 경제가 발전되어 있지 않아 포 등의 현물 화폐가 주를 이루었지만, 보초 등도 교환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고액이었으므로 일반 백성들보다는 거래액이 많고 결제수단으로서 확실하게 인정받는 원과의 무역에 더 효용성이 있어서 실제로는 이들에 의해 매집되어 활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고려와 원은 보초가 동시에 통용되는 동일한 화폐 사용권역이었다.

그리고 고려와 원 사이에는 상대국이 기근이 들었을 때, 10만 석이라는 엄청난 양의 쌀이 운반되어 기근을 막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특별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을 무역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런 점으로 인해 두 나라는 구휼재정의 측면에서 하나의 경제 안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50) 위은숙은 원과 고려와의 국가 간의 공적 교역관계는 조공과 회사라는 전통적인 양국 간의 물자 교류체제인 조공무역체제가 이미 붕괴한데다가 고려는 원에 대하여 피정복국으로서 피수탈자적 입장에 있었으므로 무역이라고 부르기에는 사실상 부적합하다고 한다. 매우 주목할만한 견해이다(위은숙, <앞의 글>, 90-91쪽).

7. 기타 여러 나라의 무역

1) 여진과의 무역

고려와 여진의 외교는 기본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다. 그러한 고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동번·서번의 ‘번’이라는 표현이었다.³⁵¹⁾ 고려는 여진이 미개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동여진은 동쪽의 변방 오랑캐, 서여진은 서쪽 변방의 오랑캐에 불과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이들에 대한 문화적인 우월감이 있었다. 그것은 중국이 한족 이외에 다른 민족을 오랑캐로 인식하는 것과 유사하였다.

고려는 요와³⁵²⁾ 금에³⁵³⁾ 대하여 자신을 번국(藩國)이라고 칭하였지만, 중국 이외에 고려의 정치적 영향권 안에 있는 주변의 나라와 민족을

351) 고려의 ‘蕃’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추명엽, 2002, <고려 전기 ‘번(蕃)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43.

352) 《高麗史》 권15 <世家> 현종 11년 2월 기유.

353) 《金史》 권3 <本紀> 太宗 天會 4년.

변방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인식에 따라 만들어진 의례가 팔관회였다.³⁵⁴⁾ 이처럼 원 간섭기 이전 고려는 자국을 천하의 중심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제왕(諸王)과 같은 황제국에 준하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³⁵⁵⁾ 이러한 사고체계를 ‘고려의 독자적 천하관’이라고 하였다.³⁵⁶⁾ 그러므로 제후국이 중국의 황제에게 조공하는 것과 같이 여진의 여러 부족들은 개별적으로 고려왕에게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바쳐 충성을 나타냈다.

여진 추장이 온 기사가 비교적 자세히 전하는 것도 그들이 왕을 직접 만나서 방물을 바쳤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례로 1034년(정종 즉위년) 11월에 신봉루(神鳳樓)에서 사면을 발표하고 여러 신하들의 하례를 받은 뒤 송의 상인, 동·서여진(東西蕃), 탐라에서 방물을 바쳤다고 한다.³⁵⁷⁾ 국가의 중요한 의례와 하례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서여진 방물을 바침으로써 그 자리를 더욱 빛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예지>에도 있는데, 1034년 10월에 보신(輔臣)을 보내어 서경팔관회(西京八關會)에 2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서경은 10월에 팔관회를 열게 하였다. 이어 11월에 팔관회를 열어 신봉루에서 백관에게 연회를 베풀고 다음날 대회(大會) 때에 서경·동경과 동북양로병마사(東北兩路兵馬使)·4도호(都護)·8목은 각각 표를 올려 하례하며 송의 상인과 동서번·탐라국이 방물을 바치자 자리를 주어 음악

을 함께 보게 하였고, 곧 상례(常例)로 삼았다.³⁵⁸⁾

이후 덕종이 그해 9월에 승하하고, 정종이 즉위하면서 팔관회를 새로이 개편하였는데, 중요한 변화가 공식 의례의 하나로서 송상과 동서여진의 방물을 바치는 의식을 포함시킨 것이며, 상례화하였다. 그 동안 고려 국왕이 동서여진의 추장의 조공을 받고 면대(面對)하는 것을 팔관회의 고정된 의식의 하나로 바꾸었다.

‘고려의 독자적 천하관’에 입각한 이러한 의례는 고려 국왕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여진의 추장이 고려 국왕에게 토산물을 바치는 것은 사실상 조공이었으며,³⁵⁹⁾ 국왕의 권위를 여러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었다. 그리고 1034년 11월의 팔관회에서 공식화하고 상례화한 것은 대중들이 모이는 행사인 팔관회에서 여진의 추장이 송상 등과 함께 토산물을 바치는 의례를 행하게 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던 것이었다.³⁶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려사》《고려사절요》 등의 문헌에 ‘여진이 방물을 바쳤다[獻方物].’고 기록된 것은 고려가 송·요·금 등에 방물을 바친 것과 같은 조공의 형식이었다. 이에 대해 고려 국왕은 마치 중국의 황제들이 고려에 그러했던 것처럼 여진 사람들에게 물품을 하사하는 것이다. 1033년(덕종 2) ‘철리국이 사신을 보내 좋은 말과 초서피(貂鼠皮)를 바치자 왕이 가상하게 여겨 매우 후하게 회사품(回賜品)을 주었다.’고 했는데, ‘바쳤다[獻]’거나 ‘회사했다’는 표현은 양자가 서로

354) 奥村周司, 1987, 〈高麗の圓丘天禮について〉《早稻田大學實業學校研究紀要》.

奥村周司 1992, 〈高麗の外交姿勢と國家儀式〉《歷史學研究》別冊.

355) 金基德, 1997, 〈高麗의 諸王制와 皇帝國體制〉《國史館論叢》78.

356) 盧明鎬, 1999, 〈高麗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韓國史研究》105.

최근 고려 국왕의 책봉을 연구한 심재석은 외형상으로는 제후국이었으나 원 간섭기 이전에는 황제국의 체제를 갖추었다고 하여 ‘外侯內帝’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沈載錫, 2002, 《高麗國王 冊封 研究》, 해안, 305쪽).

357) 《高麗史》권6〈世家〉정종 즉위년 11월 경인.

358) 《高麗史》권69〈禮志〉11,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덕종 3년 10월.

359) 추명엽, 2002, 〈앞의 글〉, 23~25쪽.

360) 고려는 대거란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나 평화를 위해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 거란의 중심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선에서 세력 균형을 이루었다. 그와 더불어 주변의 여러 종족의 내전이 급증함에 따라 고려의 정치·군사적 우위에 기초한 조공관계가 확립되고 그것을 정례화하는 의식으로서 팔관회에 포함되었으며, 이것은 문화적인 방식의 주변 민족 지배였다고 한다(추명엽, 〈앞의 글〉, 34~35쪽).

대등하지 않은 관계였음을 나타나는 말이다.

이렇듯 여진은 고려에 사대하는 형식으로 자신들의 특산물 등을 바치면, 고려에서 그에 대한 격려의 뜻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여진이 방물을 바쳤다는 기록 없이 단지 ‘내조(來朝)’하였다는 사례도 있는데³⁶¹⁾ 그 뜻이 고려 국왕이 알현하러 왔다는 것이므로 전통적인 관례상 방물을 가져오지 않을 리 없으며, 그 가능성은 이들이 회사품을 받아갔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여진에서 고려에 바쳤던 물품으로는 막연하게 방물이나³⁶²⁾ 토물(土物)로³⁶³⁾ 기록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고려에서 나지 않는 여진의 특산품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물품의 명칭이 확인되는 것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말·갑옷·기치(旗幟)·초서피(貂鼠皮)·청서피(靑鼠皮),³⁶⁴⁾ 짐승가죽·철갑(鐵甲),³⁶⁵⁾ 병기·의장,³⁶⁶⁾ 번미(蕃米) 300석,³⁶⁷⁾ 사람(生口),³⁶⁸⁾ 궁노(弓弩),³⁶⁹⁾ 과선(戈船)·고시(楷矢: 화살),³⁷⁰⁾ 호시(弧矢),³⁷¹⁾ 황모(黃毛)³⁷²⁾ 등이다.

진헌(進獻) 사례를 보면 말이 가장 많았고, 철갑·궁노·화살·과선 등의 병장기가 있었으며, 초서피·청서피 등의 동물의 가죽도 주요한

특산물 가운데 하나였다.³⁷³⁾ 또한 여진보다는 고려에서 더 많이 생산되는 쌀이 고려에 전달되었으며, 사람을 바친 경우도 있었는데 노비로 사역되었는지 일반 백성에 편입되었는지 알 수 없다. 대체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물품들이 많이 진헌되었으며, 특히 거란과의 전쟁 시기인 현종대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였다.³⁷⁴⁾ 여진에서 고려의 요구를 반영하여 바치는 물품을 정하였으며, 그에 대한 하사품도 현물을 원하는 등 경제적 욕구가 강하였다.³⁷⁵⁾

이에 대해 고려에서 여진에 준 것은 포백(布帛),³⁷⁶⁾ 의복·물품,³⁷⁷⁾ 포물(布物),³⁷⁸⁾ 기명(器皿)³⁷⁹⁾ 등이 있으며, 포괄적으로는 예에 따라 물품을 하사하였다(賜例物)고³⁸⁰⁾ 하였다. 가장 많았던 것은 옷감과 의류였으며, 그 밖에 필요한 물품들이 회사되었을 것이다.

특히 고려와 거란이 대립하던 시기인 현종 때, 여진인들이 가져왔던 각종 병기류들도 여진이 고려를 돕기 위해 가져왔다기보다는, 양국 간의 전쟁의 틈을 타서 여진인들이 고려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인 병장기를 만들어 무역하였다고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고려와 여진 사이에는 이처럼 조공-회사 형식 이외에 사행무역 형식도 있었던 것 같다. 여진이 고려에 올 때의 규모가 많게는 100여 명에³⁸¹⁾ 이르고 적어도 수십 명인 경우가 많았는데, 단순히 외교를

361) 《高麗史》 권6 〈世家〉 정종 원년 춘정월 임인.

362) 《高麗史》 권4 〈世家〉 현종 8년 추7월 신축.

363) 《高麗史》 권13 〈世家〉 예종 4년 8월 기해.

364) 《高麗史》 권4 〈世家〉 현종 9년 춘정월 임자.

365) 《高麗史》 권4 〈世家〉 현종 9년 2월 기사.

366) 《高麗史》 권4 〈世家〉 현종 9년 하4월 신사.

367) 《高麗史》 권4 〈世家〉 현종 11년 하4월 기유.

368) 《高麗史》 권4 〈世家〉 현종 13년 2월辛丑.

369) 《高麗史》 권5 〈世家〉 현종 17년 閏5월 임자.

370) 《高麗史》 권5 〈世家〉 현종 21년 하4월 무자.

371) 《高麗史》 권5 〈世家〉 현종 21년 12월.

372) 《高麗史》 권12 〈世家〉 숙종 8년 추7월 을미.

373) 三上次男, 1941, 〈高麗顯宗朝に於ける女眞交易〉《加藤博士還曆記念 東洋史集説》, 富山房, 799~800쪽.

374) 三上次男, 〈앞의 글〉, 801쪽.

375) 崔圭成, 1995, 〈북방민족과의 관계〉《한국사》15, 국편, 313~315쪽.

376) 《高麗史》 권4 〈世家〉 현종 9년 3월 갑진.

377) 《高麗史》 권4 〈世家〉 현종 9년 하4월 신사.

378) 《高麗史》 권7 〈世家〉 문종 8년 3월 갑술.

379) 《高麗史》 권8 〈世家〉 문종 12년 5월 경진.

380) 《高麗史》 권8 〈世家〉 문종 25년 하4월 임오.

381) 《高麗史》 권4 〈世家〉 현종 9년 3월 갑진.

목적으로 온 숫자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점이 있다. 고려 국왕을 알현하고 방물을 바치는 약간의 대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서 무역을 하러 왔을 것이지만, 교역된 물품 등의 자세한 사정은 알기 어렵다.

그런데 1081년(문종 35) 5월에 동여진 추장 진순(陳順) 등 23인이 와서 말을 바치자, '무릇 번인(蕃人)으로 내조(來朝)한 자는 서울에 체류하는 것이 15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관사에서 떠나도록 함을 항식(恒式)으로 삼으라.' 라고 하였다.³⁸²⁾ 이것은 많은 수의 여진인들이 지나치게 오래 머무름으로써 생기는 비용의 지출을 줄이고, 장기간 체류하면서 교역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고려와 여진과의 외교와 무역은 여러 가지 이해가 서로 부합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고려의 국왕은 여진의 추장들이 자신들을 알현하고 토산물을 바치는 의례를 통해 고려적 질서체계 내에 있는 중심 국가였던 그들의 권위를 과시할 수 있었으며, 여진의 추장은 고려의 무산계나 향직을 받아 대외적인 지위를 종족 사이에서 떨칠 수 있었다.

이런 정치적 목적 외에 양국은 일정한 물품을 바치고 화사품을 받는 과정을 통해 상호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누구에게 이득이었는지를 선뜻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고려와 여진의 관계는 서로 상대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진에서 고려를 일방적으로 찾아왔다는 점에서 여진이 더 적극적이었으며, 그만큼 많은 실리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382) 《高麗史》 권9 〈世家〉 문종 35년 5월 기축.

2) 일본과의 무역

일본과의 공식적인 외교는 없었으나 무역을 위한 일본인들의 입국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런데 고려에 온 일본 사람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고려와의 교역을 위해 입국한 것이었다. 먼저 고려에 온 사람들의 명칭을 들면, 일기도구당관(一岐島勾當官),³⁸³⁾ 일본국 선두(船頭),³⁸⁴⁾ 일본 상인,³⁸⁵⁾ 일본의 승속(僧俗),³⁸⁶⁾ 살마주(薩摩州)의 사인(使人),³⁸⁷⁾ 대마도(對馬島)의 사인,³⁸⁸⁾ 축전주(筑前州)의 상객(商客),³⁸⁹⁾ 태재부(太宰府)의 상객,³⁹⁰⁾ 일본국,³⁹¹⁾ 일본의 도강(都綱),³⁹²⁾ 일본 관서구주절도사(關西九州節度使)의 사인³⁹³⁾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일본이라고 표현된 것과 구체적으로 일기도·대마도·축전주·구주 등 지역의 명칭이 있는 것이 있다. 아울러 왕래자의 자격을 보면 태재부와 같은 일본 정부의 대표 외교기관도 있었고, 대마도 등 지방세력이 보낸 자들도 있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지리적 여건상 가장 가까우며 식량 문제가 절실했던 대마도였다.³⁹⁴⁾

그리고 사인·구당관 등은 관인이나 사절의 뜻을 담은 것과 선두·

383) 《高麗史》 권9 〈世家〉 문종 27년 추7월 병오.

384) 《高麗史》 권9 〈世家〉 문종 28년 2월 경오.

385) 《高麗史》 권9 〈世家〉 문종 29년 閏4월 병신.

386) 《高麗史》 권9 〈世家〉 문종 30년 동10월 무술.

387) 《高麗史》 권9 〈世家〉 문종 34년 閏9월 경자.

388) 《高麗史》 권9 〈世家〉 문종 36년 11월 병술.

389) 《高麗史》 권10 〈世家〉 선종 원년 6월 무자.

390) 《高麗史》 권10 〈世家〉 선종 6년 추8월 병진.

391) 《高麗史》 권14 〈世家〉 예종 11년 2월 병인.

392) 《高麗史》 권17 〈世家〉 의종 원년 8월 갑진.

393) 《高麗史》 권45 〈世家〉 공양왕 2년 5월 신해.

394) 羅鍾宇, 1996, 《韓國中世對日交涉史研究》, 圓光大學校 出版局, 40~41쪽.

상객·상인·도강 등 상인이었음을 알려주는 명칭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도 특정 물품이나 방물을 바쳤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무역을 하러 온 것이었다. 결국 특별한 정치적·외교적 사유 없이 고려를 왕래한 일본인들의 목적은 무역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고려에 파견되는 배를 진봉선(進奉船)이라 하였는데,³⁹⁵⁾ 배의 명칭이 마치 상국에 조공을 바치러 가는 외교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 고려와의 외교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순수한 무역선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처럼 일본의 여러 곳에서 고려를 찾아온 데 대해 단순히 일본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고려에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태재부에서 보냈든지, 대마도에서 보냈든지 또는 사절이거나 상인이거나 그들을 접대함에 있어 별다른 차이는 없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이 외교적 이유로 고려 정부를 상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역을 하러 온 것이었기 때문이다.³⁹⁶⁾

일본에서 고려에 바쳤다고 하는 물품들은 매우 많은 편으로 가장 흔한 표현은 여진의 경우에서와 같이 토물과³⁹⁷⁾ 방물이었다.³⁹⁸⁾ 그 뜻은 고려에서 그다지 산출되지 않는 일본지역 특산물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 외에 구체적인 물품을 들면, 나전(螺鈿)·안교(鞍橋)·칼·거울·갑(匣)·연상(硯箱)·서안(書案)·화병(畫屏)·향로(香爐)·궁전(弓箭)·나갑(螺甲),³⁹⁹⁾ 불상,⁴⁰⁰⁾ 법라(法螺)·해조(海藻),⁴⁰¹⁾ 수은,⁴⁰²⁾ 진주·보도

(寶刀)·우마(牛馬),⁴⁰³⁾ 도검(刀劍),⁴⁰⁴⁾ 감자(柑子: 감귤),⁴⁰⁵⁾ 밤, 채단(彩段)·화병(畫屏)·장검(長劍)·누금용두주기(鏤金龍頭酒器),⁴⁰⁶⁾ 창검(槍劍)·말⁴⁰⁷⁾ 등이 있었다. 나전·안교·벼루·서안·향로·누금용두주기 등 수공업 제품, 법라·해조 등 해산물, 감귤 등 과일류, 진주·수은 등 보물류, 채단 등 옷감류, 장검·궁전·나갑 등 병장구류, 우마 등 가축류, 불상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단목(丹木)·침향(沈香)·서각(犀角) 등 남방의 산물도 전래되었다.⁴⁰⁸⁾

일본에서 이러한 물품을 바치면 고려에서 하사의 형식으로 여러 가지 물품을 주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금은주기(金銀酒器)·인삼·석자(席子)·호표피(虎豹皮)⁴⁰⁹⁾ 등이 있었다. 또한 사향(麝香)·홍화(紅花)·면주(綿紬)·면포(綿布)·마포(麻布)·화면(華綿)·대릉(大綾)·중릉(中綾) 등의 약재와 옷감 및 쌀과 콩 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화면·대릉·중릉은 송상이 가져온 것을 다시 일본에 하사한 것이었다.⁴¹⁰⁾ 그리고 일본이 고려에 와서 가장 원했던 것의 하나가 불경이었으므로 사절이 와서 직접 불법(佛法: 경전),⁴¹¹⁾ 장경(藏經)⁴¹²⁾ 등을 청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본인의 고려 왕래가 문종대부터 갑자기 많아진 것은 일본의

395) 羅鐘宇, 〈앞의 책〉, 51~52쪽.

396) 李鉉淙, 1977, 〈高麗와 日本과의 關係〉《東洋學》7, 22쪽.

397) 《高麗史》권9 〈世家〉 문종 28년 2월 경오.

398) 《高麗史》권9 〈世家〉 문종 34년 閏9월 경자.

399) 《高麗史》권9 〈世家〉 문종 27년 추7월 병오.

400) 《高麗史》권9 〈世家〉 문종 30년 동10월 무술.

401) 《高麗史》권9 〈世家〉 문종 33년 동11월 기사.

402) 《高麗史》권10 〈世家〉 선종 원년 6월 무자.

403) 《高麗史》권10 〈世家〉 선종 4년 추7월 경오.

404) 《高麗史》권10 〈世家〉 선종 6년 추8월 병진.

405) 《高麗史》권14 〈世家〉 예종 11년 2월 병인.

406) 《高麗史》권133 우왕 2년 1376 10월.

407) 《高麗史》권134 우왕 5년 7월.

408) 羅鐘宇, 〈앞의 책〉, 58~59쪽.

409) 《高麗史》권133 우왕 4년 10월.

410) 羅鐘宇, 〈앞의 책〉, 59쪽.

411) 《高麗史》권22 〈世家〉 고종 3년 2월 기축.

412) 《高麗史》권137 창왕 즉위년 추7월 기묘.

조선술과 관계되었다. 일본의 조선술이 전대에 비해 많이 퇴보했기 때문에 동지나해를 횡단하는 데 자신이 없어서 중국과의 무역을 불가능해졌고 다만 황해의 연안을 따라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때 고려의 문종이 일본에 호의를 보이자, 일본 상선단은 고려 방면의 진출의 호기로 여겨, 1073년 7월 일본 상인 오나가토시[王則貞], 마츠나가토시[松永年] 등 42인이 예성항에 들어온 것이었다.⁴¹³⁾ 그러므로 당시의 기술 조건상 일본이 해외에서 교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는 고려였으며, 그것이 고려와의 무역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유였다.⁴¹⁴⁾

고려와 일본과의 무역 형식은 고려와 송상 및 고려와 여진 관계에 준해서 시행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일본의 상인 또는 사절이 고려에 와서 일정한 물품을 바치면 고려 국왕이 그에 대해 하사품을 주었고,⁴¹⁵⁾ 나머지 물품에 대한 교역을 허락받고 일반 상인과 거래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시기별로 특징을 살펴건대, 고려 전기에는 상인이나 사절들이 고려에 와서 무역을 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고려 말 왜구가 창궐할 때는 왜구의 금지와 포로의 송환을 요청하기 위해 고려에서 많은 사신들이 일본에 갔고, 그에 따라 적지 않은 사례품(謝禮品)을 동반하고 갔을 것이며, 실제로 포로 송환을 위해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기도 하였다.⁴¹⁶⁾ 고려 전후기가 정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13) 森克己, 1978, 〈日宋・日元貿易の展開〉《對外關係史》, 山川出版社, 1978.

414) 당시 일본인의 고려 내왕에 의한 무역 이외에, 송상이 고려와 일본을 왕래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송상에 의한 삼각무역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森克己, 1956, 〈日本・高麗内航の宋商〉《朝鮮學報》9, 228쪽).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신안앞바다에서 침몰된 원나라 상선의 유물이다.

415) 森克己, 1959, 〈日・宋の高麗との私獻貿易〉《朝鮮學報》14.

森克己 1965, 〈鎌倉時代の日麗交渉〉《朝鮮學報》34, 68쪽.

416) 《高麗史》권134 우왕 5년 5월.

3) 아라비아와의 무역

대식국(大食國)은 아라비아 지역의 국가를 뜻하는 것으로⁴¹⁷⁾ 일찍이 통일신라 시기에도 교류한 바가 있었다. 그 후 그들은 남중국(廣州: 현 광둥성)을 중심으로 무역을 하다가 송상의 고려 무역에 자극을 받아 고려에 직접 내항하여 무역을 하였다. 가장 최초의 기록은 1024년 9월로서 대식국의 열라자(悅羅慈) 등 1백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는 것이며,⁴¹⁸⁾ 다음해 9월에도 하선나자(夏詵羅慈) 등 1백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고 한다.⁴¹⁹⁾ 이어 1040년 6월에 “대식국의 상객 보나개(保那蓋) 등이 와서 수은(水銀)·용치(龍齒)·점성향(占城香)·물약(沒藥)·대소목(大蘇木) 등을 바치니 왕이 해당 관원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을 객관(客館)에서 후하게 접대하도록 하였으며 돌아 갈 때에는 금과 비단을 후히 주라.”고 하였다.⁴²⁰⁾

기사의 내용을 볼 때, 송상·여진인·일본인 등이 고려에 와서 자신들의 토산물을 바치는 형식과 똑같다. 결국 아라비아 상인들도 다른 외국 상인들과 같이 고려 국왕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며 아울러 일반무역을 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상단의 규모가 100인이었다는 것으로 보아 배의 크기가 컸다는 사실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아라비아 상인이 온 시기는 대략 1024년에서 1040년 사이이고, 그 횟수도 3차례에 그치고 있다. 그것은 송상이 고려와 아라비아를

417) 金定慰, 1977, 〈中世 中東 文獻에 비친 韓國像〉《韓國史研究》16, 47쪽.

418) 《高麗史》권5〈世家〉현종 15년 9월.

419) 《高麗史》권5〈世家〉현종 16년 9월 신사.

420) 《高麗史》권6〈世家〉정종 6년 11월 병인.

연결하는 중계무역을 하고 있던 데 제약을 받았거나,⁴²¹⁾ 고려에 직접 내항하여 무역한 것이 그다지 큰 이득이 아니었다는 판단에서 중단하였을 것이다.

어쨌든 아라비아의 배가 고려의 예성항까지 찾아왔다는 점은 다른 시기와 비교해 특이하다 할 수 있다. 고려의 정부는 출입하는 무역상인들의 국적에 그다지 제한을 두지 않았다. 고려의 입장에서는 송의 상인이든, 일본 상인이든, 심지어 아라비아 상인이든 고려의 방식대로 왕에게 소정의 물품을 바치고 무역을 허락받은 뒤 회사품을 받고 무역을 하는 것을 막거나 국가에 따라 차별할 이유가 없다.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물품을 가져올수록 왕족과 귀족들에게는 더 많은 물품을 갖게 될 기회가 많아지며, 아울러 교역을 통한 이득도 얻게 되기 때문이었다.

421)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김상기, 1959, 〈해상의 활동과 문물의 교류〉《국사상의 제문제》4, 국편.

李鉉宗, 1968, 〈南洋諸國人の來往貿易에 對하여〉《史學研究》18.

8. 마치며 -

새로운 무역 관계의 설정을 위한 갈등

고려 말에 등장한 명은 그 동안 고려가 경험했던 송·요·금·원 등과 또 다른 무역의 형식을 요구했으며 공민왕대 시작된 세공마(歲貢馬)가 그 문제의 핵심이었다.⁴²²⁾ 그것은 때로는 양국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때로는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고려 말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조선 왕조 개창과 함께 일정한 형식의 정립을 보게 되었다. 이 시기는 무역사적인 전환기인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공마를 둘러싼 고려와 명과의 외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명의 억지 요구가 있었음에도 고려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시종일관 굴종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것이 더 많은 요구를 초래했다.⁴²³⁾ 사실 명은 원과 같이 직접 군사적으로 고려를 공격하거나 정치적 간섭을 하지 않았지만, 사대 관계는 고려와 원의 그것에 준하

422) 《高麗史》권133 우왕 원년 3월.

423) 세공마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김순자, 2000, 〈麗末鮮初 對明 馬貿易〉《韓國史의 構造와 展開－河炫綱教授定年紀念論叢－》, 혜안).

려고 하였다. 조공도 겉으로는 성의를 보이면 된다고 했지만, 매우 까다롭게 따져서 그들이 만족할 수준에 이르러야 했다.

그리고 명에서 요구한 공물은 금·은·포와 말 등으로 단순하였는데,⁴²⁴⁾ 그것은 고려의 방물을 주로 보냈던 것과 송이나 원과 매우 다르다. 금·은·포와 같은 재화류와 전쟁에 필요한 말은 재정에 도움이 되는 물품이었고, 그 이전에 황제가 희귀한 물품을 소지함으로써 넓은 영역을 지배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의식과 달라진 것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 명에 대한 조공은 1년치가 규정되었으며,⁴²⁵⁾ 고려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와 같이 인식되었다. 하지만 그것을 쉽게 이행하기 어려웠는데, 그럴 경우 명은 외교·군사적으로 고려를 압박하였고, 조공의 부담을 해결하기 어려웠던 고려가 줄여줄 것을 요청하면 불손하다며 질책하였다. 그리고 조공 대신 직접 대가를 치르고 구매하겠다고 하며 고려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의 말을 제시하여, 고려를 곤경에 빠뜨렸다. 물론 명의 공마 요구에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은 일반 백성들이었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그 과정에서 명은 사신의 횡수를 줄인다든지, 사신의 해로 이용을 강제한다든지, 고려인의 요동의 출입을 막는 등 고려의 취약점을 알고 대처하였다. 사신의 횡수를 줄이는 것은 외교무역에 의존하던 고려로서는 공식적인 무역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사신의 해로 이용은 황해를 건너다 전복되는 사례가 많았으므로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명이 잘 알고 있었다.⁴²⁶⁾

한편 이 시기에는 상고(商賈)들이⁴²⁷⁾ 소·말·금·은·모시·마포 등을 가지고 요양과 심양지방에서 몰래 무역하는 자들이 늘어났으나 국가는 이를 금지한다고 하면서도 분명하게 규제하지 못하였다. 변방의 관리도 엄격한 단속을 하지 않았으므로 길거리에는 왕래하는 상인이 그칠 사이가 없어서, 1391년 5월에 비로소 명과의 호시를 금하였다고 한다.⁴²⁸⁾ 그것은 상인들이 10명 내지 5명씩 무리를 지어 말·소·금·은 등을 가지고 매일 외국으로 나가 고려에는 느리고 둔한 노새와 나귀 따위만 남아있을 정도였으며, 백성들이 귀천을 불문하고 외국 물건(異土之物)을 사들여 사치할 만큼,⁴²⁹⁾ 명과 고려를 오가는 사무역이 많았던⁴³⁰⁾ 데 대한 대책이었다.⁴³¹⁾

그러므로 명의 요동 폐쇄는 그것을 주도하던 상인과 그 후원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명은 세공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려의 대명 무역에 제재를 가하여 고려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말을 둘러싼 조공 문제를 통해 고려와 명의 관계를 파악하면, 비교적 정치적으로 내정간섭이 적었다는 점에서 송·요·금과의 관계와 유사한 것처럼 보였지만, 조공을 단순한 외교상 필요한 의식으로 여겨 성의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액수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원과의 형식에 가까웠다. 그런 점에서 고려가 송·요·금을

427) 定遼衛가 황제의 명을 받들어 압록강을 건너 교역하고자 하였으므로 의주에 머물러 교역하는 것만 허락하되 금은과 우마를 쓰는 것은 금하였다고 한다(《高麗史》 권135 우왕 10년 10월 계유). 이처럼 민간 상인을 중심으로 국경지역에서 활발하게 무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8) 《高麗史》 권46 〈世家〉 공양왕 3년 5월 기유.

429) 《高麗史》 권85 〈刑法志〉 2 禁令 공양왕 3년 3월 中郎將 房士良 上疏.

430) 金庠基, 1986, 《新編 高麗時代史》, 서울대출판부, 672~673쪽.

431) 이시기 무역을 포함한 상업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서는 朴平植, 1998, 〈高麗末期의 商業問題와 掟弊論議〉 《歷史教育》68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424) 김순자, 1995, 〈고려 말 대중국관계의 변화와 신흥유신의 사대론〉 《역사와 현실》15, 126~128쪽.

425) 《高麗史》 권135 우왕 9년 11월.

426) 그러므로 1374년 2월에 여러 차례 사신이 난파를 겪었던 해로를 피해 육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한 것을 비롯하여(《高麗史》 권44 〈世家〉 공민왕 23년 2월 갑자), 기회 있을 때마다 해로 이용의 철회를 요청하였다.

상대로 외교를 전개하면서 상당한 무역상의 이익을 얻었던 관계로의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어쨌든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명과의 조공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으며, 새로운 형식의 조공 관계와 무역의 형식을 만드는 과제는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5장 조선시대의 무역

이철성(건양대학교)

들어가는 말

조선의 경제정책은 건국 초기에 내세운 ‘중농억상(重農抑商)’의 이념적 기조를 바탕으로 펼쳐졌다. 따라서 조선시대 상업활동을 통한 자본의 집적과 경제변동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고 인식되었다. 이는 해외무역에 대한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해외무역은 ‘사대교린(事大交隣)’이란 정치외교체제에 부수된 활동으로써 ‘적자무역’ 혹은 ‘사치품무역’으로 평가되었다.

해외무역의 ‘경제적 득실’을 따져 이것이 ‘적자무역’임을 주장하는 논리는 주로 무역 상대국간 외교적 의례에 포함되는 조공무역만을 검토의 대상에 넣은 것이며, 공무역과 다양한 사무역 그리고 밀무역을 시각에 넣지 않았다.¹⁾ ‘사치품무역’에 따른 손실무역임을 주장하는 논

1) 조공(朝貢)과 회사(回賜)로 이루어지는 무역관계를 비롯한 조선시대 무역을 적자무역으로 규정짓는 대표적 연구는 전해중, 1970,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이다. 그러나 조선의 대중국 무역이 발전하면서 방물과 세폐의 부담이 실상 그리 크지 않았음을 밝히고, 조선의 무역 전체를 적자무역 혹은 조공체제에 부수된 경제외적 무역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었다(Chul-Sung Lee, 2002, Reevaluation of the Choson Dynasty's Trade Relationship with Ch'ing Dynast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3).

리도 '사치와 소비 현상'이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오해이다.²⁾ 조선시대 해외무역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무엇보다도 무역에 종사하면서 자본을 축적하고 조선의 상업계를 이끌어 갔던 '상인들의 역사'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조선의 해외무역은 동북아시아 역사상 중국·조선·일본의 경제권을 연결하는 가교(架橋)로써 주목받아야 한다. 나아가 중세 동북아시아의 장기적인 경제 변동과 근대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조선의 역할을 정당하게 자리매김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평가되어야 한다. 이 장은 이러한 시각에서 조선시대 무역의 흐름을 정리하려 한다.

조선 왕조는 건국과 동시에 사회적 재부(財富) 산출의 중심을 토지에 두고 상공업 및 광업 분야에서의 재부 축적을 억제한 것이 사실이다. 민간상인의 해외무역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자연히 15세기 조선의 해외무역은 사대교린(事大交隣)이란 외교정책의 틀에 크게 제한받았으며, 국가 주도의 무역이 주류를 이루었다.

조선 왕조의 국가주도형 무역은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사회의 전반적인 상업 발전에 따라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15세기 중반 명(明)나라에서는 지정은제(地丁銀制)가 시행되었다. 이는 중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을 잇는 은무역(Silver Trade)의 흐름을 열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과 중국 및 일본을 잇는 무역의 발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약 1세기 동안은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흐름을 조선이

매개하고 있었다. 조선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왜은(倭銀)↔인삼과 왜은↔중국 비단무역을 근간으로 재부를 축적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중국과의 무역으로 연결시켜 중국물화↔인삼·잡화와 중국물화↔왜은이 교환되는 무역구도를 형성해 나갔다. 이른바 조선의 중개무역(仲介貿易)이 발전해 간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청나라와 일본이 국교를 수립하고 나가사키(長崎)에 상관(商館)이 설치되면서, 동북아시아 무역의 흐름에는 변화의 요소가 잉태되었다. 즉 청·일간 국교가 수립되자 중국의 비단이 중국 또는 네덜란드 선박에 의해 직접 나가사키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일본에서 폭발적 수요를 누려왔던 조선 인삼도 도쿠가와(德川) 막부(幕府)의 노력으로 인삼이 자체 생산되면서 왜상들의 조선 인삼에 대한 구매욕구도 현저하게 떨어졌다. 자연히 왜관을 통한 왜은(倭銀)의 유입량은 줄어들고, 중개무역을 통해 이익을 보았던 조선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8세기 조선의 상인들은 홍삼(紅蔘)이란 새로운 상품 생산으로 침체된 국제무역에 돌파구를 열었다. 홍삼은 1797년(정조 21) 처음으로 120근이 중국과 공식 무역되기 시작했다. 그 후 불과 50년 만에 홍삼무역량은 4만근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로써 조선 왕조는 홍삼에서만 중국과의 외교상에 필요했던 방물·세폐에 소용되는 비용을 훌쩍 넘는 세금을 거두고 있었다.

19세기 중국과의 관문인 책문에는 조선에서 올라오는 홍삼을 처리하기 위한 고려인삼국(高麗人蔘局)이 설치되었고, 개성 지역에는 1천 간 이상 규모의 삼포(蔘圃)가 상인이나 상인으로부터 전업한 농업 자본가에 의해 경영되고 있었다. 18세기 인삼재배와 홍삼가공 그리고 그 판로의 확대는, 조선 상업계가 상업자본의 단계를 벗어나 산업자본의

2) 베르너 좀바르트(이성률 옮김), 《사치와 자본주의》, 문예출판사, 1997.

단계로 진입하는 변화된 모습이었다.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외국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난 배경에는 대규모 전쟁으로 황폐화한 농촌에서 살길을 잃은 농민들이 도시로 모여들어 상업 인구로 전환되게 되었고, 그것이 민간 해외무역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국내 상업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에 17세기부터는 국내상업과 해외무역을 이끈 상인세력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즉 종래의 시전상인 이외에 난전상인이 증가하면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이 강화되어 갔고, 대동법의 실시로 또 하나의 특권상인인 공인(貢人)이 등장했다.

한편 특권상인의 억압 속에서도 송상(松商)으로 불린 개성상인, 만상(灣商)으로 불린 의주상인, 내상(萊商)으로 불린 동래상인, 한강변의 경강상인 등 어느 정도의 자본축적이 이루어진 사상(私商)이 성장했다. 이들 가운데 주로 대외무역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상인은 시전상인과 공인 일부를 포함하는 서울상인[京商]과 개성상인[松商]·의주상인[灣商]·동래상인[萊商] 등의 사상(私商)이었다.

국내상업과 해외무역을 둘러싼 서울상인과 사상 간의 구체적인 경쟁관계는 조선시대 무역의 성격과 개항기 상업세력을 이해하는 디딤돌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선, 조선시대 무역상인과 무역의 흐름을 살펴 해외무역의 역동성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이후 조선시대 해외무역을 대중국무역과 대일본무역을 중심에 두고 그 시대적 양상을 개관함으로써 각 시기별 무역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상인과 무역의 흐름

1) 상인과 무역

(1) 시전상인

조선시대 서울의 시전상인(市廛商人)은 국내상업의 핵심이자 동시에 해외무역의 중심세력이었다. 시전(市廛)은 왕실과 각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서울 도성민(都城民)의 생활용품을 조달하는 상점이었다. 따라서 조선의 건국과 한양으로의 천도는 서울 시전 성립의 배경이 된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전은 입전(立廛)이었다. 입전에서는 중국산 비단을 취급했다. 비단을 취급하는 상점이 입전으로 불린 이유는 좀 특이하다. 입전은 비단을 취급한다는 뜻의 단전(緞廛)보다는 선전(線廛) 혹은 선전(綰廛)으로 더 많이 불렸다. 입전은 조선 초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시전을 처음 세울 때 선전(線廛)을

먼저 세운 데서 기인한다. 즉 ‘선(線)’의 발음이 ‘입(立)’의 뜻과 비슷하므로 입전을 선전이라고 했던 것이다.³⁾

즉 태조 이성계는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개성의 제도에 따라 시전을 설립하려고 했다. 그러나 상인을 이주시키려 하자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 다만 필단(匹緞) 상인들이 앞장서 따라 왔으므로 이들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전호(塵號)를 내려주면서 입전(立塵)이라 했으니, ‘나라와 같이 설립되었다는 뜻’이라는 것이다.⁴⁾ 선전(緇塵)은 옷감을 두른다는 뜻의 ‘선(緇)’이 ‘선(線)’과 발음이 같은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선전(緇塵)과 선전(線塵)은 모두 비단상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입전은 조선 왕조의 건국과 한양으로의 천도에 따른 국가 권력과 상업세력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 초기 궁궐건축과 시전 건립은 태조 이래 수도 건립의 중요사업 중 하나였다. 이에 15세기에는 1차로 혜정교(惠政橋)로부터 창덕궁(昌德宮) 마을 어귀까지 8백여 칸의 좌우행랑이 완성되었고, 2차로 궐문(闕門)에서 정선방(貞善坊) 마을 어귀까지 472칸이 만들어졌다. 3차는 종루(鐘樓)로부터 서북쪽으로 경복궁까지와 창덕궁으로부터 종묘(宗廟) 앞 누문(樓門)까지 그리고 숭례문(崇禮門) 전후까지, 모두 1천 3백 칸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4차로는 종루에서 남대문까지와 종묘전 문루로부터 동대문에 이르는 좌우행랑이 조성되었다.

이로써 간선도로 양측에 정주상인(定住商人)의 점포가 관설(官設)되었다. 이들이 ‘공랑상인(公廊商人)’, 즉 정부에서 제공한 공랑(公廊)에서 상업을 영위하는 계층으로 후에 육의전으로 발전하는 시전상인(市

塵商人)이다. 물론 서울에는 공랑 이외의 임시점포, 즉 가가(假家) 상인을 뜻하는 ‘좌고(坐賈)’라고 불리는 상인도 있었다. 이들은 뒤에 모두 육의전의 지배하에 들어간다. 이 밖에 ‘행상(行商)’이라 불리는 상인도 있었는데, 이들 모든 상인은 경시서(京市署)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었다.

조선 초에 확립된 시전은 서울에서의 생활필수품 유통과 정부의 수요물품 조달 및 국고의 잉여물품 처분 등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16세기에 들어오면서 시전의 상업 구역은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15~16세기 서울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라 상품의 수요가 확대되었고, 공물(貢物)이나 진상품(進上品)을 서울에서 현물로 사서 내는 무납화(質納化) 경향이 작용하고 있었다. 시전상업이 활성화되자 조선정부는 시전구역을 확대 재정비하고, 업종별로 구획을 설정하는 동시에 이들 시전에게 시역(市役) 부담을 증대시켜 갔다.⁵⁾

16세기 말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에 실시된 대동법은 조선 전기의 시전체계를 크게 변모시켰다. 대동법의 실시로 각종 공물(貢物)을 전문적으로 조달하는 공인층이 등장하였고, 상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시전이 크게 증가했다. 시전의 증가는 신전(新塵) 창설로 이어졌고, 신전 창설은 유통 공간의 확대를 가져왔다. 상권을 둘러싼 기존 시전과의 마찰도 불가피했다. 이에 조선정부는 시역(市役)을 매개로 하여 시전체계를 재편성했다. 즉 호조가 정부 각 관청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요청 받으면, 이를 평시서(平市署)에서 각 시전에게 부과했는데, 그 첫 대상이 육의전이었다.

육의전의 명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설이 있다. 첫째가 ‘육주비(六

3) 《만기요람》 재용편 5 각전(各塵).

立市之初 先立線塵 線之音與立之義相似 故亦稱立塵.

4) 이능화, 《李朝時代 京城市制》《稻葉博士還曆紀念滿鮮史論叢》, 1938.

5) 박평식, 《조선 전기 상업사연구》, 지식산업사, 1999.



1890년대 윤중가 일대

注比) 설이다. 즉 관청물품을 거두는 관리가 장부상에 표시를 할 때 붓으로 ‘△’ 표를 쳤는데, 이것이 ‘의(矣)’로 전화되었고, ‘의(矣)’는 이두로 ‘주비짚다’로 새기는데 같은 동업자가 한 덩어리로 결합하는 것을 ‘주비짚다’고 하므로, 육의전은 6개의 시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설이다.⁶⁾ 둘째는 육주부전(六注夫廩) 설이다. 여기서의 주부(注夫)는 ‘길대[長]’라는 뜻이다. 서울에 시전을 조성할 당시 종루(鐘樓)의 간선 도로에 긴 건물을 지어 제공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설이다.⁷⁾ 셋째는 이들 시전의 국역부담이 6분(分) 이상이었던 데서 비롯되었다는 설, 넷째는 6조의 물품을 조달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는 설,⁸⁾ 다섯째로는 ‘의(矣)’를 수장(首長)의 의미로 보아 6개 상점이나 나란히 줄지

6) 《만기요람》 제용편 5 각전.

7) 유원동, 《한국근대경제사 연구》, 일지사, 1977.

8) 《조선인의 상업》(조선총독부 조사자료 11집).

어 있는 6개 상점의 의미로 보기도 한다.

어떻든 17세기 이후 육의전은 서울의 상품유통 차원에서 최상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자금력과 독점권을 지닌 대표적인 상인집단으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육의전의 구성이 대부분의 경우 해외무역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상점이라는 점이다.⁹⁾

육의전은 조선 후기 정부의 필요에 따라 주비시전이 7개 내지 8개로 구성되기도 하여 ‘칠의전(七矣廩)’ 또는 ‘팔의전(八矣廩)’으로도 불렸다. <표 1>은 육의전에 포함된 적이 있는



저포전 깃발

<표 1> 육의전 취급 상품

시전명	상품	시전이칭
입전(立廩)	중국산비단 및 백사(白蛇)	선전(綰廩) · 선전(線孱)
면포전(綿布廩)	면포 · 은 · 서양목(西洋木) · 서양주(西洋紬)	백목전(白木廩) · 은목전(銀木廩)
면주전(綿紬廩)	국산비단(명주 종류)	
지전(紙廩)	종이류	
저포전(苧布廩)	모시류(저포(苧布) · 황저포(黃苧布) 등)	
포전(布廩)	삼베류(세포(細布) · 조포(粗布) 등)	
내어물전(內魚物廩)	건어류	
외어물전(外魚物廩)	자반류	
청포전	진(氈) · 양모 · 모자 · 중국 삼승포(三升布)	

출전: 변광석, 《조선 후기 시전상인 연구》, 해안, 2001, 34쪽 재구성.

9) 현재 조선 후기 상업사 연구는 주로 육의전과 시전 상인을 사상과 난전의 등장과 길항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 있다. 반면 육의전의 외교와 무역에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드물다. 이런 점에서 육의전의 상업 활동에 중점을 둔 연구성과가 요구된다.

시전을 모두 포함시켜 시전에 따른 취급상품을 정리한 것이다.

입전은 중국에서 수입한 각종 비단을 취급하면서 동시에 비단의 원료인 고급 백사(白絲)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직조하여 팔았다. 백사는 주로 시전상인과 연결된 역관이 중국에서 사들여와 왜관에서 일본 상인에게 넘겨진 대표적 물품의 하나였다. 국산 비단이 성글고 약간 두꺼운 데 비해 중국산은 얇은 게 특징으로, 중국의 소주(蘇州)에서 생산된 비단이 가장 선호되었다. 면주전도 국산의 비단 명주를 취급하면서 이를 직조해 팔았으며, 면포전에서는 당진과 해남 등 주요 생산지의 면포 판매와 함께 은(銀) 가공업도 병행했다. 입전, 면주전, 면포전은 조선 후기 중국으로 가는 사행의 세폐와 방물을 책임지는 대표적 상인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국가에 지는 시역(市役)의 반대급부는 금난전권(禁亂廛權)과 대외무역상 물종취급의 특권으로 상정할 수 있겠다.

육의전 상인을 세상에서는 상촌인(上村人), 즉 우대사람이라 불렀다. 육의전 상인은 중인 혹은 아전층과 통혼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관서의 실무 이서(吏胥)들과도 교류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육의전 상인이 권력층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경영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도가(都家)를 갖추고 있었다. 입전도가(入廛都家)·백목전도가(白木廛都家)가 대표적이었다. 시전상인들이 조직한 조합은 도중(都中)이라 했는데, 입전조직에는 대행수(大行首)·도령위(都領位) 등으로 불리는 상층원로와 실임(實任)·의임(矣任)·서기(書記) 등으로 불리는 하층실무 임원들이 있었다. 이들이 이처럼 엄격한 조직과 위계체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전투에서 적장의 목을 베기는 쉬워도 입전 대행수를 붙잡기는 어렵다.”¹⁰⁾

10) 《승정원일기》1011 영조 22년 12월 16일.

라는 이야기가 떠돌 정도였다.

해외무역과 깊숙이 관련된 서울 상인으로는 청포전(靑布廛)과 동상전(東床廛)이 있었다. 청포전인은 전(氈), 양모(羊毛), 모자(帽子) 등을 수입해다가 국내에 팔던 상인으로 18세기 후반에는 역관이 수입한 모자를 국내에 팔거나 독자적으로 모자무역에 깊숙이 관여한 상인이었다.¹¹⁾ 동상전인은 종로에서 잡화를 팔던 가게로, 주로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을 팔았다. 동상전에는 청에서 수입된 여러 잡화가 있었고, 그 중에는 성인용품이라 할 각쫓도 있었다. 이에 “동상전에 들어갔다.” 하는 속담이 나왔다. 이는 먼저 말을 해야 할 경우에 말없이 그저 웃기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계면적음을 빗댄 말이다. 실로 다양 다종한 물건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전상인은 정부에 시역(市役)을 부담하는 한편 국내 상업계를 주도한 대표상인이었다. 특히 입전, 면주전, 면포전인들은 거대한 자본으로 직조업 및 은 가공업까지 지배했다. 그와 동시에 이들은 해외무역을 주도하는 대표상인이기도 했다. 중국비단과 물품을 사들여 오는 자금도 결국은 시전상인의 몫이 컸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시전상인을 국내 상업계의 유통을 장악한 상인만으로 이해하는 시각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하리라고 본다.

(2) 개성상인

조선시대 개성은 서울에 견줄만한 거대한 상업도시였다. 이익(李瀾)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개성의 상업적 발달 배경을 두 가지로

11) 이철성, 《조선 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2000, 국학자료원.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서울과 가깝고 서쪽으로 중국 무역과 연결될 수 있는 지리적 요인이며, 다른 하나는 조선 왕조 건국 후 개성인의 후예들은 관직 진출을 포기하고 상업에 종사했다는 반(反) 조선 왕조적 정치 요인을 꼽고 있다.

실상 개성은 중국 사절과 조선 사행이 지나가는 주요 경유지이자 숙박지였으며, 양반을 비롯한 식자층도 상공업에 종사하여 경제적인 번영을 이룬 도시였다. 따라서 이들 사신접대 및 중국 사신이 가져오는 물품을 무역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성의 상업적 도시 기반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었다.¹²⁾ 이런 이유로 개성은 상업도시로 계속 발전했고, 한 고을 전체 호주의 약 52.6%가 상업에 종사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¹³⁾



개성 남대문

12) 박평식, 1999, <개성상업의 복구와 개성상인> 《조선 전기상업사연구》, 지식산업사.

13) 吳 星, 1994, <한말 개성지방의 호의 구성과 호주-남부 도조리 호주의 직업분포와 관련하여->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 하, 일조각.

개성에 시전이 설치된 것은 고려 태조가 송악에 도시를 건설했을 때 부터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광화문(廣化門)에서 십자가(十字街)에 이르는 도로의 좌우에 1,008영(楹)의 긴 행랑(長廊)이 있었다고 한다.¹⁴⁾ 개성 시전은 조선시대 서울 시전과 같이 일종의 행랑상점으로 육의전과 같은 성격의 사대전(四大廩)이라는 시전이 있었다. 이 사대전에는 백유전(白紬廩)·선전(綰廩)·청포전(靑布廩)·어과전(魚果廩)을 중심으로 백목전(白木廩)·의전(衣廩)·지전(紙廩)·사기전(砂器廩)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⁵⁾

《송영갑신신정사례(松營甲申新定事例)》에 따르면 개성에서는 상세(商稅)·미세(米稅)·장시세(場市稅)·현방세(懸房稅)·승세(升稅)·피전세(皮廩稅) 등의 영업세가 징수되고 있었다. 상세는 상인들 특히 부상대고(富商大賈)들에게 징수했던 것이고, 미세는 개성부 관내 포구들을 통해 반입되는 미곡에 대한 부과세였다. 현방세는 푸줏간(肉庫)에 부과되는 것이었고, 피전세는 우피전(牛皮廩)에 부과되는 세금이었다. 승세는 장시에서 저울질·자질·되질을 대행하던 두감고(斗監考)·시장감고(市場監考)들에게 징수하는 세금이었다.¹⁶⁾

개성의 일반 시전과 사대전도 서울의 시전처럼 관부(官府)의 수요품과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금난전권(禁亂廩權)·관전 대출(官錢貸下)과 같은 특혜를 받았던 듯 하다. 개성 사대전은 또한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고 관부의 부당한 요구를 타개하기 위한 회의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대전회의는 점차 사대전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개성

14) 《고려사》 권21, 회종 4년 7월 정미.

15) 조선총독부, 《조선인의 상업》.

16) 홍희유, 1962, <송도 4개 문서(四介文書)에 반영된 송상(松商)들의 도가(都賈) 활동> 《력사과학》 6, 54~55쪽.

상업계 내지 개성상인의 상행위 전체에 관한 문제를 관부의 위촉에 의해 조사·처리했고, 더 나아가 개성상인이 다른 지역에서 행상을 할 때 일어나는 문제에도 개입하여 그들의 이익을 옹호했다.¹⁷⁾ 조선시대를 통하여 개성상인의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고 조직적이었던 것은 이와 같은 체제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개성의 부상(富商)들은 그들의 차인(差人)을 전국 각 지방의 상업중심지에 파견하여 그곳에 송방(松房)으로 불리는 일종의 지점을 차려 놓고 그 지방의 생산품을 매점하고, 또 다른 지방 물품을 그곳에 옮겨 판매했다. 조직원들 내부에서 송방은 시방(市房) 또는 상방(商房)으로 불리기도 했다.

개성의 부상이 부리는 피고용인으로는 차인(差人)·서사(書師)·수사환(首使喚)·사환(使喚) 등이 있었다. 차인은 일명 방아(房兒)라고도 했으며 주인의 대리자 또는 동업자로서 영업상 제기되는 중요한 일을 담당 진행하는 고급 피고용인이었다. 이들은 지방에서 영업에 종사하다가 정기적으로 귀환하여 주인에게 사개치부법(四介置簿法)에 의한 회계 보고를 하였다. 서사는 장부처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한 전문가로서 월급제에 의해서 고용되는 것이 통례였으나 때로는 이익분배에도 참가하였다. 수사환과 사환은 하급 피고용인으로 주로 점방에서 상품 판매에 종사하면서 상업상 제기되는 기타 잡무를 맡아보았다. 이들에게는 일정한 보수 규정이 없이 매년 신발이나 두루마기 등을 한두 번씩 공급받았다.

개성상인은 이러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상업활동을 바탕으로 인삼 및 피물류를 장악하여 국내상업뿐만 아니라 해외무역에서도 서울상인

에 필적할 만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18세기에는 개성상인들이 선대제(先貸制) 형식으로 피물을 도고하여 구피계공인(狗皮契貢人)들이 타격을 입기도 했다.¹⁸⁾ 지물(紙物)도 개성상인의 중요한 수출품이었다. 중국에 수출되는 지물은 대개 각 지방의 사찰에서 제조되었는데, 이전에는 관무역품의 경우 지전인(紙廛人)·지계인(紙契人)들이 그것을 승려에게서 구입하여 조달했었으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개성상인들이 이를 매점하여 수출했다. 이후 개성상인은 비단류를 비롯하여 모자(帽子)·바늘·말총 등 다양한 물품을 수입해 국내시장으로 연결시켰다.¹⁹⁾

개성상인은 일본과의 무역에도 적극적이었다. 주요 물품은 인삼이었다. 1752년(영조 28) 개성상인과 연결된 동래상인(東萊商人)은 품질이 좋은 강계(江界) 지역의 인삼을 모두 매점하고는, 이를 왜관(倭館)에 가져다 팔아 국내에서는 인삼을 구하기 어렵다는 불평이 터져 나올 지경이었다.²⁰⁾ 18세기 초에는 이미 개성상인의 대일본 인삼 수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개성상인의 해외무역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개성상인과 타지역 상인과의 관계이다. 대중국무역에 있어서는 개성상인이 직접 의주상인과 함께 책문후시에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중국과의 무역을 주로 담당하는 상인은 의주상인이었다. 개성상인은 중국에서 사들여온 물품을 국내시장에 판매함과 동시에 국내 생산지에서 상품을 매점하여 의주상인에게 연결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간에는 횡적·종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다. 의주상인과 동래상인은 이런 점에서 무역의 이익을 나누어 가진 상인으로서 주목된다.

18) 《비변사등록》168, 정조 10년 1월 5일.

19) 강만길, 1972, 《개성상인연구》 《한국사연구》8, 및 〈앞의 책〉 참조.

20) 《비변사등록》124, 영조 28년 6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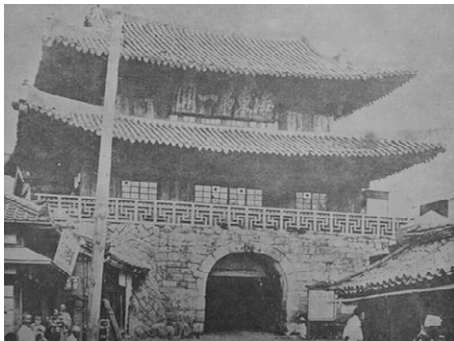
17) 강만길, 1973, 《조선 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학교 출판부.

(3) 의주상인과 동래상인

서울상인, 개성상인과 더불어 조선시대 해외무역에 참여했던 상인으로 의주상인과 동래상인을 꼽을 수 있다. 만상(灣商)으로 불렸던 이들은 의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상인을 말하는데, 중국과 인접한 지역적 위치로 인해 국경무역과 사행무역에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상단(商團)을 이루었다. 의주상인이 해외무역상 그들의 존재를 부각시킨 것은 조선 후기부터였다. 이들 가운데는 단순히 역관의 말을 끌고 가는 마두(馬頭) 명색을 빌어 사행무역에 가담한 상인에서부터, 무역별장(貿易別將) 직함으로 관아무역을 담당했던 상인 그리고 포삼별장(包蔘別將)으로 홍삼무역을 담당했던 상인도 있었다. 이처럼 의주상인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자본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의주에도 서울이나 개성처럼 대규모 행랑이 조성되고 시전조직이 있었으며, 상인들의 조직과 규율이 갖추어 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은 알 길이 없다. 19세기 임상옥(林尙沃) 정도가 홍삼

무역으로 성장한 의주의 거부(巨富)로 알려진 정도이다.²¹⁾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선 후기 의주상인은 개성상인과 함께 대청무역상 주객(主客)으로 비유되거나 서로상인(西路商人)으



의주부 남문(조선고적도보)

21) 유교성, 1965, 〈인삼무역의 선구자—임상옥〉 《인물한국사》4, 박우사.

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상인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서로상인'은 사행로인 개성(開城)—황주(黃州)—평양(平壤)—의주(義州)로 이어지는 지역의 상인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들을 흔히 관서(關西)·송도잠상(松都潛商),²²⁾ 양서(兩西)·송도상고(松都商賈),²³⁾ 혹은 '삼도상고(三道商賈)'라고도 불렀다.²⁴⁾ 그 중 대표적 상인이 개성상인과 의주상인이었다.²⁵⁾ 의주상인은 개성상인과 함께 국내 수달가죽(水獺皮)을 독점하여 연경무역에 왕래하면서 교역하였는데,²⁶⁾ 개성상인과는 일정한 매매 관례가 규칙으로 상호 인정되고 있었다.²⁷⁾

그런데 개성상인은 1728년(영조 4) 무역별장제 혁파 이후 공식적으로는 청나라와의 무역에 참여하는 길이 막힌 반면, 의주상인은 대청무역에 참여할 권한이 인정된 상인으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개성상인과 의주상인은 대청무역상보다 긴밀히 연결되었다.²⁸⁾

반면 서울상인과 서로상인의 이해관계는 적어도 해외무역에 있어서 는 상호 배치되었다. 전통적으로 해외무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역관(譯官)·서울상인 그리고 서로상인이었다. 그런데 서울상인과 서로상인은 협력관계보다는 상호 경쟁관계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 18세기 인삼 밀무역은 경중상고(京中商賈), 즉 서울상인에 의해서도 감행되었다.²⁹⁾ 하지만 서울상인은 인삼 절종 현상을 관서·송도 잠상(潛商)의

22) 《승정원일기》889 영조 15년 4월 23일.

23) 《관서계록(關西啓錄)》 임오(壬午: 1822) 2월 25일.

24) 《관서계록》 임오(壬午) 8월 28일.

25) '서로상인'에는 평양상인과 안주상인 등도 포함되며, 이들도 대청무역을 활발히 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례로 1807년(순조 7) 의주인 백대현(白大玄)과 평양인 이시즙(李士楮)에 의해 발생한 잠상활동은 대청무역상 평양상인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승정원일기》, 1932 순조 7년 8월 18일).

26) 《일성록》 정조 16년 11월 20일.

27) 《송영계록(松營啓錄)》 을유(乙卯) 8월 30일.

28) 《승정원일기》2232 순조 28년 8월 30일.

29) 《비변사등록》57 숙종 32년 8월 초8일.

탓으로 돌리며 안주(安州)·송도 사람을 잠상의 우두머리로 지목한 사례에서 보듯 상호 경쟁의 위치에 있었다.³⁰⁾ 종이·피물을 비롯한 개성상인과 의주상인의 무역활동을 비판하는 각종 공시인(貢市人)들의 상소,³¹⁾ 세모법(稅帽法)의 철폐를 주장한 모자전인(帽子塵人)의 주장³²⁾ 등도 서울상인과 서로상인 간의 경쟁관계를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의주상인이 청나라와의 무역과 밀접히 관련된 상인이라면 동래상인은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성장한 상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동래상고(東萊商賈) 혹은 내상(萊商)으로 불린 이들은 동래의 왜관(倭館)을 무대로 하여 대일무역에 종사할 수 있는 증명서를 얻은 상인이었다. 따라서 동래상인 중에는 동래 출신 상인도 있었지만, 호조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얻은 서울상인과 개성상인도 있었다.

일본과의 개시무역에 독점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동래상인의 숫자는 처음에는 제한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동래상인의 수가 크게 늘어 그 폐단이 심해지자, 1678년(숙종 4) 왜관무역에 출입하는 상인의 숫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상고정액제(商賈定額制)가 실시되었다. 그 숫자는 대략 15~30명 내외였다. 왜관 출입이 허용된 상인에게에는 출입허가증과 같은 ‘물금패(勿禁牌)’가 지급되었다. 이 물금패를 가진 상인만이 왜관에 출입하면서 개시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으므로 이들을 물금패를 받은 수패상고(受牌商賈)라고도 일컬었다.

수패상고들은 도중(都中)이란 조합을 결성하고 있었다.³³⁾ 도중들 중에서는 동업자의 존재도 있고, 사무역 시장에 참가했다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사례도 있었다. 사무역에 참가하는 상인별로 무역규모가 달랐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도중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비 1,000냥을 내야 했다. 이 금액은 당시 다른 상인조직 가입금과 비교해보면 매우 많은 액수이다. 조선 후기 최대의 육의전(六矣廛)인 입전(立廛)이나 정부에 필요한 목재를 조달하는 공인(貢人)인 외도고(外都庫)의 가입금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로 생각된다.³⁴⁾ 그만큼 이익이 많았던 것이다.

2) 조선 인삼·일본은·중국 비단의 흐름

(1) 조선 인삼

‘만물(萬物)의 영장(靈長)’이 사람이라면, ‘온갖 풀 종류의 영장은 인삼’이다. 인삼은 ‘기사회생(起死回生)의 귀재(貴材)’로 불려온 신비의 약용 특산물이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신초(神艸)’ 혹은 ‘지정(地精)’이라 불려 온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오이씨에서 오이 나오고 콩에서 콩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인삼은 아니다. 고려인삼은 조선에서만 나고, 다른 데서는 나질 않는다. 인삼은 북위 30~40도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며, 인삼의 인공재배도 역시 같은 지역에서 가능하다. 그렇지만 중국의 운남성과 광서성 일대에서 생산되는 전칠삼(田七蓼: Panaxnotoginseng F.H.Chen), 미국·캐나다의 화기삼(花旗蓼: Panax quinquefolium L.), 일본의 죽절삼(竹節蓼:

30) 《비변사등록》105 영조 15년 4월 24일.

31) 강만길, 〈개성상인과 인삼재배〉 《조선 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32) 이철성, 〈18세기 후반 조선의 대청무역 실태와 사상층의 성장~모자무역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94, 1996 참조.

33) 정성일, 2000, 《조선 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34) 김동철, 1993, 〈19세기 우피무역과 동래상인〉 《한국문화연구》6,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Panax japonicus C. A. Meyer)과 고려인삼(Panax ginseng C. A. Meyer)은 서로 구분된다.

고려인삼이 다른 것과 구분되는 이유는 역시 효능 때문이다. 현대과학은 인삼의 약효가 사포닌(Saponin)이란 성분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사포닌이란 스페인어의 ‘거품’이란 의미의 말로써, 물과 알코올에 잘 녹고, 저을 때 생겨난 거품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성질이 있는데, 해독작용과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 등 다양한 효과를 내는 화합물을 통틀어 말한다.

그런데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 동북 3성 일대에서 생산되는 인삼에서 이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값도 전칠삼의 열 배, 화기삼의 두서너 배는 더 많이 받는다. 고려인삼을 달리 한국인삼으로 불러야 한다는 이유가 성립됨직하다.

옛날부터 장백산맥(長白山脈)과 태백산맥(太白山脈)은 다른 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신비의 영역 ‘산삼(山蔘)’이 생산된다고 알려진 지역이었다. 산삼의 고유명사 ‘삼’, 그것을 채취하는 사람 ‘삼마니’는 그래서 아직 우리 곁에 생생히 살아 있는 용어로 낯설지 않다.

산삼은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산출되었다. 그래서 《임원경제지》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영남과 호남에서 나는 것은 나삼(羅蔘), 관서·강원·강계 등에서 나는 것은 강삼(江蔘), 관북에서 나는 것은 북삼(北蔘)으로 구별한다고 했다. 인삼의 품질로는 나삼을 최고로 치고 영동·강계·함경지역 인삼을 그 다음으로 쳤다.

그러나 산삼의 산출량은 삼마니의 천운(天運)에 전적으로 기대야 했다. 당연히 사회적 수요에는 그 양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산양삼(山養蔘), 즉 산에 종자를 심어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캐내는 인삼을 생산하기도 했다. 산양삼은 이런 의미에서 자연삼과 재배삼의 중간적 범주

에 든다. 하지만 그 산출량에도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자연삼은 그 약효의 우수성 때문에 고대(古代)로부터 인삼상인에게 넘겨져 해외로 수출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인삼이 본격적인 무역상품으로써 경제적 비중과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이며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주요 무역품으로 등장했다.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약 100여 년은, 조선이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仲介貿易)으로 부를 축적하던 시기였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은 청나라와의 공식적인 외교채널이 끊어진 반면, 조선과는 1609년(광해군 1) 국교를 다시 열었다. 따라서 일본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의 대부분은 쓰시마 번을 통해 수입되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조선상인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단을 왜관에서 일본 상인에게 넘길 경우 약 2.7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런데 왜관을 통해 일본으로 넘어간 것은 중국 비단뿐만은 아니었다. 당시 일본이 수입한 최고의 히트 상품은 조선 인삼이었다. 일본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동의보감(東醫寶鑑)》을 비롯한 각종의 조선 의학서가 알려졌고 이에 따라 조선 인삼의 효능에 대한 인식도 한층 높아졌다. 당연히 조선 인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한 자료에서는 “일본의 풍속에는 어떤 병이든 인삼을 쓰게 되면 효험이 있다 하여 값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다투어 매입하려는 까닭에 서울에서 70냥이면 사는 인삼이 일본의 에도(江戶)로 들어가면 300여 냥 정도에 팔린다.”고 했다. 《성호사설》을 지은 이익도, “일본인의 풍속에 병이 생기면 반드시 인삼을 쓰니, 만약 무역을 막으면 죽을 각오로 다투어 사단이 일어날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교역을 허락하였다.” 했다. 조선 인삼에 대한 일본 사회에서의 열망이



인삼대왕고은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기에 당시 일본에서는 나이 어린 여인이 조선 인삼을 사서 제 아버지의 난치병을 고치기 위해 유곽(遊廓)에서 몸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만담이나 연극의 소재가 되었다고도 한다. 또한 인삼을 닮은 풀뿌리를 찾는 무리가 줄을 이어 가짜 인삼이 20~30종류나 나돌았는데, 약이 되기는커녕 생명에 위험이 되는 독초까지도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일본에서는 조선 인삼을 사들여 오기 위해 인삼대왕고은(人蔘代往古銀)이라는 순도 80%의 특주은(特鑄銀)을 만들었다. 조선상인들이 순도가 낮은 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일본 국내에서 통용되는 은화의 순도가 30% 내외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조선 인삼을 수입하려는 일본사람들의 각별한 노력을 잘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은 은을 교토에서 인삼대왕고은으로 주조한 후 쓰시마를 거쳐 왜관으로 가져와 조선 인삼과 중국물건들을 교환했다.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특주은, 즉 왜은의 양은 한해 11만 톤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으로 들어온 일본은화는 다시 조선의 특산품인 인삼과 함께 상인의 무역자금에 되어 다시 중국으로 건너갔다.

(2) 동북아시아 경제의 허브(Hub), 조선

청나라와 조선의 무역은 중강개시와 후시 및 사행무역이 중심이었다. 압록강은 강 가운데 여러 섬들이 있어 강줄기가 세 가닥으로 나누

어져 흘렀는데, 의주에 가까운 쪽부터 소서강(小西江)·중강(中江)·삼강(三江)이라 불렀다. 중강은 여기서 유래한 명칭이며, 교역이 열렸던 곳은 중강에 있는 어적도(於赤島)라는 섬이었다. 중강에서 조선이 수출한 물품은 소·다시마·해삼 등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정해지지 않은 물품은 교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강개시에서는 인삼·은·수달가죽 등이 몰래 밀거래 되었으며, 공식적 교역인 개시(開市)가 비공식적인 후시(後市)로 이어져 번창했다.

그렇지만 이 당시 조선 무역의 핵심은 역시 매해 3~4회 정도 파견된 조선 사신단이 청나라의 북경을 오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행무역이었다. 사행무역은 사행 과정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책문·심양·북경에서의 무역이 중심을 이루었다. 책문은 압록강으로부터 120리 떨어진 곳으로, 청나라측에서 변경에 쌓은 나무울타리가 둘러쳐 있어 변문(邊門) 혹은 고려문(高麗門)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곳은 조선 사신이 청나라에 출입국신고를 하던 장소이자 양국 상인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첫 장소이기도 했다.

책문에는 조선 사행이 오는 때를 맞추어 중국 각지의 상인들이 여러 물건을 가지고 몰려들었다. 그 중에는 산해관 동쪽 각 지방의 상인은 물론이고 남방상인들도 우가장의 바다를 통해 들어 왔으며, 북경상인들도 각기 물건을 싣고 책문으로 달려 왔다. 이곳에서 교역된 한번의 액수만도 은 4~5만 냥을 넘었으며, 교역품에는 정부가 인정하는 물건 뿐만 아니라 금지하는 물건도 많았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바로 여마제(餘馬制)와 연복제(延卜制)였다.

여마제는 사신 일행이 압록강을 건너 책문에 들어가는 중에 방물과 세폐를 실은 말이 혹 쓰러질 것에 대비하여 10여 태(駄)를 실을 정도의 말을 여분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의주부는 여마에 은 몇

냥을 받고 수를 제한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했고, 따라서 그 중에는 정부가 금하는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연복법은 원래 사행이 연경으로부터 책문에 되돌아올 때 의주부에서 빈말(空馬)을 보내 사행원역의 복물을 운송해 왔던 제도였다. 그러나 연복법은 점차 빈말의 입송(入送)을 기회로 하여 많은 은화를 책문으로 가지고 들어가 교역하고, 다시 사행의 짐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인마를 이끌고 돌아오는 대청교역의 한 방편이 되고 있었다.

심양에서의 교역은 조선사행이 1665년(현종 6)부터 심양을 거쳐 북경으로 가게 된 것과 관련이 깊다. 즉 청나라 정부는 심양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사행을 심양으로 돌아가도록 했고, 이에 조선 사행은 심양에 들러 방물의 일부를 이곳에 바치도록 되었다. 그리고 방물을 신고 온 사람과 말은 곧 귀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단련사는 바로 심양에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말을 이끌고 귀환하는 임무를 띤 관리였으며, 심양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관장하는 자였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임무를 역이용하여 일반 사상의 교역을 규찰하지 않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여러 날을 심양과 책문에 머물면서 마음껏 매매하고 그 짐을 심양에서 돌아오는 말에다가 신고 왔다.

북경에서의 무역은 조선사행단의 숙소였던 회동관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회동관 개시는 사신일행이 떠나는 것을 위로하기 위한 상마연(上馬宴)이 끝난 뒤에 청나라 예부에서 무역의 규정을 회동관 벽에 고시(告示)한 뒤 시작되었다. 고시 후 북경의 각 점포 상인들이 물건을 신고 회동관으로 들어왔고, 청나라 감시관의 감독아래 두 나라 상인들의 무역이 이루어졌다. 그때 무역한 물건이 어찌나 많던지 짐을 제대로 싸지 못해 사행의 출발 일정이 미루어지기까지 했다.

이렇듯 활발히 이루어진 조선과 중국과의 무역에서 조선상인들이

사들인 중국 물건, 즉 ‘연화(燕貨)’는 주로 백사(白絲)와 비단(緋緞)이었으며, 주요 결제수단은 인삼과 은화였다. 그리고 그 무역을 성사시킨 무역상인들은 역관과 서울상인도 있었으나, 개성상인을 비롯한 평양·의주·안주 지역의 상인들이 활약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개성상인은 의주상인과 중국무역에 있어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지목되고 있었고, 중국과의 주요 무역품인 가죽류와 종이류를 비롯한 여러 물품을 독점 장악하고 있었다.

서울상인과 개성상인은 이처럼 17세기 중엽에 조선 상업계에 거부로 존재하면서, 중국의 비단과 백사를 인삼과 은으로 결제하고, 다시 인삼과 중국산 비단을 일본에게 무역하는 조선 중개무역을 실현시키는 조선시대 거상(巨商)이었던 것이다.

(3) 산에서 캐는 ‘삼’, 밭에서 기르는 ‘가삼(家蔘)’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려는 일본 여인이 자신의 정절을 버려 맞바꾸려 했던 조선 인삼. 그러나 그 인삼의 산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연삼이 점차 고갈되어 갔던 것이다. 이는 인삼이 무역상품으로써 중국과 일본에서 각광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삼은 비록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지만 상인들이 북경과 동래로 옮겨 팔기 때문에 자연히 국내에서는 희귀하게 되었다.” “강계에서 캐낸 인삼은 모두 사상(私商)의 손에 들어가 북경으로 팔려나간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인삼 10분의 8-9는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위기의식이 요동쳤다.

인삼의 대량 채취와 수출이 계속되면서 국내의 인삼 품귀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인삼의 판매이익을 노린 상인들이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인삼을 매점매석 한 뒤에,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인삼

10근을 20근으로 만들고 100근을 200근으로 만들어 왜관으로 팔아넘기는 '위조인삼 제조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이에 18세기에는 나라 안에서 약용으로 쓸 인삼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인삼 품귀의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국내외의 높은 인삼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인삼 채취에 의존함으로써 자원이 고갈된 탓이었다. 따라서 조선 사회는 인삼채취 단계에서 인삼재배 단계로의 진입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삼 종자를 밭에 심어 재배하는 가삼(家蔘)이 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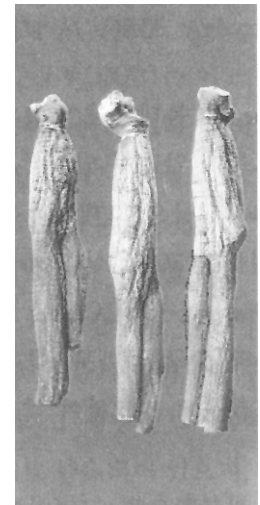
그렇지만 가삼이 과연 언제, 어느 지역에서, 누구에 의해 생산단계로 접어들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단지 인삼재배는 늦어도 18세기 초반에는 시작되어 18세기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18세기 후반에는 강계지방에도 삼포(蔘圃)가 권장될 정도로 성행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는 《중경지(中京誌)》란 책에 숙종(1675~1720) 때 현재의 화순지역인 전라도 동복현(同福縣)의 한 여인이 산삼의 씨를 받아 이를 밭에서 재배하는 데 성공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는 1710년대에 인삼재배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기록도 보이며, 당시에 이미 재배삼을 가공하는 방법까지 알려졌다고 추측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

이에 18세기 후반에는 “인삼재배가 성행한 후 경상도·강원도에서 중앙의 내의원으로 상납되는 인삼은 대부분 가삼이다.”라고 하거나 “영남은 예로부터 산삼(山蔘)이 나오는 지방이라고 했으나 근래 산삼이 점점 귀해짐에 따라 집집마다 인삼을 재배하는 것이 풍속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인삼재배가 성행했다.

그럼 과연 이 당시 인삼재배를 주도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들은

개성 사람들일 것으로 파악한다. 《중경지》에는 전라도 동복현에서 성공한 인삼재배 기술을 배워 전파시킨 사람은 최 아무개인데, 그는 개성사람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원래 인삼은 개성의 토산물(土產物)이 아니나, 중간에 개성 사람이 남쪽지방에서 인삼 씨를 얻어 삼포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가삼재배에는 전문화된 기술과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했다. 인삼은 생장에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전염병이 많아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작물



조선 홍삼

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삼재배업은 무엇보다도 숙련된 기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병해의 위험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만이 가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상의 모든 조건을 보상할 만한 이윤이 보장되어야 했다. 개성상인은 자본면에서 인삼재배의 위험부담률을 감당할 수 있는 세력이었고, 인삼의 대외무역을 그들이 주도함으로써 높은 수익률 또한 보장될 수 있었다.

가삼 재배가 성행하자 그에 대한 가공기술도 발전해 갔다. 4~5년 된 가삼을 밭에서 뽑은 것을 생삼(生蔘) 혹은 수삼(水蔘)이라고 했다. 그러나 생삼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 오래 보존할 수 없었다. 따라서 생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 건조시켰는데, 이를 백삼(白蔘) 혹은 건삼(乾蔘)이라고 했다. 하지만 건삼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부서지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

이는 자연삼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였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일찍이 크고 작은 인삼을 혼합하여 끓여 말리는 방법을 썼고,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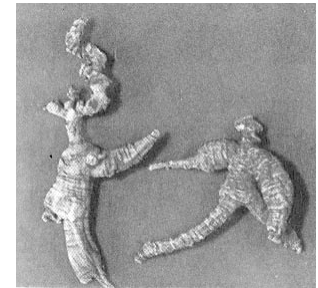
파삼(把蔘)이라고 했다. 조선에서는 양각삼(洋角蔘)이라 하여 몸체는 작으나 색깔이 희고 품질이 좋은 자연삼을 선호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파삼을 선호하였다.

인삼을 끓여 가공하는 방법은 17세기 이전부터 알려졌다. 그런데 인삼 재배가 시작되면서, 생삼 건조는 끓여 말리는 방식에서 찌서 말리는 증조(蒸造)의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즉 빈 공간에 시령을 만들어 그 위에 생삼을 얹은 다음 시령 밑에서 숯불을 피워 말렸는데, 이를 홍삼(紅蔘)이라 하였다. 그리고 홍삼을 만드는 장소를 증포소(蒸包所)라 하였다. 증포소는 처음에는 서울의 경강(京江)에 세워졌으나, 1810년(순조 10) 개성으로 이설되었다. 개성상인은 가삼의 생산, 홍삼의 제조, 그것의 국내 유통을 장악할 위치에 서게 되었으며, 이를 대외무역으로 확장시켜 나갔다.

18세기 중반 이후 개항 이전까지 홍삼 수출의 주 대상 국가는 청나라였다. 일본과의 인삼무역이 쇠퇴한 이유는 우선 청나라와 일본의 직교역을 들 수 있다. 1687년 일본의 나카사키에 청나라의 상관(商館)이 설치되면서, 동래의 왜관으로 들어오는 일본상인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막부가 중심이 되어 인삼재배에 성공함으로써 인삼의 국내소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우수한 조선 인삼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았으나, 조선과의 무역은 예전 같지 않았다. 반면 조선의 홍삼은 당시 중국 요동 지역 인삼의 절종상태와 맞물려 급속히 확대되었다. 물론 이때의 홍삼무역은 조선정부가 인삼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묶어 두고 있었으므로 밀무역의 형태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러나 조선정부가 홍삼무역을 국가재정의 재원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홍삼무역이 공인된 것은 1797년(정조 21)이었다.

한번 홍삼의 공식적인 무역길이 열리자 무역량은 불과 50여 년 만에 실시 당초 120근에서 40,000근까지 늘어났다. 19세기 초 조선에서 홍삼 1근의 공식 가격은 천은(天銀) 100냥이었다. 이는 조선정부 공식 쌀값으로 따져 60~80석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적게는 은 350냥에서 많게는 은 700냥에 팔려 나갔다. 3.5배에서 7배 정도의 이윤이 남는 장사였다. 홍삼무역으로 정부가 거두는 세금만도 20만 냥에 이르러, 취약한 조선정부의 재정을 확충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대원군이 군비확충을 위해 홍삼무역을 활용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홍삼은 19세기 조선경제를 유지해간 조선시대판 반도체 칩이었던 것이다.



아메리카 산 인삼 모습

조선의 홍삼무역을 처음 주도한 상인은 역관과 서울상인이었다. 그러나 무역의 주도권은 가삼생산과 홍삼제조를 독점하고 있던 개성상인과 그들의 협력자인 의주상인에게로 넘어갔다. 조금 후대의 기록이긴 하나 1896년 개성지방 삼포 경작 비율은 전국의 47%를 점유할 정도로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다. 개성부근의 금천(金川)·장단(長湍)·풍덕(豐德) 등을 합하면 그 비율은 92%를 넘어선다. 증포소가 개성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도 이런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당연히 홍삼무역도 생산을 장악하고 자본력을 지닌 개성상인과 대청무역권을 지니고 있었던 의주상인이 주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개성상인의 주도로 생산된 가삼을 재료로 개성에서 제조된 홍삼의 효능과 명성은 중국에만 알려진 것이 아니었다. 서양에서 인삼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고조된 것은 18세기에 들어와서이다. 중국에 들어

와 있던 한 예수회 선교사가, 중국에서는 귀중한 약초로 알려져 있으나 유럽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삼 한 뿌리를 그림으로 그리고 인삼의 생태와 효능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 책을 본 캐나다의 프랑스인 선교사가 아메리카 인디언의 도움으로 곧바로 인삼을 찾아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캐나다와 아메리카에서는 인삼 채취의 붐이 일게 되었다.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산 인삼은 이미 1715년경부터 중국으로 막대한 양이 수입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인삼의 명성은 미국삼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고, 홍삼무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1840년대 영국산 아편으로 골머리를 앓던 중국에서는 조선홍삼이 아편해독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이런 이유로 조선의 홍삼 수출량은 1840년대와 50년대에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서해상에서 이양선과의 홍삼밀매가 성행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성홍삼’은 자연삼 ‘개성인삼’의 뒤를 이어 조선 인삼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2. 조선 전기 대외무역

1) 중국과의 무역

(1) 15세기 명나라와의 무역

조선은 건국 이후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정책(事大政策)을 펴는 한편, 왜(倭)나 여진(女眞)에 대해서는 교린정책(交隣政策)을 펼쳐 왔다. 이를 두고 조선과 명(明)·청(淸)의 사대외교를 ‘전형적 조공관계’로 유형화하기도 한다.³⁵⁾ 그러나 조선은 조공체제 속에 피동적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실리적 외교지향성을 띠고 있었다.³⁶⁾ 조선은 15~16세기 명(明)과의 사대외교를 통해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실리를 추구하고, 조선-여진·조선-왜(倭)라는 교린정책을 통해 사회적·군사적 안정을 얻었다. 즉 조선이 명에 표현한

35) 全海宗, 1970, 《韓中關係史研究》, 일조각.

36) 박원호, 2002, 〈15세기 東아시아의 정세〉 《明初朝鮮關係史研究》, 일조각.

조공진상의 의미와 일본에 대한 예단증급은 실제로는 문화·경제적 현상으로 해석해야 한다. 조선의 사대교린 정책의 존립기반도 어쩌면 이러한 실리성과 능동성의 전제 위에 있었던 것이다.

조선과 명나라와의 무역 형태는 조선의 조공(朝貢)과 명나라의 회사(回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공무역, 관아의 필요한 물품 구입이 주가 되는 공무역, 관원 및 상인들의 사무역 및 관무역, 사무역의 기회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밀무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공과 회사는 조선 건국 초기 명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었다. 조선정부는 명나라와의 조공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몇 차례의 정기 및 임시 사행을 보내고, 명나라에서는 수시로 특별한 목적을 띤 사절을 보내왔다.

조선 건국 후 명나라는 태조 이성계 등극에 따른 금인(金印)과 고명(誥命)을 보내지 않았으며, 정조(正朝) 표전(表箋)의 표현을 문제삼는 등 조선과 불편한 외교관계를 형성했다.³⁷⁾ 이에 명나라는 정치경제적 문제를 고려하여 ‘삼년에 한 차례 사신이 들어가는 삼년일공(三年一貢)’의 원칙을 결정했다.³⁸⁾ 그러나 실리를 추구했던 조선정부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행을 정기적으로 보냈다.

즉 조선에서는 정조사(正朝使)·성절사(聖節使)·천추사(千秋使) 등 세 차례 정기사행과,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보내는 사은사(謝恩使), 특별한 요청을 하기 위한 주청사(奏請使), 보고나 해명할 일이 있을 때 보내는 주문사(奏聞使), 명황실 경사에 파견하는 진하사(進賀使), 명황실의 상사(喪事)가 있을 때 파견하는 진위사(進慰使) 등 각종 명목의 임시사행을 명나라로 파견했다.³⁹⁾

37) 강성조, 1981, 〈초기 조·명간의 공무역고〉 《관대논문집》1

38)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9월 갑신



조천도

명나라로 가는 사행은 조천사(朝天使) 혹은 부경사(赴京使)라 불렀다. 조선의 사절은 정사·부사·서장관·통사·군관·의관 등의 정관(正官)과 마부(馬夫)·노자(奴子) 등의 종인(從人)으로 구성되었다. 정관은 8~9명 정도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40여 명에 이르렀다. 정사와 부사는 대개 2품 이상의 문관 대신이 맡았으며, 사행일행을 총 감독하는 서장관은 6품 문관으로 주로 사헌부 감찰이 임명되었다. 통역을 맡은 통사는 상통사(上通事)·잡학통사(雜學通事)·타각통사(打角通事) 등의 구별이 있었다. 그 밖에도 사행을 호위하는 군관 5~6명과 일행의 건강을 위한 의원이 2명 정도 있었다. 정관 이외 마부, 노자 명색을 띤 30명 정도의 종인이 있어 사절단의 규모는 대략 70명 안팎이었다. 그러나 사절이 왕래할 때에는 평안도에서 차출된 250명에서 400명에 호송

39) 《통문관지》 권3, 사대.

군이 의주로부터 요동도사까지의 구간에 호송의 책임을 맡았으므로 그 규모는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⁴⁰⁾ 특히 이 과정에서 조선 후기 단련사 후시나 책문후시와 같은 무역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조선 사절은 요동과 요서의 정세가 안정되었을 때는 육로를 이용하여 명의 수도에 왕래했으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해로를 이용하기도 했다. 원의 세력이 남아 있던 14세기 말과 명말청초 혼란기인 17세기 초에는 그래서 해로를 이용했다. 또한 세종 3년(1421) 명나라가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하기 전에는 해로가 더 편리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북경천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자연스레 육로가 기본 사행로가 되었다.

명의 사신도 조선으로 왔다. 보통 칙사(勅使)로 불리는 이들은 명황제의 조서나 칙서 또는 예부자문이나 요동자사 자문을 가지고 왔다. 명나라 사신은 조선 국왕·왕비·왕세자를 책봉하거나 고명(誥命)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우마의 교역과 처자나 매의 진헌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칙사의 파견은 조선 전기 연평균 1.13회로 조선이 명으로 파견하는 사신의 빈도에 1/6도 되지 않았다.⁴¹⁾ 이 과정에서 조공무역을 비롯한 각종 무역이 일어났다.

조선의 사행은 북경의 동평관(東平館)에서, 명나라 사행은 서울 남대문 안 태평관(太平館)에서 유숙하며 무역을 했다. 그러므로 이를 각기 동평관무역, 태평관무역이라 부른다. 조선과 명과의 조공무역과 공무역은 세종 12년(1430) 조선이 명나라에 바쳐왔던 금·은의 세공(歲貢) 면제가 큰 분기점을 이룬다. 즉 금은세공 면제 이전까지 조선은 명나라에 금은으로 만든 그릇(金銀器皿)·자개로 만든 빗집(螺鈿梳函)·

흰명주(白綿紬)·갓가지 모시(各色苧布)·용무늬가 그려진 발과 방석(龍文簾席)·갓가지 잔무늬 돛자리(各色細花席)·표범가죽(豹皮)·수달 피가죽(獺皮)·죽제비 꼬리털로 만든 붓(黃毛筆)·흰종이(白綿紙)·인삼(人蔘)·씨받이말(種馬) 등을 조공품으로 보냈다. 물론 이상의 조공품은 임시사행 때도 보내졌다. 이처럼 조선이 각종 물품을 조공품으로 보내면, 명은 그에 대한 답례물로서 '상사(賞賜)' 또는 '사여(賜與)'라는 명목으로 각종 비단(綵段)·자기·약재·예복·서적·악기·보석·활을 만드는 재료인 소뿔(弓材牛角)·문방구 등을 조선에 보냈다.

그런데 조선의 조공품 가운데 명나라에 바치는 금은 세공은 매년 금 150냥과 은 700냥에 이르러 조선정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에 조선정부는 금은 세공을 면제받기 위한 외교적 절충을 시도하여, 마침내 1429년(세종 11) 금은 세공을 소·말·면포 등으로 대신 바치게 되었다. 이로써 1430년(세종 12) 2월 이후 명나라로 가져가는 조공품 중에는 금·은이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흰모시(白苧布) 4필·삼베(麻布) 254필·갓가지 꽃무늬가 새겨진 돛자리(滿花席) 23장·갓가지 꽃무늬가 새겨진 방석(滿花方席) 30장·누린 국화꽃 무늬가 새겨진 돛자리(黃花席) 40장·꽃무늬가 새겨진 돛자리(彩花席) 25장·인삼(人蔘) 40근(觔)이 증가되고 말 84마리·명주 100필 등이 새로 공물 품목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로써 조선과 명 사이의 조공무역은 안정기를 맞았고, 동시에 공무역과 사무역도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전기를 맞이했다. 불법적인 밀무역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세종 5년 공조참의 이양(李揚)은 사신의 일원으로서 저포와 마포 44필과 초피 60장 등 규정 이상의 물품을 지니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또 자신의 하인 손석(孫錫)을 시켜 저포와 마포 237필, 초피 200장, 인삼 12근, 진주 2냥을 가지고 가도록 했다.

40) 박원호, 1995, 〈명과의 관계〉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41) 박원호, 위의 글(1995), 3000쪽 및 이현종, 1961, 〈명사절대고〉 《향토서울》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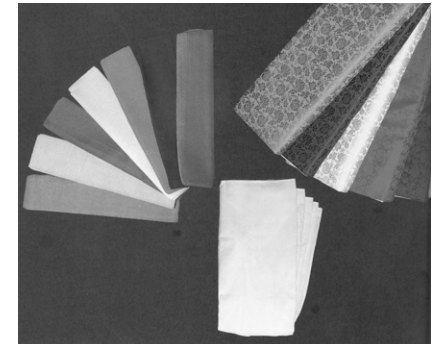
그러나 조선 전기 무역은 역시 조공무역과 관무역이 중심을 이루었다. 사무역과 밀무역은 관청에서 필요하거나 공인된 정도에서 일어나는 정도였던 듯하다.

(2) 16세기 사무역 발전과 은무역

16세기는 조선이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⁴²⁾ 지주제가 발전함으로 인해 농사지을 땅을 잃은 농민들이 상업인구로 전환했다.⁴³⁾ 농업에서의 이윤은 적은 반면 상업의 이윤은 많아, 농촌 장시와 서울 시전에 상인들이 넘쳐났다.⁴⁴⁾ 상업인구의 증가는 유통시장의 발달로 이어졌고, 이는 부상대고들이 출현하는 배경이 되었다. 공물제도의 모순도 상업발달을 촉진했다. 공물 수취과정상 방납의 폐단이 그것이다. 공물은 산출되지 않는 물건이나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라든가 현물로 바쳐야 했다. 따라서 중간 상인들이 농민들에게 돈을 받고 대신 물품을 구입하여 정부에 바치는 과정에서 폐해가 생겨났다. 방납의 구조에는 권력자와 수령, 이서 등이 참가했으나, 중국에는 상인 세력과 결합함으로써 폐단이 일어났다. 이렇듯 16세기 국내상업이 발달하고 상인들이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자, 해외무역도 성격을 달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15세기 조공무역과 공무역 중심의 무역체제가 16세기 사무역 중심체제로 전환되어간 것이다.

16세기 사무역 발달은 사치풍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연산군의 학정과 정치기강 문란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

러나 당시 지주제 발달에 따른 농업생산력 증대와 상업발달에 따른 잉여 창출이 그 기반이 되었다. 중종은 사치풍조를 억제하고 검약생활을 장려하는 ‘억사숭검(抑奢崇儉)’ 정책을 강도 있게 펼쳤으나, 사무역을 통한 사치품 교역을



명주·무명·비단

막을 수는 없었다. 사회적 수요가 밀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명나라와의 무역에서 공무역은 약재(藥材)·궁각(弓角)·서책(書冊)·장복(章服) 등이 중심이었다. 사무역에서는 백사(白絲)·백저포(白苧布)·사라능단(紗羅綾緞) 등의 직물류와 주취(珠翠)·보패(寶貝)·산호(珊瑚)·마류(瑪瑙) 등의 보석류가 대부분이었다. 이 중에서도 사무역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사라능단이라고 불리는 중국비단이 있었다. 사라능단은 공무역에서도 중요한 품목으로 국초부터 한정된 양만을 수입하여 왔었다. 이 화려한 비단은 상의원(尙衣院)의 어의(御衣)·관패(冠佩), 제용감(濟用監)의 제향(祭享)에 필요한 용구, 의장(儀仗), 내수사 내인(內人)들의 풍정(豐呈)·곡연(曲宴)이 있을 때 입는 관복 등에 필수적으로 쓰였다. 또한 당상관 이상 관원의 평상복은 사라능단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궁중의 대비, 중궁과 내외명부들의 의상에도 고급비단은 필수 품목처럼 소용되었다.⁴⁵⁾

이전 시기 공무역에 의해 한정된 수요에만 충당되었던 사라능단은 이제 일반 복식 및 혼수에서도 수요가 급증하였다. 한 자료는 당시의

42) 강만길, 한상권, 1983, 〈16세기 대중국 사무역의 전개〉 《김철준박사화갑기념논총》.

43) 이경식, 1979, 〈16세기 지주층의 동향〉 《역사교육》19.

44) 《중종실록》 권21, 중종 9년 11월 갑인.

45) 한상권, 위의 글, 456~457쪽.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혼인 때 사치가 너무 심하여 혼기를 앞둔 집안은 혼수의 경쟁에 여념이 없다. 포물(布物)을 가지고 은량(銀兩)과 교환한 다음 역관들에게 요청하여 중국 물품을 구입해 오도록 하는데, 무역품을 공공연히 신고 오는 것이 마치 관무역과 같다.”⁴⁶⁾ 고위관료뿐만 아니라 서민층에서도 사치품의 수요는 확대되었다. “쌀 한 섬의 저축도 없는 사서인(士庶人)까지도 다투어 사치한 일을 본받아 혼인과 상사·장례에 분수에 지나친 참람한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혼인하는 자는 비단과 금옥이 아니면 사용하지를 앓고 상사나 장례를 치르는 자는 유밀과(油蜜果)로 차린 성대한 제수가 아니면 제사 지내려 하지 않으면서, 다투어 아름답게 보이는 것만을 숭상함으로써 귀한 물건을 부질없이 낭비하고 있다.”⁴⁷⁾ 이에 집이 가난하면 제때에 시집가지 못하고 장사도 기한 안에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사회적 수요에 따라 상인들은 은(銀)을 주고 중국물품을 수입하는 사무역 활동을 활발히 전개시켰다.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상들이 수입하는 물품은 사라능단과 같은 채단(彩緞)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비단의 원료인 백사도 다량 수입되었는데,⁴⁸⁾ 이는 염색업과 직조업이 발달할 수 있는 단초를 열은 것이기도 했다.

상인들의 무역 결제 수단은 금·은·철이었다. 은은 분량이 적어 휴대에 간편하고, 이익이 많아서 사상들이 즐겨 사용했을 뿐 아니라, 지정은제가 시행되고 있던 명나라에서는 은으로 결제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국초부터 명에 은과 금을 세공으로 받쳐야 했던 조선에서는 1429년(세종 11) 금과 은의 세공이 폐지된 이후에도 금은광 개발에 적극적

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무역 증가와 은의 밀반출이 늘어나자, 부상들은 은광을 개발하여 몰래 은을 캐는 잡채를 감행했다.

채굴된 은광석을 취련하여 은을 생산하는 것은 숙련된 기술과 장비를 필요로 했다. 이에 부상대고들은 그들의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잡채를 감행하는 한편, 이 은을 사행원역과의 결탁 하에 대명무역자금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지금은 은이 이전보다 더욱 귀해졌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중국에 가는 통사들이 은을 많이 지니고 가서 무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비록 은을 산출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⁴⁹⁾라는 보고가 나올 지경이었다.

부상이 은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루트는 일본과 무역하는 것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에서 은제련술이 전래되어 산출량은 늘어난 반면, 명의 해금정책으로 관로가 막힌 상황이었다. 자연히 중국에서는 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반대로 조선에서는 은의 유출량이 늘어났다. 이에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1540년대를 전후해서는 일본은이 대량으로 조선에 유입되었다.⁵⁰⁾

사상들이 얻은 은의 대부분은 대중국 사무역에 재투자되었다. 이에 장령 유관(柳灌)은 “우리나라에는 은을 산출하는 곳이 많습니니다. 그런데도 시가(市價)가 뛰는 것은, 모두 중원에 내다 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단천(端川)에서 은이 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사는 자가 단천에서 평안(平安)까지 다니기 때문에 마침내 큰 길이 되었고, 단천으로 모이는 중국 물화는 서울과 다름이 없을 정도입니다. 대체로 북경에 가는 사람들이 갈 때는 모두 가벼운 차림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가지고 오는 것이 매우 많은데, 이는 그들이 몰

46) 《중종실록》 권94, 중종 35년, 12월 기사.

47) 《중종실록》 권59, 중종 22년 7월 기축.

48) 《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 5월 기유.

49)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8월 병오.

50) 한상권, 〈위 논문〉, 468쪽.

래 금은을 가지고 가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⁵¹⁾ 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공무역을 담당해야 할 통사(通事)가 사무역에만 진력하고 공무역은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역관과 의원들은 공무역품을 중간에서 횡령하고 관아에 납입치 않기도 했다. 중국으로 가는 사행시 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은화가 3,000냥 이상이 된다고도 했다.⁵²⁾ 이는 중종대 단천에서 매년 진상하는 은화가 600냥에서 1,000여 냥에 지나지 않았던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⁵³⁾ 이로써 16세기 중반 사무역은 공무역에 부수된 무역형태를 탈피하여 중국무역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16세기 대명 사무역을 이끈 사람들은 통사(通事)·군관 등 부경사행의 관원이었다. 자금면에서 이들이 독자적인 무역활동을 펼칠 수는 없었다. 은화의 밀반출과 고가 물품 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자금주의 후원이 필요했다. 이에 권력층과 결탁된 사무역이 전개되었으며, 이는 중종·명종대 척신(戚臣) 정치가 시행되면서 본격화된다.

한편 사무역에는 자본력을 갖춘 상인세력도 참여했다. 서울상인을 필두로 개성상인, 의주상인, 평양상인 등이 사무역에 참여한 것이다. 부상들은 무역품의 판로까지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은 사무역을 통해 더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무역을 비호해 줄 권력자들과 다시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상인층의 대중국 사무역이 특권세력에 기생하는 형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상업자본의 축적과 상인층의 성장을 기다려야만 했다. 17세기 중엽 이후 상인들이 사무역에 대한 조선정부의

공인을 이끌어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아직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2) 일본과 여진과의 무역

(1) 일본과의 무역

조선은 건국 이후 왜구의 금압을 위해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에 사신을 수차례 파견하여 왜구의 금압, 피로인의 쇄환을 요구하는 한편 수호(修好)할 것을 요청하는 등 대일외교에 적극성을 띠었다. 그러나 막부장군이 아직 외교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선은 무로마치 막부와 함께 다른 지역 호족들과도 교섭하는 다원적인 외교를 펼쳤다.

그런 중에 조선과 일본과의 외교체제 정상화에 큰 계기가 되는 는 1404년(태종 4)이었다. 1403년 명 중심의 책봉체제를 받아들인 무로마치 막부의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가 ‘일본국왕’을 칭하며, 태종 4년 사승(使僧) 주상(周裳)을 조선에 파견한 것이다. 이후 조선에서는 아시카가 요시미츠를 일본 외교권의 주체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곧바로 조일 외교체제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외교체제는 대마도 정벌과 같은 강력한 왜구진압정책과 함께 회유책의 일환으로서 교역 통제책과 세건선(歲遣船), 조빙옹점 규정 등이 마무리되는 1420년(세종 2)에야 완비되었다.

교역 통제책으로는 수도서제(授圖書制)·서계·행장·노인·문인 제도의 정비를 들 수 있다. 도서(圖書)는 통교를 증명하는 용도로 만들어 준 인감이다. 도서를 받은 일본인을 수도서인이라고 했는데, 조선

51) 《중종실록》 권26, 중종 11년 8월 병자.

52) 《중종실록》 권93, 중종 35년 7월 갑인.

53) 한상권, 위 논문, 475쪽.

에 올 경우 서계에 이 도서를 찍어 증명했다. 수도서인은 공식적인 교역권을 인정받았고, 세건선도 인정받았으므로 신청자가 쇄도했다. 성종 2년(1471) 이 도서를 받은 일본인은 모두 32명이었다. 서계는 일본인 통교자가 조선정부로 보내는 외교문서이다. 그런데 1420년(세종 2)부터 조선정부는 대마도주와 구주탐제(九州探題)의 서계만을 인정함으로써, 이들의 서계가 없으면 사송선으로서의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대마도주와 구주탐제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을 통해 도항(渡航)한 일본인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런데 서계를 위조하거나 개서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조선정부는 서계 외에 문인을 요구하게 되었다. 문인은 도항증명서로, 선박의 크고 작음과 사자(使者)와 선부(船夫)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 원래 도항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거주지의 호족이 발급한 행장(行狀)이 있었고, 일본인과 여진인으로 통교를 위해 온 사람에게 발급하는 노인(路引)이 있었다. 이것을 세종 20년 대마도주에게만 문인발급을 인정해 줌으로써 일본 국왕사와 일부 거추사(巨酋使)를 제외한 모든 통교자는 대마도주가 발급하는 문인을 가져야만 접대를 받고 교역할 수 있었다. 문인 발급의 단일화는 조선측으로서는 통교 일원화를 위한 효과적인 통제책이었다. 또 홍리왜인, 판매왜인, 상왜 등으로 불리던 일본 무역상인들은 서계와 문인 등의 규제책으로 인해 형식상 사송왜인으로 전환되었다. 반면 대마도주는 서계와 문인 발급권을 이용하여 대마도내 지배권을 장악하고 문인발행에 따른 수수료의 수취, 교역물품에 대한 과세를 통해 대조선 통교 무역의 독점적 권한과 이익을 향유했다.

그러나 도항자에 대한 이상의 여러 통제책은 대마도주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조선정부의 통제가 불가피하게 따라야 했다. 1443년(세종 25) 계해약조(癸亥約條)를 기초로 정리된 세

건선 정약(定約)은 입국선박 즉 사송선의 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대일 통교체제의 틀을 마련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국대전》에는 1년에 입국선박 수가 220척에 이르고, 입국왜인 수가 5,500명 내지 6,000명, 무역을 제외한 순수접대비용이 1만여 석에 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⁵⁴⁾

세건선의 정약과 함께 승선인원수, 체류기간, 접대방식도 규정되었다. 즉 조선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오는 사송인은 일본국왕사·거추사(巨酋使)·구주탐제사(九州探題使) 및 대마도주 특송사·제추사(諸酋使) 4등급으로 나누어 접대했다. 일본 국왕사는 무로마치 막부의 장군이 보낸 사절이고, 거추사는 대내(大內)·소이(小貳) 등 서국지역의 대호족, 전산(畠山)·세천(細川)·사파(斯波) 등 막부의 3관령(管領), 경극(京極)·산명(山名) 등 유력 수호대명(守護大名)의 사절이 여기에 속한다. 제추사는 일본본토와 대마도 등 소호족, 수직인·수도서인의 사절과 홍리왜인들이 이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세건선 정약을 축으로 사송선의 통제책이 계통적으로 운영되고, 이에 따르는 접대규정 및 여러 제도가 갖추어져 성종대 초기에는 일본 국왕사 이하 모든 통교자가 통일적으로 체계화되었던 것이다.⁵⁵⁾ 그런데 여러 종류의 사송인의 주된 목적은 조선과의 경제적 교역이었다. 따라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자는 조선으로부터 접대가 허용된 자, 즉 일본국왕사, 거추사, 구주탐제사, 대마도주사, 수도서인, 수직인과 기타 문인 소지자였다.

조선 전기의 대일교역은 쌍무적인 교역이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일본인들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 전개되었다. 일본측 통교자들은 사행

54) 이현종, 1964, 《조선 전기 대일교섭사 연구》, 한국연구원.

55) 하우봉, 1995, 《일본과의 관계》 《한국사》22, 국사편찬위원회, 380~386쪽.

의 명목에 관계없이 모두 교역에 적극적이었다. 이에 반해서 조선측은 순수한 사절이나 왜구(倭寇) 금단(禁斷) 정책의 목적 하에 정치적 필요에서 부수적으로 교역을 하였다. 따라서 교역면에서 보면 조선은 수동적·소극적이었고 일본측은 능동적·적극적이었다.

교역의 유형은 크게 사행무역·공무역·사무역·밀무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행무역은 일본 국왕사와 사송왜인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형태로서 진상과 회사라는 사행의례에 준한 무역이었다. 사송왜인들은 입항시 외교사절의 자격으로 경상도관찰사가 보내는 차사원의 접대를 받았으며, 상경이 허락되면 한양의 동평관에 도착한 후 조선국왕을 배알하고 진상과 회사의 절차에 의해 물품을 교환하였다. 일본의 진상품은 은·구리·납·유황·칼·철기·갑옷·병풍·연적 등과 동남아시아산 소목(蘇木)·후추(胡椒)·침향(沈香)·장뇌(樟腦)·코뿔소뿔(犀角)·수우각·상아 등이 대표적인 품목이었다.

공무역은 정부가 관용 물품으로 교역하는 형태로, 세종 초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구리·납·소목·후추 등을 대상으로 시작된 것이다. 공무역은 물품의 교환비율이 정해져 있었다. 구리의 경우 상품(上品)은 2근 반에 면포 1필, 하품(下品)은 4~5근에 1필 정도였다. 황금은 1냥에 면포 30필 정도였다.⁵⁶⁾ 수입품의 값은 대개 면주(綿紬)·정포(正布)·면포를 지급했다. 그러나 15세기 중반 이후에는 면포의 생산량이 늘고 일본측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면포의 수출량이 점차 증가했다.

사무역은 조선관리의 감독 아래에 포소(浦所)와 서울의 동평관, 경상도 화원현(花園縣)에 있는 왜물고(倭物庫) 등의 장소에서 조선상인과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수입품은 구리·납·은·금·유황

이나 단목·주홍·침향·후추·코뿔소뿔 등 남방물자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구리였다. 수출품은 쌀·콩·면포·마포·면주·인삼·호피·표피였다.

밀무역은 공무역과 사무역 이외의 불법적 무역이었다. 밀무역품은 주로 금·은 등의 제품이었는데, 사무역을 할 때나 혹은 규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공·사무역에 비하면 이윤이 월등하였기 때문에 당국의 엄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으며, 심지어는 중앙의 관리나 통사를 끼고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에서 거래된 물품을 보면, 구리는 놋그릇·무기·화폐·활자 등의 제조에 소요되었는데, 국내 수공업과 연계되는 재료였다. 유황도 약재와 화약재로서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수입 물종이었다. 소목은 심홍색의 고급염료로서 종묘의 채색과 관복의 염색에 사용되던 물품이었다. 후추도 약재 내지 조미료로서 귀족들의 수요가 높았다. 이밖에 금·은·납 등의 광산물과 대도(大刀)와 환도(環刀) 등의 공예품 및 각종 염료와 약재가 수입되었으며, 물소뿔·무기·상아 등 군기품 내지 장식품도 교역되었다.

조선이 화사(回賜) 내지 교역의 대가로 지불한 물품은 마포·명주·목면 등의 섬유제품과 쌀·콩 등 곡물이었다. 이밖에 화문석·호랑이가죽·표범가죽 등 장식품, 인삼·꿀·오미자 등의 약재·대장경·서적·문방구 등도 있었다. 이 가운데 목면은 특히 일본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생활필수품이었기 때문에, 계해약조 이후에는 조선측의 주된 대일수출품이 되었다. 이에 15세기 중반 이후에는 매년 수만 필에서 수십만 필의 목면이 일본으로 수출되었는데, 1486년(성종 17)에는 한 해 유출된 목면량이 50만 필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일본으로 수출된 조선목면은 일본인의 의생활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되어질

56) 김동철, 1996, <국제교역의 발달과 마찰> 《한국사》28, 국사편찬위원회 119쪽.

정도로 중시되었다.⁵⁷⁾ 한편 쌀과 콩도 주요한 수출품 중의 하나였다. 물론 세종대 중기 이후에는 쌀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대마도·일기도에만 세사미두(歲賜米斗)의 형식으로 하사되었다. 그러나 쌀은 목면과 함께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물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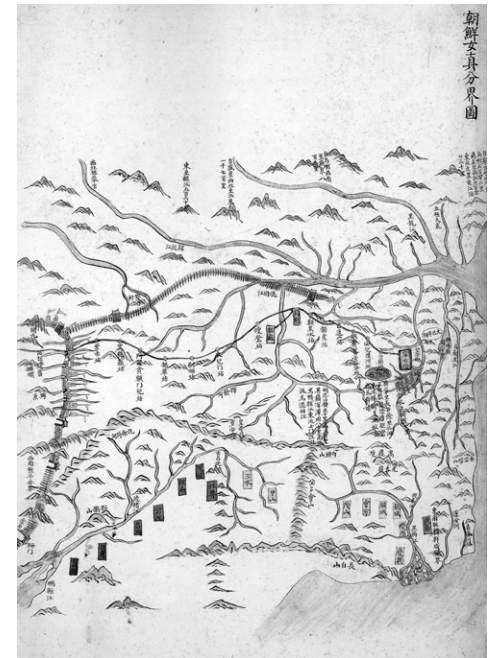
조일무역의 일본측 담당지는 동남아 교통로를 장악하고 일본 국내 시장과의 연계가 유리한 하카다[博多] 상인들이 중심이 되었다. 동남아—유구(琉球)—용마(薩摩)—하카다[博多]—대마도(對馬島)—조선(朝鮮)의 루트가 남방무역의 주요 통로였다. 하카다상인들이 일본·명·조선·유구를 연결하는 국제적 무역이라면 대마도는 기생적인 성격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대마도 중시책으로 점차 대마도 상인들이 대조선 교역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하여 16세기 후반에 이르면 도서의 대부분을 대마도인이 가지게 되었고, 대조선 무역선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대마도주 중씨일족이 차지하게 되었다.⁵⁸⁾

(2) 여진과의 무역

명의 분리 통치 정책 아래서 여진족(女眞族)은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셋으로 구분되었다. 목단강(牧丹江) 유역과 장백산(長白山) 일대(현재 길림(吉林) 돈화현(敦化縣))에 거주하는 여진은 건주여진(建州女眞), 송화강(松花江) 유역(현재 심양(瀋陽) 동북부에 거주하는 여진은 해서여진(海西女眞), 그리고 흑룡강(黑龍江)과 우수리강(烏蘇里江)이 송화강과 합류하는 흑룡강 일대의 여진은 동해여진(東海女眞) 혹은 야인여진(野人女眞)으로 칭하였다. 이들은 점차 남쪽으로 이동했는데 야인여

진은 흑룡강 하류일대로, 건주여진은 소자하(蘇子河)와 파저강(婆猪江)[현재 혼하(渾河)] 유역으로, 해서여진은 요령성(遼寧省) 개원(開原) 근처로 이주하였다.

야인여진은 농경에 경험이 거의 없는 수렵생활을 주로 했던데 비해, 해서여진은 수렵을 주로 하면서 농업을 병행하였는데 여허(Yehe: 葉赫)·호이파(Hoifa: 輝發)·하다



조선-여진 분계도

(Hada: 哈達)·울라(Ula: 烏拉)의 해서 4부로 지칭되기도 했다. 건주여진에는 두 명의 추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명에 귀부하여 건주위(建州衛) 지휘사(指揮使)에 임명된 아하추(Ahachu: 阿哈出 = 李誠善)였고, 다른 하나는 건주좌위(建州左衛) 지휘사에 봉해진 몽거테무르(Monge Temur: 猛哥帖木兒 = 猛特穆)였다. 그런데 세종15년(1433) 몽거테무르가 야인여진에게 살해되자 명은 그의 동생 범찰(凡察)을 건주우위 지휘사로, 둘째아들 동산(董山 = 董倉)을 건주좌위 지휘사로, 아하추의 손자 이만주(李萬柱)를 건주위 지휘사로 봉함으로써 건주삼위(建州三衛)가 정립하게 되었다.⁵⁹⁾ 이 건주여진은 이미 우경과 철제 농기구에

57) 하우봉, 위의 글, 397~399쪽 참조.

58) 하우봉, 위의 글 398쪽.

59) 任桂淳, 《清史》, 신서원, 2000, 21~28쪽; 金斗鉉, 《清朝政權의 成立과 發展》(講座 中國史 IV), 지식산업사, 1989, 143~158쪽 참조.

의한 농경생활에 익숙해 있었다. 조선과 건주여진은 1467년(세조 13)과 1479년(성종 10) 건주위 토벌 이후 오랫동안 문제없이 지냈다.⁶⁰⁾ 그것은 전적으로 조선정부가 교린정책으로 여진족을 회유무마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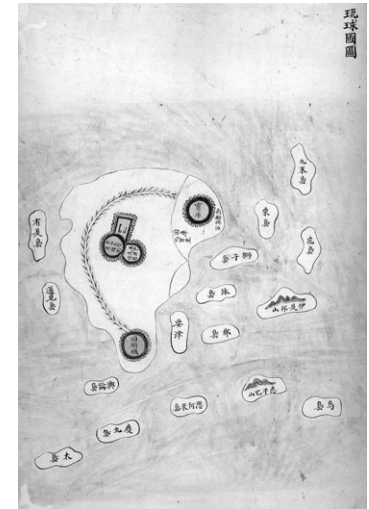
조선정부는 교린정책의 일환으로 여진인의 귀화를 권장했으며, 조선의 명에 관직을 받은 여진인은 1년 또는 수년에 몇 차례씩 서울에 와서 진상과 회사형태의 무역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여진인이 유숙하는 동대문안 북평관(北平館)을 중심으로 일반 상인이 참여하는 사무역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진인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경교역을 위한 무역소(貿易所)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조선정부는 1450년(태종 5) 5월 공식적으로 경성(鏡城)과 경흥(慶興)에 무역소를 설치하였다. 여진과의 교역은 소금과 철을 비롯하여 농기구 및 식기 등의 생활필수품을 수출하고, 말과 다양한 동물가죽 등 여진의 토산물이 교역되었다.

조선 전기 여진과의 교역은 조선의 교린정책 속에서 야인 기미정책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무역의 중심은 여진인이 필요한 생활필수품이었다. 결국 여진과의 교역은 경제사적 의미를 띠기보다는 정치적 기대효과를 노린 조선의 외교정책적 교역으로 이해된다.

(3) 유구·남만과의 무역

유구왕국은 일본 오키나와 군도 지역에 있던 나라이다. 14세기 초반 중산(中山)·산남(山南)·산북(山北)이라는 세 국가가 정립하고, 이 중 중산의 포침안사였던 찰도(察度)가 1372년 명에 입공(入貢)한 뒤 산남

과 산북도 각기 명에 입공하면서 유구는 동북아시아 사회에 등장했다. 임진왜란 때 유구는 풍신수길(豐臣秀吉)의 명령을 무시하고 명군에 가담했으며, 임란 이후 덕천가강(德川家康)의 조공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1609년 살마주(薩摩州)에 정복당하여 쇄퇴의 길을 걸었다. 이후 1872년 명치정부는 폐번치현(廢藩置縣)의 정책에 따라 유구왕국을 해체하고 유구현으로 편입시켰다가, 1879년에는 유구현을 오키나와현으로 바꾸었다.



유구국도(해동지도)

고려 왕조와 조선 왕조 시기 유구왕국의 역사는 명에 입공했던 중산왕 찰도(察度) 왕통시대(1350~1422)와 중산의 상파지(尙巴志)가 유구 본도의 통일을 이룬 이후인 7대 60여 년 간의 상파지왕통시대(1406~1469: 第一尙氏王朝) 그리고 1470년 해외무역을 주관하던 상원(尙圓)이 왕으로 추대된 이후인 상원왕통시대(1470~1879)로 나눌 수 있다.

고려·조선의 유구와의 통교는 일방적으로 유구의 사절 내빙(來聘)에 의해 이루어졌다. 유구 사절은 1389년(창왕 원년) 8월 유구의 중산왕 찰도가 사신 옥지(玉之)를 보낸 것이 첫 사절이었다. 조선 건국 이후에는 1392년(태조 원년) 8월 다시 찰도가 사신을 보내어, 1524년(중종 19)에 이르기까지 평균 3년에 한번 꼴로 내빙(來聘) 했다.⁶¹⁾ 반면 조

60) 徐炳國, 《朝鮮前期의 對女眞關係史》《國史館論叢》14, 1990.

61) 하우봉, 1995, 〈유구와의 관계〉《한국사》22, 413쪽. 그러나 이 숫자는 구주(九州) 등지의 일본상인들이 유구사신으로 가장해 온 위사(僞使)도 있어 그 숫자를 정확히 믿을 수는 없다(하우봉, 위의 글, 참조).

선에서는 단지 3회에 사절을 파견했을 뿐이며, 1524년 이후로는 직접 통교가 단절되면서 북경의 회동관(會同館)에서 만나 양국의 현안을 처리하는 간접 통교의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⁶²⁾

이처럼 외교 사절을 통한 통교는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그 경제적 교역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유구의 무역이 정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정부의 규제가 가해지지 않았고, 유구의 사신과전 자체가 외교보다는 무역에 목적을 두고 있었으며, 교역품이 사치품으로 귀족들의 취향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유구의 사신들이 조선에 바친 공납물은 소목(蘇木)·향목(香木) 등의 향료와 염료류, 주석·유황 등의 광산물, 후추·사탕(砂糖) 등의 기호품, 물소뿔(水牛角)·상아·앵무새 등의 특산물이었다. 이에 비해 조선에서 유구로 간 회사품은 저포·마포·면주(綿紬) 등의 직물류와 채화석 등의 돛자리·종이·문방구류·인삼·호랑이 가죽 등 조선의 특산물이었다. 이 당시 일본은 조선과의 교역에서 쌀과 콩이 주된 요구품목이었다. 이에 비해 유구의 경우 식량의 요구가 없었다. 이 점이 일본과 유구 교역구조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통교자가 왜구에서 전환되었고 식량문제 해결을 우선시했는데 비해 유구는 처음부터 중개무역을 목적으로 한 순수한 교역관계였던 것이다.⁶³⁾

조선 전기에는 남만(南蠻)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통교를 맺고 있었다. 남만의 개념도 시대에 따라 달랐다. 즉 고대 중국에서

는 화이사상에 입각하여 중국 남부 지역의 부족을 남만이라고 불렀다. 그 후 태국·루손·자바 등 남부 해안에 있는 여러 나라를 총칭하는 말로 변화했다. 당나라와 송나라 때에는 아라비아(大食國)도 포함되었다. 명나라 때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서양 국가도 남만이라고 불렀다. 이는 이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경유해서 내항하거나 무역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⁶⁴⁾

이들이 조선으로 오는 항로는 각기 자기 나라로부터 안남(安南)－남지나해(南支那海)－향산오(香山澳)·광둥(廣東)·천주(泉州) 혹은 대만－대만해협－팽호도(澎湖島)－유구 수리(首里)－일본 하카다(博多)를 거쳐 조선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항해기술이나 배의 성능을 고려할 때 직접 조선에 오기 보다는 유구나 일본의 하카다에서 중개무역을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다.

조선과 통교를 한 나라는 현재 태국인 섬라국(暹羅國), 자바인 조와국(爪哇國), 유구국보다 아래쪽에 있었던 구변국(久邊國) 등이었다. 조선은 사대교린의 체제 안에서 이들을 대했으므로, 교역의 형태도 기본적으로는 사행무역이었다. 교역물품은 향료와 약재 등 남방물산이었고, 조선의 회사품은 포목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교역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다. 게다가 남만과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청과의 외교체제가 점차 안정성을 띠면서 북경에서 만난 사신들과의 간접적 접촉 이외에는 거의 단절된다.

62) 하우봉, 1994, 〈조선 전기의 대유구관계〉 《국사관논총》59, 물론 조서누기에도 명차례의 직접적인 통교는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현종, 1974, 〈임진왜란시 유구·동남아인의 래원(來援)〉 《일본학보》2 참조.

63) 하우봉, 위의 글, 419쪽 및 손승철, 1992, 〈조선 전기 대유구 교린체제의 구조와 성격〉 《조항래교수회갑기념논총》, 233쪽.

64) 하우봉, 1995,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한국사》22, 국사편찬위원회.

3. 조선 후기 대외무역

1) 중국과의 무역

(1) 전쟁과 변경무역

17세기 전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과 명과의 외교 관계는 청과의 조공체제로 대체되어 갔다. 그 속에서 조선과 청 사이의 무역도 정비되었는데, 이는 크게 변경무역과 사행무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변경무역은 중강(中江)·회령(會寧)·경원(慶源)에서 행해졌으며, 개시무역(開市貿易)과 후시무역(後市貿易)으로 대별된다.

그 중 중강교역은 무역량과 중요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강개시(中江開市)는 조선의 요청으로 1593년(선조 26) 조선과 명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16세기 후반 조선의 전국적 기근으로 인한 식량 부족과 임

65) 《선조실록》 권46 선조 26년 12월 壬子條.

진왜란 중 조선군과 명군을 위한 군량미 확충이 개시를 연 목적이었다.⁶⁵⁾

중강(中江)은 압록강 상류에서 갈라진 가닥의 하나인데, 흔히 압록강의 세 가닥을 소서강(小西江), 중강(中江), 삼강(三江)이라 불렀다. 중강개시는 이 소서강과 중강 사이에 있는 어적도(於赤島)에서 열렸다.⁶⁶⁾ 중강개시를 통해 조선은 곡식·나귀·노새를 명으로부터 수입하였고,⁶⁷⁾ 그 대금을 은·말·면

포 등으로 결제하였다.⁶⁸⁾ 또한 조선은 중강개시를 통해 화약을 밀수입하는가 하면,⁶⁹⁾ 인삼·은·수달가죽 등을 몰래 팔아 넘겼다.⁷⁰⁾

중강개시를 통해 조선과 명은 상당한 이익을 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⁷¹⁾ 그러나 일본과의 전쟁이 끝나자 조선은 중강개시에서의 잠상 활



중강 어적도(청구도)

66) 《연원직지》 권1 出疆錄 中江記.

67) 《선조실록》 권46 선조 26년 12월 壬子條.

《선조실록》 권50 선조 27년 4월 庚午條 참조.

68) 《선조실록》 권68 선조 28년 10월 丙午條.

《선조실록》 권84 선조 30년 정월 丁未條.

《만기요람》 재용편 5, 중강개시조 참조.

69) 《선조실록》 권201 선조 39년 7월 癸未條.

70) 《선조실록》 권131 선조 33년 11월 丙辰條.

《선조실록》 권201 선조 39년 7월 癸未條 참조.

71) 《선조실록》 권124 선조 33년 4월 丙申條.

《선조실록》 권124 선조 33년 4월 戊戌條.

동과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명과의 정치적 사건 및 국가기밀 누설 등을 우려하여 중강개시 혁파를 여러 번 논의하였다. 중강개시 혁파를 둘러싼 논의는 임진왜란 때 명의 후의를 저버릴 수 없다는 명분론과 무역세 징수에 따른 조선정부의 재정수입 감축 등 실리적 문제가 얽혀 있음으로 인해 쉽게 결정되지 못했다.⁷²⁾ 그런 가운데 광해군 때에는 후금의 흥기와 명의 쇠퇴로 중강개시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었다.

하지만 후금이 요동을 차지하고 명과의 무역이 단절되자, 후금은 조선과의 중강개시 교섭을 벌였다. 그 결과 정묘호란을 계기로 1628년(인조 6)에는 중강개시에 관한 제반 절차가 결정되고 무역이 행해졌지만,⁷³⁾ 조선의 교역 회피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조선이 교역을 회피한 데에는 명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선의 외교정책도 작용하였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조선측에게 무역상 이익이 없었던 데에 있었다.

이후 중강개시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은 1646년(인조 24)이다. 즉 입관(入關) 이후 청은 만주지방의 관원과 국경 지방민의 생활필수품 조달을 위하여 개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조선은 1646년 전례에 따라 연 2회(3월 15일, 9월 15일)의 개시를 열기로 했으나, 봄철 농사와 가을철 추수를 이유로 이듬해인 1647년(인조 25) 개시일을 2월 15일과 8월 15일로 변경하였다.⁷⁴⁾

중강개시를 위해 의주부는 개성부와 양서감영에 농우(農牛)·소금·종이 등의 항목을 각 읍에 나누어 배정하고, 별장(別將)을 따로 뽑

아 만상(灣上)에 모아 두고 기다리게 하였다가, 개시일에 차사원(差使員)과 역학훈도(譯學訓導)가 함께 중강에 거느리고 가서 봉황성의 통관(通官)·장경(章京)과 더불어 값을 정하고 서로 교역토록 하였다. 또한 중강개시는 사관인(私販人), 즉 잠상의 참여가 봉쇄되어 있었으며, 암말(牝馬)과 인삼 등이 금물(禁物)로 지정되어 의주부윤의 책임하에 개시에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막도록 하였다.⁷⁵⁾ 청측도 봉황성 근처의 세 보(堡)에서만 무역하도록 하고 북경의 상인은 참여치 못하도록 하였다.⁷⁶⁾

조선의 수출품은 소·다시마·해삼·면포·포·백지·장지·보습, 사기 등이었는데, 정해지지 않은 물품은 교역할 수 없었다. 이 중 소·다시마·해삼은 전체 교역액의 약 78%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품이었다.⁷⁷⁾

이러한 수출품의 대가는 모두 소청포(小青布)로 값을 계산하여 받았는데, 소청포 1필을 은 3전 5푼 가치로 계산하였다. 소청포는 품질이 떨어지고 짧고 좁아서 쓸모가 거의 없으므로 중강개시는 조선측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교역이었다.⁷⁸⁾

〈표 2〉 중강개시 공무역 총수

물종	수량	물종	수량
소	200척	다시마	15,795근
해삼	2,200근	면포	373필
포	175필	백지	8,400권
장지	600권	소금	310석
보습	194개	사기	330죽

자료: 《만기요람》 재용편 5 중강개시

72) 《선조실록》 권124 선조 33년 4월 丙申條.

《선조실록》 권131 선조 33년 11월 丙辰條.

73) 《인조실록》 권18 6년 정월 丙子條.

74) 《통문관지》 권3 事大 開市條.

75) 《만기요람》 재용편 5 中江開市.

76) 《인조실록》 권47 인조 24년 8월 癸卯條.

77) 이철성, 《조선 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33~34쪽.

78) 《연원직지》 권1 출강록 중강기.

반면 청은 규정된 물품 이외에 남초(南草) 등을 요구하고,⁷⁹⁾ 비단·털모자(氈帽)·면화를 가지고 와 무역하려 하는가 하면, 중국 내지의 상인을 중강개시에 참여시켜 교역의 길을 넓히고자 하였다.⁸⁰⁾ 그러나 조선측은 개시에 참여하는 상인과 물품을 제한하려 했으며, 중국 내지(內地) 상인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허용하려 하지 않았다.

이렇듯 조선정부의 잠상 금지와 항례(恒例) 준수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중강개시를 기회로 이익을 누리려는 사상층은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사상이 국법을 어기고 함부로 따라가 마음대로 교역하는 중강후시(中江後市)가 생겨난 것이다.⁸¹⁾

중강후시는 개시와 거의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중강개시에서 필요한 면포·마포·소금·우마·농구 등의 물품 조달은 주로 황해도·평안도 상인이 맡고 있었으며,⁸²⁾ 일부 서울상인도 참여하였다.⁸³⁾ 개성상인도 어떠한 형태로든 개시에 접근했을 것으로 보인다.⁸⁴⁾

그러나 중강개시는 상인의 참여와 교역 물품이 규제되어 있었다. 따라서 상인들은 중강개시를 이용하여 규정 외 교역을 행하였고, 교역의 폭을 넓히려는 청측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짐으로써 중강후시가 성행한 것이다.

사상들의 후시활동에 대해 1729년(영조 5) 도승지 조명현은 중강개시에 상고들이 잠입하여 이것을 막자 상인들은 단련사를 따라 들어가 심양에서 잠상의 폐단을 일으켰는데, 만약 심양 잠상의 길이 끊긴다면

이들이 중강개시로 몰려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라고 하였다.⁸⁵⁾ 17세기 후반 이래 중강교역을 통한 사상들의 이익추구가 활발히 일어났음을 알게 한다.

압록강에 중강개시가 성립되자 후금은 두만강 유역 회령에서 개시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⁸⁶⁾ 압록강 일대는 강물이 빠르고 거센 데 비해 두만강 유역은 강폭이 매우 좁아 건너기가 어렵지 않아 변방 호인(胡人)들의 침탈이 많았다.⁸⁷⁾ 이에 호인에 대한 기미책의 일환으로 회령과 무산 등지에는 부사의 책임하에 이전부터 무역을 열어 왔었다.⁸⁸⁾

그런데 중강개시를 공식화시킨 후금이, 중강에 이미 개시가 열렸으니 회령에서도 전례에 따라 개시(開市)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은 예전과 달리 북변개시가 필요치 않으며 정묘호란으로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의 재정이 과탄에 빠졌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⁸⁹⁾ 그러나 정묘호란 후 강압적 자세를 견지했던 후금은 조선이 회령개시를 인정하지 않는 데에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위협하며 회령개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런 속에서 회령개시가 재차 체제를 정비하여 시작되는 것은 병자란 이후인 1638년(인조 16)이었다.⁹⁰⁾ 회령개시에는 처음에 영고탑인(寧古塔人)이 호부의 표문(票文)을 가지고 와 농기를 바꾸어 갔는데, 1642년(인조 20)에는 야춘인(也春人)이 그리고 1694년(숙종 20)부터는 오라(烏喇) 지역의 사람들도 교역에 참가했다.⁹¹⁾ 이들은 조선으로부터 주로

79) 《인조실록》 권48 인조 25년 3월 癸卯條.

80) 《영조실록》 권43 영조 13년 정월 丙辰條 참조.

81) 《통문관지》 권3 事大 開市條.

82) 《비변사등록》 인조 26년 7월 초3일 1책 982쪽.

83) 《비변사등록》 인조 24년 5월 초5일 1책 843쪽.

84) 《비변사등록》 인조 25년 3월 초3일 1책 881쪽.

《숙종실록》 권25 숙종 19년 9월 壬寅條.

85) 《비변사등록》86 영조 5년 8월 초1일 8책 702쪽.

86) 高丞堉, 〈조선 후기 北關開市 연구〉 《朝鮮時代史學報》1, 1997.

87) 《선조실록》147 선조 35년 윤2월 乙未條 참조.

88) 《선조실록》121 선조 33년 정월 辛未條.

《선조실록》163 선조 36년 6월 己丑條 참조.

89) 《인조실록》 권 18 인조 6년 2월 甲寅條.

90) 《통문관지》 권3 事大 開市條.

농우·농기·식염을 무역해 갔다.

개시는 청으로부터 개시에 관한 자문(咨文)이 오면 이를 등서(謄書)하여 함경감사와 병사에게 보내고, 이후 각 읍에서는 개시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했다. 청의 자문은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매년 8월~9월 사이에 도착했으며, 조선에서는 대략 1월~2월 사이에 완시자문(完市咨文)을 보냈다. 개시 감독의 책임은 청측이 파견한 차관(差官)과 조선측 차사원과 지방관이 맡았다.⁹²⁾

회령개시에 오는 청 차관 일행과 상인의 식량, 가축 초료(草料)는 조선측의 부담이었다. 청은 조선의 상인이 심양에 오면 으레 식량과 초료를 대주었으니, 조선측으로 가는 청국의 상인에게도 똑같이 대우하라고 요청하였다.⁹³⁾ 자연히 개시에 몰려오는 사람과 가축의 수가 불어나는데 따른 비용 부담은 함경도민이 짊어져야 했다.

그럼에도 회령개시에 몰려드는 사람과 말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 1656년(효종 7)에는 마축(馬畜)의 수가 860여 마리에 달하고, 교역한 소금의 양도 2,500석에 이르렀다.⁹⁴⁾ 《만기요람》에서는 회령·경원에 교역하러 온 사람이 594명에 이르고 가축도 1,144필에 달했으며, 교역을 위해 머무는 기간도 80~90일에 이르렀다고 하였다.⁹⁵⁾ 따라서 17세기 중반 회령개시는 영고탑과 후춘(厚春)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청국의 위엄을 믿고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바꾸며 자질구레한 것으로 엄청난 것을 바꾸어 가는 불만스런 교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었다.⁹⁶⁾ 회령

91) 《동문관지》 권3 事大條.

92) 《만기요람》 재용편 5, 북관개시.

93) 《인조실록》 권26 인조 10년 3월 丙寅條.

94) 《비변사등록》18 효종7년 12월 12일 2책 519쪽.

95) 《만기요람》 재용편 5 북관개시.

96) 《효종실록》 권12 효종 5년 6월 壬戌條.

개시를 위해 함경도가 마련해야 했던 대표적 물종과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회령개시 시공(市供) 총수

내역 물종	분정 지역 및 수량										
	회령	경흥	경원	종성	온성	무산	부령	경성	명천	길주	합계
소	27	15	19	20	15	18					114
보습	337	182	307	312	272	62	182	357	282	307	2600
소금	103	59	98	98	82		62	130	93	130	855

자료: 《만기요람》 재용편 5 북관개시

회령개시가 전반적으로 볼 때 조선측에게 큰 이익이 남지 않는 교역이었다는 인식은 18세기 전반에도 지속된다. 이는 대체로 공시(公市)의 물종을 마련하는 것과 청측 관원과 상인의 숙식비용 및 우마의 사료 지급, 예단 증급 등의 부담이 당시 경제적으로 낙후한 함경도 지역민에게 부담지워 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중반부터는 회령개시를 이용한 사적 교역이 활발해졌다.⁹⁷⁾ 공시(公市)보다는 사시(私市)와 마시(馬市)를 통해 조선과 청국 상인 간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근래에는 기강이 해이해지고 북도의 물화에 대한 금법이 없어져, 병사·수령·변장 및 상고가 말을 데리고 넘어가 팔아 넘기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⁹⁸⁾ ‘회령 개시는 북관의 물화가 전부 이곳에 나오므로 이익이 진실로 크며, 개시를 혁파하려는 것은 역관의 간계’라는 인식도 나오고 있었다.⁹⁹⁾ 또한 수령이 병방(兵房), 군관(軍官), 통사(通事)들과 짜고 개인적으로 교역하여 개시를 열기도 전에 매매가

97) 《비변사등록》79 영조 2년 4월 초7일 7책 871쪽.

98) 《비변사등록》82 영조 3년 9월 24일 8책 132~133쪽.

99) 《영조실록》 권36 영조9년 10월 乙亥條.

낭자하다는 상황도 보고되고 있었다.¹⁰⁰⁾ 이러한 변화는 18세기 북관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¹⁰¹⁾ 그러나 회령개시를 이끈 상인의 실체는 자세하지 않다.

한편 1646년(인조 24)에는 경원에서 개시가 시작되었다. 경원개시는 1년을 걸러 개시하였는데, 10간지 중 갑·병·무·경·임 해에는 회령개시만이 열려 이를 단개시(單開市)라 하고, 회령과 경원에서 함께 열리는 을·정·기·신·계 해의 개시를 쌍개시(雙開市)라 하였다.

경원개시에는 암구뢰달호인(巖丘賴達湖戶人)이 와서 소·보습·술을 교역하였는데, 1654년(효종 5)부터는 고아개신호인(枯兒凱新戶人)도 참여하였다.¹⁰²⁾ 경원개시를 위해 마련해야 했던 물종과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 경원개시 시공(市供) 총수

내역 물종	분정 지역 및 수량				
	경원	경흥	종성	온성	합계
소	10	9	13	18	50
보습	22	17	5	4	48
소금	18	10	18	9	55

자료: 《만기요람》 재용편 5 북관개시

경원개시는 격년제로 열렸으므로 회령개시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다. 즉 회령개시는 청측에서 오는 사람과 가축의 수가 정해져 있었고, 개시하여 체류할 수 있는 날짜가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원

개시는 그렇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웃 종성·온성 등에 물품징수가 끊이질 않아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었다. 이에 1726년(영조 2)에는 경원개시에 대한 인마수(人馬數)와 체류기간, 예단물종을 정하도록 하였다.¹⁰³⁾

또한 회령개시는 청의 차관과 견에 맞서 전직 지방관을 임명하여 청인의 횡포를 억제하였던 반면 경원개시는 그렇지 못하였다.¹⁰⁴⁾ 청차(淸差) 폐단의 직접적 원인은 청차가 왕래할 때 종성·온성 등을 거치면서 토색을 자행하는데 있었다. 자연히 청사의 요구에 따르는 비용은 경원·종성·온성의 민간에 책징되어 원성이 높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경원개시의 변통안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

변통의 방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경원개시 이설안(移設案)이다. 즉 경원개시는 경원뿐만 아니라 육진 모두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니, 경원개시를 일시 중단하고 회령으로부터 떨어진 두만강의 이도(瑯島)에서 교역하자는 것이다.¹⁰⁵⁾ 이 주장은 실현되지 않았다.¹⁰⁶⁾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경원의 유생 채휘온에 의해서도 건의되었다. 그는 경원개시의 폐단을 크게 고치자면 청나라의 차사를 우리나라에 못



두만강 이도(청구도)

100) 《비변사등록》137 영조 35년 9월 초3일 13책 298쪽.

101) 姜錫和, 《朝鮮後期 咸鏡道の 地域發展과 北方領土認識》, 서울대 박사논문, 1996; 高丞嬭, 〈18, 19세기 함경도지역의 유통로 발달과 상업활동〉,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5.

102) 《통문관지》 권3 사대 개시조.

103) 《비변사등록》79 영조 2년 4월 초 7일 7책 871~872쪽.

104) 《비변사등록》82 영조 3년 11월 17일 8책 194쪽.

105) 《비변사등록》116 영조 22년 10월 24일 11책 660쪽.

106) 《비변사등록》118 영조 23년 9월 28일 11책 795쪽.

들어오도록 하는 것인데, 중강개시를 압록강 밖에서 열고 있으니, 경원 개시 또한 경외(境外)에 설치하지는 것이다.¹⁰⁷⁾ 그때 가장 적합한 곳은 바로 두만강의 이도였다.¹⁰⁸⁾

둘째는 경원개시를 회령개시에 합설하자는 논의이다. 회령개시는 백여년을 이끌어 오던 것이니 어쩔 수 없지만, 경원·종성·온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청에 자문을 보내 경원개시를 회령개시에 합설토록 하자는 것이다.¹⁰⁹⁾ 그러나 경원개시는 고종 때까지 계속되었다.¹¹⁰⁾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조선 후기의 변경 교역은 청이 만주 일대 지역민의 생활 필수품 해결을 위해 조선에 요구한 교역이었다. 이에 개시의 절차와 참가 상인 및 교역품이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양국 간에 전면적인 교역으로 발전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중강후시의 경우 사상의 적극적 참여로 조청간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대개는 조청간의 규례(規例)를 지키려는 선에서 무역이 진행되었다. 또한 중강후시가 성행한데에는 사행로 주변에 위치했다는 지리적 조건도 작용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사행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책문후시와 단련사후시가 성행하면서 중강후시는 빛을 잃고 말았다.

(2) 17세기 역관 주도의 중개무역

사행무역은 '사행의 여정 중에 이루어지는 교역'으로 조공과 회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무역과 함께 공무역, 사무역, 밀무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공무역은 각급 관아의 공용을 위한 교역을 말한다. 사무역은 팔포무역(八包貿易)과 각급 관아의 공용을 위한 포외무역(包外貿易) 등을 포함한다. 밀무역은 이 이외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불법적 교역을 말한다. 그러나 사행무역의 형태와 성격을 정확히 범주화하기는 어렵다. 사무역과 밀무역의 범주는 조선정부의 공인 여부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공간적으로는 책문·심양·연경 등 사행 여정 중 다양한 교역이 포괄되기 때문이다.

〈표 5〉 조선사행의 종류와 목적

사행	내용	파견목적	비고
정기 사행	동지행	동양 절기상의 동지 축하사신	
	성절행	명나라 황제의 생일 축하사신	
	정조행	새해 축하사신	
	천주행	황제·황후·황태자의 생일 축하사신	
임시 사행	사은행	청의 외교정책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사신	
	진하행	청 황제의 등극과 같은 경사에 대한 축하사신	
	진주행	청에 요청하기 위한 사신	
	주청행	청에 요청하기 위한 사신	
	진위행	청의 황실에 상고(喪故) 때 파견 사신	
	진향행	청의 황실에 상고(喪故) 때 파견 사신	
	고부행	조선 왕실의 죽음을 알리는 사신	
	문안행	청의 황제가 심양으로 왔을 때 파견하는 사신	
	변무행	조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사신	
	참핵행	특정한 범법 사실을 밝히기 위한 사신	

사행무역은 매년 수 차례씩 연경을 왕래한 부연사행(赴燕使行)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고 그것을 주도한 것은 역관(譯官)들이었다. 1644년(인조 22) 청나라가 북경으로 천도한 뒤, 북경 곧 연경(燕京)으로 가는 조선 사행은 크게 정기사행과 임시사행으로 구분되었다.

정기사행은 정례화된 삼절연공행(三節年貢行)과 황력재자행(皇曆賁

107) 《영조실록》 권93 영조 35년 1월 壬辰條.

108) 《영조실록》 권93 영조 35년 1월 壬辰條.

109) 《비변사등록》129 영조 31년 8월 17일 12책 661쪽.

110) 《비변사등록》253 고종 8년 8월 13일 26책 485쪽.

咨行)이다. 삼절연공행은 동지행(冬至行)·정조행(正朝行)·성절행(聖節行)을 말하는데, 호란 직후 청나라가 요구하여 심양(瀋陽)에 파견해 오던 것이었다. 동지행과 정조행은 각기 동지(冬至)와 정조(正朝)를 경축하기 위한 것이며, 성절행은 청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사행이었다. 한편 연공행(年貢行)은 세폐(歲幣)를 내는 사행인데 삼절행과 연공행을 통합한 것이 삼절연공행이다.

삼절행과 연공행이 통합된 것은 청나라의 북경 천도 이듬해인 1645년(인조 23)부터였다. 정조·동지·연공행의 세 가지 사행을 본래의 일자에 구애받지 말고 정조(正朝)때 맞추어 오도록 하고 여기에 성절사를 합쳐 가게 한 것이다.¹¹¹⁾ 그러나 삼절연공행은 대부분의 역사서에 동지행(冬至行)으로 기록되어 있다.¹¹²⁾ 동지행은 매년 음력 11월에 출발하여 이듬해 4월에 귀국하였다.¹¹³⁾

또 하나의 정기사행인 황력재자행은 중국의 책력을 받아오는 사행이었다. 병자호란 직후 조선은 정조행(正朝行)이 중국의 책력을 가져왔고, 1647년(인조 25)부터는 진웅행(進鷹行)이 받아왔었다. 그러나 1660년(현종 1) 사냥하는 새인 매를 바치던 응공제(鷹貢制)가 혁파된 뒤 황력재자행을 별도로 파견하게 되었다. 황력재자행은 약칭하여 역행(曆行)이라 하였고 매년 음력 8월에 출국하여 10월 연경(燕京)에 도착해 청의 시헌력(時憲曆)을 받아 온 것이다.¹¹⁴⁾

임시사행으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었다. 사은행(謝恩行)은 청의 정책이나 외교적 처사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파견했다. 진

하행(進賀行)은 중국 황제의 등극이나 칠순절 같은 경사가 있을 때 보냈다. 진주행(陳奏行)과 주청행(奏請行)은 중국에 요청할 일이 있을 때 파견했다. 진위행(陳慰行)과 진향행(進香行)은 중국 황실에 상고(喪故)가 있다는 연락이 왔을 때 보냈다. 변무행(辨誣行)은 청나라에 오해나 곡필(曲筆)이 있을 때 사실을 밝히려고 갔던 것이다. 문안행(問安行)은 청의 황제가 자기 선조의 무덤이 있는 성경(盛京) 등지로 거둥했을 때 임시 거처로 문안차 파견했던 것이다. 참핵행(參覈行)은 특별한 범법 사실이 있을 경우 청나라가 지정한 장소로 사신을 특파한 것이다. 고부행(告訃行)은 조선의 왕이 죽었을 때에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중국에 보내던 사행이었다. 재자행(賫咨行)은 사건의 내용이 중요치 않은 경우, 정사와 부사를 파견하지 않고 역관 중에 인품과 재질을 갖춘 사람을 파견한 것인데, 특히 중국에 올리는 글(奏文)을 가지고 가는 사행을 재주행(賫奏行)이라 하였다.¹¹⁵⁾

그러나 임시사행은 사건의 비중과 파견시기에 따라 정기 사행편에 관계문서와 방물을 붙혀 보내는 겸행제(兼行制)를 적용하였고, 때로는 비중이 높은 임시사행편에 겸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 <도표 1>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 도표를 보면 1645년부터 1876년까지 각기 다른 목적의 사행이 총 995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정기 또는 임시사행은 정사(正使)·부사(副使)·서장관(書狀官) 등 3사신과 역관 등의 정관(正官)과 그들에 딸린 마부·노자(奴子) 등으로 구성되었다. 정관의 수는 정사, 부사, 서장관을 갖춘 경우 30명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3사신과 역관들 외에도 사자관(寫字官)·의원

111) 《통문관지》 권3 사대 부경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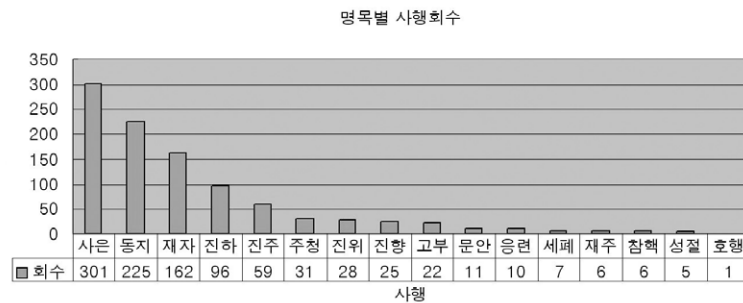
112) 《통문관지》 권3, 사대 부경사행: 《동문회고》 보편 권7 사행록.

113) 《통문관지》 권3, 사대 부경사행: 《동문회고》 보편 권7 사행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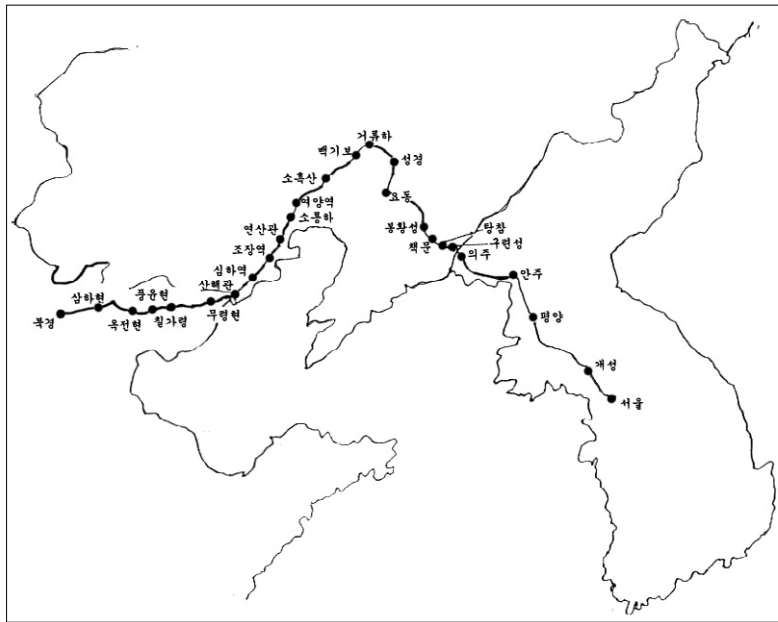
114) 《통문관지》 권3, 사대 재자행: 《동문회고》 원편 권42 역서.

115) 《통문관지》 권3 사대 부경사행.

〈도표1〉 1645~1876 사행의 명목별 횡수 통계표



자료: 《동문휘고》 보편 권7 사행록을 바탕으로 작성
삼절연공행은 동지행으로 하고 주로 고부행과 겸행하는 시호 및 왕위 승계에 따른 사행 명목은 주청행으로 계산.



연행로

(醫員)·화원(畫員)·군관(軍官) 등이 수행하여 동지행의 정관 수는 35명이었고, 사은·주청·진하·진위·진향행의 정관은 34명이었다. 이에 3사신을 구비한 동지행 등에는 부연사행의 정관과 마부·노자 등이

220여 명에, 말 또한 200여 필이었고, 우가장(牛家莊) 또는 심양에서 회환하는 공물운송쇄마(貢物運送刷馬)도 250여 필에 달하였다.¹¹⁶⁾

조선과 청의 사행로(使行路)는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첫째는 1637년(인조 15)부터 1644년(인조 22)에 청 세조가 북경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의 조선 사행은 의주로부터 540리 길인 당시 청의 수도 심양(瀋陽)을 오고 갔다.

둘째는 1645년(인조 23)부터 1664년(현종 5)까지의 기간으로, 조선사행은 압록강(鴨綠江)－책문(柵門)－봉황성(鳳凰城)－요양(遼陽)－우가장(牛家莊)－광령－영원위－산해관을 거쳐 북경으로 들어갔다.

셋째는 1665년(현종 6)부터 1679년(숙종 5)까지의 기간이다. 청이 심양에 성경부를 설치한 뒤, 조선사행은 요양으로부터 길을 바꾸어 성경(盛京)을 거쳐 우가장(牛家莊)－광령(廣寧)－영원위(寧遠衛)－산해관(山海關)－북경(北京)으로 들어갔다.

넷째는 1679년(숙종 5) 이후이다. 청이 국방상 문제로 우가장에 보를 설치하고 그 통로를 차단하자, 조선 사행은 다시 길을 바꾸어 성경에서 변성(邊城)－거류하(巨流河)－백기보(白旗堡)－이도정(二道井)－소흑산(小黑山)－광령－영원위－산해관－북경으로 들어갔다.¹¹⁷⁾

이후 사행길은 1876년 조선 개항 때까지 변화하지 않았다. 사행길을 대청무역과 관련하여 주요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압록강(鴨綠江)－진강성(鎭江城)¹¹⁸⁾－탕참(湯站)－책문(柵門)까

116) 柳承宙, 〈朝鮮後期 對淸貿易 小考〉《國史館論叢》30, 國史編纂委員會, 1991, 219쪽.

117) 김성철, 《연행소고－조종교섭사의 일척－》, 《역사학보》12, 1960 15~19쪽; 유승주, 〈조선 후기 대청무역의 전개과정－17·8세기 부연역관의 무역활동을 중심으로－〉《백산학보》8, 1970, 373~374쪽 참조.

118) 본래는 구련성(九連城)이다. 각종 연행록에서도 흔히 구련성으로 부른다. 선조 29년(1596) 진강유격부(鎭江遊擊府)라 고쳐 불렀다. 《통문관지》 권3 사대 〈중원진공노정〉.

지의 110리에 달하는 길이다. 책문은 사행이 청으로 들어갈 때 북경에서 돌아올 때 교역이 활발히 일어난 지역이었다.

다음은 봉황성(鳳凰城)－진동보(鎭東堡)¹¹⁹⁾－진이보(鎭夷堡)¹²⁰⁾－연산관(連山關)¹²¹⁾－첨수참(貼水站)－요동(遼東)－십리보(十里堡)－성경(盛京)까지 540여 리의 길이다. 조선사행은 성경에서 예문 및 표문(表文)을 내는 등 외교적 의례를 가졌고, 이를 위해 들어간 조선측 관리와 상인에 의해 교역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성경－변성(邊城)－거류하(巨流河)¹²²⁾－백기보(白旗堡)－이도정(二道井)－소흑산(小黑山)－광령(廣寧)－여양역(閭陽驛)－석산참(石山站)¹²³⁾－소릉하(小凌河)－행산역(杏山驛)－연산역(連山驛)－영원위(寧遠衛)－조장역(曹庄驛)－동관역(東關驛)－사하역(沙河驛)－전둔위(前屯衛)－고령역(高嶺驛)－산해관(山海關)까지의 길이다. 조선 후기 모자(帽子) 생산지로 유명한 중후소(中後所)가 동관역에서 18리 떨어진 곳에 있다. 중후소에는 모자를 제작하는 모자창(帽子廠)이 있어, 조선 사행은 연경으로 들어갈 때 모자를 주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모자를 사 가지고 돌아갔다.¹²⁴⁾

다음은 산해관－심하역(深河驛)－무령현(撫寧縣)－영평부(永平府)－칠가령(七家嶺)－풍운현(豐潤縣)－옥전현(玉田縣)－소주(蘇州)－삼하현(三河縣)－통주(通州)－연경(燕京)까지의 길이다.¹²⁵⁾ 심양에서

북경까지는 1,509리였다.

사행은 의주에서 사행인원과 말의 숫자를 기록한 도강장(渡江狀)을 조선정부에 보고한 뒤 압록강을 건너 책문으로 향해 갔다. 사행일행은 역관을 시켜 책문으로 들어가기 하루 전에 사행 목적과 정관(正官)의 명단 및 사행인원과 말의 수효를 기록한 입책보단(入冊報單)을 책문을 지키는 수문장에게 주어 봉황성장(鳳凰城將)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면 다음날 봉황성장이 책문 밖에 나와 영접하고, 입책보단에 실린 사람과 말의 수를 점검한 뒤 들여보냈다.

책문으로부터는 청나라의 영송관(迎送官) 1명과 아역(衙譯) 1명이 사행을 북경까지 호송하는데 한편으로는 복병장(伏兵將) 1명이 갑군(甲軍)을 거느리고 호위하고 요동(遼東)에서 교체하여 심양(瀋陽)에 도착했는데, 이런 절차는 광녕, 금주위(錦州衛), 산해관에서도 같았다.

사행이 심양에 도착하면 성밖에서 정사 부사는 가마(駕輦)에서 내려서 가마 위의 덮개(車蓋)를 제거하고 말에 올라 숙소로 들어가 여장을 풀었다. 이튿날 해당 종사관(從事官)을 시켜 청나라 예부의 자문에 수록된 물품의 품목수에 맞춰 폐물을 봉천부의 호부(戶部)에 분납하고, 세폐와 방물은 청의 압차장경(押車章京)이 맡아 북경으로 운반하였다. 심양에서 청의 압차장경에게 교부한 세폐와 방물은 수레에 실어 북경까지 운송되는데, 도중에 혹 수레가 얹어져 상하거나 물에 젖으면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정성껏 운반하였다. 따라서 세폐와 방물을 싣고 갔던 인마는 모두 단련사가 이끌고 조선으로 돌아갔다.

북경에 도착한 사행은 주로 회동관(會同館)에 머물면서, 표문(表文)과 자문(咨文)을 청나라 예부에 제출하는 의식인 표자문정납(表咨文呈納), 정사 이하 모든 정관(正官)이 홍려시(鴻臚寺)의 패각(牌閣)¹²⁶⁾ 앞에서 3례 9고두를 연습하는 홍려시연의(鴻臚寺演儀), 사행 정관이 청의

119) 설류참(薛劉站)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송참(松站)이라고도 부른다. 《통문관지》 권3 사대 〈중원진공노정〉.

120) 통원보(通遠堡)라고도 부른다. 《통문관지》 권3 사대 〈중원진공노정〉.

121) 아골관(鴉鵲關)이라고도 부른다. 《통문관지》 권3 사대 〈중원진공노정〉.

122) 주류하(周流河)라고 부른다. 《통문관지》 권3 사대 〈중원진공노정〉.

123) 십삼산(十三山)이라고도 부른다. 《통문관지》 권3 사대 〈중원진공노정〉.

124) 《계산기정》 권5 부록 의복 및 〈연원직지〉 권2 출강록 모창기 참조.

125) 이상 사행로에 대해서는 《통문관지》 권3 사대 중원진공노정의 기록에 따랐다.

황제를 알현하는 조참(朝參), 방물과 세폐를 바치는 방물세폐정납(方物歲幣呈納), 숙소인 회동관에서 열리는 하마연(下馬宴), 청나라가 왕과 삼사신 및 원역에게 하사차 주는 회송예물(回送禮物)을 받는 영상(領賞), 떠나는 사신일행을 위해 마련하는 상마연(上馬宴) 등 사행 각종의 의식을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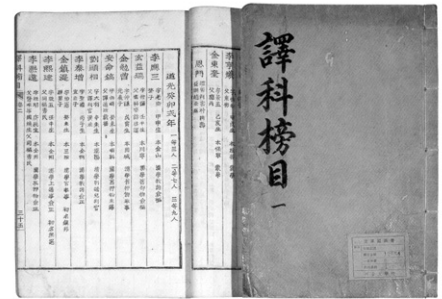
그 동안 회동관 뜰에서는 이른바 회동관개시가 실현되었다. 이 회동관 개시이후 사행은 청의 황제에게 떠나기에 앞서 사조(辭朝)하는 예식을 거행한 다음 귀국길에 올랐다. 사행이 북경에 머무는 기간은 명나라 때에는 40일이었던데 비해 청나라 때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었다.

그런데 회동관 개시는 상마연이 끝난 뒤, 청나라 예부에서 관원이 상품의 불공정 거래자와 잠재자 및 거래 금지품목의 매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회동관의 벽에 고시(告示)한 뒤 시작되었다. 고시 후 북경의 각 점포상인들이 화물을 싣고 회동관에 들어오면 예부가 파견한 감시관의 감독 아래 조선 역관과 상인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 졌다. 귀국 길에 오를 때는 반드시 사신 일행이 무역한 물품의 포수(包數)를 기록하여 청나라 아문(衙門)에 제출하고 아문에서는 그 수를 점검한 뒤 북경을 떠나게 하며, 그것을 예부에 보고하여 산해관과 봉황성에 통보함으로써 사행의 귀환 길에 이루어지는 무역을 통제하고 있었다.

청나라 예부에 소속된 통관(通官)들은 호란 중에 포로가 된 조선인 역관들로서 대통관(大通官)이 6명, 차통관(次通官)이 8명이었다. 이들 중 차통관 2명은 부연사행을 봉황성에서부터 북경까지 호위하여 갔고, 북경에서의 각종 사행 업무나 회동관 무역에도 참여하여 사행원역이나 상고들의 무역을 주선하였다.

126) '堂金皇帝 萬歲萬歲萬萬歲' 라고 쓴 위패가 봉안된 누각이었다. 《통문관지》 권3 사대 홍려시연의.

연경무역을 주도한 것은 역관들이었다. 당시 역관들은 공무역뿐 아니라 사무역을 주도할 수 있었던 특권이 부여되어 있었다. 첫째가 역관 임무에 따른 인마와 특권이다. 역관들은 부연사행의



역과방목

정관인 수당상역관(首堂上譯官), 당상역관(堂上譯官), 별계청당상(別啓請堂上), 상통사(上通事), 차상통사(次上通事), 질문종사관(質問從事官), 가정압물관(加定押物官), 압물(押物)종사관 · 압폐(押幣)종사관 · 압미(押米)종사관, 청학신체아(淸學新遞兒), 우어별차(偶語別差) 등의 직명을 띠고 사신을 수행하였다.¹²⁷⁾ 사행의 정관 중 정사 · 부사는 <사사(使事)>만을 수행하였고 서장관은 대관(臺官)의 임무를 띠고 사행원역(使行員役)의 위법행위를 규찰하였다. 수당상역관은 3사신을 제외한 모든 원역들을 통솔하고 행중(行中)의 공사업무를 총괄하였다. 상통사는 수당상역관을 보좌하여 행중(行中) 일에도 관여했지만 청의 각 관문에 납부하는 예단을 관장하고 상의원(尙衣院)의 어공무역(御供貿易)을 담당하였으며, 차상통사는 내의원(內醫院)의 무역을 담당하였다.¹²⁸⁾ 압물관들은 세폐 · 방물 · 세미 등 각종 조공품의 관리와 운송을 담당하였으며, 그 밖의 각 역관들도 나름대로 사사나 행중사의 갖가지 임무를 띠고 있었다.¹²⁹⁾ 3사신과 역관들이 이처럼 사사나 행중사를 수행할 임무와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직품에 따라 정부는 마부 · 구인(驅人) · 기역마(騎驛馬) · 복쇄마(卜刷馬)를 배정하였고 사비에 의한

127) 《통문관지》 권3, 事大 赴京使行.

128) 《통문관지》 권1, 沿革 等第.

노자·마두(馬頭) 및 사지마(私持馬)를 거느리는 것도 허용하였다.

3사신과 역관 중 사행무역의 주체였던 역관들에게 지급된 인마(人馬)는 상당수에 달하였다. 당상역관·상통사·압물관에게는 모두 승용(乘用)의 기억마 1필을, 또 사물 운반용으로 당상역관과 상통사에게는 말몰이꾼 1명과 복쇄마 1필을, 압물관에게는 말몰이꾼 1명과 복쇄마 2척(隻)을 지급하였으며 당상역관과 상통사에게는 노자 1명씩을 나누어주었다. 이 가운데 사무역품의 운반하는 말은 복쇄마 1필 또는 2척에 불과하지만, 청 세조가 북경으로 천도한 뒤에는 정부가 역관에게 자비로 마두 1명과 사지마(元私持馬) 1필을 갖도록 허락하였고 인조 말~효종 초에는 다시 말몰이꾼 1명과 별사지마 1필을 추가로 허용하였다. 이처럼 17세기 중엽에 역관들은 기억마·복쇄마·원사지마·별사지마 등 4~5필의 말을 이용하여 많은 양의 무역품을 수송할 수 있었다.¹³⁰⁾

둘째는 팔포무역의 권리이다. 호란 직후 조선사행이 심양을 내왕하던 시기에는 정부가 정관들에게 반전(盤纏) 명목으로 남초(南草) 50근씩을 지급하였는데 1644년(인조 22)에 청이 연경으로 천도한 뒤부터는 남초 값을 근당 은(銀) 1냥으로 환산하여 은 50냥을 가져가게 하였다.¹³¹⁾ 그러나 은 50냥은 반전으로 소비될 뿐 무역자금에 될만한 액수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사행의 정관들은 명말 사행시에 인삼 80근을 무역정액으로 허가했던 전례를 들어 양국 정부에 요구했던 것이다. 따라서 1653년(효종 4)에는 부연원역 중 30명의 정관에게만 인삼 80근을 무역자금정액으로 허락하였다. 이때 인삼 80근을 20근씩 나누어 포장

하였으므로 4포가 되었는데 4포제는 곧 8포제로 바뀌어 10근씩 포장되었다. 양국 정부는 30명의 정관 한 사람당 80근씩 도합 2,400근의 정액 외에는 휴대를 엄금하였고 담비가죽·청설모가죽(靑黍皮)·수달가죽(水獺皮) 등 피잡물의 휴대도 철저히 규제하였다.¹³²⁾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 청·일과의 중개무역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동시에 왜은(倭銀)의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왜은이 청으로 유출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659년(효종 10)에 의주부윤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색하여 은화의 유출을 방지토록 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은 유출이 증가되어 1663년(현종 4)에는 수은법(搜銀法)을 강조해야 할 만큼 청으로의 은 유출이 공공연히 이루어졌다.¹³³⁾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는 마침내 1682년(숙종 8) 인삼 1근을 은 25냥으로 환산하여 8포 인삼 80근 대신 은 2,000냥을 8포 정액으로 책정하고, 당상관원에게는 1,000냥을 더하여 3,000냥을 8포정액으로 규정하였다.¹³⁴⁾ 당상·당하 역관들은 각기 주어진 3,000냥 또는 2,000냥 은으로 청의 물화를 대량 수입할 수 있었다. 이 규정은 왜관무역이 쇠퇴하고 국내 은 생산 부진으로 은이 결핍되어 가자 피잡물(皮雜物)을 은과 함께 채우기로 했던 1752년(영조 28)까지 지속되었다.¹³⁵⁾ 한편 역관들은 자기 몫의 8포 외에도 사행정관의 8포와 구분한 각 관아의 ‘별포무역(別包貿易)’도 대행하였다.¹³⁶⁾

셋째는 역관들이 사행중 공용은(公用銀)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각급

132) 柳承宙, <앞의 글>, 225쪽.

133) 《비변사등록》23, 현종 4년 3월 8일.

134) 《通文關志》 권3, 事大 八包定額: 《비변사등록》 33, 숙종 3년 8월 24일: 40, 숙종 12년 1월 6일: 45, 숙종 17년 10월 17일: 《승정원일기》 289, 숙종 8년 4월 13일.

135) 《만기요람》 재용편 5 연행팔포.

136) 《만기요람》 재용편 5, 연행팔포: 《비변사등록》 122, 영조 27년 1월 6일: 《비변사등록》155, 영조 47년 4월 23일.

129) 《통문관지》 권3, 사대 선문·도강장.

130) 《통문관지》 권3, 사대 도강장.

131) 《비변사등록》8, 인조 22년 11월 23일.

관아로부터 은을 대출 받음으로써 팔포정액 외 무역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점이다. 공용은은 봉황성에서 북경에 이르는 동안 여러 관문의 수문관리와 사행을 호송하였던 장경·통관 등에게 지급한 인정비, 청나라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보수집비, 사행 임무의 수행에 따르는 각종 인정비 및 교제비에 쓰이는 비용이었다. 이 공용은은 사행의 반전비(盤纏費) 중에서 마련되던 예물과는 달리 수역관(首譯官)이 부연하는 여러 역관으로부터 수렴하여 사용할 뿐 정부의 공식적인 마련 방법은 없었다. 다만 역관이 경외 아문으로부터 관은을 빌려 무역하는데 대하여 엄격한 제제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역관들의 부담을 보상해 준 것이었다.

부연역관들이 연경에서 수입했던 ‘연화(燕貨)’는 백사(白絲)와 필단(匹緞) 등이었다. 필단으로는 백색단(白色緞), 삼승방사주(三升方絲紬), 금단(錦緞), 사단(紗緞) 등이 주로 수입되었다.¹³⁷⁾ 부연역관들이 연경에서 수입한 연화는 동료역관들인 훈도(訓導)와 별차(別差)가 주관하던 왜관개시(倭館開市)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그 중 백사무역은 1670년(현종 11) 현재 100근당 수입가가 은 60냥인 데 비해 왜관에서의 수출가는 160냥으로 거의 2.7배에 달하였다.¹³⁸⁾ 백사와 필단은 청의 소주·항주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청국상인이 직접 일본의 나가사키로 수출하게 되는 1713년(숙종 39)경까지 계속 수입되었다.¹³⁹⁾

137) 유승주, <앞의 글>, 229쪽.

138) 《현종개수실록》 권22, 현종 11년 3월 庚申.

139) 《통문관지》 권5, 交隣 倭館.

(3) 18세기 사행무역 구조와 상인의 경쟁

17세기 초 이래 대청무역은 부연역관들이 주도해 왔다. 그런데 17세기 후반부터는 사상(私商)도 사행무역에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사상이 사행무역에 가담할 수 있는 길은 사행원역들과 결탁하거나 서울과 지방의 관아(官衙)에 청탁하는 방법이 있었다. 서울의 부상(富商)들은 주로 사행원역과 결탁하여 사행무역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이 사행무역에 참여하는 일반적인 형태는 3사신의 자제군관(子弟軍官)이나 사행원역들의 마부나 노자의 명의로 잠입하는 것이었다.¹⁴⁰⁾ 그러나 사상의 대부분은 사신(使臣)이나 역관들이 거느리는 각종 명색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사신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상들을 수시로 대동하였고¹⁴¹⁾ 역관들은 행중의 인마를 장악하고 있어 사상을 거느리기 쉬웠다.

한편 조선정부는 현종 초에 칙사(勅使)와 사행의 영송비(迎送費)를 염출하기 위하여 관향(管餉) 5필, 운향(運餉) 8필, 고마청(雇馬廳) 5필 등 18필의 무역짐을 싣기 위한 말(買販駙馬)을 부연사행 편에 들여보내도록 허가했으며 1666년(현종 7)에는 개성부의 요청으로 이상 3곳의 짐말(駙馬)을 1필씩 덜어내 개성부에 3필을 지급하였다.¹⁴²⁾ 이들 서북지역 관아에 배정된 짐말의 수는 곧 8포의 정수를 의미한다.¹⁴³⁾ 당시 한 짐말에 싣는 은의 정액이 2,000냥이므로 한 짐말은 곧 당하관의 8포 정액에 상당하였다. 결국 정부는 서북지역 관아의 비중에 따라 적게는 3개, 많게는 7개의 ‘별포(別包)’를 배정한 것이며 이같은 별포무역은 중앙관아의 별포무역과 마찬가지로 부연역관이 주관하였다.

140) 《통문관지》 권3, 사대 도강장.

141) 《승정원일기》282, 숙종 7년 4월 28일: 《등록유초》, 숙종 16년 2월 17일.

142) 《등록유초》, 현종 7년 1월 11일.

143) 《비변사등록》82, 영조 3년 11월 17일·19일.

그러나 점차 평양·의주·개성의 부상들이 별포무역을 하는 지방관장들에게 청탁하여 무역을 전담하는 무역별장(貿易別將)으로 등장하였다. 곧 1681년(숙종 7)에는 관·운항에 이어 개성부에서도 무역별장을 청으로 들여보냈으며,¹⁴⁴⁾ 그 뒤 무역별장제는 양서(兩西) 감영과 경기감영에까지 확대·적용되었다. 이 무렵에 정식화된 각 관아의 무역별장 수는 경기감영별장·개성부별장·황해감영별장·보궐청별장(補闕廳別將)·평안감영별장·관향별장·병영별장·운항별장 각각 1명씩 모두 8명이었다. 이들은 각 관아의 ‘고(庫)’나 ‘청(廳)’의 정식 별장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실별장(實別將)이라 불리었다. 관아에서는 이들에게 무역자금을 지급하여 사행무역에 참여시켰으므로 이들의 무역형태를 공무역(公貿易)으로 지칭하고 있었다.¹⁴⁵⁾

그런데 1686년(숙종 12)에 〈남북삼상연변범월금단사목(南北蔘商沿邊犯越禁斷事目)〉이¹⁴⁶⁾ 제정된 후 그 해 5월에는 무역별장의 파견이 금지되었다가 평안감사의 요청으로 무역별장을 다시 들여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해 9월에 다시 특진관 김덕원(金德遠)에 의해 그 해의 동지사행에는 관·운항의 무역별장 각 1명만 짐말 1필씩을 지급하여 보내기로 하고 다른 아문의 무역별장은 보내지 않기로 하였다.¹⁴⁷⁾ 이후 앞에 적은 8군데의 별장은 여전히 보내졌으나, 1693년(숙종 19)에 이르러 경기감영과 평안감영 및 황해도의 보궐청별장 등 3명이 삭감되었다.¹⁴⁸⁾

이처럼 경기·황해·평안도의 부상들 중 일부가 일찍부터 각 관아

의 정식 별장 곧 실별장으로서 사행무역에 참여한 반면, 일부의 부상들은 관장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임시로 사행무역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때로는 돈을 바치고 실별장을 대신하여 보내지기도 하고,¹⁴⁹⁾ 때로는 관아에 마세(馬稅)를 납부한 뒤 별장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마세는 각 관아에 공인된 사행마필을 상인이 빌려가는 대가인 셈이다. 이들은 사상들로서 별장 행세를 한데 불과하므로, 실별장과 구분하여 가별장(假別將)으로 지칭한다.¹⁵⁰⁾ 똑같은 부상 출신이지만 전자는 관상적(官商的)인 성격이 농후하였고 후자는 관아와 결탁한 관허(官許) 사상들이었다.

이상과 같이 17세기 후반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부상들이 사행원역과 결탁하거나 각 관아에 의탁하여 사행무역에 참여하였고 이들은 부연역관과 더불어 중국물화를 수입, 왜관을 통해 일본에 수출하였다. 이 사상들을 통하여 중국물화를 수입한 관아에서는 이들을 별장으로 삼아 차인(差人)이란 명목으로 관문(關文)을 발송하고 왜관으로 내려보냈다. 차인들은 관아의 공무역품에 덧붙여 자신들의 연화까지 ‘공화(公貨)’라 칭하고 왜관의 상인들보다 먼저 대금을 받아냈고¹⁵¹⁾ 그들 물품은 면세되었다. 이 면세는 흉년으로 인한 관아의 재정적 보충이나 군문의 군수품 조달을 위한 재원확보를 이유로 주어진 특권이었다. 호조는 각 아문들의 중국물화에 대한 면세권을 박탈하려고 노력하였지만¹⁵²⁾ 군수품의 조달이나 칙사비용 마련 등을 이유로 내세운 경·외 아문의 반대를 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경·외의 관아와 결탁한 부연상인들은 차인의 칭호를 띠고 수출업무상의 유리한 여건을 누리고 있었다.

144) 《승정원일기》283, 숙종 7년 5월 23일.

145) 《비변사등록》47, 숙종 19년 4월 5일.

146) 《비변사등록》40, 숙종 12년 1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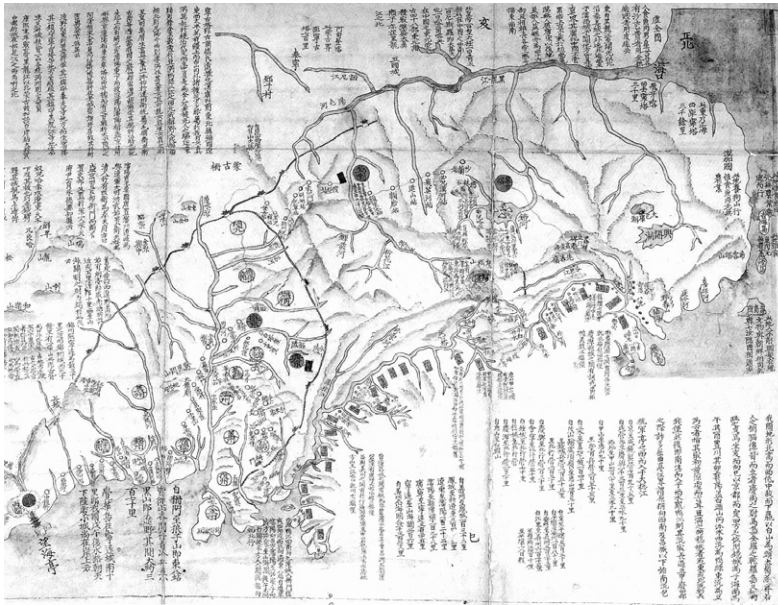
147) 《승정원일기》318, 숙종 12년 9월 21일: 《등록유초》, 숙종 12년 9월 22일.

148) 《비변사등록》47, 숙종 19년 4월 5일.

149) 《통문관지》 권3, 사대 도강장.

150) 《비변사등록》47, 숙종 19년 4월 5일.

151) 《승정원일기》272, 숙종 5년 9월 5일: 《비변사등록》35, 숙종 5년 9월 6일.



서북피아교계도(해동지도)

이처럼 서울·개성·황해·평안도의 사상들은 사행원역이나 경·외의 관아와 결탁하여 연경무역에 가담하는 한편으로 산해관 동쪽 곧 관동의 물화를 국내에 수입·판매할 기회를 노렸다. 그것은 17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관동에서도 상품생산이 증가하였고 금주(金州)·복주(復州)·해주(海州)·개주(盖州) 등지의 면화와 심양·산동의 대승삼포(大布三升), 중후소(中後所)·요양(遼陽)의 모자 등이 상품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이들 상품을 조선 사행로에 있는 심양·요동·책문 등지로 집하(集荷)시켜 양국 상인들의 상혼을 자극하였다.¹⁵³⁾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책문과 심양에서 이루어진 교역이다.

당시의 사상들이 부연사행으로서 북경까지 가지 않고도, 주로 책문

152) 《승정원일기》297, 숙종 9년 3월 9일.

과 심양에서 관동물화를 수입할 수 있는 기회는 세 가지였다. 첫째는 단련사제(團練使制), 둘째는 여마제(餘馬制), 셋째는 연복제(延卜制)였다.¹⁵⁴⁾ 단련사는 사행로 변화와 심양 세폐 분납과 관련이 있다. 즉 조선 사행이 1665년(현종 6)부터 심양을 거쳐 연경으로 가도록 되자, 조선 사행은 직접 심양에 들러 방물을 분납하도록 하고 분납품을 내려 놓은 인마는 곧 귀환토록 하였다. 단련사는 바로 심양에서 귀환하는 인마를 이끌고 돌아오는 임무를 띤 관리였으며,¹⁵⁵⁾ 동시에 심양팔포권을 갖고 심양무역을 주관한 사람이었다.¹⁵⁶⁾ 다시 말해 단련사는 심양세폐를 운송하고 관아무역을 관장하는 한편 심양팔포 무역 이외의 잠상행위를 막기 위해 파견한 관리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임무를 역이용하여 일반 사상의 교역을 규찰하지 않고 그들의 영수가 되어, 여러 날을 심양과 책문에 머물면서 마음껏 매매하고 그 짐을 심양에서 돌아오는 250여 필의 말에 싣고 왔다. 더구나 단련사제를 이용한 교역이 많아지자, 이들 물화를 실어오기 위한 연복마가 따로 파견되기도 하였다.¹⁵⁷⁾

연복법은 원래 사행이 연경으로부터 책문에 되돌아 올 때 의주부에서 빈말(空馬)을 보내 사행원역의 복물을 운송해 왔던 제도였다.¹⁵⁸⁾ 그러나 연복법은 점차 빈말의 입송(入送)을 기회로 하여 많은 은화를 책문으로 가지고 들어가 교역하고, 다시 사행의 짐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인마를 이끌고 돌아오는 대청교역의 한 방편이 되고 있었다.¹⁵⁹⁾

연복법을 이용한 후시교역은 17세기 후반부터 성행한 것으로 보이

153) 《통문관지》 권3, 事大 開市.

154) 유승주, 〈앞의 글〉, 232~234쪽.

155) 《통문관지》 권3 事大 瀋陽 交付 分納.

156) 《비변사등록》82 영조 3년 11월 17일 8책 195쪽.

157) 《영조실록》 권11 영조 3년 4월 壬寅條.

는데, 표면적인 원인은 사행의 회환 일정이 급하여 사행일행이 무역집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책문을 나오게 된 데 있었다. 이에 역관은 복명 후 다시 의주로 가 무역집이 도착하기를 기다려 빈말을 이끌고 책문에서 짐을 인수해 왔던 것이다. 역관과 사상은 이때를 이용하여 규제를 받지 않고 활발한 무역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여마제는 사신 일행이 압록강을 건너 책문에 들어가는 중에 방물과 세폐를 실은 말이 혹 쓰러질 것에 대비하여 10여 태(馱)를 실을 정도의 말을 여분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다.¹⁶⁰⁾ 그런데 의주부는 여마에 은화 몇 냥을 받고 수를 제한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였는데, 그 중에는 정부가 금하는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¹⁶¹⁾ 여마제가 책문무역의 기회로 변모되기 시작한 것은 1680년경이었으며, 1690년(숙종 16) 여마의 수는 300여 필에 달하였다.¹⁶²⁾

그런데 서울·개성·황해·평안도의 사상들이 단련사·여마·연복제에 편승하여 심양 특히 책문무역을 실현시킨 데는 청국 상인들의 역할 또한 컸다. 청국상인들로서 심양·책문무역을 조종한 것은 난두(欄頭輩)들이었다. 난두는 1689년(숙종 15)에 요동과 봉황성의 거호(車戶) 12명이 조직한 운송청부업체였다. 난두들은 심양·책문 간의 운송업으로 재부를 축적하자 심양의 봉천부에 상세(商稅)를 수납기로 약속하고, 부연사행이 오고가는 때를 이용하거나 단련사 일행을 상대로 관동의 상고와 물자를 심양으로 끌어들여 후시(後市)의 이익을 취하고 있

었다.¹⁶³⁾ 책문후시도 이들에 의하여 조장되었다. 조선의 사상들은 이들과 결탁하고 단련사 일행이나 여마제 및 연복제에 편승하여 그때그때 관동 각지의 상고를 책문으로 유치하여 후시무역을 실현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국내의 사상들이 청의 난두와 결탁하여 후시무역을 감행함에 따라 그에 따른 폐단 또한 적지 않았다. 연복제의 경우 사행이 책문에 도착하면 감시를 받지 않기 위하여 3사신을 먼저 귀국하게 하고 연복마를 이용, 대대적인 밀무역을 감행하였다. 이에 정부는 1694년(숙종 20)부터 사신이 연복마와 함께 귀국하도록 하였고 연복제에 의한 책문후시를 철저히 봉쇄하였다.¹⁶⁴⁾ 그러나 여마제는 책문에서 사신과 헤어진 뒤 귀국하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후시무역을 실현할 수 있었다. 여마제에 편승한 사상들의 책문후시는 의주부윤의 비호하에 날로 번창해 갔다. 1690년(숙종 16) 정부는 방물여마 수십 필 외에는 들여보내지 못하도록 하였지만¹⁶⁵⁾ 사상들에 의한 여마의 수가 날로 증가되자 정부는 부득이 1700년(숙종 26)에 이르러 여마제 자체를 혁파하고 말았다.¹⁶⁶⁾ 이처럼 정부가 연복제와 여마제에 편승한 사상들의 책문후시를 봉쇄하자 사상들은 점차 단련사행에 파고들었다. 이들은 부연사상들인 ‘연상(燕商)’과 구별하여 ‘심상(瀋商)’이라고도 불렀다. 심상의 수가 늘어나면서 단련사는 이들로부터 사사로이 상세(商稅)를 수취하기 시작하였다. 단련사의 수세는 곧 의주부윤과 결탁한 비합법적인 수취행위로서 그들 상호간에는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었겠

158) 《日省錄》189, 정조 10년 정월 초6일.

159) 《비변사등록》84, 영조 4년 7월 초3일 8책 411~412쪽 참조.

160) 《비변사등록》40, 숙종 12년 5월 4일 3책 946쪽.

〈所謂餘馬者 自義州之欄門 間或餘馬敗傷難於運卜 別送空馬十餘馱矣〉.

161) 《통문관지》권3 事大 渡江狀.

162) 《비변사등록》44, 숙종 16년 10월 13일.

163) 《승정원일기》546, 경종 2년 10월 19일: 《통문관지》권3, 事大 開市.

164) 《승정원일기》664, 영조 4년 6월 28일: 《통문관지》권3, 事大 開市.

165) 《비변사등록》44, 숙종 16년 10월 13일.

166) 《등록유초》, 숙종 26년 3월 26일.

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에는 조금도 보탬이 될 것이 없었다. 따라서 1705년(숙종 31) 정부는 이를 규제하고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곧 “단련사는 의주부 내의 군관 대신 부근의 변장(邊將)을 윤차(輪差)토록 하고 사상에 대한 수세도 상고들이 직접 의주부에 납세하여 고마비(雇馬費)에 충당하되 세은액을 각각 4~5냥 정도로 책정하라”¹⁶⁷⁾는 것이었다. 이때의 수세대상은 심양에서 무역하는 심상(瀋商)이었고 과세대상도 연화가 아니라 관동물화였다. 그러나 1708년(숙종 34)에는 북경에서 무역하는 연상일지라도 관동물화를 수입할 경우에는 과세키로 결정하였다.¹⁶⁸⁾ 어쨌든 이상과 같은 정부의 시책은 단련사 일행 뿐 아니라 부연역관·상인들에게 심양은 물론 책문후시까지도 사실상 공인한 조치였다.

1705년(숙종 31)에 후시무역이 합법화되면서 심양보다는 우리나라에 근접한 책문이 더욱 번창해 갔다. 관동물화로 이름난 면화나 대포삼승(大布三升)·모자 등을 실은 수레가 책문에 폭주할 뿐 아니라 남방의 장사배가 우가장 해구(海口)로 올라 왔으며 부연역관·상인들만이 수입할 수 있었던 백사도 연경의 상고가 직접 책문까지 싣고 왔다. 따라서 봉황성 내의 점포들도 산해관 서쪽의 대도화에 있는 점포와 다를 것이 없었다.¹⁶⁹⁾

그간 연상들이 인력과 재력을 소모해 가면서도 부연사행을 따라 연경을 왕래한 것은 소주·항주의 백사나 비단을 수입하기 위함이었는 데 이제 남방의 상선이 우가장에 들어오고 연경의 상고들이 책문까지 오는 한 굳이 연경까지 가야할 이유가 없었다. 이들은 소관 아문에 요

청하여 단련사제에 편승하기를 원하였고 각 아문에서는 이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정부는 1707년(숙종 33) 개성·해서·관향·운향·평안병영 등 5처에 한하여 무관별장(貿販別將) 각 1명씩을 파견토록 허락하였다.¹⁷⁰⁾ 이때 각 아문에 허가한 8포의 정액수를 보면 개성부 2, 황해감영 1, 평안감영 2, 평양병영 1, 의주부 6 등 모두 12개 8포였다.¹⁷¹⁾

단련사의 인솔하에 5처의 무역별장들은 소속 관아에 배정된 8포은을 가져가 심양이나 책문에서 공무역을 담당하였다. 정부는 무역별장에게 자기마(自騎馬) 1필만 이용토록 허가하고 구인(驅人)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여 사무역을 허용치 않으려 하였다.¹⁷²⁾ 그러나 이 무렵에는 이미 단련사가 심양에서 이끌고 온 공쇄마가 모두 상고들의 무역품을 싣고 오는 운송수단으로 변질된 상태였다. 부연원역들이 심양·책문에서 구입해 두고 간 상품과 함께 무역별장 및 사상들의 공·사무역품 등이 모두 단련사의 공쇄마에 실려 귀환하였다. 오히려 250여 필에 달했던 공쇄마로도 부족하여 사행의 귀국시에나 파견하던 연복마를 책문으로 들여보내야 할 지경이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부연원역과 단련사 일행의 8포은을 제외하고도 매번 후시에 유출되는 은만도 10만여 냥이며 후시가 해마다 4~5차례씩 열렸으므로 40~50만 냥에 달하는 데다가 8포 은까지 합한다면 연간 총 50~60만 냥이 청나라로 유출되고 있었다.¹⁷³⁾ 그런데 1720년(숙종 46)경부터 대청무역상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청·일 양국 간에 직교역이 활발해진 것이다.

청나라는 그 초기부터 해금(海禁)을 엄격히 실시하여 외국과의 무역

167) 《비변사등록》56, 숙종 31년 11월 7일: 《통문관지》 권3, 事大 開市.

168) 《비변사등록》59, 숙종 34년 12월 6일.

169) 《통문관지》 권3, 事大 開市.

170) 《통문관지》 권3, 事大 渡江狀.

171) 《비변사등록》82, 영조 3년 11월 17일: 《비변사등록》82, 영조 3년 11월 19일.

172) 《통문관지》 권3, 事大 渡江狀.

173) 《통문관지》 권3, 事大 開市.

을 봉쇄해 왔는데 1684년(숙종 10)에 해금령을 해제하였다. 그리하여 이듬해부터는 복주(福州)·하문(廈門)의 상선들이 일본의 나가사키[長崎]로 도항하기 시작하였고 1689년(숙종 15)에는 청 정부가 나가사키에 상관(商館)을 설치하였다.¹⁷⁴⁾ 이로부터 30여 년이 지나자 그간 백사나 필단을 수입하기 위해 왜관으로 몰려들었던 일본의 상인들 대부분이 청국상인과 직교역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부연역관과 상인들이 청·일간의 중계무역으로 많은 차익을 얻어왔던 수출로가 막히게 된 것이다. 일본상인들의 내항(來航)이 줄고 구매력이 떨어지자 왜관에는 연화가 쌓여 갔고 대가의 지불 또한 지연되어 중앙과 지방의 각 아문에서 역관과 상인들에게 대여한 무역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1722년(경종 2)에는 정부가 상채청(償債廳)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청·일과의 중계무역이 쇠퇴해짐으로써 가장 타격을 받게 된 것은 부연역관들이었다. 앞서 1705년(숙종 31)에 심양·책문후시가 공인된 뒤 단련사 일행을 위시한 사상들에 의하여 수입된 관동물화와 백사나 필단은 일본으로 수출되기도 하였지만 국내에도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사상들의 중국물화는 국내의 각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의 향시(鄕市)를 통하여 깊은 산골에까지 침투하였다. 이처럼 청·일간의 중계무역로가 막히고 국내의 판로도 사상들이 독점하자 부연역관들은 상업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부연역관들은 활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사신들을 통하여 정부에 요구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도모하여 사상들의 무역로를 차단하기 시작하였다.

부연역관들은 조선상인 및 청국상인과 결탁해 있던 난두를 해체하

174) 《승정원일기》318, 숙종 12년 9월 21일: 《등록유초》, 숙종 12년 9월 22일: 《비변사등록》44, 숙종 16년 10월 13일.

였다. 난두들은 관동 상인뿐만 아니라 연경상고와 남방의 상선까지 책문으로 불러모으는 등 청상들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조선상인들과도 결탁하여 부연사행과 단련사 일행 및 연복제에 편승한 책문후시를 가능케 하였다. 역관들은 1722년(경종 2)에 심양의 예부에 난두의 혁파를 요청하였고¹⁷⁵⁾ 이듬해에는 역관 한영희(韓永禧)·김경문(金慶門)·유존창(劉在昌)·김택(金澤) 등이 직접 청의 조사관과 담판하여 난두를 해체시켜 버렸다.¹⁷⁶⁾ 그리고 1725년(영조 1)에는 연복제에 의한 책문후시를 엄금하고 범법자를 압록강변에서 효수토록 규정하였다.¹⁷⁷⁾ 이리하여 역관들은 책문후시를 조종하던 난두를 무력화시켰으며 사상들의 책문후시를 봉쇄하였다.

그러나 무역별장의 별포무역을 비롯한 단련사 일행의 공·사무역을 봉쇄하지 않는 한 역관들의 상업적인 이익은 보장될 수 없었다. 기회를 노리던 역관들에게 명분을 준 것은 1727년(영조 3)에 발생한 청채육국(淸債辱國) 사건이었다. 심양·책문후시가 공인된 뒤부터 조·청 상인간에는 무역이 활발해졌고 외상거래도 이루어졌었는데 후시를 봉쇄함에 따라 청국상인들이 채무변제를 요구한 것이다. 청국상인들에게 진 빚의 총액은 은 7만여 냥에 달하였고,¹⁷⁸⁾ 청나라는 조선정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이를 상환토록 강경하게 요구해 왔다. 청채육국사건은 역관들이 단련사 일행의 무역행위를 규제하도록 정부에 요청하는 계기도 되었지만 정부로서도 사상들의 무역을 금지할 수밖에 없게 한 사건이었다.

175) 《增補文獻備考》권176, 文聘考 經宗 2년.

176) 《增補文獻備考》권176, 文聘考 經宗 3년.

177) 《비변사등록》84, 영조 4년 7월 3일.

178) 《비변사등록》81, 영조 3년 3월 27일.

1727년에 정부는 심양 8포제를 혁파하기로 결정하고 이듬해 진주사행(進奏使行)에 역관 김경문을 청에 특파하여 심양 팔포무역을 폐지시켰으며 이어 단련사제도 혁파하였다.¹⁷⁹⁾ 그리고 같은 왕 5년(1729)에 정부는 역관의 팔포은 이외에 은이 청나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규 또한 제정하였다. 곧 ‘개시나 사행 때를 막론하고 400냥 이상을 소지하였다가 압록강 수검 때에 들켜서 잡히거나 규찰 당해 고발당한 자는 모두 강상(江上)에서 효수한 뒤 중앙에 보고토록 하고 300냥 이하는 3차 엄형(嚴刑)한 뒤 전 집안을 변경으로 옮겨 버리되 죄를 용서하는 은전을 베풀지 않는다.’¹⁸⁰⁾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이 역관들은 그들이 의도한 대로 청의 난두를 해체하고 연복제에 의한 사상들의 책문후시를 금하였으며 단련사제와 무역별장들에 의한 심양 팔포무역마저 폐지하여 사실상 사상들에 의한 일체의 대청 무역을 봉쇄하였다. 이에 사상들은 다각적인 보복과 저항을 하였다.

우선 의주부에서는 보복적인 차원에서 역관들이 팔포 정액의 지니고 가는 은화(包外持銀)에 대한 기찰을 강화하였다. 곧 영조 5년에는 역관 현유강(玄有綱)이 체포된 데 이어 역관 김문경(金文慶)은 천은 586냥을, 한두강(韓斗綱)은 천은 94냥·정은 15냥을 각각 8포은 외에 소지하고 있다가 기찰장교에게 체포되었다.¹⁸¹⁾ 이처럼 보복적인 차원의 기찰행위가 가혹해지자 영조는 의주부인들의 기찰을 중지시키고 서장관과 의주부윤이 조사토록 지시하였다.¹⁸²⁾ 그리고 금령을 강화하여 “이 뒤부터는 작문(作門) 내에서 잡힐 경우 은 100냥 이상을 소지한 자는

강변에서 효시하고 100냥 이하는 3차 엄형한 뒤 전 집안을 사변한다. 작문(作門) 밖에서 잡히면 100냥 이상의 소지자는 3차 엄형한 뒤 전 집안을 사변하고 100냥 이하는 1차 엄형한 뒤에 유배한다.”¹⁸³⁾고 규정하였다. 결국 수은법(搜銀法)이 강화됨에 따라 부연사행의 역관들은 물론 역관·상인들과 결탁하던 마부·노자 등의 밀수행위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¹⁸⁴⁾

역관들에 대한 보복행위는 책문후시가 폐지됨에 따라 이익을 상실하게 된 청국측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1728년(영조 4) 동지사가 돌아올 때 상인들도 수행하지 않았고 연복제에 편승한 사상들의 책문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자 봉황성 장군은 역관들에게 “우리들이 책문에서 수세해 왔던 2,000냥을 무엇으로 충당하란 말이나? 연복매매를 한 뒤라야 너희들의 짐(駝)을 내보내겠다.”고 협박하였고 짐이 이미 책문을 나온 뒤에도 청의 장경(章京)·갑군(甲軍)들이 봉황성장의 분부라면서 짐을 가로막고 길을 방해하였다.¹⁸⁵⁾

한편 1728년에 심양팔포제가 혁파된 뒤 황해·평안감사와 의주부윤이 팔포무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같은 왕 7년(1731)에는 개성부윤도 중강개시의 재원마련을 구실로 당시 서울 군문에서 이용하고 있던 포외월송제(包外越送制)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개성부윤의 요구가 반드시 개시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만 있지 않고 그 이면에는 관내의 사상들, 이를테면 무역별장으로 참여했던 상고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개성부윤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양서지역과 의주부에도 허락해야 하고 결국 사상들의

179) 《영조실록》 권15, 영조 4년 正月 辛酉.

180) 《비변사등록》88, 영조 6년 11월 17일.

181) 《승정원일기》698, 영조 5년 12월 10일.

182) 《비변사등록》88冊, 영조 6년 10월 6일.

183) 《비변사등록》88, 영조 6년 11월 17일.

184) 《비변사등록》88, 영조 6년 11월 17일.

185) 《비변사등록》84, 영조 4년 7월 3일.

무역로를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묵살하였다.¹⁸⁶⁾

이상과 같이 사상무역이 봉쇄되자 역관들에 대한 의주인들의 보복 행위가 뒤따랐고 청측에서는 책문후시를 강요하였으며 지방의 사상들은 소속 관장을 종용하여 무역권을 되찾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어느 경우도 무역로를 재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에 조·청 양국의 상인들은 일정하게 지방관원의 비호를 받으면서 비합법적인 국경무역을 감행하게 되었다.

1733년(영조 9)에 평안감사 권이진(權以鎭)은 압록강변의 사정을 염탐한 뒤 이렇게 보고 하고 있다. “강계군과 위원군의 조·청 국경지대 중 고산진과 별등진의 압록강 건너에 있는 세동·구랑합동·고도수동·비동·갈현동·둔동·황제성평 등지에는 청인(淸人)의 이주자가 날로 증가하여 많은 곳은 16~7호에 300~400명에 달하며 이들의 창고에는 중국물건이 충만해 있다. 이 지역의 주호(主胡)인 산서사람 이등사(李登四)와 심양사람 왕삼평(王三平) 및 당(唐) 또는 탕(湯)이란 성을 가진 자 3명은 모두 만금대고(萬金大賈)들로서 범법했거나 사업에 실패하여 여기로 도망한 자들이다. 이들의 수하에는 조선에서 도망한 자 3~4명씩을 두어 양국 간에 밀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의 교환과 문서의 처리를 맡기고 있었다. 그들은 조선상인들로부터 물화를 구입하여 심양 등지에 가서 팔고 있는데 양국 상인들 간에는 물화를 교역하기 위해 매일같이 왕래하는 실정이다”¹⁸⁷⁾라고 했다.

이처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조·청상인들 간의 밀무역이 성행했던 사실은 그 후의 사료들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다. 이를테면 1734년(영조 10)에 “만포진 부근의 압록강 중에 있는 작은 섬에서 청국상인이

교역하는 폐단이 크다.”¹⁸⁸⁾고 하였고 “평안도의 상인·승·석훈 등이 돈과 비단을 소에 싣고 창성을 지나다가 소가 강에 빠졌는데 청인이 건져 주었다.”¹⁸⁹⁾고 하였다. 또 이조참의 이종성(李宗城)이 “청채육국사건 이후 연복무역을 철저히 금지해 왔기 때문에 조·청 잠상들이 상업적 이익을 잃은지가 오래되었다. 이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한 번이라도 교역하고자 밤낮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와 팔 곳을 갈구하는 상인들이 떼지어 있다.”¹⁹⁰⁾고 하였다. 황해·평안 양도는 “당물(唐物)·은·비단이 모두 생산되는 곳이며 모든 물화가 폭주하는 곳”¹⁹¹⁾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지방 관장들이 사상과 결탁하여 그들을 비호했기 때문이다. 1734년(영조 10)에 평안감사 박사수는 “관서인이 서울사람을 유인한 경우 사형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청국상인에게 전매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청국상인과 매매한 것으로 단정하여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왕정(王政)에 어긋나는 처사”¹⁹²⁾라고 하면서 관서상인을 옹호하였다. 1739년(영조 15)에 관서어사 이성효가 복명할 때 보고하기를 “삭주부사 이만유가 의주부의 상인에게 필단을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쌀 수백 석을 지급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신이 몰래 상인들이 자주 출입하는 장시 내의 기가(妓家)에 들어가 상인들의 문적을 수검하려 하였는데 이만유가 이 소식을 듣고 포고를 풀어 신이 데리고 간 서리를 포박해 버렸다.”¹⁹³⁾고 하였다.

188) 《비변사등록》95, 영조 10년 3월 2일.

189) 《영조실록》 권35, 영조 9년 7월 壬辰.

190) 《영조실록》 권39, 영조 10년 12월 癸丑.

191) 《비변사등록》99, 영조 12년 6월 3일.

192) 《영조실록》 권10, 영조 10년 6월 戊午.

193) 《영조실록》 권50, 영조 15년 9월 癸丑.

186) 《비변사등록》90, 영조 7년 7월 7일: 《비변사등록》90, 영조 7년 10월 23일.

187) 《영조실록》 권35, 영조 9년 7월 壬辰.

이처럼 사상들의 밀수행위가 비록 관장과 결탁되어 그 비호하에 있었다고 하지만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고 또 당국에 발각될 경우에는 처벌이 가혹하였다. 따라서 사상들은 정부가 공인한 무역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관장들에게 청탁하였고 관장들 또한 소관 아문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정부에 요청해 왔다. 이러한 관아의 요구는 1754년(영조 30) “의주부의 채무변제와 변경민의 생계지탱”¹⁹⁴⁾을 강력히 주장하는 의주부의 요청에 의해 관철되었다. 의주부는 조·청 사행의 운항(運餉)을 맡으면서 빚을 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항고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문후시에 의한 1/10의 상세(商稅)를 수취토록 했던 것이고, 정부는 심양 팔포 12개 정액 중 6개를 의주부에 허가했던 것이다. 결국 정부가 ‘변경민 생계 보호’라는 명분으로 책문후시를 허가한 이면에는 의주상인들의 끈질긴 요구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때의 책문후시는 만상=의주상인에게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만상후시(灣商後市)’로 불려졌다. 그리고 역관의 8포 정액과 같이 일정액의 정액무역권을 만상에게 허가했기 때문에 ‘만포(灣包)’라고도 불렀다. 만포정액은 정기사행인 절사에 10,000냥, 임시사행인 별행에 5,000냥, 자행(咨行)에 1,000냥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¹⁹⁵⁾ 이 만포의 정액무역을 규제하는 시행세칙이 <비포절목(比包節目)>이었다. <비포절목>을 마련한 목적은 종래의 책문후시 때 의주부가 사상들의 수출액만을 검사와 수입액은 불문에 붙였기 때문에 잠상행위를 도모하는 자들이 압록강을 건널 때만 무사하면 뒷일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 간교한 폐단이 속출하자 수출·수입 모두를 검사하여 잠상행위를 근

절시키고자 한 데 있었다.¹⁹⁶⁾ 이러한 조처는 한편으로는 수출품보다 수입액에 과세하는 것이 더욱 유리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¹⁹⁷⁾ 그리고 <비포절목>을 제정하면서 수출품목을 제한하였다. 곧 은과 인삼의 수출을 금하고 피물·종이·주(紬)·저(苧)·포·면 등의 잡화를 은값으로 환산하여 절사 10,000냥, 별행 5,000냥, 자행 1,000냥에 총당토록 규정하였다.¹⁹⁸⁾

(4) 18세기 후반 사상무역과 모자 수입무역

조선정부가 1754년(영조 30)에 인정한 책문후시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즉 의주상인만 후시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만포(灣包)는 피물·지지 등 잡화로만 채울 수 있었고, 또 산해관 동쪽의 물화만을 수입토록 하였다. 그러나 책문후시 곧 만포무역은 사실상 국내의 사상들에게도 대청무역로를 열어 준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18세기 후반 이후 청국상인과의 무역을 실현해 왔던 서울상인과 개성·평양·안주·의주 등지의 사상들, 이른바 서상(西商)들의 직·간접적인 대청무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개성상인이 중심이 된 상인들은 수출이 허가된 피물·지지(紙地)·주(紬)·저(苧)·포(布)·백(綿) 등의 국내상품을 의주상인에게 판매하고 동시에 의주상인이 수입한 중국물화를 사서 국내에 팔았다. 개성상인은 책문후시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의주상인에게 수출상품을 독점판매하고 또 국내의 수요를 감안하여 중국물화를 선택·수입하도

194) 《비변사등록》170, 정조 11년 5월 15일.

195) 《만기요람》 제용편 5. 책문후시: 《비변사등록》170, 정조 11년 5월 25일.

196) 《만기요람》 제용편 5. 연행팔포 비포: 《비변사등록》127, 영조 30년 8월 5일.

197) 《비변사등록》167, 정조 8년 10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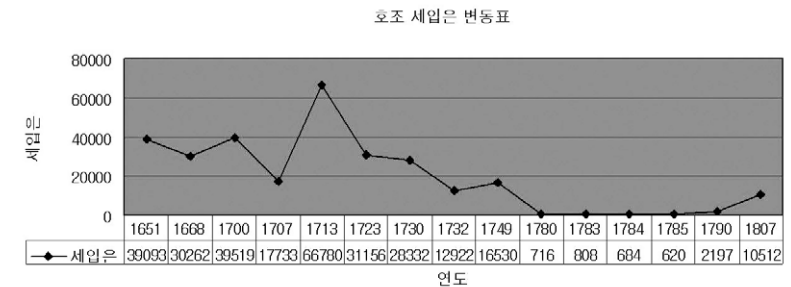
198) 《만기요람》 제용편 5. 책문후시: 《비변사등록》170, 정조 11년 5월 25일.

록 함으로써 사실상 의주상인을 조종하고 있었다. 의주상인의 책문후시가 공인됨에 따라 18세기 후반에는 피물·지지·주·저·포·면 등의 생산이 활기를 띠게 되고 개성상인을 위시한 연상들의 매점매석 행위가 두드러졌으며, 반대로 봉건적 특권을 누려 왔던 시전상인과 공인의 상업활동은 위축되고 있었다.

피물의 경우만 해도 우선 소가죽은 18세기 후반부터 청과 일본에 대량으로 수출되던 상품이었다. 소위 비합법적인 도살행위가 만연하였고 개성상인들은 현방(懸房)이나 창방시민(昌慶市民)들을 따돌리고 소가죽을 매점하여 의주상인에게 판매했으며,¹⁹⁹⁾ 구피계(狗皮契) 공인들만이 독점 납품하던 수달가죽(水獺皮)도 개성상인들이 사냥꾼에게 선금을 지불·매점하여 의주상인에게 팔았다.²⁰⁰⁾ 지지(紙地)도 종래 지계공인(紙契貢人)과 지전시민(紙塵市人)들이 독점 수매하던 삼남의 방물지(方物紙)와 별장지(別壯紙)·설화지(雪花紙) 등을 개성상인이 제지사찰의 승도와 짜고 예매하여 의주상인에게 전매했다.²⁰¹⁾ 그리고 저산(苧産) 7읍의 저포(苧布)도 서울의 저포전 시인을 따돌리고 사갔으며²⁰²⁾ 포와 목 또한 매점 매석하였다.²⁰³⁾

이처럼 청·일 간 직교역으로 18세기 중반 조선의 중계무역이 크게 쇠퇴한 이후에도 사상에 의한 대청무역은 오히려 크게 성장하였다. 반면 왜관을 통한 중국물화의 수출길이 끊기고, 국내의 관로도 사상층에 의해 빼앗겼으며, 왜은 유입의 감소로 무역자금 대출이 어려워진 역관

〈도표2〉 17~19세기 호조 세입은의 변화



비고: 《증보문헌비고》 권 155, 재용고 2 호조일년 경비출입수
《만기요람》 재용편 4 호조일년 경비

무역은 큰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 도표를 보면 호조의 은 수입은 1713년을 정점으로 1720년대에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1780년대에 접어들면 거의 정체상태에 있음을 볼 수 있다. 호조의 은 수입 감소는 왜관 무역의 침체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연원역을 가운데는 그들의 팔포를 다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²⁰⁴⁾ 임시사행인 경우에는 그들의 팔포가 거의 텅비는 지경에 이르렀다.²⁰⁵⁾ 역관들이 사행무역에서 이익을 잃게 되자, 그들의 자제들이 세습적으로 응시하던 역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²⁰⁶⁾ 부연사행을 통해 청국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던 조선정부로서는 역관들을 부양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했다. 이에 조선정부는 공용은을 마련함과 동시에 역관들의 무역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안으로, 1758년(영조 34) 관모제(官帽制)를 실시하였다.

모자(帽子)는 주로 중후소(中後所)의 모자창(帽子廠)에서 양털을 이

199) 姜萬吉,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高麗大出版部, 1973, 116쪽, 122쪽; 宋贊植, 《懸房考》 上·下, 《韓國學論叢》 6輯·7輯, 國民大韓國學研究所, 1984.5; 김동철, 〈19세기 牛皮무역과 東萊商人〉 《韓國文化研究》, 釜山大 韓國문화연구소, 1993, 8, 415~419쪽.

200) 姜萬吉,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高大出版部, 1973, 116~117쪽.

201) 《비변사등록》 172冊, 정조 12년 1월 8일.

202) 劉元東, 《韓國近代經濟史研究》, 一志社, 1977, 228~229쪽.

203) 《備邊司謄錄》 206冊, 純祖 17년 11월 11일.

204) 《비변사등록》 114, 영조 21년 8월 9일 11책 498쪽.

205) 《비변사등록》 115, 영조 22년 4월 초3일 11책 596쪽.

206) 《비변사등록》 35, 영조 34년 10월 26일 13책 161~162쪽.



모자를 쓴 조선사신

용하여 만든 방한용품으로, 17세기 후반 관동물화로 수입되던 대표적 물종의 하나였다. 이 모자를 1758년부터는 조선 정부가 지급한 자금으로 역관이 모자를 수입해 오는 대신 부

연사행에 필요한 공용은(公用銀)을 역관에게 부담시키는 관모제가 실시된 것이다. 즉 관모제는 조선정부가 중앙 5군영 및 평안감영과 병영 등 각 이문으로부터 관은(官銀) 4만 냥을 거두어 당상상통사 및 역관에게 지급하면, 이들이 사행 중 연례적인 비용을 우선 제하여 쓰고 남은 은을 무역자금으로 삼아 모자를 수입한 것이다. 역관에 의해 수입된 모자는 모자전민·의주상인·개성상인에게 국내 판매를 위임시키는 대신 이들에게 모자의 원가와 원가 외 일정량의 은을 더 받아들임으로써 원금을 재확보하고 이윤을 남겨 별사의 비용으로 저축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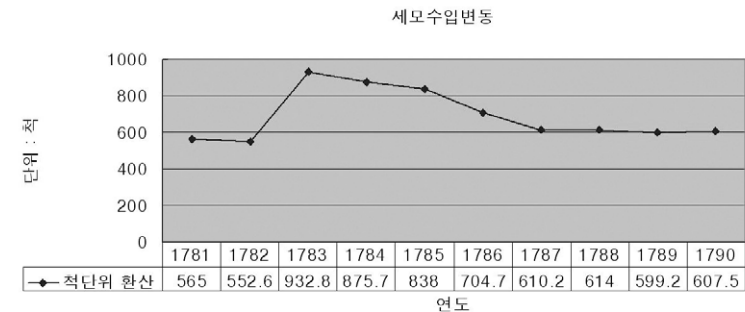
그러나 관모무역은 국내의 은화 보유량이 심각히 고갈된 상황에서 관은을 마련하여 모자를 무역함으로 인해 오히려 국내의 은화를 더욱 소모케 하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은의 고갈이 심각한 상황에서 관은의 대출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관모 수입과 관모가의 환수도 원활할 수 없었다. 아울러 관모제는 관이 직접무역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명분론도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1774년(영조 50) 폐지되었다.

그러나 조선정부에게 공용은 확보와 역관 생계 부양이라는 현실적

요청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였다. 관은 대출 문제와 관무역이라는 명분상의 논란 그리고 외교비용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요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1777년(정조 1)에 제정 시행된 세모법(稅帽法)이었다. 세모법은 모자무역을 통해 공용은을 마련하려는 제도였다는 점에서 관모제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첫째 모자 무역의 주체가 역관에서 개성상인과 의주상인으로 바뀌었다는 점, 둘째 모자 무역에 드는 자금 또한 관에서 이들 상인의 자금으로 바뀌었다는 점, 셋째 모자의 국내판매와 그 수익의 관리도 관으로부터 이들 상인의 손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 대신 조선정부는 매년 모자 1천 척을 수입하여 총세액 4만 냥을 거둬들여 연례사행과 별행의 비용을 마련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관모든 세모든 간에 모자무역은 국내 은의 유출을 수반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박지원과 홍량호는 ‘천년을 가도 헐지 않는 은을 가지고 삼동(三冬)을 쓰면 내버리는 물품을 바꾸니 어리석은 짓’ 혹은 ‘경사(經史)의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모자를 무역하는 것은 금(金)을 연못에 던지는 것과 같다’고 하며 모자무역을 비판했다. 또한

〈도표3〉 1781~1790년 모자수입량 변동



비고: 《비변사등록》177 정조 14년 7월 26일

모자무역은 1년의 수입 한도인 1천 척을 다 채우지도 못하였다.

이는 1781년(정조 5) 정부가 서울의 모자전민에게 200척의 면세모자(免稅帽子)를 인정하자, 의주상인과 개성상인은 모자무역보다는 책문 후시 및 합법 비합법의 여러 형태의 무역에 관심을 더 기울였기 때문이다. 자연히 세모무역을 외교경비 마련은 기대할 수 없었으며, 역관들의 경제적 처지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다.

(5) 19세기 홍삼무역과 무역정책의 한계

18세기 후반 개성상인은 정부가 공인한 수출품목을 매점하여 의주상인들에게 전매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정부가 금수품(禁輸品)으로 규정한 인삼과 은의 수출로를 타개하고 있었다. 그 중 인삼은 산삼으로서 약효가 뛰어나 소량으로도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삼은 국내는 물론 청과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무절제하게 대량으로 채취해 왔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르면 거의 멸종상태를 면치 못할 만큼 품귀현상을 빚게 되었다.²⁰⁷⁾

산삼의 품귀 현상으로 공삼(貢蔘)의 조달마저 어렵게 되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삼호(蔘戶)들은 파산, 유리하였으며, 인삼가격은 날로 폭등하였다. 이 때문에 1752년(영조 28)에 정부는 사행팔포에 지지·피물·면포·해삼·다시마 등의 잡물(雜物)을 충당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어 1754년(영조 30)에는 만포(灣包) 무역을 허가하면서 인삼을 은과 함께 수출 금지품목으로 지정하였다.²⁰⁸⁾

이처럼 인삼 품귀 현상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에 전라도

동북현(同福縣)에 사는 한 여인이 산삼을 인공으로 재배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²⁰⁹⁾ 인삼 재배법은 급속도로 호남과 영남에 파급되었고 18세기 말에는 이미 가삼(家蔘)의 매매가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개성의 삼포

따라서 정조는 1797년 2월 〈화성부내신접부실호삼모이획절목(華城府內新接富實戶蔘帽已劃節目)〉을 제정하면서 수원에 이주하는 부실호에게 모자와 가삼(家蔘)의 전매권을 주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판중추부사 이병모의 강한 반대로 좌절되었다.²¹⁰⁾ 그러나 사행팔포에 은과 함께 가삼을 채워 갈 수 있도록 허가하는 사항만은 그대로 인정 시행되었다. 홍삼무역을 공식화한 포삼제(包蔘制)가 실시된 것이다. 결국 포삼제는 침체의 늪에 빠진 역관의 팔포무역을 돕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포삼세를 부담시켜 외교경비를 마련하려 한 것이다.

포삼제 실시로 홍삼무역권과 국내가삼 전매권을 처음 따낸 것은 역관과 서울 상인이었다. 원래 팔포에 채우는 인삼이라는 의미의 포삼은 가삼을 일컫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삼은 산삼과 달리 약효가 덜하고 장거리를 수송할 때에 상할 우려가 많아, 18세기 후반에는 가삼을 찌서 말리는 홍삼제조법이 개발되었다. 따라서 포삼은 팔포에 채우는 홍삼을 말렸는데, 포삼제 실시와 더불어 부연역관들의 주관 하에 홍삼제조장인 증포소(蒸包所)가 한강변에 설치되었다.

207) 《영조실록》 권49, 15년 4월 己亥: 《비변사등록》 124, 영조 28년 6월 10일.

208) 金鍾圓, 《朝清交涉史研究》,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3, 10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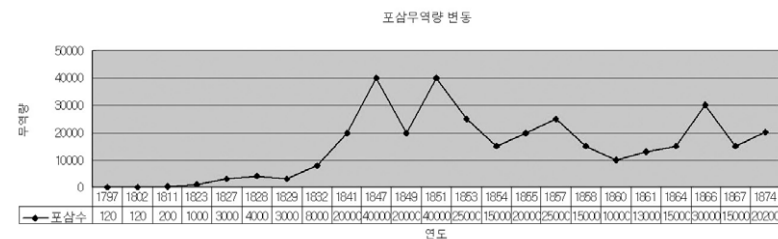
209) 강만길, 〈앞의 책〉, 123쪽.

210) 《비변사등록》 185, 정조 21년 2월 22일 〈華城府內新接富實戶蔘帽已劃節目〉.

그러나 인삼재배업과 홍삼제조업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실제로 18세기부터 인삼재배와 홍삼제조업에 자본을 투입하여 삼포(蔘圃)를 경영하고, 홍삼을 제조하기 시작한 것은 개성상인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개성유수를 움직여 순조 10년(1810)에는 경강의 증포소를 혁파하여 개성으로 옮기고, 포삼의 전매권을 확보하였다.²¹¹⁾ 또 종래의 포삼계(包蔘契)가 혁파되었고 만상이 포삼의 무역업무를 장악하였다.

개성상인이 포삼의 전매권을 장악하고 의주상인들이 포삼의 무역권을 독점하면서 개성의 삼포는 더욱 확장되어 갔으며 홍삼의 생산량도 급증하고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역관과 상인들의 영리욕과 관아의 수세욕이 맞물려 포삼허가액 또한 날로 증가했는데 1797년(정조 21)에 120근에 불과하던 것이 여러 차례의 증액을 거듭한 끝에 1851년(철종 2)에는 4만 근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왕조의 포삼세(包蔘稅) 수입도 애초 2만 4천 냥 정도에서 약 20만 냥까지 늘었다. 포삼세가 늘어나자 조선정부는 이를 사역원 비용 차원을 넘어 호조의 재정을 보충하는데 까지 활용하게 되었다.

〈도표4〉 19세기 포삼무역량 변동표



비고: 이철성, 《조선 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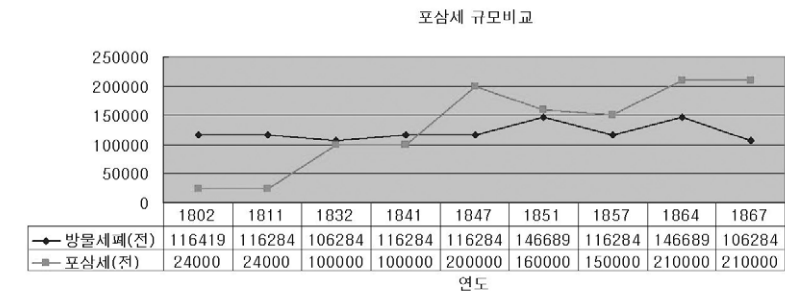
211) 강만길, 〈앞의 책〉, 125쪽.

한편 포삼무역이 확대되면서 무역 구조에 포함되었던 역관·서울상인·개성상인·의주상인은 사행팔포의 홍삼을 무역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엄청난 홍삼을 밀조·밀수하였다. 홍삼의 밀조·밀수의 주체는 포삼무역 주도권의 향배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대체로 역관과 서울상인이 중앙권력아문과 결탁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개성상인과 의주상인은 지방아문과 결탁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배치되었다. 포삼세를 중요한 재원으로 인식하고 있던 조선정부에게 홍삼의 밀조·밀수는 큰 골칫거리였다. 따라서 19세기 전반을 통해 조선정부는 홍삼의 밀조·밀수를 막기 위해 포삼무역량을 늘리는 대신 포삼세액을 줄이는 이른바 ‘증액·감세’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포삼무역량은 1851년(철종 2) 4만 근을 정점으로 하여 1882년(고종 19)까지 대략 1만 5천 근에서 2만 근 사이를 오고가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포삼총액은 16~20만 냥 수준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근당 포삼세액이 느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조선정부의 이러한 ‘감액·증세’ 정책은 물론 가삼생산량의 급격한 감소에서 비롯되는 원인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이전 시기 ‘증액·감

〈도표5〉 포삼세와 공무역 규모 비교



비고: 이철성, 《조선 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참조

세' 정책에 불만을 가져오던 역관과 서울상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던 중앙정부의 의도와 관련이 있었다. 지방관이 홍삼의 밀수를 눈감아주는 대신 거두는 세금 곧 합안세(閤眼稅)가 크게 문제시되고, 1861년(철종 12) 서울에서 파견된 경포교(京捕校)와 경포졸(京捕卒)이 개성 선죽교 부근 현학동에서 1만 2천 근에 이르는 홍삼 밀조를 발각한 사건 등은 저간의 사정을 짐작케 한다.

이렇듯 19세기 후반 조선정부의 포삼정책이 역관과 서울상인의 이익을 비호하는 경향을 띠자, 개성상인과 의주상인에 의한 홍삼 밀무역은 구조적 양상을 띠며 확산되었다. 홍삼의 밀무역은 19세기 전반기에 비해 그 규모가 커졌을 뿐 아니라 해로를 통한 잠상활동도 극성했다. 즉 이 시기에는 개성부의 홍삼 밀조가 육로 뿐 아니라 당선(唐船)과 연결되어 해상밀무역 형태로 진전되기도 했다. 1864년(고종 1) 개성부의 송상준·임홍철이 홍삼 49근을 밀조하여 바다로 나갔다가 개성부 포교와 경별장(京別將)에게 잡힌 사건은 그 일례에 불과하다. 개성부의 홍삼 밀조와 계획적인 밀무역 사건은 같은 해 8월에도 있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864년(고종 1) 봄과 여름 사이에 잠상(潛商)이 황해도 웅진의 여러 섬에 배를 타고 왕래하면서 물화를 교역한다는 이야기가 낭자하게 들리면서부터였다.²¹²⁾ 이에 해안 각처를 정탐하던 중 인천 포구에서 장물(贓物)을 교역하던 잠상을 잡아냄으로써 밀무역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²¹³⁾ 즉 임봉익과 임시형은 형제인데 인천에 사는 박보경·오봉길과 함께 조관섭으로부터 2천 5백 냥의 빚을 얻은 뒤, 임봉익이 주관하여 홍삼 118근을 사들였다.²¹⁴⁾ 이때 임봉익이 사들인 홍

삼은 송도 북부 당상교에 살며, 인삼재배를 업으로 삼던 홍병구가 밀조한 것이었다.²¹⁵⁾ 홍삼을 사들인 이들은 다시 의주인으로 중국어를 알고 있던 김정연을 꺾어 가담시켰다.²¹⁶⁾ 김정연을 가담시킨 이들은 일년 전 9월 그름 다시 조관섭에게 배를 얻어 웅진의 창영도로 나갔으나 높은 바람을 만나 당선(唐船)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후 올해 6월에 다시 배에 올라 창영도에서 당선과 교역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선인(船人)인 김순원, 이성삼이 인천에서 붙잡힘으로써 밀교역의 전모가 드러났던 것이다.²¹⁷⁾

이 사건은 주모자였던 임시형 형제가 개성사람으로서 거간이자 홍삼상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삼포업을 하는 홍병구가 이들의 권유로 홍삼을 밀조해 주었다는 점 그리고 중국말을 아는 의주상인이었으나, 이 시기에는 개성에 흘러들어 와 살고 있었던 김정연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면을 보인다. 개성상인이 중심이 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홍삼 밀무역의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대원군 집정기 조선정부는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포삼무역을 재정보용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포삼무역의 '감액·중세' 정책은 계속되었다. 이 정책이 계속되는 한 홍삼생산과 자본력을 지닌 개성상인과 의주상인의 밀교역은 구조화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조선정부는 역관과 서울상인의 기존 이권을 보호하는 반면 상업자본을 축적한 상업세력 육성과 상업세의 일종인 포삼세를 적극 흡수하여 안정적인 재정보호 가능성을 뒤로 하는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물론 개성상인으로 대표되는 서상(西商)을 근대사회의 새로

212) 《승정원일기》 고종 원년 8월 초1일 1책 362쪽.

213) 《右捕盜廳謄錄》 제19책 甲子(1864) 7월 15일, 7월 20일, 7월 25일, 8월 초10일.

214) 《승정원일기》 고종 원년 8월 초1일 1책 362쪽.

215) 《승정원일기》 고종 원년 8월 초1일 1책 362쪽.

216) 《승정원일기》 고종 원년 8월 초1일 1책 362쪽.

217) 《승정원일기》 고종 원년 8월 초10일 1책 381쪽 및 《승정원일기》 고종 원년 8월 11일 1책 383쪽.

운 상업세력으로 규정짓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역관 결탁한 상인세력과는 달리 상업자본을 산업으로 투입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이들은 18세기 후반부터 재력을 지닌 물주(物主)로 은광개발에 참여하거나,²¹⁸⁾ 금광의 개발을 자극하고 물주제하의 금광경영을 실현하여, 이를 대청무역으로 연계시키는 측면을 보이기도 하였다.²¹⁹⁾ 따라서 19세기 후반 조선정부의 포삼정책의 한계가 개항 이후 포삼세 수입의 적극적인 국가 재정화의 길을 막고, 궁내부(宮內府) 내 장원(內藏院) 및 기타 재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2) 일본과의 무역

(1) 왜관 설치와 대일무역의 재개



도요토미 히데요시

1592년부터 7여 년 동안 계속된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의 통교를 단절시켰다. 전쟁 직후 조선과 일본과의 국교수립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후금 성장에 따른 북쪽 변경의 위기감과 일본측의 적극적인 수교 노력을 배경으로, 두 나라간 외교관계는 급물살을 탔다. 조선측은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1607년(선조 40) 회답겸쇄환사

(回答兼刷還使)라는 외교사절을 일본에 보내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1609년(광해군 원년)에는 기유약조(己酉約條)가 체결됨으로써 일본 및 대마도와의 통교·무역에 관한 틀이 마련된 것이다.

기유약조는 1608년(선조 41) 조선에 ‘일본국왕사’가 파견되고, 광해군 원년 3월 대마도의 외교승 겐소(玄蘇)가 324명의 사절단을 데리고 부산에 오면서 선위사 이지완(李志完)과 외교승 겐소 사이에 체결되었다.



대마도 만송원

모두 13개조에 달하는 기유약조는 도항문서의 발행권을 위임하던 문인제도를 대마도의 종씨(宗氏)에게 인정함으로써 외교창구를 대마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조선에 파견되는 모든 배는 대마도주의 문인(文引)을 지참해야 했다. 또한 대마도의 세건선을 20석으로 한정하고, 세사미두를 조선 전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기유약조로 교역의 단초는 마련되었으나, 실제 교역은 1610년(광해군 2) 9월 왜관 개시에 대한 약정으로 제반 규정들이 정해진 이후인 1611년(광해군 3)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교역은 조선과의 무역이 허락된 선박이 조선국왕에게 예물을 바치는데 대한 회사의 형식을 띤, 조공의례적인 진상과 회사의 무역이었고, 그 장소도 왜관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선측이 필요로 하는 관아의 물품도 매매되었으며, 공사무역과는 별도의 사무역과 밀무역도 열렸다.²²⁰⁾

218) 柳承宙, 《朝鮮時代 鑛業史研究》, 高麗大學校大出版部, 1993. 3, 295~302쪽.

219) 柳承宙, 〈앞의 책〉, 353~365쪽.



통신사의 길

이로써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재개될 수 있었으나, 조선 전기와는 크게 다른 점이 있었다. 즉 조선 전기에는 일본 사신의 상경로(上京路) 주변에서 이루어지던 무역이, 조선 후기에는 동래 왜관 한 곳으로 제한되었다. 일본 사신의 상경로가 침략로로 악용되었던 때문에 일본인의 상경을 금지하고, 두 나라 상인들의 밀거래를 통한 국가기밀 누설 등을 염려하여 무역 장소를 한 곳으로 제한한 것이다.

조선시대 왜관이란 일본인의 출입과 무역을 허용해 준 개항지에 건

220) 일본학계는 조일무역의 진상(進上)과 회사(回賜)의 의미를 지니는 관영무역(官營貿易), 대마도가 수출한 물건을 조선의 교환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공무역, 조선상인과 대마도 상인이 거래하는 사무역, 불법적인 밀무역의 형태로 구분한다(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이에 대해 공무역과 관영무역의 차별성이 모호하며, 관영무역속에 잠물지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좁은 의미의 공무역'과 '넓은 의미의 공무역'(연례송사무역[進上·回賜+좁은 의미의 공무역+잠물지급])으로 볼 것을 제안하는 견해도 있다(鄭成一, 〈易地聘禮 실시 전후 對日貿易의 動向〉《經濟史學》15, 1991). 또한 일본측 사료에 따라 규정된 사무역은 조선측 사료에 따르면 〈개시〉무역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밀무역과 공무역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김동철, 〈조선 후기 倭館 開市貿易과 東萊商人〉《民族文化》21, 民族文化推進會, 1998, 56-57쪽. 김동철, 1995, 〈17세기 日本과의 交易·交易品에 관한 연구-密貿易을 중심으로〉《國史館論叢》61).

물을 설치하여 일본인을 접대하고 머물게 하는 동시에 그들과 무역을 하던 곳이다. 조선 전기에는 제포(齊浦), 염포(鹽浦), 부산포(釜山浦)의 삼포왜관(三浦倭館)이 있었다. 그러나 임진·정유왜란 이후에는 한 곳의 왜관으로 제한되었다.

1601년(선조 34) 절영도에 임시왜관이 설치되었으나, 왜관 설치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강화교섭이 거의 마무리되던 1606년(선조 39)이었다. 이듬해 1607년(선조 40)에는 두모포에 왜관이 설치되었다. 신축된 두모포 왜관은 그 규모를 살펴보면, 그 터전은 1간을 1보(步)로 계산하여 동서가 126보, 남북이 63보였다. 동쪽은 바다에 닿고, 남쪽·북쪽과 서쪽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동문 밖에는 좌천(佐川)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왜관내의 건물로는 중앙에 연향청(宴享廳)이 있고, 그 좌측과 우측에 각각 동관(東館)과 서관(西館)이 세워져 있었으며 남쪽에는 배를 대어두는 선창이 있었다.

그런데 1611년(광해군 3) 5월부터 8차례 이전논의가 있다가 1678년(숙종 4) 5월 두모포 왜관은 신축된 초량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초량왜관은 6척을 1보로 계산하여 동서가 372보, 남북이 256보로서 그 면적은 실로 10만평에 달해 두모포 왜관보다 훨씬 넓었다. 초량왜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무엇보다도 조선정부에서 지어준 동관과 서관이



변박의 초량왜관도

었다. 이들 건물은 용두산을 가운데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있었다. 동관에는 관수왜가(館守倭家: 48칸), 재판왜가(裁判倭家: 32칸), 개시대청(開市大廳: 40칸) 등 3대청(大廳)이 있었으며 서관에도 역시 동대청(東大廳: 20칸), 중대청(中大廳: 20칸), 서대청(西大廳: 20칸) 등 3대청이 있고, 각 대청에는 동헌(東軒: 각 35칸)·서헌(西軒: 각 25칸)과 6개의 행랑(行廊: 각 56칸)이 있었다. 이밖에도 왜관내에는 왜인들이 자기네의 필요에 따라 지은 건물이 허다하였다.

초량왜관에는 국가의 기밀의 누설과 잠상행위, 그리고 왜인과의 자유로운 접촉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높이 6척, 둘레 1,273보의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담 밖에는 6개처에 복병막(伏兵幕)이 있었다.

왜관의 출입문에는 정문에 해당하는 수문(守門)을 비롯하여 수문(水門)과 북문(北門)이 있었다. 수문(守門: 12칸)은 동래부와 부산진에서 파견되는 장교 각 1명과 통사(通事) 2명, 문직(門直) 2명이 10일 교대로 수직(守直)하여 아침저녁으로 열고 닫으며 동래부에서 발행하는 첩문(帖文)을 가진 자가 아니면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수문(水門: 1칸)은 왜관 안에서 사망한 왜인의 관구(棺柩)를 밖으로 운반할 때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상문(無常門)이라 불렀다. 북문(1칸)은 평소에는 늘 닫아 두었다가 연향(宴享)이 있을 때 송사왜(送使倭)들만이 출입하였으므로 연향문이라고도 하였다.

수문(守門) 밖에는 연향대청(宴享大廳)이 있었다. 연향대청은 왜사(倭使)들을 맞아서 연향을 베풀던 곳으로 연대청이라고도 하였다. 그 내부의 구조를 보면 곱게 단청이 된 연대청(35칸)을 비롯하여 공수간(供需間: 28칸)과 탄막(炭幕)이 있었다.

수문에서 산등성이 하나를 넘어서 밖으로 나오면 설문(設門: 6칸)이

있었다. 설문은 왜관 신축 당시에는 없었으나 1710년(숙종 36)에 동래부사 권이진(權以鎭)이 왜인들의 왕래를 금하기 위해 서쪽 산꼭대기에 서 동편 바다에 이르기까지 수 백보에 달하는 성을 쌓고 성내의 민호(民戶)를 밖으로 이주시킨 후 왜관에 출입하는 단 하나의 문으로 만들었다. 이 설문에는 동래부에서 파견된 장교 1인, 통사 1인, 문직 1명이 있어 그 경비가 매우 삼엄하고 검문이 또한 엄중하였으며 설문 안에는 객사(客舍)와 많은 부속 공관이 있었다. 객사는 조선 왕조 건국 이래 역대 국왕의 전패(殿牌)를 봉안한 곳으로 숙배소(肅拜所)·주소(住所) 또는 외대청(外大廳)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건물은 곱게 단청이 된 정청(正廳) 및 동·서헌(東·西軒: 44칸)과 좌우의 익랑(翼廊: 2칸)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사가 부산에 오면 반드시 이곳에 와서 역대 국왕의 전패에 숙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부속 공관으로 훈도(訓導)가 집무하는 성신당(誠信堂)이, 별차(別差)가 있는 빈일헌(賓日軒)이 출사관(出使官)이 있는 유원관(柔遠館) 등이 있었다.

무역은 왜관, 그 가운데서도 개시대청에 한정되었다. 개시대청을 벗어나서 하는 교역행위는 모두 밀무역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았다. 즉 가격 협상을 평계로 왜관의 각 방에 몰래 들어가 거래하는 잠상행위는 엄하게 다스린다는 규정이 공포되었다.²²¹⁾ 그러나 밀무역은 왜관 안에서는 물론이고 왜관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야채와 생선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용된 아침장(朝市)에서도 민간인들 사이에 밀거래가 발생했다.

개시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²²⁾ 개시는 매월 3일과 8일이 들

221) 《증정교린지》 권4 약조.

222) 개시에 대해서는 정성일, 2000, 〈조일무역과 개시〉 《조선 후기 대일무역》, 신서원과 김동철, 1998, 〈조선 후기 왜관 개시무역과 동래상인〉 《민족문화》21을 참조했다.

어 있는 날 3·8·13·18·23·28일에 열린다. 한달에 6차례 열린다고 하여 육개시(六開市)·육대개시(六大開市)라고도 했으며, 왜관의 동관에 있는 개시대청에서 열린다고 하여 대청개시라고도 했다. 개시에 참여하는 상인에게는 동래부로부터 허가받은 상인임을 증명하는 패(牌)를 받았다. 때문에 이들을 수패상인(受牌商人)이라고도 했다. 처음에는 왜관에 출입하는 상인들에 제한이 없었으나, 거래가 잦아지자 인원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개시일에는 왜관의 수문(守門) 앞에서 훈도와 별차 그리고 수세관과 개시감관이 상인의 물품을 검사하여 장부에 기록하였다. 교역이 금지된 물품을 적발하고, 교역품을 검사하여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였다. 교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먼저 양국 간에 의례가 거행되었다. 훈도와 별차가 개시대청에 나아가면 상인들이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게 되어 있었다. 일본측에서는 조선과의 사무역을 담당하는 일대관(一代官)과 이대관(二代官) 그리고 정대관(町代官) 등이 별차들을 옹대했다. 이때 일본측으로부터 술, 담배, 식사 등의 요리가 제공되었다.

교역에 들어가면 우선 교역품의 품질과 수량을 확인하고, 상인들의 흥정에 붙여져 교역이 이루어진다. 왜관의 각방에 몰래 들어가서 교역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조선인이 개시 때 왜관으로 몰래 들어가면 사형, 잠상인이 왜인과 밤에 만나 은밀히 왜관으로 들어가 매매한 자는 곤장 100대에 유배 3년이고, 무거운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잠상을 단속해야 할 훈도, 별차와 그 밖의 조선측 관리 중 일부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오히려 잠상을 조장하는 일도 있었다.²²³⁾

223) 《비변사등록》 효종 3년 6월 13일.

개시무역에는 경영규모가 큰 동래상인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소상인 혹은 잠상인도 개시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에 개시에서 잠상이 자주 발각되었는데, 1664년(현종 5) 급기야 무기 밀수 사건이 발생하자, 조선과 일본은 개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일본측 세관에 해당하는 관소(關所)가 1672년(현종 13) 대마도의 사스네(佐須奈)에 설치되고, 1678년(숙종 4) 왜관을 초량으로 옮긴 것도 이같은 시책의 일환이었다. 개시에 출입할 수 있는 상인의 수를 제한하는 상고정액제(商賈定額制)가 시행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동래부의 재정적 욕구와 하급관리 및 개시에 끼이려는 소상인들의 이해관계로 사무역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소상인들은 잡동사니 물건이나 되로 곡식을 매매했으며, 왜방에 잠입하여 자기네들끼리 물건값을 마음대로 정해 물품 가격이 날이 갈수록 오르는 폐단을 낳기도 했다.

일본과의 무역상 사무역의 범주에 드는 교역으로는 이밖에도 조시(朝市)와 오일개시 및 별시 등이 있었다. 조시란 왜관의 수문(守門) 밖에 서는 아침장을 말한다.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생선과 야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허락된 시장이었다. 그러나 시기가 지남에 따라 조시에서는 생선과 야채는 물론 술, 과일, 목공예품, 각종 잡화를 비롯하여 쌀도 매매되고 있었다. 그 규모도 점차로 커져 조시에서는 되나 말 단위의 쌀만을 소량으로 허용했으나,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 사상들이 쌀을 싣고 왜관으로 들어가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배에다가 몇 백석씩 쌀을 싣고 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한편 조시 때 왜인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은 대부분 초량 주민이었다. 왜인들은 남녀가 같이 가면 여인 것만 샀다. 그래서 조시에는 여자

만 참여하고, 남자는 한 명도 없을 정도였다. 원래 조선정부는 왜관에는 일본인 남자들만 생활하도록 규정했다. 그래서 왜관의 일본인 남성과 왜관 주변 조선인 여성 사이에 매매춘이 자주 일어나곤 했는데, 이를 교간(交姦)이라고 불렀다.²²⁴⁾ 때문에 조선은 조시를 폐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왜관 밖으로 뛰쳐나와 집단시위를 벌이는 이른바 '난출(闖出)'을 일삼는 일본인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조시는 이내 재개되곤 했다. 그러나 조시가 재개된 이면에는 조시에서 세금을 거두었던 동래부의 재정적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일개시(五日開市)도 조선정부가 1665년(현종 6)부터 1708년(숙종 34)까지 한시적으로 개설한 사무역의 형태이다. 즉 오일개시는 공작미만으로는 일본인들의 식량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선의 민간 상인에 의한 쌀매매가 허락되어 시행된 것이다. 오일개시는 매월 5일 아침에 한번 열렸고, '잡류(雜類)', '잡인(雜人)'이 담당했던 것으로 보아 소상인이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수입은 동래부가 독점하였다. 이에 동래부에서는 중앙조정과의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별시는 매달 6차례 열리는 개시와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날을 따로 잡아 열었다. 대개 왜인의 요청이나, 물화가 많이 쌓여 있을 때, 또는 굶은 날씨가 그 밖의 여러 사정 등으로 지정 날짜에 정식 개시가 열리지 못할 때는 별도로 열렸다.

224) 교간과 한일간 정치 외교적 현안에 대해서는 손승철, 1999, 《근세조선의 한일관계 연구》, 국학자료원 참조.

(2) 17세기~18세기 중반 개시무역과 교역품

17세기 이후 전개된 개시무역의 수출품은 중국산 견직물·백사(白絲)라고 불리는 생사(生絲)나 조선산 인삼·마른 해삼(煎海鼠) 등이었다. 수입품은 은(銀)·구리(銅)·무소뿔(水牛角)·단목(蘇木) 등이 주요 품목이었다.²²⁵⁾ 거래되는 물품에는 모두 1/10세를 수세하였다. 그런데 17세기 이후 18세기 중반까지는 사행무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견직물·백사 및 조선산 인삼을 일본에 수출하고 일본산 은을 수입하여 다시 이 은을 중국과의 무역에 투입하는 중개무역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중국의 비단과 조선 인삼을 일본과의 무역으로 연결시키는 무역형태는 이미 16세기와 17세기 초반에도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중개무역의 거점으로서 조선의 지위가 보다 확고해 진 것은 청나라가 중원을 장악하여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던 17세기 후반부터였다. 영파(寧波)의 난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직접적인 무역이 정지되고, 일본 막부가 나가사키를 통한 은 수출을 금지하자, 조선의 왜관이 중개무역의 중심지로 더욱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중국산 비단과 원사, 그리고 조선의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된 일본은의 양은 1686년(숙종 12)의 10여 톤을 정점으로 숙종 10년부터 36년까지 총 188톤, 연평균 약 7톤에 이르렀다.²²⁶⁾ 1686년 중국 상선들이 장기로부터 겨우 2톤 정도의 은을 실어갔던 것을 고려하면 중개무역 거점으로서 조선이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225) 김동철, 1993, 위의 글, 399쪽.

226) 田代和生, 1981,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및 한명기.

중개무역을 통한 일본은의 유입은 다시 중국무역에 투입되었는데, 조선의 역관과 부상대고들은 일본산 은을 갖고 연경에 가서 백사(白絲)와 주단(紬緞) 등을 수입하고, 그것을 다시 왜관에 수출하였다. 현종 11년, 조선상인들은 백사 100근을 은 60냥에 수입하여 왜관에 전매할 때에는 160냥을 받고 있었는데 이를 보면 조선상인들은 중개무역을 통해 약 2.7배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중개무역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피폐해진 조선 경제를 단시간 내에 극복하게 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말~18세기 초의 중국-일본 간의 직교역이 시작되고, 일본 내에서 백사의 생산이 증가하면서,²²⁷⁾ 중개무역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일본 국내에서 점차 은의 대량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은화의 순도를 낮춘 악화(惡貨)를 주조하는 등 은화 통제정책도 중개무역 쇠퇴에 한몫을 했다.

한편 인삼은 중국의 백사, 비단과 함께 일본에서 가장 수요가 높았던 품목 중 하나였다.

인삼에 대한 일본의 수요는 17세기 중엽 이후 조선의 의약사상이 보급되면서 한층 더 높아졌다. 물론 이때의 인삼은 산삼으로 불리는 자연산이었으므로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



수출된 조선 인삼

227) 김동철, 〈朝鮮後期 倭館 開市貿易과 被執蔘〉, 《韓國民族文化》13,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1999, 63~64쪽.

때문에 도라지에 인삼겉질을 입혀 위장한다든지, 인삼에 아연으로 된 심을 박아 무게를 늘리기도 했으며, 인삼의 싹뿌리에 아교를 발라 속인 위조삼의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에서 인삼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조선정부는 왜관에서 거래되는 인삼의 수량을 제한하려고 했다. 이에 1717년(숙종 43) 조선정부는 피집삼(被執蔘)의 정량을 700근으로 제한했다.²²⁸⁾ 그러나 700근 정량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것은 피집삼 수세권을 가지고 있던 호조나 동래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초과량을 묵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²⁹⁾

인삼무역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자 조선정부는 공무역에서 지급하는 예단삼을 자연삼에서 재배삼으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의 반대로 이는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1710년대부터 중국산 인삼을 수입했고, 1720~1730년대에는 인삼 재배에 성공했으며, 1740년대에는 아메리카 인삼 수입을 수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 인삼에 대한 인기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에 1811년 통신사의 대마도 역지빙례로 조선과 일본과의 통교체제가 변화를 겪을 때까지도, 통신사가 가지고갈 인삼인 신삼(信蔘)과 공무역에 쓰는 예단삼은 재배삼으로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²³⁰⁾

17세기 중반 이후 대일무역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조선의 수출품목은 쌀이었다. 조선정부는 원래 일본이 공무역을 통해 들여온 물품에 대해 공목이라고 불린 목면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조선에서 공목의 지급량을 줄인다거나 공목의 길이를 짧게 하거나 거친 목면으로 대신

228) 김동철, 〈앞의 논문〉, 1999, 44~45쪽.

229) 박昭垠, 〈앞의 논문〉, 1999, 31~35쪽.

230) 정성일, 2000, 〈조선산 재배삼의 대일수출 교섭〉, 〈앞의 책〉.

하려 함으로써 무역마찰이 발생했다. 이에 1651년(효종 2) 공목 300동(同)을 쌀 1만 2천 석으로 지급하다가 1660년(현종 원년)에는 100동을 추가하여 공목 400동을 쌀 1만 6천 석으로 대신해 지급했다. 공작미의 지급기한은 애초에 5년으로 결정되어 있었지만, 기한이 지나면 일본측의 요청에 따라 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는 방식을 취하였고, 이는 19세기 까지 지속되었다.

조선이 일본에서 수입한 주요 물품은 은 이외에도 구리와 수우각이 있었다. 일본에서 수입한 구리는 주로 동전을 만드는데 쓰였다. 대마번은 구리가 조선과 공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임을 내세워 일정량의 구리를 확보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초 일본에서 구리 생산이 줄어들자, 매년 약 10만 근 정도가 공무역을 통해 수입되었다. 따라서 그 나머지는 사무역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우각은 물소뿔이다. 색깔이 검어 흑각(黑角)이라고도 했으며, 활의 재료로 쓰여 궁각(弓角)이라고도 불렸다. 물소뿔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산출되는 물품으로 나가사키(長崎) 무역에 참여하는 중국상인들로부터 조달하는 것이었다. 이밖에도 육식에 조미료로 쓰이는 후추와 염료로 쓰이던 단목과 명반도 수입되었는데, 이것도 본디 남방에서 산출되는 것을 유구를 통해 조달한 것이었다.

(3) 18세기 중엽 이후 수출품의 변화와 대일무역

18세기 중엽 이후 개시무역이 쇠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개시무역이 쇠퇴함에 따라 개시무역 구조도 변화해 갔다. 가장 큰 변화는 대일 수출품목의 변화였다. 19세기 대일 개시무역에서는 소가죽·소뿔과 발톱·황금(黃芩)·마른 해삼 등 네 가지 품목이

수출품의 중심이 되었다. 이전까지 수출의 주종을 이루던 인삼과 생사 대신에 이들 물품이 대일무역을 주도하면서, 개시무역 구조가 인삼·백사→은 무역 구조에서 우피→구리 무역 구조로 바뀌었다.

소가죽은 막부 말기부터 수요가 급증한 군수물자의 원료로 사용되었다. 말린해삼은 일본이 중국에 재수출하기 위해 조달해 간 물품이었다. 소뿔과 발톱은 빗이나 비녀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것이었다. 황금은 한약재로 수입해 간 것이었다.²³¹⁾ 이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가죽이었다.²³²⁾ 소가죽은 현종대 6년 동안 13명의 동래 도중(都中)들에 의해 12만 장, 연 평균 2만 장에 이르는 양이 수출되었다.

18세기 중엽 개시무역 구조의 변화는 동래상인의 성격 변화를 초래하였다. 왜관 소비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18세기 중엽 이전의 무역 구조는 생산 시장이 소비 시장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동래지역 출신 상인은 생산 시장과 중간 유통 시장면에서 개성, 서울, 평안도 상인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바뀌게 되었다. 우피 등은 전국적으로 시장권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마른 해삼은 경상도 연해안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였다. 왜관의 소비 시장에서 근거리에 있을수록 유리하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동래 출신 상인들이 대일무역에 종사하는 폭이 커졌다고 보여진다.²³³⁾

대마번의 조선어 통역관인 소전기오랑(小田幾五郎)은 1825년(순조 25)에 저술한 《초량화집(草梁話集)》에서 동래상고의 도중은 이전에는 서울이나 개성 사람도 있었으나, 근래에는 사무역의 저하에 따라 겨우

231) 김동철, <앞의 논문>, 1999, 68쪽.

232) 김동철, <앞의 논문>, 1993, 400쪽.

233) 김동철, <앞의 논문>, 1998, 70쪽.

4~5인 정도이고 동래부 안의 역(役)을 담당하는 사람도 가담하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동래부상고안(東萊府商賈案)》에 나오는 41명의 상인들과 현존하는 지역의 각종 《무임선생안》과 비교해 보면, 무임직을 한번이라도 역임한 사람은 전체의 51.2%인 21명이었다. 상당수의 동래상고가 동래 무임직을 역임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41명 중 7명은 동래지역 최고의 무임직인 중군을 역임한 자였다. 7명 중에는 동래의 상급 향리직을 역임한 사람도 1명 포함되어 있었다.²³⁴⁾

동래상인들이 대일무역을 통해 축적한 상업자본을 기반으로 무임직을 매입하였는지, 아니면 동래의 대표적인 무임층들이 본래 대일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무역활동만으로 생계가 어려워 19세기 중엽에는 동래상인들 중 다수가 동래부의 각종 무임직이나 향리직을 겸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동래의 무임층은 주로 동래왜관 개시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동래 무임층 내에서도 중군을 비롯한 각 무청의 수입직에 있는 상급 무임층들의 대일무역에서의 독점력은 더욱 강하였다고 생각된다. 대일개시무역을 담당했던 동래상인 내에도 분화가 이루어져 대일사무역의 특권은 중군을 비롯한 무청의 수입직 무임들로 구성된 도중상고에 집중 독점되어 갔던 것이다.

3) 무역규모와 무역정책 재평가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국제무역을 경제사적 입장에서 다룬 그간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7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무역은 청에서 수입한 물화를 왜관에서 일본으로 넘겨 파는 중개무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일본은(倭銀)이 조선으로 유입되었고, 이는 다시 중국으로 유출되었다. 이 때문에 조선의 대청무역은 한편으로는 중국과 일본을 잇는 동아시아 경제변동의 한 축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임진왜란과 호란으로 피폐한 조선의 국내 상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근대 경제구조를 변화시킨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17세기 말부터는 청-일 간에 직교역이 시작되었다. 이 직교역의 여파로 조선과 일본과의 무역은 침체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684년부터 1710년을 대상으로 조선과 일본과의 무역, 즉 쓰시마에 의한 왜관무역과 일본과의 네덜란드 무역, 즉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의한 데지마(出島)무역의 규모를 수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주목을 끈다.²³⁵⁾ 이 연구는 수출액과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왜관무역과 데지마무역을 1684년부터 1710년까지 27년을 비교했다. 그 결과 시기적으로보면 1684년부터 1697년까지는 왜관무역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1698년~9년 이후는 데지마무역이 거꾸로 역전하게 되었고, 평균적으로 보아도 왜관무역이 데지마무역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 상한이 설정된 왜관무역에서의 은화의 규모가 데지마무역에 적용된 무역총액의 제한액보다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왜관무역 가운데 사무역만으로도 도쿠가와 막부의 제한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그런데 데지마무역의 경우에는 무역의 상한을 상회한 예가 없었다. 결국 대마도가 조선에서 수입해가는 물품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던 유리한 시장 조

234) 김동철, 〈앞의 논문〉, 1995, 272~274쪽.

235) 정성일, 2002, 〈조선 후기 조일무역의 규모〉 《역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역사학 국제회의》 발표문.

건하에서는 해외 수입품에 대한 일본의 수요가 왜관무역으로 대체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역전될 경향성을 내포하였던 것이다. 18세기 중반 청일 직교역이 조선의 중개무역에 큰 타격을 주며, 조일무역이 쇠퇴일로로 걸었던 것과 짝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도 조선의 대청무역은 국내 상업 및 산업부문에 영향을 주며 중세 경제변동의 한 요인으로 계속 주목받았다.²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후반 이후 대청무역은 적극 논의되고 평가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18세기 후반 이후 조선의 대청무역이 동북아시아 경제변동의 연장선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조선의 대청무역을 조공체제의 한계와 제약을 벗어나지 못한 교역으로 파악하려는 전통적인 견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²³⁷⁾ 이 전통적 견해는 대청무역의 중심이 공무역이며, 이 공무역의 손익을 따져 대청무역을 적자무역으로 평가한다.

이 견해에 맞서 대청무역을 경제적 입장에서 평가하려는 연구는 역관과 상인의 사무역을 대청무역의 중심으로 파악한다. 사신 일행에게 주어진 팔포무역과 각급 관아의 별포무역이 국내 경제에 끼친 영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청무역의 종합적 이해와 역사적 평가를 위해서는 공무역과 사무역 어느 한쪽이 아닌 양자의 규모를 상호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대청무역이 이익은 커녕 막대한 손실을 낳았다는 견해와 조

선 후기 경제변동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상호 대립된 주장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공무역과 사무역의 규모를 비교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현존하는 자료의 제약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 하지만 대체적인 추세를 통해서라도 공무역과 사무역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면, 대청무역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1645년부터 1876년까지 조선에서는 총 612회의 사행을 중국으로 보냈다. 이는 대략 매년 2.65회의 사행이 파견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612회의 사행 가운데 한 가지 명목으로 파견된 본행은 302회, 여러 가지 명목을 띤 사행을 함께 묶어 보낸 겸행은 310회였다.

공무역의 규모, 즉 사행의 세폐와 방물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행의 파견 횟수가 아니라 무슨 명목으로 사행을 보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행목적들을 모두 살펴야 한다. 예를 들면 동지사은겸진향행일 경우, 이는 겸행으로 한 차례 사행으로 파견된다. 그러나 세폐와 방물은 사행의 명목인 동지+사은+진향에 따라 각기 별도로 물량이 마련되어 보내졌기 때문이다.²³⁸⁾

조공과 회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역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의 규모였을까. 18세기 후반과 19세기의 물가를 반영하는 《탁지준절(度支準折)》과 《만기요람(萬機要覽)》에 따르면 세폐와 방물의 비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²³⁹⁾

〈표 6〉을 바탕으로 세폐와 방물에 소용되는 비용을 추산해 보자. 본행으로서 동지행일 경우, 그에 따른 공무역의 비용, 즉 세폐와 방물은 96,149냥 정도가 필요했다. 그러나 동지겸사은행일 경우에는 106,284

236) 대표적인 연구만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강만길, 《조선 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유승주, 〈조선 후기 대청무역의 전개과정—17·18세기 부연역관의 무역활동을 중심으로—〉 《백산학보》8, 1970; 김종원, 〈근세 동아시아 관계사 연구—조청교섭과 동아시아교역을 중심으로—〉, 혜안, 1999; 이철성, 《조선 후기 대청무역사연구》, 국학자료원, 2000.

237) 전해중, 〈청대 한중조공관계 종고〉 《진단학보》29·30, 1966; 전해중,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1970.

238) 세폐는 동지행의 경우에만 있다.

239) 전해중, 〈앞의 책〉, 79~86쪽에는 물종별 가격까지 상세하다.

〈표 6〉 사행에 따른 세폐와 방물 (단위: 냇)

내용	문헌	탁지준철	만기요람	비고
세폐	동지 정조 성절	70,145		동지행이 정조·성절을 겸함
방물	동지		26,004	황제·황후에 대한 방물가임
	사은		10,135	상동(上同)
	주청		10,135	상동(上同)
	진주		10,135	상동(上同)
	문안		6,800	상동(上同)
	진향		27,008	상동(上同)

냇(동지세폐+동지방물+사은방물) 정도의 경비가 필요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별사 방물의 경비가 동지와 진향을 제외하곤 대부분 10,135냇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기타 다른 명목의 별사 방물 비용도 대략 10,000냇 정도로 산정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대청무역의 경제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첫째, 조선 사행의 종류와 사행의 횟수를 바탕으로 조선이 부담해야 할 세폐와 방물의 규모 및 사행시 제반 경비를 산출하고, 둘째 이것을 청으로 부터의 회사(回賜) 및 증급(贈給)된 내역과 비교함으로써 조선 사행무역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방법을 적용해 왔다.²⁴⁰⁾

그 결과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청나라로부터의 회사된 가치가 조선이 가지고 간 세폐와 방물 가격의 1/10에도 미치지 않을 만큼 작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또한 청이 조선사행 일행에게 준 물건값은 청나라의 칙행에게 준 물건값의 1/6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240) 전해중, 〈앞의 책〉, 77~107쪽.

따라서 조-청 간의 전형적인 조공관계는 조선측에게 경제적 이득은 커녕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재정상 연평균 전(錢) 20만 냇 이상의 손실을, 칙행이 있는 해에는 40만 냇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사무역인 팔포무역은 사행원역의 물질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던 것으로 조공제도하에서는 국가경제에 직접적 이익을 내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팔포무역 외의 별포(別包)는 원활히 실시되지 못했으며, 각종 후시는 은의 유출로 국가경제에 큰 지장을 가져왔다고 하여 공무역과 사무역 모두를 경제적 측면에서 인정하지 않았다.²⁴¹⁾

그러나 이상의 논지는 몇 가지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조공체제〉 하에 조선정부가 담당해야 할 비용은 단순히 조공과 회사의 비교로만 이루어질 성질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조선정부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재정을 사행과 칙행의 비용으로 별도로 운영하였으며, 외교적 차원에서 필요한 재정의 대부분을 평안도지방의 재정에서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는 일본과의 교린외교를 위해 경상도에 공작미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여 유지한 것과 같이 국가의 전체적인 경상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공무역에 드는 세폐·방물과 청나라에서 받는 회사·증급의 규모만으로 대청무역이 국가경제에 이익이었는가 손해였는가를 평가

241) 이같은 논지의 연구에서는 조선이 조공관계로 명백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이득을 본 것 같이 논의되어 온 까닭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조공국의 입장에서 특히 그 지배자들이 정치적 열세를 무의식적 또는 의식적으로 엄폐하려 한데서 연유하였을 것이다. 근래 이 문제를 논한 학자들까지도 조공관계가 조선에 있어서 불리한 것이 아니었다고 논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였을 것이다. 둘째로 중화주의에 입각한 중국인들의 표현이 후세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이다.〉

하는 것 역시 매우 단순한 비교평가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것 보다는 공무역과 사무역의 규모를 서로 비교하고 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조선의 대청무역에 관한 자료에서 공무역과 사무역의 규모를 계량화하기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일차적으로는 사료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물가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조선 후기 전체의 무역규모를 밝힌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18세기 후반이후 조선의 대표적인 수입품이었던 중국산 모자 사무역과 홍삼 수출무역의 규모에 대한 부분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무역의 규모와 국내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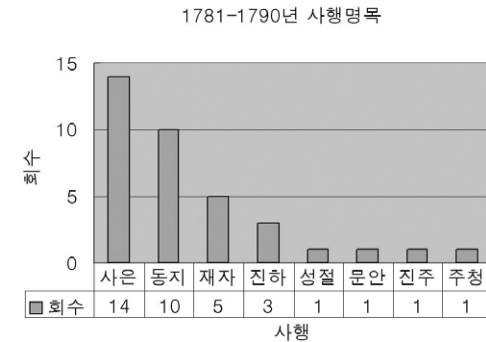
18세기 후반 조선의 대표적인 수입 무역품은 중국산 방한 모자였다. 1781년부터 1790년까지 세모법하에서 수입된 모자의 수량에 대한 기록은 짧은 시기지만 모자수입의 총 규모를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18세기 중반 자료에 의하면 모자 1척의 은환산가는 50냥이었으며,²⁴²⁾ 조선정부가 국내 상인에게 팔 때는 은 80냥 정도를 받았다고 생각된다.²⁴³⁾

그런데 《동문회고》에 따르면 같은 시기에 조선에서는 총 20회의 사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공무역의 규모, 즉 방물 및 세폐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사행의 명목을 분류해 보면 <도표 6>과 같다.

이에 따라 조선의 사행을 명목별로 분류하여 세폐와 방물의 총비용을 계산하고, 같은 시기 들여온 모자의 수량을 1척당 50냥으로 계산하여 양자를 비교한 것이 <도표 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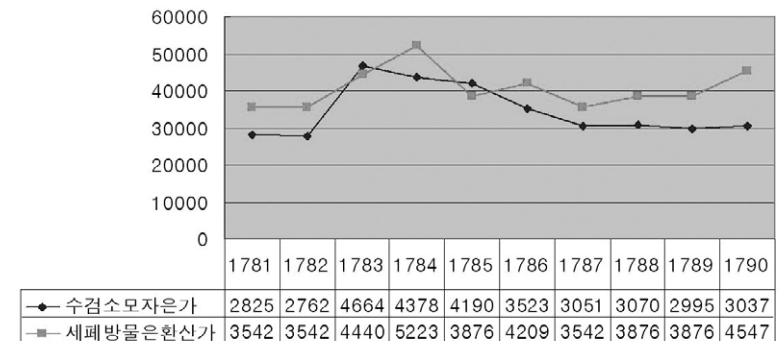
이를 보면 세폐와 방물을 준비하기 위해 쓴 비용과 사무역의 한가지 물종의 무역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무역의 규모가 적지 않았

<도표 6> 1781~1790년 명목별 사행 회수



자료: <동문회고> 보편 권7 사행록을 바탕으로 작성

<도표 7> 공무역과 모자 사무역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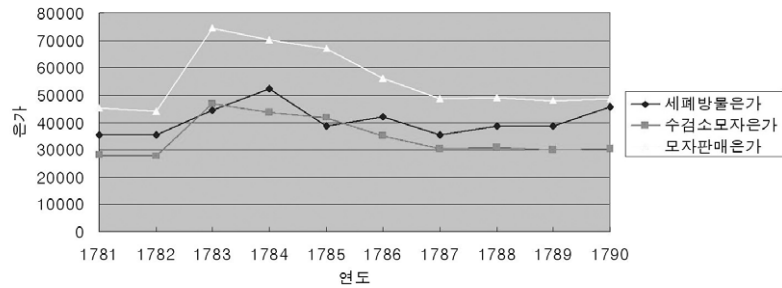
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수입된 모자를 정부가 국내의 모자전민, 의주 상인, 개성상인에게 넘길 때 1척당 은 80냥을 받았기 때문에 약 30냥 이상의 판매 차익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당연히 국내 상인인 서울, 개성, 의주상인도 이 정도의 이익을 남겼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이를 나타낸 것이 <도표 8>이다.

이 도표를 보면 의주부 수검소의 모자 은가와 모자 판매은가에 따른 이득 이상으로 상인의 자본 축적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42) 《용만지》 관해 수검소, 1768년, 영조 4.

243) 《비변사등록》135 영조 34년 11월 초6일.

〈도표8〉 모자 판매가와 수검소 은환산가 및 세폐방물가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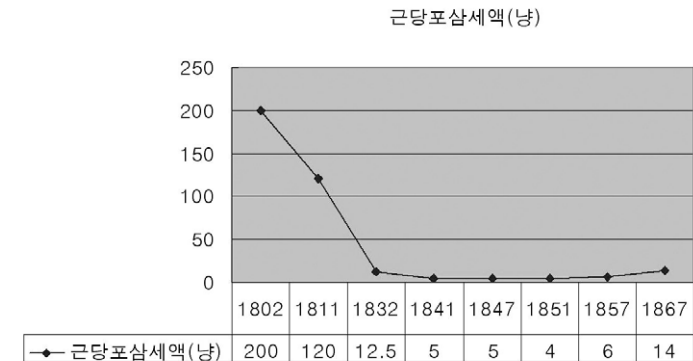


물론 〈도표8〉에는 사행경비와 관련하여 고려되지 않은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폐와 방물은 한 물품의 사무역에 들어가는 총비용보다 그다지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폐와 방물이 그대로 소비되는 성격으로 간주할 수 있음에 반해 모자무역은 국내 상업계에 변동을 가져 올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결국 세폐와 방물이 사무역의 규모를 뛰어 넘는 절대적인 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또한 세폐와 방물의 반대급부인 회사와 증급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조선의 무역을 규정지으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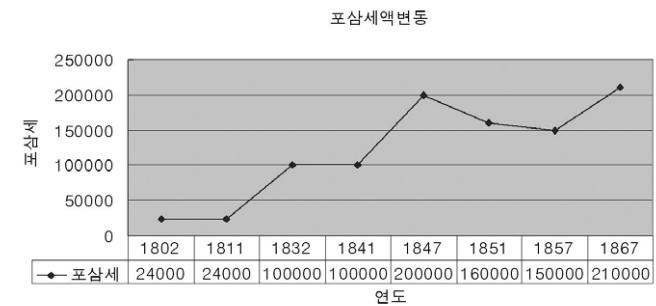
다른 한 예가 19세기 홍삼무역의 경우이다. 포삼은 1797년(정조 21)에 조선정부가 포삼제(包蔘制)를 실시하여 공식적인 대청무역품으로 인정한 홍삼을 지칭한다. 홍삼무역량은 처음 120근에서 1830년대 크게 증가하여, 1849년과 1851년 4만 근을 정점으로 큰 굴절을 보인 뒤 2만 근을 전후한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홍삼무역량에 대해 정부가 거두는 매 근당 포삼세는 〈도표9〉와 같이 최초 200냥에서 1841년 4냥까지 떨어진 후 다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근당 14냥까지 늘어나고 있다.

〈도표9〉 19세기 1근당 포삼세 변동표



비고: 이철성, 《조선 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참조

〈도표10〉 19세기 포삼세액 변동표



비고: 이철성, 《조선 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참조

결국 조선정부의 포삼 정책은 19세기 전반 증액·감세의 방향에서 운영되다가 19세기 후반에는 감액·증세의 방향으로 선회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정책변화는 18세기 이래 대청무역을 담당해 왔던 역관·서울상인·개성상인·의주상인의 이해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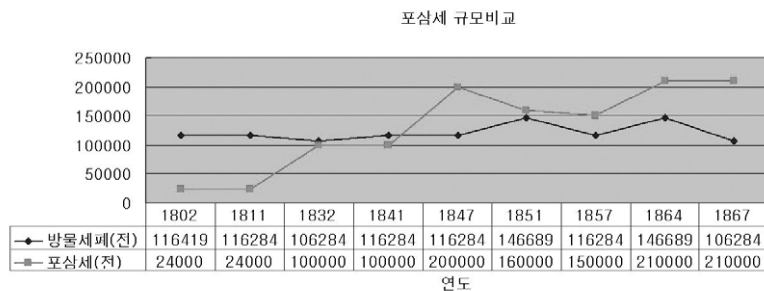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선 홍삼무역의 규모와 영향력에 대해 추론해 보자. 우선 포삼 무역량을 알 수 있는 연도에 사행을

명목에 따라 분류하여 그 해의 세폐·방물 총비용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조선정부가 받아들이는 포삼세액과 비교해 보기로 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포삼 1근당 가격이 대체로 천은(天銀) 100냥이었다는 기록이 있지만,²⁴⁴⁾ 이 가격을 19세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정부가 받아들이는 포삼세만으로도 충분히 포삼무역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도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의 포삼무역은 포삼무역량이 늘어감에 따라서 공무역에 드는 총비용, 즉 세폐 방물의 규모를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포삼가액과 비교한다면 포삼무역의 총 규모는 세폐 방물과는 현격한 차이가 날만큼 방대한 규모였음이 분명하다. 그냥 막 연히 홍삼무역의 규모를 생각해 왔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히 홍삼수출은 조선의 농업생산물로 중국물화를 들여오는 무역결제 수단이었고, 수입품 중에는 사치품과 완제품도 있었지만 국내 수공업을 자극할 수 있는 원료재도 있었다. 19세기 조선의 대청무역은 조선 경제를 크게 자극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세도정권 하에서도

〈도표11〉 포삼세와 공무역 규모 비교



비고: 이철성, 《조선 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참조

244) 《비변사등록》185 정조 21년 6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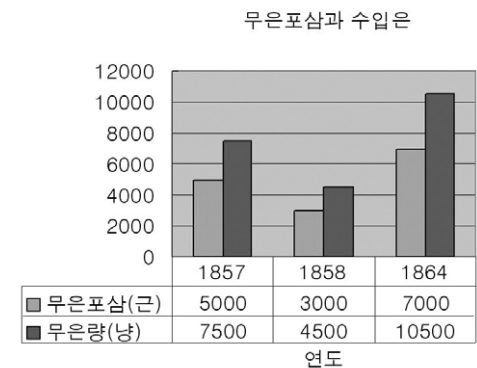
상업계가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개성상인·의주상인·서울상인 등 상인의 활동이 두드러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의 홍삼무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포삼을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 청나라의 은을 사오는 이른바 은(銀)을 역수입하는 방편이 되고 있었다. 1857년(철종 8)에 조선정부는 청나라로 가는 역관에게 포삼 5천근을 더 주고, 이 5천근에 부과되는 포삼세로 은(銀)을 사오도록 하여 호조에 비축해 두도록 하였다.

이때 그 규례를 밝혀 적은 것이 〈포삼가정절목(包蔘加定節目)〉이다. 이 절목에서 조선정부는 포삼 1근에 대해 은(銀) 1냥 5전씩을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였다.²⁴⁵⁾ 세금으로 내는 은은 말굽 모양의 은을 사오도록 하고 책문지역에서 사용되는 저울을 기준으로 중량을 재되, 저울의 하나는 호조에 다른 하나는 사역원에 두고 사용하게 하였다. 중국에서 사들여 오는 말굽 모양의 은은 사역원에서 가려 뽑은 7명이 관리하도록 했는데, 납부기한은 매년 동지사행이 돌아온 이후인 4월 말까지로 하였다.

이렇게 들여온 말굽 모양의 중국은의 총량을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1857년에는 은 7천 5백 냥이었던 것

〈도표12〉 은 수입을 위한 포삼액과 수입된 은의 수량



245) 《비변사등록》244 철종 8년 6월 초7일.

으로 추정되며, 1864년에는 1만 5백 냥이었다.

〈도표12〉에서와 같이 조선에서 생산된 홍삼으로 중국은을 사왔고 이것의 규모가 동지사행의 방물가와 맞먹는 정도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의 은 흡수력을 생각할 때 포삼 무역은 조선의 대청무역이 국내경제의 변화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묵시적으로 말해 준다고 하겠다.

4. 조공체제 무역사의 재인식

조선시대 해외무역은 사대교린이라는 정치·외교적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즉 조선은 주로 북경을 오가는 사신행차와 송사(送使)의 형식을 띠고 왜관으로 오는 일행들과 정기적인 무역을 했던 것이다. 무역의 형식은 조공과 회사의 의미를 띠는 조공무역과 관아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무역, 허가받은 관리와 상인에 의한 사무역,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밀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 조공무역은 대중국 무역의 경우 조선이 사대의 의미를 띠는 조공품을 바치면 중국측에서 회사품을 주는 것이었고 일본과의 경우는 주체와 객체가 그 반대였다는 점을 제외하면, 여타의 무역은 개념상 별반 차이가 없었다.

조선의 무역이 전형적인 조공체제 속에서 진행된 적자무역이라고 보는 학설도 있다. 그러나 명나라의 쇄국정책과 조선의 억상정책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던 15세기를 제외하면, 무역은 조선사회의 경제적 변동의 요인이자, 중국과 일본을 잇는 경제 동맥이었다. 특히 17세기 중반부터 약 1백여 년은 일본은이 조선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유입되었

고, 조선의 인삼과 중국의 비단과 백사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는 중개무역이 펼쳐지던 시기였다. 바로 이 시기 왜관무역은 나가사키의 데지마무역[出島貿易]보다 그 무역규모가 컸으며, 조선은 백사무역으로만 대일무역에서 2.7배 이상의 무역 차액을 얻을 수 있었다. 무역으로 인해 자본을 축적하는 상인도 자연히 등장하여, 서울상인·개성상인·의주상인·동래상인은 해외무역에서는 물론 국내유통업에서도 두드러진 상업세력으로 성장했다.

18세기 후반 비록 중계무역은 쇠퇴했지만, 19세기 홍삼무역은 조선 정부가 받아들이는 포삼세만으로도 공무역의 비용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했다. 조선은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기술과 저장 기간을 늘리는 홍삼 증포 기술을 바탕으로, 은화의 유출을 막고 중국의 완제품 및 원료재를 들여와 국내 상업계와 수공업 및 광업부문을 자극했다. 더욱이 조선정부는 홍삼수출로 19세기 후반 매해 20만 냥에 달하는 재정 수입을 올릴 수 있었고, 한때는 중국에서 말굽 모양의 은을 사와서 호조에 비축하기도 했다. 세도정권하에서도 상업계가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개성상인·의주상인·서울상인의 활동이 두드러진 것은 이러한 사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조선 해외무역의 한계도 분명하다. 즉 조선의 해외무역이 왜 한국자본주의화에 동인이 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작은 해답은 조선정부의 무역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정부는 홍삼무역에서 매년 20만 냥에 이르는 재정 수입과 말굽 모양의 중국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홍삼무역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다시 사역원 경비와 왕실재정 등에 대부분 재투입되었고, 국가재정확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19세기 후반 정부의 무역정책은 조선의 자유 무역상인이라 할 수 있는 개성상인과 의주상인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중세적 특권을 이용하여 홍삼무역을 독점하려는 역관과 서울상인의 이권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그 결과 폭넓은 사상충을 비합법적인 상인의 범주에 머무르게 하였으며, 무역세 수취를 통한 국가재정 확보를 뒤로 돌리는 한계를 노출했다. 조선의 해외무역이 국내상업계와 산업부문에 침투하여 경제변동을 이끌어 내지 못한 원인은 결국 조선정부의 대청무역정책의 폐쇄성에서 찾아진다고 하겠다.

6장 개항기의 무역

송규진(고려대학교)

1. 세계체제 편입과 협정관세체제

1) 강화도조약과 무관세체제

강화도조약은 조선을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후 조선은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서양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경제교류가 이루어졌다. 닫힌 사회에서 벗어나면서 늘어난 각국과의 경제교류는 조선의 자본주의화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런데 문호개방 이후 열강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선은 일본을 대표로 하는 열강의 침탈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으로 개방기의 경제사연구는 주로 열강의 경제침탈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었다. 특히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주요 연구대상은 일본에 의한 경제침탈에 관한 것이었으며 처음부터 부정적인 입장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일본의 경제침탈을 감정적으로 비판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것이 당시 조선사

회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조선인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파악하려는 연구까지 나와 있다.¹⁾

중국이나 일본 역시 개항 당시 서구 열강에 의해 불평등한 조약의 체결을 강요당하였으며, 그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여 일본은 군사력을 앞세워 위압적으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게 하였다. 1876년 2월 강화도조약의 체결을 강요한 일본은 우선적으로 조선에서 치외법권을 확보하였다. 그해 8월 일본화폐의 통용권을 인정하는 〈조일수호조규부록〉의 조인을 강요하여 일본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체결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른바 조선대표인 조인희(趙寅熙)와 일본대표인 미야모토[宮本小一] 간의 〈조일통상장정〉을 조인하여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까지 면제받음으로써 조선경제를 침탈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하였다.²⁾

〈조일통상장정〉은 일종의 국제통상조약으로 양국 간에 통용될 무역법안을 정해야 하였다. 그런데 통상의 범위와 관세문제를 중심으로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기본틀을 제공해야 마땅할 이 규칙에는 사실상 일본 상선의 출입과 화물의 양륙(揚陸)에 관한 세칙, 양곡 수출입에 관한 규정,³⁾ 항세에 관한 규정, 그리고 아편금수에 관한 규정만이 있을 뿐이었다. 무역에서 핵심이라 할 관세문제는 ‘조인희(趙寅熙)·미야모

토[宮本小一] 의정서’라는 별도의 양식을 통해 규정하였다.

일본에서 조선으로 수출하는 각 상품에 대해 일본 세관에서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조선에서 일본으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수년간 수입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일본정부가 결정하였으니 조선정부에서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가릴 여지도 없이 조선정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밖에 무역거래자의 지정문제나 무역량의 제한문제, 조선에서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점검 및 수세 등 비관세적 무역제한 조치까지 철폐하는 것 등 일본측의 일방적인 요구도 모두 수용함으로써 조선은 일본에 완전히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당시 무지하고 무능한 조선정부와 교활하고 수단 좋은 일본정부가 만들어 낸 합작품인 한일간의 불평등한 통상조약은 가히 그 시대에도 돋보이는 것이었다. 조선침략에 첫발을 내딛었던 일본이 취한 일련의 행동은 일본이 구미제국에 문호개방을 하였을 당시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서구로부터 체결을 강요당한 통상조약은 반식민지적이고 편무적인 저율관세의 부과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으나 일본이 조선에 강요한 바와 같이 무관세체제는 아니었다.

일본이 조선의 관세주권을 완전히 무시하여 무관세체제를 구축한 것은 저율일지라도 후진국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소간의 자주성을 인정하였던 당시 세계 각국의 통례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국제간의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세문제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절실히 깨달은 일본이 조선정부에 무관세통상조약의 체결을 강요한 것은 잔혹한 국제질서의 한 면을 보여준다.

조선정부는 일본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후에야 뒤늦게 중국과 일본의 관세제도가 어떤지 알게 되었고 관세주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경

1) 최근 문호개방 이후 무역사 연구가 일제이후 ‘농업식량원료산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 무역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고 비판하면서 곡물의 수출 확대와 곡가 상승을 통해 농업생산구조가 변화하였음을 분석한 주목할 만한 연구가 나왔다. 이 연구는 문호개방 이후의 무역을 단순히 일본과의 관계만을 설정해놓고 식민지적 무역구조가 이미 이 시기에 확립되었다는 것을 비판한 연구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적어도 개항장 주변에서는 면포의 원료인 면직을 포기하고 쌀과 콩을 재배하는 경향이 확산되었고 이와 함께 지주제의 강화, 지주층의 토지소유 확대도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河元鎬, 1997, 《韓國近代經濟史研究》, 1997 참조.

2)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5, 《舊韓末條約彙纂》上, 118-119쪽.

3) 원래 이 규정은 조선과 일본의 조약 원문이 다르다. 조선측의 입장에서는 개항장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식량조달을 위해 곡물의 매입을 허가한 것으로 양국 간의 교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일본이 이를 양국 간의 수출입으로 변칙적으로 성립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金敬泰, 1972, 《對日不平等條約改正問題發生の—前提—開港前期の米穀問題에서 본 外壓의 實態》(《梨大史苑》) 참조.

주하였다.⁴⁾ 무관세조약으로 인해 일본인에게서 관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조선인에게는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하고 부산 두모진에 세관을 설치하였다. 1878년 8월부터 부산을 거치는 화물에 대해 통과세를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동래부사였던 윤치화(尹致和)는 일본 측에 ‘양국 간의 통상이 이제 수년에 이르렀고 출입물화에 대한 세가 없을 수 없으므로 수세한다’는 조선의 입장을 통고하였다.

통고에 이어 곧바로 조선인에게는 화물통과세를 징수하는 것과 동시에 교역되는 물품에 대한 검열도 실시하였다. 사태가 뜻밖으로 내란자 일본의 항의가 빚발쳤다. 일본 관리관은 조약에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세관의 철폐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동래부사는 처음의 입장을 고수하였고 일본정부는 그해 11월 대리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를 파견하였다. 군함을 타고 부산에 도착한 그는 동래부사에게 먼저 수세를 정지하고 양국 간의 합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동래부사 윤치화는 설관과 수세는 정부의 명령에 다른 것이며 사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몇 년간 면세되긴 하였지만 수출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세계적인 통례라고 맞받았다. 더욱이 조선정부가 조선 상민에게 관세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나서서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일축하였다.

군대와 군함을 앞세운 하나부사는 군사적 시위를 배경으로 관세를 매기는 것은 무모한 일이며 세를 징수하더라도 양국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행한지 2년도 되지 않은 조약을 수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함께 해관 이외에 별도로 관세지역을 설치하는 것은 ‘조인희(趙寅熙)·미야모토[宮本小一] 의정서’를 위반하는 것이

라고 항의하였다. 일본의 주장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덧붙여 설관 징수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 중국상인들까지 가세하여 수세의 정지를 종용하였다. 사태가 불리하게 몰린 조선정부는 그해 12월 동래부를 통해 당분간 수세를 정지하라고 명령하였고 관세를 통해 최소한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던 노력은 큰 소득 없이 끝나게 되었다.

관세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좌절되었으나 수출입품에 대한 관세조약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선정부는 1881년 8월 일본과 새로운 통상장정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조병호를 수신사로 임명하고 이조연을 종사관으로 임명한 조선정부는 35개조로 된 통장정안으로 일본정부와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중국을 비롯한 당시의 반식민지 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구미열강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였고 구미열강들의 군등저율관세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점차 관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구미열강과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은 자신들이 파기하고자 하는 불평등조약을 고스라니 조선에게 적용하였으며, 저율관세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무세를 강요하였다. 그뿐 아니라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조선에서의 이권을 획득하고 유지하고자 혈안이 되었다.

2) 불평등조약하의 협정관세체제

(1) 서양과의 통상조약과 관세문제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미국은 뒤늦게 ‘기회균등’, ‘문호개방’을 앞세워 동양으로 진출하였다. 그 무렵 조선은 1876

4) 이에 대해서는 金敬泰, 1975, 〈不平等條約 改正交渉의 展開〉《韓國史研究》11 참조.

년에 일본과 맺은 강화도조약 이후 중국과 일본에게 문호를 개방하였으나 그 밖의 나라에는 여전히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882년 중국의 권유를 받아들여 미국과 정식으로 통교하게 되었다.⁵⁾

당시 중국은 강화도조약에 명시된 ‘조선은 중국의 종속국이 아니라 국제법상 주권국’이라는 조항과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규정으로 그 동안 중국이 누렸던 종주권을 부인하고 조선에 진출한 일본을 상당히 경계하였다. 또 한편으로 한반도로 진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한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중국은 조미통상조약의 체결에 적극적이었다. 조선정부 역시 굴욕적인 강화도조약 체결 후 점차 구미 열국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 조건이 잘 맞음으로써 마침내 1882년 5월 조선과 미국은 〈조미수호통상조약〉⁶⁾을 체결하였고 이 조약을 바탕으로 조선은 봉쇄 위주의 대외정책을 버리고 세계체제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에 들어섰다.⁷⁾

〈조미수호통상조약〉은 14조를 전문으로 하는데 조선과 미국 간의 영구적인 평화와 우호관계의 유지, 상호 외교대표의 주차(駐劄)와 개항장에 영사파견, 난파선구조, 기항선박에 대한 담수 및 식량보급, 상대국에서 모든 합법적인 사업 영위, 그리고 상대국에서 유학 온 학생

에 대한 가능한 보호와 원조 등을 약정하였다. 그 외에도 광범위한 통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관세에 관한 규정, 상업활동의 범위 및 아편무역의 금지, 홍삼수출의 금지, 무기 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이 그것이다.

광범한 통상관계를 다루었던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조선에 최초로 관세에 대한 규정을 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 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입품 증가 10%, 수출품 5%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1858년에 일본이 구미열강과 체결한 통상조약에서 정한 관세율보다 다소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였다. 미국은 조선 연안에서 조난될 수도 있는 자국선박의 구제에 조약체결의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관계에서는 일정한 양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강화도조약〉과 달리 최혜국조관이 첨가됨으로써 이후 다른 나라가 통상상의 특권을 획득하였을 때 이를 균점할 수 있었다.

조선과 미국간의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자 서구열강들은 잇달아 조선과의 통교를 서둘렀다. 특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영국이었다. 영국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1882년 〈조영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1883년 새로운 〈조영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⁸⁾

서구 여러 나라에 비해 산업혁명을 먼저 꽃피운 영국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주도하였다. 앞선 산업기술을 바탕으로 전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영국은 식민지 확대에 혈안이 되었다. 그 즈음 남하정책을 꾸준히 시행하였던 러시아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였다. 러시아의 확장정책은 세력균형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영국은 조선과 통

5) 이에 대해서는 박일근, 1981, 《美國의 開國政策과 韓美外交關係》, 일조각 참조.

6)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5, 《舊韓末條約彙纂》中, 291쪽.

7) 미국의 대한교섭의 방법이 종전 중국이 취하였던 대한교섭방법(종속관계)과 크게 달랐다. 미국이 주한 미국공사의 지위를 주일공사 및 주중공사의 지위와 대등 또는 그 이상의 ‘특명전권공사’의 지위로 강화하게 된 것은 조선이 완전한 독립국가기 때문에 앞으로 청의 대한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외교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는 1883년 수교한 영국의 경우 주한 영국공사관을 주중영국공사관의 부속으로 한 것과 비교를 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1884년 8월 미국은 주한미국공사의 지위를 특명전권공사에서 변리공사겸 총영사로 격하시켰다. 김원모, 1999, 《한미수교사》, 철학사, 27쪽.

8) 우철구, 1993, 〈19c 후반 영국의 대한정책—1883년 한영조약체결을 전후하여〉 《국사관논총》44.

상조약을 서둘렀다. 실제적으로 조선과의 통상이 자국의 이익에 크게 기여할 바 없다고 하더라도 조선과 통교할 경우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할 수 있었다. 그런 판단으로 영국은 다른 나라에 앞서 조선과 통교를 맺기 위해 1876년부터 조선과 통교할 것을 수차 교섭하였고 일본에 주선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영국에 앞서 미국이 조선과 조약을 맺고 정식 통교를 하게 되자 영국은 〈조미수호통상조약〉과 같은 내용으로 조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중국 이홍장의 주선으로 조선과 통상조약이 체결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회담이 진행되는 중에 영국은 이홍장과의 약속을 번복하여 조미조약 14조 외에도 수개의 조항을 덧붙이고, 영국군함이 정박할 수 있도록 거문도를 정박지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한 요구가 거절당하자 영국은 한발 물러서서 〈조미수호통상조약〉과 같은 내용의 조약을 체결할 것에 동의하였고, 1882년 6월에 〈조영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애초에 원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였던 영국은 이 조약이 영국의 무역과 영국민의 지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트집 잡아 영국국왕이 비준을 거부하였다는 핑계로 조약을 파기해버렸다.

영국은 자국에 유리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883년 10월 주청영국공사 파크스가 서울에 입성하였다. 중국의 이홍장이 추천하여 조선의 외교고문이 되었던 뮐렌도르프가 배석한 자리에서 조선측과 담판을 거듭한 파크스는 결국 1883년 11월에 조선에 불리한 내용을 추가한 불평등조약인 〈조영수호통상조약〉⁹⁾을 체결하였다.

새로 맺은 조약으로 영국은 많은 이권을 얻게 되었다. 조계설정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조계 관리는 조선이 부담한다는 준칙까지 규정하였다. 조계지는 의당 조선정부가 마련해야 했다. 또 매각대금의 일부

는 토지매수비용으로 충당하며, 잔액과 당사국간의 협정에 의한 임대료 가운데 적당한 지세를 제외한 잔액은 조계관리기금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영국은 조계 이외의 장소에서도 4km 이내에서는 외국인인 토지 및 가옥을 임차하거나 구매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공장을 건설하고 제조업을 영위할 권리도 획득하였다. 또한 영국은 이미 개항된 부산, 인천, 원산, 그리고 개항이 예정되었던 양화진 이외에도 서울을 개시장(開市場)으로 할 것에 동의를 얻었으며 각종 수출입화물을 조선 내지로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그 밖에 치외법권은 물론 영국인 주택이나 영국선박에 대한 조선관리의 출입제한, 영국해군 필수품의 무세통관 등 각종 특권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조계를 설정하고 조계이외 지역에 있어서도 토지의 영조권(永租權)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교대표 영사 및 그 수행원은 물론 영국인은 통상장항에서는 40km 이내 또 양국의 관할 당국이 합의한 지역내에서는 여행권(호조) 없이 여행할 수 있었다. 또 여행권을 가지기만 하면 국내 각지에 유람이나 무역을 위해 여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상품 수송과 매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관세를 비롯하여 조선과의 통상에서도 각종 특권을 획득한 영국은 명목상으로는 조선이 관세주권을 보유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영국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았다. 통상권이나 영업권의 경우 일방적으로 영국의 이익을 내세운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외국인이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을 첨부하고 제조공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여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9)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5, 《舊韓末條約彙纂》中, 314~318쪽.

또 한편으로는 통상에서 비관세적 통제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수출입 상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를 금지하였다. 이는 시장 확대를 통해 독점적 이익을 획득하고자 관세를 비롯하여 내국세를 부가할 권리마저 제한한 것으로 당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정책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양국 통상에 적용될 관세의 경우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저율관세를 규정하였다. 184가지의 수입물품과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에 대해 5%에서 20%에 달하는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최고세율 20%가 적용되는 대상품목은 33개 품목밖에 되지 않았고 종가 5%의 적용품목은 43개, 종가 7.5%의 적용 품목은 69개, 종가 10%의 적용품목은 41개 품목이나 되었다. 특히 원자재와 반제품의 경우 각각 5%, 7.5%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니 사실상 기본 세율은 7.5%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수출품의 경우에는 종가 5%의 세율로 일괄 과세하기로 하였다.

이후 서양열강과의 일련의 조약으로 구미열강은 차례로 조선과 통상 관계를 수립하게 됨으로써 조선에서 독점권을 쥐고 있던 일본과의 독점무역 역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¹⁰⁾ 특히 1883년에 새로 체결한 〈조영통상조약〉은 불평등조약체제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 균점되었다.

불평등조약체제의 성립은 조선 국내시장의 보호와 나아가 국내산업의 육성자재를 어렵게 만들었다. 세계자본주의체제로 편입된 이후 국내시장이 보호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개방됨으로써 조선은 외국 자본

주의의 거센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숙하나마 조선 후기 이래 변화, 발전하고 있었던 조선의 상품생산과 유통구조는 곧바로 세계자본주의체제에 종속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¹¹⁾

(2) 중국과의 통상조약과 관세문제

조선과 서양열강과의 수호통상조약은 대부분 중국의 주선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선의 대외관계가 조약의 체결에 따라 근대적 통상관계로 나아가자 중국은 그것을 기회로 조선에서의 종주권을 확실히 하고자 하였다. 임오군란 이후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킨 중국은 정치적, 군사적 압력을 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종속관계를 공공히 하고자 1882년 9월에 중국은 조선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였다.¹²⁾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¹³⁾에 포함된 규정은 상대국 개항장에 각기 상무관을 주둔시킨다는 것과 조선에서 중국이 치외법권을 갖는다는 것, 중국상선의 조선 개항장 출입이나호혜적인 근해어업의 허용한다는 것, 식량 및 용수 공급을 위한 어선의 해안정박을 허용한다는 것 등 중국의 일방적인 특권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 조약에서 중국이 획득한 많은 특권 가운데 특히 중요한 내용은 중국상인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무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이 조약을 통해 개장장 이외에 서울 및 양화진을 개시하게 하였고 내륙통상 및 비개항지에서 거주,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였

10) 그 동안 한국과 서양열강과의 조약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외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정치외교사 관련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이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박말희, 〈서양제국과의 개국조약〉 《한국외교사 I》, 집문당, 1993 참조.

11) 이에 대해서는 하원호, 1997,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신서원 참조.

12) 이에 대해서는 김종원, 1966,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대하여〉 《역사학보》32 참조.

13)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5, 《舊韓末條約彙纂》下, 394쪽.

다. 또 육로를 통한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증가 5%로 정하였다. 북경에서 교역허가를 받은 조선상민과 조선의 양화진, 서울에서 점포나 창고의 설치허가를 받은 중국상인 이외에는 각종 화물을 비개항지에 운송하고 점포를 설치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중국상인은 서울에 거주, 무역할 수 있는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그 동안 중국과 조선은 국경에서 정기시장을 통해 교역하였는데 새로 조약을 맺으면서 국경의 정기시장은 폐지되었다. 그 대신 조선의 의주 및 회령, 중국의 도문(圖們)과 훈춘(琿春)을 개시하였다. 아편 및 무기의 수출입은 금지하였고 홍삼의 중국수출은 조선 상민에 한하여 허가하기로 하였다. 관세율은 홍삼의 수출에 한해 15%의 종가세를 부과하고 그 밖의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는 5%의 종가세를 부과하기로 명시하였다.

1883년 3월에는 육로무역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한 <봉천 여조선변민교역장정(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¹⁴⁾을 체결하였다.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환수단으로 사용하는 금과 은, 개인용도로 소지한 의류, 여행화물, 문방구, 서적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판매를 위하여 시장에 반입된 사금 및 은광은 이에 속하지 않으므로 5%의 종가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해산물, 수피, 피혁, 면제품, 지류, 동제품, 자기 등에는 5%의 종가세를 부과하며 그 밖의 모든 수출입품에 대하여도 상민의 신고에 따라 5% 종가세를 부과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조약은 조선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을 명문화하여 중국의 정치적 우위를 공고히 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 개시와 내

륙통상 및 비개항장 거주, 영업권을 보장하여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억제하면서 중국에게 유리한 경제적 바탕을 마련한 것이었다.

(3) 일본과의 통상조약 개정과 관세문제

1876년 8월에 체결한 강화도조약으로 조선과 통상장정을 체결한 일본은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의 특권을 획득하였다. 그 후 국제정세에 눈을 뜨게 된 조선정부는 관세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꿈적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시찰단으로 파견되어 견문을 넓히고 만국공법적 국제질서와 근대적 통상관계의 지식을 접하게 된 조선정부 관계자는 통상조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교섭에 매진하였다.

또 한편으로 1882년 5월에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미국이 조선의 관세주권을 인정하였고, <조영수호통상조약> 등 일련의 조약들이 불평등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관세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자 일본은 기존의 완강한 입장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결국 1883년 7월에 일본은 조선과 <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¹⁵⁾을 체결하였다.

1876년 강화도조약 당시의 <조일통상장정>과는 달리 새로 체결한 <조일통상장정>은 관세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규정하였다. 새로운 <조일통상장정>은 조선의 관세주권을 인정하면서 과세표준을 명시하였다. 특히 해관장이 수출입자가 신고한 가격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 해관감정인의 감정가격에 따라 납세토록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 조항은 수출입품 가격의 과소신고에 따른 관세의 손실을 덜기

14)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5, 《舊韓末條約彙纂》下, 417쪽.

15)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5, 《舊韓末條約彙纂》上, 137쪽.

위한 것이었으며 관세권의 행사가 조선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관세를 완납한 후 수입품을 조선 각지로 수송할 경우에는 운송세나 비개항지 통과세 등 일체의 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조선의 세권을 제한하였다.

또한 곡물수출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조선정부가 잠정적으로 곡물수출을 금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영사관에 통지해야 하며 금지하는 시기를 각 항 거주 일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다.¹⁶⁾ 아울러 여타 국가들이 부여받는 권리특혜에 대해 일본도 이를 균점할 수 있다는 최혜국조항을 삽입하였다.

1876년에 국제통상에 그 예가 없는 무관세조약을 맺은 일본은 1883년 통상장정에서 비로소 한국의 관세주권을 인정하였지만 조선정부의 세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혜국조항을 획득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였다.

2. 무역규모의 확대와 무역시장의 변화

1) 일본의 무역독점과 실재적 내용

최유길의 분석에 의하면 강화도조약 이후 1883년까지의 조선무역은 무역관련 자료에 모두 대일무역만이 표기되었다.¹⁷⁾ 따라서 이 시기를 일본에 의한 ‘무역독점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조선무역의 추이를 알 수 있는 것이 <표 7-1>이고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 <도표 7-1>이다.¹⁸⁾ 이 시기에 수출은 14.09

16) 이는 방곡령의 실시 당시 일본과의 외교분쟁의 빌미가 되었다. 방곡령사건에 대해서는 하원호, 1985, <개항후 방곡령실시의 원인에 관한 연구>(상)(하), 《한국사연구》49, 50·51합집 참조.

17) 崔柳吉, 1974, 《韓國の貿易動向 1877~1911年—輸出入物價指數の推計を中心に》《アジア經濟》, 15-1, 80쪽. 그런데 일본과의 교역이 증대함으로써 종래 전통적인 중국과의 국경무역이 위축되었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교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개항을 전후하여 의주에서의 중국과의 교역량은 옥양목 등 자본재 면제품의 수입을 중심으로 3~4백만 엔에 달하였으며 1880년에 들어 인천과 원산까지 개항되면서 120만엔으로 줄어 들었다 하더라도 중국과는 전통적인 육로무역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通商彙編》明治17年 釜山港之部, 242쪽.

18) 개항기 무역액의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각 자료마다 차이가 있고 분석한 학자마다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1897년까지는 최유길의 추계를 따랐고 1898년 이후에는 《조선통감부통계연보》를 활용하여 무역액의 추이를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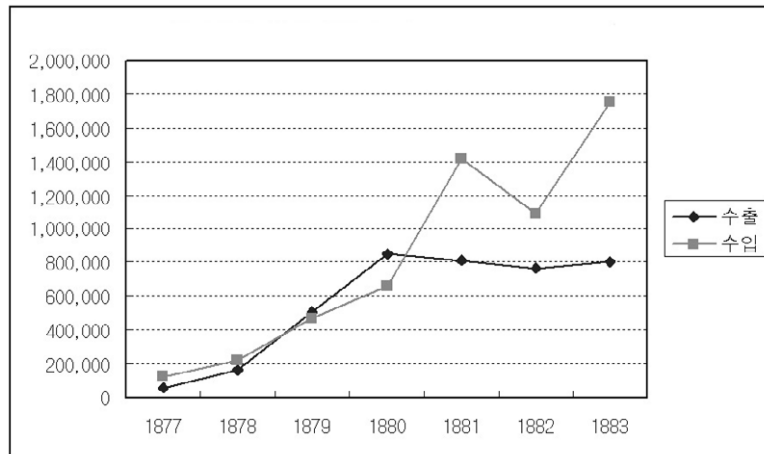
〈표 7-1〉 1877~1883년 조선무역의 추이 (단위: 엔)

연도	수출		수입		수출입합계		수입	금은	금은	금은수출입	금은수출초
	가액	지수	가액	지수	가액	지수	초과	수출	수입	무역합계	
1877	56,883	100	122,526	100	179,409	100	65,643	9,880	0	9,880	9,880
1878	165,122	290	222,516	182	387,638	216	57,394	21,198	0	21,198	21,198
1879	505,096	888	467,785	382	972,881	542	-37,311	53,538	0	53,538	53,538
1880	850,525	1,495	662,162	540	1,512,687	843	-188,363	79,382	0	79,382	79,382
1881	808,978	1,422	1,416,661	1,156	2,225,639	1,241	607,683	301,079	0	301,079	301,079
1882	765,423	1,346	1,087,484	888	1,852,907	1,033	322,061	355,017	3,183	358,200	351,834
1883	801,262	1,409	1,749,896	1,428	2,551,158	1,422	948,634	582,416	0	582,416	582,416

출전: 崔柳吉, 1974, 〈韓國の貿易動向 1877~1911年—輸出入物價指數の推計を中心に〉(『アジア經濟』, 15-1(이하 최유길의 통계라고 명명함)).

* 지수는 필자가 따로 정리한 것임(이하 동일함).

〈도표 7-1〉



배, 수입은 14.28배 증가하였고 수출입은 14.22배로 무역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었다. 1877년과 1880년을 제외하고 조선은 수출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모두 출초현상을 기록하였다.

조선이 서양국가와 형식적으로 직접무역관계를 시작한 것은 1882년부터이지만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을 통한 간접교역은 급격하게 증가

하였다. 수출은 극히 미미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수입의 경우 그 액수가 상당하였다.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후 서양상품은 상해(上海)로부터 고베(神戸)로 들어간 다음 다시 고베에서 일본선박에 실려 조선으로 들어왔다. 일본의 중계무역을 통해 서양상품은 조선에 비약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하였다.¹⁹⁾ 특히 서양상품이 일본상품을 압도하였다. 〈표 7-2〉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이다. 강화도조약 이후 서양과의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이전시기까지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량이 급증하였는데 일본상품 가운데 일본제품은 11.7%에 지나지 않았고 서양제품이 88.3%를 차지해 일본상품의 대부분이 서양상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2〉 1877~1883년 조선무역의 추이 (단위: 엔)

연도	가액			비율		
	일본	서양	합계	일본	서양	합계
1877	87,149	141,405	228,554	38.1%	61.9%	100.0%
1878	29,332	113,286	142,618	20.6%	79.4%	100.0%
1879	55,647	511,306	566,953	9.8%	90.2%	100.0%
1880	116,130	861,883	978,013	11.9%	88.1%	100.0%
1881	202,069	1,742,668	1,944,737	10.4%	89.6%	100.0%
1882	47,519	695,043	742,562	6.4%	93.6%	100.0%
총합계	537,846	4,065,591	4,603,437	11.7%	88.3%	100.0%

출전: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197쪽.

* 1877년이라 표기한 것은 1877년 7월 1일부터 1878년 6월 30일까지, 1878년이라 표기하는 것은 1878년 7월 1일부터 1878년 12월 31일까지, 1882년이라 표기한 것은 1882년 1월 1일부터 188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 1878년 일본 가액이 맞지 않아 일본농상무성 산림국에서 번역한 〈조선지〉를 보고 수정한 것임.

19) 러시아대장성(김병린 역), 1985, 《舊韓末의 社會와 經濟》, 裕豊出版社, 197~198쪽.

2) 중국과 일본의 무역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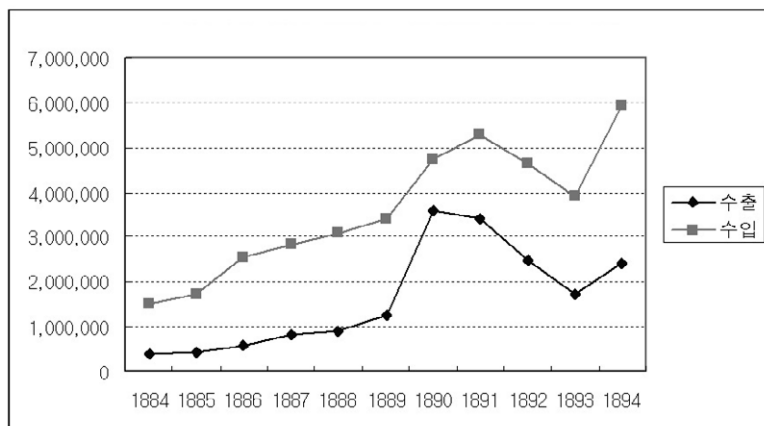
조선이 각국과 통상장정을 체결한 뒤에 일본의 무역독점은 끝을 맺었고 이후 일본은 중국과 무역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중일무역경쟁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무역액의 추이를 알

〈표 7-3〉 1884~1894년 조선무역의 추이 (단위: 엔)

연도	수출		수입		수출입합계		수입 초과	금은 수출	금은 수입	금은수출입 무역합계	금은수출초
	가액	지수	가액	지수	가액	지수					
1884	401,674	100	1,513,717	100	1,915,391	100	1,112,043	624,130	23,419	647,549	607,711
1885	435,595	108	1,713,351	113	2,148,946	112	1,277,756	934,636	43,307	977,943	891,329
1886	566,047	141	2,536,007	168	3,102,054	162	1,969,960	1,251,142	115,268	1,366,410	1,135,874
1887	824,769	205	2,835,214	187	3,659,983	191	2,010,445	1,439,215	141,654	1,580,869	1,297,561
1888	897,464	223	3,076,849	203	3,974,313	207	2,179,385	1,496,109	188,901	1,685,010	1,307,208
1889	1,265,632	315	3,409,606	225	4,675,238	244	2,143,974	1,280,815	218,367	1,499,182	1,062,448
1890	3,576,304	890	4,753,665	314	8,329,969	435	1,177,361	865,456	529,776	1,395,232	335,680
1891	3,395,475	845	5,285,599	349	8,681,074	453	1,890,124	818,841	627,044	1,445,885	191,797
1892	2,468,042	614	4,622,788	305	7,090,830	370	2,154,746	1,133,858	512,543	1,646,401	621,315
1893	1,723,389	429	3,905,428	258	5,628,817	294	2,182,039	1,066,104	497,982	1,564,086	568,122
1894	2,403,468	598	5,923,996	391	8,327,464	435	3,520,528	1,406,939	866,421	2,273,360	540,518

출전: 최유길의 통계.

〈도표 7-2〉



수 있는 것이 〈표 7-3〉이고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 〈도표 7-2〉이다. 이 시기에 수출은 5.98배, 수입은 3.91배 증가하였고 수출입은 4.3배로 무역규모가 계속 팽창하고 있었다. 수출의 증가폭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출초현상을 기록함으로써 무역적자가 누적되었다.

1882년에 미국에 문호를 개방하고 유럽 각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조선은 각국과 무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1893년 러시아와 무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선무역은 대일무역과 대중무역만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수입무역에서는 중국이 조선에서의 정치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수출에서의 주도권을 일본이 장악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되는 양상이다. 특히 수입에서는 1894년까지 중국이 꾸준히 성장하여 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 되었다. 이는 이 시기 조선무역의 국별 수출입 비율을 표기한 〈표 7-4〉와 〈표 7-5〉에 의해 알 수 있다.

〈표 7-4〉 1884~1894년 국별 수출 비율의 추이

연도	일본	중국	러시아	합계
1884	98.00%	2.00%	0.00%	100.00%
1885	97.56%	2.44%	0.00%	100.00%
1886	96.83%	3.17%	0.00%	100.00%
1887	97.66%	2.34%	0.00%	100.00%
1888	92.70%	7.30%	0.00%	100.00%
1889	91.10%	8.90%	0.00%	100.00%
1890	98.00%	2.00%	0.00%	100.00%
1891	95.95%	4.50%	0.00%	100.00%
1892	93.87%	6.13%	0.00%	100.00%
1893	90.87%	7.90%	1.23%	100.00%
1894	88.74%	7.00%	4.26%	100.00%

출전: 최유길의 통계.

〈표 7-5〉 1884~1894년 국별 수입 비율의 추이

연도	일본	중국	러시아	합계
1884	85.00%	15.00%	0.00%	100.00%
1885	81.47%	18.53%	0.00%	100.00%
1886	81.94%	18.06%	0.00%	100.00%
1887	74.70%	25.30%	0.00%	100.00%
1888	71.85%	28.15%	0.00%	100.00%
1889	67.61%	32.39%	0.00%	100.00%
1890	65.04%	34.96%	0.00%	100.00%
1891	61.17%	38.83%	0.00%	100.00%
1892	55.42%	44.58%	0.00%	100.00%
1893	50.23%	49.11%	0.66%	100.00%
1894	62.53%	35.41%	2.06%	100.00%

출처: 최유길의 통계.

그런데 이 시기에도 대부분 서양, 그 가운데에서도 영국에서 생산된 면직물이 중국상인과 일본상인의 중계무역에 의해 수입되었다. 중국상인과 일본상인은 면직물의 중계무역을 둘러싸고 쟁패를 벌이기도 하였다. 개항장무역에 늦게 참여한 중국이 조선의 수입무역 시장에서 현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었다. 먼저 중국상인은 자본력과 상업수완이 탁월하고 일본상인에 비해 신용도가 높았다. 또 중국상인은 중계무역항으로서 상해가 동아시아에서 무역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일본상인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무역활동을 할 수 있었다.²⁰⁾ 아울러 이 시기에 우세하였던 중국의 정치적 위세가 중국상인의 활동을 후원함으로써 중국무역을 뒷받침하였던 것도 한몫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청일전쟁 이전에 일본은 이미 중계무역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²¹⁾ 이 연구에 의하면 일본에서 수입된 물품 가운데 일본제품이 차지한 비중은 1882년 이전까지 1할

정도에 머물렀지만 1883년 이래 5할 전후로 상승하였고 1890년부터는 해마다 8할 이상을 차지하였다. 일본상인들이 일본제품의 수출 비중을 크게 증대한 이유는 당시 조선의 수입품 가운데 주종을 이루었던 서양제품의 옥양목에 대한 중계무역을 중국상인이 장악하였기 때문이었다. 일본상인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제품의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 옥양목의 중계 수입 물량 가운데 일본상인의 몫은 1886년에는 1할 미만이 되었고 1888년부터 2% 이하로 떨어져 청일전쟁 직전에는 중국상인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

일본은 중계무역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면직물을 생산하여 이를 조선에 적극적으로 수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비해 중국은 중계무역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일본은 산업화에 성공함으로써 조선을 자국의 공산품 판매시장으로 만들 수 있었다. 1890년부터 조선시장에 진출한 일본제 면제품은 품질면에서는 영국제품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저렴한 가격과 조선에 인접한 지리적 조건, 조선시장의 수요와 기호에 적응하는 능력을 앞세워 영국제품과 경쟁할 수 있었다.

조선이 서양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 조선과 서양과의 무역은 더욱 확대될 조건이 구비되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892년까지는 일본이나 중국과 무역이 이루어졌고 1893년 이후 러시아와 무역이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여기에서 당시 조선세관의 통계자료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수성을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이들 통계자료는 상품의 생산지나 수출지정지를 표시하지 않고 단지 이들 상품이 들어온 직접수입항과 상품을 내보낸 직접수출항만을 기입하고 있을 뿐이다. 당시 조선은 오직 일본, 중국 및 연해주에만 한정하여 직접적인 기선교통과 연락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수출입품에 관한 세관통계자료는 단지 세 나라만 수출입 대상국으로

20) 이에 대해서는 古田和子, 2000, 《上海ネットワークと近代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참조.

21) 北川修, 1932, 〈日清戰爭までの日鮮貿易〉 《歴史科學》1-1 참조.

〈표 7-6〉 1891년 현재 인천항 수입상품 국가별 비율

영국제품	54%
일본제품	24%
중국제품	13%
독일제품	6%
미국제품	2%
러시아와 프랑스제품	1%

출전: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24쪽.

기입되어 있을 뿐 상품의 원산지나 최종수출지에 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²²⁾ 당시의 조선세관자료로는 서양을 비롯하여 그 밖의 국가와의 수출입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런데 조선이 서양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 서양과의 무역이 증대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는 이 시기 무역규모가 상당히 확대된 상황에서 1891년 인천항에 국한된 통계이지만 수입된 외국상품 가운데 일본제품이 24%, 중국제품이 13%를 차지한 반면 영국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1885년에서 1892년까지 수출은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수입은 거의 10배 가량 증가하였다. 수입에서 면제품은 전체 수입품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중 영국제품이 가장 많았으며 일본제품이 그 다음으로 영국제품의 1/3 정도를 차지하였다.²³⁾ 따라서 수입상품의 경우, 서양제품이 이 시기에 일본제품보다도 그 비율이 더 컸을 개연성은 많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이 시기의 대외무역결제수단으로 통용되었던 것은 멕시코달

러였다. 1895년까지는 멕시코달러로 세관의 결산이 이루어졌으나 일본화폐의 조선장악과 맞물리면서 이후에는 일본의 엔화가 공식적으로 대외결제수단이 되었다.²⁴⁾

3) 청일전쟁 후 일본·중국의 경쟁, 기타 국가의 진출

청일전쟁 이후 조선의 무역에는 약간 변화가 생겨났다.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타국가의 진출도 눈에 띈다. 이 시기를 ‘중일전쟁조정기’라 부르고자 한다. 이 시기의 조선무역의 추이를 알 수 있는 것이 〈표 7-7〉이고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 〈도표 7-3〉이다. 이 시기에 수출은 2.75배, 수입은 3.21배 증가하였고 수출입은 3.10배로 무역규모가 계속 팽창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1903년까지는 수출의 증가폭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출초현상을 계속 기록하였다.

〈표 7-7〉 1895~1904년 조선무역의 추이 (단위: 엔)

연도	수출		수입		수출입합계		수입	금은	금은	금은수출입	금은수출초
	가액	지수	가액	지수	가액	지수	초과	수출	수입	무역합계	
1895	2,733,573	100	8,339,978	100	11,073,551	100	5,606,405	2,338,406	1,702,919	4,041,325	635,487
1896	4,866,988	178	6,669,612	80	11,536,600	104	1,802,624	1,675,874	739,357	2,415,231	936,517
1897	8,986,579	329	10,179,196	122	19,165,775	173	1,192,617	3,457,633	2,954,780	6,412,413	502,853
1898	5,813,223	213	11,817,562	142	17,630,785	159	6,004,339	4,899,206	1,000,801	5,900,007	3,898,405
1899	5,049,979	185	10,227,340	123	15,277,319	138	5,177,361	4,762,057	1,323,006	6,085,063	3,439,051
1900	9,568,768	350	10,940,460	131	20,509,228	185	1,371,692	5,599,599	2,107,901	7,707,500	3,491,698
1901	8,542,713	313	14,696,470	176	23,239,183	210	6,153,757	6,079,508	2,446,014	8,525,522	3,633,494
1902	8,468,493	310	13,541,409	162	22,009,902	199	5,072,916	6,504,435	2,301,885	8,806,320	4,202,550
1903	9,506,308	348	18,219,183	218	27,725,491	250	8,712,875	6,526,157	1,942,356	8,468,513	4,583,801
1904	7,530,715	275	26,805,380	321	34,336,095	310	19,274,665	6,257,666	9,163,265	15,420,931	-2,905,599

출전: 최유길의 통계, 〈조선통감부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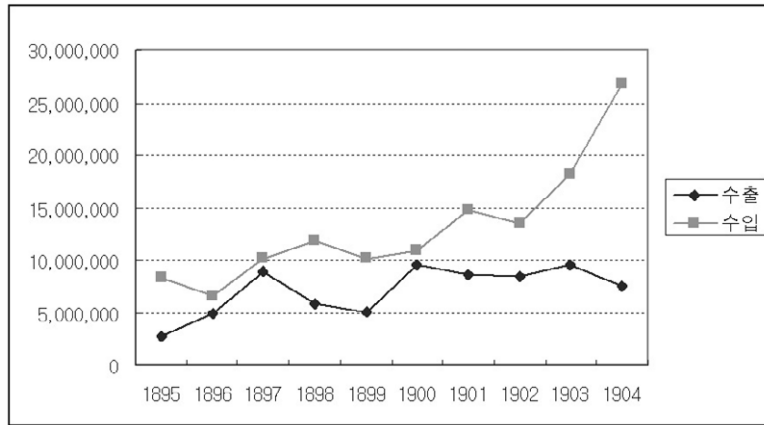
* 1898년 이후는 〈조선통감부통계연보〉에 의해 수정(이하 동일).

22)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23쪽.

23) ANNUAL REGISTER 1892(LONGMANS GREEN, AND CO, 1910), 327쪽.

24)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53쪽.

〈도표 7-3〉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삼국의 정치적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그런데도 조선무역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까지 근본적으로 상실되지 않았다. 청일전쟁의 패배로 중국상인은 일시적으로 조선에서 철수함으로써 1895년에는 조선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6.21%로 떨어졌으나 1896년 이후 다시 높아져 1898년에는 전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1.71%를 기록할 정도로 일본과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였다. 중국상인은 이 시기까지 여전히 옥양목의 중계무역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옥양목은 안정적으로 수입되었다. 중국제 비단뿐 아니라 중국제 마포의 수입도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중국상인의 영향력은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 이후 급격하게 약화되었다.

한편 개항장을 통한 수출이 금지되었던 홍삼은 청일전쟁 이후 조공무역이 폐지되자 1895년부터 개항장을 통해서도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중국상인이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또한 육로를 통한 홍삼수출도

〈표 7-8〉 1895~1904년 국별 수출 비율의 추이

연도	일본	중국	러시아	기타	합계
1895	95.35%	3.69%	9.50%	0.00%	108.54%
1896	92.97%	5.58%	1.45%	0.00%	100.00%
1897	90.15%	8.21%	1.64%	0.00%	100.00%
1898	79.22%	19.79%	0.99%	0.00%	100.00%
1899	84.14%	13.72%	2.14%	0.00%	100.00%
1900	76.62%	20.85%	2.53%	0.00%	100.00%
1901	87.33%	9.61%	3.06%	0.00%	100.00%
1902	78.90%	18.36%	2.74%	0.00%	100.00%
1903	79.82%	16.86%	3.20%	0.12%	100.00%
1904	77.75%	22.21%	0.03%	0.01%	100.00%

출전: 최유길의 통계, 〈조선통감부통계연보〉.

〈표 7-9〉 1895~1904년 국별 수입 비율의 추이

연도	일본	중국	러시아	기타	합계
1895	72.19%	26.21%	1.60%		100.00%
1896	65.74%	33.06%	1.20%		100.00%
1897	63.89%	35.12%	0.99%		100.00%
1898	57.35%	41.71%	0.94%		100.00%
1899	65.10%	33.94%	0.96%		100.00%
1900	75.33%	23.60%	1.07%		100.00%
1901	61.65%	38.16%	0.19%		100.00%
1902	63.28%	35.43%	0.15%	1.14%	100.00%
1903	63.47%	30.68%	0.70%	5.15%	100.00%
1904	70.27%	19.72%	0.60%	9.41%	100.00%

출전: 최유길의 통계, 〈조선통감부통계연보〉.

계속되었다.²⁵⁾ 그 결과 조선의 수출무역 시장에서 이전까지 일본이 90% 이상을 차지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 시기에 들어오면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떨어진 반면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904년의 경우, 22.21%까지 높아지는 경향에 있었음을 주목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시기에 들어오면 러시아가 조선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25)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34쪽.

확대하면서 수출입에서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02년부터는 서양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의 직접적인 수출입이 시작되었다. 이는 무역구조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제국주의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²⁵⁾ 특히 청일전쟁 이후 조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일본제 면제품의 비중은 현격히 증가하였다.²⁷⁾ 따라서 일본의 수출입시장의 비율 저하가 갖는 실제적인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러일전쟁 발발 이후 수출입국의 다변화

러일전쟁이후 일본의 승리로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화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경제적으로 상당부분 조선경제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무역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이외의 각국과의 무역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무역다변화기’라 부르고자 한다.

이 시기 조선무역무역의 추이를 알 수 있는 것이 <표 7-10>이고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 <도표 7-4>이다. 이 시기에 수출은 2.05배, 수입은 1.15배 증가하여 수출입은 1.33배에 머물러 무역규모로만 보면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정체적이었다.

25)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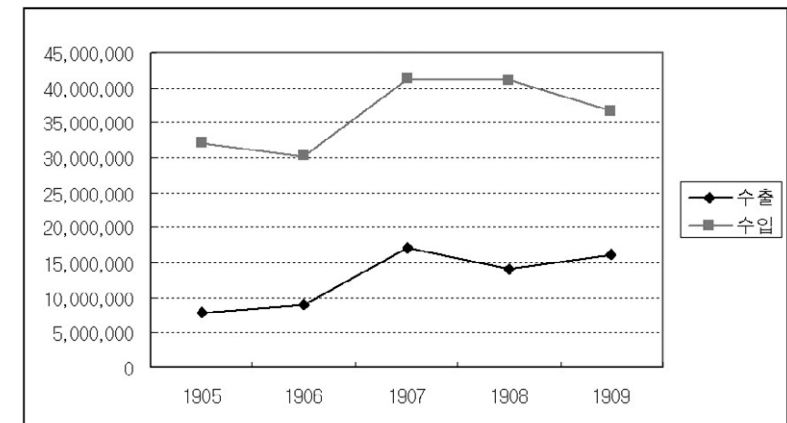
26) 일본자본주의의 발전상에 대해서는 梶西光速・大島清・加藤俊彦・大内力, 1950, 《日本における資本主義の發達》, 東京大出版會, 참조.

<표 7-10> 1905~1909년 조선무역의 추이 (단위: 엔)

연도	수출		수입		수출입합계		수입	금은	금은	금은수출입	금은수출초
	가액	지수	가액	지수	가액	지수	초과	수출	수입	무역합계	
1905	7,916,571	100	31,971,852	100	39,888,423	100	24,055,281	5,515,967	1,151,322	6,667,289	4,364,645
1906	8,902,387	112	30,291,445	95	39,193,832	98	21,389,058	6,057,552	1,329,642	7,387,194	4,727,910
1907	16,973,574	214	41,387,540	129	58,361,114	146	24,413,966	5,547,243	1,992,186	7,539,429	3,555,057
1908	14,113,310	178	41,025,523	128	55,138,833	138	26,912,213	5,016,686	3,247,881	8,264,567	1,768,805
1909	16,248,888	205	36,648,770	115	52,897,658	133	20,399,882	6,959,349	921,125	7,880,474	6,038,224

출전: 최유길의 통계, <조선통감부통계연보> 각년판.

<도표 7-4>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변하지 않았으나 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떨어졌다. 중국도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떨어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양을 비롯한 기타 국가의 비율 증대에 원인이 있었다.

1905년경에는 조선의 수입품 가운데 다시 영국의 면제품과 철도 설비(plant)가 상당한 항목을 차지하여 조선무역에 대한 영국의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는 기록도 있다.²⁸⁾ 특히 1905년 이후 조선의 수입에서 영

27) 한 기록에 의하면일본이 산업자본주의가 확립되면서 1896년에는 일본상품이 영국상품을 밀어내고 실제적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24쪽.

〈표 7-11〉 1905~1909년 수출 국별 비율의 추이

연도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미국	기타	총합계
1905	70.89%	28.78%	0.25%	0.08%	0.00%	0.00%	100.00%
1906	81.27%	11.24%	7.31%	0.18%	0.00%	0.00%	100.00%
1907	76.32%	18.96%	4.64%	0.06%	0.01%	0.00%	100.00%
1908	77.68%	15.92%	5.48%	0.09%	0.32%	0.51%	100.00%
1909	74.35%	19.71%	4.83%	0.41%	0.42%	0.26%	100.00%

출전: 최유길의 통계, 《조선통감부통계연보》 각년판.

* 영국은 영령인도, 영령해협식민지, 홍콩을 포함한 것임. 러시아는 통계상의 러시아와 노령아세아를 합친 것임.

〈표 7-12〉 1905~1909년 수입 국별 비율의 추이

연도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미국	기타	총합계
1905	72.91%	19.60%	0.34%	1.12%	6.00%	0.02%	100.00%
1906	76.74%	14.50%	0.18%	0.11%	8.44%	0.02%	100.00%
1907	71.05%	13.56%	0.17%	7.46%	7.07%	0.69%	100.00%
1908	58.60%	11.90%	0.18%	16.78%	10.22%	2.32%	100.00%
1909	59.63%	12.21%	0.21%	18.23%	6.54%	3.18%	100.00%

출전: 최유길의 통계, 《조선통감부통계연보》 각년판.

국의 영향력은 크게 상승했다. 영국은 1905년에 조선의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2%에 지나지 않았으나 1909년에는 18.23%로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도 수입에서 6~10%를 오르내리면서 일정한 비율을 점하였다. 러일전쟁 후에도 고급 면포시장에서 영국의 우위는 흔들리지 않았고²⁹⁾ 석유는 미국이 독점적인 공급권을 가지고 있었다. 철도부설을 위한 각종 자재는 미국과 영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를 비롯한 기타국가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초기 일부 국가에 편중되었던 시장구조와는 달리 조선무역

의 시장이 다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조선무역 시장이 다변화되었던 것은 개항기 조선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조선의 교역조건은 뚜렷이 개선되는 추세였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³⁰⁾ 그 때문에 수출품 생산자와 수입품 소지자는 무역을 통한 이익을 누렸다고 할 수 있다.

28) ANNUAL REGISTER 1905(LONGMANS, GREY, AND CO, 1910), 399쪽.

29) 옥양목·막베의 경우 1910년 당시까지도 영국상품이 일본상품보다 우위를 유지하였다. 송규진, 2001, 《일제하의 조선무역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70쪽.

30) 최유길, 〈앞의 글〉, 참조.

3. 상품구성의 특징

1) 수출상품

(1) 곡물수출

조선으로부터 수출되는 상품은 대부분이 곡물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이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미곡과 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미곡과 콩의 수출은 작황이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 부피가 컸기 때문에 철도가 개통되기 전까지만 해도 육로 교통에 어려움이 있는 등 수출의 기반이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표 7-1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꾸준히 성장하였다.

어쨌든 농산물 수출을 통해 농민들은 자신들이 잉여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됨에 따라 처음에는 배의 운항이 가능한 강이나 해안가에 위치하는 고장에 한해 경작면적을 확대해갔다.³¹⁾ 농민들에게 주어진 수익은 농민들로 하여금 수출할 목적으로 경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자각을 일깨워 주었다. 그런데 곡물수출의 결과 지주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수출곡물의 많은 부분을 소작미가 차지하였다. 지주들은 지대수취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작료를 인상하고 정미(精米)를 통한 상품화과정을 직접 장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주제를 강화하였다.³²⁾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조선농민들에게 수확고의 반을 일본인에게 준다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가을이 되면 이들 대리인이 또다시 계약구역으로 돌아다니며 자기 몫을 거두어 개항장으로 보냈다. 일본인들이 대여하는 금액은 항상 시장에서 매매되는 미곡의 값보다 아주 싸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풍년이 들 때에는 막대한 이익을 보고 흉년에도 별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³³⁾

갑오개혁으로 현물납입제도가 폐지되고 조세금납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수출무역이 약간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조세로 정부의 창고에 들어갔던 막대한 양의 미곡은 곧바로 수출할 수 있었다.

콩은 거의 예외없이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쌀이 풍흉에 극심한 영향을 받는 데 비하여 콩은 기후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일본에서 수요가 증가하여 계속적으로 수출량도 많아졌다. 원래 일본인들은 콩을 간장과 조미료의 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콩 생산량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조선산 콩이 값싸고 품질이 비교적 좋았기 때문에 점차 콩의 공급을 조선에 의존함으로써 매년 콩밭을 뽕밭으로 하는 자가 많아지는 등 콩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었다. 반면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무역을 통한 콩의 이익이 높았기 때문에 후기로 갈수록 콩의

31)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30쪽.

32) 하원호, <앞의 책>, 39쪽.

33)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30쪽.

34) 하원호, <앞의 책>, 124쪽.

재배면적을 넓히고 있었다.³⁴⁾ 콩 수출도 개항 전시기를 통해 계속 증대를 보이고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였다.

〈표 7-13〉 미국수출의 추이

연도	수출총액	미국		콩		미국과 콩의 비율(%)
		가액	비율(%)	가액	비율(%)	
1877	56,883	1,959	3.4	4,155	7.3	10.7
1878	165,122	50,600	30.6	25,323	15.3	46.0
1879	505,096	358,812	71.0	99,123	19.6	90.7
1880	850,525	729,706	85.8	119,307	14.0	99.8
1881	808,978	381,283	47.1	196,695	24.3	71.4
1882	765,423	21,011	2.7	311,325	40.7	43.4
1883	801,262	45,625	5.7	293,955	36.7	42.4
1884	401,674	196	0.0	100,705	25.1	25.1
1885	435,595	15,691	3.6	28,884	6.6	10.2
1886	566,047	12,193	2.2	51,733	9.1	11.3
1887	824,769	90,071	10.9	335,415	40.7	51.6
1888	897,464	21,810	2.4	471,541	52.5	55.0
1889	1,265,632	77,578	6.1	645,429	51.0	57.1
1890	3,576,304	2,037,868	57.0	1,005,156	28.1	85.1
1891	3,395,475	1,820,319	53.6	913,939	26.9	80.5
1892	2,468,042	998,519	40.5	797,884	32.3	72.8
1893	1,723,389	367,165	21.3	628,324	36.5	57.8
1894	2,403,468	979,292	40.7	506,888	21.1	61.8
1895	2,733,573	305,196	11.2	923,695	33.8	45.0
1896	4,866,988	2,509,343	51.6	1,277,071	26.2	77.8
1897	8,986,579	5,556,700	61.8	1,710,211	19.0	80.9
1898	5,813,223	2,759,046	47.5	1,124,048	19.3	66.8
1899	5,049,979	1,417,842	28.1	1,974,863	39.1	67.2
1900	9,568,768	3,625,629	37.9	2,368,545	24.8	62.6
1901	8,542,713	4,195,309	49.1	1,881,014	22.0	71.1
1902	8,468,493	3,524,619	41.6	1,735,945	20.5	62.1
1903	9,506,308	4,224,721	44.4	1,528,834	16.1	60.5
1904	7,530,715	1,300,790	17.3	2,399,513	31.9	49.1
1905	7,916,571	889,273	11.2	2,695,683	34.1	45.3
1906	8,902,387	1,603,648	18.0	3,602,703	40.5	58.5
1907	16,973,574	7,558,505	44.5	3,935,652	23.2	67.7
1908	14,113,310	6,484,831	45.9	3,370,422	23.9	69.8
1909	16,248,888	5,530,557	34.0	3,513,753	21.6	55.7

출전: 최유길의 통계, 하원호, 〈앞의 책〉, 《조선통감부통계연보》.

곡물수출은 곡물을 구매하여 생계를 잇던 빈농이나 토지가 없던 조선인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특히 흉년에 들었던 해의 경우 사태는 심각하였다. 원래 조선은 수해 등으로 흉년이 되는 때에 중앙에서는 물론 지방에도 그 지방의 재정, 상납세미(上納稅米) 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지방의 곡물이 타지방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곡령을 실시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이 같은 방곡령의 실시에 폐단도 수반되었다. 일부 지방의 방곡령 실시는 중앙에서의 곡가 양등을 초래하기도 하고 지방관의 축재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폐단이 생겨 정부에서 방곡금지령을 내리는 수도 있었다.³⁵⁾

곡물수출이 확대되면서 곡물가격이 크게 오르자 사태는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개항 이후 100건 이상의 방곡령이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조일통상장정〉을 내세운 일본측의 항의로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³⁶⁾ 원래 방곡령은 행정의 강제력으로 시장기능을 마비시키는 전근대적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근대적 경제정책이 실시되면 소멸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 환곡이나 진휼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방관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곡가안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금은수출

조선의 수출품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은 금이다. 그런데 금의 수출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에 관한 조선세관의 보고서가 실제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순금은 무

35) 한우근, 1970, 《한국개항기의 상업연구》, 263~264쪽.

36) 이에 대해서는 하원호, 〈앞의 글〉, 참조.

세수출이 허용되어 있었지만 통계목적을 위해 수출업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중국상인과 일본상인은 금의 부피가 작고 또한 세관관리들이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는 금에 대해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해 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쉽게 금을 유출할 수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세관보고서에 기록된 것은 상인들이 자진해 세관에 신고한 금에 관한 것뿐이었다. 이 외에 다량의 금속이 육로로 중국과 러시아국경으로 수출되었는데 이는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다.³⁷⁾

중국상인들은 처음에는 일본상인들보다 많은 금을 중국으로 수입해왔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상당한 양의 금이 중국으로 들어갔으며 조선의 서해안에서 밀수출입을 하는 중국의 정크선으로 금을 밀수하였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주로 사금을 구입하여 조그마한 금궤로 만들어 일정한 크기의 무게로 용해·가공하기 위해 상해로 보냈다. 금의 가격은 변동이 컸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하기가 어렵다.³⁸⁾ 중국상인은 수입상품의 판매대금으로 주로 엽전을 받고 이를 다시 사금이나 은화 등 정화의 형태로 바꾸어 유출하였으므로 오히려 일본보다 중국으로 금의 유출이 많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일본상인은 중국상인과는 달리 수입자본재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다시 곡물을 구입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교역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1890년대 이후 곡물수출이 증대하면서 자금이 주로 곡물매입에 투자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일본으로의 금 유출이 적을 수도 있었다.³⁹⁾

그런데 일본정부는 금본위제를 채택한 이후 금 흡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고 조선의 금 수출 시장을 손아귀에 넣었다. 이렇게 조선으로부터 유출된 막대한 금은 조선에 진출하였던 일본제일은행을 통하여 금을 매입 유출함으로써 정화를 축적하고 일본의 금본위제 확립에 기초를 마련하였다.⁴⁰⁾

〈표 7-14〉는 금은 수출액과 전체 수출액의 비율을 표기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금은수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출액과

〈표 7-14〉 금은 수출액의 추이 (단위: 엔)

	수출(A)	금은수출(B)	B/A
1887	824,769	1,439,215	39.3%
1888	897,464	1,496,109	37.6%
1889	1,265,632	1,280,815	27.4%
1890	3,576,304	865,456	10.4%
1891	3,395,475	818,841	9.4%
1892	2,468,042	1,133,858	16.0%
1893	1,723,389	1,066,104	18.9%
1894	2,403,643	1,406,939	16.9%
1895	2,733,573	2,338,406	21.1%
1896	4,866,988	1,675,874	14.5%
1897	9,085,577	3,457,633	17.9%
1898	5,813,223	4,899,206	27.6%
1899	5,049,979	4,762,057	31.1%
1900	9,568,768	5,599,599	27.1%
1901	8,542,713	6,079,508	26.1%
1902	8,468,503	6,504,435	29.4%
1903	9,669,131	6,526,157	23.2%
1904	7,530,715	6,257,666	17.9%
1905	7,916,571	5,515,967	13.5%
1906	8,902,509	6,057,552	15.5%
1907	16,983,936	5,547,243	9.5%
1908	14,113,310	5,016,686	9.1%
1909	16,248,888	6,959,349	13.2%
1910	19,913,843	9,199,638	15.4%

출전: 東洋經濟新報社, 《日本貿易精覽》(東洋經濟新報社, 1935), 577쪽.

40) 高嶋雅明, 1978, 《朝鮮における植民地金融史の研究》, 大原新生社 참조.

37)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40쪽.

38)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42쪽.

39) 하원호, 〈앞의 책〉, 22쪽.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의 경우는 세관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였다. 이에 의하면 1903년의 금은 수출이 전체 수출품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2%였던 반면 한 기록에 의하면 1903년의 경우 금이 전체 수출품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8%정도였다.⁴¹⁾ 따라서 이 시기에 실제 이루어졌던 금은의 수출액은 통계상에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다.

(3) 기타 중요 상품

조선 후기 이래 중요한 수출품이었던 것이 인삼이었다. 인삼은 통상 왕이 독점하여 특수한 상인에게 그 판매권을 위임하였다. 이들 상인은 외교 사절과 연계를 맺고 국경지점인 의주를 거쳐가는 육로를 따라 중국으로 진출하여 중국인들에게 인삼을 판매하였다.⁴²⁾

개항 이후 개항장을 통한 백삼의 수출이 허용되었다. 그런데 해로를 통한 홍삼의 수출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1882년 중국과 체결한 조약으로 인한 홍삼 수출은 종전대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국경을 통해 육로수출을 하는 조선상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들어오면 인삼구입이 상인들에게 위임되었다. 이들은 구입한 인삼을 국경지점인 의주로 운송하여 이곳에서 인삼을 국경 밖으로 수출해도 좋다는 왕의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왕의 수출허가를 받은 상인들은 15%의 종가세를 지불하게 되었다. 1895년 가을에는 해로에 의한 홍삼 수출이 허용되었다. 이 무렵부터 가공된

〈표 7-15〉 인삼수출액 (단위: 엔)

	수출총액	인삼수출액	비율
1902	8,468,493	1,200,181	14.17%
1903	9,506,308	986,988	10.38%
1904	7,530,715	982,559	13.05%
1905	7,916,571	1,107,084	13.98%
1906	8,902,387	13,462	0.15%
1907	16,973,574	1,202,963	7.09%
1908	14,113,310	1,759	0.01%
1909	16,248,888	854,798	5.26%

출전: 〈조선통감부통계연보〉 각년판.

인삼의 수출은 제물포로 집중하였고 이때 중국인들이 주된 수출업자로 등장하였다. 이 수출업에 종사한 영국대리공사에 의하면 중국인과 일부 일본인들이 인삼재배 농장주에게 보조금을 대여하여 미리 수확물을 매점하면서 인삼재배업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⁴³⁾

〈표 7-15〉에 의하면 1905년까지도 인삼의 수출은 전체 수출액에서 10%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이후 급격하게 변동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그 비율이 내려가는 경향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의 조선 수출무역상품은 〈표 7-16〉에서 알 수 있듯이 밀, 팥, 생선, 생면, 조면, 철광, 흑연 등 농산물과 해산물, 축산물, 광산물 등 대부분 1차 상품이 차지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소와 쇠가죽의 비율이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였음에 주목할 수 있다.

원래 조선에서는 농경에 사용하는 가축의 도살을 제한하였는데 특히 소의 도살을 엄중하게 제한했다. 1일 소 도살수를 몇 마리로 제한했는데 지방에 따라 다양하였다. 예를 들면 원산에서는 매일 단지 소 한 마리의 도살만이 허용되었을 뿐이었는데 평양에서는 30마리까지 허용

41) ANNUAL REGISTER 1904((LONGMANS, GREY, AND CO, 1910), 387쪽.

42) 이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제6장 이철성의 글, 참조.

43)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34쪽.

〈표 7-16〉 중요 상품의 수출액 (단위: 엔)

상품	1907		1908		1909	
	가액	비율	가액	비율	가액	비율
밀	381,455	2.25%	108,041	0.77%	669,489	4.12%
팥		0.00%	41,194	0.29%	146,849	0.90%
생선	145,845	0.86%	169,916	1.20%	171,266	1.05%
생면		0.00%	18,215	0.13%	141,316	0.87%
조면	63,452	0.37%	85,292	0.60%	131,779	0.81%
철광	51,756	0.30%	162,883	1.15%	249,064	1.53%
흑연		0.00%	96,935	0.69%	150,575	0.93%
석탄	15,968	0.09%	45,326	0.32%	223,357	1.37%
쇠가죽	676,527	3.99%	518,934	3.68%	815,290	5.02%
소	775,220	4.57%	717,054	5.08%	426,249	2.62%
목재	178,623	1.05%	143,701	1.02%	130,256	0.80%

출전: 〈조선통감부통계연보〉.

되었다. 쇠가죽의 판매도 극히 제약을 받았다. 예를 들면 제물포에서 물품의 판매는 당국에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특정회사의 전매업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 회사를 빼돌리고 이루어지는 밀매품은 몰수를 당하고 이를 판매하는 상인은 당국으로부터 형벌을 받았다. 이러한 독점으로 인하여 이 회사는 가죽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품질이 좋지 않은 상품에 정상가격을 초월하는 가격을 책정하여 엄청난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⁴⁴⁾

가죽이 채취되는 조선산 소의 대부분은 짐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멩에나 안장이 잔등 가죽을 망가뜨리고 조선인들이 가죽을 벗겨 낼 때 너무 조심성 없이 다루기 때문이라고 조선제 쇠가죽은 품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1895년부터 1897년 사이 쇠가죽 수출액은 크게 감소하였다.⁴⁵⁾ 원래 쇠가죽은 군화제조 등 일본의 군수공업의 필요성 때문에 개항 초기부터 계속 수출이 증대하여 왔으며 흥작으로 곡

44)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38~239쪽.

45)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38~239쪽.

물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 때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886년의 경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5.8%를 기록한 경우도 있을 정도였다.⁴⁶⁾ 이후 비율이 크게 감소하긴 했어도 1909년에도 전체 수출의 5.0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수출품이었다.

2) 수입상품

(1) 섬유제품을 주로 한 상품 수입

개항 당시 조선에서 사용하던 섬유의 재질은 견, 마, 저마, 양모, 목면, 기타 직물인데 그 가운데 양모 등은 모자의 재료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데 불과하였다. 견포류는 지배층에서 상용하였고 일반백성은 착용이 금지되었지만 상층 농민의 경우 외출복으로 어느 정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와 저마는 재질에 따라 여름 의복으로 사용되며 또 상복이라는 특수한 용도가 있었다. 한산모시라 불리는 고급품에서 하급품까지 여러 등급이 있었는데, 최하층 사람들의 경우 여름, 겨울 등 계절에 따라 다른 재질의 의복을 입을 수 없었다. 조선조 초기 이래 조선인의 기본적인 의복재료는 목면이었다.⁴⁷⁾

개항기의 가장 주요한 수입제품은 섬유제품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면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표 7-1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6) 하원호, 〈앞의 책〉, 23쪽. 〈표 2〉 참조.

47) 梶村秀樹, 1883, 〈李朝末期 綿業의 流通 및 生産構造—상품생산의 자생적 전개와 그 변용〉 《韓國近代經濟史研究》, 사계절, 117~118쪽.

〈표 7-17〉 섬유제품 수입액 (단위: 엔)

연도	면제품	모제품	견제품	마제품	교직 및 잡섬유	기성복 및 잡완성복	섬유제품 합계(A)	총수입액(B)
1877	54,250	284	9,410	6	0	801	64,751	122,526
1878	167,894	396	5,629	9,649	221	597	184,386	222,516
1879	477,222	172	6,362	1,780	0	553	486,089	467,785
1880	768,467	7,345	18,000	480	1,258	2,062	797,612	662,162
1881	147,157	37,039	47,095	391	1,664	2,072	235,418	1,416,661
1882	178,640	18,014	15,984		6,742	884	220,264	1,087,484
1883	912,856	7,710	23,615		1,075	4,936	950,192	1,749,896
1884	497,593	1,072	40,681	652	5,902	4,312	550,212	1,513,717
1885	1,122,359	15,382	57,390	0	481	0	1,195,612	1,713,351
1886	1,305,731	12,307	25,318	8,039	634	12,536	1,364,565	2,536,007
1887	1,894,324	46,962	166,632	1,366	3,463	9,351	2,122,098	2,835,214
1888	1,961,932	22,645	216,873	18,946	2,517	14,058	2,236,971	3,076,849
1889	1,709,142	33,891	172,468	29,961	4,377	15,188	1,965,027	3,409,606
1890	2,674,807	54,857	306,956	81,370	5,229	25,479	3,148,698	4,753,665
1891	2,874,837	52,662	429,117	111,984	20,661	32,658	3,521,919	5,285,599
1892	2,185,073	31,713	378,522	113,179	11,326	21,486	2,741,299	4,622,788
1893	1,733,458	31,992	362,126	72,034	10,382	20,321	2,230,613	3,905,428
1894	2,494,544	44,420	370,905	102,669	7,021	144,596	3,164,155	5,923,996
1895	4,713,755	56,655	771,309	167,297	19,566	88,680	5,817,262	8,339,978
1896	3,478,924	36,742	375,921	267,769	7,456	97,107	4,263,919	6,669,612
1897	5,723,119	60,714	548,445	432,690	10,932	99,025	6,874,925	10,179,196
1898	5,185,406	57,748	768,742	484,075	8,304	90,171	6,594,446	11,817,562
1899	5,384,460	58,320	638,680	369,690	7,280	115,235	6,573,665	10,227,340
1900	5,764,990	53,800	655,400	332,370	9,020	0	6,815,580	10,940,460
1901	6,182,912	164,179	1,238,712	533,290	16,252	177,002	8,312,347	14,696,470
1902	5,561,400	77,515	854,031	92,246	16,805	216,541	6,818,538	13,541,409
1903	6,009,321	78,266	824,896	104,375	20,036	280,215	7,317,109	18,219,183
1904	8,456,940	120,916	1,027,941	417,087	36,218	669,352	10,728,484	26,805,380
1905	12,005,922	199,653	1,187,023	1,018,062	136,170	653,100	15,199,930	31,971,852
1906	8,208,706	177,230	705,037	776,951	133,730	1,059,635	11,061,289	30,291,445
1907	12,552,862	180,442	1,371,587	995,789	122,081	1,728,629	16,951,390	41,387,540
1908	11,340,330	219,960	1,472,545	1,649,905	188,935	1,406,023	16,277,698	41,025,523
1909	9,297,045	249,263	1,244,276	1,530,000	157,329	1,272,716	13,750,629	36,648,770

비율								
연도	면제품	모제품	견제품	마제품	교직 및 잡섬유	기성복 및 잡완성복	섬유제품 합계(A)	총수입액(B)
1877	44.28%	0.23%	7.68%	0.00%	0.00%	0.65%	52.85%	100.00%
1878	75.45%	0.18%	2.53%	4.34%	0.10%	0.27%	82.86%	100.00%
1879	102.02%	0.04%	1.36%	0.38%	0.00%	0.12%	103.91%	100.00%
1880	116.05%	1.11%	2.72%	0.07%	0.19%	0.31%	120.46%	100.00%
1881	10.39%	2.61%	3.32%	0.03%	0.12%	0.15%	16.62%	100.00%
1882	16.43%	1.66%	1.47%	0.00%	0.62%	0.08%	20.25%	100.00%
1883	52.17%	0.44%	1.35%	0.00%	0.06%	0.28%	54.30%	100.00%
1884	32.87%	0.07%	2.69%	0.04%	0.39%	0.28%	36.35%	100.00%
1885	65.51%	0.90%	3.35%	0.00%	0.03%	0.00%	69.78%	100.00%
1886	51.49%	0.49%	1.00%	0.32%	0.02%	0.49%	53.81%	100.00%
1887	66.81%	1.66%	5.88%	0.05%	0.12%	0.33%	74.85%	100.00%
1888	63.76%	0.74%	7.05%	0.62%	0.08%	0.46%	72.70%	100.00%
1889	50.13%	0.99%	5.06%	0.88%	0.13%	0.45%	57.63%	100.00%
1890	56.27%	1.15%	6.46%	1.71%	0.11%	0.54%	66.24%	100.00%
1891	54.39%	1.00%	8.12%	2.12%	0.39%	0.62%	66.63%	100.00%
1892	47.27%	0.69%	8.19%	2.45%	0.25%	0.46%	59.30%	100.00%
1893	44.39%	0.82%	9.28%	1.84%	0.27%	0.52%	57.12%	100.00%
1894	42.11%	0.75%	6.26%	1.73%	0.12%	2.44%	53.41%	100.00%
1895	56.52%	0.68%	9.25%	2.01%	0.23%	1.06%	69.75%	100.00%
1896	52.16%	0.55%	5.64%	4.01%	0.11%	1.46%	63.93%	100.00%
1897	56.22%	0.60%	5.39%	4.25%	0.11%	0.97%	67.54%	100.00%
1898	43.88%	0.49%	6.51%	4.10%	0.07%	0.76%	55.80%	100.00%
1899	52.65%	0.57%	6.24%	3.61%	0.07%	1.13%	64.28%	100.00%
1900	52.69%	0.49%	5.99%	3.04%	0.08%	0.00%	62.30%	100.00%
1901	42.07%	1.12%	8.43%	3.63%	0.11%	1.20%	56.56%	100.00%
1902	41.07%	0.57%	6.31%	0.68%	0.12%	1.60%	50.35%	100.00%
1903	32.98%	0.43%	4.53%	0.57%	0.11%	1.54%	40.16%	100.00%
1904	31.55%	0.45%	3.83%	1.56%	0.14%	2.50%	40.02%	100.00%
1905	37.55%	0.62%	3.71%	3.18%	0.43%	2.04%	47.54%	100.00%
1906	27.10%	0.59%	2.33%	2.56%	0.44%	3.50%	36.52%	100.00%
1907	30.33%	0.44%	3.31%	2.41%	0.29%	4.18%	40.96%	100.00%
1908	27.64%	0.54%	3.59%	4.02%	0.46%	3.43%	39.68%	100.00%
1909	25.37%	0.68%	3.40%	4.17%	0.43%	3.47%	37.52%	100.00%

출처: 최유길의 통계, 〈조선통감부통계연보〉, 梶村秀樹, 〈앞의 책〉, 108~109쪽.

* 비율은 필자가 재구성한 것임.

초기에 면제품의 가장 중요한 공급국은 영국이었다. 조선에는 수입 업무에 종사하는 영국상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의 면제품은 주로 중국상인들을 통해 조선에 수입되었다. 서양의 수입상품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은 섬유제품으로 그 가운데에서도 1894년 이전에는 생목 및 한랭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895년 이후 한랭사는 감소하고 백목면(일본제), 조포(粗布), 방적사 등의 품목이 급속하게 증대되었다.⁴⁸⁾

그리하여 1897년 무렵 영국은 이전까지 조선무역에서 차지했던 지위를 상당부분 상실하였다. 일본의 방적사는 영국과 이탈리아의 방적사를 조선시장에서 구축하고 있었다. 품질면에서 일본제품은 일반적으로 영국의 맨체스터 상품보다 질이 낮았지만 가격이 싸으며 천의 종류, 길이, 폭의 다양성 등의 이유로 품목이 단순하였던 맨체스터 상품보다 조선 소비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졌다.⁴⁹⁾

일본제품의 비용이 저렴하였던 이유는 일본의 노동력이 저렴한데다가 조선에 근접하였기 때문에 수송비용이 적게 들었기 때문이다. 일본 제품들은 15% 내지 30%의 이익을 취하면서도 영국제품보다 싸게 팔 수 있었다.

48) 梶村秀樹, 〈앞의 글〉, 117쪽. 한랭사는 봄부터 여름에 걸쳐 대량으로 팔리고 생목은 가을부터 겨울에 잘 팔렸다. 한랭사는 여름옷을, 생목으로 겨울옷을 만드는 측에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데 하층직접생산자의 습관이나 상층의 건포 등을 상용하는 고급 양반관료의 습관과도 달랐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 수입품들은 하급관료층, 도시중인층, 상인층, 지방관청의 서리층, 나아가 농촌의 신흥상인층이나 지주 부농층들이 사용하였다고 추정된다. 梶村秀樹, 〈앞의 글〉, 128쪽.

49) ANNUAL REGISTER 1897((LONGMANS, GREEN, AND CO, 1910), 362~363쪽. 수입품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1886년부터 1898년까지에 있어서도 면제품이 수입액의 반수나 되었다. 초기에는 면제품의 대부분은 영국제품이었지만 1890년 이후 일본상품이 영국제품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일본의 면제품은 질에 있어서는 영국의 면제품에 뒤떨어졌으나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일본은 임금이 싼데다가 은화의 가격하락으로 금본위제가 실시되기 이전까지 금화를 사용하였던 영국보다 유리하였다. 또한 일본은 조선에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물품을 수송하고 포장하는 일반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다.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45쪽.

〈표 7-18〉 1894년 현재 영국제품과 일본제품의 가격비교

항목	산지별	1필의 무게(파운드)	1필의 가격(달러)
옥양목	영국제	9.5~11	3.2~5.1
	일본제	8~12	3~4
회색數布	영국제	12~12.5	4.5~4.6
	일본제	14~16	4.3~4.5
홍색數布	영국제	2.5~15	1.9~3.3
	일본제	4~4.5	2.6~3.4
회색粗布	영국제	14~15	4.7~4.9
	일본제	15~16	4.2~4.3
면포	영국제	7~7.5	2.6~2.7
	일본제	6.5~7	2.4~2.5

출전: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46쪽.

그런데 영국제품이 지닌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무게에 있었다. 일본제 면제품이 포장이 가벼워 일본에서부터 공급해온 그대로 조선말에 싣고 국내로 운송할 수 있었던 반면 영국제 면제품은 포장이 무거워 조선의 도로사정과 수송수단으로 운송하기가 극히 불편하였다. 또 일본인들은 조선인의 수요와 구미에 맞도록 상품의 내용과 형태를 변용시킨 반면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양식을 고수하였다. 한편으로 조선 시장에서 활동하였던 일본상인들의 존재를 지적할 수 있다. 일본상인들은 대부분의 개항장에서 거의 완전하게 면직물의 수입과 일본과 조선간의 기선교통을 자기들의 수중에 독점적으로 장악하였다. 반면 영국제품은 겨우 제물포와 진남포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중국인들에 의해 장악되었을 뿐이다.⁵⁰⁾

그렇지만 1898년까지도 면제품의 수입량과 수입가액 면에서 여전히 영국제품이 압도하였다. 이는 면제품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던 옥양목의 국별 수입액을 나타낸 〈표 7-19〉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

50)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46~247쪽.

〈표 7-19〉 옥양목의 국별 수입액 (단위: 달러)

연도	영국	일본	미국	인도	합계
1897	2,215,000	48,400		460	2,263,860
1898	1,666,000	7,970	1,050		1,675,020
총합계	3,881,000	56,370	1,050	460	3,938,880
비율					
1897	97.84%	2.14%	0.00%	0.02%	100.00%
1898	99.46%	0.48%	0.06%	0.00%	100.00%
총합계	98.53%	1.43%	0.03%	0.01%	100.00%

출전: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48쪽.

난다. 1899에도 옥양목은 영국제품이 99.46%를 차지함으로써 조선에 수입된 옥양목이 거의 다 영국제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90년대 후반기에 이르면 방적면사에서는 일본제품이 영국 제품을 압도하였다. 원래 방적면사가 조선으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것이 신속하고도 누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들 방적면사의 대부분은 해마다 조선의 농민들이 한 해의 농사일을 끝내고 겨울철의 긴 여가를 이용하여 방적면사로 옷감을 짜게 되는 연말에 조선으로 공급되었다. 이러한 수입 방적사를 원료로 조선인들이 만든 토포는 외국제 면제품보다 2배나 저렴하였다. 또 다른 이점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옷감이 조선식 세탁에 아주 적합하였다. 사정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외국제 방적사로 짜낸 조선인들의 토포생산이 더욱 증대하게 외국제 방적사 수입이 계속 증가하였다.⁵¹⁾

1890년까지만 해도 방적면사의 대부분은 봄베이로부터 공급되었으며 방적면사수입의 4분의 3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영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 그런데 저렴한 중국제 면으로 만든 일본제 방적면사가 조선시장에 나타나면서 이 분야의 수입무역에 일대 변혁을 일으켰

51)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51쪽.

다. 봄베이제 방적면사는 일본제보다 질이 약간 우세하였는데도 값은 현저하게 비싸 조선시장으로부터 구축되었다.⁵²⁾

한편 영국제 방적면사는 주로 품질이 우수하고 실을 보다 가늘게 뽑는 기술에 있어서 일본제 방적면사가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수입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1890년대 후반에 이르면 영국제 방적면사는 일본의 공업제품과 경쟁에서 심한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일본제 방적면사가 영국제를 압도적으로 앞지르게 된 까닭은 역시 가격이 저렴하였고 포장단위의 무게가 가벼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의 방적면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겨져 있어 조선의 방추 방향과 합치된 것에 반해 영국의 방적면사는 반대 방향으로 감겨져 있었던 점도 원인이 되었다.⁵³⁾

이런 자본제상품은 사치품적인 성격이 많았다. 자본제상품이 유입되기 이전에 사치품생산으로 고급 면포(이른바 세포)생산이 농업이나 일반 면포생산에서 분화되고 있었다. 세포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수공업자는 자신의 생산물과 품질이 유사하면서도 보다 값이 싼 자본제상품의 유입에 의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전업 또는 폐업할 수밖에 없었

〈표 7-20〉 방적면사의 국별 수입액 (단위: 달러)

연도	영국	일본	인도	중국	합계
1897	75,000	692,600	280	430	768,310
1898	88,860	987,200	3,300	1,940	1,081,300
총합계	163,860	1,679,800	3,580	2,370	1,849,610
비율					
1897	9.76%	90.15%	0.04%	0.06%	100.00%
1898	8.22%	91.30%	0.31%	0.18%	100.00%
총합계	8.86%	90.82%	0.19%	0.13%	100.00%

출전: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52쪽.

52)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51쪽.

53)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52쪽.

을 것이다.⁵⁴⁾

자본제상품의 조선 유입에도 불구하고 토포는 자본제상품과 달리 주로 직접 근육노동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작업복·평복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 생활필수품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해 갔다. 그러면 왜 빈곤한 직접생산자층이 저렴한 옥양목을 구입하지 않고 비싼 토포를 구입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유는 직접생산자층의 복장에 관한 습관과 옷감의 내구력때문이었다. 소모가 심한 작업복에 사용하는 경우 옷감이 견디어내는 연한은 토포가 옥양목을 훨씬 능가하였다. 특히 당시의 직접 생산자층 간에는 한 벌의 의복을 계속 세탁·수선하여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옥양목은 세탁에 견디지 못하고 곧 닳아서 떨어져버렸다고 한다. 토포는 옥양목보다 뛰어난 내구력으로 옥양목에 대한 수요를 막고 있었던 것이다.⁵⁵⁾

이렇게 되자 1895년 이후 일본방적자본은 조선의 소상품생산자와 상권쟁탈전을 벌였다. 명치유신 이래 20여 년간에 걸친 강력한 국가의 육성조치에 의해 일본 방적자본은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 방적자본은 조선의 소상품생산자의 생산품과 같은 제품을 상당히 싼 가격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895년 이후 방적사의 수입량이 증가하기도 하였지만 1900년을 경계로 일본제 조포(粗布)의 수입량이 격증하여 방적사를 압도하고 방적사의 수입량은 감소하게 되었다. 결국 1905년경에는 일본자본이 조선의 소상품생산자를 압도하여 조선의 토포생산자는 확대재생산은 고사하고 단순재생산을 유지하는 것도 곤란해졌다.⁵⁶⁾

54) 梶村秀樹, 〈앞의 글〉, 130쪽.

55) 梶村秀樹, 〈앞의 글〉, 135~136쪽.

56) 梶村秀樹, 〈앞의 글〉, 199~201쪽.

1904년 러일전쟁 발발한 이후 조선의 소농민을 희생시키면서 일본 방적자본에 확실하고 저렴한 원면공급을 목적으로 한 ‘육지면재배사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통감부와 조선정부의 권력을 배경으로 ‘면화재배협회’에 의해 추진된 육지면 재배사업은 1910년 조선강점 이후 조선총독부의 사업으로 인계되었다. 육지면재배사업의 급격한 진전은 미국 신품종 면의 재배를 권력으로 강제시키는 형태로 실현되었다. 이렇게 강제 재배된 육지면을 농민이 자유로이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었고 일본방적자본과 직결된 지정된 옷감공장에서 원하는 가격으로 인도할 것이 강제되었다. 결국 일본자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식민지권력이 행한 것은 원료공급지로서의 편성과 동시에 완제품시장의 확보 및 확대였다.⁵⁷⁾

(2) 기타 중요 상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항기의 대부분의 면제품을 중심으로 한 섬유제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조선사회가 개항 이후 변화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는 기타 상품의 수입으로 연결되었다. 〈표 7-21〉는 섬유제품을 제외하고 1907~1909년까지의 기타 중요 상품을 표기한 것이다.

조선사회에 큰 영향을 준 것 중의 하나는 석유의 수입이었다. 조선은 종래 토착 동식물유를 사용하였는데 석유는 이것을 구축하면서 조선에 더욱 더 널리 보급되었다. 1900년 당시 조선인은 석유사용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싸구려 일본제 램프를 많이 사용하였다. 1898년 조

57) 梶村秀樹, 〈앞의 글〉, 204쪽.

〈표 7-21〉 기타 중요 상품의 수입액 (단위: 엔)

상품	1907		1908		1909	
	가액	비율	가액	비율	가액	비율
밀가루	321,402	0.78%	384,821	0.94%	322,506	0.88%
소금	363,139	0.88%	417,130	1.02%	303,612	0.83%
鹹魚	50,025	0.12%	174,061	0.42%	294,936	0.80%
精糖	801,697	1.94%	706,546	1.72%	751,256	2.05%
청주	726,836	1.76%	700,470	1.71%	759,207	2.07%
맥주	312,968	0.76%	373,439	0.91%	312,617	0.85%
석유	1,068,176	2.58%	1,441,526	3.51%	934,303	2.55%
철전광관	256,500	0.62%	242,339	0.59%	244,939	0.67%
케조	939,545	2.27%	883,678	2.15%	38,959	0.11%
철도기관차	1,370,780	3.31%	410,487	1.00%	97,503	0.27%
철동관	150,476	0.36%	590,079	1.44%	523,603	1.43%
담배	1,056,907	2.55%	1,053,050	2.57%	1,011,403	2.76%
도자기	294,436	0.71%	275,321	0.67%	253,862	0.69%
석탄	803,587	1.94%	1,370,580	3.34%	882,641	2.41%
목재판	1,828,352	4.42%	1,671,388	4.07%	981,753	2.68%
가마니새끼	472,790	1.14%	543,459	1.32%	577,805	1.58%
시멘트	698,383	1.69%	234,036	0.57%	323,851	0.88%
성냥	349,347	0.84%	391,724	0.95%	339,474	0.93%

출전: 《조선통감부통계연보》 각년판.

선에서는 석유 사용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거리를 석유램프로 밝히도록 한 것이었으며 집주인들은 집 앞에 석유램프를 임의적으로 비치해야만 되었다.⁵⁸⁾

조선에 수입된 광물성 석유에 관한 통계자료는 석유가 널리 보급되었다는 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1886년 조선으로 불과 101,207갤런이 수입되었던 석유는 1897년에 이르러 무려 200만 갤런을 크게 초과하여 수입되었다.⁵⁹⁾ 〈표 7-21〉에 의하면 1907년~1909년 석유수입은 전체 수입에서 2.5~3.5%의 비율로 기타 상품 가운데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58)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56쪽.

59)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56쪽.

러시아산 석유보다 미국산 석유의 품질이 우수하여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는데 미국의 스탠더드 회사와 특약을 맺고 있었던 타운센드 상사가 수입하여 조선시장에 공급하였다.⁶⁰⁾ 석유는 계절적으로 겨울 수요가 가장 큰 수입품이었고, 등불용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이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수요가 줄지 않았다. 겨울철에는 단일 품목으로 수입량이 1위였을 정도였다. 1900년부터는 타운센드상사의 한국 총지배인이었던 일본 상인이 인천에 석유상조합(石油商組合)을 조직하여 타운센드상사로부터 석유공급 독점권을 획득하였다.⁶¹⁾

성냥은 문호개방초기에는 오스트리아와 스칸디나비아 등 서양제품이 수입되었으나 저렴한 일본제 성냥이 조선시장을 석권하면서 서양 제품이 구축되었다. 다만 영국의 브라이언트 앤드 메이(Bryant and May) 회사의 제품만이 외국인들을 위해 수입되었을 뿐이다.⁶²⁾

술의 수입 비율도 다른 상품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영국, 독일 및 미국으로부터 맥주가 수입되었고 일본으로부터는 청주가 주로 수입되었다.⁶³⁾

옷감을 염색하는 염료도 주요한 수입품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아닐린 염료의 수입은 급증하였다. 염료는 초기에는 주로 독일에서 수입되었으나 1890년 후반에 와서 일본이 독일의 유력한 경쟁자가 되었다. 염료는 조사시점까지 12년간 대부분 60,000달러에서 89,000달러를 오르내렸는데 1895년에만 이례적으로 143,486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조선정부에서 법률을 제정·반포하여 의무적으로 검은 색 옷을 입도

60) 김경태편, 1987, 〈本年7月仁川港商況〉《通商彙纂》, 여강출판사, 518쪽.

61) 김경태편, 1987, 〈京城明治33年第4季貿易〉《通商彙纂》, 여강출판사, 1987, 662쪽.; 田中孝之介, 1905, 《在韓人士名鑑》, 木浦新報社, 102~103쪽.

62)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60쪽.

63)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61쪽.

록 명령하였기 때문이다.⁶⁴⁾

담배의 경우 초기에는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되었으나 1890년 후반부터 일본상품이 압도해갔다. 이는 가격에서 훨씬 저렴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켈련의 수입증대는 한국정부가 1894년 장죽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장되었다. 1897년에는 수입액이 89,209달러에 이르렀다.⁶⁵⁾

담배는 엽켈련의 경우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였고, 지켈련의 경우는 주로 일본에서 수입하였다. 엽켈련에 비해 지켈련은 상류층의 소비품으로서 계속 증가되는 양상이었지만, 인천항에 희랍인 필립 반데라스가 희랍인 1명, 영국인 2명을 데리고 동양연초회사를 설립하여 홍콩에 제조소를 갖고, 미국산 원료로 지켈련초를 제조하여 일본산 담배와 판매경쟁을 하였다.⁶⁶⁾

외국인들을 위한 설비물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고 정부건물의 건축에도 상용한 목재의 대부분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었으나 서울·제물포간의 철도건설에 필요한 건설용 목재가 미국으로부터 공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1897년 84,891달러의 건설용 목재가 조선으로 수입되었다.⁶⁷⁾

생활필수품인 곡물은 매년 조선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공급되었다. 이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산 밀가루였다. 미국과 일반적인 곡물의 수입은 조선의 농사 작황에 의해 직접 좌우되었다.⁶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항기 조선의 무역액은 급격하게 증가하

였다. 불평등조약체제를 바탕으로 한 무역구조는 농산물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후진국형이었지만 양적성장을 통해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등 식민지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개항기 후기에 이르면 시장이 다변화되는 등 여러 가지 발전의 가능성이 있었음을 주목할 수 있다.

64)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62쪽. 이후 이 법률은 한국인들로부터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켜 곧바로 폐기되었다.

65)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63쪽.

66) 김경태편, 1987, 〈仁川紙卷煙草會社の設立〉(《通商彙纂9》), 여강출판사, 98~99쪽.

67)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65쪽.

68) 러시아대장성, 〈앞의 책〉, 260쪽.

7장 일제하의 무역

송규진(고려대학교)

1. 식민지 무역정책의 변화

1) ‘특별관세정책’의 실시

일제하의 조선무역에 대한 연구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무제한적인 수탈이 자행되었다는 단순히 감정적인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영향으로 조선의 무역추세가 시종 일관 일제에 포섭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나 일본제품의 유입이 조선공업을 전체적으로 위축시킨 것이 아니며 그 성장에 기여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¹⁾

그러나 일제하의 무역은 철저하게 일제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조선인들의 삶은 보다 더 어려워졌음을 기억해야 한다.²⁾

1)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송규진, 〈앞의 책〉 참조. 이 글도 기본적으로 ‘식민지근대화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다.

2)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에의 수출은 이출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이입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하 이 글에서는 당시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출은 일본에의 수출, 이입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1910년 8월 조선총독부는 ‘한국병합’과 동시에 종래 대한제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최혜국대우를 받고 있던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벨기에, 중국, 덴마크,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및 러시아 각국에 이 사실을 통고하여 이들이 대한제국과 맺은 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조선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영사재판권을 폐지하고 모든 재판권을 일본법권하에 두었다.³⁾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일본측의 입장으로는 대한제국의 관세권도 완전히 말살하여 일본의 관세영역으로 편입해야 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10년 8월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⁴⁾에서 종래 조선과 통상조약을 맺을 당시 저율관세를 강요하였던 각국에 대하여 ‘한국병합’ 이후에도 10년간 대한제국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과 일본의 무역에서도 종전의 대한제국 관세를 10년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제령 제4호 〈조선에 있어서의 관세 및 이출입세에 관한 건〉⁵⁾을 공포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칙령 제331호 〈조선으로부터 이입하는 화물의 이입세 등에 관한 건〉⁶⁾을 공포하여 조선으로부터 일본, 대만 및 사할린에 화물을 이입할 경우에도 종래의 수입세와 동일한 세율의 이입세 및 톤세⁷⁾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칙령에 근거하여 일본측의 대

조선 이입무역에 대해서도 종래의 대한제국 관세제도를 그대로 유지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이 있었다. 특히 일본자본가들은 대한제국의 관세가 유지되는 것에 상당히 반발하였으며 이에 뜻을 같이하는 일본내부의 세력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일제는 일본 내부의 반박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제정치적인 이유와 일본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통치차원에서 이 시기 조선에서 ‘특별관세정책’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조선에서의 ‘특별관세정책’은 다른 식민지지역의 그것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다. 다른 제국주의 국가의 경우 ‘특별관세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식민지와 식민모국간에는 외국과는 다른 특혜관세를 인정하였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일본은 조선에서 외국에 적용하는 관세를 자기나라에도 똑같이 적용하였다.⁸⁾

사실상 관세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 시기 ‘특별관세정책’을 비판하였던 논자들의 주장처럼 일제는 ‘한국병합’을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이처럼 ‘한국병합’ 초기에는 조선과 일본의 완전한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서서히 조선경제가 일본경제에 편입되어 갔는데 이와 같은 특징이 무역정책에서도 반영되었다.

‘한국병합’ 이후 10년간은 대한제국 관세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조선의 관세제도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조선총독

3) 일본은 당시 외국인 거주 조계에 대해서는 경찰권만 인수한 채 남겨두었다. 그러나 조계도 1912년 3월부터 실무적 해결을 위해 비공식적인 모임을 시작하여 열강들의 기존 이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토지 영구 임대 소유자는 일본 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케 하는 방식으로 1914년 4월부터 외국인 조계를 흡수하였다. 구대열, 1995, 《한국국제관계사 연구 1—일제시기 한반도의 국제관계》, 역사비평사, 139쪽.

4)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이하 《朝鮮總督府官報》로 표기) 1910년 8월 29일자, 호외.

5) 《朝鮮總督府官報》1910년 8월 29일자.

6) 《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8월 29일자.

7) 외국으로부터 入港하는 선박에 대해 국가가 그 登簿 톤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물에 부과하는 관세와 같다. 해외무역품을 적재하는 외항선은 무역항의 시설을 사용하고 기타 여러 가지 편의를 얻으므로 그에 대한 수수료로 톤세를 내게 된다. 고려대 무역연구소, 1973, 《世界貿易經營大典》, 고려대 무역연구소, 참조.

8) 이에 대해서는 車耕權, 1971, 〈日帝下에 있어서 韓國의 貿易政策—關稅政策을 중심으로—〉《日帝의 經濟侵奪史》, 玄音社: 송규진, 2003, 〈식민지조선 관세정책의 비교사적 분석〉《아세아연구》 113, 참조.

부는 ‘조선의 관세제도는 원래 한국정부가 각국의 조약에 기초하여 취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례에 따르고 문서화되지 않은 것이 많아 그 운용상 불편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번잡하고 부과의 공평을 기하기 어려우며 산업 발달을 저해하는 일이 적지 않다’⁹⁾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행정의 기초가 되는 여러 법규를 제정하였다.

1912년 3월 조선총독부는 제령 제17호 〈조선관세령〉, 제령 제18호 〈조선통세령〉, 제령 제19호 〈조선보세창고령〉, 제령 제20호 〈조선관세정률령〉 등을 공포함과 동시에 부령 제48호 〈조선관세령시행규칙〉 부령 제49호 〈조선통세령시행규칙〉, 부령 제50호 〈조선보세창고령시행규칙〉 등을 공포하고 이를 동년 4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¹⁰⁾ 그리고 1913년 3월 제령 2호 〈조선육점국경관세령〉¹¹⁾을 공포하고 이를 동년 4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새로운 법규는 조선과 일본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본의 관세제도에 준거하여 틀을 짜고 조선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이는 일본이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에서 대한제국 관세제도를 유지하겠다고 선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또 점진적으로 조선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관세제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새로운 제령과 규칙을 공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만 및 사할린으로부터 화물을 조선에 이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에 관한 규정, 조선으로부터 화물을 일본, 대만 및 사할린에 이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조선과 일본의 무역에서도 다른 외국과의 동일한 세율을 적용키로 한 제령 제4호 〈조선에 있어서의 관세 및 이출입세에 관한 건〉은 계속 작동되고 있었다.

〈조선관세정률령〉은 종래 적용되어온 대한제국 관세율을 기초로 동령 부칙 별표에 관세정률표¹²⁾를 작성하였는데, 이것도 당시 일본관세정률표에 준하여 품목을 재분류하고 정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입세 품목은 16류 218개로 재정리하고 수출세 품목은 밀, 콩, 팥, 들깨, 소, 쇠가죽, 석탄, 철광 등 8개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였다.¹³⁾ 조선관세정률령은 그 후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에서의 요구를 일정부분 받아들이기 위하여 점차 조선에서 수입세 면제범위를 확대하였다. 1913년 10월 조선총독부는 부령 제95호 〈관세정률령 제4조의 2에 의해 가공 또는 제조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관한 건〉을 실시하였는데,¹⁴⁾ 이는 수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상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세를 면제한 것으로 수출장려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 후에도 수입세 면제 대상품목은 계속 확대되었다.

1919년 1월 조선총독부는 제령 제1호와 제2호 〈조선관세정률령 중(中) 개정〉¹⁵⁾을 제정하였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1912년 3월 〈조

12) 朝鮮總督府, 1921, 《朝鮮關稅定率令並輸出稅表類別》, 1917.

13) 수출세는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폐지되는 것이 일반적 추세였다. 그러나 수출상품에 대한 과세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재정수입을 확보할 목적과 국내 가용자원의 국외유출을 억제할 목적을 위해 실시되기도 하였다. 당시 조선의 조세수입에서 차지하였던 관세수입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그렇지만 제국주의 자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이루기 위해 조선을 재편하고 있었던 일제는 전근대적 조세체계를 자본제적 조세제도로 바꾸었으며, 이에 따라 전근대적 속성을 지니는 수출세도 점차적으로 폐지하려 하였던 것이다.

14) 《朝鮮總督府官報》1913년 10월 7일자.

15) 《朝鮮總督府官報》1919년 1월 16일자.

9) 朝鮮貿易協會編, 〈앞의 글〉, 154쪽.

10) 《朝鮮總督府官報》1912년 3월 28일자.

11) 《朝鮮總督府官報》1913년 3월 10일자.

선관세정률령)을 제정할 당시 부과하였던 밀, 콩, 팥, 들깨, 소, 쇠가죽, 석탄 및 철광과 같은 8개 품목에 대한 수출세를 전폐하였다는 것이다. 관세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산업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들 수출세를 전폐한 것이다. 수출세는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폐지되는 것이 일반적 추세였지만 특히 식료품과 원료품에 부과하였던 수출세를 폐지한 목적은 실제적으로 일본으로 이출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쨌든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선에서는 일본의 관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독자적인 관세제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다른 외국상품의 경우 당시까지는 조선에서 일본상품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조선을 완전히 독점하고자 하였던 일본자본가들에게 일정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관세동화정책'의 실시

대한제국 관세제도의 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조선의 관세제도를 어떤 형태로 설정하느냐의 문제는 일제가 조선에서 어떠한 식민지 경제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였다. 결국 조선을 일본의 식료품과 원료품의 공급지로서, 그리고 일본의 완제품 판매지로서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일제는 대한제국 관세제도를 철폐하고 '관세동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0~1919년의 시기에 조선의 관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행정상 법규를 정비하고 관세행정기구의 확충을 비롯하여 조선무역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시설을 정비하긴 하였다. 하지만

대한제국 관세를 유지한다는 선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많았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는 '근본적으로 관세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¹⁶⁾

정치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일본상품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조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일본인들로서는 '관세동화정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회에서 조선과 일본 간의 관세를 철폐하는 '관세동화정책'의 실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때 조선인들은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당시 조선언론은 조선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고 또 조선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조선을 위하여 정성을 다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선과 일본 간의 관세철폐를 강력히 반대하였다.¹⁷⁾

하지만 조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1920년 8월 칙령 제306호로 <관세법 등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¹⁸⁾을 공포하고 조선과 일본을 동일한 관세영역하에 두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일본자본은 보다 더 쉽게 조선에 진출할 수 있었다. 결국 '관세동화정책'이 실시됨으로써 일본은 조선 경제를 더욱 손쉽게 장악하게 되었다.¹⁹⁾

16) 朝鮮總督府關稅調查會, 1921, 《關稅調查事業の經過》, 朝鮮總督府, 1쪽.

17) <關稅撤廢와 朝鮮産業>《東亞日報》1920년 7월 10일, 11일, 12일자 사설: 金達浩, 1992 <朝鮮關稅制度를 논함>《雜誌拔萃 日帝下 殖民地時代資料叢書》經濟 I (黃敏湖 編.), 啓明文化社, 참조.

18) 《朝鮮總督府官報》1920년 8월 28일자.

19) 이보다 앞서 1920년 4월 조선경제를 통제한 중요한 법령인 동시에 관세와 더불어 1910년대 조선과 일본간에 장벽의 역할을 하였던 회사령이 철폐되었다. '관세동화정책'의 실시가 예정되었던 시점에서 회사령이 철폐된 이유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일본국내에서 그 동안 축적된 경제적 여력을 바탕으로 조선을 안정된 일본상품시장으로 만들려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이었다. 朝鮮總督府殖産局, 1921, 《朝鮮の商工業》, 23~24쪽 참조.

조선과 일본과의 관세가 통일되어 식민모국과 식민지간 자원이전의 장애가 제거될 경우 자본은 투자의 효율성이 높은 식민지로 이전되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조선과 일본경제의 성격은 전형적인 식민지와 제국주의 경제관계로 자리잡았고 조선경제는 단순히 일본의 종속시장으로서의 기능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그리하여 조선경제는 식료품과 원료품의 공급지로서의 역할과 일본 완제품 판매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는 전형적인 식민지경제로 고착되어 단순히 일본에만 종속되는 경제관계를 이루게 되었다.²⁰⁾

조선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1920년 8월 29일을 기하여 일단 조선과 일본은 같은 관세법 체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조선의 관세제도를 완전히 일본과 동일하게 할 경우, 조선인들이 반대하는 논거로 내세웠던 문제들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1917년 3월 훈령 제 8호 <관세조사회규정>²¹⁾을 제정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관세조사회를 설치하여 정무총감을 회장으로 하고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중 관계부국의 직원 58명을 직원 또는 촉탁으로 임명하여 총경비 약 3만 5천 엔을 들여 ‘관세동화정책’ 실시 이후 조선의 관세제도 및 그 정책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관세조사회는 조선에서 ‘관세특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관세특례’의 실시는 일본과 조선의 완전한 관세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관세자주권이 존재하였던 지역을 경제적

으로 통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일제는 1920년 8월 법률 제53호 <관세법, 관세정률법, 보세창고법 및 가치장법 등의 조선에 있어서의 특례에 관한 건>(이하 ‘특례법’이라 약칭)²²⁾을 공포하고 이를 8월 29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외국에 대한 ‘관세특례’ 규정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일본에 대한 ‘관세특례’도 실시하였다. 1920년 8월 조선총독부는 제령 제19호 <조선에 이입하는 물품의 이입세 등에 관한 건>(이하 ‘이입세 등에 관한 건’),²³⁾ 제령 제20호 <조선관세령 등의 폐지에 관한 건>, 부령 제120호 <1920년 제령 제19호 시행에 관한 건>²⁴⁾ 등을 공포하여 이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조선상품에 대한 이입세는 전폐하였으나 조선에서의 일본상품에 대한 이입세는 ‘관세특례’의 하나로 그대로 유지시켰다.

조선총독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이입세를 철폐하려 하였고 그때마다 조선인들은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²⁵⁾ ‘관세동화정책’의 실시는 모든 토착자본이 완전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 의식을 크게 증폭시켜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물산장려운동은 민족해방운동 차원에서 전개된 것이 아니고 관세문제에서 촉발되어 일어난 것이며 일본상품 배척 운동으로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고 본 연구도 있다.²⁶⁾

22) 《朝鮮總督府官報》1920년 8월 11일자.

23)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8월 29일자.

24) 《朝鮮總督府官報》1920년 8월 29일자.

25) 金達浩, 1922, 《關稅改正이 朝鮮人產業界에 及하는 影響》《開闢》28호, 11쪽 참조.

26) 강영심, 1993, 〈1920년대 조선물산장려운동의 전개와 성격〉《國史館論叢》47, 국사편찬위원회, 참조.

20) 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 朝鮮支部 編, 1939, 《朝鮮經濟年報》, 改造社, 62-63쪽에도 이 시기의 성격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1) 《朝鮮總督府官報》1917년 3월 8일자.

어찌되었건 물산장려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일본과 조선 간의 관세철폐 때문이었다. 이것이 이입세의 완전 철폐를 유보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입세 철폐문제가 조선인들이 물산장려운동의 한 요인이 되었고 3·1운동 이후 ‘문화정치’를 실시하였던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받아들여 이입세의 완전철폐를 유보시켰다.

이입세를 계속 존속시켰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총독부에서 조선인 자본가를 포섭하려는 이 시기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당시 물산장려운동을 통해 가장 호황을 누린 부분은 무명, 두루마기 등의 직물업 부분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총독부가 이입세 철폐를 일부 유보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 직물세가 완전 철폐될 것이라는 소문이 일자 경성직물동업조합(京城織物同業組合)에서는 박윤근(朴潤根), 이정규(李正圭) 등을 대표로 선출하여 조선총독부를 2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직물세의 완전 철폐를 철회할 것을 진정하였다.²⁷⁾

이와 같이 일제는 조선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관세특례’를 실시하긴 하였지만 원활한 식민통치를 위해 조선인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일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관세특례’를 축소함으로써 일본과 조선과의 관세를 통일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비록 ‘관세특례’를 인정하긴 하였지만 ‘관세동화정책’의 실시로 인해 기본적으로 일본과 조선의 관세제도가 철폐되자 일본의 조선에 대한 경제적 장악도는 한층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역 부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수출입보다는 이출입의 비율이 훨씬 증가하게 되었다.

27) 〈反對運動 織物稅撤廢〉《東亞日報》1923년 3월 11일자.

3) ‘무역진흥정책’의 실시

만주국의 출현으로 조선의 대외무역 대부분을 만주국이 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자 무역면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필요로 하였다.

그런데 ‘관세동화정책’을 정착시키면서 식민지무역구조를 확립시키려한 일제의 정책에 대해 조선인들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조선인들은 ‘주정(酒精), 주류(酒類), 면직물 등에 약간의 이입세가 부과될 뿐 그밖에 모든 이입세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유치한 공업이 일본의 발달된 공업에 억눌려 조선공업진흥에 중대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입세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²⁸⁾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조선의 역할을 식료품과 원료품 공급지와 안정된 완제품 판매지로 한정시키려했던 일제의 정책과 모순되었던 까닭에 조선인들의 주장이 아무리 강경하다 해도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다. 결국 이 시기 일본과의 관세부분은 특별히 변화된 것이 없이 이전 시기와 맥을 같이하고 있고 약간의 개정이 있었을 뿐이다.²⁹⁾

만주사변 이후 단기간 내에 만주를 점령한 관동군은 종래의 총독부 설치구상을 방기하고 1932년 3월 만주국을 설립한 뒤 〈만주국경제건설요강〉을 제정하여 통제경제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일만(日滿)경제블록’의 구호하에 〈제1기 만주경제건설〉을 입안하여 실시하였다. 조선에서도 이 시기에 만주국과 접경지대인 조선북부 홍남을 중심으로 조선총독 우가케(宇垣一成)와 신흥재벌인 노구치(野口逵)가 손잡고 ‘전원개발’과 ‘송전망정비계획’을 축으로 ‘조선북부중공업지대건설’

28) 李如星·金世鎔, 1935, 《數字朝鮮研究》5, 世光社, 69쪽.

29) 송규진, 〈앞의 책〉, 129쪽 참조.

을 추진하였다.³⁰⁾

만주국과 조선의 '경제건설'의 추진주체는 서로 달랐다. 하지만 양 지역의 정책 사이에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일본~조선~만주를 잇는 이른바 엔블록의 확대재편이라는 공동의 목표였다. 그리하여 조선과 만주 지역과의 관계가 보다 밀접해지게 되자 공동통관제도를 완비하게 위해 노력하였다.³¹⁾

이후 제기되는 '선만일여(鮮滿一如)' 정책은 단순히 조선과 만주국 사이 뿐만 아니라 일본과 만주국사이의 블록 완성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른바 '제국경제권확립방침'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³²⁾

1930년대 초 세계공황 이후 세계 각국이 공황타개책으로 관세장벽을 더욱 높이고 해외무역의 관리 또는 특정상품의 수입금지를 단행하여 자국 생산품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자 일본도 관세문제에 대한 많은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³³⁾ 그 결과 일본은 1932년에 관세개정을 통해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일본은 자국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영국의 오타와 협정에 대한 불가피한 방어적 수단으로 인식하였고 영국의 블록경제는 영국이 식민지에 착취주의를 견지한 결과 식민지가 반발하여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³⁴⁾

1932년 만주국이 설립되자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이 만주국과 수요

공급상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무역이 부진하였다고 평가하며 조선과 만주국의 무역을 강화하기 위해 만주국과의 무역을 전담할 기구를 조직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2년 경성에서 각도 산업과장 및 관계자에 의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조선무역협회를 설립할 것을 결의하였고 1933년 2월에는 소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1933년 4월부터 본부를 경성에 두고 지부를 봉천에 두어 집무를 개시하였다. 그 해 7월 1일 조선무역협회는 사단법인으로 발전하였는데 다음의 설립 취지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로 대만주무역의 촉진을 위해 주력할 것을 결의하였다.³⁵⁾

이후 조선무역협회는 조선총독부의 원조하에 조선의 주요 도시 및 만주국, 관동주,³⁶⁾ 중국의 각 주요도시에서 지부를 설치하면서 조선물산의 소개·선전·거래중개알선 및 만주국과의 무역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각 지역의 경제사정을 통보하여 무역 진흥에 전력하였다.³⁷⁾ 그런데 조선무역협회에는 임원은 물론 일반회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일본인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만주국과의 무역의 주도권도 일본인이 장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33년 10월 경성상공회의소는 조선무역촉진전람회를 개최하

35) "전조선의 업자와 조선무역협회를 설립하고 조선산물의 소개, 선전 또는 건본시의 개최 등 출하장려상의 각종 시설을 도모함은 물론 거래의 중개 및 알선을 행하고 기타 만주국과의 무역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만주국과의 무역진흥을 도모하는 것과 함께 당업자간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朝鮮貿易協會, 1936, 〈社團法人朝鮮貿易協會設立趣意書〉《朝鮮貿易協會通報》創刊號.

36) 중국 遼寧省의 遼東半島에 있었던 일본의 조차지로 그 명칭은 1905년 關東州民政署官制로부터 생겼다. 러일전쟁 중 일본은 점령지 행정기구로 1904년 金州, 大連, 旅順에 차례로 軍政署를 두었는데 전쟁이 끝나자 이를 民政署로 바꾸었다. 1906년 旅順에 설치된 關東都督府가 民政署를 통괄하였는데 1919년 關東廳, 1934년 關東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朝鮮貿易年表에서는 조선과 關東州간의 무역에 대해서는 1932년부터 게재되어 있다. 平凡社, 1959, 《アジア歴史事典》, 참조.

37) 朝鮮貿易協會, 1936, 〈創刊の辭〉《朝鮮貿易協會通報》創刊號, 創刊の辭 참조.

30) 小林英夫, 1975 《〈大東亞共榮圈〉の形成と崩壊》(東京: 御茶の水書房, 10쪽).

31) 송규진, 〈앞의 책〉130~133쪽.

32) 이에 대해서는 川合彰武, 1936, 〈鮮滿一如の道〉《朝鮮貿易協會通報》8, 朝鮮貿易協會 참조.

33) 新田直藏, 1930, 《關稅戰上の日本》, 大同書院: 東亞經濟調查局, 1930, 《最近の關稅問題》日本經濟聯盟會調查課, 1932, 《關稅問題調查資料》.

34) 川合彰武, 1936, 〈ブロック經濟崩壊の兆—國際貿易主流の一變化〉《朝鮮貿易協會通報》創刊號, 참조.

고 조선무역협회, 경성상공회의소, 경성부의 연합주최로 일만(日滿)무역간담회를 개최하여 무역진흥을 위한 방책에 노력하였다.³⁸⁾ 또한 1936년 경성에서 무역진흥전람회, 하얼빈에서 조선물산선전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무역진흥을 위해 노력하였다.

1933년 개최된 국제경제회의는 주요국가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음으로써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이 안으로는 국민경제의 자금자족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관세율의 인상은 물론, 수입할당제도, 수입허가제도, 환관리 등 경제를 국가가 직접관리하면서 통상 장벽을 높이자 일본의 국제무역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³⁹⁾

일본정부는 1934년 4월 법률 제45호 <무역조절 및 통상옹호에 관한 법률>⁴⁰⁾을 공포하여 이를 5월부터 일본에서 시행하고 조선에서도 칙령 제118호 <무역조절 및 통상옹호에 관한 법률을 조선, 대만 및 사할린에 시행하는 건>⁴¹⁾을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외국이 일본에 대하여 채택 또는 채택하려고 하는 조치에 대응하여 무역조절 또는 통상옹호를 위해 상품을 지정하여 수입 금지 및 제한, 또는 관세의 증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 것이었다. 이 법의 운용에 의해 한편으로는 보복수단을 강구하고, 상대국의 일본상품 수입방지에 대처하는 것과 함께 협정주의에 기초하여 각국간 무역의 확대를 도모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 법은 종래와 같이 관세정책을 통하여 대외무역을 조절하려 하였

던 간접적 무역정책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하려 한 것으로 당시 무역법규로서는 획기적이고 무역통제정책의 선구를 이루는 것이다. 이 법령의 시행은 이 시기에 들어와서 조선총독부의 무역정책이 간접적인 관세정책 수단과 직접적인 통제수단을 병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4) '전시무역통제정책'으로 전환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 이후 '국경관세특례'를 보다 확대시켰다. 이는 당시 일제가 내세웠던 조선의 '대륙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총독 미나미(南次郎)는 1938년 8월 제1회 산업부장회의 석상에서 행한 훈시를 통해 병참기지라는 용어를 개념화하였다. 그는 '중일전쟁에서 조선이 식량과 잡화 등 상당량의 군수물자를 보급하였지만 일본으로부터 해상수송로가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선의 능력만으로 군수품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군수공업을 육성할 것을 역설하였다.⁴²⁾ 조선총독부는 1937년 8월에 일련의 부령을 발포하여 만주국에 대한 '관세특례'를 더욱 확대시켜 나갔다.⁴³⁾

일제가 이와 같이 엔블록내에 있어서 관세상의 특례를 대폭 확대시켰던 것은 당시 일본이 직면하였던 경제사정으로 보아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짐작케 한다. 1941년 7월 미국, 영국 등이 대일자산을 동결시킨 것은 일본무역업자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하였다. 그때까지 주로 영국과 미국 블록지역으로부터 공급에 의존하였던 철, 석유, 목화 등은 말

38) 이 시기에는 무역진흥을 위한 여러 모임이 활성화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시기 《朝鮮貿易協會 通報》 등의 잡지를 참조.

39) 朝鮮總督府, 1934, 〈세관장회의〉 《朝鮮》230, 156쪽.

40) 菱沼勇, 1941, 《戰時經濟と貿易國策》, 東亞政經社, 428~429쪽 ; 朝鮮總督府, 1940, 《朝鮮法令輯覽》下卷 참조.

41) 《朝鮮總督府官報》1934년 5월 3일자.

42) 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 朝鮮支部 編, 1939, 《朝鮮經濟年報》1939년판, 改造社, 403쪽.

43) 송규진, 〈앞의 책〉, 172~174쪽.

할 것도 없고 공작기계, 기타 중요 기계류의 수입이 거의 두절되었기 때문에 군수자재의 조달, 생산력의 확충은 심대한 영향을 받았다.⁴⁴⁾

일본의 대외무역은 주로 조선, 만주국과 관동주, 그리고 중국을 대상 지역으로 행해졌으며 그 밖에 불령인도(佛領印度), 태국과의 근소한 물자교류가 행해졌을 따름이었다. 그 후 전쟁이 진전됨에 따라 일본의 엔블록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그리하여 전쟁수행을 위한 군수 및 민수용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엔블록 내 관세장벽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조선과 만주국, 관동주, 중국과의 관세제도가 서서히 철폐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또한 1941년 4월 1일부터 조선에서의 이입세는 완전히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입세의 완전폐지는 조선이 일본의 관세영역에 완전히 편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 이제 조선이 관세제도라는 측면에서도 일본에 완전히 종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엔블록과의 '관세특례'가 확대되고 일본과의 이입세가 철폐되는 상황에서 관세의 중요한 기능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관세에는 산업보호의 기능과 재정수입원으로서의 기능이 있는데 조선의 무역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일본과의 무역에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어 버리자 조선에서는 관세가 갖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모두 약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의 조선 관세는 조선의 경제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일제의 전쟁목적을 위해서, 일본과는 말할 것도 없고 만주국, 관동주, 중국과도 대체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들어 가장 중요하였던 것은 무역통제정책을 실시

하였다는 것이다. 중일전쟁 이후 거액의 군수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었으나 해외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은 국제수지의 악화를 면할 도리가 없었다.⁴⁵⁾ 이러한 무역수지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적 불요(不要) 또는 불급(不急)의 물자는 물론, 필수 원료도 보다 철저히 수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강력한 수입제한으로 물자수급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물가의 폭등을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시경제를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수입 제한과 함께 국내에서의 물자 배급 및 소비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통제를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⁴⁶⁾

일본정부는 1937년 9월, 법률 제92호 <수출입품 등에 대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⁴⁷⁾(이하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제71회 특별의회에서 가결된 <무역금관계산업조정법>(이하 '무역조정법')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목적으로 만든 평상시의 완만한 입법이었다. 이에 비해 임시조치법은 임시적인 전시입법이었던 것이 주목해야 할 특색이다. 다시 말하면 무역조정법은 수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경우에는 무역심의회 의 의론을 거쳐야 하였지만 임시조치법은 상공대신(조선에서는 총독)의 권한으로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었다. 또한 무역조정법은 원칙적으로 당업자의 자치적 통제를 기대하는 것이었지만 임시조치법은 정부가 실행하는 통제만 규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무역조정법은 적극적으로 수출무역의 증진을 도모할 목적이 포함되었지

45) 중일전쟁 이전에도 세계공황이후 일본의 무역수지는 악화되고 있었고 중일전쟁 이후에는 그러한 현상이 보다 심화되었다. 松井清 編, 1963, 《近代日本貿易史》 3: 有斐閣, 96쪽의 표 1-1 國際收支 참조.

46) 이러한 물자통제는 이후 보다 확대되었다. 물자통제가 확대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김인호 1998, 《태평양전쟁기 조선공업연구》, 신서원, 59-158쪽 참조.

47) 朝鮮貿易協會, 1940, 《朝鮮輸出入許可規則解説》, 103-105쪽.

44) 梶西光速・大島清・加藤俊彦・大内力, 《앞의 책》, 345-346쪽.

만 임시조치법은 오로지 수출의 제한 및 금지의 규정만을 지니고 있었던 점이 본질적인 차이였다.⁴⁸⁾

조선에서는 칙령 제515호 <수출입품 등에 대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을 조선, 대만 및 사할린에 시행하는 건>⁴⁹⁾을 시행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1937년 10월 조선총독부는 부령 제153호로 <수출입품 등에 대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한 명령의 건>(이하 ‘임시수출입허가규칙’)⁵⁰⁾을 공포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임시수출입허가규칙에 의하면 중요수입품으로서 어느 정도의 수입 제한을 요하는 물품을 갑호품목으로 정하고 불요품(不要品), 또는 불급품(不急品)으로 수입금지를 요하는 물품을 을호품목으로 정하여 이를 수입할 경우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수출금지를 요하는 물품을 병호품목으로 정하고 이를 수출할 경우에도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거의 전 품목에 걸쳐서 수출입을 강력하게 통제하였던 것이다.

임시수출입허가규칙 별표에는 갑호품목으로서 목화, 솜, 양모(羊毛), 산양모(山羊毛), 낙타모(駱駝毛), 목재 등이 지정되었고 을호품목으로는 식물 이외에 268개 품목, 병호품목으로는 보리 외에 12개 품목이 지정되었다. 이들 지정물품은 일본과 동일한 것은 아니었고 취급 양상도 달랐다. 조선에서 수입제한 또는 수출입금지 통제를 받은 품목은 조선 자체의 경제적 특수사정에 의하여 일본에서 지정한 품목보다 많았다.⁵¹⁾ 이 규칙은 그 후 전시경제의 필요에 의하여 그때마다 개정되었는

데 지정품목도 점차로 추가되었다.⁵²⁾

중일전쟁이래 일본의 무역통제는 주로 임시조치법에 기초한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임시조치법으로는 수출입을 제한하고 금지할 수는 있었지만 수출입을 적극적으로 명령할 수 없었다. 결국 수출입의 적극명령은 <국가총동원법>⁵³⁾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총동원법> 제9조에는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명령이 정한 바에 의해 수출 또는 수입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조문을 법령화하여 1941년 5월 칙령 제581호로 <무역통제령>⁵⁴⁾을 공포하고 일본은 15일부터 조선은 25일부터 이 칙령을 시행함으로써 수출입 무역을 국가총동원체제하에 두었다.⁵⁵⁾ <무역통제령>은 종래의 무역통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강력한 통제권을 정부에 부여한 법률적 기초를 정하였던 것으로 종합적인 통제무역체로의 획기적 전환을 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무역도 ‘국가총동원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제의 전쟁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면서 파행적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총독부는 1941년 8월 부령 제224호로 <무역통제령시행규칙>⁵⁶⁾을 공포 시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삼국무역조정령>을 폐지하고 그 조항을 <무역통제령시행규칙> 제10조로 이관하였다.⁵⁷⁾ 그리하여 이후

51) 朝鮮貿易協會, 1940, 《朝鮮輸出入許可規則解説》, 朝鮮貿易協會, 2-3쪽.

52) 송규진, <앞의 책>, 180-190쪽.

53) 日本工業協會 編, 《戰爭と工業》(東京: 日本評論社, 1939), 85-94쪽 참조.

54) 菱沼勇, <앞의 책>, 177-178쪽.

55) 穂積眞六郎, 1941.6, 貿易統制令に就て <朝鮮貿易協會通報>65, 朝鮮貿易協會, 2쪽.

56) 《朝鮮總督府官報》1941년 8월 1일자.

57) 일본정부는 동년 6월 20일, 商工農林兩省令을 공포하여 종래의 <임시수출입허가규칙>을 폐지하고 同規則에 의한 수출입의 허가는 <貿易統制令施行規則>으로 이관하였다.

48) 朝鮮貿易協會 編, 1943, 《朝鮮貿易史》, 朝鮮貿易協會, 184쪽(이하 《朝鮮貿易史》로 표기).

49) 《朝鮮總督府官報》1937년 9월 28일자.

50) 《朝鮮總督府官報》1937년 10월 11일자.

에는 오로지 <무역통제령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제삼국무역을 조종하게 되었다. 동시행규칙 발포와 동시에 수출입 요허가품(要許可品) 및 조정품목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필수물자에 대해 광범위한 수출허가제가 실시되었다. 아울러 수출조정기관에 의한 수출조정제도가 확충되었고 불요불급품의 수입통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곧 이어 조선총독부는 1941년 9월 고시 제1455호 <무역통제령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조정기관, 지역 및 물품>⁵⁸⁾을 발포하여 수입조정기관으로 조선무역진흥주식회사(朝鮮貿易振興株式會社)를 지정하고 대상지역으로는 불령인도(佛領印度)를 지정하였다. 이처럼 제삼국에 대한 무역통제는 <무역통제령시행규칙>을 법적 근거로 하면서 조선무역진흥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말기에 접어들면서 긴급물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일제는 엔블록 무역과 제3국 무역에 대한 통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44년 2월 고시 제146호 <무역통제령시행규칙에 의한 조정기관 지정>⁵⁹⁾을 발포하여 엔블록 무역을 담당했던 조선동아무역주식회사(朝鮮東亞貿易株式會社)가 조선무역진흥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형식으로 조선교역주식회사(朝鮮交易株式會社)를 설립하였다. 이로써 일제는 엔블록과 제3국에 대한 일원적 무역통제기구를 확립하였고 무역의 국가관리를 더욱 강화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 법령에 의해 관동주, 만주국, 중국에 대한 수출제한 품목 및 통제단체의 특수품 등 극소수의 수출품에 대해서만 허가를 필요로 하였을 뿐, 대부분의 수출품에 대한 통제허가권이 민간통제기구에 전부 이양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⁶⁰⁾ 하지만 조선교역주식회사라는

외양적 민간단체에 통제허가권을 주었다 하더라도 통제가 민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통제가 일원화되면서 국가가 쉽게 관리하게 되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이 무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국가가 관리하였던 이유는 결국 전쟁말기에 전시물자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통제경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제 무역은 종래와 같이 개인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무역을 통한 물자의 교류는 극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국내의 생산 및 수급관계도 가격에 의한 자동적 조정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이시기 무역정책과 관련하여 수송정책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특히 이시기에는 만주국과 중국 수송로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을 대륙루트로 인식하였는데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경부선, 경의선을 통하여 안봉선(安奉線) 및 화북에 이르는 안봉루트, 진남포, 인천, 혹은 부산, 또 황해지역의 조선의 항구로부터 대련(大連) 혹은 천진(天津)에 이르는 황해루트, 또한 북부 조선을 통한 북선(北鮮)루트였다. 중일전쟁 이후 군사수송에, 또한 광대한 화북시장과의 무역진전에 공헌한 것은 안봉루트와 황해루트였는데 특히 안봉루트의 경우는 군사수송을 위해 일반제한까지 단행할 정도로 수송량이 엄청났다. 동북만주의 경우 북선루트보다도 안봉루트 혹은 황해루트를 통해 일본 및 조선으로부터 물자공급을 더 받았지만 이들 루트들이 중일전쟁 이후 남만주 지역까지만 일정하게 역할을 하고 동북만주 지역까지는 물자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북선루트가 동북만주로의 물자공급로로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다.⁶¹⁾

58) 《朝鮮總督府官報》1941년 9월 12일자.

59) 《朝鮮總督府官報》1944년 2월 15일자.

60) 山田公英, 1944, 《朝鮮交易の決戰態勢》《朝鮮》348, 朝鮮總督府, 23쪽.

61) 鈴木武雄, 1938, 《朝鮮の商圏としての東北滿洲》《朝鮮貿易協會通報》25(朝鮮貿易協會, 참조).

이 시기 무역정책은 간접적인 관세정책으로부터 직접적인 통제정책으로 전환되었고 통제정책도 상황에 따라 급변하였다. 이제 조선은 경제적으로 일본에 완전히 예속되어 조선의 경제사정과는 무관하게 일제의 군수물자의 확보전략을 위한 전시통제정책에 의하여 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음이 무역정책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2. 무역시장의 협소화

1) 일본의 무역독점의 강화

(1) ‘특별관세정책’ 시기 무역규모의 확대와 수출의 급증

이 시기 조선무역의 추이를 알 수 있는 것이 〈표 8-1〉이고,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 〈도표 8-1〉이다. 이 표와 도표에 의하면 ‘한국병합’ 이후 무역액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⁶²⁾ 그러나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조선의 무역액 증가는 ‘한국병합’ 이전부터 있어온 일반적 경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전 시기부터의 흐름을 외면한 채 일제하의 무역성장만을 놓고 일면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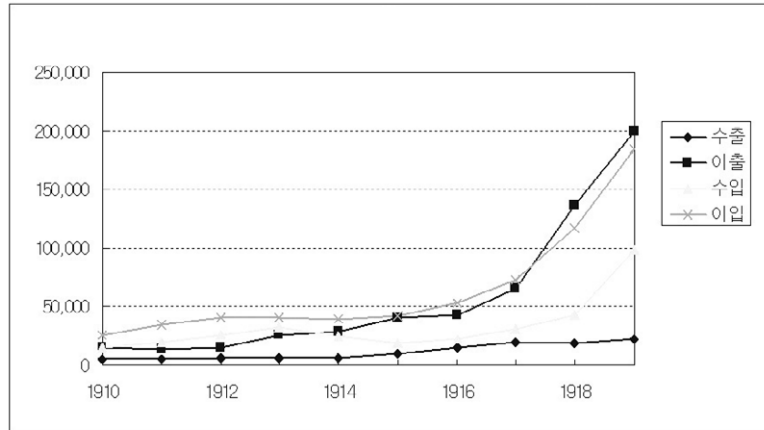
62) 安秉直·中村哲 編, 《근대조선공업화의 연구》, 일조각, 10쪽의 〈표 2-1〉에 의하면 일본, 중국, 대만과의 비교를 통해 조선무역의 비약적인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일제하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일제하의 무역성장에 대해서는 그 전후시기를 함께 고려할 때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개항기에도 조선무역은 양적으로 엄청난 팽창을 계속하였다. 또한 해방이후에도 한국의 무역액은 놀랄 만큼 팽창을 거듭하였다.

〈표 8-1〉 1910~1919년 시기 조선무역의 추이 (단위: 천 엔)

연도	화물								금은						
	수이출			수이입			합계	수이입초과			수이출	수이입	합계	출초	
	수출	이출	총액	수입	이입	총액		수입	이입	총액					
1910	4,535	15,379	19,914	14,435	25,348	39,783	59,697	9,899	9,969	19,869	9,200	1,876	11,076	7,324	
1911	5,516	13,341	18,857	20,029	34,058	54,088	72,945	14,513	20,718	35,231	12,857	4,739	17,596	8,118	
1912	5,617	15,369	20,986	26,359	40,756	67,115	88,101	20,743	25,387	46,130	10,124	1,473	11,597	8,652	
1913	5,922	25,314	31,236	31,618	40,429	72,048	102,459	25,697	15,115	40,812	10,944	202	11,146	10,742	
1914	6,448	28,587	35,035	24,648	39,047	63,695	97,620	18,199	10,460	28,659	10,825	312	11,137	10,513	
1915	9,320	40,901	50,220	18,159	41,535	59,695	108,692	8,840	634	9,474	11,764	833	12,597	10,931	
1916	14,855	42,964	57,819	22,675	52,459	75,134	131,259	7,820	9,495	17,316	16,121	1,671	17,792	14,450	
1917	20,233	64,726	84,959	31,396	72,696	104,092	186,662	11,163	7,970	19,133	9,669	467	10,136	9,202	
1918	18,698	137,205	155,903	43,152	117,273	160,425	312,499	24,453	-19,931	4,522	6,024	371	6,395	5,653	
1919	22,099	199,849	221,947	98,159	184,918	283,077	500,452	76,060	-14,931	61,129	4,419	1,639	6,058	2,780	

출전: 《朝鮮貿易年表》 각년판.

〈도표 8-1〉



이 시기의 무역액 추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이것을 지수로 표시한 것이 〈표 8-2〉이다. 이 표에 의하면 이 시기에 수출은 4.87배, 이출은 13배, 수이출 총액은 11.15배 증가하였다. 또한 수입에서는 6.8배, 이입에서는 7.3배, 수이입 총액은 7.12배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수이출입 합계는 8.38배 증가하였다. 그런데 수이출 부문에서 수출과 이

〈표 8-2〉 1910년을 기준연도로 한 무역액 지수

연도	화물								금은						
	수이출			수이입			합계	수이입초과			수이출	수이입	합계	출초	
	수출	이출	총액	수입	이입	총액		수입	이입	총액					
19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11	122	87	95	139	134	136	122	147	208	177	140	253	159	111	
1912	124	100	105	183	161	169	148	210	255	232	110	78	105	118	
1913	131	165	157	219	159	181	172	260	152	205	119	11	101	147	
1914	142	186	176	171	154	160	164	184	105	144	118	17	101	144	
1915	205	266	252	126	164	150	182	89	6	48	128	44	114	149	
1916	328	279	290	157	207	189	220	79	95	87	175	89	161	197	
1917	446	421	427	218	287	262	313	113	80	96	105	25	92	126	
1918	412	892	783	299	463	403	523	247	-200	23	65	20	58	77	
1919	487	1300	1115	680	730	712	838	768	-150	308	48	87	55	38	

* 무역액 지수와 수이출입 비율, 무역증감률은 무역액 추이를 근거로 작성(이하 동일함)

출을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으로의 이출 증가가 외국으로의 수출증가에 비하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것은 조선의 수이출시장이 일본으로 편중되었음을 의미하는 주요 지수이다.

수이입 역시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종래 연구에서는 대일무역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일본이 조선미곡의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미곡에 대한 이입세를 폐지한 것과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대외무역이 중단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평가하였다.⁶³⁾ 물론 전체적으로 대일무역의 비중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개항기 후 기인 대한제국 시기와 비교할 때 일본이 조선의 무역을 완전히 독점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수이출의 경우 수출과 이출의 증가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 것과는 달리 수이입 부문의 경우 수입과 이입은 거의 같은 비율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63) 車耕權, 〈앞의 글〉, 608쪽.

이 시기에 무역수지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다. 조선무역협회에서는 이 시기 무역수지 적자는 각종 건설자재 기타 원재료 등 조선의 산업개발에 자원이 될 화물의 수입입 증가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비관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⁶⁴⁾ 하지만 실제로 무역수지 적자는 조선을 식민통치한 당국자로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를 위한 사업자금조달을 조선은행의 태환권발행력에 의존하였다.⁶⁵⁾ 그런데 조선의 무역수지 적자는 조선은행의 태환권의 기초를 위협하였다. 그런 까닭에 조선총독부는 수이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선산품의 개발, 증식을 꾀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⁶⁶⁾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무역수지 적자는 조선무역협회의 평가와는 달리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

〈표 8-3〉에 따르면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1910년 22.8% : 77.2%였던 수출과 이출의 비율이 1919년의 경우 10.0% : 90.0%를 기록하였다.

〈표 8-3〉 1910~1919년 시기의 수이출입 비율(%)

연도	수이출			수이입		
	수출	이출	합계	수입	이입	합계
1910	22.8	77.2	100	36.3	63.7	100
1911	29.3	70.7	100	37.0	63.0	100
1912	26.8	73.2	100	39.3	60.7	100
1913	19.0	81.0	100	43.9	56.1	100
1914	18.4	81.6	100	38.7	61.3	100
1915	18.6	81.4	100	30.4	69.6	100
1916	25.7	74.3	100	30.2	69.8	100
1917	23.8	76.2	100	30.2	69.8	100
1918	12.0	88.0	100	26.9	73.1	100
1919	10.0	90.0	100	34.7	65.3	100

64) 《朝鮮貿易史》, 70쪽.

65) 裴永穆, 1990, 《殖民地 朝鮮의 通貨 金融에 관한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참조.

66) 波形昭一, 1985, 《日本殖民地金融政策史の研究》, 早稻田大學出版部, 428~429쪽.

그런데 수이입 부문에서는 수이출 부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입과 수입비율은 해마다 약간씩 증감이 있긴 하였지만 ‘한국병합’ 시기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10~1919년 시기에 수출과 이출의 평균비율은 16.3% : 83.7%로 이출의 비중이 보다 강화되었다. 그런데 1910년 36.3% : 63.7%였던 수입과 이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감을 거듭하면서도 1919년에도 34.7% : 66.3%로 대한제국 시기와 큰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수이출 부문에서는 ‘한국병합’과 더불어 이출의 비율이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였지만 수이입 부문에 있어서는 그 이전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 시기 무역추이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관세동화정책’ 시기 무역규모의 정체와 대일 종속의 심화

1920~1931년 시기 조선무역의 추이를 알 수 있는 것이 〈표 8-4〉이고,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것이 〈도표 8-2〉이다. 이 표와 도표에 의하면 이 시기에는 무역액의 측면에서 1910~1919년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도 1910~1919년 시기와 마찬가지로 전체 무역액이 얼마간 증가하긴 하였지만 1910~1919년 시기의 폭등 양상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정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지역과의 수출입 상황을 일별할 때 현저히 드러난다.

조선총독부는 1925년 통첩 제45호 〈관청용품 및 관공영공사(官公營工事) 재료로서 조선물산 충용에 관한 건〉⁶⁷⁾을 발포하여 관공서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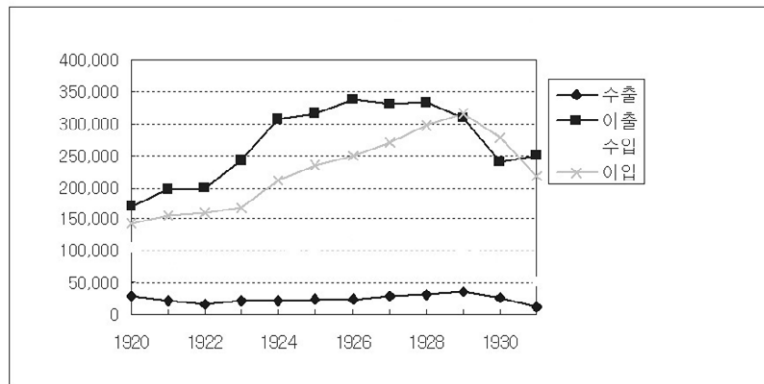
67) 《朝鮮總督府官報》, 1925년 6월 29일자.

〈표 8-4〉 1920~1931년 시기 조선무역의 추이 (단위: 천 엔)

연도	화물							금은						
	수이출			수이입			합계	수이입초과			수이출			출초
	수출	이출	총액	수입	이입	총액		수입	이입	총액	총액	총액	합계	
1920	27,639	169,381	197,020	106,175	143,112	249,487	430,915	78,536	-26,269	52,266	23,843	16,289	40,132	7,554
1921	20,885	197,393	218,277	75,899	156,483	232,382	450,659	55,014	-40,910	14,104	7,307	2,540	9,848	4,767
1922	17,490	197,915	215,404	75,798	160,247	256,045	471,449	78,308	-37,668	40,640	4,180	1,150	5,330	3,030
1923	20,403	241,262	261,666	98,338	167,452	265,791	527,456	77,935	-73,810	4,125	6,593	1,098	7,651	5,535
1924	22,379	306,660	329,039	97,776	211,817	309,593	638,632	75,397	-94,843	-19,446	5,737	1,591	7,328	4,145
1925	24,342	317,289	341,631	105,388	234,624	340,012	681,642	81,046	-82,665	-1,619	4,358	810	5,168	3,548
1926	24,779	338,176	362,955	123,934	248,236	372,170	735,125	99,155	-89,940	9,215	7,452	469	7,921	6,982
1927	28,134	330,791	358,925	113,943	269,474	383,417	742,342	85,810	-61,317	24,492	5,263	521	5,784	4,742
1928	32,149	333,829	365,979	118,151	295,840	413,991	779,969	86,002	-37,989	48,012	3,670	538	4,208	3,132
1929	35,773	309,891	345,664	107,768	315,326	423,094	768,758	71,995	5,435	77,429	6,097	886	6,983	5,211
1930	25,852	240,695	266,547	88,855	278,194	367,049	633,596	63,002	37,499	100,502	26,804	11,731	38,585	15,072
1931	12,772	249,027	261,799	52,696	217,770	270,466	532,265	39,934	-31,257	8,668	39,548	21,957	61,505	17,591

출전: 《朝鮮貿易年表》 각년판.

〈도표 8-2〉



요품이나 관영 공사의 경우 조선산품의 사용을 장려하는 등 무역수지 흑자를 위하여 힘썼다.⁶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전체의 대외무역 수지는 3억 5천여만 엔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1920년대 말기에는

68) 《朝鮮貿易史》, 75쪽.

세계공황의 여파로 무역이 급속도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 시기 전체 무역액 추이에서 한가지 주목할만한 것은 전체 무역수지의 적자폭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무역수지는 오히려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외국과의 무역수지는 이 시기 대외무역이 정체 내지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전체를 놓고 볼 때 무역적자폭이 8억 8천여만 엔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확대되었다. 하지만 일본과는 앞으로 상품분석에서 언급할 대일미곡 이출액의 비약적인 증가로 1929년과 1930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5억 3천여만 엔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외국과의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 일본과의 무역수지 흑자의 지속이라는 아이러니가 이 시기 무역구조의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다.

조선무역협회는 조선이 대일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한 원인에 대하여 ‘조선에서의 농업재건이 잘 이루어져 조선쌀의 일본공급이 왕성하게 된 반면 환경의 약화로 근대산업의 건설이 완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대외무역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증대하는 경향이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는 ‘조선쌀 일본이출의 증대와 반비례하여 보조식량으로서 만주좁쌀 등의 수입이 촉진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⁶⁹⁾

이 시기의 무역액 추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이것을 지수로 표시한 것이 〈표 8-5〉이다. 이 표에 의하면 수출에 있어서는 192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수출액의 증감을 거듭하다가 결국 1931년에는 0.46배로 축소되었고 수입에 있어서는 0.50배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출에

69) 《朝鮮貿易史》, 75~76쪽.

〈표 8-5〉 1920년을 기준연도로 한 무역액 지수

연도	화물							금은						
	수이출			수이입			합계	수이입초과			수이출	수이입	합계	출초
	수출	이출	총액	수입	이입	총액		수입	이입	총액	총액	총액		
192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21	76	117	112	71	109	93	105	70	156	27	31	16	25	63
1922	63	117	109	90	112	103	109	100	143	78	18	7	13	40
1923	74	142	133	93	117	107	122	99	281	8	28	6	19	73
1924	81	181	167	92	148	124	148	96	361	-37	24	10	18	55
1925	88	187	173	99	164	136	158	103	315	-3	18	5	13	47
1926	90	200	184	117	173	149	171	126	342	18	31	3	20	92
1927	102	195	182	107	188	154	172	109	233	47	22	3	14	63
1928	116	197	186	111	207	166	181	110	145	92	15	3	10	41
1929	129	183	175	102	220	170	178	92	-21	143	26	5	17	69
1930	94	142	135	84	194	147	147	80	-143	192	112	72	96	200
1931	46	147	133	50	152	108	124	51	119	17	166	135	153	233

있어서는 1.47배 증가하였고 이입에 있어서는 1.52배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수이출 합계는 1.33배, 수이입 총액은 1.13배가 증가하여 수이출입 합계는 1.24배로 약간 증가하였다. 수출입은 말할 것도 없고 이출액과 이입액이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1910~1919년 시기의 이출 13배, 이입 7.06배 증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정체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20~1931년 시기의 수이출입 비율을 정리한 것이 〈표 8-6〉이다. 이 표에 따르면 수이출 부문에 있어서는 일본으로의 편중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10~1919년 시기에도 일본으로의 이출액이 전체 수이출액을 압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1910년~1919년 시기에도 이출 비율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출비율이 더욱 상승하여 1920년 14.0%: 86.0%였던 수출과 이출의 비율이 1931년에는 4.9%: 95.1%가 되었다.

수이입 부문에서는 이 시기의 특성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1910

〈표 8-6〉 1920~1931년 시기의 수이출입 비율(%)

연도	수이출			수이입		
	수출	이출	합계	수입	이입	합계
1920	14.0	86.0	100	42.6	57.4	100
1921	9.6	90.4	100	32.7	67.3	100
1922	8.1	91.9	100	37.4	62.6	100
1923	7.8	92.2	100	37.0	63.0	100
1924	6.8	93.2	100	31.6	68.4	100
1925	7.1	92.9	100	31.0	69.0	100
1926	6.8	93.2	100	33.3	66.7	100
1927	7.8	92.2	100	29.7	70.3	100
1928	8.8	91.2	100	28.5	71.5	100
1929	10.3	89.7	100	25.5	74.5	100
1930	9.7	90.3	100	24.2	75.8	100
1931	4.9	95.1	100	19.5	80.5	100
합계	8.3	91.7	100	30.5	69.5	100

~1919년 시기에는 이입액, 다시 말해 일본제품의 비중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상품의 수입비율은 여전히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일본에서의 이입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반비례하여 외국에서의 수입비율은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 1920년 42.6%: 57.4%였던 수입과 이입의 비율이 1931년에는 19.5%: 80.5%로 큰 격차를 보임으로써 이 시기에는 수이입 부문에 있어서도 일본제품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며 조선시장을 장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시기에 수이입구조면에서도 이전 시기와 달리 일본으로의 편중현상이 더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에서 식민모국과 식민지간의 전형적인 무역관계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3) ‘무역진흥정책’ 시기 수출의 확대와 무역수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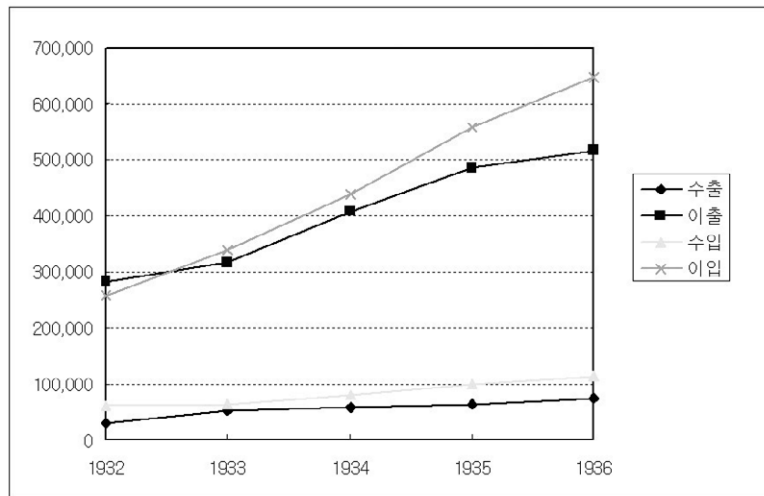
1932~1936년 시기의 무역액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 〈표 8-7〉이고

〈표 8-7〉 1932~1936년 시기 조선무역의 추이 (단위: 천 엔)

연도	화물										금은			
	수이출			수이입			합계	수이입초과			수이출	수이입	합계	출초
	수출	이출	총액	수입	이입			총액	총액					
1932	29,210	282,144	311,354	61,686	258,670	320,356	631,790	32,476	-23,474	9,002	28,315	10,605	38,920	17,711
1933	52,773	315,854	368,628	64,368	339,817	404,185	772,813	1,159	23,963	35,558	24,395	3,848	28,243	20,547
1934	57,674	407,694	465,367	79,527	439,623	519,150	984,517	21,853	31,929	53,782	36,350	402	36,752	35,948
1935	64,902	485,894	550,796	100,590	558,814	659,403	1,210,199	35,687	72,920	108,607	210,593	73,218	283,810	137,375
1936	75,266	518,047	593,313	114,499	647,918	762,417	1,355,730	39,233	129,871	169,104	65,574	8,044	73,618	57,529

출전: 《朝鮮貿易年表》 각년판.

〈도표 8-3〉



이것을 보다 이해하기 위한 것이 〈도표 8-3〉이다. 이 표와 도표에 의하면 이 시기에는 무역액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20~1931년 시기의 무역이 정체적이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 시기의 무역액이 급증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으나 환시세의 하락, 만주국의 수립과 일본의 대륙진출로 조선의 경제적 위치가 보다 강화되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⁷⁰⁾

〈표 8-7〉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1932년을 기준연도로

〈표 8-8〉 1932년을 기준연도로 한 무역액 지수

연도	화물										금은			
	수이출			수이입			합계	수이입초과			수이출	수이입	합계	출초
	수출	이출	총액	수입	이입	총액		수입	이입	총액				
193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33	181	112	118	104	131	126	122	36	100	395	86	36	73	116
1934	197	144	149	129	170	162	156	67	133	597	128	4	94	203
1935	222	172	177	163	216	206	192	110	304	1,206	744	690	729	776
1936	258	184	191	186	250	238	215	121	542	1,879	232	76	189	325

* 이입초과의 경우, 1932년을 기준연도로 한 이유는 1932년의 경우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 무역액 지수를 표시한 것이 〈표 8-8〉이다.

〈표 8-8〉을 근거로 이 시기의 무역 양상을 볼 때 수출에 있어서는 2.58배, 이출에 있어서는 1.84배, 수이출 합계에 있어서는 1.91배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체 수이출의 증가를 주도하였던 것이 이출이 아니라 수출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전 시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1910~1919년 시기에도 수출은 증가하였지만 전체 수이출 부문을 주도하였던 것은 단연코 이출이었다. 1920~1931년 시기에 수출은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경향마저 있었다. 이와 같은 추이를 고려하면 이 시기에 수출의 증가가 수이출 부문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무역구조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수입은 1.86배, 이입은 2.5배, 전체 수이입 총액은 2.38배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이 기간 중 수이입에 있어서는 수이출과는 달리 일본에서의 이입이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무역의 규모는 2.15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이 시기 무역의 특징으로 수이출 부문에 있어서는 수출의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 조선무역협회에서는 이 시기

70) 이 외에 당시의 계속된 풍년, 농촌진흥운동에 의해 일반민중의 생활이 안정되었으며 産金事業의 장려를 비롯하여 공민구제사업등의 실행에 의해 일반인의 구매력이 증진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朝鮮總督府, 〈세관장회의. 총독훈시〉, 1934, 《朝鮮》230, 朝鮮總督府, 156쪽.

수이출 부문에서 수출비율이 12.2%로 증대를 보이고 있고 더욱이 그 내용이 신흥공업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하면서, 조선은 일본에 예속된 단순한 원료공급지가 아니고 그 여력으로 해외의 시장에 진출할 고도의 경제적 단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⁷¹⁾ 하지만 여전히 전체 비율에서는 일본으로의 이출비율이 87.8%를 차지하였고 대부분 식료품과 원료품을 이출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수출면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변화를 통해 전체 경제의 질적 변화를 운운하는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수이입에 있어서는 일본으로의 편중현상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이출입 비율을 보여주는 <표 8-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수이출 부문에 있어서 1910~1919년 시기에서 1920~1931년 시기에는 수출보다는 이출에 편중되는 현상이 보다 강화되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도 이출에 편중되는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수출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통해 수이출구조가 다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이입에 있어서는 이전 시기보다도 이입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보다 강화되고 있어 대조적이다.

<표 8-11> 1932~1936년 시기의 수이출입 비율(%)

연도	수이출			수이입		
	수출	이출	합계	수입	이입	합계
1932	9.4	90.6	100.0	19.3	80.7	100.0
1933	14.3	85.7	100.0	15.9	84.1	100.0
1934	12.4	87.6	100.0	15.3	84.7	100.0
1935	11.8	88.2	100.0	15.3	84.7	100.0
1936	12.8	87.2	100.0	15.0	85.0	100.0
합계	12.2	87.8	100.0	15.8	84.2	100.0

71) 《朝鮮貿易史》, 82쪽.

이와 같은 구조상의 변화는 무역수지면에도 나타난다.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수출입에서 무역수지 적자는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보다 특징적인 것은 이출입에 있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보다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체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하게 된 원인을 이입의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조선공업화’로 말미암은 무역액의 증가는 결국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로 귀결되었다.⁷²⁾ 참고로 수이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수이입초과 비율을 수이입초과율이라고 하면, 이를 통하여 무역수지의 적자가 심화되는 현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표 8-11>에 의하면 전체 수이입초과 지수는 엄청나게 증가되는데 수이입초과율(수이입초과/수이입총액)도 점차적으로 증대하여 1932년 3%였던 것이 1936년에는 22%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도 조선무역협회에서는 ‘이는 조선경제가 취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건설재의 이입 격증에 기초한 변증법적 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장래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⁷³⁾ 하지만 다음 시기에는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욱더 확대되어 조선무역의 기초를 뿌리채 흔들게 되었다.

72) 李承烈, 1997, <1930년대 朝鮮의 수출증가와 朝鮮工業界의 동향> 《金容燮教授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3 韓國近現代의 民族問題와 新國家建設》, 지식산업사, 397~404쪽에서 수출상품을 조선산과 일본산으로 구분하고 조선산을 다시 일본독점자본이 절대적인 우세를 보이는 것, 일본계 중소기업이 우세한 것, 조선인자본이 상대적으로 활동영역을 확보한 것으로 나누면서 특히 일본산의 경우는 중개무역품이므로 조선의 산업과는 그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본산제품의 수출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대일적자폭은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73) 朝鮮貿易協會, 1936, 《朝鮮貿易의 現勢と其の將來》, 朝鮮貿易協會, 20쪽.

(4) '무역통제정책' 시기 무역규모의 축소와 무역수지의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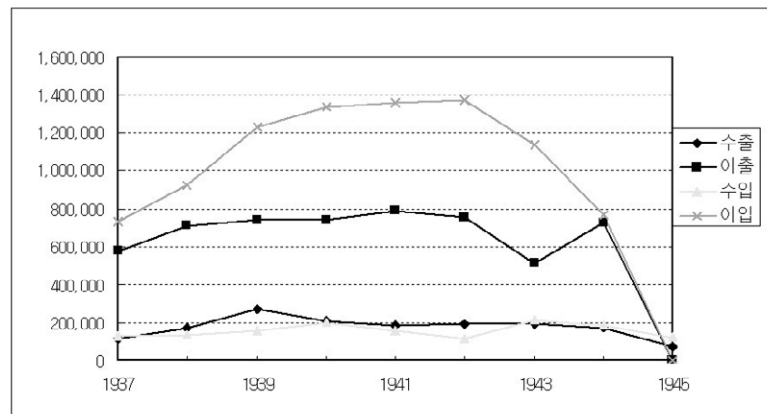
1937~1945년 시기의 조선무역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 <표 8-12>이고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 <도표 8-4>이다. 이 표와 도표에 의하면 전시통제 상황에서도 수출입 추세는 대체로 증가하였으나 말기에 들어서면 급속도로 감소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출입

<표 8-12> 1937~1945년 시기 조선무역의 추이 (단위: 천 엔)

연도	화물									
	수출			수입			합계	수입초과		
	수출	이출	총액	수입	이입	총액		수입	이입	총액
1937	113,098	572,445	685,543	128,139	735,414	863,553	1,549,095	15,041	162,968	178,010
1938	169,067	710,540	879,606	134,583	921,346	1,055,928	1,935,535	-34,484	210,806	176,322
1939	269,911	736,883	1,006,794	159,031	1,229,417	1,388,448	2,395,242	-110,880	492,534	381,654
1940	206,385	741,424	947,809	200,652	1,335,716	1,536,368	2,484,177	-5,732	594,291	588,559
1941	184,464	788,833	973,297	158,345	1,360,994	1,519,339	2,492,636	-26,119	572,161	546,042
1942	192,434	752,287	944,721	115,074	1,374,746	1,490,884	2,435,605	-77,361	622,460	545,099
1943	192,100	512,907	705,007	211,976	1,135,699	1,347,675	2,052,682	19,876	622,792	642,668
1944	190,772	728,830	919,602	186,716	769,179	955,895	1,875,497	-4,056	403,49	36,293
1945	70,898	0	70,898	122,170	0	122,170	193,068	51,272	0	51,272

출전: 《朝鮮貿易年表》각년판, 《朝鮮經濟年報》(朝鮮銀行調查部, 1948), III-43쪽.

<도표 8-4>



의 경우는 1945년 통계를 신뢰할 수는 없지만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통해 당시의 무역구조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⁷⁴⁾

이것을 지수로 표시한 것이 <표 8-13>이다. 이 시기에 수출은 1937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1944년에도 1.69배가 증가하였고 이출은 1.27배, 수입총액은 1.34배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도 1932~1936년 시기와 마찬가지로 수출의 증가세가 이출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수입에 있어서는 1937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1944년에는 1.46배가 증가하였고 이입은 1.05배, 전체 수입총액은 1.11배로 증가되었다. 이것만을 보면 수입 부문에 있어서도 수입이 전체 수입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표 8-13> 1937년을 기준연도로 한 무역액 지수

연도	수출			수입			합계	수입초과		
	수출	이출	총액	수입	이입	총액		수입	이입	총액
193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38	149	124	128	105	125	122	125	-229	129	99
1939	239	129	147	124	167	161	155	-737	302	214
1940	182	130	138	157	182	178	160	-38	365	331
1941	163	138	142	124	185	176	161	-174	351	307
1942	170	131	138	90	187	173	157	-514	382	306
1943	170	90	103	165	154	179	159	132	382	354
1944	169	127	134	146	105	111	121	-27	25	20
1945	63	0	10	95	0	14	12	341	0	29

출전: 《朝鮮貿易年表》각년판, 《朝鮮經濟年報》(朝鮮銀行調查部, 1948), III-43쪽.

74) 1940년 이후는 일제가 대외무역은 극비로 하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표한 전체무역 통계자료가 없으나 1941년까지는 내부용으로 정리한 것이 있다. 이하 통계는 다른 자료와 차이가 있을 때 1939년까지는 《朝鮮貿易年表》 통계에 따르고, 1940년 이후는 《朝鮮經濟年報》에 의하여 1937~1945년 무역액 추이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약간의 부정확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전반적인 추이를 파악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하 무역액 지수분석에서는 1944년까지만 다루도록 하겠다.

하지만 1944년은 예외적인 해였고 대체적으로는 이입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다. 그리하여 이 기간 중 수이입 부문에 있어서는 수이출과는 달리 일본에서의 이입이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45년에는 연합군의 일본 공습으로 인하여 일본과의 무역거래는 거의 두절상태에 있었으며 외국과의 무역도 상당히 저조하였다. 따라서 이제 조선의 무역구조는 거의 파멸 직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가 전시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1937년과 비교하면 무역이 대체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물가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이후의 물가폭등을 고려한다면 무역이 그 이전 시기와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⁷⁵⁾ 이 시기의 도매물가지수를 정리한 것이 <표 8-14>이다. 이 표에 의하면 이 시기 물가폭등이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물가폭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무역규모가 축소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물가지수도 공정 가격을 기초한 지수이므로 실세물가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암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표 8-14> 도매물가지수(1937~1944)

연도	물가지수(A)	물가지수(B)
1937	123	100
1938	153	124
1939	180	146
1940	198	161
1941	205	167
1942	215	175
1943	237	193
1944	266	216

출전: A는 羽鳥敬彦, 1981, <전시하 조선에서의 통화인플레이션> 《식민지 시대 사회와 저항》, 백산서당, 211쪽 참조.

* B는 A를 근거로 1937년을 기준연도 하여 물가지수를 재구성한 것임.

75) 《朝鮮貿易史》, 87쪽에도 1936년을 100으로 한 경성도매물가지수를 보면(조선은행조사) 1937년 116.61, 1938년 139.25, 1939년 163.29이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 물가지수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전체 물가지수를 체계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대체로 암시장 가격은 공정가격의 20배나 되었다.⁷⁶⁾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실제 조선인들의 경제수준은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 실제 무역액은 상당히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무역수지의 적자폭은 1932~1936년 시기에 이어 계속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1943년의 경우 수이입초과율(수이입초과/수이입 총액)은 무려 4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외국과의 무역수지는

76) 羽鳥敬彦, 1981, <전시하 조선에서의 통화인플레이션> 《식민지 시대 사회와 저항》, 백산서당, 211쪽에 의하면 서울의 공정 가격과 암시장 가격을 비교한 표가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공정가격과 암시장 가격의 격차가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위 표에 의하면 공정 가격과 암시장 가격의 차이는 상당히 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품목도 제한되고 시기도 한정되어 있지만 공정 가격을 알 수 없는 것을 제외하면 평균 20배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물론 이것은 과장된 수치일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관에 의한 조사에 의해서도 공정

* 서울의 공정 가격과 암시장 가격

시기	상품	공정가격	암가격
1944년 12월	양복 1벌	56	500
	구두 1켤레	0.44	15
	양말	?	15
	세탁비누	0.48	40
	성냥 1갑	0.56	35
1945년 8월	술 1개	?	150
	쌀 1되	5.09	500
	팥 1홉	?	400
	정종 1홉	5.30	120
	된장 100근	0.20	2
	설탕 1근	0.46	100
	감자 1관	1.10	30
	소고기 1근	3.52	30
	복이 20마리	1.65	40
	무명실	0.16	8
	합계	74.95	1,985

1938~1942년 시기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외무역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한 것은 조선경제의 성격에 일부 변화가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던 것은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보다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대외무역에서 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무역적자액이 31억 4천여만 엔이나 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시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조선과 일본의 관세가 폐기되어 일본상품이 아무런 장애 없이 조선에 침투할 수 있었고, 대외무역에서는 적극적인 통제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의 무역수지 적자는 조선경제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시기까지도 무역수지 적자는 재정관계상 중요한 문제를 초래하였고 일본정부는 식민통치를 위하여 보충금 등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들어와서는 임시군사비 지출이 증대하였고 조선총독부재정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유출되는 자금이 증대하여 전체 재정수지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⁷⁷⁾ 그리하여

가격과 암시장 가격의 차이는 상당히 심하였다. 1944년 5월 전국 12개 도시의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당시 중요 소비물자의 공정 가격과 암시장 가격의 격차는 상품별로 화학제품(고무신 12배)이 가장 컸으며 백미(10배), 설탕(10배) 등도 격차가 큰 제품이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소비재 생산의 기반이 취약하고 만주와 인접해 있던 북부 지역에서 공정가격과 암시장가격의 격차가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조사한 전 제품의 공정가격과 암시장가격의 평균배율은 7.2배였다. 金東昱, 1994, 〈1940~1950년대 韓國의 인플레이션과 安定化政策〉,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6~27쪽. 또한 1944년 6월에 행해진 東亞經濟懇談會 朝鮮委員會의 조사에 의하면 조선내의 암시장가격은 공정가격에 비해 평균 6배 이상이었다. 大藏省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通卷八, 冊朝鮮編 第七分冊, 63쪽.

77) 禹明東의 연구에 의하면 이시기 조선총독부특별회계로부터 일본정부회계로의 전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일제시대 전시기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유입된 보충금 총액 468,988천 엔의 3.9배에 해당하는 1,835,074천 엔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유출됨으로써 일본은 조선을 식민통치 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禹明東, 1897, 〈일제하 조선재정의 구조와 성격, 고려대박사학위논문, 126쪽.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수탈을 자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시킬 기구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는 곧 식민지무역구조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관세영역이 통일되는 시점에서 조선은 일제의 전시통제정책에 의하여 내부적인 사정과는 무관하게 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경제구조의 왜곡은 더욱 심화되었다. 대표적으로 중일전쟁 이후 조선은 전시하 식량공급기지가 되었다. 조선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식량의 절대부족과 1939년의 대한해를 계기로 적극적인 식량증산정책과 공출정책이 실시되었지만 증산정책은 성과를 얻지 못하고 공출정책만이 더욱 강력하게 시행되었다.⁷⁸⁾ 그리하여 전시하에 조선인들의 식량소비량은 더욱더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수이출입 상품구조 분석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 예측화된 상황에서 조선인들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일제는 이전시기 조선인 상층 자본가를 포섭하기 위한 개량화정책을 폐기

〈표 8-15〉 1937~1945년 시기의 수이출입 비율(%)

연도	수이출			수이입		
	수출	이출	합계	수입	이입	합계
1937	16.5	83.5	100.0	14.8	85.2	100.0
1938	19.2	80.8	100.0	12.7	87.3	100.0
1939	26.8	73.2	100.0	11.5	88.5	100.0
1940	21.8	78.2	100.0	14.2	85.8	100.0
1941	19.0	81.0	100.0	11.2	88.8	100.0
1942	20.4	79.6	100.0	8.3	91.7	100.0
1943	27.2	72.8	100.0	15.9	84.1	100.0
1944	20.7	79.3	100.0	19.5	80.5	100.0
1945	100.0	0.0	100.0	100.0	0.0	100.0
합계	22.3	77.7	100.0	14.2	85.8	100.0

78) 이송순, 1995, 〈日帝末(1937~1945) 朝鮮의 農村經濟 變化—米穀供出을 중심으로—〉《史叢》44, 고대사학회, 208쪽.

하고 모든 계층을 전면적으로 수탈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⁷⁹⁾

수입 부문에 있어서는 1942년까지는 수입비율이 감소하다가 이후에는 증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단순히 무역구조의 개선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연합군의 공습으로 조선과 일본과의 무역도 곤란을 겪은 데 기인하는 것이다.⁸⁰⁾ 특히 1945년에 조선과 일본 간에는 무역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식민지무역구조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2) 수출입시장의 아시아 편중

(1) '특별관세정책' 시기 수출입시장의 아시아 편중화

조선무역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일무역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비중이 압도적이라 하여 일본과의 무역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한다면 실질적인 대외무역의 경향성을 놓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조선의 시장별 무역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⁸¹⁾

〈표 8-16〉은 이 시기의 대륙별 국가별 수출 가액과 그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⁸²⁾

이에 의하면 아시아로의 수출 가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는데 반하여 유럽으로의 수출 가액은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미주로의 수출은 각 연도마다 기복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정체적이었다. 유럽이나 미주로의 수출은 특정 연도의 특정 국가에 예외적으로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당히 미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의 수출시장은 아시아로 국한되어 있어 그 대상지역이 상당히 협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륙별 비율을 살펴보면 아시아가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1919년에 97.99%를 차지하였다.

이 시기 조선의 주요 수출대상국을 국가별로 순위를 파악하면 중국, 노령아세아(露領亞細亞), 미국, 러시아, 영국 등의 순서였다. 특히 중국과 노령아세아의 수출 총액이 전체의 92.62%나 차지하고 있어 이 시기 대외수출은 국가별로 볼 때도 상당히 편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해마다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령아세아의 경우 1915~1916년 시기 동안에 수출액이 급증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조금씩 증감을 거듭하다 1917년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각 연도마다 기복이 심하였다. 러시아의 경우는 미국보다도 훨씬 심하였는데 1917년 17.16%를 차지하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수준이었다.⁸³⁾

79) 鄭泰憲, 1996,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조선정책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참조.

80) 김인호, 〈앞의 책〉 참조.

81) 종전의 연구에서는 시장분석을 할 때 일본을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일본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외국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930년대 수출문제를 부각시켜 엔블록과 제삼국무역으로 나누면서 엔블록이 갑자기 부상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새로운 수출시장의 출현으로 조선경제가 질적으로 발전하였다는 식의 논리를 가하고 있다. 엔블록의 출현 이전에도 이미 조선의 대외수출시장은 대부분 1930년대 엔블록이라 지칭되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살필 수 있다.

82) 露領亞細亞는 Asiatic Russia를 日譯한 것으로 현재의 연해주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蘭領印度는 Dutch India를 日譯한 것으로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현재의 인도네시아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佛領印度는 French Indo-China를 日譯한 것으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현재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英領海峽殖民地는 British Straits Settlement를 日譯한 것으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현재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英領印度는 British India를 日譯한 것으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현재의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83) 이시기까지 노령아시아는 제2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해에 갑자기 러시아가 주요한 수출국

〈표 8-16〉 1910~1919년 시기의 대륙별 국가별 수출 가액 비율 (단위: 천 엔)

	국가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합계
아 시 아	중국	가액	3,026	3,009	4,058	4,184	4,518	5,599	8,062	11,954	15,096	17,040	76,545
		비율	66.72%	54.55%	72.25%	75.18%	77.87%	65.17%	58.26%	62.75%	88.88%	85.98%	72.68%
	蘭領印度	가액	0	0	0	0	0	0	0	0	3	6	9
		비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2%	0.03%	0.01%
	露領 亞細亞	가액	1,155	1511	1,245	1,010	1,109	2,904	4,715	3,449	1,599	2,301	20,999
		비율	25.48%	27.39%	22.17%	18.15%	19.12%	33.80%	34.08%	18.10%	9.42%	11.61%	19.94%
	佛領印度	가액	0	0	0	0	0	0	0	0	0	3	3
		비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英領印度	가액	0	0	0	0	0	0	0	0	0	1	2
		비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英領海峽 植民地	가액	0	0	1	0	0	1	0	2	16	40	60
		비율	0.00%	0.00%	0.01%	0.01%	0.00%	0.01%	0.00%	0.01%	0.10%	0.20%	0.06%
	기타	가액	11	14	6	25	7	10	22	27	31	28	182
		비율	0.24%	0.26%	0.11%	0.44%	0.11%	0.11%	0.16%	0.14%	0.19%	0.14%	0.17%
합계		가액	4,192	4,534	5,310	5,219	5,634	8,514	12,800	15,431	16,749	19,419	97,800
		비율	92.44%	82.19%	94.55%	93.79%	97.10%	99.10%	92.50%	81.01%	98.60%	97.99%	92.86%
유 럽	영국	가액	25	1	198	235	43	12	67	10	1	15	606
		비율	0.55%	0.02%	3.52%	4.22%	0.75%	0.14%	0.48%	0.05%	0.00%	0.07%	0.58%
	독일	가액	13	20	6	3	4	0	0	0	0	0	46
		비율	0.29%	0.37%	0.10%	0.06%	0.06%	0.00%	0.00%	0.00%	0.00%	0.00%	0.04%
	러시아	가액	0	0	0	0	0	0	0	3,268	11	2	3,282
		비율	0.00%	0.00%	0.00%	0.00%	0.01%	0.00%	0.00%	17.16%	0.06%	0.01%	3.12%
	프랑스	가액	0	5	2	4	2	2	0	0	0	0	16
		비율	0.00%	0.09%	0.04%	0.07%	0.03%	0.02%	0.00%	0.00%	0.00%	0.00%	0.01%
	기타	가액	0	1	3	13	13	6	0	0	0	1	36
		비율	0.00%	0.01%	0.05%	0.23%	0.23%	0.07%	0.00%	0.00%	0.00%	0.00%	0.03%
합계		가액	38	27	209	254	62	20	68	3,278	12	17	3,984
		비율	0.83%	0.49%	3.71%	4.57%	1.07%	0.23%	0.49%	17.21%	0.07%	0.09%	3.78%
미 주	미국	가액	305	953	96	90	92	32	964	337	116	336	3,320
		비율	6.72%	17.28%	1.70%	1.61%	1.59%	0.38%	6.96%	1.77%	0.68%	1.70%	3.15%
	캐나다	가액	0	0	0	0	0	7	2	1	0	4	15
		비율	0.00%	0.00%	0.00%	0.01%	0.01%	0.08%	0.02%	0.00%	0.00%	0.02%	0.01%
합계		가액	305	953	96	90	93	39	966	338	116	340	3,335
		비율	6.72%	17.28%	1.71%	1.62%	1.60%	0.46%	6.98%	1.77%	0.68%	1.72%	3.17%
기 타 주	이집트	가액	0	0	0	0	5	0	0	0	9	35	49
		비율	0.00%	0.00%	0.00%	0.00%	0.08%	0.00%	0.00%	0.00%	0.06%	0.18%	0.05%
	기타	가액	0	1	2	2	8	18	4	3	101	6	145
		비율	0.01%	0.01%	0.03%	0.03%	0.15%	0.22%	0.03%	0.01%	0.60%	0.03%	0.14%
합계		가액	0	1	2	2	13	18	4	3	111	41	194
		비율	0.01%	0.01%	0.03%	0.03%	0.23%	0.22%	0.03%	0.01%	0.65%	0.21%	0.18%
총합계		가액	4,535	5,516	5,617	5,922	6,448	9,320	14,855	20,233	18,698	22,099	113,243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전: 《朝鮮貿易年表》 각년판.

* 국가별 통계에는 수출입의 경우 未詳(누락되어 알 수 없는 것) 부분과 수입의 경우 보세창고 부분이 따로 표기되어 있으나 생략함(이하 동일함).

영국의 경우도 기복이 심하였다. 이것은 수출시장으로서 안정성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기 조선의 안정된 대외 수출 시장은 중국과 노령아세아뿐이고 노령아세아도 점차 중요한 위치를 상실해 감으로써 대외시장이 중국으로 편중되어 가는 과정을 살필 수 있다.

〈표 8-17〉에 따르면 대륙별 수입액의 경우, 1910~1919년 시기의 총액에서 역시 1위는 아시아였고 다음이 미주, 유럽 순서였다. 하지만 1910~1912년은 후반의 상황과는 달리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곳은 유럽이었다. 유럽은 수입총합계에서 45~4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가 점차적으로 그 비중이 떨어져 1919년의 경우 겨우 6.24%만을 점하였을 뿐이었다. 유럽은 비율뿐만 아니라 가액에서도 떨어졌는데, 이와 같이 되었던 결정적 원인은 제1차 세계대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주의 경우 1917년에 38.52%를 차지하였을 뿐 이 시기 내내 21~29%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반면 아시아의 비율은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였는데, 1910년에 28.70%에 지나지 않았던 아시아의 비율은 점차 커져서 1919년에 68.17%를 차지하는 정도가 되었다.

이와 같이 수출과는 달리 수입에서는 이 시기 초반에는 유럽시장의 비율이 높았고 아시아는 미주와도 별 차이가 없이 20%대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 후반에 올수록 아시아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조선의 대외무역은 급속히 협소화하고 있었지만 다른 대륙의 경우도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 시기의 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고무되어 조선총독부에서는 시베리아를 비롯한 러시아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朝鮮總督府, 1918, 〈西伯利に關する調査〉《朝鮮彙報》1918년 4월호, 호외 참조.

〈표 8-17〉 1910~1919년 시기의 대륙별 국가별 수입 가액 비율 (단위: 천 엔)

대륙	국가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합계
아시아	중국	가액	3,845	5,442	7,027	9,765	7,761	8,022	9,565	12,669	22,725	60,600	147,422
		비율	26.64%	27.17%	26.66%	31.35%	32.09%	45.41%	43.48%	41.96%	55.38%	63.21%	45.65
	蘭領印度	가액	196	360	326	332	328	224	187	142	1,027	2,284	5,407
		비율	1.35%	1.80%	1.24%	1.06%	1.36%	1.27%	0.85%	0.47%	2.50%	2.38%	1.67
	露領 亞細亞	가액	18	49	73	64	103	107	171	164	423	720	1,892
		비율	0.12%	0.25%	0.28%	0.21%	0.42%	0.61%	0.78%	0.54%	1.03%	0.75%	0.59
	佛領印度	가액	0	0	4	692	403	43	11	313	1,030	338	2,834
		비율	0.00%	0.00%	0.02%	2.22%	1.67%	0.24%	0.05%	1.04%	2.51%	0.35%	0.88
	英領印度	가액	24	82	103	1219	507	99	230	239	246	281	3,031
		비율	0.16%	0.41%	0.39%	3.91%	2.10%	0.56%	1.05%	0.79%	0.60%	0.29%	0.94
	英領海峽 植民地	가액	31	50	31	54	59	56	80	116	233	254	964
		비율	0.21%	0.25%	0.12%	0.17%	0.24%	0.32%	0.36%	0.39%	0.57%	0.26%	0.30
	기타	가액	30	69	252	1,114	1,889	300	101	510	877	878	6,020
		비율	0.20%	0.34%	0.96%	3.58%	7.81%	1.70%	0.46%	1.69%	2.14%	0.92%	1.86
유럽	합계	가액	4,143	6,054	7,817	13,239	11,050	8,850	10,346	14,152	26,562	65,356	167,569
		비율	28.70%	30.22%	29.66%	42.50%	45.69%	50.10%	47.03%	46.87%	64.73%	68.17%	51.89
	영국	가액	6,227	7,924	9,802	7,545	5,434	4,280	4,593	4,057	3,506	5,576	58,944
		비율	43.14%	39.56%	37.19%	24.22%	22.47%	24.23%	20.88%	13.44%	8.54%	5.82%	18.25
	독일	가액	488	1,311	1,592	1,686	918	191	121	22	3	8	6,341
		비율	3.38%	6.55%	6.04%	5.41%	3.79%	1.08%	0.55%	0.07%	0.01%	0.01%	1.96
	러시아	가액	16	13	29	65	79	45	48	57	11	236	598
		비율	0.11%	0.07%	0.11%	0.21%	0.33%	0.25%	0.22%	0.19%	0.03%	0.25%	0.19
	프랑스	가액	96	91	89	115	71	70	46	48	29	87	742
		비율	0.67%	0.46%	0.34%	0.37%	0.29%	0.40%	0.21%	0.16%	0.07%	0.09%	0.23
	기타	가액	228	260	405	443	360	174	103	137	85	71	2,265
		비율	1.58%	1.30%	1.54%	1.42%	1.49%	0.99%	0.47%	0.45%	0.21%	0.07%	0.70
	합계	가액	7,054	9,599	11,917	9,855	6,862	4,760	4,911	4,321	3,634	5,978	68,890
		비율	48.87%	47.93%	45.21%	31.63%	28.37%	26.94%	22.32%	14.31%	8.86%	6.24%	21.33
미주	미국	가액	3,205	4,261	6,460	7,850	6,127	3,934	6,552	11,610	10,341	24,182	84,520
		비율	22.20%	21.27%	24.51%	25.20%	25.33%	22.27%	29.78%	38.45%	25.20%	25.22%	26.17
	캐나다	가액	9	64	70	81	46	22	42	20	247	89	689
		비율	0.06%	0.32%	0.27%	0.26%	0.19%	0.12%	0.19%	0.07%	0.60%	0.09%	0.21
	합계	가액	3,213	4,325	6,530	7,930	6,173	3,955	6,594	11,630	10,588	24,271	85,210
		비율	22.26%	21.59%	24.77%	25.46%	25.52%	22.39%	29.98%	38.52%	25.80%	25.32%	26.39
기타주	이집트	가액	3	8	7	5	3	5	5	7	3	19	64
		비율	0.02%	0.04%	0.03%	0.02%	0.01%	0.03%	0.02%	0.02%	0.01%	0.02%	0.02
	기타	가액	19	41	84	106	95	93	143	82	249	244	1,155
		비율	0.13%	0.20%	0.32%	0.34%	0.39%	0.52%	0.65%	0.27%	0.61%	0.25%	0.36
	합계	가액	23	48	91	110	98	98	147	89	252	263	1,219
		비율	0.16%	0.24%	0.35%	0.35%	0.40%	0.56%	0.67%	0.29%	0.62%	0.27%	0.38
	총합계	가액	14,435	20,029	26,359	31,618	24,648	18,159	22,675	31,396	43,152	98,159	330,630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전: 《朝鮮貿易年表》 각년판.

국가별로 볼 때 주요 수입대상국의 순위를 파악하면 중국, 미국, 영국, 독일, 난령인도(蘭領印度) 순서였다. 수출과 달리 수입의 경우 중국은 초기에는 수입국가로서는 2위의 위치에 있었으나, 해마다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여 1913년 이후부터는 1위에 올랐고 그 이후에도 계속 비율이 높아졌다. 미국의 경우 1917년 38.45%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21~25%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가액면에서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하게 줄어들어 비율뿐만 아니라 가액에서도 급속하게 감소하였다. 그리하여 수입의 경우에도 이들 주요 세나라가 90.08%를 차지하여 대부분 이들 국가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출의 경우와는 달리 이 시기에는 미국과 영국이 전체 수입액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 시기에 아시아가 수입시장에서 차지하였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다음 시기와는 달리 구미시장도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였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선이 식민지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과도기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2) ‘관세동화정책’ 시기 수출입시장의 아시아 편중 심화

〈표 8-18〉은 1920~1931년 시기의 대륙별 국가별 수출액과 그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이 시기에 아시아시장이 수출액에 있어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비율은 96~99% 대를 유지하였다. 이는 여타 지역이 수출시장으로서 거의 기능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위는 미주, 3위는 기타대륙으로 유럽은 기타대륙에도 밀렸으며 유럽이나 미주의 경우에는 가액에서도 엄청나게 감소하였다.

국가별로 그 순위를 보면 중국, 노령아세아, 미국, 영령해협식민지

〈표 8-18〉 1920~1931년 시기의 대륙별 국가별 수출 가액 비율 (단위: 천 엔)

대륙	국가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합계
아 시 아	중국	가액	19,367	19,229	16,661	19,835	21,399	23,416	23,597	27,283	31,421	34,746	24,578	12,086	273,619
		비율	85.78%	92.07%	95.26%	97.22%	95.62%	96.20%	95.23%	96.98%	97.74%	97.13%	95.07%	94.63%	95.16%
	蘭領印度	가액	7	28	12	13	49	85	94	82	31	101	72	65	639
		비율	0.03%	0.14%	0.07%	0.06%	0.22%	0.35%	0.38%	0.29%	0.10%	0.28%	0.28%	0.51%	0.22%
	露領 亞細亞	가액	2,213	1,095	552	278	218	168	123	123	46	39	27	23	4,828
		비율	9.46%	5.24%	3.15%	1.36%	0.98%	0.69%	0.49%	0.44%	0.14%	0.11%	0.11%	0.18%	1.68%
	佛領印度	가액	8	10	19	0	17	136	129	98	33	30	62	33	576
		비율	0.04%	0.05%	0.11%	0.00%	0.08%	0.56%	0.52%	0.35%	0.10%	0.08%	0.24%	0.26%	0.20%
	英領印度	가액	41	7	1	1	2	11	82	22	19	7	5	9	207
		비율	0.18%	0.04%	0.01%	0.00%	0.01%	0.04%	0.33%	0.08%	0.06%	0.02%	0.02%	0.07%	0.07%
	英領海峽 植民地	가액	77	133	82	132	139	200	249	246	157	313	173	155	2,058
		비율	0.34%	0.64%	0.47%	0.65%	0.62%	0.82%	1.00%	0.88%	0.49%	0.87%	0.67%	1.22%	0.72%
	기타	가액	54	31	21	27	400	149	105	97	89	178	122	115	1,387
		비율	0.24%	0.15%	0.12%	0.13%	1.79%	0.61%	0.42%	0.34%	0.28%	0.50%	0.47%	0.90%	0.48%
	합계	가액	21,689	20,534	17,348	20,286	22,226	24,164	24,379	27,952	31,796	35,413	25,040	12,486	283,313
		비율	96.07%	98.32%	99.19%	99.43%	99.31%	99.27%	98.39%	99.35%	98.90%	98.99%	96.86%	97.76%	98.53%
유 럽	영국	가액	213	4	4	5	12	2	3	31	131	3	26	4	437
		비율	0.94%	0.02%	0.02%	0.02%	0.05%	0.01%	0.01%	0.11%	0.41%	0.01%	0.10%	0.03%	0.15%
	독일	가액	354	0	5	1	7	2	1	2	4	2	2	4	384
		비율	1.57%	0.00%	0.03%	0.00%	0.03%	0.01%	0.01%	0.01%	0.01%	0.00%	0.01%	0.03%	0.13%
	프랑스	가액	0	1	2	6	1	0	1	0	0	1	1	2	16
		비율	0.00%	0.00%	0.01%	0.03%	0.00%	0.00%	0.01%	0.00%	0.00%	0.00%	0.01%	0.01%	0.01%
	기타	가액	1	1	0	0	0	0	18	1	4	1	1	1	29
		비율	0.01%	0.00%	0.00%	0.00%	0.00%	0.00%	0.07%	0.00%	0.01%	0.00%	0.00%	0.01%	0.01%
	합계	가액	569	5	11	12	19	5	24	33	139	6	31	11	866
		비율	2.52%	0.03%	0.06%	0.06%	0.08%	0.02%	0.10%	0.12%	0.43%	0.02%	0.12%	0.09%	0.30%
미 주	미국	가액	266	302	126	99	127	168	172	140	204	342	210	123	2,279
		비율	1.18%	1.45%	0.72%	0.48%	0.57%	0.69%	0.69%	0.50%	0.64%	0.96%	0.81%	0.96%	0.79%
	캐나다	가액	0	1	1	1	2	1	2	4	4	3	4	2	25
		비율	0.00%	0.00%	0.00%	0.01%	0.01%	0.01%	0.01%	0.02%	0.01%	0.01%	0.02%	0.01%	0.01%
	기타	가액	0	0	0	0	0	0	0	0	0	1	0	0	3
		비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가액	267	303	127	100	128	170	174	145	209	345	214	125	2,307
		비율	1.18%	1.45%	0.72%	0.49%	0.57%	0.70%	0.70%	0.52%	0.65%	0.96%	0.83%	0.98%	0.80%
기 타 주	이집트	가액	46	0	1	0	0	0	185	0	0	0	540	144	917
		비율	0.20%	0.00%	0.01%	0.00%	0.00%	0.00%	0.75%	0.00%	0.00%	0.00%	2.09%	1.13%	0.32%
	기타	가액	6	43	3	5	6	4	16	4	5	9	26	6	133
		비율	0.03%	0.20%	0.02%	0.02%	0.03%	0.01%	0.07%	0.01%	0.02%	0.03%	0.10%	0.05%	0.05%
	합계	가액	52	43	4	5	6	4	202	4	5	9	566	150	1,050
		비율	0.23%	0.20%	0.02%	0.02%	0.03%	0.01%	0.81%	0.01%	0.02%	0.03%	2.19%	1.17%	0.37%
총합계		가액	27,639	20,885	17,449	20,403	22,379	24,342	24,779	28,134	32,149	35,773	25,852	12,772	292,597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전: 《朝鮮貿易年表》각년판.

(英領海峽植民地), 이집트가 상위 5개국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비율은 1920년 85.78%로 다른 국가를 압도하였으며 이 비율도 대체적으로 증가하여 1931년에는 94.63%를 기록하였다.⁸⁴⁾ 이는 이제 조선의 수출은 일본을 제외하고도 중국과의 교역으로 한정됨으로써 조선의 수출시장이 더욱더 협소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노령아세아의 경우 일본이 무역기구를 별도로 설립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⁸⁵⁾ 비율이 엄청나게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액도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 밖의 국가에 있어서는 규모에서 상당히 적었을 뿐만 아니라 간혹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극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표 8-19〉에 따르면 대륙별 수입액의 경우, 1920년대 총합계에서 1위를 차지한 시장은 역시 아시아였고 다음이 미주, 유럽 순이었다. 1910~1919년 시기에도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이 시기에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에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73.90%였는데 1931년에는 79.87%가 되었다.

아시아의 비율 증가와 맞물려 미주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미주의 경우 1910~1919년 시기에는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 시기에는 그나마도 유지하지 못하였다. 1920년에 20.14%를 차지하였던 미주의 비율은 1931년에는 8.79%로 하락하였다. 유럽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84) 그리하여 조선총독부는 중국의 관세제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총독은 “조선의 대외무역은…(중략)…지세의 관계상 대중국무역이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제도 특히 그 수출입세제도가 조선의 무역 및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관민이 공동으로 대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朝鮮總督府, 〈總督訓示〉, 1929. 7, 《朝鮮》170, 朝鮮總督府, 134쪽.

85) 加藤巡吉, 1924, 〈露支貿易機關設立意見〉《朝鮮》106, 朝鮮總督府 참조.

〈표 8—19〉 1920~1931년 시기의 대륙별 국가별 수입입 가액 비율 (단위: 천 원)

대륙	국가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합계
아 시 아	중국	가액	67,834	50,189	62,788	74,560	73,010	83,362	92,312	89,954	81,086	73,059	60,945	39,507	848,606
		비율	70.78%	66.13%	65.54%	75.82%	74.67%	79.10%	74.49%	78.95%	68.63%	67.79%	68.59%	74.97%	72.26%
	蘭領印度	가액	1,499	1,528	2,354	3,131	4,300	4,573	4,543	5,646	7,399	6,347	4,848	1,488	47,657
		비율	1.56%	2.01%	2.46%	3.18%	4.40%	4.34%	3.67%	4.96%	6.26%	5.89%	5.46%	2.82%	4.06%
	露領 亞細亞	가액	403	377	864	855	1,001	922	871	466	859	1,084	1,005	263	8,968
		비율	0.42%	0.50%	0.90%	0.87%	1.02%	0.87%	0.70%	0.41%	0.73%	1.01%	1.13%	0.50%	0.76%
	佛領印度	가액	16	4	0	59	71	578	3,718	336	3,885	3,303	2,829	25	14,825
		비율	0.02%	0.01%	0.00%	0.06%	0.07%	0.55%	3.00%	0.30%	3.29%	3.07%	3.18%	0.05%	1.26%
	英領印度	가액	204	351	435	655	449	245	6,952	1,838	3,948	4,194	2,219	358	21,848
		비율	0.21%	0.46%	0.45%	0.67%	0.46%	0.23%	5.61%	1.61%	3.34%	3.89%	2.50%	0.68%	1.86%
	英領海峽 植民地	가액	273	160	301	79	8	11	145	106	414	382	479	184	2,543
		비율	0.28%	0.21%	0.31%	0.08%	0.01%	0.01%	0.12%	0.09%	0.35%	0.35%	0.40%	0.35%	0.22%
	기타	가액	601	251	337	262	292	249	1,373	782	1,926	772	1,437	263	8,546
		비율	0.63%	0.33%	0.35%	0.27%	0.30%	0.24%	1.11%	0.69%	1.63%	0.72%	1.62%	0.50%	0.73%
	합계	가액	70,830	52,859	67,079	79,601	79,132	89,940	109,914	99,128	99,517	89,141	73,762	42,088	952,992
		비율	73.90%	69.64%	70.02%	80.95%	80.93%	85.34%	88.69%	87.00%	84.23%	82.72%	83.01%	79.87%	81.15%
유 럽	영국	가액	4,932	7,808	8,078	5,982	5,491	5,142	5,737	4,984	5,152	3,747	2,461	1,313	60,828
		비율	5.15%	10.29%	8.43%	6.08%	5.62%	4.88%	4.63%	4.37%	4.36%	3.48%	2.77%	2.49%	5.18%
	독일	가액	175	203	914	966	717	417	622	845	3,585	3,075	1,711	1,312	14,540
		비율	0.18%	0.27%	0.95%	0.98%	0.73%	0.40%	0.50%	0.74%	3.03%	2.85%	1.93%	2.49%	1.24%
	프랑스	가액	78	76	114	141	126	125	182	100	103	109	90	62	1,306
		비율	0.08%	0.10%	0.12%	0.14%	0.13%	0.12%	0.15%	0.09%	0.09%	0.10%	0.10%	0.12%	0.11%
	기타	가액	157	311	370	262	278	80	84	185	486	562	717	205	3,697
		비율	0.16%	0.41%	0.39%	0.27%	0.28%	0.08%	0.07%	0.16%	0.41%	0.52%	0.81%	0.39%	0.31%
	합계	가액	5,342	8,398	9,477	7,350	6,612	5,764	6,625	6,114	9,326	7,492	4,980	2,892	80,372
		비율	5.57%	11.06%	9.89%	7.47%	6.76%	5.47%	5.35%	5.37%	7.89%	6.95%	5.60%	5.49%	6.84%
미 주	미국	가액	19,238	14,374	18,069	11,173	11,448	9,399	6,636	8,208	8,314	9,803	8,613	4,552	129,827
		비율	20.07%	18.94%	18.86%	11.36%	11.71%	8.92%	5.35%	7.20%	7.04%	9.10%	9.69%	8.64%	11.05%
	캐나다	가액	61	28	108	110	212	254	319	120	332	328	82	33	1,986
		비율	0.06%	0.04%	0.11%	0.11%	0.22%	0.24%	0.26%	0.11%	0.28%	0.30%	0.09%	0.06%	0.17%
	기타	가액	5	5	405	1	2	7	2	140	2	0	54	45	669
		비율	0.01%	0.01%	0.42%	0.00%	0.00%	0.01%	0.00%	0.12%	0.00%	0.00%	0.06%	0.08%	0.06%
	합계	가액	19,304	14,407	18,582	11,284	11,662	9,660	6,957	8,469	8,648	10,131	8,749	4,630	132,482
		비율	20.14%	18.98%	19.40%	11.47%	11.93%	9.17%	5.61%	7.43%	7.32%	9.40%	9.85%	8.79%	11.28%
기 타 주	이집트	가액	5	1	42	6	4	1	1	6	8	3	1	0	79
		비율	0.01%	0.00%	0.04%	0.01%	0.00%	0.00%	0.00%	0.01%	0.01%	0.00%	0.00%	0.00%	0.01%
	기타	가액	363	234	617	98	366	23	437	227	105	67	126	33	2,694
		비율	0.38%	0.31%	0.64%	0.10%	0.37%	0.02%	0.35%	0.20%	0.09%	0.06%	0.14%	0.06%	0.23%
	합계	가액	368	234	660	104	370	24	438	233	113	70	127	34	2,773
		비율	0.38%	0.31%	0.69%	0.11%	0.38%	0.02%	0.35%	0.20%	0.10%	0.06%	0.14%	0.06%	0.24%
	총합계	가액	106,715	75,899	95,798	98,338	97,776	105,388	123,934	113,943	118,151	107,768	88,855	52,696	1,184,721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전: 《朝鮮貿易年表》 각년판.

5%대의 비율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대륙별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아시아의 비율이 급증하게 되고 조선의 대외무역은 더욱더 협소화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주요한 수입대상국은 중국, 미국, 영국, 난령인도, 영령인도(英領印度) 순서였다. 수입의 경우에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국가를 압도하였고 그 비율도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에 70.78%를 차지하였던 것이 1931년에는 74.97%를 기록하였다. 또 미국의 경우는 그 비율이 대체적으로 감소하였다. 미국에서의 수입은 1920년 20.07%였던 것이 1931년에는 8.64%로 급락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비율에서만 아니라 가액에서도 상당히 감소하였다. 영국의 경우도 상당히 감소하여 1920년 5.15%였던 것이 1931년에는 2.49%를 기록하였다. 영국도 비율에서만 아니라 가액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난령인도와 영령인도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렇다고 해도 그 규모는 미미한 것이어서 국가별로 수입 대상국을 보더라도 무역시장이 더욱더 협소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에는 일본으로의 수출입 비율이 더욱더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본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경우 수출입 모두 아시아로 한정되었고,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으로의 편중현상이 심화되었다. 이것은 이 시기 수출입시장구조를 파악할 때 커다란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3) ‘무역진흥정책’ 시기 수출입시장의 다변화

〈표 8—20〉은 이 시기의 대륙별 국가별 수출액과 그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대륙별 수출액의 경우 1위는 아시아, 2위는 미주,

3위는 기타대륙의 순으로 그 순서에 있어서는 1920~1931년 시기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모든 대륙으로의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었음이 특징적이다. 이는 종전에는 아시아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정체 내지 감소하였던 경향과는 크게 대비되는 현상이다.

전체 수출액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32년 97.89%에서 1936년에 94.01%로 그 이전과는 달리 약간 감소하였다. 반면 유럽, 미주, 기타대륙의 경우 미미하기는 해도 그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에 있었다. 비율에서 약간 떨어지긴 하였어도 아시아도 가액에서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수출에서는 전체적으로 호조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별로 주요한 수출대상국을 파악하면 만주국, 관동주, 중국, 미국, 홍콩 등의 순서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모든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전에 가장 중요한 수출국이었던 중국은 3위로 밀려나고⁸⁶⁾ 중국과 분리된 만주국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중국과의 교역은 주로 만주 지역과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만주국의 수립으로 만주 지역으로의 수출은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⁸⁷⁾

86) 澁谷禮治는 만주사변 이후 중국과의 교역의 급격하게 감소하였지만 생활필수품인 천일염과 중국마포는 상당액을 수입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소금은 관동주염이 풍부하고 조선내 염전의 확장에 의해 감소해갔으며 중국마포도 그 대용품을 조선 내에서 공급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수입액은 감소할 것이라 예견하였다. 당시까지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은 필수품이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쉽게 역제가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澁谷禮治, 1933, 《朝鮮對滿洲並に對支那貿易の消長と其の將來》《朝鮮》217, 朝鮮總督府, 35~36쪽.

87) 朝鮮銀行調査課, 1934, 《朝鮮の對滿輸出と貿易の將來》, 朝鮮銀行, 12~21쪽. 실제로 만주국이 수립되었던 1932년에 조선과 만주국(관동주포함) 수출입합계는 1931년과 비교하여 58%가 증가하였다.

〈표 8-20〉 1932~1936년 시기의 대륙별 국가별 수출 가액 비율 (단위: 천 엔)

대륙	국가		1932	1933	1934	1935	1936	합계
아시아	蘭東州	가액	0	4,975	5,104	8,010	9,902	27,991
		비율	0.00%	9.43%	8.85%	12.34%	13.05%	9.98%
	만주국	가액	27,205	40,588	48,358	50,034	55,533	221,719
		비율	93.14%	76.91%	83.85%	77.06%	73.21%	79.06%
	중국	가액	948	1,599	2,008	3,313	3,702	11,569
		비율	3.24%	3.03%	3.48%	5.10%	4.88%	4.13%
	蘭領印度	가액	49	103	215	200	265	832
		비율	0.17%	0.20%	0.37%	0.31%	0.35%	0.30%
	佛領印度	가액	4	5	20	30	38	98
		비율	0.01%	0.01%	0.04%	0.05%	0.05%	0.03%
	英領印度	가액	20	116	110	344	389	979
		비율	0.07%	0.22%	0.19%	0.53%	0.51%	0.35%
	英領海峽 植民地	가액	114	222	290	224	245	1,095
		비율	0.39%	0.42%	0.50%	0.34%	0.32%	0.39%
	기타	가액	254	496	734	1,340	1,234	4,058
		비율	0.87%	0.94%	1.27%	2.06%	1.63%	1.45%
합계		가액	28,594	48,104	56,840	63,494	71,308	268,341
		비율	97.89%	91.15%	98.55%	97.79%	94.01%	95.69%
유럽	영국	가액	3	11	4	197	197	412
		비율	0.01%	0.02%	0.01%	0.30%	0.26%	0.15%
	독일	가액	2	711	2	12	10	737
		비율	0.01%	1.35%	0.00%	0.02%	0.01%	0.26%
	프랑스	가액	0	3	1	51	2	58
		비율	0.00%	0.01%	0.00%	0.08%	0.00%	0.02%
	기타	가액	2	18	29	68	83	199
		비율	0.01%	0.03%	0.05%	0.10%	0.11%	0.07%
합계		가액	7	743	36	328	293	1,407
		비율	0.02%	1.41%	0.06%	0.51%	0.39%	0.50%
미주	미국	가액	407	2,747	313	547	994	5,007
		비율	1.39%	5.20%	0.54%	0.84%	1.31%	1.79%
	캐나다	가액	1	1	1	1	12	16
		비율	0.00%	0.00%	0.00%	0.00%	0.02%	0.01%
	기타	가액	0	0	0	55	1,167	1,222
		비율	0.00%	0.00%	0.00%	0.08%	1.54%	0.44%
합계		가액	408	2,748	314	603	2,173	6,246
		비율	1.40%	5.21%	0.54%	0.93%	2.87%	2.23%
기타주	이집트	가액	195	534	417	93	575	1,814
		비율	0.67%	1.01%	0.72%	0.14%	0.76%	0.65%
	기타	가액	5	643	68	411	1,501	2,628
		비율	0.02%	1.22%	0.12%	0.63%	1.98%	0.94%
합계		가액	200	1,178	484	504	2,076	4,442
		비율	0.69%	2.23%	0.84%	0.78%	2.74%	1.58%
총합계			29,210	52,773	57,674	64,902	75,266	279,825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朝鮮貿易年表》 각년판.

첫째, 만주국이 독립하게 되자 그 결과 중국은 만주국의 입장에서 외국이 되었다. 따라서 만주국은 중국에 대하여 외국과 같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중국상품은 조선상품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상인이나 중국군벌과 결탁한 외국상인들이 몰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결국 조선상품은 이전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중국상품과 경쟁할 수 있었다.⁸⁸⁾ 둘째, 만주사변 이후 군대의 출동과 만주거주 일본인의 증가에 따라 미국 등 조선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⁸⁹⁾ 셋째, 이 시기 은가등귀와 엔화 저락, 그리고 지리적으로 조선과 만주가 접경지역이라는 점 등이 작용하였다. 또한 조선과 만주간의 수출무역활성을 위한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정책도 수출이 증가하는데 일조하였다.⁹⁰⁾ 이 밖에도 만주국 수립으로 일화배척운동(日貨排斥運動) 같은 불리한 조건이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1919년 5월 산둥문제⁹¹⁾로 인하여 일화배척운동이 발생하였다. 이 운동은 처음에는 천진(天津) 등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여 조선의 수출에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⁹²⁾ 하지만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

면서 일화배척운동은 전 중국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만주 지역을 비롯한 중국무역이 1930년과 1931년에 급감하게 되는 한 요인이 되었다.⁹³⁾ 따라서 일제는 만주국을 수립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일화배척운동을 철저히 막을 수 있었고, 이런 상황이 만주국으로의 수출을 활성화시켰던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

만주국으로의 수출증가는 또한 일본의 대륙침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만주국으로의 수출품은 이 시기 일제의 이민정책으로 만주에 진출한 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한 물품공급적인 측면이 있다. 만주이민자 가운데 농업경영자를 위한 조선소의 수출도 증가하였고 주요 연료인 무연탄, 연탄도 수출량이 증가하였다.⁹⁴⁾

그런데 이 시기의 수출호황에 대해서는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조선에서 수출하였던 수출품의 생산지에서 차지하는 조선산 제품의 비율이다. 이 시기 조선에서 만주국으로 수출하는 공업제품 중 학술기와 같은 정공업제품(精工業製品)은 거의 일본제품의 중개무역이었으며 이러한 정공업제품의 수출은 조선의 산업과는 연관성이 거의 없었다.⁹⁵⁾ 이런 측면을 아울러 고려해야만 수출 증가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1936년 전체 수출품을 산지별로 분류하면 조선산은 54.4%, 일본산은 43.8%, 외국산은 2.7%로 수출품목에서 조선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을 간신히 넘을 뿐이었다.⁹⁶⁾

88) 일본인들은 만주국 수립이전 만주를 지배하였던 중국의 동북군벌이 일본의 상공업상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비판하였고 그러한 장애가 사라져 만주국과의 교역조건이 유리해졌다고 주장하였다. 澁谷禮治, 1933, 〈朝鮮對滿洲並に對支那貿易の消長と其の將來〉《朝鮮》217, 朝鮮總督府, 19쪽.

89) 滿洲의 新京으로부터의 보도에 의하면 종래 미국은 남아돌아 잉여분의 쌀을 大連지역으로 반출하기도 하였지만 1932년 이후 인구가 급격한 증가와 군대 이동에 의한 수요증가로 쌀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조합은 그 대책을 협의하여 부족한 것을 전부 조선쌀로 충당할 방침이었다. '만주국 경제건설에 관한 성명서'의 농사 개량증식항목에서도 쌀을 제외함으로써 부족한 쌀을 조선쌀로 충당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澁谷禮治, 〈앞의 글〉, 24쪽.

90) 일본인들은 "대만무역의 전도는 유망하다...(중략)...일본의 자본과 기업이 결합하여 산업상 수년의 준비와 경험을 갖는 힘써 노력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선이 가장 우위를 점할 것이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다. 山澤和三郎, 1933, 〈最近に於ける鮮滿貿易について〉《朝鮮》216, 朝鮮總督府 참조. 賀田直治, 1933, 〈對滿貿易について〉《朝鮮》216, 朝鮮總督府 참조.

91)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중국에 대하여 제출한 권익확보, 확대를 위한 21개조에 걸친 요구조항을 둘러싼 분쟁을 충칭한다. 平凡社, 1959, 《アジア歴史事典》, 平凡社 참조.

92) 朝鮮總督府, 1920, 〈支那に於ける日貨排斥運動の朝鮮輸移出貿易に及ぼせる影響〉《朝鮮彙報》참조.

93) 《朝鮮總督府施政年報》1931·1932년판, 138쪽 참조. 실제로 1931년 만주국(관동주포함)과의 수출입 총액은 1930년과 비교하여 37%가 감소하였고 1927년과 비교하면 55%나 감소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는 조선무역의 장래 심지어는 조선의 산업전반에 걸쳐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94) 山澤和三郎, 1933, 〈最近に於ける鮮滿貿易について〉《朝鮮》216, 朝鮮總督府 참조.

95) 李承烈, 〈앞의 글〉, 404쪽.

96) 《朝鮮貿易年表》, 1936년판 참조.

〈표 8-21〉은 이 시기의 대륙별 국가별 수입액과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이 시기 수입액 비율로 볼 때 역시 1위는 아시아였고 다음이 미주, 유럽 순서였다. 비율면에서 볼 때 전체 수입액에서 아시아가 차지하였던 비율은 1932년 79.34%에서 1936년에 82.55%로 수출과는 달리 약간 증가하였다. 유럽, 미주의 경우 미미하기는 해도 그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기타 대륙의 경우만 비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었다. 수입액에 있어서도 기타대륙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에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수입에 있어서도 시장이 다변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주요한 수입대상국을 파악하면 만주국, 중국, 미국, 영국, 관동주 순서였다. 모든 주요 수입대상국의 수입액도 1920~1931년 시기에 정체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증가하는 경향에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조선무역 전체를 놓고 볼 때 다른 시기와는 달리 예외적으로 수출입에 있어서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었고 수출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생김으로써 조선무역협회가 이 시기에 무역구조에 질적 변화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⁹⁷⁾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수출입이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입에서 시장 다변화현상과 그 내용만을 가지고 곧바로 조선무역구조의 질적 발전으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조선무역구조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려면 이 시기 무역규모에서 여전히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일본과의 무역관계에 중점을 두고 이를 먼저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주국이 수립되자 일제는 엔블록의 확대재편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만주국과 조선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긴밀하게 하려고

97) 《朝鮮貿易史》, 96쪽.

〈표 8-21〉 1932~1936년 시기의 대륙별 국가별 수입액 비율 (단위: 천 엔)

대륙	국가		1932	1933	1934	1935	1936	합계
아시아	蘭東州	가액	0	3,690	4,129	4,933	6,643	19,395
		비율	0.00%	5.73%	5.19%	4.90%	5.80%	4.61%
	만주국	가액	42,202	40,765	46,682	49,016	59,403	238,068
		비율	68.41%	63.33%	58.70%	48.73%	51.88%	56.59%
	중국	가액	3,773	5,858	7,796	16,448	15,148	49,024
		비율	6.12%	9.10%	9.80%	16.35%	13.23%	11.65%
	蘭領印度	가액	617	2,138	1,431	3,512	9,727	17,424
		비율	1.00%	3.32%	1.80%	3.49%	8.49%	4.14%
	佛領印度	가액	198	0	71	60	437	766
		비율	0.32%	0.00%	0.09%	0.06%	0.38%	0.18%
	英領印度	가액	220	763	2,619	565	209	4,377
		비율	0.36%	1.19%	3.29%	0.56%	0.18%	1.04%
	英領海峽 植民地	가액	260	127	75	1,724	1,314	3,500
		비율	0.42%	0.20%	0.09%	1.71%	1.15%	0.83%
	기타	가액	1,671	1,761	1,953	2,947	1,639	9,971
		비율	2.71%	2.74%	2.46%	2.93%	1.43%	2.37%
합계		가액	48,941	55,102	64,756	79,205	94,520	342,525
		비율	79.34%	85.60%	81.43%	78.74%	82.55%	81.42%
유럽	영국	가액	1,549	989	976	3,310	5,457	12,280
		비율	2.51%	1.54%	1.23%	3.29%	4.77%	2.92%
	독일	가액	819	423	380	336	1,042	3,001
		비율	1.33%	0.66%	0.48%	0.33%	0.91%	0.71%
	프랑스	가액	58	48	62	281	129	577
		비율	0.09%	0.07%	0.08%	0.28%	0.11%	0.14%
	기타	가액	148	69	141	176	506	1,040
		비율	0.24%	0.11%	0.18%	0.17%	0.44%	0.25%
합계		가액	2,573	1,529	1,559	4,103	7,134	16,899
		비율	4.17%	2.38%	1.96%	4.08%	6.23%	4.02%
미주	미국	가액	5,076	2,195	5,084	7,548	9,152	29,055
		비율	8.23%	3.41%	6.39%	7.50%	7.99%	6.91%
	캐나다	가액	56	485	724	473	526	2,264
		비율	0.09%	0.75%	0.91%	0.47%	0.46%	0.54%
	기타	가액	27	33	385	353	955	1,753
		비율	0.04%	0.05%	0.48%	0.35%	0.83%	0.42%
합계		가액	5,160	2,713	6,193	8,374	10,633	33,073
		비율	8.36%	4.22%	7.79%	8.32%	9.29%	7.86%
기타주	이집트	가액	29	0	0	0	112	141
		비율	0.05%	0.00%	0.00%	0.00%	0.10%	0.03%
	기타	가액	1,442	653	1,310	2,611	545	6,561
		비율	2.34%	1.01%	1.65%	2.60%	0.48%	1.56%
합계		가액	1,471	653	1,310	2,611	657	6,703
		비율	2.38%	1.01%	1.65%	2.60%	0.57%	1.59%
총합계			61,686	64,368	79,527	100,590	114,499	420,67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朝鮮貿易年表》 각년판.

노력하였고 그 결과 ‘선만일여’라는 인식을 형성하였다.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선만일여’는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일제의 대륙침략에 동원하려는 의도가 강한 구호였고 이를 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만주국과 같이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었다.

만주사변 이후 일제는 대만주국무역과 조선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선무역협회를 창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출유망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이러한 대만주국무역의 진흥정책으로 대만주국무역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경제상황이 일부 조선인들이 일제의 경제정책에 적극 협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만주사변으로 인한 만주국 설립은 조선무역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일제의 적극적인 대만주국무역 진흥정책에 힘입어 대만주국무역이 급증하였고 특히 수출증가가 수입증가에 비해 훨씬 컸다. 그리하여 다른 지역과의 수출입이나 일본과의 이출입에 나타나는 항상적인 무역수지 적자와는 달리 대만주국무역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지만 1934년과 1935년의 경우는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당시 무역관계자들로 하여금 대만주국무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끔 하였다.

하지만 만주사변 이후 대만주국무역의 실상을 분석해 보면 일부 조선에서 만주국에 수출하는 공업제품 가운데 상당액수가 중계무역품이고 조선산품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일본인들이 생산한 것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상적인 측면에서 무역발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그 이면에 놓인 실상은 대부분의 조선인들에게 허망한 것이었다. 특히 대만주국 미곡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는데 미곡수출의 증가는 조선 내 미곡이 남아돌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4) ‘전시무역통제정책’ 시기

엔블록무역으로의 편중과 제삼국무역의 악화

중일전쟁 이후 일본인 무역관계자들은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이 오히려 무역발전의 기폭제가 되리라는 기대와 함께 조선무역을 낙관적으로 평가하였다. 엔블록 및 제삼국과의 무역이 모두 증가함으로써 일본의 대륙침략에 공헌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이러한 낙관적 견해는 중국과의 무역만 따로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조선무역이 일제의 중국침략과정에서 대륙병참기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경제를 연구하였던 일본인학자들이 주장한 조선무역의 질적 발전은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조선무역은 조선경제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정치군사적인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표 8-22〉는 이 시기의 대륙별 국가별 수출액과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아시아의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이었고 특히 1943년 이후에는 100%를 차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감소하였는데 다만 독일의 경우 1940년에 그 비율이 폭등하여 7.35%를 차지하였다. 이는 정치적으로 일본과 독일이 밀접하였던 상황이 무역에도 영향을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각 시기마다 기복이 대단히 심하였기 때문에 안정된 수출시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미주나 기타 대륙의 경우도 이 시기에는 그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출대상지역이 1943년 이후에는 아시아로만 한정되었고 여타 지역과는 두절됨으로써 조선의 수출시장이 대단히 협소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8-22〉 1937~1945년 시기의 대륙별 국가별 수출 가액 비율 (단위: 천 엔)

대륙	국가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합계
아시아	蘭東州	가액	20,616	18,738	22,953	20,141	27,272	27,791	19,911	0	0	157,422
		비율	18.19%	11.08%	8.50%	9.75%	14.78%	14.44%	10.39%	0.00%	0.00%	9.91%
	만주국	가액	71,527	122,004	205,149	126,892	103,829	117,002	115,374	151,027	45,444	1,058,248
		비율	63.12%	72.15%	75.99%	61.43%	56.28%	60.80%	60.22%	79.17%	64.10%	66.59%
	중국	가액	4,842	22,155	33,566	39,160	42,145	42,405	47,646	35,020	25,454	292,394
		비율	4.27%	13.10%	12.43%	18.96%	22.85%	22.04%	24.87%	18.36%	35.90%	18.40%
	蘭領印度	가액	1,022	477	635	579	814	290	48	0	0	3,865
		비율	0.90%	0.28%	0.24%	0.28%	0.44%	0.15%	0.03%	0.00%	0.00%	0.24%
	佛領印度	가액	12	7	36	36	1,460	2,200	4,376	1,488	0	9,615
		비율	0.01%	0.00%	0.01%	0.02%	0.79%	1.14%	2.28%	0.78%	0.00%	0.61%
	英領印度	가액	751	429	476	311	155	0	0	0	0	2,122
		비율	0.66%	0.25%	0.18%	0.15%	0.08%	0.00%	0.00%	0.00%	0.00%	0.13%
	英領海峽植民地	가액	414	132	121	367	16	0	0	0	0	1,050
		비율	0.37%	0.08%	0.04%	0.18%	0.01%	0.00%	0.00%	0.00%	0.00%	0.07%
	기타	가액	1,953	732	1,162	736	1,115	1,896	4,246	3,231	0	15,071
		비율	1.72%	0.43%	0.43%	0.36%	0.60%	0.99%	2.22%	1.69	0.00%	0.95%
	합계	가액	101,138	164,674	264,098	188,222	176,806	191,584	191,601	190,766	70,898	1,539,787
		비율	89.26%	97.38%	97.82%	91.13%	95.84%	99.56%	100%	100%	100%	96.90%
유럽	영국	가액	344	157	171	171	0	0	0	0	0	843
		비율	0.30%	0.09%	0.06%	0.08%	0.00%	0.00%	0.00%	0.00%	0.00%	0.05%
	기타	가액	255	119	291	208	0	0	0	0	0	873
		비율	0.23%	0.07%	0.11%	0.10%	0.00%	0.00%	0.00%	0.00%	0.00%	0.05%
	독일	가액	2,262	1,062	337	15,187	6,286	851	0	0	0	25,985
		비율	2.00%	0.63%	0.12%	7.35	3.41%	0.44%	0.00%	0.00%	0.00%	1.64%
	프랑스	가액	8	3	2	0	0	0	0	0	0	14
		비율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가액	2,869	1,341	800	15,566	6,286	851	0	0	0	27,713
		비율	2.53%	0.79%	0.30%	7.54%	3.41%	0.44%	0.00%	0.00%	0.00%	1.74%
미주	미국	가액	1,475	1,281	3,646	1760	490	0	0	0	0	8,652
		비율	1.30%	0.76%	1.35%	0.85%	0.27%	0.00%	0.00%	0.00%	0.00%	0.54%
	캐나다	가액	96	256	200	74	21	0	0	0	0	647
		비율	0.08%	0.15%	0.07%	0.04%	0.01%	0.00%	0.00%	0.00%	0.00%	0.04%
	기타	가액	711	115	188	577	220	0	0	0	0	1,811
		비율	0.63%	0.07%	0.07%	0.28%	0.12%	0.00%	0.00%	0.00%	0.00%	0.11%
	합계	가액	2,282	1,652	4,034	2,411	731	0	0	0	0	11,110
		비율	2.01%	0.98%	1.49%	1.17%	0.40%	0.00%	0.00%	0.00%	0.00%	0.70%
	이집트	가액	4,835	124	132	7	486	0	0	0	0	5,584
		비율	4.27%	0.07%	0.05%	0.00%	0.26%	0.00%	0.00%	0.00%	0.00%	0.35%
기타주	기타	가액	2186	1311	911	343	166	0	0	0	0	4,917
		비율	1.93%	0.78%	0.34%	0.17%	0.09%	0.00%	0.00%	0.00%	0.00%	0.31%
	합계	가액	7,021	1,435	1,042	350	652	0	0	0	0	10,501
		비율	6.20%	0.85%	0.39%	0.17%	0.35%	0.00%	0.00%	0.00%	0.00%	0.66%
총합계		가액	113,098	169,067	269,911	206,385	184,464	192,434	192,100	190,772	70,898	1,589,129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朝鮮貿易年表》 각년판, 《朝鮮經濟年報》 III-44-45쪽.

국가별로 파악하면 주요한 수출대상국의 순위는 만주국, 중국, 관동주, 독일, 불령인도 순서였다. 이 시기에 들어와서도 만주국은 조선의 수출시장으로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다. 조선무역협회 목단강(牧丹江)지부의 경우 동(同) 지역에서 중일전쟁의 확대로 원재료의 구입이 곤란하여 수출 중지 내지 제한으로 조선상품의 영향력 감퇴를 우려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개척보다는 만주국무역의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조선상품의 시장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⁹⁸⁾ 결과적으로는 목단강지부의 의견과 같이 조선의 수출시장으로서의 만주국의 지위는 이 시기 내내 유지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할만한 것은 중국이 제2위의 수출시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1920년대까지는 일본을 제외한 수출시장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지만 만주국수립이후 가액에서 관동주에 마저도 뒤처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다시 수출이 급속하게 성장한 것은 일본의 중국침략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는 조선무역이 일본의 침략전쟁에 이용되었으며 대륙병참기지로서의 조선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무역협회는 종래 만주국과의 무역증진을 위해 주력하였지만 중일전쟁 이후 상해(上海), 청도(靑島), 천진(天津), 북경(北京), 목단강, 청진(淸津)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증설하는 등 기구를 확충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 조선무역협회 상무이사가 중국의 화북·화중지역과 조선무역과의 무역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이 지역을 시찰하였는데 이때 육로는 주로 군용화차를 이용하였고 숙박도 일본군의 편의를 받아 행하였다. 이는 이 시기 중국과의 무역이 군

98) 朝鮮貿易協會 牧丹江支部, 1939, 〈時局と朝鮮貿易品の將來〉《朝鮮貿易協會通報》42, 朝鮮貿易協會, 14쪽.

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⁹⁹⁾ 중국을 지방 별로 보면 산동성 및 호남성에 대한 수출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직후 줄어들었지만 화북 지역은 중국군용물자의 공급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증가하였다.¹⁰⁰⁾ 중국과의 무역증대는 중국에 진출한 일본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¹⁰¹⁾

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미국의 지위는 급격하게 떨어졌고 1942년 이후에는 수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독일과의 수출은 1940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1943년 이후에는 두절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가졌던 일본인들의 낙관된 인식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 조선무역협회 부회장은 교전국의 전시수요 증대, 참전국의 수출력감퇴에 의한 해외시장으로부터의 후퇴, 중립국의 구매력증대로 제2차 세계대전이 장기화하고 확대함에 따라 조선무역도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였다.¹⁰²⁾ 특히 미국과의 수출에 대해서 1939년 7월 오사카상선의 뉴욕급행선이 부산에 정기 기항하게 된 것을 계기로 미국수출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¹⁰³⁾ 그러나 결국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도발함으로써 그 이후의 대외 무역은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의 수출지역은 이른바 일본이 구상한 엔블록지역으로 보다 협소해졌다. 만주국, 중국, 관동주가 전체 수출액 가운데 95%를 차지함으로써 수출

지역이 이들 3개국에 한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에서의 수출장려정책으로 수출이 다소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구조에서는 보다 취약해졌으며 결국 정책방향도 엔블록수출조정책을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¹⁰⁴⁾

〈표 8-23〉은 이 시기의 대륙별 국가별 수입액과 그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아시아의 비율은 가장 높긴 하였지만, 1940년까지는 1932~1936년 시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다가 194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고 1942년 이후에는 99% 이상을, 1944년 이후에는 100%를 차지하였다. 1940년까지 아시아의 비율이 다소 떨어지게 되었던 것은 1940년까지는 미주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주의 비율도 1941년에 급격히 떨어졌고 1944년 이후에는 전혀 수입이 되지 않았다.

유럽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1940년 이후에는 그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고 1944년 이후에는 전혀 수입이 되지 않았다. 기타대륙의 경우도 1940년 8.22%를 차지하였던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미미하였고 1943년 이후에는 전혀 수입이 되지 않았다. 그 리하여 수입대상지역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었던 1941년 이후 급속도로 축소되었고 1944년 이후에는 아시아로 한 정되어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두절되었다.

국가별로 파악하면 주요한 수입대상국의 순위는 만주국, 중국, 미국, 관동주, 난령인도 순서였다. 미국의 경우는 1940년까지는 2위의 위치

99) 工藤三次郎, 1938, 〈事變後の中北支經濟と朝鮮貿易の將來—事變後の中北支視察の感想—〉《朝鮮貿易の振興問題と中北支經濟の動向》, 朝鮮貿易協會, 73~75쪽. 工藤三次郎은 華北은 자원으로 서 중시하고 華中은 무역시장으로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같은 글, 96쪽.

100) 西本計三, 1938, 〈時局と朝鮮の商工業〉《朝鮮》274, 朝鮮總督府, 23쪽.

101) 이에 대해서는 澁谷禮治, 1940, 〈中支に於ける邦人の發展と朝鮮貿易〉《朝鮮貿易協會通報》51, 朝鮮貿易協會 참조.

102) 澁谷禮治, 1939, 〈歐洲動亂と半島貿易〉《朝鮮》307, 朝鮮總督府, 67쪽.

103) 澁谷禮治, 1940, 〈朝鮮貿易の新政勢と其の發展對策〉《朝鮮》, 朝鮮總督府, 6쪽.

104) 澁谷禮治, 1939, 〈歐洲動亂と半島貿易〉《朝鮮》295, 朝鮮總督府, 70쪽에 의하면 1939년에는 일본의 수출산업은 제3국에 치중하고 조선지역의 수출산업은 엔블록에 치중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1937~1945년 시기 수출에서 엔블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37년의 85.59%를 제외하면 모두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45년에는 엔블록으로만 수출되었을 뿐이었다. 宋圭振, 앞의 박사학위논문, 144쪽 별표 참조.

〈표 8-23〉 1937~1945년 시기의 대륙별 국가별 수입 가액 비율 (단위: 천 엔)

대륙	국가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합계
아시아	蘭東州	가액	6,929	10,158	8,182	10,385	10,343	9,638	12,345	0	0	67,979
		비율	5.41%	7.55%	5.14%	4.71%	6.01%	7.70%	5.74%	0.00%	0.00%	4.65%
	만주국	가액	62,228	58,051	80,459	84,284	63,602	73,777	134,577	158,894	64,114	779,986
		비율	48.56%	43.13%	50.59%	38.24%	36.95%	58.93%	62.59%	85.10%	52.48%	53.30%
	중국	가액	10,368	12,217	10,334	17,454	38,833	29,257	37,800	26,555	57,146	239,964
		비율	8.09%	9.08%	6.50%	7.92%	22.56%	23.37%	17.58%	14.22%	46.78%	16.40%
	蘭領印度	가액	8,534	4,270	3,392	4,490	8,520	0	3,015	0	0	32,221
		비율	6.66%	3.17%	2.13%	2.04%	4.95%	0.00%	1.40%	0.00%	0.00%	2.20%
	佛領印度	가액	206	412	909	3,225	3,317	77	15,099	6	0	23,252
		비율	0.16%	0.31%	0.57%	1.46%	1.93%	0.06%	7.02%	0.00%	0.00%	1.59%
	英領印度	가액	256	10,788	8,846	11,426	8,608	8,608	2	0	0	48,533
		비율	0.20%	8.02%	5.56%	5.18%	5.00%	6.88%	0.00%	0.00%	0.00%	3.32%
	英領海峽植民地	가액	1,523	3,481	1,245	251	78	0	0	0	0	6,578
		비율	1.19%	2.59%	0.78%	0.11%	0.05%	0.00%	0.00%	0.00%	0.00%	0.45%
	기타	가액	3,918	4,073	5,001	31,531	20,749	2,684	9,939	1,261	909	80,065
		비율	3.06%	3.03%	3.14%	14.31%	12.05%	2.14%	4.62%	0.68%	0.74%	5.47%
	합계	가액	93,962	10,349	118,367	163,046	154,050	124,041	212,777	186,716	122,169	1,278,578
		비율	73.33%	76.87%	74.43%	73.98%	89.50%	99.08%	98.96%	100%	100%	87.37%
유럽	영국	가액	5,457	1,071	781	2,048	342	0	212	0	0	9,911
		비율	4.26%	0.80%	0.49%	0.93%	0.20%	0.00%	0.10%	0.00%	0.00%	0.68%
	독일	가액	1,973	1,888	3,940	132	857	349	1754	0	0	10,893
		비율	1.54%	1.40%	2.48%	0.06%	0.50%	0.28%	0.82%	0.00%	0.00%	0.74%
	프랑스	가액	89	19	10	5	4	0	0	0	0	128
		비율	0.07%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1%
	기타	가액	386	1,364	2,032	284	529	93	19	0	0	4,708
		비율	0.30%	1.01%	1.28%	0.13%	0.31%	0.07%	0.01%	0.00%	0.00%	0.32%
	합계	가액	7,906	4,343	6,763	2,469	1,732	442	1,985	0	0	25,640
		비율	6.17%	3.23%	4.25%	1.12%	1.01%	0.35%	0.92%	0.00%	0.00%	1.75%
미주	미국	가액	21,312	17,775	23,755	35,425	13,059	627	252	0	0	112,204
		비율	16.63%	13.21%	14.94%	16.07%	7.59%	0.50%	0.12%	0.00%	0.00%	7.67%
	캐나다	가액	77	110	359	0	0	0	0	0	0	546
		비율	0.06%	0.08%	0.23%	0.00%	0.00%	0.00%	0.00%	0.00%	0.00%	0.04%
	기타	가액	1,270	3,662	3,832	123	206	0	0	0	0	9,092
		비율	0.99%	2.72%	2.41%	0.06%	0.12%	0.00%	0.00%	0.00%	0.00%	0.62%
	합계	가액	22,658	21,547	27,945	35,548	13,265	627	252	0	0	121,842
		비율	17.68%	16.01%	17.57%	16.13%	7.71%	0.50%	0.12%	0.00%	0.00%	8.33%
기타주	이집트	가액	0	0	0	0	0	0	0	0	0	0
		비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가액	2,170	3,824	4,433	18,114	2,152	88	0	0	0	30,781
		비율	1.69%	2.84%	2.79%	8.22%	1.25%	0.07%	0.00%	0.00%	0.00%	2.10%
	합계	가액	2,170	3,824	4,433	18,114	2,152	88	0	0	0	30,781
		비율	1.69%	2.84%	2.79%	8.22%	1.25%	0.07%	0.00%	0.00%	0.00%	2.10%
총합계		가액	128,139	134,583	159,031	220,652	158,345	115,074	211,776	186,716	122,170	1,436,486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朝鮮貿易年表》 각년판, 《朝鮮經濟年報》 III - 44~45쪽.

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일본인들은 오히려 미국과의 수입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당시 조선무역협회 부회장은 독일로부터 생산력확충기재의 수입이 두절됨으로써 조선의 산업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그 대책으로서 생산력기재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¹⁰⁵⁾

그러나 1941년 이후 미국은 급격히 그 지위를 상실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수입에 있어서도 엔블록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1943년 이후에는 조선의 수입지역이 아시아, 그 중에서도 이른바 엔블록이라는 관동주, 만주국, 중국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수입시장에 있어서도 그 구조가 대단히 취약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¹⁰⁶⁾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시기 중국과의 무역증진은 대륙병참기지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일본이 화북과 화중을 침략하면서 대륙진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경제개발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은 쌀, 보리, 면화, 축산 등의 증산에 협력하고 동시에 화북의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였다. 또한 화북으로 도로, 항만의 개수와 광산 작업에 필요한 시멘트, 폭약 같은 것을 수출하고 화북의 면화, 수모(獸毛)를 수입하였다.¹⁰⁷⁾

그런데 일제는 태평양전쟁을 도발하고 동남아시아 각국을 침략하면서 기존의 엔블록을 북방권으로 분류하는 것과 함께 기존 제삼국에 포

105) 澁谷禮治, 1940, 〈朝鮮貿易の新政勢と其の發展對策〉《朝鮮》, 朝鮮總督府, 6~7쪽.

106) 1937~1945년 시기 수입에서 엔블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41년까지 50~65%를 차지하였지만 1942년 이후 급속도로 증대되어 1944년 이후에는 99%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수입에서도 1944년 이후에는 엔블록으로만 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宋圭振, 1998, 〈일제하 조선의 무역정책과 식민지무역구조〉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47쪽 참조.

107) 澁谷禮治, 1939, 〈朝鮮貿易の近狀と其の助長發展策〉《朝鮮貿易協會通報》34, 朝鮮貿易協會, 5쪽.

함시켰던 동남아시아를 남방권으로 분류하였다. 일제는 이전부터 조선을 북방권(중전의 엔블록)의 물자공급기지화 하였지만 북방권의 자원으로는 조선의 여러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남방권에서의 자원을 흡수하면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에서의 조선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일제는 남방권에서의 자원수입에 대한 기대가 컸다.¹⁰⁸⁾ 하지만 전쟁이 진행되면서 남방권에서의 자원수입도 차질을 빚어 결국 일제의 기대한 구상은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일본인 무역관계자들은 엔블록무역에 있어 '통합 무역회사'를 설립할 경우 조선무역의 발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조선동아무역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엔블록무역의 조정기관이 되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엔블록무역이 완전하게 붕괴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았으나 조선무역협회가 기대하였던 무역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중일전쟁 이후 중국과의 무역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일본의 대륙침략에 필요한 군수품으로 조선미곡은 중국무역을 급증시킨 가장 중요한 물품이었다. 이를 통하여 당시 조선이 대륙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조선미곡은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정치군사적인 논리가 더 중시됨으로써 일제의 중국현지 각 기관들이 조선미곡 수입을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었다.

이 시기 일본인 무역관계자들은 제삼국무역을 강조하였는데 그 가

운데에도 제삼국으로의 수출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수출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게 되었다. 중일전쟁이라 제삼국에 대한 수출진흥이 지상명령으로 제창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제시되었다. 그리하여 제삼국무역의 조정기관으로 조선무역진흥주식회사가 설립되었지만 제삼국과의 무역진흥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1944년에 합병되어 버렸다.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에는 제삼국 가운데에서도 '남방권'과의 교류만이 이루어졌고 기타 구미제국과의 관계는 거의 두절되었다. 제삼국무역은 일제의 전쟁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남방권'의 물자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었고 전쟁에서 패배가 결정되었던 1945년에는 '남방권'과의 무역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중일전쟁 시기에 조선무역은 조선경제를 연구하였던 일본인학자들이 종래 주장해온 것과 같은 질적 발전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낼 뿐이었다. 또한 일본인 무역관계자들은 조선무역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조선무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였지만 오히려 현상유지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다만 일제가 전쟁을 벌이면서 직접 물자공급을 해야 하였던 중국과 '남방권'과는 수출만이 증가추세였고 특히 중국무역의 경우 군식량으로 중요하였던 미곡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조선무역은 대륙병참기지로서 일제의 전쟁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따름이었다.

108) 송규진, 2001, 〈중·일전쟁시기 조선무역협회의 조선무역에 대한 인식과 그 실상〉 《韓國史學報》 제10호, 고려사학회 참조,

3. 식민지적 상품구조의 특징

1) 수이출입 상품구조의 식민지성

일제시기 수이출 상품종류별 구성을 알 수 있는 것이 <표 8-24>이다.¹⁰⁹⁾ 수이출 부문에서 식료품과 원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10년 86.29%로부터 1939년 72.14%로 감소하였고 완제품의 비율은 1910년 3.31%에서 1939년 22.51%의 비율로 증가하였다. 이를 수출과 이출로 구분하여 보면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수출에서 식료품과 원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10년 73.94%에서 1939년 38.65%로 급격하게 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전체 비율에서 식료품과 원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았던 것은 일

109) 원료품 중 중요한 상품은 목재, 석탄, 솜, 원유, 광물 등이었고 원료용제품 중 중요한 상품은 생사, 금속류(철관등), 경화유, 어유, 코크스 등이었다. 식료조제품 중 중요한 상품은 미국, 수산물, 엽연초, 잡곡 등이었고 식료정제품 중 중요한 상품으로는 통조림, 병조림, 우무, 된장, 간장, 술, 곡식 가루, 녹말 등이었다. 완제품 중 중요한 상품은 기계류, 면제품, 금속제품, 차량, 선박 등이었다. 《朝鮮貿易史》, 98쪽.

<표 8-24> 일제하 수이출 상품종류별 구성 (단위: 천 엔)

연도	수이출		식료정제품	식료조제품	원료용제품	원료품	완제품	잡품	재수출품	합계
1910	수출	가액	24	2,548	39	742	108	860	214	4,535
		비율	0.53%	56.18%	0.85%	16.37%	2.39%	18.96%	4.71%	100%
	이출	가액	0	10,682	73	3,076	551	996	0	15,379
		비율	0.00%	69.46%	0.47%	20.00%	3.59%	6.48%	0.00%	100%
	합계	가액	24	13,230	111	3,819	660	1,856	214	19,914
		비율	0.12%	66.44%	0.56%	19.18%	3.31%	9.32%	1.07%	100%
1919	수출	가액	1,3213	2,6721	3,616	4,2633	5,1581	6,5833	7,1503	8,22,099
		비율	9.14,54%	10.30,41%	11.2,79%	12.11,91%	13.7,15%	14.26,39%	15.6,80%	16.100%
	이출	가액	17,900	18,143,803	19,19,429	20,26,409	21,414	22,8,868	23,0	24,199,849
		비율	25.0,45%	26.71,96%	27.9,72%	28.13,21%	29.0,22%	30.4,44%	31.0,00%	32.100%
	합계	가액	33,4,113	34,150,523	35,20,045	36,29,041	37,2,022	38,14,701	39,1,503	40,221,947
		비율	41.1,85%	42.67,82%	43.9,03%	44.13,08%	45.0,91%	46.6,62%	47.0,68%	48.100%
1929	수출	가액	49,5,203	50,3,933	51,2,036	52,5,247	53,10,908	54,5,527	55,2,919	56,35,773
		비율	57.14,54%	58.11,00%	59.5,69%	60.14,67%	61.30,49%	62.15,45%	63.8,16%	64.100%
	이출	가액	65,6,953	66,190,661	67,47,982	68,35,187	69,11,628	70,17,479	71,0	72,309,891
		비율	73.2,24%	74.61,53%	75.15,48%	76.13,35%	77.3,75%	78.5,64%	79.0,00%	80.100%
	합계	가액	81,12,156	82,194,594	83,50,018	84,40,435	85,22,536	86,23,006	87,2,919	88,345,664
		비율	89.3,52%	90.56,30%	91.14,47%	92.11,70%	93.6,52%	94.6,66%	95.0,84%	96.100%
1939	수출	가액	19,498	57,379	10,944	16,489	146,383	15,879	3,339	269,911
		비율	7.22%	21,26%	4,05%	6,11%	54,23%	5,88%	1,24%	100%
	이출	가액	18,379	205,696	238,579	159,308	80,290	34,630	0	736,883
		비율	2,49%	27,91%	32,38%	21,62%	10,90%	4,70%	0,00%	100%
	합계	가액	37,877	263,075	249,523	175,798	226,672	50,510	3,339	1,006,794
		비율	3,76%	26,13%	24,78%	17,46%	22,51%	5,02%	0,33%	100%

출전: 《朝鮮貿易史》附錄5 商品部類別輸移出入價額統計表.

본으로의 이출 때문이다. 일본으로 이출되었던 식료품과 원료품이 전체 수이출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10년 89.94%에서 1939년 84.40%로 약간 감소하였을 뿐이다. 식료품과 원료품에서 이출 비율이 일제하 전 기간 동안 80% 이상을 유지하였던 것을 통해 일본에의 식료품과 원료품 공급지로서 조선의 역할이 이 시기에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완제품의 비율도 수출의 경우는 1910년 2.39%로부터 1939년 10.90% 증가에 머물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전체 수이출 부문에서 식료품과 원료품이 차지

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았고 완제품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긴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으로의 식료품과 원료품 공급지로서 성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이 시기의 수이입의 상품종류별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 <표 8-25>이다. 수이입 부문에서도 식료품과 원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10년 35.17%에서 1939년 40.04%로 약간 증가하였고 완제품의 비율은 1910년 56.30%에서 1939년 55.39%로 약간 감소하였다. 이를 수입과 이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차이점이 있다.

<표 8-25> 일제하 수이입 상품종류별 구성 (단위: 천 엔)

연도	수이입		식료정제품	식료조제품	원료용제품	원료품	완제품	잡품	재수출품	합계
1910	수입	가액	1,436	492	1,442	1,977	8,664	381	42	14,435
		비율	9.95%	3.41%	9.99%	13.70%	60.02%	2.64%	0.29%	100%
	이입	가액	2,991	844	2,623	2,185	13,727	2,977	0	25,348
		비율	11.80%	3.33%	10.35%	8.62%	54.15%	11.74%	0.00%	100%
	합계	가액	4,427	1,337	4,065	4,162	22,391	3,358	42	39,783
		비율	11.13%	3.36%	10.22%	10.46%	56.28%	8.44%	0.11%	100%
1919	수입	가액	1, 8,122	2, 20,397	3, 6,308	4, 27,817	5, 26,518	6, 8,969	7, 28	8, 98,159
		비율	9, 8.27%	10, 20.78%	11, 6.43%	12, 28.34%	13, 27.02%	14, 9.14%	15, 0.03%	16, 100%
	이입	가액	17, 9,512	18, 2,958	19, 17,248	20, 9,657	21, 119,575	22, 25,967	23, 0	24, 184,918
		비율	25, 5.14%	26, 1.60%	27, 9.33%	28, 5.22%	29, 64.66%	30, 14.04%	31, 0.00%	32, 100%
	합계	가액	33, 17,634	34, 23,355	35, 23,556	36, 37,474	37, 146,093	38, 34,936	39, 28	40, 283,077
		비율	41, 6.23%	42, 8.25%	43, 8.32%	44, 13.24%	45, 51.61%	46, 12.34%	47, 0.01%	48, 100%
1929	수입	가액	49, 6,503	50, 39,123	51, 13,211	52, 24,679	53, 1,129	54, 21,958	55, 1,163	56, 107,768
		비율	57, 6.03%	58, 36.30%	59, 12.26%	60, 22.90%	61, 1.05%	62, 20.38%	63, 1.08%	64, 100%
	이입	가액	65, 25,299	66, 18,102	67, 38,076	68, 30,426	69, 16,660	70, 186,742	71, 0	72, 315,326
		비율	73, 8.02%	74, 5.74%	75, 12.08%	76, 9.65%	77, 5.29%	78, 59.22%	79, 0.00%	80, 100%
	합계	가액	81, 31,802	82, 57,225	83, 51,288	84, 55,106	85, 17,810	86, 208,700	87, 1,163	88, 423,094
		비율	89, 7.52%	90, 13.53%	91, 12.12%	92, 13.02%	93, 4.21%	94, 49.33%	95, 0.27%	96, 100%
1939	수입	가액	2,818	47,966	16,761	70,365	14,787	1,810	4,524	159,031
		비율	1.77%	30.16%	10.54%	44.25%	9.30%	1.14%	2.84%	100%
	이입	가액	62,842	69,592	177,248	108,367	755,213	56,155	0	1,229,417
		비율	5.11%	5.66%	14.42%	8.81%	61.43%	4.57%	0.00%	100%
	합계	가액	65,660	17,558	194,009	178,732	770,001	57,965	4,524	1,388,448
		비율	4.73%	8.47%	13.97%	12.87%	55.46%	4.17%	0.33%	100%

출전: 《朝鮮貿易史》附錄5 商品部類別輸移出入價額統計表.

식료품과 원료품의 경우 수입은 1910년 37.04%에서 1939년 86.72%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입은 1910년 34.10%에서 1939년 34.00%로 거의 변화가 없다. 완제품의 경우 수입은 1910년 60.02%에서 1939년 9.30%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입은 1910년 54.15%로부터 1939년 61.43%로 증가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상품종류별 구성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수출입 분야에서는 초기와는 달리 무역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던 일본과의 무역구조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이는 일제시기 내내 조선이 식료품과 원료품 공급지로서의 역할과 완제품 판매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수이출입 중요 상품의 추이

(1) ‘특별관세정책’ 시기 수이출입 중요 상품

이 시기의 수이출입 중요 상품의 가액과 비율을 표기한 것이 <표 8-26>이고, 이를 근거로 이 시기의 수이출입 10대 상품 추이를 정리한 것이 <표 8-27>이다. 이 표들에 의하면 수이출입 상품 중 1위와 2위를 차지한 미곡과 콩의 지위는 이 시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미곡과 콩의 비율이 비슷하였지만 1913년을 경계로 미곡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콩의 비율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상품은 1910년에서 1916년까지는 우피였으나 1917년부터는 솜으로 바뀌었고, 나머지 상품은 대부분 식

〈표 8—26〉 1910~1919년 시기의 수이출 개별상품 가액 비율 (단위: 천 엔)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합계
가죽류	가액	0	0	0	0	139	68	61	106	402	226	1,001
	비율	0.00%	0.00%	0.00%	0.00%	0.40%	0.14%	0.11%	0.13%	0.26%	0.10%	0.15%
건어	가액	83	96	214	548	519	593	984	1,555	3,395	4,106	12,093
	비율	0.42%	0.51%	1.02%	1.77%	1.51%	1.20%	1.73%	1.86%	2.20%	1.87%	1.76%
건하	가액	37	43	45	93	112	99	97	181	255	232	1,193
	비율	0.19%	0.23%	0.21%	0.30%	0.33%	0.20%	0.17%	0.22%	0.17%	0.11%	0.17%
경육	가액	0	0	333	225	321	316	235	374	532	695	3,033
	비율	0.00%	0.00%	1.59%	0.73%	0.93%	0.64%	0.41%	0.45%	0.34%	0.32%	0.44%
金鑛	가액	517	235	275	392	570	929	1,044	785	1,684	1,521	7,953
	비율	2.60%	1.25%	1.31%	1.27%	1.66%	1.88%	1.84%	0.94%	1.09%	0.69%	1.15%
고치	가액	0	27	26	62	335	725	1,470	73	4,988	3,833	11,539
	비율	0.00%	0.15%	0.12%	0.20%	0.97%	1.46%	2.59%	0.09%	3.23%	1.75%	1.67%
목재	가액	152	146	156	157	146	175	247	284	409	756	2,629
	비율	0.77%	0.77%	0.74%	0.51%	0.42%	0.35%	0.44%	0.34%	0.27%	0.34%	0.38%
미국	가액	6,278	5,284	7,525	14,494	17,099	24,517	19,366	27,417	61,542	110,031	292,928
	비율	31.52%	28.02%	35.86%	46.94%	49.72%	49.54%	34.09%	32.73%	39.91%	50.09%	42.61%
밀	가액	289	86	70	210	203	131	417	1,408	914	402	4,130
	비율	1.45%	0.46%	0.34%	0.68%	0.59%	0.26%	0.73%	1.68%	0.59%	0.18%	0.60%
비료	가액	281	265	361	238	305	257	310	317	173	613	3,121
	비율	1.41%	1.40%	1.72%	0.77%	0.89%	0.52%	0.55%	0.38%	0.11%	0.28%	0.45%
비료거	가액	91	110	136	201	211	263	215	285	552	1,181	3,245
	비율	0.46%	0.58%	0.65%	0.65%	0.61%	0.53%	0.38%	0.34%	0.36%	0.54%	0.47%
소	가액	634	704	208	214	466	338	436	1,012	2,278	3,478	9,767
	비율	3.18%	3.73%	0.99%	0.69%	1.35%	0.68%	0.77%	1.21%	1.48%	1.58%	1.42%
석탄	가액	362	376	334	358	458	629	469	473	580	640	4,680
	비율	1.82%	2.00%	1.59%	1.16%	1.33%	1.27%	0.83%	0.56%	0.38%	0.29%	0.68%
석화채	가액	88	105	118	139	154	180	217	210	292	282	1,784
	비율	0.44%	0.55%	0.56%	0.45%	0.45%	0.36%	0.38%	0.25%	0.19%	0.13%	0.26%
鮮魚	가액	174	134	138	180	194	186	213	517	4,094	6,188	12,018
	비율	0.87%	0.71%	0.66%	0.58%	0.56%	0.38%	0.37%	0.62%	2.66%	2.82%	1.74%
염어	가액	60	53	69	113	170	117	152	354	722	1,354	3,165
	비율	0.30%	0.28%	0.33%	0.37%	0.49%	0.24%	0.27%	0.42%	0.47%	0.62%	0.46%
염연초	가액	0	0	0	0	112	28	89	243	726	1,394	2,592
	비율	0.00%	0.00%	0.00%	0.00%	0.33%	0.06%	0.16%	0.29%	0.47%	0.63%	0.38%
우지	가액	69	71	67	90	117	130	197	172	114	57	1,082
	비율	0.35%	0.37%	0.32%	0.29%	0.34%	0.26%	0.35%	0.20%	0.07%	0.03%	0.16%
우피	가액	1,005	1,069	1,032	1,268	1,598	3,539	3,574	2,020	1,268	3,255	19,627
	비율	5.05%	5.67%	4.92%	4.10%	4.65%	7.15%	6.29%	2.41%	0.82%	1.48%	2.85%
숨	가액	225	237	341	848	1,099	1,158	1,750	4,228	6,141	8,165	24,190
	비율	1.13%	1.26%	1.62%	2.75%	3.20%	2.34%	3.08%	5.05%	3.98%	3.72%	3.51%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합계
조선지	가액	96	108	96	124	98	108	133	149	136	244	1,293
	비율	0.48%	0.57%	0.46%	0.40%	0.29%	0.22%	0.23%	0.18%	0.09%	0.11%	0.19%
지결련	가액	3	24	22	19	263	218	520	617	1,945	2,376	6,008
	비율	0.02%	0.13%	0.10%	0.06%	0.76%	0.44%	0.91%	0.74%	1.26%	1.08%	0.87%
철광	가액	340	279	312	349	418	502	569	415	1,156	2,433	6,772
	비율	1.71%	1.48%	1.49%	1.13%	1.22%	1.01%	1.00%	0.50%	0.75%	1.11%	0.98%
콩	가액	5,217	4,362	5,001	5,536	3,819	5,200	6,012	9,371	9,508	20,720	74,746
	비율	26.20%	23.13%	23.83%	17.93%	11.11%	10.51%	10.58%	11.19%	6.17%	9.43%	10.85%
봉조립	가액	0	0	0	90	133	60	79	274	402	269	1,307
	비율	0.00%	0.00%	0.00%	0.29%	0.39%	0.12%	0.14%	0.33%	0.26%	0.12%	0.19%
팥	가액	446	245	183	166	332	115	129	183	79	516	2,393
	비율	2.24%	1.30%	0.87%	0.54%	0.96%	0.23%	0.23%	0.22%	0.05%	0.24%	0.35%
풀가사리	가액	82	81	164	141	136	150	161	371	516	1,138	2,940
	비율	0.41%	0.43%	0.78%	0.46%	0.40%	0.30%	0.28%	0.44%	0.33%	0.52%	0.43%
해삼	가액	88	95	97	122	141	145	194	293	305	406	1,886
	비율	0.44%	0.50%	0.46%	0.39%	0.41%	0.29%	0.34%	0.35%	0.20%	0.18%	0.27%
홍삼	가액	176	67	259	511	493	1,235	1,273	1,883	1,763	1,709	9,369
	비율	0.88%	0.36%	1.24%	1.65%	1.43%	2.49%	2.24%	2.25%	1.14%	0.78%	1.36%
흑연	가액	114	132	165	249	192	203	577	1,526	1,264	604	5,027
	비율	0.57%	0.70%	0.79%	0.81%	0.56%	0.41%	1.02%	1.82%	0.82%	0.28%	0.73%
기타	가액	3,006	4,425	3,240	3,745	4,038	7,177	15,614	26,679	46,054	40,839	154,817
	비율	15.10%	23.47%	15.44%	12.13%	11.74%	14.50%	27.49%	31.85%	29.87%	18.59%	22.47%
합계	가액	19,914	18,857	20,986	31,236	35,035	50,220	57,819	84,959	155,903	221,947	696,876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전: 《朝鮮貿易年表》 각년판.

〈표 8—27〉 1910~1919년 시기의 수이출 10대 상품 추이

순위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합계
1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2	콩	콩	콩	콩	콩	콩	콩	콩	콩	콩	콩
3	우피	우피	우피	우피	우피	우피	우피	숨	숨	숨	숨
4	소	소	비료건어	숨	숨	홍삼	숨	우피	고치	선어	우피
5	금광	석탄	숨	건어	금광	숨	고치	홍삼	선어	건어	건어
6	팥	철광	석탄	홍삼	건어	금광	홍삼	건어	건어	고치	선어
7	석탄	비료건어	경육	금광	홍삼	고치	금광	흑연	소	소	고치
8	철광	팥	철광	석탄	소	석탄	건어	밀	지결련	우피	소
9	밀	숨	금광	철광	석탄	건어	흑연	소	홍삼	철광	홍삼
10	비료건어	금광	홍삼	흑연	철광	철광	철광	금광	금광	지결련	금광

* 수이출 10대 상품과 수이입 10대 상품은 수이출 개별상품과 수이입 개별상품 가액과 비율에 의거하여 작성(이하 동일함)

료품과 원료품이 차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28〉은 이 시기 수이입 중요 상품의 가액과 비율을 표기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수이입 개별상품은 수이출 개별상품에 비하여 그 종류가 다양하였고 한가지 품목이 압도하는 현상이 없었다.

〈표 8-28〉 1910~1919년 시기의 수이입 개별상품 가액 비율 (단위: 천 엔)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합계
가마니	가액	708	521	0	662	757	796	649	711	672	1,486	6,962
	비율	1.78%	0.96%	0.73%	0.93%	1.20%	1.35%	0.87%	0.69%	0.42%	0.53%	0.77%
기관차	가액	33	298	530	432	556	198	146	261	242	5,387	8,084
	비율	0.08%	0.55%	0.78%	0.60%	0.88%	0.33%	0.20%	0.25%	0.15%	1.92%	0.83%
농금전	가액	76	157	88	233	165	143	393	779	1,594	4,160	7,788
	비율	0.19%	0.29%	0.13%	0.33%	0.26%	0.24%	0.53%	0.76%	1.01%	1.48%	0.80%
도자기	가액	338	484	567	469	414	397	570	650	876	1,519	6,284
	비율	0.85%	0.89%	0.84%	0.65%	0.65%	0.67%	0.77%	0.63%	0.55%	0.54%	0.65%
레일	가액	99	109	890	850	592	723	548	1,270	2,678	3,621	11,380
	비율	0.25%	0.20%	1.32%	1.19%	0.94%	1.22%	0.74%	1.23%	1.69%	1.29%	1.17%
맥주	가액	288	323	379	422	447	417	430	477	663	1,177	5,024
	비율	0.72%	0.60%	0.56%	0.59%	0.71%	0.70%	0.58%	0.46%	0.42%	0.42%	0.52%
면직사	가액	1,555	2,124	2,349	1,866	2,070	2,436	3,052	4,704	3,146	3,908	27,211
	비율	3.91%	3.93%	3.47%	2.61%	3.27%	4.11%	4.10%	4.57%	1.99%	1.39%	2.80%
명주	가액	578	687	874	604	316	269	747	576	546	574	5,772
	비율	1.45%	1.27%	1.29%	0.84%	0.50%	0.45%	1.00%	0.56%	0.34%	0.20%	0.59%
목재	가액	1,065	1,347	1,517	1,319	1,167	939	1,026	1,411	2,113	2,750	14,653
	비율	2.68%	2.49%	2.24%	1.84%	1.85%	1.59%	1.38%	1.37%	1.33%	0.98%	1.51%
미곡	가액	24	165	152	2,928	2,723	317	235	930	1,551	1,323	10,348
	비율	0.06%	0.30%	0.23%	4.09%	4.31%	0.53%	0.32%	0.90%	0.98%	0.47%	1.06%
밀가루	가액	332	654	1,321	1,968	1,237	684	865	1,012	1,874	3,589	13,536
	비율	0.84%	1.21%	1.95%	2.75%	1.96%	1.15%	1.16%	0.98%	1.18%	1.28%	1.39%
백목면	가액	1,069	1,435	1,549	1,492	1,237	1,166	1,608	2,202	3,093	5,648	20,498
	비율	2.69%	2.65%	2.29%	2.08%	1.96%	1.97%	2.16%	2.14%	1.95%	2.01%	2.11%
석유	가액	1,261	1,436	1,770	2,033	1,487	1,702	2,337	2,651	2,611	8,151	25,439
	비율	3.17%	2.66%	2.62%	2.84%	2.35%	2.87%	3.14%	2.58%	1.65%	2.90%	2.62%
석탄	가액	795	1,335	1,525	1,780	1,742	1,717	1,840	3,598	8,376	14,395	37,103
	비율	2.00%	2.47%	2.26%	2.49%	2.75%	2.90%	2.47%	3.50%	5.29%	5.13%	3.82%
설탕	가액	862	1,208	1,507	1,871	1,511	1,541	1,899	2,204	3,324	4,083	20,009
	비율	2.17%	2.23%	2.23%	2.61%	2.39%	2.60%	2.55%	2.14%	2.10%	1.45%	2.06%
성냥	가액	399	447	478	555	430	537	803	670	1,144	1,457	6,920
	비율	1.00%	0.83%	0.71%	0.78%	0.68%	0.91%	1.08%	0.65%	0.72%	0.52%	0.71%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합계
소금	가액	395	581%	766	756	555	852	1,097	1,003	1,502	3,268	10,775
	비율	0.99%	1.07	1.13%	1.06%	0.88%	1.44%	1.47%	0.97%	0.95%	1.16%	1.11%
시멘트	가액	381	542	660	701	491	645	790	1,685	1,817	1,606	9,319
	비율	0.96%	1.00%	0.98%	0.98%	0.78%	1.09%	1.06%	1.64%	1.15%	0.57%	0.96%
염연초	가액	156	206	328	439	292	343	460	519	679	905	4,328
	비율	0.39%	0.38%	0.49%	0.61%	0.46%	0.58%	0.62%	0.50%	0.43%	0.32%	0.45%
옥양목	가액	6,162	7,554	9,657	8,740	7,636	8,351	10,011	13,682	18,941	43,495	134,230
	비율	15.49%	13.97%	14.39%	12.13%	11.99%	13.99%	13.32%	13.14%	11.81%	15.37%	13.71%
자전거	가액	52	97	219	326	294	236	254	318	344	789	2,929
	비율	0.13%	0.18%	0.32%	0.46%	0.46%	0.40%	0.34%	0.31%	0.22%	0.28%	0.30%
좁쌀	가액	0	0	273	2898	1148	766	93	1,324	3,100	15,440	25,042
	비율	0.00%	0.00%	0.40%	4.05%	1.81%	1.29%	0.13%	1.29%	1.96%	5.50%	2.58%
중국 마포	가액	891	1,369	1,486	1,354	1,564	1,155	1,613	2,211	2,475	6,907	21,024
	비율	2.24%	2.53%	2.20%	1.89%	2.47%	1.95%	2.17%	2.15%	1.56%	2.46%	2.16%
철도	가액	616	602	747	539	528	498	302	394	620	526	5,372
	비율	1.55%	1.11%	1.11%	0.75%	0.83%	0.84%	0.41%	0.38%	0.39%	0.19%	0.55%
철조 및 간	가액	154	236	393	362	548	301	614	1,530	2,120	2,106	8,364
	비율	0.39%	0.44%	0.58%	0.51%	0.87%	0.51%	0.83%	1.49%	1.34%	0.75%	0.86%
청주	가액	736	798	964	992	880	910	890	869	959	1,599	9,597
	비율	1.85%	1.48%	1.43%	1.39%	1.39%	1.54%	1.20%	0.84%	0.61%	0.57%	0.99%
타면	가액	291	398	587	607	479	515	601	707	1,131	1,743	7,060
	비율	0.73%	0.74%	0.87%	0.85%	0.76%	0.87%	0.81%	0.69%	0.71%	0.62%	0.73%
기타	가액	20,465	28975	35047	34848	32431	31141	41262	55,742	92,232	141,465	513,609
	비율	51.44%	53.57%	52.22%	48.37%	50.92%	52.17%	54.92%	53.55%	57.49%	49.97%	52.45%
합계		39,783	54088	67115	72048	63695	59695	75134	104,092	160,425	283,077	535,6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전: 《朝鮮貿易年表》각년판.

〈표 8-29〉 1910~1919년 시기의 수이입 10대 상품 추이

순위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합계
1	옥양목막베	옥양목막베	옥양목막베	옥양목막베	옥양목막베	옥양목막베	옥양목막베	옥양목막베	옥양목막베	옥양목막베	옥양목막베
2	면직사	면직사	면직사	미곡	미곡	면직사	면직사	면직사	석탄	좁쌀	석탄
3	석유	석유	석유	좁쌀	면직사	석탄	석유	석탄	설탕	석탄	면직사
4	백목면	백목면	백목면	석유	석탄	석유	설탕	석유	면직사	석유	석유
5	목재	중국마포	석탄	밀가루	중국마포	설탕	석탄	중국마포	좁쌀	중국마포	좁쌀
6	중국마포	목재	목재	설탕	설탕	백목면	중국마포	설탕	백목면	백목면	중국마포
7	설탕	석탄	설탕	면직사	석유	중국마포	백목면	백목면	계조	기관차	백목면
8	석탄	설탕	중국마포	석탄	밀가루	목재	소금	시멘트	석유	농금전	설탕
9	청주	청주	밀가루	백목면	백목면	청주	목재	철조및간	중국마포	설탕	목재
10	가마니	밀가루	레일	중국마포	목재	소금	청주	목재	철조및간	면직사	밀가루

수입 10대 상품을 정리한 것이 <표 8-29>이다. 10대 상품 가운데 섬유제품이 많은 것이 이 시기 수입 부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913년과 1914년 수입 부문을 주도하였던 미국은 이 시기 수입 상품 중 2위를 차지하였다. 주로 불령인도, 영령인도, 태국 등에서 수입한 것으로 조선은 일본에 미국을 이출하는 대신 이보다 질이 낮은 식량을 수입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¹¹⁰⁾ 또한 1920~1931년 시기에 이출미곡의 생산량을 무시한 ‘기아수출’로 인한 조선의 식량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보조식량으로서 기능하였던 좁쌀이 1919년부터 수입 상품 중 2위를 차지하였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출 상품에서 미국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였던 것에 비해 비율면에서는 미국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지만 수입 상품에서 1위를 계속 차지한 것은 면제품의 일종인 옥양목·막베였다.

옥양목·막베의 가장 주요한 수입국은 일본이었다. 하지만 영국 제품의 비율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1910년 일본제품은 47.35%였고 영국제품은 52.47%로 오히려 영국제품이 일본제품보다 비율에서 높았다. 그런데 대한제국 관세가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병합’이라는 정치적인 요인이 일본제품이 조선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본상인이 상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영국제품의 판로는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당시 시장의 상황에서 일본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편리한 측면이 있지만, 영국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편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¹¹¹⁾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제품의 비율은 계속 감소되었고 특히 제1차 세

계대전 이후에는 그 비율이 격감하였다. 옥양목·막베의 수입에서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일본제품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그러한 추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옥양목·막베에서의 일본제품 독점과정은 이 시기의 과도기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본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통해 외국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자국 제품의 조선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던 것이다.

(2) ‘관세동화정책’ 시기 수출입 중요 상품

이 시기의 수출 중요 상품 가액과 비율을 정리한 것이 <표 8-30>이다. 이 표를 중심으로 이 시기의 수출 10대 상품 추이를 정리한 것이 <표 8-31>이다.

이 표에 의하면 당시 수출 상품 가운데 1위와 2위를 점하였던 상품은 미곡과 콩으로 이 시기 내내 미국은 한번도 수위 자리를 다른 상품에 넘겨주지 않았고 콩도 1922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2위를 지켰다. 이 시기 초기에는 철이 3위를 차지하였으나 후기에는 생사가 그 지위를 넘겨받았을 뿐, 나머지 상품들도 대부분 식료품과 원료품이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10~1919년 시기에 수출 부문에서 이미 1위를 차지하였던 미국의 비율은 이 시기에 더한층 증가되었다. 미국의 수출은 일본에서의 ‘쌀폭동’ 영향으로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1925년에는 수출 합계의 50%선을 돌파하면서 1929년과 193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50% 이상을 유지하였다. 결국 수출 상품에서 점하는 미국의 지위는 이전보다도 훨씬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0) 《朝鮮貿易年表》1914년판 참조.

111) 稅山谷五郎, 1914, 〈輸移入金巾に就て〉《朝鮮總督府月報》제4권 제4호, 朝鮮總督府, 16쪽.

〈표 8—30〉 1920~1931년 시기의 수이출 개별상품 가액 비율 (단위: 천 엔)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합계
건어	가액	3,703	3,967	4,470	5,139	5,019	5,022	4,805	5,226	5,115	6,472	4,495	4,158	57,592
	비율	1.93%	1.82%	2.08%	1.96%	1.53%	1.47%	1.32%	1.46%	1.40%	1.87%	1.69%	1.59%	1.64%
金鐵	가액	1,527	2,499	2,553	2,241	2,475	1,410	1,347	1,451	1,892	1,945	1,073	1,106	21,520
	비율	0.80%	1.15%	1.19%	0.86%	0.75%	0.41%	0.37%	0.40%	0.52%	0.56%	0.40%	0.42%	0.61%
고치	가액	2,369	2,457	2,822	7,705	7,751	9,974	7,471	4,890	3,869	4,381	2,167	1,610	57,466
	비율	1.23%	1.13%	1.31%	2.94%	2.36%	2.92%	2.06%	1.36%	1.06%	1.27%	0.81%	0.61%	1.63%
목재	가액	1,638	3,590	4,831	1,483	6,012	3,759	5,098	3,161	4,852	4,138	2,327	2,233	43,123
	비율	0.85%	1.64%	2.24%	0.57%	1.83%	1.10%	1.40%	0.88%	1.33%	1.20%	0.87%	0.85%	1.23%
미곡	가액	77,008	92,813	95,805	113,013	164,483	173,164	192,568	191,575	183,730	148,816	109,665	138,487	1,681,129
	비율	40.12%	42.52%	44.48%	43.19%	49.99%	50.68%	53.06%	53.37%	50.20%	43.05%	41.14%	52.90%	47.76%
밀	가액	619	4,038	424	341	1,326	2,223	348	85	9	657	45	15	10,131
	비율	0.32%	1.85%	0.20%	0.13%	0.40%	0.65%	0.10%	0.02%	0.00%	0.19%	0.02%	0.01%	0.29%
비료	가액	2,209	1,671	2,798	3,331	6,056	10,906	12,058	7,191	7,228	9,977	9,650	8,462	81,537
	비율	1.15%	0.77%	1.30%	1.27%	1.84%	3.19%	3.27%	2.00%	1.98%	2.89%	3.62%	3.23%	2.31%
생사	가액	2,416	2,701	3,699	6,153	7,127	8,680	11,573	13,607	16,251	20,143	16,834	12,015	121,200
	비율	1.26%	1.24%	1.72%	2.35%	2.17%	2.54%	3.19%	3.79%	4.44%	5.83%	6.32%	4.59%	3.44%
소	가액	4,950	3,583	3,151	3,628	4,470	4,118	3,908	3,421	4,841	3,549	2,901	2,793	45,315
	비율	2.58%	1.64%	1.46%	1.39%	1.36%	1.21%	1.08%	0.95%	1.32%	1.03%	1.09%	1.07%	1.29%
석탄	가액	1,210	1,281	1,134	1,215	1,475	2,131	2,260	2,369	2,707	2,840	2,328	3,065	24,016
	비율	0.63%	0.59%	0.53%	0.46%	0.45%	0.62%	0.62%	0.66%	0.74%	0.82%	0.87%	1.17%	0.68%
鮮魚	가액	7,092	7,655	7,757	8,913	10,255	6,818	8,265	6,446	6,719	6,217	5,806	5,002	86,944
	비율	3.69%	3.51%	3.60%	3.41%	3.12%	2.00%	2.28%	1.80%	1.84%	1.80%	2.18%	1.91%	2.47%
설탕	가액	0	0	800	2,641	5,992	4,503	2,326	5,986	5,707	5,604	4,759	2,649	40,967
	비율	0.00%	0.00%	0.37%	1.01%	1.82%	1.32%	0.64%	1.67%	1.56%	1.62%	1.79%	1.01%	1.16%
염어	가액	1,357	1,141	975	1,406	1,682	1,949	1,693	1,297	1,533	1,054	907	684	15,677
	비율	0.71%	0.52%	0.45%	0.54%	0.51%	0.57%	0.47%	0.36%	0.42%	0.30%	0.34%	0.26%	0.45%
우피	가액	3,171	2,720	2,248	2,295	3,257	3,411	2,689	2,445	3,285	2,762	1,624	1,392	31,298
	비율	1.65%	1.25%	1.04%	0.88%	0.99%	1.00%	0.74%	0.68%	0.90%	0.80%	0.61%	0.53%	0.89%
인삼	가액	1,397	2,431	1,946	2,476	2,141	3,967	1,899	2,266	1,989	2,596	3,455	93	26,657
	비율	0.73%	1.11%	0.90%	0.95%	0.65%	1.16%	0.52%	0.63%	0.54%	0.75%	1.30%	0.04%	0.76%
숨	가액	6,003	3,539	3,526	8,680	13,118	11,588	4,554	4,291	6,141	6,809	7,547	2,609	78,404
	비율	3.13%	1.62%	1.64%	3.32%	3.99%	3.39%	1.25%	1.20%	1.68%	1.97%	2.83%	1.00%	2.23%
철	가액	11,434	8,823	27,409	10,120	5,061	10,036	11,406	6,021	7,660	7,517	5,699	3,240	114,426
	비율	5.96%	4.04%	12.72%	3.87%	1.54%	2.94%	3.09%	1.68%	2.09%	2.17%	2.14%	1.24%	3.25%
철광	가액	3,478	1,779	768	1,726	995	919	773	1,085	1,545	1,676	1,474	1,198	17,416
	비율	1.81%	0.82%	0.36%	0.66%	0.30%	0.27%	0.21%	0.30%	0.42%	0.49%	0.55%	0.46%	0.49%
콩	가액	17,293	22,867	22,023	20,817	25,198	20,552	24,389	22,941	23,385	22,112	17,545	13,808	252,931
	비율	9.01%	10.48%	10.22%	7.96%	7.66%	6.02%	6.72%	6.39%	6.39%	6.40%	6.58%	5.27%	7.19%
팥	가액	200	995	299	815	489	390	524	702	982	812	570	386	7,165
	비율	0.10%	0.46%	0.14%	0.31%	0.15%	0.11%	0.14%	0.20%	0.27%	0.23%	0.21%	0.15%	0.20%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합계
해삼	가액	515	337	329	422	623	460	391	306	376	332	173	133	4,396
	비율	0.27%	0.15%	0.15%	0.16%	0.19%	0.13%	0.11%	0.09%	0.10%	0.10%	0.06%	0.05%	0.12%
해조	가액	0	0	0	0	0	2,112	1,405	1,257	1,507	1,351	920	1,178	9,730
	비율	0.00%	0.00%	0.00%	0.00%	0.00%	0.62%	0.39%	0.35%	0.41%	0.39%	0.35%	0.45%	0.28%
해태	가액	0	0	0	0	0	2,119	2,108	2,738	2,597	4,320	1,996	2,125	18,083
	비율	0.00%	0.00%	0.00%	0.00%	0.00%	0.64%	0.58%	0.76%	0.71%	1.25%	0.75%	0.81%	0.51%
흑연	가액	971	510	1,020	605	778	747	839	998	1,156	1,234	1,011	683	10,552
	비율	0.51%	0.23%	0.47%	0.23%	0.24%	0.22%	0.23%	0.28%	0.32%	0.36%	0.38%	0.26%	0.30%
기타	가액	38,697	42,132	21,291	52,015	49,389	47,122	60,532	67,169	70,900	78,351	61,575	52,675	641,848
	비율	18.07%	18.76%	9.08%	19.39%	14.39%	12.27%	14.65%	17.84%	18.52%	21.47%	22.21%	19.00%	17.14%
합계	가액	197,020	218,277	215,404	261,666	329,039	341,631	362,955	358,925	365,979	345,664	266,547	261,799	3,524,906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전: 《朝鮮貿易年表》각년판.

〈표 8—31〉 1920~1931년 시기의 수이출 10대 상품 추이

순위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합계
1	미곡	미곡	미곡	미곡	미곡	미곡	미곡	미곡	미곡	미곡	미곡	미곡	미곡
2	콩	콩	철	콩	콩	콩	콩	콩	콩	콩	콩	콩	콩
3	철	철	콩	철	숨	숨	비료	생사	생사	생사	생사	생사	생사
4	鮮魚	鮮魚	鮮魚	鮮魚	鮮魚	비료	생사	비료	철	비료	비료	비료	철
5	숨	밀	목재	숨	고치	철	철	鮮魚	비료	철	숨	鮮魚	鮮魚
6	소	건어	건어	고치	생사	고치	鮮魚	철	鮮魚	숨	鮮魚	건어	비료
7	건어	목재	생사	생사	비료	생사	고치	설탕	숨	건어	철	철	숨
8	철광	소	숨	건어	목재	鮮魚	목재	건어	설탕	鮮魚	설탕	석탄	건어
9	우피	숨	소	소	설탕	건어	건어	고치	건어	설탕	건어	소	고치
10	생사	우피	고치	비료	철	설탕	숨	숨	목재	고치	인삼	설탕	소

이 시기 수이입 중요 상품의 가액과 그 비율을 정리한 것이 〈표 8—32〉이고 이 표를 중심으로 이 시기 10대 수이입 상품을 다시 정리한 것이 〈표 8—33〉이다.

1910~1919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수이입 상품이었던 옥양목·막베는 1920~1924년에는 1위를 차지하였지만 그 밖의 해에는 그 위치를 좁쌀 등 다른 상품에 넘겨줘야 하였다. 또한 비료가 3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미곡의 지위가 5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비료의

〈표 8—32〉 1920~1931년 시기의 수입입 개별상품 가액 비율 (단위: 천 엔)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합계
건직물	가액	906	708	490	5,601	8,772	8,038	7,805	9,293	13,381	13,894	13,578	10,615	93,080
	비율	0.37%	0.31%	0.19%	2.14%	2.88%	2.41%	2.13%	2.50%	3.34%	3.36%	3.79%	4.02%	2.45%
기계류	가액	6,933	8,782	6,996	6,878	7,399	5,743	7,751	9,423	16,005	16,698	17,627	9,390	119,626
	비율	2.81%	3.79%	2.79%	2.63%	2.43%	1.72%	2.11%	2.53%	3.99%	4.04%	4.92%	3.55%	3.14%
농금건	가액	1,264	5,089	3,343	2,870	2,857	3,626	2,979	5,670	6,926	5,112	4,318	4,045	48,099
	비율	0.53%	2.19%	1.31%	1.08%	0.92%	1.07%	0.80%	1.48%	1.67%	1.21%	1.18%	1.50%	1.24%
도자기	가액	1,374	1,339	1,538	1,633	1,840	2,250	2,443	2,421	2,912	2,923	2,256	2,080	25,008
	비율	0.58%	0.58%	0.60%	0.61%	0.59%	0.66%	0.66%	0.63%	0.70%	0.69%	0.61%	0.77%	0.65%
맥주	가액	1,631	1,701	1,990	1,714	1,685	1,723	1,937	2,057	2,417	2,386	2,274	1,727	23,242
	비율	0.68%	0.73%	0.78%	0.64%	0.54%	0.51%	0.52%	0.54%	0.58%	0.56%	0.62%	0.64%	0.60%
면직사	가액	3,247	3,874	3,004	3,596	6,506	8,485	8,448	6,495	7,167	6,719	5,227	4,294	67,062
	비율	1.36%	1.67%	1.17%	1.35%	2.10%	2.50%	2.27%	1.69%	1.73%	1.59%	1.42%	1.59%	1.73%
모직물	가액	1,899	1,654	2,487	3,778	5,293	4,854	4,959	5,189	5,652	5,989	5,440	4,800	51,995
	비율	0.77%	0.71%	0.99%	1.45%	1.74%	1.45%	1.35%	1.39%	1.41%	1.45%	1.52%	1.82%	1.37%
목재	가액	2,540	7,025	11,562	9,988	8,534	7,994	8,891	10,640	10,852	8,872	5,745	4,880	97,523
	비율	1.06%	3.02%	4.52%	3.76%	2.76%	2.35%	2.39%	2.78%	2.62%	2.10%	1.57%	1.80%	2.52%
마곡	가액	2,161	501	3,186	2,790	12,040	24,477	19,536	19,260	9,714	14,203	10,121	930	118,921
	비율	0.90%	0.22%	1.24%	1.05%	3.89%	7.20%	5.25%	5.02%	2.35%	3.36%	2.76%	0.34%	3.07%
밀가루	가액	3,749	2,053	2,338	2,981	4,901	6,656	6,433	6,196	6,874	6,911	5,879	3,804	58,774
	비율	1.57%	0.88%	0.91%	1.12%	1.58%	1.96%	1.73%	1.62%	1.66%	1.63%	1.60%	1.41%	1.52%
백목면	가액	2,748	1,859	1,685	1,785	2,129	2,405	2,016	1,550	1,915	1,869	1,138	751	21,850
	비율	1.15%	0.80%	0.66%	0.67%	0.69%	0.71%	0.54%	0.40%	0.46%	0.44%	0.31%	0.28%	0.56%
비료	가액	5,014	6,543	5,990	8,173	1,903	1,975	17,209	9,220	19,483	23,928	18,974	8,633	127,044
	비율	2.03%	2.82%	2.38%	3.13%	0.62%	0.59%	4.69%	2.48%	4.86%	5.79%	5.29%	3.27%	3.34%
선박	가액	3,174	203	699	177	1,666	303	601	130	1,021	93	283	32	8,384
	비율	1.29%	0.09%	0.28%	0.07%	0.55%	0.09%	0.16%	0.04%	0.25%	0.02%	0.08%	0.01%	0.22%
석유	가액	7,926	4,334	3,585	4,171	3,860	5,049	3,785	5,898	4,284	5,796	2,792	2,817	54,297
	비율	3.32%	1.87%	1.40%	1.57%	1.25%	1.48%	1.02%	1.54%	1.03%	1.37%	0.76%	1.04%	1.40%
석탄	가액	17,016	8,767	7,979	9,600	8,056	7,678	8,558	10,733	10,381	10,237	10,347	8,522	117,875
	비율	7.12%	3.77%	3.12%	3.61%	2.60%	2.26%	2.30%	2.80%	2.51%	2.42%	2.82%	3.15%	3.04%
설탕	가액	4,267	4,454	4,349	4,995	6,797	5,870	5,196	7,736	8,701	9,285	7,367	5,641	74,659
	비율	1.79%	1.92%	1.70%	1.88%	2.20%	1.73%	1.40%	2.02%	2.10%	2.19%	2.01%	2.09%	1.93%
성냥	가액	1,051	1,235	1,194	1,490	1,597	1,654	1,646	1,514	1,843	1,628	1,270	1,229	17,351
	비율	0.44%	0.53%	0.47%	0.56%	0.52%	0.49%	0.44%	0.39%	0.45%	0.39%	0.35%	0.45%	0.45%
소금	가액	1,363	1,231	1,404	2,466	2,550	2,587	2,754	2,382	2,133	1,465	1,246	1,437	23,019
	비율	0.57%	0.53%	0.55%	0.93%	0.82%	0.76%	0.74%	0.62%	0.52%	0.35%	0.34%	0.53%	0.59%
시멘트	가액	1,699	2,031	2,426	4,147	1,614	1,486	2,485	2,904	4,091	3,234	2,693	1,726	30,535
	비율	0.71%	0.87%	0.95%	1.56%	0.52%	0.44%	0.67%	0.76%	0.99%	0.76%	0.73%	0.64%	0.79%
洋紙	가액	2,094	2,509	2,419	3,047	3,424	3,964	4,489	4,862	5,661	5,368	5,226	4,455	47,517
	비율	0.85%	1.08%	0.96%	1.17%	1.12%	1.19%	1.22%	1.31%	1.41%	1.30%	1.46%	1.69%	1.25%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합계
염연초	가액	1,656	1,700	2,656	586	2,467	2,916	5,725	5,203	4,145	2,470	2,353	1,464	33,343
	비율	0.69%	0.73%	1.04%	0.22%	0.80%	0.86%	1.54%	1.36%	1.00%	0.58%	0.64%	0.54%	0.86%
옥양목	가액	20,616	31,763	21,669	20,948	27,040	27,713	26,390	21,354	22,447	17,423	15,752	10,336	263,452
	비율	8.63%	13.67%	8.46%	7.88%	8.73%	8.15%	7.09%	5.57%	5.42%	4.12%	4.29%	3.82%	6.80%
자전거	가액	726	1,007	1,053	1,200	1,827	2,446	2,982	2,962	2,871	2,731	2,105	1,767	23,678
	비율	0.30%	0.43%	0.41%	0.45%	0.59%	0.72%	0.80%	0.77%	0.69%	0.65%	0.57%	0.65%	0.61%
좁쌀	가액	18,093	975	8,827	13,314	19,679	28,780	31,806	31,650	25,489	20,866	21,393	7,932	228,803
	비율	7.57%	0.42%	3.45%	5.01%	6.36%	8.46%	8.55%	8.25%	6.16%	4.93%	5.83%	2.93%	5.91%
중곡	가액	7,905	5,345	8,703	5,182	4,992	4,787	5,420	5,501	5,780	5,458	4,169	2,353	65,595
	비율	3.31%	2.30%	3.40%	1.95%	1.61%	1.41%	1.46%	1.43%	1.40%	1.29%	1.14%	0.87%	1.69%
찰전	가액	968	1,605	1,792	1,525	2,064	2,139	2,534	2,969	3,218	3,236	3,118	2,437	27,605
	비율	0.41%	0.69%	0.70%	0.57%	0.67%	0.63%	0.68%	0.77%	0.78%	0.76%	0.85%	0.90%	0.71%
청주	가액	1,913	2,147	1,769	1,756	1,645	1,332	1,491	1,410	1,401	1,578	1,230	1,119	18,790
	비율	0.80%	0.92%	0.69%	0.66%	0.53%	0.39%	0.40%	0.37%	0.34%	0.37%	0.34%	0.41%	0.49%
타면	가액	1,066	1,769	1,942	1,950	1,948	2,086	2,014	2,401	2,197	2,174	1,735	1,319	22,600
	비율	0.45%	0.76%	0.76%	0.73%	0.63%	0.61%	0.54%	0.63%	0.53%	0.51%	0.47%	0.49%	0.58%
기타	가액	124,284	125,990	138,973	137,450	154,510	160,998	173,889	181,531	199,368	215,177	186,167	155,476	1,953,814
	비율	50.39%	54.36%	55.33%	52.60%	50.68%	48.18%	47.41%	48.79%	49.76%	52.10%	51.91%	58.87%	51.35%
합계	가액	249,287	232,382	256,045	265,791	309,593	340,012	372,170	383,417	413,991	423,094	367,049	270,466	3,872,965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朝鮮貿易年表》 각년판.

〈표 8—33〉 1920~1931년 시기의 수출입 10대 상품 추이

순위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합계
1	옥양목·마베	옥양목·마베	옥양목·마베	옥양목·마베	옥양목·마베	좁쌀	좁쌀	좁쌀	좁쌀	비료	좁쌀	건직물	옥양목·마베
2	좁쌀	기계류	목재	좁쌀	좁쌀	옥양목·마베	옥양목·마베	옥양목·마베	옥양목·마베	좁쌀	비료	옥양목·마베	좁쌀
3	석탄	석탄	좁쌀	목재	미곡	미곡	미곡	미곡	비료	옥양목·마베	기계류	기계류	비료
4	석유	목재	중국·마포	석탄	건직물	면직사	비료	석탄	기계류	기계류	옥양목·마베	비료	기계류
5	중국·마포	비료	석탄	비료	목재	건직물	목재	목재	건직물	미곡	건직물	석탄	미곡
6	기계류	중국·마포	기계류	기계류	석탄	목재	석탄	기계류	목재	건직물	석탄	좁쌀	석탄
7	비료	농금건	비료	건직물	기계류	석탄	면직사	건직물	석탄	석탄	미곡	설탕	목재
8	설탕	설탕	설탕	중국·마포	설탕	밀가루	건직물	비료	미곡	설탕	설탕	목재	건직물
9	밀가루	석유	석유	설탕	면직사	설탕	기계류	설탕	설탕	목재	밀가루	모직물	설탕
10	면직사	면직사	농금건	석유	모직물	기계류	밀가루	면직사	면직사	밀가루	목재	양지	면직사

수입입은 산미증식계획으로 급증하게 되었는데 1927년까지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된 콩팍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28년 이후에는 일본으로부터 화학비료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화학비료가 차지하는 비율

이 높아졌다.¹¹²⁾ 또한 미국의 수이입은 국가별 연도별 변동폭이 심하였는데 대부분은 고급품질의 미곡으로 일본에서 이입한 것이 많지만 1928년에는 불령인도의 ‘안남미’가 미곡 수이입 중 1위를 차지하였다.¹¹³⁾

각 연도마다 약간의 차가 있긴 하였지만 전체 합계에서 좁쌀이 점하는 비율이 2위를 차지하였고 1925~1928년, 그리고 1930년에는 1위를 차지하였다는 것은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지적할 수 있다. 당시 미곡을 대량으로 수출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으로서는 결국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미곡보다 질과 가격이 떨어지는 좁쌀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3) ‘무역진흥정책’ 시기 수이출입 중요 상품

이 시기의 수이출 개별상품 가액과 비율을 표기한 것이 다음의 <표 8-34>이다. 이 표를 중심으로 당시 수이출 10대 상품 추이를 정리한 것이 <표 8-35>이다. 이 시기를 전체적으로 볼 때 당시에 수이출 상품에서 1위를 차지하였던 미곡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당시 일본에서 쌀값이 폭락하고 농촌의 위기가 점점 심각한 양상을 보이자 일본의 지주들은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쌀의 이입 제한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본정부도 식민지쌀의 이입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이와 같은 의도는 ‘식민지세력’의 강

<표 8-34> 1932~1936년 시기의 수이출 개별상품 가액 비율 (단위: 천 엔)

상품		1932	1933	1934	1935	1936	합계
건어	가액	4,570	4,544	5,920	4,902	3,929	23,865
	비율	1.47%	1.23%	1.27%	0.89%	0.66%	1.04%
金鱗	가액	1,304	1,882	2,427	6,482	6,498	18,594
	비율	0.42%	0.51%	0.52%	1.18%	1.10%	0.81%
고치	가액	1,271	1,774	789	1,183	1,401	6,418
	비율	0.41%	0.48%	0.17%	0.21%	0.24%	0.28%
동	가액	2,516	5,732	2,646	21,608	20,499	53,001
	비율	0.81%	1.55%	0.57%	3.92%	3.46%	2.31%
목재	가액	2,639	5,756	7,331	8,062	7,448	31,236
	비율	0.85%	1.56%	1.58%	1.46%	1.26%	1.36%
미곡	가액	145,337	154,707	224,267	243,777	250,954	1,019,043
	비율	46.68%	41.97%	48.19%	44.26%	42.30%	44.51%
밀	가액	1,453	1,761	183	1,003	616	5,015
	비율	0.47%	0.48%	0.04%	0.18%	0.10%	0.22%
비료	가액	18,485	22,607	25,258	32,153	40,427	138,930
	비율	5.94%	6.13%	5.43%	5.84%	6.81%	6.07%
생사	가액	11,666	14,009	11,474	14,189	15,421	66,758
	비율	3.75%	3.80%	2.47%	2.58%	2.60%	2.92%
소	가액	3,246	4,261	4,121	4,632	4,329	20,589
	비율	1.04%	1.16%	0.89%	0.84%	0.73%	0.90%
석탄	가액	3,850	4,602	6,169	6,723	6,628	27,972
	비율	1.24%	1.25%	1.33%	1.22%	1.12%	1.22%
鮮魚	가액	5,472	6,247	6,473	6,144	5,122	29,459
	비율	1.76%	1.69%	1.39%	1.12%	0.86%	1.29%
설탕	가액	3,448	2,537	2,523	3,147	4,019	15,675
	비율	1.11%	0.69%	0.54%	0.57%	0.68%	0.68%
염어	가액	907	1,367	1,424	1,353	1,511	6,563
	비율	0.29%	0.37%	0.31%	0.25%	0.25%	0.29%
염연초	가액	0	0	775	374	572	1,721
	비율	0.00%	0.00%	0.17%	0.07%	0.10%	0.08%
우피	가액	1,489	1,426	1,512	1,813	2,199	8,439
	비율	0.48%	0.39%	0.32%	0.33%	0.37%	0.37%
인삼	가액	159	274	1,275	1,180	1,416	4,305
	비율	0.05%	0.07%	0.27%	0.21%	0.24%	0.19%
숨	가액	3,505	6,499	8,143	13,476	11,469	43,092
	비율	1.13%	1.76%	1.75%	2.45%	1.93%	1.88%
철	가액	7,346	8,757	16,579	23,292	18,145	74,118
	비율	2.36%	2.38%	3.56%	4.23%	3.06%	3.24%
철광	가액	1,082	1,908	986	1,229	1,106	6,311
	비율	0.35%	0.52%	0.21%	0.22%	0.19%	0.28%

112) 河合和男, 1886, 《朝鮮における産米増殖計劃》, 未來社, 130~131쪽.

113) 《朝鮮貿易年表》1928년판. 본서에서는 자세히 분석하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조선인들이 이출한 미곡을 대체하기 위한 보조식량으로 만주좁쌀을 수입한 것과 함께 그것이 갖는 의미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상품		1932	1933	1934	1935	1936	합계
콩	가액	20,539	19,275	18,160	17,572	23,474	99,021
	비율	6.60%	5.23%	3.90%	3.19%	3.96%	4.33%
팥	가액	1,070	906	775	924	973	4,648
	비율	0.34%	0.25%	0.17%	0.17%	0.16%	0.20%
해조	가액	922	1,183	1,043	1,620	1,755	6,523
	비율	0.30%	0.32%	0.22%	0.29%	0.30%	0.28%
해태	가액	2,114	3,452	3,708	2,198	4,076	15,548
	비율	0.68%	0.94%	0.80%	0.40%	0.69%	0.68%
흑연	가액	693	1,047	1,396	2,246	2,265	7,646
	비율	0.22%	0.28%	0.30%	0.41%	0.38%	0.33%
기타	가액	66,267	92,112	110,787	129,890	157,634	556,690
	비율	21.26%	24.97%	23.81%	23.58%	26.57%	24.31%
합계	가액	311,354	368,628	465,367	550,796	593,313	2,289,458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출전: 《朝鮮貿易年表》각년판.

〈표 8—35〉 1932~1936년 시기의 수이출 10대 상품 추이

순위	1932	1933	1934	1935	1936	합계
1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2	콩	비료	비료	비료	비료	비료
3	비료	콩	콩	철	콩	콩
4	생사	생사	철	동	동	철
5	철	철	생사	콩	철	생사
6	鮮魚	숨	숨	생사	생사	동
7	건어	鮮魚	목재	숨	숨	숨
8	석탄	목재	鮮魚	목재	魚油	목재
9	숨	동	석탄	석탄	목재	鮮魚
10	설탕	석탄	건어	金鑛	석탄	석탄

력한 반발에 직면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조선총독부는 결국 산미증식 계획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긴 하였지만 식민지쌀 이출에 대한 근본적 통제는 식민지통치의 근간을 위협할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¹¹⁴⁾

114) 田剛秀, 1993, 〈植民地 朝鮮의 米穀政策에 관한 研究—1930~45년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58~63쪽.

그리하여 이 시기에도 여전히 미국의 위치는 절대적이었다. 다만 종전에는 2위를 차지하였던 콩을 밀어내고 비료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고¹¹⁵⁾ 콩은 3위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볼 때 중요 상품의 서열에 약간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보면 역시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도 대부분의 식료품과 원료품이 수이출 상품을 주도하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곧 식료품과 원료품의 공급지로서 조선의 역할이 일체의 정책이 약간 변화되는 속에서도 여전히 지속되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 시기의 수이입 중요 상품을 가액과 그 비율로 표기한 것이 〈표 8—36〉이다. 이 표를 중심으로 이 시기 10대 수이입 상품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8—37〉이다. 1920~1931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상품이었던 좁쌀은 1932년에도 여전히 1위를 차지하였지만 1933년과 1934년에는 견직물에 그 지위를 넘겨줘야 하였다. 1935년과 1936년에는 기계류가 1위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이 시기에는 한 품목의 상품이 이 시기 전체 수이입을 지속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주도하는 품목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비단 수이입 부문의 수위를 차지한 품목에서만 아니라 수이입 10대 상품을 보아도 상당히 변동이 컸다.

115) 비료 수이출이 증가한 것은 1927년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가 설립되어 興南工場이 건설된 이래 비료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시기 비료 수이출이 증가한 것은 일본독점자본의 조선진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姜在彦 編, 1985, 《朝鮮における日窒コンツェルン》, 不二出版, 참조.

〈표 8—36〉 1932~1936년 시기의 수입입 개별상품 가액 비율 (단위: 천 엔)

상품		1932	1933	1934	1935	1936	합계
건축물	가액	13,328	18,445	24,951	31,994	36,565	125,283
	비율	4.16%	4.56%	4.81%	4.85%	4.80%	4.70%
기계류	가액	8,959	12,521	18,867	35,603	45,784	121,734
	비율	2.80%	3.10%	3.63%	5.40%	6.01%	4.57%
기계유	가액	1,897	2,339	2,860	32,439	3,711	43,246
	비율	0.59%	0.58%	0.55%	4.92%	0.49%	1.62%
기타	가액	6,963	11,755	12,751	12,553	11,351	55,374
	비율	2.17%	2.91%	2.46%	1.90%	1.49%	2.08%
면직물	가액	5,075	7,697	11,363	11,469	13,766	49,370
	비율	1.58%	1.90%	2.19%	1.74%	1.81%	1.85%
내의	가액	7,223	12,136	11,637	8,409	8,050	47,456
	비율	2.25%	3.00%	2.24%	1.28%	1.06%	1.78%
농금건	가액	4,879	3,016	6,070	6,079	5,406	25,449
	비율	1.52%	0.75%	1.17%	0.92%	0.71%	0.95%
등유	가액	3,747	5,417	6,891	11,332	10,513	37,900
	비율	1.17%	1.34%	1.33%	1.72%	1.38%	1.42%
레이	가액	1,730	2,110	1,542	858	803	7,043
	비율	0.54%	0.52%	0.30%	0.13%	0.11%	0.26%
맥주	가액	6,085	6,800	10,329	9,916	6,028	39,159
	비율	1.90%	1.68%	1.99%	1.50%	0.79%	1.47%
면직사	가액	6,360	8,529	9,915	10,583	13,248	48,634
	비율	1.99%	2.11%	1.91%	1.60%	1.74%	1.82%
모직물	가액	4,097	6,136	9,801	12,868	15,571	48,474
	비율	1.28%	1.52%	1.89%	1.95%	2.04%	1.82%
목재	가액	1,771	1,839	3,066	7,034	5,017	18,728
	비율	0.55%	0.46%	0.59%	1.07%	0.66%	0.70%
미국	가액	3,774	3,990	5,406	10,953	7,832	31,955
	비율	1.18%	0.99%	1.04%	1.66%	1.03%	1.20%
밀가루	가액	739	1,011	1,027	1,017	1,062	4,855
	비율	0.23%	0.25%	0.20%	0.15%	0.14%	0.18%
백목면	가액	7,794	11,453	20,495	26,212	41,391	107,346
	비율	2.43%	2.83%	3.95%	3.98%	5.43%	4.03%
석탄	가액	7,873	10,285	13,167	14,595	17,230	63,150
	비율	2.46%	2.54%	2.54%	2.21%	2.26%	2.37%
설탕	가액	7,645	5,852	6,315	7,581	9,046	36,440
	비율	2.39%	1.45%	1.22%	1.15%	1.19%	1.37%
생냥	가액	1,417	1,494	1,145	391	1,255	5,701
	비율	0.44%	0.37%	0.22%	0.06%	0.16%	0.21%
소금	가액	2,295	2,770	2,561	2,662	2,247	12,534
	비율	0.72%	0.69%	0.49%	0.40%	0.29%	0.47%

상품		1932	1933	1934	1935	1936	합계
시멘트	가액	2,307	3,349	5,472	4,916	7,400	23,444
	비율	0.72%	0.83%	1.05%	0.75%	0.97%	0.88%
염연초	가액	1,106	409	3,196	7,109	5,698	17,518
	비율	0.35%	0.10%	0.62%	1.08%	0.75%	0.66%
옥양목	가액	11,260	14,705	14,336	10,556	8,194	59,049
	비율	3.52%	3.64%	2.76%	1.60%	1.07%	2.22%
자동차	가액	3,290	4,818	9,110	9,904	11,663	38,785
	비율	1.03%	1.19%	1.75%	1.50%	1.53%	1.46%
자전거	가액	2,119	2,624	3,666	6,745	8,448	23,601
	비율	0.66%	0.65%	0.71%	1.02%	1.11%	0.89%
작감	가액	7,946	9,412	6,680	6,564	4,463	35,064
	비율	2.48%	2.33%	1.29%	1.00%	0.59%	1.32%
솜	가액	16,026	12,788	15,773	20,272	22,702	87,562
	비율	5.00%	3.16%	3.04%	3.07%	2.98%	3.28%
중국	가액	5,214	7,458	11,474	14,336	22,756	61,237
	비율	1.63%	1.85%	2.21%	2.17%	2.98%	2.30%
마포	가액	1,204	1,147	1,766	1,510	1,473	7,101
	비율	0.38%	0.28%	0.34%	0.23%	0.19%	0.27%
종이류	가액	6,878	8,616	10,270	11,908	13,970	51,642
	비율	2.15%	2.13%	1.98%	1.81%	1.83%	1.94%
청주	가액	1,161	1,118	1,514	1,656	1,975	7,424
	비율	0.36%	0.28%	0.29%	0.25%	0.26%	0.28%
팔	가액	1129	1,100	1,161	1,341	1,944	6,675
	비율	0.35%	0.27%	0.22%	0.20%	0.26%	0.25%
화복	가액	4,194	5,927	7,698	9,926	12,895	40,639
	비율	1.31%	1.47%	1.48%	1.51%	1.69%	1.52%
양복	가액	4,507	5,465	6,908	9,804	9,901	36,586
	비율	1.41%	1.35%	1.33%	1.49%	1.30%	1.37%
기타	가액	149,565	190,802	241,735	289,820	374,530	1,246,453
	비율	46.69%	47.21%	46.56%	43.95%	49.12%	46.76%
합계	가액	320,356	404,185	519,150	659,403	762,417	2,665,512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출전: 《朝鮮貿易年表》 각년판.

〈표 8—37〉 1932~1936년 시기의 수이입 10대 상품 추이

순위	1932	1933	1934	1935	1936	합계
1	좁쌀	견직물	견직물	기계류	기계류	견직물
2	견직물	좁쌀	비료	기계류	비료	기계류
3	기계류	기계류	기계류	견직물	견직물	비료
4	작잠생사	농금건	좁쌀	비료	숨	좁쌀
5	석탄	기타면직물	석탄	좁쌀	좁쌀	석탄
6	비료	비료	기타면직물	석탄	석탄	숨
7	설탕	석탄	농금건	숨	목재	기타면직물
8	옥양목 막베	옥양목 막베	숨	목재	종이류	종이류
9	농금건	작잠생사	내의	기타면직물	기의	내의
10	기타면직물	지	면직사	지	모직물	모직물

(4) ‘무역통제정책’ 시기의 수이출입 중요 상품

이 시기의 수이출 중요 상품 가액과 비율을 표기한 것이 다음의 〈표 8—38〉이다. 이 표를 중심으로 수이출 10대 상품 추이를 정리한 것이 〈표 8—39〉이다. 당시에도 수이출 상품에서 1위를 차지한 상품은 여전히 미곡이었지만 그 지위를 놓고 볼 때 이전시기처럼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던 것은 아니다. 2위는 비료가 차지하였는데 1940년과 1942년에는 1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3위는 기복이 있긴 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생사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중요 상품의 서열 변화가 이전 시기보다는 심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대부분의 수이출 상품들은 식료품과 원료품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식료품과 원료품의 공급지로서 조선의 역할이 식민지무역구조가 동요하는 속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시기 전체를 놓고 볼 때 미곡의 지위는 전체 수이출 상품 중 1위를 차지하였지만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미곡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전체 수이출 상품에서 미곡이 차지하는

〈표 8—38〉 1937~1945년 시기의 수이출 개별상품 가액 비율 (단위: 천 엔)

상품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합계
건어	가액	4,461	6,228	8,804	11,147	10,281	12,997	0	0	0	53,918
	비율	0.65%	0.71%	0.87%	1.18%	1.06%	1.38%	0.00%	0.00%	0.00%	0.99%
고치	가액	1,440	983	1,565	1,337	1,467	862	0	0	0	7,654
	비율	0.21%	0.11%	0.16%	0.14%	0.15%	0.09%	0.00%	0.00%	0.00%	0.14%
목재	가액	9,390	5,322	11,725	3,742	2,152	458	0	0	0	32,790
	비율	1.37%	0.61%	1.16%	0.39%	0.22%	0.05%	0.00%	0.00%	0.00%	0.60%
마곡	가액	232,459	311,963	174,632	27,161	152,776	220,071	12,333	200,595	0	1,331,990
	비율	33.91%	35.47%	17.35%	2.87%	15.70%	23.29%	1.35%	22.29%	0.00%	18.17%
밀	가액	860	573	533	386	67	1	0	0	0	2,420
	비율	0.13%	0.07%	0.05%	0.04%	0.01%	0.00%	0.00%	0.00%	0.00%	0.04%
비료	가액	37,906	40,328	53,783	43,395	28,132	21,935	0	0	0	225,478
	비율	5.53%	4.58%	5.34%	4.58%	2.89%	2.32%	0.00%	0.00%	0.00%	4.15%
생사	가액	18,962	15,832	24,169	28,625	28,680	4,407	0	0	0	120,675
	비율	2.77%	1.80%	2.40%	3.02%	2.95%	0.47%	0.00%	0.00%	0.00%	2.22%
소	가액	4,831	8,136	13,446	9,648	7,889	10,956	0	0	0	54,906
	비율	0.70%	0.93%	1.34%	1.02%	0.81%	1.16%	0.00%	0.00%	0.00%	1.01%
석탄	가액	7,306	12,128	14,538	25,448	23,127	16,481	0	0	0	99,027
	비율	1.07%	1.38%	1.44%	2.68%	2.38%	1.74%	0.00%	0.00%	0.00%	1.82%
鮮魚	가액	6,852	8,743	12,418	7,945	11,084	15,204	0	0	0	62,247
	비율	1.00%	0.99%	1.23%	0.84%	1.14%	1.61%	0.00%	0.00%	0.00%	1.14%
설탕	가액	4,480	3,873	2,847	1	5	3	0	0	0	11,208
	비율	0.65%	0.44%	0.28%	0.00%	0.00%	0.00%	0.00%	0.00%	0.00%	0.21%
시멘트	가액	3,229	5,197	4,998	77	116	37	1820	1083	0	16,557
	비율	0.47%	0.59%	0.50%	0.01%	0.01%	0.00%	0.20%	0.12	0.00%	0.23%
洋紙	가액	4,390	6,193	6,783	5,637	4,980	4,029	0	0	0	32,011
	비율	0.64%	0.70%	0.67%	0.59%	0.51%	0.43%	0.00%	0.00%	0.00%	0.59%
魚油	가액	10,029	7,864	12,343	0	0	0	0	0	0	30,236
	비율	1.46%	0.89%	1.23%	0.00%	0.00%	0.00%	0.00%	0.00%	0.00%	0.56%
염어	가액	2,077	2,579	6,685	2,876	3,137	4,246	0	0	0	21,600
	비율	0.30%	0.29%	0.66%	0.30%	0.32%	0.45%	0.00%	0.00%	0.00%	0.40%
엽연초	가액	1,081	320	2,283	0	28	7	0	0	0	3,719
	비율	0.16%	0.04%	0.23%	0.00%	0.00%	0.00%	0.00%	0.00%	0.00%	0.07%
우피	가액	3,448	5,671	918	653	857	955	515	247	0	13,265
	비율	0.50%	0.64%	0.09%	0.07%	0.09%	0.10%	0.06%	0.03%	0.00%	0.18%
인삼	가액	909	712	1,729	96	302	80	0	0	0	3,829
	비율	0.13%	0.08%	0.17%	0.01%	0.03%	0.01%	0.00%	0.00%	0.00%	0.07%
사과	가액	3,005	4,134	8,735	2,718	6,801	3,995	0	0	0	29,387
	비율	0.44%	0.47%	0.87%	0.29%	0.70%	0.42%	0.00%	0.00%	0.00%	0.54%
숨	가액	8,271	7,994	11,872	14,414	9,883	1,508	0	0	0	53,943
	비율	1.21%	0.91%	1.18%	1.52%	1.02%	0.16%	0.00%	0.00%	0.00%	0.99%

상품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합계
콩	가액	23,358	22,138	21,104	30,609	11,566	9,656	0	0	0	118,430
	비율	3.41	2.52%	2.10%	3.23%	1.19%	1.02%	0.00%	0.00%	0.00%	2.18%
팥	가액	820	1,001	647	671	10	0	0	0	0	3,150
	비율	0.12%	0.11%	0.06%	0.07%	0.00%	0.00%	0.00%	0.00%	0.00%	0.06%
함금은조동	가액	25,220	26,526	51,092	0	0	0	0	0	0	102,838
	비율	3.68%	3.02%	5.07%	0.00%	0.00%	0.00%	0.00%	0.00%	0.00%	1.89%
해조	가액	1,701	1,415	3,820	2,775	1,928	3,662	0	0	0	15,300
	비율	0.25%	0.16%	0.38%	0.29%	0.20%	0.39%	0.00%	0.00%	0.00%	0.28%
해태	가액	4,188	6,785	9,594	16,057	19,835	16,714	0	0	0	73,173
	비율	0.61%	0.77%	0.95%	1.69%	2.04%	1.77%	0.00%	0.00%	0.00%	1.35%
흑연	가액	2,303	3,393	5,837	0	0	0	0	0	0	11,532
	비율	0.34%	0.39%	0.58%	0.00%	0.00%	0.00%	0.00%	0.00%	0.00%	0.21%
기타	가액	262,568	363,576	539,894	712,389	648,194	596,658	898,998	698,097	79,898	4,800,272
	비율	38.30%	41.33%	53.63%	75.16%	66.60%	63.14%	98.39%	77.56%	100%	65.47%
합계	가액	685,543	879,606	1,006,794	947,809	973,297	944,921	913,666	900,002	70,098	5,437,970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朝鮮貿易年表》각년판, 《朝鮮經濟年報》Ⅲ-54-55쪽.

〈표 8-39〉 1937~1945년 시기의 수이출 10대 상품 추이

순위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합계
1	미곡	미곡	미곡	비료	미곡	미곡	미곡	미곡	미곡
2	비료	비료	비료	콩	생사	비료	시멘트	시멘트	비료
3	함금은조동	함금은조동	함금은조동	생사	비료	海苔	우피	우피	생사
4	콩	콩	생사	미곡	석탄	석탄	?	?	콩
5	생사	생사	콩	석탄	海苔	鮮魚	?	?	함금은조동
6	魚油	석탄	석탄	海苔	콩	건어	?	?	석탄
7	목재	鮮魚	소	숨	鮮魚	소	?	?	海苔
8	숨	소	鮮魚	건어	건어	콩	?	?	鮮魚
9	석탄	숨	魚油	소	숨	생사	?	?	소
10	鮮魚	魚油	숨	鮮魚	소	염어	?	?	숨

비율은 1937년 33.91%에서 1941년 15.70%로 감소하였다. 이중 1940년에는 1.73%만을 차지하였고 1942년에는 더욱 떨어져 결국 1945년에는 수이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이 시기에 일본의 미곡 공급지로서의 조선의 역할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40〉 1937~1945년 시기의 수이입 개별상품 가액 비율 (단위: 천 엔)

상품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합계
건축물	가액	408,26	75,103	44,193	57,222	98,211	163,446	0	0	0	479,001
	비율	4.73%	7.11%	3.18%	3.72%	6.46%	10.97%	0.00%	0.00%	0.00%	6.10%
기계류	가액	60,451	82,998	205,132	175,977	158,983	0	0	0	0	683,541
	비율	7.00%	7.86%	14.77%	11.45%	10.46%	0.00%	0.00%	0.00%	0.00%	6.65%
내의	가액	14,281	18,141	22,340	21,738	31,358	48,059	0	0	0	155,916
	비율	1.65%	1.72%	1.61%	1.41%	2.06%	3.23%	0.00%	0.00%	0.00%	1.99%
기타	가액	11,464	12,948	4,328	2,025	0	0	0	0	0	30,764
	비율	1.33%	1.23%	0.31%	0.13%	0.00%	0.00%	0.00%	0.00%	0.00%	0.39%
농금건	가액	7,805	3,707	393	124	0	0	0	0	0	12,030
	비율	0.90%	0.35%	0.03%	0.01%	0.00%	0.00%	0.00%	0.00%	0.00%	0.15%
맥주	가액	946	971	924	1,338	1,292	1,180	0	0	0	6,651
	비율	0.11%	0.09%	0.07%	0.09%	0.09%	0.08%	0.00%	0.00%	0.00%	0.08%
면직사	가액	3,865	1,826	305	467	681	499	0	0	0	7,643
	비율	0.45%	0.17%	0.02%	0.03%	0.04%	0.03%	0.00%	0.00%	0.00%	0.10%
모직물	가액	12,536	15,060	22,316	15,106	17,750	24,082	0	0	0	106,850
	비율	1.45%	1.43%	1.61%	0.98%	1.17%	1.62%	0.00%	0.00%	0.00%	1.36%
목재	가액	18,046	25,063	40,968	45,137	37,762	34,278	12,927	8,095	0	222,276
	비율	2.09%	2.37%	2.95%	2.94%	2.49%	2.30%	0.96%	0.85%	0.00%	2.16%
미곡	가액	4,917	2,112	13,493	4,628	5,792	2,225	1204	699	0	35,071
	비율	0.57%	0.20%	0.97%	0.30%	0.38%	0.15%	0.09%	0.07%	0.00%	0.34%
밀가루	가액	5,939	5,983	7,903	5,518	8,054	7,178	0	0	0	40,574
	비율	0.69%	0.57%	0.57%	0.36%	0.53%	0.48%	0.00%	0.00%	0.00%	0.52%
백목면	가액	1,206	972	159	2	0	0	0	0	0	2,339
	비율	0.14%	0.09%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3%
비료	가액	28,330	38,386	26,448	18,516	9,182	2,371	0	0	0	123,234
	비율	3.28%	3.64%	1.90%	1.21%	0.60%	0.16%	0.00%	0.00%	0.00%	1.57%
석탄	가액	20,336	31,246	40,184	36,327	40,466	44,393	0	0	0	212,952
	비율	2.35%	2.96%	2.89%	2.36%	2.66%	2.98%	0.00%	0.00%	0.00%	2.71%
설탕	가액	9,895	10,502	12,085	12,852	8,814	10,081	0	0	0	64,228
	비율	1.15%	0.99%	0.87%	0.84%	0.58%	0.68%	0.00%	0.00%	0.00%	0.82%
성냥	가액	1,165	938	920	1,092	877	1,036	0	0	0	6,029
	비율	0.13%	0.09%	0.07%	0.07%	0.06%	0.07%	0.00%	0.00%	0.00%	0.08%
소금	가액	2,488	3,205	2,984	0	0	0	0	0	0	8,677
	비율	0.29%	0.30%	0.21%	0.00%	0.00%	0.00%	0.00%	0.00%	0.00%	0.11%
시멘트	가액	4,917	2,524	5,827	3,629	7,370	4,548	6,134	0	0	34,949
	비율	0.57%	0.24%	0.42%	0.24%	0.49%	0.31%	0.46%	0.00%	0.00%	0.34%
염연초	가액	4,593	1,440	18	168	203	281	0	0	0	6,704
	비율	0.53%	0.14%	0.00%	0.01%	0.01%	0.02%	0.00%	0.00%	0.00%	0.09%
옥양목	가액	7,273	5,460	1,747	147	0	0	0	0	0	14,627
	비율	0.84%	0.52%	0.13%	0.01%	0.00%	0.00%	0.00%	0.00%	0.00%	0.14%

상품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합계
자전거	가액	7,416	10,645	8,205	5,644	4,112	3,667	0	0	0	36,689
	비율	0.86%	1.01%	0.59%	0.37%	0.27%	0.25%	0.00%	0.00%	0.00%	0.51%
작감생사	가액	6,619	5,722	5,775	0	0	0	0	0	0	18,115
	비율	0.77%	0.54%	0.42%	0.00%	0.00%	0.00%	0.00%	0.00%	0.00%	0.23%
솜	가액	32,861	20,709	10,406	135	309	12	0	0	0	64,433
	비율	3.81%	1.96%	0.75%	0.01%	0.02%	0.00%	0.00%	0.00%	0.00%	0.82%
좁쌀	가액	14,953	14,014	20,521	15,129	19,453	11,020	10,634	14,552	1,149	121,424
	비율	1.73%	1.33%	1.48%	0.98%	1.28%	0.74%	0.79%	1.52%	0.94%	1.18%
종이류	가액	17,452	22,775	23,195	26,158	28,997	24,319	0	0	0	142,896
	비율	2.02%	2.16%	1.67%	1.70%	1.91%	1.63%	0.00%	0.00%	0.00%	1.82%
청주	가액	1,983	2,670	3,429	1,546	1,051	870	0	0	0	11,549
	비율	0.23%	0.25%	0.25%	0.10%	0.07%	0.06%	0.00%	0.00%	0.00%	0.15%
콩	가액	11,770	5,405	11,475	0	0	0	0	0	0	28,650
	비율	1.36%	0.51%	0.83%	0.00%	0.00%	0.00%	0.00%	0.00%	0.00%	0.36%
팥	가액	2,127	839	3,043	109	2	1	0	0	0	6,121
	비율	0.25%	0.08%	0.22%	0.01%	0.00%	0.00%	0.00%	0.00%	0.00%	0.08%
화북양복	가액	13,700	19,589	22,888	21,550	28,433	27,500	0	0	0	133,660
	비율	1.59%	1.86%	1.65%	1.40%	1.87%	1.85%	0.00%	0.00%	0.00%	1.70%
기타	가액	기타	493,365	614,903	826,763	1,013,294	1,000,514	1,062,508	1,255,347	895,794	65,197
	비율	기타	57.13%	58.23%	59.55%	65.95%	65.85%	71.27%	93.15%	93.71%	53.37%
합계	가액	863,553	1,055,928	1,388,448	1,536,368	1,519,339	1,490,884	1,347,675	955,895	122,170	10,279,196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朝鮮貿易年表》각년판, 《朝鮮經濟年報》Ⅲ-54~55쪽.

〈표 8-41〉 1937~1945년 시기의 수이입 10대 상품 추이

순위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합계
1	기계류	기계류	기계류	기계류	기계류	건직물	석탄	석탄	석탄	기계류
2	건직물	건직물	건직물	건직물	건직물	내의	콩	좁쌀	콩	건직물
3	솜	비료	목재	석탄	석탄	석탄	목재	콩	좁쌀	석탄
4	비료	석탄	석탄	목재	목재	목재	좁쌀	목재	팥	목재
5	석탄	목재	비료	종이류	내의	화북양복	시멘트	미국	?	내의
6	목재	종이류	종이류	콩	종이류	종이류	미국	시멘트	?	종이류
7	종이류	솜	화북양복	내의	화북양복	모직물	팥	팥	?	화북양복
8	좁쌀	화북양복	내의	화북양복	좁쌀	도자기	?	?	?	비료
9	내의	내의	모직물	비료	도자기	콩	?	?	?	좁쌀
10	화북양복	모직물	좁쌀	좁쌀	모직물	좁쌀	?	?	?	콩

이 시기의 수이입 개별상품을 가액과 그 비율로 정리한 것이 〈표 8-40〉이다. 위의 표를 중심으로 10대 수이입 개별상품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8-41〉이다. 이 시기에 수이입 부문의 1위를 차지한 상품은 기계류였다. 1932~1936년 시기에 이어 이 시기 수이입 기계류의 가액도 1941년까지 증가하여 가액과 비율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3) ‘쌀이출 좁쌀수입’ 구조와 조선의 식량문제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이후 조선의 경제구조를 식민지 통치에 부합하도록 재편하는 작업을 본격화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쌀이출 좁쌀수입’ 구조가 형성되었다. 수이출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0년대 초반 하더라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시기 후반부에 들어와 쌀이 전체 수이출 전체상품 가운데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대부분의 쌀이 일본으로 이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까지는 아직 전체 쌀 생산량 가운데 수이출 쌀수량의 비율인 수이출비율은 10% 내외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다음 시기의 ‘기아수출’이라는 성격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표 8-42〉 수이출 쌀가액·수량, 쌀 생산량(1910~1919)¹¹⁶⁾ (단위: 천 엔, 천 석)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합계
가액	6,278	4,661	7,525	14,494	17,099	24,517	19,366	27,417	61,542	110,031	292,930
수량(A)	830	680	659	929	1,322	2,468	1,606	1,589	2,134	2,750	14,967
생산량(B)	10,406	11,568	10,865	12,110	14,131	12,846	13,933	13,688	15,294	12,708	127,549
수이출비율(A/B)(%)	7.98	5.88	6.07	7.67	9.36	19.21	11.53	11.61	13.95	21.64	11.49

출처: 《朝鮮貿易年表》각년판, 《朝鮮經濟年報》각년판(농업편).

116) 가액 단위는 천 엔, 수량 및 생산량 단위는 천 석임. 이하 별도의 표기가 없으면 동일함.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본은 조선개항 이후 조선쌀을 반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조선은 모든 쌀을 일본에 이출한 것은 아니었다. <표 8-43>에 의하면 일제가 조선을 병합한 직후인 1910년의 경우만 해도 수이출 쌀가액에서 일본이 차지한 비율은 기타국과 비교할 때 66.16%로 3분의 2정도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몇 차례의 비율감소가 있었지만 1919년에는 96.83%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쌀이 일본으로 이출되었다.

따라서 쌀의 수이출 대상국의 분석을 통해서 이 시기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개항 이래 쌀은 주로 일본으로 이출되었지만 기타국에도 일정 비율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된 이후 조선의 쌀수이출 시장은 점차적으로 일본에 편중되기 시작하여 결국 일본으로 단일화된 셈이었다.

<표 8-43> 국가별 수이출 쌀가액 비율(1910~1919년) (단위: 천 엔, 비율: %)

국가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합계
일본	가액	4,154	2,821	4,252	11,402	14,246	21,324	14,356	17,880	56,618	106,547	253,600
	비율	66.16	60.53	56.51	78.67	83.32	86.98	74.13	65.22	92.00	96.83	86.57
중국	가액	1,528	1,612	2,155	2,112	1,968	2,349	3,447	4,238	4,648	3,057	27,113
	비율	24.34	34.59	28.64	14.57	11.51	9.58	17.80	15.46	7.55	2.78	9.26
露領 亞細亞	가액	144	225	1,104	961	873	825	1,524	3,078	167	283	9,185
	비율	2.30	4.82	14.67	6.63	5.11	3.37	7.87	11.23	0.27	0.26	3.14
기타	가액	452	3	14	19	11	18	39	2,221	109	144	3,029
	비율	7.19	0.06	0.18	0.13	0.06	0.08	0.20	8.10	0.18	0.13	1.03
합계	가액	6,278	4,661	7,525	14,494	17,099	24,517	19,366	27,417	61,542	110,031	292,928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전: 《朝鮮貿易年表》각년판.

일제의 증산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쌀수이출이 증가하게 되자 1912년부터 조선인의 식량수급을 위해 좁쌀을 수이입하기 시작하였다. 좁쌀은 이 시기 초반 수이입 농산물 가운데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던 쌀을 밀어내고 후기에 들어와서는 수이입 농산물 가운데 1위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수이입 농산물이 되었지만 다음 시기와는 달리 기복이 상당히 심한 편이었다. 좁쌀의 수이입은 대부분 만주좁쌀을 수출하였던 중국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표 8-44> 수이입 좁쌀가액 · 수량 · 생산량(1912~1919년) (단위: 천 엔)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합계
가액	273	2,898	1,148	766	93	1,324	3,100	15,440	25,042
수량(A)	70	720	127	103	10	124	213	916	2,281
생산량(B)	3,813	4,576	4,025	4,384	4,821	5,182	5,663	3,816	36,280
수이출비율(A/B%)	1.84	15.73	3.16	2.35	0.21	2.39	3.76	24.00	6.29

출전: 《朝鮮貿易年表》각년판, 《朝鮮總督府統計年報》각년판(농업편).

좁쌀의 수이입은 대부분 만주좁쌀을 수출하였던 중국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기타국의 비율은 상당히 미미하였다. 그렇지만 중국에서의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1916년의 경우 기타국이 수이입 좁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8.2%를 차지한 경우도 있었다.

<표 8-45> 국가별 수이입 좁쌀가액 · 비율(1912~1919년) (단위: 천 엔, 비율: %)

국가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합계
중국	가액	271	2,898	1,147	766	58	1,271	3,100	15,411	24,922
	비율	99.04	100.00	99.98	99.99	61.80	96.01	100.00	99.81	99.52
기타	가액	3	0	0	0	36	53	0	29	120
	비율	0.96	0.00	0.02	0.01	38.20	3.99	0.00	0.19	0.48
합계	가액	273	2,898	1,148	766	93	1,324	3,100	15,440	25,042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전: 《朝鮮貿易年表》각년판.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쌀생산량이 정체 내지 감소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이출 쌀수량은 다른 어느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였다. 그리하여 쌀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수이출 쌀수량의 비율은 1931년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일본으로 안정적으로 이출되었다. 따라서 쌀생산량이 정체하였고 쌀값이 폭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이출 쌀수량이 엄청나게 증가함으로써 이 시기는 무제한적 ‘기아수출’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표 8-46〉 수이출 쌀가액·수량, 쌀생산량(1920~1931년) (단위: 천 엔, 천 석)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합계
가액	77,008	92,813	95,805	113,013	164,483	173,164	192,568	191,575	183,730	148,816	109,665	138,487	1,681,129
수량(A)	1,988	3,368	3,029	3,905	4,700	4,561	5,551	6,166	6,709	5,539	4,914	8,617	59,046
생산량(B)	14,882	14,324	15,014	15,175	13,219	14,773	15,301	17,299	13,512	13,702	19,181	15,873	182,255
수이출비율(A/B)(%)	13.36	23.51	20.17	25.73	35.55	30.87	36.28	35.64	49.65	40.42	25.62	54.29	32.40

출전: 《朝鮮貿易年表》각년판, 《朝鮮總督府統計年報》각년판(농업편).

〈표 8-47〉은 1920~1931년 시기 국가별 수이출 쌀가액과 비율을 표기한 것이다. 이미 1910~1919년 시기에 일본으로의 단일화가 이루어진 하였지만 이 시기에는 그것이 보다 확고해졌다. 이 시기 일본으로의 이출비율은 평균 99.21%나 되었다. 이제 쌀의 수이출은 쌀의 이출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도 무방한 상황이 된 것이다.

쌀수이출로 인한 식량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좁쌀을 거의 대부분 중국 지역에서 수입하였다. 각년마다 약간의 차가 있긴 하였지만 전체 합계에서 좁쌀이 점하는 비율이 2위를 차지하였고 1925~1928년, 그리고 1930년에는 1위를 차지하였다. 조선인들은 가격과 질이 떨어지는 좁쌀 수입 속에서도 쌀의 기하급수적 수이출로 식량소비를 줄여야만 하였다. ‘쌀이출 좁쌀수입’ 구조가 전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표 8-47〉 국가별 수이출 쌀가액·비율(1920~1931년) (단위: 천 엔, 비율: %)

국가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합계
일본	가액	73,196	88,784	93,690	112,932	163,298	172,629	192,221	191,141	183,421	148,550	109,507	138,438	1,667,786
	비율	95.05	95.66	97.79	99.93	99.28	99.69	99.82	99.77	99.83	99.82	99.86	99.96	99.21
중국	가액	3,317	3,413	1,804	41	1,011	450	309	434	282	261	150	47	11,518
	비율	4.31	3.68	1.88	0.04	0.61	0.26	0.16	0.23	0.15	0.18	0.14	0.03	0.69
露領 亞細亞	가액	473	443	200	1	0	48	0	0	27	0	0	0	1,192
	비율	0.61	0.48	0.21	0	0	0.03	0	0	0.01	0	0	0	0.07
기타	가액	23	173	112	39	175	37	38	0	0	6	9	2	613
	비율	0.03	0.19	0.12	0.03	0.11	0.02	0.02	0	0	0	0.01	0	0.04
합계	가액	77,008	92,813	95,805	113,013	164,483	173,164	192,568	191,575	183,730	148,816	109,665	138,487	1,681,129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전: 《朝鮮貿易年表》각년판.

〈표 8-48〉 수이입 좁쌀가액·수량·생산량(1920~1931년) (단위: 천 엔, 천 석)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합계
가액	18,093	975	8,827	13,314	19,679	28,780	31,806	31,650	25,489	20,866	21,393	7,932	228,803
수량(A)	766	88	1,719	2,610	3,264	4,051	5,243	6,071	4,736	3,752	3,954	2,684	38,938
생산량(B)	6,036	5,863	5,138	5,298	5,078	4,757	4,777	4,994	5,233	5,244	5,573	4,590	62,582
수이입비율(A/B)(%)	12.69	1.50	33.46	49.26	64.28	85.16	109.76	121.57	90.50	71.55	70.95	58.47	62.22

출전: 《朝鮮貿易年表》각년판, 《朝鮮總督府統計年報》각년판(농업편).

〈표 8-49〉 국가별 수이입 좁쌀가액·비율(1920~1931년) (단위: 천 엔, 비율: %)

국가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합계
중국	가액	18,093	974	8,827	13,314	19,666	28,763	31,801	31,649	25,486	20,858	21,392	7,931	228,754
	비율	100	99.89	100	100	99.93	99.94	99.98	100	99.99	99.96	99.99	99.99	99.98
기타	가액	0	1	0	0	13	16	5	0	3	8	1	0	49
	비율	0	0.11	0	0	0.07	0.06	0.02	0	0.01	0.04	0.01	0.01	0.02
합계	가액	18,093	975	8,827	13,314	19,679	28,780	31,806	31,650	25,489	20,866	21,393	7,932	228,803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전: 《朝鮮貿易年表》각년판.

일제는 조선의 쌀을 수탈하지 않았으며 만주좁쌀의 수입으로 실제로 조선인들의 1인당 식량소비량이 그다지 줄지 않았다고 선전하였다. 또한 일본으로의 쌀이출은 전시체제기를 제외하고는 강제공출에 의하

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비싼 쌀을 이출하고 저렴한 잡곡을 소비하는
순전히 경제적 현상이었다고 주장한 일본인 학자도 있다.¹¹⁷⁾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잡곡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조선지역의 1인당
식량소비량은 계속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표 8-50>에 잘 나타난다.
당시 일본인 가운데에도 산미증식계획이 일본식량문제의 해결이라는
목적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으나 조선농민의 생활향상을 꾀하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었고 쌀을 팔아 좁쌀을 사먹어야 하는 농민경제를
만들었을 뿐이었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다.¹¹⁸⁾

<표 8-50> 1인당 식량소비량 (단위: 석)

期間	1인당 소비량				지수			
	쌀	좁쌀	기타잡곡	합계	쌀	좁쌀	기타잡곡	합계
1915~1919 5개년 평균	0.7071	0.3034	1.0208	2.0313	100	100	100	100
1920~1924 5개년 평균	0.6379	0.3432	0.9981	1.9792	90	113	98	97
1925~1929 5개년 평균	0.5124	0.3664	0.9336	1.8124	72	121	91	89
1930~1936 7개년 평균	0.4256	0.3032	0.9088	1.6376	60	100	89	81

출전: 菱本長次, 1938, 《朝鮮米の研究》, 千倉書房, 701~703쪽.

일본에서 쌀값이 폭락하고 식민지쌀의 이입을 통제하는 상황하에
결국 산미증식계획이 중단됨으로써 쌀이출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경제
에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쌀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수이출 쌀수량
의 비율도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117) 鈴木武雄, 1946, 〈朝鮮統治の性格と實績~反省と反批判〉《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通卷第十一冊朝鮮篇第十分冊, 33~35쪽.

118) 久間健一, 《朝鮮農業の近代の様相》, 西ヶ刊行會, 19쪽. 그 이외에도 조선인들은 옥수수, 감자를 삶아 만든 죽, 떡, 조밥, 감자를 넣어 삶은 뒤 부순 것, 연감자, 썩은 감자를 감분(감자녹말)하여 만든 감분국수, 옥수수죽 등을 먹었고 해안에서는 청조류, 산간에서는 쭉이나 오이 등의 대용식물을 식료로 먹었지만 그나마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朝鮮總督府殖産局, 1928, 《小作農民に關する調査》, 165~169쪽.

이출이 조선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일제가
선전한 일본 정공업지대(精工業地帶), 조선 조공업지대(粗工業地帶),
만주 농업지대(農業地帶)라는 개념은 단지 선언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표 8-51> 수이출 쌀가액·수량, 쌀생산량(1932~1936년) (단위: 천 엔, 천 석)

	1932	1933	1934	1935	1936	합계
가액	145,337	154,707	224,267	243,777	250,954	1,019,043
수량(A)	7,143	7,569	9,456	8,591	8,472	41,231
생산량(B)	16,346	18,193	16,717	17,885	19,411	88,551
수이출비율(A/B)(%)	43.70	41.60	56.57	48.03	43.65	46.56

출전: 《朝鮮貿易年表》각년판, 《朝鮮總督府統計年報》각년판(농업편).

<표 8-52> 국가별 수이출 쌀가액 비율(1932~1936년) (단위: 천 엔, 비율: %)

국가		1932	1933	1934	1935	1936	합계
일본	가액	144,797	152,693	222,290	240,128	249,427	1,009,334
	비율	99.63	98.70	99.12	98.50	99.39	99.05
중국	가액	17	131	26	102	26	303
	비율	0.01	0.08	0.01	0.04	0.01	0.03
만주국	가액	522	1,512	1719	1,760	1,324	6,837
	비율	0.36	0.98	0.77	0.72	0.53	0.67
관동주	가액	0	359	230	1,785	175	2,548
	비율	0	0.23	0.10	0.73	0.07	0.25
露領 亞細亞	가액	0	7	0	3	0	10
	비율	0	0	0	0	0	0
기타	가액	1	5	3	0	3	11
	비율	0	0	0	0	0	0
합계	가액	145,337	154,707	224,267	243,777	250,954	1,019,043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출전: 《朝鮮貿易年表》각년판.

쌀수이출이 여전히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 대체식량으로
서의 좁쌀 수이입이 1932~1936년 시기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
다. 가격이 상승하여 조선인들은 좁쌀조차 구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표 8—53〉 수이입 좁쌀가액·수량·생산량(1932~1936년) (단위: 천 엔, 천 석)

	1932	1933	1934	1935	1936	합계
가액	16,026	12,788	15,773	20,272	22,702	87,562
수량(A)	3,644	2,572	3,417	2,509	3,073	15,215
생산량(B)	5,539	5,145	3,772	4,861	5,065	24,382
수이출비율(A/B)%%	65.79	49.99	90.59	51.61	60.67	62.40

출전: 《朝鮮貿易年表》각년판, 《朝鮮總督府統計年報》각년판(농업편).

〈표 8—54〉 국가별 수이입 좁쌀가액 비율(1932~1936년) (단위: 천 엔, 비율: %)

국가		1932	1933	1934	1935	1936	합계
만주국	가액	16,025	12,784	15,737	11,695	17,500	73,740
	비율	99.99	99.97	99.77	57.69	77.08	84.22
중국	가액	0	0	0	7,929	4,958	12,887
	비율	0.00	0.00	0.00	39.11	21.84	14.72
관동주	가액	0	1	0	0	0	1
	비율	0.00	0.00	0.00	0.00	0.00	0.00
일본	가액	0	3	36	649	244	932
	비율	0.00	0.03	0.23	3.20	1.08	1.06
기타	가액	1	0	0	0	0	1
	비율	0.01	0.00	0.00	0.00	0.00	0.00
합계	가액	16,026	12,788	15,773	20,272	22,702	87,562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출전: 《朝鮮貿易年表》각년판.

이와 같이 ‘쌀이출 좁쌀수입’ 구조의 변질과정에서 조선인들의 식량수급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일본으로의 쌀공급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쌀의 수이출은 급격하게 감퇴하였다. 1937~1945년 시기에도 쌀의 지위는 수이출 전체상품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지만 이전시기와 비교할 때 쌀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히 감퇴하였다. 일본의 쌀공급지로서 조선의 역할은 이 시기에 들어와서 파멸 직전에 있었다. 이는 쌀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수이출 쌀수량의 비율인 수이출비율이 큰 폭으로 줄었음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표 8—55〉 수이출 쌀가액·수량, 쌀생산량(1937~1945년) (단위: 천 엔, 천 석)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가액	232,459	311,963	174,632	16,368	152,776	220,071	12,333	200,595	?
수량(A)	7,432	9,596	4,931	386	3,519	6,273	1,303	4,121	1,756
생산량(B)	26,797	24,139	14,356	21,527	24,886	15,688	18,719	16,052	12,850
수이출비율(A/B)%%	27.73	39.75	34.35	1.79	14.14	39.99	6.96	25.67	13.67

출전: 《朝鮮貿易年表》각년판, 《朝鮮總督府統計年報》각년판(농업편), 朝鮮銀行調査部 編, 1948, 《朝鮮經濟年報》.

〈표 8—56〉 국가별 수이출 쌀가액 비율(1937~1941년) (단위: 천 엔, 비율: %)

국가		1937	1938	1939	1940	1941
일본	가액	231,088	302,054	149,366	16,368	152,776
	비율	99.41	96.82	85.53	?	?
중국	가액	148	4,076	13,328	?	?
	비율	0.03	1.31	7.63	?	?
만주국	가액	1,108	3,185	8,687	?	?
	비율	0.48	1.02	4.97	?	?
관동주	가액	114	2,647	3,251	?	?
	비율	0.05	0.85	1.86	?	?
露領 亞細亞	가액	0	0	0	?	?
	비율	0	0	0	?	?
기타	가액	2	2	0	?	?
	비율	0	0	0	?	?
합계	가액	232,459	311,963	174,632	?	?
	비율	100	100	100	100	100

출전: 《朝鮮貿易年表》각년판.

농산물 수이입품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하였던 좁쌀이 콩에게 한 때 그 지위를 넘겨주기도 하였다. 수이입 좁쌀수량과 좁쌀생산량의 비율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좁쌀생산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발생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쌀이출 좁쌀수입’ 구조가 파멸되면서 조선인들의 쌀소비량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좁쌀을 비롯한 잡곡소비량의 감소로 조선인들은 기아선상에서 헤매게 되었다.

〈표 8—57〉 수이입 좁쌀가액·수량·생산량(1937~1944년) (단위: 천 엔, 천 석)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가액	14,953	14,014	20,521	15,129	19,453	11,020	10,634	14,552
수량(A)	1,911	1,820	1,953	861	1,310	729	673	?
생산량(B)	5,840	5,237	5,029	4,261	3,398	3,298	4,010	3,916
수이출비율(A/B(%))	32.72	34.75	38.83	20.21	38.55	22.10	16.78	?

출전: 《朝鮮貿易年表》각년판, 《朝鮮總督府統計年報》각년판(농업편), 朝鮮銀行調查部 編, 1948, 《朝鮮經濟年報》.

〈표 8—58〉 국가별 수이입 좁쌀가액 비율(1937~1939년)¹¹⁹⁾ (단위: 천 엔, 비율: %)

국가		1937	1938	1939	합계
만주국	가액	13,414	13,534	19,655	46,603
	비율	89.71	96.58	95.78	94.17
중국	가액	697	0	0	697
	비율	4.66	0.00	0.00	1.41
일본	가액	842	479,484	866,097	2,187,236
	비율	5.63	3.42	4.22	4.42
합계	가액	14,953	14,014	20,521	49,487
	비율	100	100	100	100

출전: 《朝鮮貿易年表》각년판.

〈표 8—59〉 1인당 식량소비량(1937~1945년) (단위: 석)

	쌀	잡곡	합계
1937	0.57	0.93	1.50
1938	0.70	0.85	1.55
1939	0.77	0.89	1.66
1940	0.61	0.82	1.43
1941	0.72	0.72	1.44
1942	0.74	0.78	1.52
1943	0.58	0.49	1.07
1944	0.55	0.68	1.23
1945	0.55	0.50	1.05

〈표 8—59〉에 의하면 1945년 1인당 식량소비량은 쌀 0.55석, 잡곡 0.50석 합계 1.05석이였다. 일제 강점 초기와 비교할 때 일제패망 직전인 이 시기에 이르러 조선인들의 식량소비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어 아사 직전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¹⁹⁾

일제는 ‘한국병합’ 이후 처음부터 조선을 경제적으로 확고하게 장악할 수는 없었다. 과도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식민지무역구조가 확립되는 시기 또는 수탈구조가 확립된 시기에 오히려 무역규모의 추이가 가장 정체적이었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후 식민지 경제정책의 변화 속에서 식민지무역구조도 부분적인 변화를 보였지만 근본적인 구조변화는 없었다. 결국 일본이 조선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장악하는 상황에서 식민지무역구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으며 일제는 이시기에 무차별적 대중 수탈을 자행함으로써 조선인은 대부분 기아 속에 허덕여야 했던 것이다.

119) 1940년 이후 수출통계는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 실상을 파악할 수는 없다.

결론
한국무역사의 전개와 발달

최광식(고려대학교)

1. 선사시대 및 초기국가의 교역

구석기시대 인류는 타제석기를 사용하면서, 수렵·채집경제(狩獵·採集經濟)에 바탕한 ‘식량채집단계(食糧採集段階: food-gathering stage)’의 삶을 영위하였다. 또 신석기시대 인류는 새로이 성립한 농경을 배경으로 토기라는 새로운 조리(調理)와 저장수단을 개발·활용하기 시작하고, 돌을 갈아서 만든 마제석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칼 폴라니는 인류의 경제조직은 ‘호혜체계(互惠體系)’·‘재분배체계(再分配體系)’·‘시장체계(市場體系)’라는 세 개의 기본적 체계로 구성된다고 본다. 그 첫번째 단계인 ‘호혜체계’는 호혜성(互惠性: reciprocity)에 바탕한 동등자(同等者) 사이의 교환(交換: exchange)인 선물(贈物: gifts)에 기초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선사시대 주민들 사이의 물질 교류는 선물 교환으로 개념되는 호혜성의 바탕 위에서 행해졌을 것이다. 따라서 선사시대 교역의 기본 골은 개인 간 혹은 소규모 집단 사이의 호혜적인 물물교환이었다.

오늘날 인류학계는 특히 후기 구석기시대로 들어오면서, 장거리에

걸친 교역 혹은 교환경제망의 등장을 시사하는 여러 고고학 자료의 존재에 주목하고 있다. 이의 단적인 예로는 흑요석을 들 수 있다. 즉 오산리를 포함하여 의정부시(議政府市) 민락동·홍천군(洪川郡) 하화계리·공주시(公州市) 장기면 하봉리라는 네 곳에서 출토된 흑요석을 고고자료(考古資料)로, 경북(慶北) 의성(義城) 금성산·추가령지구대 철원(鐵原) 궁평리라는 두 곳의 화산유리산지(火山琉璃產地)를 비교자료로 일련의 희토류원소분석(稀土類元素分析)을 시행한 바 있다.

만일 이 연구 결과를 따른다면, 직선거리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양양 오산리와 공주 하봉리에서, 또 홍천·의정부·공주라는 넓은 지역에 걸쳐 고고학적으로 같은 시기라 해도 좋을 유적에서 동일 산지의 흑요석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구석기시대 최말기 古人類 행동양식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곧 흑요석은 당시 수렵채집집단이 계절적이며 주기적인 이동 과정에서 산지를 방문해 채취하는 방식을 통해 획득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모종의 사회경제적 관계를 통해 산지로부터 전달받는 형태를 취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주와 한반도 및 일본 열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경우, 이곳에서의 농경생활은 청동기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본격화된다. 특히 기원전 12~10세기경부터 예맥(濊貊)이라 일컬어지는 새로운 주민집단이 무문토기(無文土器) 및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다뉴조문경(多紐粗文鏡)을 그 표지유물(標識遺物)로서, 또 중심묘제(中心墓制)로서 석관묘(石棺墓)와 지석묘(支石墓)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만주와 한반도에 그 존재를 드러내게 된다.

아울러 농경이라는 안정적 식량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그 잉여(剩餘)의 재분배기계(再分配機制)가 가동(稼動)됨에 따라 사회적 분화도가 제고되고, 이에 따른 권력(權力)과 계층(階層)이 발생하게 됨에 이르

러, 제 집단간의 상호 교호작용(交互作用)은 물론 조직화된 무장충돌(organized and armed conflict) 마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학계는 한국 청동기시대에 있어 만주 및 한반도 등지에 분포된 비파형동검을 ‘예맥 I기 문화(濊貊 I 期文化)’의 소산으로, 그 이후 계기적(繼起的)으로 전개되는 세형동검(細形銅劍)을 그 표지유물로 하는 철기시대를 ‘예맥 II기 문화’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는 그 문화의 담당주민과 역사성의 문제와 관련, ‘예맥문화권(濊貊文化圈)’의 시·공간적 범위의 상정을 가능케하고 있다. 곧 예맥문화권은 이 시기 예맥족이 주체가 되어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성립·전개되었던 동질적 기저문화(基底文化)를 바탕으로 한 광역(廣域)의 문화권을 일컫는다. 이 문화권이 기원전 12~10세기경 성립한 뒤, 기원전 7세기경 이래 각기 지역별·주민집단별 특성을 드러내는 여러 하위문화권(下位文化圈)으로 분화·발전해 나간다.

칼 폴라니가 인류의 경제조직으로 거론한 두번째 단계는 ‘재분배체계(再分配體系: redistribution system)’이다. 이는 재분배에 기초하는 바, 사회적 위계질서(位階秩序)에 의거하여 가동된다.

이 점에 비추어, 청동기시대 예맥문화권에 자리 잡게 된 재분배 경제구조란 지배와 피지배라는 권력관계에 바탕한 집단 내부의 또 이들 집단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성립한다. 따라서 예맥문화권 내부 지역별 제 집단간에 또 그 집단 내의 하위집단 사이의 정치·경제·문화·사회적 발전 수준에 있어 불균등성(不均等性)의 존재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된다.

이 경우 한 집단의 수장(首長)은 교역을 통하여 획득한 외부 집단의 재화를 다시 각 세대(世帶)에게 하사하기도 한다. 특히 두 집단 간에

있어서의 사치품(奢侈品) 교역은 각 집단의 엘리트(elite)사이에서만 행해지는 까닭에, 수장은 교역에서 얻은 사치품을 자기에 대한 충성의 대가인 권위재(權威財) 혹은 위세품(威勢品: prestige good)으로서 수여(授與)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인적·물적 교류 양상을 예맥문화권 역내교역(域內交易)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사는 청동기시대의 발전과 갈등의 와중에서 축적된 역동성을 바탕으로 철기시대(鐵器時代)로 계기적(繼起的) 진전상을 보이면서 마침내 기원전 4세기 말~3세기 초 이래 ‘고조선(古朝鮮)’이라는 국가(state)의 성립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학계는 고조선 국가 형성과 관련 국가라는 고도의 정치적 복합체 형성 요인을 농경(農耕)·전쟁(戰爭)·교역(交易)에서 찾고자 함이 일반적이다. 원생국가(原生國家: pristine state)인 ‘예맥조선(濊貊朝鮮)’은 예맥문화권의 선진 지역인 요하 유역에서 기원전 4세기 말~3세기 초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한편 위만조선(衛滿朝鮮)은 역사상 그 실체가 최초로 분명히 드러나는 국가로서, 그 성립과 관련하여 전쟁과 교역에 각각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위만조선은 동북아시아 방면의 유력한 무장세력(武裝勢力)으로 부각되면서, 이 방면에서의 교역망(交易網) 통제를 둘러싸고 한 제국(漢帝國)과 전쟁을 치루면서 붕괴되어 갔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고조선을 선두로 한 예맥계 제 집단의 정치적 성장은 교역권(交易圈)의 확대와 동아시아 교역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기원전 3세기가 되면 연(燕)의 동진으로 요동 지역까지 중국의 거점이 구축되면서, 종전의 고조선지역은 중국의 직접적인 교역의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바, 명도전(明刀錢) 관계 이른바 연화보-세죽리유형문

화(蓮花堡-細竹里類型文化)가 그것을 입증하여 준다. 그 네트워크는 청천강 이북선까지 남하하는데, 대량 매납된 화폐(貨幣)로 보아 경제적인 교역활동이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명도전이 출토되는 곳으로는 집자리·무덤 그리고 매납유적이 있다. 그것이 연에서 주조(鑄造)한 화폐가 분명하다면, 연이 붕괴하거나, 그 화폐의 효용가치(效用價值)가 없어진 시점에 매납되었을 것이다.

명도전 화폐를 통한 교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전국시대 당대의 화폐는 통치정책의 일환으로서 물자의 유통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원전 2세기 초 성립한 위만조선은 애당초 한의 묵인 아래 강력한 무력을 배경으로 예맥문화권 내에서의,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 장악을 기도하고 있었다. 기원전 2세기 이후 위만조선 단계에 이르면 한·중간에 교류한 사실은 연하도(燕下都)의 귀족무덤에서 발견되는 세형동과(細形銅戈)와 평양(平壤)에서 발견되는 진과(秦戈)를 통해서 확인된다.

위만조선은 주변 삼한(三韓) 지역과의 중심지무역(中心地貿易: central place trade)의 거점으로서 기능하였다. 한때 위만조선은 한의 외신(外臣)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주변 동이(東夷)를 관리하면서 무역의 이익을 취하도록 보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위만조선 단계에 한반도 서북 지역과의 남부 지방 사이에 물품 그 자체나 기술정보·제작 집단 등이 활발하게 교류된 고고학적 증거는 세문경을 비롯한 비중국계 재자산 청동기이다. 결국 위만조선과 한과의 전쟁은 이러한 교역로 통제권에 바탕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위만조선의 과욕과 주변 예맥계 제 집단의 성장 그리고 한 제국의 이 방면에서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발발하였던 것이다.

압록강 이북에만 설치되었던 중국 군현이 기원전 108년에 청천강 이남에도 설치되면서, 한의 정치적·군사적·경제적 거점지역이 대동강 유역에 확보된다. 한반도 서북 지역은 이제 바야흐로 중국의 직접적인 교역권 내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공무역·사무역·조공무역 등 다양한 방식의 교역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 대한 무역 거점으로서, 중심 지무역과 재분배의 거점 기능이 이전의 위만조선 시기보다 훨씬 강도 높게 수행되었음은 물론이다.

농업·목축업(牧畜業)·수공업(手工業) 등을 기축으로 한 부여국가의 경제적 기반 자체는 지극히 자기충족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또 그 수탈기계(收奪機制) 및 그 운영의 실상 또한 대단히 원심성(遠心性)이 강한 자기소모적·분산적 특성을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부여국가의 교역은 대외관계의 틀 속에서 그것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맺으며 진전되었다.

부여는 국초 이래 늦어도 서기 3세기 전반까지 읍루족(挾婁族)에 대한 지배권(支配權)을 유지, 공납제(貢納制)에 의거한 광범위한 인적·물적 수탈을 행하고 있었다. 당시 철(鐵)과 더불어 전략물자로서 중시된 것은 말(馬)이었는데, 고구려와 부여의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던 서기 1세기 초반에조차 부여인들 가운데 일부가 국가의 금령(禁令)을 어기면서까지 고구려에게 이 말을 방매(放賣)한 사실은 당시 국가 간에 행해지던 말 밀매(密買)의 실상과 더불어 부여 국가의 원심성을 엿보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기원전 2세기 초 이래 고구려사회는 위만조선의 국세팽창 기도에서 비롯된 이 방면에 조성된 새로운 정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아울러 위만조선 붕괴 이후 진행되었을 그곳 주민들의 이 지역으로의 유

입은 당시 그들이 갖고 있던 우월한 제 역량과 선진적 역사경험의 압록강 중류 유역 일대로의 이전에 있어서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2세기 말 전한(前漢)은 압록강 중류유역의 지정학적(地政學的)·전략적 우위성을 자기 측에 확보하고, 고구려 사회의 성장과 정치적 통합노력을 제어하고자 하는 정책적 구도 아래 현도군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삼국지(三國志)》동이전(東夷傳) 고구려조(高句麗條)의 ‘책구루(曷溝婁)’ 관련 기사는 현도군과 국가형성 전 고구려 사회 사이에 존재하던 쌍방의 세력 부침에 따른 길항관계 전개 양상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당시 현도군의 수현(首縣)인 고구려현의 현령(縣令)이 고구려 사회의 각급 수장들을 개별적으로 파악, 그들로 하여금 자기 현이 관장하는 ‘조공무역’에 참여케 함으로써, 교역을 매개로 고구려 사회를 구성하는 제 집단의 분할지배를 피하였던 것이다.

고구려에 있어서 전쟁은 농경과 교역에 갈음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부문의 수요·공급을 창출함으로써 전사회에 있어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국가형성기 고구려의 최우선 경제정책은 말·철 같은 전략물자와 식량 등 물적 자원과 군사적 부용집단(附庸集團) 같은 인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군사잠재력 기반의 조성·축적에 최우선 순위가 두어졌을 것이며, 국초 이래 강행된 군사적 팽창정책 또한 이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국가형성기 고구려는 그 대외 교역품을 피정복지에서의 공납(貢納)을 수탈기제로 한 자원약탈을 통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즉 고구려는 북옥저(北沃沮) 지방 등을 군사적으로 제압한 후 그 지역의 특산물을 수탈,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한인(漢人)들에게 전매(轉賣)함으로써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당시 선비(鮮卑) 등 유목

세력들은 한(漢) 세력의 금수(禁輸) 조치로 말미암아 철기 획득에 부심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북옥저의 철을 당시 이들의 말과 교환하는 마철교역(馬鐵交易)을 행함으로써 자기 기병(騎兵) 전력의 확충을 꾀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 당시 고구려에게 가장 확실한 이윤이 보장되는 교역 형태는 한 세력에 대한 군사력 판매였던 것이다. 이 사실은 대 흉노(匈奴) 출병을 둘러싼 유리왕(琉璃王) 대 신(新)과의 무력 충돌사건을 통해서 간파할 수 있다.

한편 동옥저는 제 읍락(諸邑落)을 중심으로 하는 점재(點在)·고립적인 ‘군장사회(君長社會: chieftdom)’ 단계 수준에 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발전의 지체가 그대로 옥저사회 그 자체 경제역량의 낙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만이 아님은 물론이다. 결국 옥저사회는 한(漢) 세력이나 고구려의 ‘교역’을 빙자한 부등가교환이나 공납(貢納) 등을 빌미로 경제적 수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는 동옥저 지방의 제 읍락 거수(渠帥: 우두머리)들 곧 ‘대인(大人)’들을 ‘사자(使者)’로 삼아 이들을 중간 매개기구로 한 공납적 수탈기제를 운영하면서, 자국의 핵심 지배계층인 ‘대가(大加)’들로 하여금 이 과정을 통제토록 함으로써 자기 국가권력의 경제적 기반 확대를 도모하였다.

동예는 옥저와 마찬가지로 개개 읍락을 정치적·경제적 기저단위로 하는 여러 정치조직체들이 병존하는 ‘군장사회’ 단계의 사회였던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고조선·한군현·고구려 등 외부세력들은 제 읍락들에 대한 분할통치 정책을 구사, 동예사회의 정치적 통합 노력에 쐈기를 박으면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수탈을 행하였을 것이다.

78개나 존재하던 삼한의 국(國)의 실체는 군장사회(chieftdom)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반도 남부 주민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하였던 군장사회에서 국가로의 복합적이며 계기적인 정치조직체 수준의 진전은 그

원인을 농경(農耕)·전쟁(戰爭)·교역(交易)에서 찾고자 함이 일반적이다. 그런 당시 한반도 남부 지방의 삼한 사회 제 군장사회(國)의 국가로의 발전에 자극제이자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기원전 2세기 말 한반도 서북부 지방에 한(漢)이 설치한 낙랑(樂浪)이라는 군현(郡縣)의 존재였다.

삼한 사회는 조공(朝貢) 형식으로 교역 허가를 얻고, 군현 내 시장(市場)이나 호시(互市)를 통해 필요한 문화와 물품을 교역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식 철제무기가 드문 것은 이의 유출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금수물목(禁輸物目)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은 이 당시 이루어진 교역의 정치적 성격의 한 면을 가늠할 수 있는 사실이다.

한군현의 교역을 빌미로 한 분할 지배정책은 삼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또 실효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한군현의 정책이 삼한 사회 제 집단 내부의 기존 위계질서를 교란시키고 이들 간의 정치적 통합노력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당시 삼한 사회와 한군현 사이에 행해진 교역의 실상을 고고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중국 문물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은 기원전 1세기 한군현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그 교류의 대부분은 중국 지역과의 직접교류보다는 한군현과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그 거래 품목은 중국 지역에서 생산된 물자와 한군현 지역 현지에서 생산된 물품 등이었다. 또 중국 내군상인(內郡商人)과 낙랑의 재지상인(在地商人), 그리고 삼한의 재지상인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그러나 화폐를 통한 교역은 일정 계층과 일정 물품에 한정되었을 것이며, 위세품 교류는 별도의 조공무역의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많다.

교역루트는 크게 연안항로와 육상루트가 확립되었을 것인 바, 전자

는 철 등의 물품을 대상으로 한 교역루트, 후자는 위세품 등의 물품을 통한 조공무역 루트로서 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기원전 1세기대 한군현 시기에 와서도 한반도 서남 및 중부의 마한 지역은 아직 그 교역의 증거가 영남 지역만큼 풍부하지 못하다. 이 점은 동 지역이 경유지일 뿐 교역에 적극 참여하거나 그것에 대한 통제를 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러다가 서기 3세기 또는 4세기 이후에는 중국과의 직접무역의 증거가 많이 확보된다. 풍납토성(風納土城)에서 발견되는 전문토기(錢文陶器)·금동과대(金銅鈔帶), 그리고 원주(原州) 법천리(法泉里)의 양형 청자(羊形靑瓷)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바야흐로 한강(漢江) 유역과 삼국시대 유역의 한반도 중부와 남부 서해안 지역이 중국과의 직접무역의 거점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남해안 지역이 중국과 왜의 교역의 중간거점으로서 중심지교역(中心地交易)의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무역루트는 김해 이외의 여러 지점에 분산되어 있고, 실제로 경남 서부 지역의 함안(咸安)·고성(固城)·삼천포(三千浦) 등지가 무역항으로 이용되었다는 증거로서 그곳에서 왜계 유물이 많이 발견된다.

그러한 무역항의 고고학적 증거로서 최근에 발견된 삼천포 늑도(勒島)의 발굴성과가 중요하다. 동지점이 중국계 상인과 왜인(倭人) 사이의 일종의 중계무역의 항만(港灣)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늑도 유적이 자유 무역항으로서 인접 세력집단의 통제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김해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김해만(金海灣)에 자리한 항만 유적은 김해 소국 거점 세력의 통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고고학적 증거가 김해 양동리·대성동·봉황대(鳳凰臺) 등지에서 확인된다.

기원전 1세기 이후 남해안 지역에는 무역의 거점·무역항(貿易港)이 형성되었는데, 김해처럼 군장사회 지배세력의 통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늑도의 경우처럼 군장사회 중심세력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해안 도서지역에 발달한 무역항이 모든 물자 교역의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였기보다는 중간의 경유지로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하겠다.

삼한의 교역이 동아시아 세계에서 차지하는 유의미성의 한 측면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당시에 행해진 철(鐵) 교역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진’ 지역에서 철이 산출되고, 한(韓)·예(濊)·왜(倭)가 모두 이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철은 철광석(鐵鑛石)이 아니라, 철소재(鐵素材)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삼한의 우월한 철 생산기반은 동아시아 세계, 특히 일본 열도의 왜에 대한 철 소재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자임하게 만들었다. 삼한이 왜에 수출한 철 소재의 형태도 농공구 제작에 필요한 판상철제품에서 무기·무구 제작에 없어서는 안 될 철정으로 바뀌어 갔다. 이에 따라 삼한은 왜의 정치적 성장에 필요한 무력 기반 조성의 열쇠를 쥔 존재로 전화해 갔던 것이다.

2. 삼국 및 남북국시대의 무역

삼국시대 무역의 중요 대상은 중국과 왜(倭: 일본)였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것은 대중국무역이었다.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이 중국산 물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조공(朝貢)과 책봉(冊封)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조공을 하고 관작(官爵)과 인수(印綬)를 받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조공사절을 가장하거나, 이를 수행한 이민족 사상인(私商人)의 출입을 통해 물품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동아시아 국제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한(漢)이 위만조선을 멸하고 그 중심지인 대동강 하류지역에 낙랑군을 설치하면서부터였다. 원래 한은, 국경 밖 오랑캐의 침략을 막아주고 남쪽 군장(君長)들의 천자 알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조건부로 하여 위만조선을 외신국(外臣國)으로 공인해 준 바 있었다. 그러나 위만조선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남쪽 여러 나라의 천자 알현을 방해했다. 그리하

여 한은 기원전 109년에 위만조선을 공격하여 1년 만에 멸망시키고, 여기에 낙랑군을 설치하여 남쪽 한(韓)·예(濊)·왜(倭)와의 무역 중개 역할을 맡게 하였다. 한반도와 일본 규슈 및 관서지방에 이르는 연안의 무역항로를 따라서 화천(貨泉)·대천(大泉) 및 오수전(五銖錢) 등의 고대 중국 화폐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낙랑군 설치 이후 동아시아 국제무역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 낙랑군에 대한 한(韓)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남쪽의 한예(韓濊)의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2세기 후반 경에는 낙랑군의 민들이 한국으로 대거 유입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한때 낙랑군의 역할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요동 지방에서 독자세력을 구축해오던 공손씨(公孫氏)는 3세기 초에 낙랑군의 남부에 대방군을 별도로 설치하여 강력한 대한(對韓) 통제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후 얼마 안 되어 238년에는 공손씨가 위(魏)에게 토벌되어, 낙랑과 대방군에 대한 관할권은 위에 게로 돌아갔다.

위는 낙랑과 대방을 통해 한·왜를 강력하게 통제함과 동시에 중국의 선진문물을 보급하는 교량역할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갔다. 《삼국지》 위서 왜인조(倭人條)에는 위 관할 하의 낙랑·대방군에서 왜의 여인국인 야마대국(邪馬臺國)에 이르는 연안 무역항로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동아시아 해상무역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그런데 위의 대한·대왜 정책은 차이가 있었다. 먼저 위는 왜 여주(女主) 비미호(卑彌呼)에게 왜국 사회의 외교적 대표권을 공인해 줌으로써, 그 영도력을 후원해 주었다. 238년에 왜의 여주 비미호에게는 대방태수를 시켜 ‘친위왜왕(親魏倭王)’의 작호와 이를 공인하는 금인자수(金印紫綬)를 전하게 하였으며, 비미호(卑彌呼)의 사신들에게는 술

선중낭장(率善中郎將)·술선교위(率善校尉) 등의 작호와 이를 공인하는 은인청수(銀印靑綬)를 내렸다. 이러한 작호와 인수 혹은 의책(衣幘)은 낙랑·대방을 통한 대한무역권(對韓貿易權)을 공인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는 낙랑·대방군과 맞닿아 있던 한국사회에 대해서는 오히려 분열정책을 펴나갔다. 처음에는 위가 낙랑과 대방군을 통해서 목지국의 신지(臣智)에게 특별히 우대하는 길다란 명칭의 작호를 내려주어, 목지국 신지의 영도권을 공인해 주는 듯했다. 그러나 점차 낙랑군과 대방군을 통해 한반도 남부 소국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인수(印綬)와 의책(衣幘)을 사여하는 물량공세를 펼침으로서, 한국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목지국의 신지 중심의 세력 결집 현상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사회의 맹주국이었던 마한 목지국은 한·왜의 대중국무역을 중개하는 역할을 제대로 펴지 못했고, 그 역할은 온전히 낙랑·대방군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런 사정으로 마한과 변한·진한 등은 왜와 소규모의 직교역을 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그 중 변한의 철은 한·왜 뿐만아니라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주요 무역품이자 그 자체가 화폐로도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국(國)간의 무역에서도 꽤 각광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세기 단계까지는 마한보다는 오히려 가야와 신라가 왜의 주요 무역파트너로서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라는 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왜와의 무역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에 전하는 왜인 호공(瓠公)의 신라 도래 설화나 《삼국유사》에 전하는 신라인 연오랑·세오녀의 왜 도래설화 등은 초기단계에 신라와 왜 사이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였음을 엿보게 한다. 뿐만 아니라 3세기 말 혹은 4세기 초에 이르면, 신라는 포상

팔국(浦上八國)의 난에 직면하여 난관에 빠진 금관국(金官國)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여 원군을 보냄으로써 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갈 기회를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던 마한은, 낙랑·대방군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가야·왜와의 관계에서는 신라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이래저래 국제무역관계에서 소외·고립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전술했듯이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된 마한은 결국 낙랑·대방에 대한 도발행위를 일으켰다. 246년경에 마한이 감행한 기리영(岐離營) 공격 사건이 그것이다. 백제는 목지국 주도의 기리영 공격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친낙랑·대방정책을 취함으로써, 점진적인 세력확대를 꾀하면서 낙랑·대방과의 전쟁으로 실세한 목지국의 마한 영도권을 탈취하려 하였다. 백제의 의도는 적중하였고, 결국 백제는 3세기 후반 경에 마한을 병탄하고 범마한권의 영도국가로 떠오를 수 있었다. 대개 백제 책계왕(責稽王: 286~298) 대의 일로 추정된다.

이후 백제는 평주(平州)와 동이교위(東夷校尉)를 신설하여 강력한 동방정책을 추진한 진(晉)의 강력한 동방정책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진의 동방정책은 북방 선비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약화되었으며, 자연 낙랑·대방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었다. 이 틈을 타서 고구려의 미천왕과 백제의 비류왕은 남북에서 낙랑과 대방을 협공하여 313년·314년에 이들을 완전 축출하고 말았다. 이로써 백제의 위기상황은 종식되었다.

그런데 낙랑·대방군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대외적 관심사는 엇갈렸다. 먼저 고구려의 주요 관심사는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데에 두어졌다. 이러한 고구려의 관심사는, 미천왕이 302년에 현토군을 공격하고, 311년에 요동으로 통하는 길목인 서안평을 공격하였으

며, 그 여세를 몰아 낙랑과 대방을 공략하여 이를 축출했던 일련의 과정에서 엿볼 수 있다. 즉 고구려는 교역거점의 확보라는 차원보다는 대륙진출을 위한 배후의 위협세력을 정리한다는 의도가 더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백제의 주요 관심사는 낙랑과 대방이 수행해 오던 동아시아 국제무역의 중개를 대신 주도하려는 데에 두어졌다. 그리고 이를 실현한 것은 346년에 즉위한 근초고왕이었다. 근초고왕은 수 차례 신라와 사신을 교환했으며, 366년에는 가야의 탁순국(卓淳國)을 통해서 왜국과도 통교관계를 공식 개설하여, 선진문물의 제공지역을 자임하였다.

이에 백제와 가야와 왜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져 갔고, 신라의 외교적 소외·고립화는 더욱 심화되어 갔다. 이를 바탕으로 백제는 369년에 가야 7국을 평정하고 서남해지방 해로의 요지인 침미다례를 점령하여 연안항로상의 요충지를 선점하였다. 그리고 역시 연안항로의 요충지인 옛 낙랑·대방의 땅을 두고, 선비족의 침입을 받아 수세에 몰려 있던 고구려와 일대 격전을 치렀다.

이처럼 백제의 근초고왕은 중국대륙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의 요소 요소에 해양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해상무역을 주도해 갔던 것이니, 그 규모와 체계성, 그리고 적극성의 측면에서, 항로의 길목을 장악하고 중개무역을 일삼던 이전의 위만조선과 낙랑·대방군의 그것을 크게 능가하는 것이었다.

진한 시기의 교역은 무엇보다도 교통로 내지는 교역로의 개척을 필수로 한다. 진한 시기의 무역은 국(國)과 국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체와의 사이에서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과 국을 연결하거나 다른 정치체를 연결하는 교통로가 먼저 개척되었을 것이다. 육상교통로는 주로 저지대와 지구대를 따라서 개척되었을 것으로 추

정되며 해안 지방의 경우 육상루트는 해안 저지대를 따라 형성되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함남 지역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루트인 추가령지구대가 그 예가 될 것이며 동해안의 경우 태백산맥이 해안을 따라 가파르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해안 저지대 교통로가 일찍부터 형성되었을 것이다.

중국 군현과의 교역이나 중국 본토 및 왜와 교역은 바다로 통하는 원거리 교역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중국 군현과의 교역은 대동강 유역에서 출발하여 서해안과 남해안을 거쳐서 낙동강 유역에 이르는 루트가 주로 이용되었다. 이 루트는 섬을 징검다리로 하는 연안항로였다. 늑도 유적에서 나온 다양한 물품들은 이 지역이 교역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이 루트는 중국 군현과 왜가 교역할 때도 활용되었다.

변한의 경우 이 시기의 맹주국은 구야국(狗倭國)이었으므로 구야국이 대외교역과 관련한 감시 기구들을 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한의 경우 주도권을 가진 세력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2세기 이후에 오면 경주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다른 지역보다 우월하므로 사로국(斯盧國)이 진한의 주도권을 장악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외교역과 그 감시기구는 사로국에서 관장하지 않았을까 한다.

3세기대 구야국은 남해안 지역에서 관문사회(Gateway community)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면서 물자의 집산과 보급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4세기대에 들어와서 낙랑·대방군의 축출로 변진의 철과 중국산 물자를 매개로 하는 구야국 중심의 국제무역 체계가 후퇴되고 고구려-신라-가야-왜로 연결되는 새로운 무역루트와 창원의 탁순국을 매개로 백제-가야-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역루트가 개척되었다.

백제의 해양강국으로의 부상은 고구려의 일시적인 후퇴와 신라의 어쩔 수 없는 묵인하에서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만약 고구려의 반격이 가해지고 신라가 이를 부인하는 행동 표시를 할 때는 의외로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소수림왕대부터 준비된 고구려의 대반격은 광개토왕대부터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동북과 서북으로 비려와 거란족을 정벌한 연후에, 남으로 백제를 향한 공격 자세를 취하였다. 백제와 가야와 왜의 무역망에 포위되어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있던 신라의 내물왕은 392년에 왕족인 실성(實聖)을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는 질자(質子) 외교를 통해서 외교적 고립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이어 396년에 남으로 백제를 공략하기 시작하여 58성 700촌을 점령하는 대전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되자 백제 주도의 해양무역망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해오던 왜는 기왕의 무역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한 고구려의 남진과 신라의 대고구려 결탁의 추세를 지켜보면서 군사적 위협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차에, 왕자까지 동원하여 상황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실감나게 설득해 오는 백제의 적극적인 외교공세에 설복당하여, 결국 백제의 정치·군사적 연대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를 계기로 백제와 왜는 일종의 군사적 동맹관계로까지 발전하였다. 두 나라는 적대해 오던 신라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한편, 고구려에 대해서도 바다를 통해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중국-백제-가야-왜로 이어지는 이전의 해양무역질서를 회복하려 하였다.

413년에 왕위 오른 장수왕은 평양천도를 계기로 본격적인 남하정책을 펼쳐 나갔다. 그리하여 급기야 475년에 고구려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기에 이르렀고, 백제는 금강변에 위치한 웅진으로 천도해 갔다. 이로써 고구려는 신라와 가야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

령함에 이어 백제와 왜를 압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4세기 후반에 고구려의 기세를 꺾고서 동북아 국제 해양무역을 주도하려던 백제의 꿈과 야망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갔다.

한편 고구려의 반격을 받아 백제 주도의 국제무역망이 무너져 가자, 그간 백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국의 선진문물을 공급받아오던 왜는 백제 주도의 반고구려 국제연대에는 동참하되, 한편으로 백제를 통하지 않는 대중국 직교역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즉 3세기의 전설적 여왕 비미호의 이름이 《삼국지》에 명기된 후에 중국사서에 사라졌던 왜왕의 이름이 5세기에 들어 재등장한 것에서 이러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송서》·《남제서》 등의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찬(讚)·진(珍)·제(濟)·흥(興)·무(武) 등의 ‘왜오왕(倭五王)’이 그것이다. 왜의 이러한 대중국무역의 독자적 시도는 영산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는 전방후원형고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한성점령은 한반도 연안항로의 경색을 더욱 부채질했고, 당연히 동북아 국제무역은 더욱 위축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여러 국가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반고구려 여론은 더욱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는 당분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고구려 국제연대망의 구축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무령왕은 501년에 즉위하자 먼저 동성왕을 죽인 백가(昔加)의 세력을 타도하고, 투항하는 백가를 백강에 던져 버렸다. 그리고 왕 4년에 마나군(麻那君)을, 그 이듬해엔 아들 사아군(斯我君)을 왜에 파견하여 왜와의 관계 복원에 적극성을 보였다. 509년에는 왜가 사신을 보내왔으며, 이후에 양국 간의 사신·학자·장군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508년에는 탐라와도 처음으로 통교관계를

개설했다. 이로써 무령왕은 우선 남방의 항로만은 완전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무령왕은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으며, 중국 남조의 양(梁)과도 자신감 넘치는 통교를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즉 521년에 무령왕은 양에 표문을 올려 고구려를 여러 차례 무찔렀음을 과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양서(梁書)》에는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

신라는 경주의 지역적 위치가 동해 바닷가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왜구의 침입에 대한 적절한 대응, 나아가 동해안 제해권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암각화에 나타나는 해양문화의 기반을 갖고 있었던 집단이 활동할 공간이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석탈해의 등장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해양 및 어로문화의 기반을 수용한 신라는 동해안 지역으로의 진출에 일찍이 관심을 기울여 지증왕대에 오면 삼척에 실직주(悉直州), 강릉에 아슬라주(阿瑟羅州) 설치, 아시촌(阿尸村)에 소경을 설치하고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을 정벌함으로써 동해의 제해권과 동해안 지역을 확보하였다.

신라의 동해안 제해권의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은 지증왕대의 이사부에 의한 우산국정복 사건이다. 이를 통해 동해의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이후 법흥왕대의 사벌주(沙伐州) 군주 파견, 금관국 복속, 진흥왕대의 한강 유역·낙동강 유역의 확보·안변에 비열홀주(比列忽州) 설치·가야 정벌·북한산비·함흥지역의 황초령비·마운령비 등 진흥왕 순수비의 설치와 같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좁은 의미의 시장을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라고 한다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크고 작은 여러 시장이나 상인들의 네

트워크를 광의(廣義)의 시장(市場)·시장권(市場圈)·교역권(交易圈)·무역권(貿易圈)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8~9세기 당시 세계에는 크게 네 개의 광역 시장권이 있었다. 즉 중국시장권(中國市場圈), 남아시아시장권(南아시아市場圈), 서아시아시장권(西아시아市場圈), 지중해시장권(地中海市場圈)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4개의 광역시장권 가운데 신라와 발해가 속해 있던 곳은 중국시장권이다. 이 중국시장권의 중심국가인 중국과 중국시장권 안에 있던 여러 나라와 민족을 연결시켜주던 역할을 하던 것이 바로 조공(朝貢)이다. 조공은 아시아지역 내에서 동아시아 무역망을 형성시킨 전제이고, 조공무역에 수반한 사무역의 확대를 촉진함과 동시에 아시아지역 내 교역의 주요한 루트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시장권이라는 광역시장 안에는 여러 시장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조공을 매개로 형성된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시장과 각 지역에 형성된 지역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사와 관련된 지역시장은, 중국 중심의 광역시장 아래 ‘황해무역권(黃海貿易圈)’·‘서부일본무역권(西部日本貿易圈)’·‘동해무역권(東海貿易圈)’ 등이었다.

남북국시대의 무역의 형태는 무역의 주체에 의해 공무역(公貿易)과 사무역(私貿易)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남북국시대 공무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바로 빈번히 당(唐)에 파견된 견당사(遣唐使)였다. 견당사들은 본국의 왕을 대신하여 공헌품(貢獻品)을 헌상(獻上)하고, 그 과정에서 본국왕에게 주는 회사품(回賜品)과 사절단 개인에게도 관등의 고하(高下)에 따라 회사품을 받았다. 따라서 공무역의 주체는 남북국시대의 왕실과 견당사로 파견된 중앙귀족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무역은 주체에 의해 공무역에 의한 부수적 무역, 지방세력에 의한 무역, 민

간무역업자, 즉 상인들에 의한 무역으로 나누어진다.

발해는 안사(安史)의 난(亂) 기간에 당 중앙정부와 반란군 사이의 중립적 입장, 고구려 유민 이정기(李正己)의 치청번진(淄靑蕃鎭)과 당 중앙정부사이의 적절한 외교를 바탕으로 국제정치·무역면에서 신라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 이것은 공무역의 가늠자인 견당사의 파견횟수나 산동반도지역과의 견마무역(絹馬貿易), 발해상인들의 활약을 통해 알 수가 있었다. 이러한 대중국무역에서 발해의 신라에 대한 우위는 이르면 치청번진의 소멸시기인 819년, 늦어도 청해진(淸海鎭)이 설치되는 828년까지는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사의 난 후 청해진설치 이전의 시기까지 대일무역에서도 발해의 우위는 확인된다. 신라는 779년을 끝으로 더 이상 공식적인 외교사절을 파견하지 않았다. 반면에 신라침공계획의 무산으로 소원했던 일본과 발해의 외교관계는 771년에 문왕(文王)이 다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열리게 된다. 이후 강왕(康王)·정왕(定王)·간왕(簡王)을 거치면서 발해객원(渤海客院)을 중심으로 활발한 대일무역이 전개된다.

9세기에 사무역이 발달하게 된 원인으로는 나·당·일 동아시아 삼국의 정치적 혼란과 조선술(造船術)·항해술(航海術)의 발달, 해상세력(海商勢力)의 성장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828년 청해진의 설치였다.

828년 청해진의 설치를 계기로 신라는 동아시아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재당신라인사회와 재일신라인사회 청해진을 연결하는 일련의 네트워크 건설에 성공한 신라는 이전에 동아시아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발해를 대신해 새롭게 동아시아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즉 ‘황해무역권’ ‘서부일본무역권’ 등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9세기 초 당시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는 호칭을 받으며 중

흥기를 맞이하고 있던 발해의 대일사절단이 장보고가 청해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828~841년에는 파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알 수가 있다.

군소해상세력의 불만과 납비문제(納妃問題)를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841년 장보고가 암살되고, 851년 청해진이 혁파되기에 이른다. 청해진 혁파 후, 즉 9세기 후반 동아시아 교역질서는 당성진(唐城鎭)·혈구진(穴口鎭)·패강진(溟江鎭)·장구진(長口鎭) 등 진(鎭)의 설치를 통해 서해안 일대를 장악한 신라정부와 신라정부에 반감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대일무역을 전개했던 재당신라인, 신라해적 사건으로 일본사서에 나오는 신라국내 해상세력들, 발해·중국상인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경쟁체제에 접어들게 된다.

3. 고려시대의 무역

무역은 국가나 민족 간의 물자교류를 말한다. 그리고 전근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하는 경제였고,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근대 사회의 무역은 그다지 발달될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무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예물로서 각국의 특산물이 오갔으며, 국경지역의 장사에서 상호 필요한 물품의 교환이 있었으며, 때로는 배를 이용해 여러 나라를 왕래하며 무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무역을 운영이나 주체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간여하는 무역과 개인이 참여하는 무역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조공무역(朝貢貿易)·관무역·공무역·국가무역·관인무역(官認貿易)·공인무역(公認貿易) 등이 있고, 후자에는 부대무역(附帶貿易)·사신무역·사무역·민간무역 등이 있다고 한다. 이 구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역의 주체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지만, 사신무역·

부대무역의 경우와 같이 국가 간의 공식 외교에 파견된 사신의 무역은 완전히 사무역이라고 할 수 없고, 공무역의 성격이 개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관무역·부대무역·공인민간무역·밀무역 또는 관무역·사신무역·민간무역 등의 구분이 시도되고 있다.

고려시대의 무역의 형태도 크게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국가 간의 공식 외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조공무역(朝貢貿易)’과 순수한 상인 사이의 교역인 호시(互市) 등을 들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필자가 고려시대의 무역을 일별한 바에 의하면 불법적인 밀무역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간섭이나 영향이 배제된 사무역은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조공무역이라는 표현도 고려시대 외교의 실상과 상응하지 않아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고려시대에도 송·요·금·원 등 중국의 여러 나라에 대한 사대외교가 있었고,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사신이 가서 조공에 해당되는 방물(方物)을 바쳤으며, 중국의 사절이 와서 고려 국왕을 책봉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요나라가 쇠약해지자 송나라에서는 고려에 보내는 사절을 요나라에게 사용하던 국신사(國信使)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송·요·금 등의 나라에서는 고려 국왕이나 태후의 생일을 비롯해 다양한 명목의 사신들이 왔다. 이런 점들은 전통적인 조공질서에서 천자의 나라라 제후나 조공국가에 대해 하던 의례와 어긋나는 것이었다. 고려는 조공제도의 이상을 표명하면서도 실제로 국가의 존립을 위한 실리적인 정책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원 간섭기 이전의 고려는 결코 모범적인 조공국(Model Tributary)은 아니었다.

게다가 고려와 여진의 관계는 거꾸로 고려가 여진의 조공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그밖에 일본·송나라 상인·아라비아 상인의 고려에

대한 무역도 형식상 여진과의 관계에 준하여 시행되었다. 고려가 종주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외교관계는 대체로 여진에서 고려를 찾아오는 일방적인 것이었고, 그 주요한 목적은 고려와의 물품 교환이었다.

이러한 동북아의 대외관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된 것은 13세기 몽골 제국이 동아시아지역을 정복하여 통일된 원나라 제국을 형성하면서부터이다. 고려는 원에 조공국가로서 모든 의무를 져야 했고 그 뒤를 이은 명나라도 원나라와 고려의 형식을 그대로 계승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고려와 중국 사이에 있었던 외교상 호혜주의는 사라지고 조공은 형식이나 명분이 아닌 수행해야 할 의무가 되었다. 고려 말 명나라가 1년 치 공물을 따져서 정확히 5년간 밀렸던 공마를 요구하였고 고려에서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은 바뀌어진 외교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원 간섭기 이후 고려가 중국의 조공국가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는 형식에 불과하였으므로 고려시대 전체를 조공무역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실상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많다. 대신에 좀 더 포괄적으로 '외교무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 뜻에 의거하여 정확한 용어를 만들려면 '외교 의전상의 무역'이나 '외교 의례상의 무역'이 맞겠다. 왜냐하면 고려와 송·요·금 등의 사이에는 고려의 방물사와 중국의 책봉사 이외에도 무수한 사신이 왕복하면서 물품의 교역이 이루어졌고, 거의 모든 외교적 활동에 물품의 교환이 있었다. 종주국을 찾아서 황제를 만나든지, 제후국의 국왕을 만나든지 알현하는 과정에서 사신들은 일정한 물품을 교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줄여서 외교무역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 경우 사신들의 개인적인 무역도 포함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사행무역의 범주

로 다루었다.

또한 고려와 여진·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외교적 교섭도 왕을 만나는 절차가 포함되고 물품의 현상이 있었고, 고려와 이들 나라의 외교는 정치적인 것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주요한 목적이었는데, 외교무역은 외교를 가장한 무역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원 간섭기 이전 고려 무역의 특징을 들면, 사무역이 거의 배제된 국가 또는 왕실 중심의 무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와 함께 국왕의 권위를 높이는 정치적 기능도 하였다. 태조를 비롯한 역대 왕들은 해상무역으로 성장한 호족의 후예답게 국제관계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었던 것이다. 하지만 고려가 원나라에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됨에 따라 자연히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고 국가 간에 이루어졌던 무역의 양상도 크게 변화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었다.

오대와의 외교는 고려가 건국한 이후 교섭을 시작하여 후삼국의 쟁패기를 거쳐 광종대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기의 고려는 후백제 및 신라와 경쟁하였고, 호족과 왕권의 갈등이 있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오대 여러 나라와의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고려 국왕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였다. 그 결과 고려 국왕의 책봉이 중요시 여겨졌고 아울러 황제가 하사하는 화려한 국왕의 복식도 왕권의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고려에서 상단(商團)을 중국에 보내 물품을 교역하였으며, 많은 양의 구리가 고려에서 옷감 등과 교환되어 후주로 보내졌는데, 비록 양국 사이에 조공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필요한 물품은 외교 이외의 방식으로 재화의 교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송나라와의 무역은 고려에서 매우 적극적이었다. 송나라의 문화적 수준이 매우 높았으므로 요나라 또는 금나라의 정치·군사적 위협 속

에서도 외교를 열려고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송나라 상인을 통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였다. 고려와 송나라와의 무역에서 불교 경전 및 유교 서적의 도입, 대성악(大晟樂)의 전래 등을 중심으로 문물의 도입을 다룬 것은 그 때문이다. 한편, 송나라 황제가 고려의 국왕에게 하사한 물품들은 모두 화려한 것으로 당시 수공업의 최고 솜씨로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고려 장인들에게 기술적인 발전을 자극하였다는 점도 지적해두어야 할 것이다.

고려와 송나라는 육지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였고 요나라나 금나라가 양국 사이에 개재해있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은 양국 간의 무역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양국은 외교가 단절되었음에도 요나라 등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서해를 통해 무역을 계속할 수 있었고, 배를 이용함으로써 편하고 빠르게 많은 물품을 실어나르는 이점도 있었다. 그리고 외교가 열려 있지 않던 송나라와의 무역은 송나라 상인에 의해 고려에서 행해졌는데, 외형적으로는 순수한 민간 교역과 같이 보이지만, 고려에서는 방물을 바치고 회사품 형식으로 물품을 받아가는 여진과 같이 인식했기 때문에 이 역시 공무역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겠다.

요나라와의 관계는 고려 초부터 적대적이었고, 세 차례의 전쟁을 겪은 후에 비로소 평화로운 외교관계가 열리게 되었다. 이후 고려는 요나라에 대해 사대 외교를 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간섭은 거의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요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송나라와 정식 외교를 재개할 만큼 주체적이었다.

요나라와의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은 역시 외교무역이었다. 특히 양국 사이에는 송나라와 비교하건대 비정상적으로 많은 사절이 왕래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을 무역의 측면에서 이해

하면 무역의 기회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사신의 왕래 횟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고려에서 보내는 예물—납폐물—과 요에서 주는 회사품(回賜品)이 늘어나고, 그와 부수되는 사행무역도 많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양국의 재정 부담이 커지겠지만, 고려나 요가 일정한 이익을 얻었던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양국 간의 이해가 일치하였으므로 사행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한편 요나라가 고려의 국경에 설치하려고 했던 일종의 호시장(互市場)인 각장에 대하여, 이곳을 통해 양국 사이에 무역이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각장이 설치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해도 국경 무역은 한쪽에서 금지하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당시 각장의 설치를 극력 반대하는 고려가 백성들로 하여금 국경너머 요나라의 각장에서 교역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각장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고려의 북쪽 경계를 마주하게 된 금나라는 본래 고려를 종주국으로 섬기던 여진족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세력을 키워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송나라까지 물리치자 고려에 대하여 조공관계를 요구하였고, 고려에서 일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당시 최고 권력자인 이자겸(李資謙) 등이 주도하여 새로운 관계를 승인하였으며, 이후 100여 년간 사대외교가 지속되었다.

금나라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요나라의 사례를 그대로 계승한 것어서 사절의 횟수도 그다지 줄지 않았으며, 한 번에 오가는 사절과 그 일행의 수가 많았다. 사절의 수가 많다는 것은 예물 및 하사품·회사품의 규모가 커질 개연성을 높였으며, 사행무역의 참여자의 수도 많아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고려에서 금나라에 가는 사신 일행이 활발한

무역을 했으며, 사신단에 포함되면 적지 않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그 대표인 정사·부사 등은 황제로부터 적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절 일행을 선발하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고된 임무를 수행하는 사신에 대한 국가의 합법적인 보상이었고, 관인으로서도 불리하지 않았으므로 사행의 증가에 반대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시기 고려측 각장에서 금나라와 교역이 이루어졌고, 밀무역도 있었는데, 그 개략적인 사실들을 서술하였다.

고려와 원나라와의 관계는 그 이전 오대·송·요·금과 같이 사대 관계였지만, 그 이전과 내용에 크게 달라졌다. 동진(東眞)을 공격한 뒤 고려와 몽고는 형제 관계를 맺었고, 몽고와의 전쟁이 진행되던 중 사실상 사대관계로 변화하였으며, 강화에서 개경으로 환도하고 삼별초의 반란을 몽고의 도움으로 진압한 이후에는 원나라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졌다. 반면에 고려라는 국가의 이름은 유지되었고, 고려 국왕이 원나라 황제의 인척이나 사위가 되었지만 고려의 정치적인 자주성은 매우 약해졌다. 그러므로 고려 국왕이 원나라에 의해 교체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은 외교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몽고는 고려와 외교를 맺고 교섭을 시작하면서 막대한 양의 공물을 요구하면서 그 이전 공물의 품질을 문제삼기까지 하였다. 고려 전기에는 고려가 황제에 대한 충성을 담아 성의껏 물품을 마련하여 보내고 많은 회사품을 받아 실속이 있었지만, 원나라와의 관계에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 원나라에서는 수시로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였고 회사품의 양도 줄어서 외교관계를 이용한 무역의 비중은 훨씬 낮아지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신 일행이 외교활동을 한 대가로서 무역을 주는 관례는 그

대로 이어져 외교와는 별도로 무역에 참여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

반면에 외교와 관련 없는 일반 무역은 증가하고 있다. 고려와 원나라 사이의 국경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교역의 여건이 나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의 교역로는 육로와 해로가 있었는데, 소요 기일은 해로가 짧고 많은 물품을 실어나를 수 있었지만 위험했고, 육로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운반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었다.

다음으로 수출품을 보면 모시·인삼·말 등이 주요한 품목으로서 모두 원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하여 조공품이기도 했으며 원나라 사람들의 수요가 많았으며 일반무역에서 활발히 거래되었다. 수입품으로는 각종 장신구, 직물류, 놀이기구 등으로 품질이나 가격은 중간정도로 사치스럽지 않은 것이 고려에서 매매가 잘되었다고 한다.

한편 이 시기에는 왕 및 왕실이 원나라와의 무역에 참여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실현하고 있었다. 고려전기와 같이 공식적인 외교를 통해 실리를 취해왔던 방식이 어려워지자 왕실에서 직접 일반 무역의 영역에 나선 것으로 고려후기 바뀌어진 무역환경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중국 이외의 여진·일본·아라비아·유구 등의 민족 또는 국가를 기타 여러 나라로 분류하였다. 여진은 고려의 동북과 서북 지역 경계에 거주하는 여러 부족의 총칭으로서 고려를 대국으로 섬겨 방물을 바치고 조공의 예를 행하였다. 이것은 고려가 중심 국가가 되고 여진은 변방의 오랑캐가 되는 고려 중심의 세계관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고려 국왕은 여진의 조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여러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 여진의 대표 일행을 맞이하였고, 뒤에는 팔관회의 한 형식으로 만들어졌으며, 매년 11월 보름에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의례가 행

해졌다.

여진의 방물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말 등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고려의 요구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거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는 대부분의 여진들이 무기류를 방물로 바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고려에서는 무산계(武散階)·향직(鄉職)을 제수하여 영예를 높여주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보상을 하였는데, 여진이 가져온 방물의 양에 비례하여 지급되었다. 본래 여진이 고려에 방물을 가져와 충성을 약속한 속셈은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고려와 일본 사이에 외교를 열기 위한 노력은 몇 차례 있었지만 끝내 무산되었으나 외교 현안이 발생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신들의 왕래는 계속되었다. 고려와 몽고 연합군의 일본 정벌과 왜구의 고려침입으로 양국 간에는 전쟁에 의한 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고려의 사신이 여러 차례 일본에 파견되었고 포로를 송환하는 약간의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했으므로 고려에서 대마도 정벌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에 온 일본인들은 매우 다양하였는데, 고려에서는 여진이나 송상에 준하여 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일본에서 개별적으로 배를 타고 예성항에 와서 무역을 하고자 하면, 고려 국왕에게 일정한 물품을 바치고 허락을 받아 무역을 하였다. 무역품으로 가져온 것은 감자 등 지방 특산물과 더불어 칼·갑·나전 등 수공업 제품이었으며, 인삼·호피·표피 등을 가져갔다. 또한 고려 말 왜구의 금지를 청하거나 포로를 송환한 경우에는 감사의 표시로 많은 물품이 전달되었다.

유구는 현재 일본의 오키나와현 지역으로 메이지유신 전까지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독립된 국가였는데, 우왕대 고려에 사신을 보내 상

국으로 모시겠다는 뜻을 밝히고 물품을 보내오자 고려에서 회사품을 주었으며, 아울러 포로 송환을 위한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아라비아 상인은 현종에서 정종대에 이르는 시기에 세 차례 걸쳐 고려에 왔다. 중국에 왔다가 고려와 무역하기 위해 직접 고려를 찾았다고 생각된다. 무역의 방식은 송상과 같아서 고려 국왕에게 토산물을 바치고 허가를 얻어 무역을 하고 갔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이후 더 이상 오지 않았는데, 그 동안의 경험에서 송상의 왕래가 잦은 고려를 직접 방문하여 무역을 하는 것이 그다지 큰 이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고려는 중국의 왕조와 여진을 모델로 삼아 외교와 무역을 하였다. 중국의 왕조는 왕조가 교체되면 과거의 방식을 따랐고, 그 밖에 비공식 관계에서 새로이 찾아오는 국가는 모두 여진에 준해서 의례를 준용하였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일본·유구·아라비아이며 어느 것이든 고려에서는 방물을 바치러 오는 것처럼 꾸몄으며, 상대국에서는 무역을 이득을 얻기 위해 그것을 감수하였다. 이처럼 고려의 무역정책이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설명할 것이다.

4. 조선시대의 무역

조선의 경제정책은 건국 초기에 내세운 ‘중농억상(重農抑商)’의 이념적 기초를 바탕으로 펼쳐졌다. 따라서 조선시대 상업활동을 통한 자본의 집적과 경제변동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었었다고 인식되었다. 이는 해외무역에 대한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해외무역은 ‘사대교린(事大交隣)’이란 정치외교체제에 부수된 활동으로 ‘적자무역’ 혹은 ‘사치품무역’으로 평가되었다.

해외무역의 ‘경제적 득실’을 따져 이것이 ‘적자무역’임을 주장하는 논리는 주로 무역 상대국 간 외교적 의례에 포함되는 조공무역만을 검토의 대상에 넣은 것이며, 공무역과 다양한 사무역 그리고 밀무역을 시각에 넣지 않았다. ‘사치품무역’에 따른 손실무역임을 주장하는 논리도 ‘사치와 소비 현상’이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오해이다. 조선시대 해외무역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무엇보다도 무역에 종사하면서 자본을 축적하고 조선의 상업계를 이끌어 갔던 ‘상인들의 역사’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조선의 해외무역은 동북아시아 역사상 중국·조선·일본의 경제권을 연결하는 가교(架橋)로써 주목받아야 한다. 나아가 중세 동북아시아의 장기적인 경제 변동과 근대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조선의 역할을 정당하게 자리 매김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평가되어야 한다.

조선 왕조는 건국과 동시에 사회적 재부(財富) 산출의 중심을 토지에 두고 상공업 및 광업 분야에서의 재부 축적을 억제한 것이 사실이다. 민간상인의 해외무역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자연히 15세기 조선의 해외무역은 사대교린(事大交隣)이란 외교정책의 틀에 크게 제한 받았으며, 국가주도의 무역이 주류를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국가주도형 무역은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 사회의 전반적인 상업 발전에 따라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15세기 중반 명(明)나라에서는 지정은제(地丁銀制)가 시행되었다. 이는 중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을 잇는 은무역(Silver Trade)의 흐름을 열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과 중국 및 일본을 잇는 무역의 발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약 1세기 동안은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흐름을 조선이 매개하고 있었다. 조선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왜은(倭銀)↔인삼과 왜은↔중국 비단을 근간으로 재부를 축적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중국과의 무역으로 연결시켜 중국물화↔인삼·잡화와 중국물화↔왜은이 교환되는 무역구도를 형성해 나갔다. 이른바 조선의 중개무역(仲介貿易)이 발전해 간 것이다. 그 중 비단 원사인 백사무역은 현종 11년(1670) 현재 100근당 수입가가 은 60냥인데 비해 왜관에서의 수출가는 160냥으로 거의 2.7배에 달하였다. 백사와 필단은 청의 소주·항주에서 생산

된 것으로서 청국상인이 직접 일본의 나가사키로 수출하게 되는 1713년(숙종 39)경까지 계속 수입되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청나라와 일본이 국교를 수립하고 나가사키[長崎]에 상관(商館)이 설치되면서, 동북아시아 무역의 흐름에는 변화의 요소가 잉태되었다. 즉 청·일간 국교가 수립되자 중국의 비단이 중국 또는 네덜란드 선박에 의해 직접 나가사키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일본에서 폭발적 수요를 누려왔던 조선 인삼도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의 노력으로 인삼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왜상들의 조선 인삼에 대한 구매욕구도 현저하게 떨어졌다. 자연히 왜관을 통한 왜은(倭銀)의 유입량은 줄어들고, 중개무역을 통해 이익을 보았던 조선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8세기 조선의 상인들은 홍삼(紅蔘)이란 새로운 상품 생산으로 침체된 국제무역에 돌파구를 열었다. 18세기를 통해 대외무역을 통해 자본을 집적한 상인이 단순히 상업자본을 집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삼재배업과 홍삼가공업 및 광산 경영으로 그들의 자본을 투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홍삼은 1797년(정조 21) 처음으로 120근이 중국과 공식 무역되기 시작한 이후 불과 50년 만에 홍삼무역량은 4만 근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로써 조선 왕조는 홍삼에서만 중국과의 외교 상에 필요했던 방물·세폐에 소용되는 비용을 훌쩍 넘는 세금을 거두고 있었다.

19세기 중국과의 관문인 책문에는 조선에서 올라오는 홍삼을 처리하기 위한 고려인삼국(高麗人蔘局)이 설치되었고, 개성 지역에는 1천 간 이상 규모의 삼포(蔘圃)가 상인이나 상인으로부터 전업한 농업 자본가에 의해 경영되고 있었다. 18세기 인삼재배와 홍삼가공 그리고 그 판로의 확대는, 조선 상업계가 상업자본의 단계를 벗어나 산업자본의

단계로 진입하는 변화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조선정부의 정책은 이와 달랐다. 조선정부의 무역정책은 역관과 서울상인 등 기존 이권을 보호하데 주안점을 두었다. 자연히 상업자본을 축적한 상업세력과 상업세의 일종인 포삼세를 적극 흡수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 가능성을 뒤로하는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조선정부의 포삼정책의 한계가 개항 이후 포삼세 수입의 적극적인 국가 재정화의 길을 막고, 궁내부(宮內府) 내장원(內藏院) 및 기타 재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결과를 낳았다. 조선의 대외무역이 국내상업계와 산업부문에 침투하여 경제변동을 이끌어 내지 못한 원인은 결국 조선정부의 무역정책의 폐쇄성에서 찾아진다고 하겠다.

5. 개항기의 무역

강화도조약은 조선을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후 조선은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서양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경제교류가 이루어졌다.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 당시에는 일본정부의 무력외교와 기만회교 그리고 조선정부의 무지로 인하여 관세주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 이후 일본정부를 상대로 관세주권의 일부만이라도 행사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일본의 무력시위로 실패했다.

조선정부는 관세주권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이후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당시 일반상품에 대하여 종가 10%, 사치성물품에 대하여 종가 30%라는 비교적 고율의 관세율을 설정함으로써 관세주권을 회복했다. 이어 영국과 독일이 동일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자 일본도 1883년 새로운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관세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1883년에 새로 체결한 〈조영통상조약〉은 불평등조약체제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 균점되었다. 불평등조약체제의 성립은 조선 국내시장의 보호와 나아가 국내산업의 육성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미숙하나마 조선 후기 이래 변화, 발전하고 있었던 조선의 상품생산과 유통구조는 곧바로 세계자본주의체제에 종속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당시 관세제도는 각국과의 통상조약에 의한 협정세율을 토대로 하고 있었으며 국정세율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은 통상조약을 맺은 각국이 모두 강국이었기 때문에 관세주권을 행사하되 반식민지적이고 편무적인 그리고 저율의 관세를 강요당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세주권의 회복이 갖는 의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강화도조약 이후 1883년까지의 조선무역은 무역관련 자료에 모두 대일무역만이 표기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일본에 의한 ‘무역독점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무역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었다. 1877년과 1880년을 제외하고 조선은 수출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모두 출초현상을 기록하였다.

조선이 각국과 통상장정을 체결한 뒤에 일본의 무역독점은 끝을 맺었고 이후 일본은 중국과 무역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중일무역경쟁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도 무역규모가 계속 팽창하고 있었다. 수출의 증가폭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출초현상을 기록함으로써 무역적자가 누적되었다. 수출에서의 주도권을 일본이 장악한 가운데에서 중국도 꾸준히 그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대부분 서양, 그 가운데에서도 영국에서 생산된 면직물이 중국상인과 일본상인의 중계무역에 의한 수입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의 무역에는 약간 변화가 생겨났다.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타 국가의 진출도 눈에 띈다. 이 시기

를 ‘중일경쟁조정기’라 부르고자 한다. 이 시기에도 무역규모가 계속 팽창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1903년까지는 수출의 증가폭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출초현상을 계속 기록하였다. 조선의 수출무역 시장에서 이전까지 일본이 90% 이상을 차지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 시기에 들어오면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떨어진 반면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904년의 경우, 22%까지 높아졌다. 그 밖에 이 시기에 들어오면 러시아가 조선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수출입에서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02년부터는 서양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의 직접적인 수출입이 시작되었다. 이는 무역구조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승리로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화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경제적으로 상당부분 조선경제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무역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이외의 각국과의 무역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무역다변화기’라 부르고자 한다. 이 시기의 무역수지적자는 여전히 컸지만 수입의 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폭은 떨어지는 경향이였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조선무역의 시장이 다변화되었던 것은 개항기의 조선경제가 잠재력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조선의 교역조건이 뚜렷이 개선되는 추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으로부터 수출되는 상품은 대부분이 곡물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이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미곡과 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곡물수출의 결과 지주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수출곡물의 많은 부분을 소작미가 차지하였다.

조선의 수출품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금이다. 처음에

는 중국상인들이 일본상인들보다 많은 금을 중국으로 수입해 갔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금본위제를 채택한 후 강력한 금 흡수정책으로 조선의 금 수출 시장을 손아귀에 넣었다. 이렇게 조선으로부터 유출된 막대한 금은 조선에 진출하였던 일본제일은행을 통해 금을 매입 유출함으로써 정화를 축적하고 일본의 금본위제 확립에 기초를 마련하였다.

개항 이후 개항장을 통한 백삼의 수출이 허용되었다. 1895년 가을에는 해로에 의한 홍삼 수출이 허용되었다. 1905년까지도 인삼의 수출은 전체 수출액에서 10%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이후 급격하게 변동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그 비율이 내려가는 경향에 있었다. 이 밖의 조선 수출무역상품은 밀, 팥, 생선, 생면, 조면, 철광, 흑연 등농산물과 해산물, 축산물, 광산물 등 대부분 1차 상품이 차지하였다.

개항기의 가장 주요한 수입제품은 섬유제품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면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초기에는 면제품의 가장 중요한 공급국이 영국이었다. 그런데 점차 영국제품은 이전까지 누렸던 조선무역에서의 지위를 상당부분 상실하게 되었다.

조선사회에 큰 영향을 준 것 중의 하나는 석유의 수입이었다. 조선은 종래 토착 동식물유를 사용하였는데 석유는 이것을 구축하면서 조선에 더욱 더 널리 보급하게 되었다. 겨울철에는 단일 품목으로 수입량이 1위였을 정도였다. 이 밖에 성냥, 술, 염료, 담배, 목재, 밀가루 등의 수입도 크게 늘어났다.

개항기 조선의 무역액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불평등조약체제를 바탕으로 한 무역구조는 농산물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후진국형이었지만 양적성장을 통해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등 식민지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개항기 후기에 이르면 시장이 다변화되는 등 여러 가지 발전의 가능성이 있었음을 주목할 수 있다.

6. 일제강점기 무역

일본정부는 1910년 8월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에서 종래 조선과 통상조약을 맺을 당시 저율관세를 강요하였던 각국에 대하여 ‘한국병합’ 이후에도 10년간 대한제국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과 일본의 무역에서도 종전의 대한제국 관세를 10년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이 있었다. 특히 일본자본가층에게는 대한제국의 관세가 유지되는 것에 상당한 반발이 있었으며 이에 뜻을 같이하는 일본내부의 세력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일제가 일본 내부의 반박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제정치적인 이유와 일본내부의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통치차원에서 이 시기 조선에서는 ‘특별관세정책’이 적용되고 있었다.

정치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일본상품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조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일본인들로서는 ‘관세동화정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결국 1920년 ‘관세동화정책’을

실시했다. 조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관세동화정책’이 실시됨으로써 일본은 조선 경제를 더욱 손쉽게 장악하게 되었다. 다만 ‘관세특례’ 규정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총독부에서 이입세 철폐를 일부 유보하였던 것은 조선인자본가를 포섭하려는 이 시기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만주국의 출현으로 조선의 대외무역을 대부분을 만주국이 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자 무역면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필요로 하였다. 조선과 만주국의 무역을 강화하기 위해 만주국과의 무역을 전담할 기구를 조직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2년 경성에서 각도 산업과장 및 관계자에 의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조선무역협회를 설립할 것을 결의하였고 1933년 2월에는 소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1934년 4월 〈무역진흥정책〉을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이 법의 운용에 의해 한편으로는 보복수단을 강구하고, 상대국의 일본상품 수입방지에 대처하는 것과 함께 협정주의에 기초하여 각국간 무역의 확대를 도모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무역통제정책을 실시했다. 중일전쟁 이후 거액의 군수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었으나 해외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으로서는 국제수지의 악화를 면할 도리가 없었다. 이러한 무역수지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적 불요(不要) 또는不急(不急)의 물자는 물론, 필수 원료도 보다 철저히 수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통제경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제 무역은 종래와 같이 개인적인 이윤추구를 위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무역, 즉 물자의 교류는 극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국내의 생산 및 수급관계도 가격에 의한 자동적 조정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이 시기 무역정책은

간접적인 관세정책으로부터 직접적인 통제정책으로 전환되었고 통제 정책도 상황에 따라 급변하였다. 이제 조선은 경제적으로 일본에 완전히 예속되어 조선의 경제사정과는 무관하게 일제의 군수물자의 확보 전략을 위한 전시통제정책에 의하여 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음이 무역 정책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특별관세정책’ 시기 무역액은 일제하를 통틀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무역액 증가는 ‘한국병합’ 이전부터 있어온 일반적 경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전 시기부터의 흐름을 외면한 채 일제하의 무역성장만을 놓고 일면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일본으로의 수출증가가 외국에의 수출증가에 비하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것은 조선의 수산물시장이 일본으로 편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산물 부문의 경우 수입과 이입은 거의 같은 비율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의 수출시장은 아시아로 국한되어 있어 그 대상지역이 상당히 협소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을 국가별로 그 순위를 파악하면 중국, 노령아세아(露領亞細亞), 미국, 러시아, 영국 등의 순서였다. 수입에서는 이 시기 초반에는 유럽시장의 비율이 높았고 후반에 올수록 아시아의 비율이 급증했지만 다른 대륙의 경우도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 시기의 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국가별로 볼 때 주요 수입대상국의 순위를 파악하면 중국, 미국, 영국, 독일, 난령인도(蘭領印度) 순서였다.

‘관세동화정책’ 시기 무역액도 얼마간 증가하긴 하였지만 1910~1919년 시기의 폭등 양상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정체적이었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지역과의 수출입 상황을 일별할 때 현저히 드러난다. 조선에서는 기본적으로 ‘관세동화정책’이 실시되어 조선무역의 대일 종속

이 강화되었으며 식민지무역구조는 확립되었다. 이러한 측면은 다른 외국과의 무역을 정체 내지 감퇴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수산물 부문에 있어서는 일본으로의 편중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었다. 수산물 부문에서도 이전 시기와 달리 일본으로의 편중현상이 더 심화되었다. 바로 여기에서 식민모국과 식민지간의 전형적인 무역관계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에도 아시아 시장이 수출액에 있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비율은 96~99% 대를 유지했다. 이는 여타 지역이 수출시장으로서의 거의 기능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별로 그 순위를 보면 중국, 노령아세아, 미국, 영령해협식민지(英領海峽植民地), 이집트가 상위 5개국을 차지했다. 수입에서도 아시아의 비중은 더욱 높아졌다. 주요한 수입대상국은 중국, 미국, 영국, 난령인도, 영령인도(英領印度) 순서였다.

‘무역진흥정책’ 시기에는 무역액이 다시 급증했다. 전체 수출액의 증가를 주도하였던 것이 수출이었다. 이것은 이전 시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수산물에 있어서는 수산물과는 달리 일본에서의 이입이 주도하고 있다. 대륙별 수출액의 경우 아시아시장이 여전히 수출액 1위를 차지했지만 모든 대륙으로의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었음이 특징적이다. 국가별로 주요한 수출대상국을 파악하면 만주국, 관동주, 중국, 미국, 홍콩 등의 순서였다. 수입 비율로 볼 때 역시 1위는 아시아였는데 수입에 있어서도 시장이 다변화하고 있었다. 국가별로 주요한 수입대상국을 파악하면 만주국, 중국, 미국, 영국, 관동주 순서였다. 모든 주요 수입대상국의 수입액도 증가하는 경향에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조선무역 전체를 놓고 볼 때 다른 시기와는 달리 예외적으로 수출입에 있어서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었고 수출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도 변화가 생김으로써 조선무역협회가 이 시기에 무역구조에 질적 변화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

‘무역통제정책’ 시기에는 전시통제 상황에서도 전체 무역액은 처음에는 대체로 증가하였으나 말기에 들어서면 급속도로 감소했다. 수출 부문에서는 이전시기보다 수출의 비율이 높았다. 수입 부문에 있어서는 1942년까지는 수입비율이 감소하다가 이후에는 증가하고 있었다. 이것을 단순히 무역구조의 개선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 1945년에 조선과 일본간에는 무역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식민지무역구조가 파탄에 이르렀다.

수출에서 아시아의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이었고 특히 1943년 이후에는 100%를 차지했다. 국가별로 파악하면 주요한 수출대상국의 순위는 만주국, 중국, 관동주, 독일, 불령인도 순서였다. 수입에서는 아시아의 비율이 가장 높긴 했지만, 1940년까지는 조금 떨어졌다가 1941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고 1942년 이후에는 99% 이상을, 1944년 이후에는 100%를 차지했다. 국가별로 파악하면 주요한 수입대상국의 순위는 만주국, 중국, 미국, 관동주, 난령인도 순서였다.

일제시기에는 전체 수출 부문에서 식료품과 원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았고 완제품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긴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으로의 식료품과 원료품 공급지로서의 성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특별관세정책’ 시기에 수출 상품 중 1위와 2위를 차지한 미국과 콩의 지위는 이 시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지만 1913년을 경계로 미국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수입 주요 상품 가운데 섬유제품이 많았다. 이 가운데 옥양목·막베는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했다. ‘관세동화정책’ 시기에 수출 상품 중 1위는 미국으로 절대적인 지위를

점했다. 수입에서 옥양목·막베는 1920~1924년에는 1위를 차지하였지만 그 밖의 해에는 그 위치를 좁쌀 등 다른 상품에 넘겨줘야 하였다. ‘무역진흥정책’ 시기에도 수출입 중요 상품에서 1위를 차지하였던 미국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수입입에서는 한 품목의 상품이 이 시기 전체 수입을 지속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고 좁쌀, 견직물, 기계류 등 상황에 따라 주도하는 품목이 바뀌었다. ‘무역통제정책’ 시기에는 수출 상품에서 1위를 차지한 상품은 여전히 미국이었지만 그 지위를 놓고 볼 때 이전시기처럼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 시기에 수입 부문의 1위를 차지한 상품은 기계류였다.

일제는 ‘한국병합’ 이후 처음부터 조선을 경제적으로 확고하게 장악할 수는 없었다. 과도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식민지무역구조가 확립되는 시기 또는 수탈구조가 확립된 시기에 오히려 무역규모의 추이가 가장 정체적이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후 식민지 경제정책의 변화 속에서 식민지무역구조도 부분적인 변화를 보였지만 근본적인 구조변화는 없었다.

◆ 참고문헌

1. 무역이론

- 강봉원, 1998, 〈원거리 무역의 이론과 방법론—복합사회 형성과정 연구와 관련하여—〉《韓國考古學報》39
- 피터 윤, 2002, 〈서구 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 중심적 문화론 비판〉《아세아연구》109
- Colin Renfrew, 1975, Trade as Action at a Distance: Question of Integration and Communication, Ancient Civilization and Trad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Fred plog, 1977, Modeling Economic Exchange, Exchange system in prehistory
- George Dalton, 1975, Karl Polanyi 's Analysis of Long—Distance Trade and His WiderParadigm, Ancient Civilization and Trad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Karl Polanyi, 1975, Traders and Trade, Ancient Civilization and Trad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K. Polanyi, C.M. Arensberg, and H.W. Pearson, 1971, 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mpires
- Karl Polany, 1977, The Livelihood of Man, Academic Press: 朴賢洙譯, 1983, 《人間의 經濟》I · II, 도서출판 풀빛
- K. C. Chang, 1975, Ancient Trade as Economics or as Ecology, Ancient Civilization and Trad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Gregory A. Johnson, 1975, Locational analysis and the investigation of Uruk local exchange systems, Ancient Civilization and Trad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Hugh R. Clark, 1991, Community, Trade and Network, Cambridge univ. press
- Timothy Earle, 1999, Production and exchange in prehistory, Companion Encyclopedia of Archaeology I , Routledge

- John Moreland, 1999, Production and exchange in historical archaeology, Companion Encyclopedia of Archaeology II , Routledge
- Peter S. Well, 1980, Culture contact and culture change, Cambridge univ. press
- Andrew Sherratt, 1982, Mobile resources: settlement and exchange in early agricultural Europe, Ranking, resource and exchange, Cambridge univ. press
- Stephen Shennan, 1982, Exchange and ranking: the role of amber in the earlier bronze age of Europe, Ranking, resource and exchange, Cambridge univ. press
- Colin Haselgrove, 1982, Wealth, prestige and power: the dynamics of late iron age political centralization in south—east England, Ranking, resource and exchange, Cambridge univ. press

2. 선사시대와 초기국가

- 權五榮, 1995, 〈三韓 國邑의 기능과 내부 구조〉《釜山史學》28
- 權兌遠, 1989, 〈古朝鮮의 文化疆域問題〉《백제연구》20
- 權鶴洙, 1994, 〈加耶諸國의 相互關係와 聯盟構造〉《韓國考古學報》31
- 金建洙, 1995, 〈韓半島의 原始 · 古代漁業〉《韓國上古史學報》20
- 金教年, 1995, 〈中國東北地方의 新石器時代 文化에 대한 小論〉《韓國上古史學報》18
- 金承玉, 1997, 〈鋸齒文化器: 정치적 권위의 象徵的 表象〉《韓國考古學報》36
- , 1999, 〈고고학의 최근 연구동향—이론과 방법론을 중심으로—〉《韓國上古史學報》31
- 김장석, 1995, 〈소금, 인류학, 그리고 고고학〉《韓國考古學報》32
- 金正基, 1996, 〈青銅器 및 初期鐵器時代의 竪穴住居〉《韓國考古學報》34
- 金貞培, 1973,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고려대출판부
- , 1986, 《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고려대출판부
- 南在祐, 1999, 〈安邪國의 성장조건과 발전〉《지역과 역사》5

閔德植, 1996, 〈發掘調査資料로 본 우리나라 이른 시기의 防禦施設〉《韓國上古史學報》21

박선미, 2000, 〈기원전 3~2세기 요동 지역의 고조선 문화의 명도전유적〉《先史와 古代》14

, 2001, 〈요하 이동의 명도전유적과 연의 관련성 문제—요하 이동의 명도전유적과 연하도유적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전농사론》7—송남이존 회교수정년기념호

朴淳發, 1989, 〈漢江流域 原三國時代의 土器의 樣相과 變遷〉《韓國考古學報》23

朴洋震, 1998, 〈族屬 추정과 夫餘 및 鮮卑 고고학자료의 비교 분석〉《韓國考古學報》39

白南郁, 1981, 〈《三國志》韓傳의 ‘國’에 관한 問題〉《白山學報》26

西谷正, 1995, 〈가야의 철—철정—〉《가야제국의 철》, 신서원

徐榮洙, 1999, 〈古朝鮮의 對外關係와 疆域의 變動〉《東洋學》29

成正鏞, 2000, 〈中西部地域 3~5世紀 鐵製武器의 變遷〉《韓國考古學報》42

宋滿榮, 2000, 〈中部地方 原三國時代—漢城百濟時代 戰爭 樣相의 變化—火災住居址 資料를 중심으로—〉《韓國考古學報》43

신숙정, 2001,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생업경제〉《韓國上古史學報》35

沈奉謹, 1991, 〈韓國 先史時代 稻作農耕〉《韓國考古學報》27

沈載淵, 1998, 〈강원지역 철기문화 연구〉《韓國上古史學報》29

安在皓,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韓國考古學報》43

오강원, 2000, 〈西團山文化의 圈域에 관한 研究〉《韓國上古史學報》33

吳世筵, 1995, 〈중부 지방 원삼국시대 문화에 대한 연구: 주거양상을 중심으로〉《韓國上古史學報》19

우정연, 2002, 〈중서부 지역 송국리복합체 연구—주거지를 중심으로—〉《韓國考古學報》47

尹龍九, 1998, 〈《三國志》韓傳 對外關係記事에 대한 一檢討〉《馬韓史研究》, 충남대학교 출판부

, 1999, 〈三韓의 朝貢貿易에 대한 一考察—漢代 樂浪郡의 교역형태와 관련하여—〉《歷史學報》162

, 1999, 〈三韓의 對中交渉과 그 性格〉《國史館論叢》85

이기길, 1997, 〈보성강 유역에서 새로 찾은 구석기유적 예보〉《韓國考古學報》37

李相均, 2002, 〈韓半島 中西部 빗살문양토기의 起源과 展開〉《韓國考古學報》46

李相吉, 2000, 〈靑銅器 埋納의 性格과 意味—馬山 가포동유적 보고를 겸하여—〉《韓國考古學報》42

李鮮馥, 1988, 〈구석기시대〉《韓國考古學報》21

이선복 · 이용일, 1996, 〈흑요석 석기의 지화학적 특성에 대한 예비고찰〉《韓國考古學報》35

李盛周, 1996, 〈靑銅器時代 東아시아 世界體系와 韓半島의 文化變化〉《韓國上古史學報》23

李榮文, 1998, 〈韓國 琵琶形銅劍 文化에 대한 考察—琵琶形銅劍을 中心으로—〉《韓國考古學報》38

李俊貞, 2002, 〈패총유적의 機能에 대한 고찰—생계 · 주거 체계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韓國考古學報》46

李清圭 · 康昌和, 1994, 〈제주도 출토 漢代 화폐 유물의 한 例〉《韓國上古史學報》17

李賢惠, 1987, 〈韓半島 靑銅器文化의 經濟的 背景: 細形銅劍文化期를 중심으로〉《韓國史研究》56

, 1994, 〈三韓의 對外交易體系〉《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一潮閣

, 1995, 〈鐵器普及과 政治權力的 성장—辰弁韓지역 政治集團을 중심으로—〉《가야학술총서》1,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1998, 《韓國 古代의 생산과 교역》, 一潮閣

李熙濬, 2000, 〈삼한 소국 형성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틀—취락 분포 정형을 중심으로—〉《韓國考古學報》43

이흥종, 2002, 〈靑銅器를 둘러싼 韓 · 日 交易〉《해양교류의 고고학》—제26회 전국고고학대회 발표요지문

임기환, 2000, 〈3세기~4세기초 위 · 진의 동방정책〉《역사와 현실》36

林永珍, 1989, 〈움집의 分類와 變遷〉《韓國考古學報》17 · 18

任孝宰, 1985, 〈부장철정고〉《동의사학》2

, 1989, 〈부장철정고〉《가야문화》2

, 1991, 〈중부 동해안과 동북 지역의 신석기문화 관련성 연구〉《韓國考古學報》26

정석배, 1995, 〈청동·철기시대 중국북방의 단검〉《韓國考古學報》32

鄭永振, 1991, 〈沃沮·北沃沮 疆域考〉《韓國上古史學報》7

진소래, 1997, 〈요동반도 신석기문화 연구－생업경제를 중심으로－〉《韓國上古史學報》24

秦榮一, 1994,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式考〉《濟州島史研究》3

崔夢龍, 1985, 〈古代國家成長과 貿易－衛滿朝鮮의 例〉《韓國古代的 國家와 社會》, 一潮閣

崔盛洛, 1993, 〈原三國時代 貝塚文化: 研究成果 및 諸問題〉《韓國考古學報》29

, 1996, 〈考古學에 있어서 文化的 概念〉《韓國上古史學報》22

咸舜燮, 1998, 〈天安 淸堂洞遺蹟을 통해 본 馬韓의 對外交涉〉《馬韓史研究》, 충남대학교 출판부

, 1998, 〈錦江流域圈의 馬韓에서 百濟로의 轉換〉《3~5세기 금강유역의 고고학》, 제22회 전국고고학대회 발표요지문

洪湛植, 2001, 〈농기구와 부장유형－영남 지역의 2세기 후반~4세기대 분묘부장품을 대상으로－〉《韓國考古學報》44

許文會, 1991, 〈韓國 栽培稻의 起源과 傳來〉《韓國考古學報》27

3. 삼국시대

1) 고구려

金基興, 1987, 〈고구려의 성장과 대외교역〉《韓國史論》16

余昊奎, 1995, 〈3세기 후반 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남도와 북도를 중심으로－〉《韓國史研究》91

, 2000,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대외정책의 변화〉《역사와 현실》36

盧泰敦, 1989, 〈高句麗 渤海人과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渉에 관한 一考察〉《大東文化研究》23: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2) 백제

權五榮, 1988, 〈4세기 百濟의 地方統制方式 一例: 東晉靑磁의 流入經緯를 中心으로〉《韓國史論》18

, 1988, 〈考古資料를 중심으로 본 百濟와 中國의 文物交流〉《震檀學報》66

, 2001, 〈伯濟國에서 百濟로의 전환〉《역사와 현실》40

, 2002, 〈풍납토성 출토 외래유물에 대한 검토〉《百濟研究》36

김병남, 2001, 〈백제의 국가 성장과 대외 교역〉《全州史學》8

김수태, 2001, 〈百濟의 對外交涉權 掌握과 馬韓〉《百濟研究》33

金承玉, 2000, 〈漢城百濟의 形成過程과 對外關係〉《百濟史上的 戰爭》, 書景文化社

朴淳發, 1999, 〈漢城百濟의 對外關係〉《百濟研究》30

, 2001, 〈馬韓 對外交涉의 變遷과 百濟의 登場〉《百濟研究》33

宣石悅, 1996, 〈3세기 후반 弁辰韓 勢力圈의 變化〉《가라문화》13,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成周鐸, 1987, 〈馬韓·初期百濟史에 對한 歷史地理的 管見〉《마한·백제문화》10

禹在柄, 2002, 〈4~5世紀 倭에서 伽倻·百濟로의 貿易루트와 古代航路〉《湖西考古學報》6·7합

尹善泰, 2001, 〈馬韓의 辰王과 臣漬沽國－領西濊 지역의 歷史的 推移와 관련하여－〉《百濟研究》34

李道學, 1991, 〈百濟의 交易網과 그 體系의 變遷〉《韓國學報》63

, 1992, 〈伯濟國의 성장과 소금 交易網의 확보〉《百濟研究》23

, 1999, 〈百濟의 交易과 그 性格〉《STRATEGY21》2-2,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李蘭英, 1998, 〈百濟지역 출토 中國陶器 研究－古代的 交易陶器를 중심으로－〉《百濟研究》28

3) 신라

李晶淑, 1993, 〈新羅 眞平王代의 對中交涉〉《釜山女大史學》10·11

전덕재, 2000, 〈4세기 국제관계의 재편과 신라의 대응〉《역사와 현실》36

朱甫墩, 1996, 〈麻立干時代 新羅의 地方統治〉《嶺南考古學》19

, 1998,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사와 현실》24

尹載云, 1996, 〈9世紀前半 新羅의 私貿易에 관한 一考察〉《史叢》45

, 1999, 〈新羅下代 眞의 再檢討〉《史學研究》58·59합집

, 1999, 〈韓國 古代의 貿易形態〉《先史와 古代》12

, 2002, 〈南北朝時代 貿易研究〉,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2003, 〈8~9세기 동아시아의 교역—장보고의 청해진활동을 중심으로〉《白山學報》66

, 2004, 〈신라하대 무역관련 기구와 정책〉《先史와 古代》20

, 2005, 〈장보고시대의 동북아시아 네트워크〉《장보고연구논총》4, 해군 해양연구소

李基東, 1985, 〈張保臯와 그의 海上王國〉《張保臯의 新研究》, 莞島文化院

, 1989, 〈9~10世紀에 있어서 黃海를 무대로 한 韓中日 三國의 海上活動〉《第3回 環黃海韓中交涉史研究 심포지엄》, 百濟文化開發研究院

, 1989, 〈黃海를 통한 古代 韓中交涉史의 展開〉《第2回 環黃海韓中交涉史研究 심포지엄》, 百濟文化開發研究院

, 1997,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李龍範, 1969,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商人의 貿易品〉《李弘植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李龍範, 1976, 〈古代國家의 崩壞—海外貿易의 發展〉《한국사》3, 국사편찬위원회

이병로, 1992, 〈8세기의 羅·日관계史—中華사상과 교역을 중심으로〉《일본학연보》4

, 1995, 〈9世紀초기의 ‘環지나海무역권’ 의 고찰〉《日本學誌》15, 啓明大學 校 國際學研究所 日本研究室

, 1996, 〈고대일본 열도의 ‘신라상인’ 에 대한 고찰〉《日本學》15, 東國大學 校 日本學研究所

, 1996, 〈寬平期(890년대) 일본의 대외관계에 관한 일고찰〉《日本學誌》16

, 1998, 〈“續日本紀” 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韓國古代史研究》14

李永澤, 1979, 〈張保臯海洋勢力에 關한 考察〉《韓國海洋大學論文集》14

, 1982, 〈9世紀 在唐 韓國人에 대한 考察〉《韓國海洋大學論文集》17

李佑成, 1969, 〈三國遺事所載 處容說話의 一分析〉《金載元博士回甲記念論叢》

이유진, 2001, 〈8~9세기 동아시아 세계의 대외관계와 교역〉《해상왕 장보고의 국 제무역활동과 물류》,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최광식·정운용·최근식·윤재운, 2003, 《새로운 천년을 여는 미래인 해상왕 장보고》, 청아출판사

崔在錫, 1992, 〈9世紀 新羅의 西部日本進出〉《韓國學報》69

, 1992, 〈9世紀의 在唐新羅租界의 存在와 新羅租界의 日本·日本人 保護〉《東方學志》75

, 1994, 〈수출품을 통해 본 통일신라와 일본의 미술공예〉《民族文化論叢》15

, 1994, 〈日本 東大寺 ‘獻物帳’ 을 통해 본 正倉院 물품의 제작국〉《韓國學報》75

, 1994, 〈日本 正倉院의 大刀와 그 제작국〉《韓國學報》77

, 1994, 〈日本 正倉院의 銅鏡과 그 제작국에 대하여〉《民族文化研究》27

, 1995, 〈正倉院 소장의 자(尺)와 그 제작국에 대하여〉《韓國學報》78

, 1996, 《正倉院 소장품과 統一新羅》, 一志社

허일·최재수·강상택·이창익의 공저, 2001, 《張保臯와 황해해상무역》, 국학자료원

綱野善彦外, 1990, 《海と列島文化》1—日本海と北國文化—, 小學館

龜井明德, 1992, 〈唐代陶磁貿易의 展開と商人〉《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Ⅲ—海上の道—, 東京大學出版會

堀敏一, 1993,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世界》, 岩波書店

, 1998, 《東アジアのなかの古代日本》, 研文出版

內藤雋輔, 1961, 《朝鮮史研究》, 京都大學 東洋史研究會

藤間生大, 1966, 《東アジア世界の形成》, 春秋社

木宮泰彦, 1955, 《日華文化交流史》, 富山房

浜田耕策, 1983, 〈新羅の中・下代の内政と對日本外交—外交形式と交易〉《學習院史學》21

, 1999, 〈新羅王權と海上勢力—特に張保臯の清海鎮と關聯して—〉《東アジア史における國家と地域》, 刀水書房

森浩一外, 1991, 《海と列島文化》2—日本海と出雲世界—, 小學館

西嶋定生, 1985, 《日本歴史の國際環境》, 東京大學出版會

鈴木靖民, 1985,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李成市, 1997, 《東アツアの王權と交易》, 青木書店
 , 1998,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日野開三郎, 1984,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9—北東アジア國際交流史の研究
 (上)—, 三一書房
 山崎雅愼, 2000, 〈貞觀八年應天門事件と新羅賊兵〉《人民の歴史學》146
 , 2001, 〈九世紀日本の對外交易〉《アジア遊學》26
 , 2001, 〈貞觀十一年新羅海賊來寇事件の諸相〉《國學院大學大學院紀要》32
 新川登龜男, 1988, 〈日羅間の調(物産)の意味〉《日本歴史》481: 辛鍾遠 譯, 2002, 〈
 일본·신라 사이 調(物産)의 의미〉《江原史學》17·18合輯
 田村專之助, 1939, 〈6世紀中葉以後における日羅貿易研究〉《青丘學叢》30
 坂上早魚, 1988, 〈九世紀の日唐交通と新羅人一圓仁の“入唐求法巡禮行記”を中心
 に—〉《Museum Kyushu》28
 浦生京子, 1979, 〈新羅末期の張保臯の擡頭と反亂〉《朝鮮史研究會論文集》16
 朱江, 1993, 〈唐과 新羅의 海上交通〉《張保臯 해양경영사연구》, 圖書出版 李鎭
 E. O. Reischauer, 1955, Ennin's Travels in T'ang China, Ronald Press Company

2) 발해

朴眞淑, 1997, 〈渤海 文王代의 對日本外交〉《歷史學報》153
 , 1998, 〈渤海 康王代의 對日本外交〉《忠南史學》10
 , 1998, 〈渤海 宣王代의 對日本外交〉《韓國古代史研究》14
 , 1999, 〈渤海 大彝震代의 對日本外交〉《韓國古代史研究》15
 , 2001, 《渤海의 對日本外交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방학봉, 1989, 〈발·일무역에 대한 역사적 고찰〉《발해사연구》, 정음사
 尹明喆, 1999, 〈渤海의 海洋活動과 동아시아의 秩序 再編〉《高句麗研究》6
 尹載云, 2001, 〈渤海의 王權과 對日貿易〉《韓國史學報》11
 , 2002, 〈新羅와 渤海의 경제교섭〉《史叢》55, 역사학연구회
 , 2003, 〈발해 사회·경제사연구의 현황과 과제〉《韓國史研究》122
 , 2004, 〈발해의 왕권과 대중국무역〉《白山學報》68
 , 2005, 〈南北國時代의 네트워크〉《韓國研究セソタ年報》5, 九州大學 韓國

研究セソター

임상선, 1996, 〈발해의 사회·경제구조〉《한국사》10—발해—, 국사편찬위원회
 , 2000, 〈‘渤海人’ 李光玄과 그의 道教書 檢討〉《韓國古代史研究》20
 진영률, 1997, 〈발해의 대일관계〉《발해사연구논문집》2
 채태형, 1997, 〈발해의 수상운수〉《발해사연구논문집》2
 高瀬重雄, 1978, 〈日本海をおわった樺油—日渤交渉史上の—事實—〉《富山史壇》
 69
 , 1982, 〈日本と渤海國との交易物資〉《金澤經濟大學論集》16—1
 , 1986, 〈古代の日本海交通—とくに日本と渤海の交流〉《季刊 考古學》15:
 임상선 譯, 1990,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古畑徹, 1999, 〈環日本海諸‘地域’間交流史の中の渤海國〉《東アジア史における
 國家と地域》, 刀水書房
 東野治之, 1984, 〈日唐間における渤海の中繼貿易〉《日本歴史》438, 吉川弘文館
 馬一虹, 1999, 〈渤海と唐の關係〉《アジア遊學》6
 保科富士男, 1988, 〈古代日本の對外關係における贈進物の名稱—古代日本の對外
 意識に關聯して—〉《白山史學》25
 石井正敏, 1992, 〈10世紀の國際變動と日宋貿易〉《新版 古代の日本》2—アジアか
 らみた古代日本—, 角川書店: 2001,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 1999, 〈渤海と西方社會〉《アジア遊學》6: 2001,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小嶋芳孝, 1990, 〈高句麗·渤海との交流〉《海と列島文化》1—日本海と北國文
 化—, 小學館
 , 1995, 〈日本海を越えてきた渤海使節〉《日本の古代》3, 中央公論社
 , 1999, 〈渤海の産業と物流〉《アジア遊學》6
 鈴木靖民, 1998, 〈渤海の國家構造〉《しにか》9월호
 , 1999, 〈발해와 일본·당의 무역〉《장보고와 21세기》, 혜안
 村中一郎, 1998, 〈後期日渤交渉における私的取引の實態について〉《富山史壇》
 125
 王勇, 1999, 〈渤海商人李光玄について〉《アジア遊學》6

5. 후삼국시대

- 姜喜雄, 1977, 〈高麗 惠宗朝 王位繼承亂의 新解釋〉《韓國學報》7
- H.W. KANG, 1986, 〈Wang Kon and the Koryo Dynastic Order〉《韓國文化》7
- 具山祐, 1992, 〈羅末麗初의 蔚山地域과 朴允雄〉《韓國文化研究》5
- 권덕영, 2000, 〈後百濟의 海外交涉 活動〉《후백제와 건원》, 서경문화사
- 金庠基, 1948, 《東方文化交流史論考》, 乙酉文化社
- 金庠基, 1989, 《東方史論叢》, 서울大學校出版部
- 金成俊, 1989, 〈10世紀 東北아시아의 國際情勢와 韓·日交涉問題〉《대동문화연구》23
- 文秀鎮, 1987, 〈高麗建國期の 羅州勢力〉《成大史林》4
- 朴漢高, 1965, 〈王建世系の 貿易活動에 對하여—그들의 出身 究明을 中心으로—〉《史叢》10
- 朴漢高, 1985, 〈羅州道大行臺考〉《江原史學》1
- 朴漢高, 1989, 〈羅末麗初의 西海岸交涉史研究〉《國史館論叢》7
- 魏恩淑, 1995, 〈나말 무역사 연구동향과 과제〉《貿易評論》2, 慶星大學校 貿易研究所
- 李基東, 1997, 〈羅末麗初 南中國 여러 나라와의 交涉〉《歷史學報》155
- 全基雄, 1997, 〈나말여초의 對日關係史 研究〉《韓國民族文化》9,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 鄭清柱, 1991, 〈新羅末 高麗初의 羅州豪族〉《全北史學》14
- 金炅春, 1986, 〈韓國流通手段 序說考: 古代—朝鮮初 中心으로〉《慶州史學》5
- 무함마드 간수, 1992, 《新羅·西域 交流史》, 檀國大學校出版部
- 李道學, 1997, 〈古代國家의 成長과 交通路〉《국사관논총》74
- 李泰鎮, 1994, 〈前近代 韓·中 交易史의 虛와 實〉《震檀學報》78
- 이형구, 1989, 〈고대조신과 유구와의 문화교류〉《두산 김택규박사화갑기념논총》
- 全海宗, 1977, 〈中世 韓中 貿易形態 小考—특히 公認貿易과 密貿易에 대하여—〉《大丘史學》12·13집
- 全海宗, 1977,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 韓國史研究會編, 1987, 《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 三知院

홍희유, 1989, 《조선상업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부

- Hugh R. Clark, 1993, 〈한반도와 남중국간의 무역과 국가관계〉《장보고 해양경영사연구》, 도서출판 李鎭
- E·V·シャフクノフ, 1998, 〈北東アジア民族の歴史におけるソグド人の黒貂の道〉《東アジアの古代文化》96

6. 고려시대

〈資料〉

《契丹國誌》(葉隆禮), 《高麗圖經》, 《高麗史》, 《高麗史節要》, 《舊五代史》, 《金史》, 《圖書見聞誌》(郭若虛), 《東觀餘論》下(黃伯思), 《東文選》, 《洞天清錄》(趙希鵠), 《東坡文集》, 《本草衍義》(寇宗奭), 《負暄野錄》下, 《蘇東坡全集》, 《蘇軾文集》, 《宋史》, 《松隱集》(曹勗), 《帥記》, 《新增東國輿地勝覽》, 《硯史》(米黻), 《五代會要》, 《遼史》, 《緯略》(高似孫), 《日本紀略》, 《資治通鑑》, 《貞信公記抄》, 《增補文獻備考》, 《冊府元龜》

〈著述〉

- 姜吉仲, 1991, 〈南宋과 高麗의 政治外交와 貿易關係에 대한 考察〉《慶熙史學》16·17.
- 旗田巍, 1961, 〈高麗의 ‘武散階’—鄉吏·耽羅의王族·女眞의酋長·老兵·工匠·樂人の位階〉《朝鮮學報》21·22합
- 金光洙, 1977, 〈高麗 建國期の 涖西豪族과 對女眞關係〉《史叢》21·22합.
- 金光洙, 1977, 〈高麗前期 對女眞交涉과 北方開拓問題〉《東洋學》7.
- 金九鎮, 1976, 〈公嶮鎮과 先春嶺碑〉《白山學報》21.
- 金庠基, 1937, 〈麗宋貿易小考〉《震檀學報》7: 1948, 《東方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 金庠基, 1959, 〈고려 광종의 치세〉《국사상의 제문제》2, 국사편찬위원회.
- 金庠基, 1959, 〈고려와 금(金)·송(宋)과의 관계〉《국사상의 제문제》5, 국사편찬위원회. 1974, 《東方史論叢》, 서울대출판부.
- 金庠基, 1959, 〈단구와의 항쟁〉《국사상의 제문제》2, 국사편찬위원회.
- 金庠基, 1959, 〈여진관계의 시말과 윤관(尹瓘)의 북정〉《국사상의 제문제》4, 국사

- 편찬위원회: 1974, 《東方史論叢》, 서울대출판부.
- , 1959, 〈해상의 활동과 문물의 교류—예성항(禮成港)을 중심으로—〉《국사상의 제문제》4, 국사편찬위원회: 1974, 《東方史論叢》, 서울대출판부.
- , 1961, 《高麗時代史》, 東國文化社.
- , 1974, 〈여진관계〉《東方史論叢》, 서울대출판부.
- 金渭顯, 1978, 〈麗宋關係와 그 航路考〉《關大論文集》6.
- 金在滿, 1983, 〈五代와 後三國·高麗初期의 關係史〉《大東文化研究》17.
- , 1999, 《契丹·高麗關係史研究》, 國學資料院.
- 金定慰, 1977, 〈中世 中東 文獻에 비친 韓國像〉《韓國史研究》16.
- 羅鍾宇, 1991, 〈高麗前期의 對外關係史研究〉《國史館論叢》29, 국사편찬위원회.
- , 1995, 〈5대 및 송과의 관계〉《한국사》15, 국사편찬위원회.
- , 1995, 〈일본 및 아라비아와의 관계〉《한국사》15, 국사편찬위원회.
- , 1996, 《韓國中世對日交涉史研究》, 圓光大學校 出版局.
- 武田幸男, 1961, 〈高麗初期의 官階—高麗王朝確立過程의 一考察—〉《朝鮮學報》41.
- 朴龍雲, 1985, 《高麗時代史》(上), 一志社.
- , 1995, 〈高麗·宋 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韓國學報》81: 2002, 《高麗社會의 여러 歷史像》, 신서원.
- , 1996, 〈高麗·宋 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韓國學報》82: 2002, 《高麗社會의 여러 歷史像》, 신서원.
- 박종기, 1994, 〈고려시대의 대외관계〉《한국사》6, 한길사.
- 朴漢男, 1993, 《高麗의 對金外交政策 研究》, 成均館大 博士學位 論文.
- , 1995,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한국사》15, 국사편찬위원회.
- , 1995, 〈거란 및 금과의 통교〉《한국사》15, 국사편찬위원회.
- , 1995, 〈북방민족과의 관계〉《한국사》15, 국사편찬위원회.
- , 1996, 〈12세기 麗金貿易에 대한 검토〉《大東文化研究》31.
- 朴賢緒, 1974, 〈北方民族과의 抗爭〉《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 方東仁, 1976, 〈尹瓘九城再考—九城設置範圍를 中心으로—〉《白山學報》21.
- , 1980, 〈高麗의 東北地方境域에 關한 研究—특히 九城設置範圍를 中心으로—〉《嶺東文化》創刊號.
- 森克己, 1959, 〈日·宋の高麗との私獻貿易〉《朝鮮學報》14.
- , 1966, 〈日麗交渉と刀伊賊の來寇〉《朝鮮學報》37·38합.
- , 1978, 〈日宋·日元貿易の展開〉《對外關係史》, 山川出版社.
- 三上次男, 1939, 〈金初に於ける麗金關係—保州問題を中心として—〉《歷史學研究》9—4.
- 沈載錫, 2002, 《高麗國王 冊封 研究》, 해안.
- 尹武炳, 1958, 〈吉州城과 公險鎭—公險鎭 立碑問題의 再檢討—〉《歷史學報》10.
- 李基白, 1959, 〈高麗初期 五代와의 관계〉《韓國文化院論叢》1, 梨花女大: 1981, 《高麗光宗研究》, 一潮閣.
- 이미지, 2003, 〈高麗 宣宗代 樞場 문제와 對遼 關係〉《韓國史學報》14.
- 李丙燾, 1961, 《韓國史》(中世編), 震檀學會, 乙酉文化社.
- 李龍範, 1955, 〈麗丹貿易考〉《東國史學》3.
- , 1977, 〈高麗와 契丹과의 關係〉《東洋學》7.
- , 1977, 〈胡僧 襪囉의 高麗往復〉《歷史學報》75·76합.
- , 1991, 〈10~12세기 國際情勢〉《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 이정신, 2002, 〈고려 태조의 건국이념의 형성과 국내의 정세〉《韓國史研究》118.
- 이정희, 1997, 〈高麗前期 對遼貿易〉《지역과 역사》4: 2000, 《고려시대 세제의 연구》, 국학자료원
- 李鉉淙, 1968, 〈南洋諸國人の 來往貿易에 對하여〉《史學研究》18
- , 1977, 〈高麗와 日本과의 關係〉《東洋學》7
- 李惠求, 1967, 〈高麗大晟樂의 變遷〉《韓國音樂序說》, 서울大 出版部
- 張東翼, 2000, 《宋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학교출판부
- 全海宗, 1974, 〈對宋外交의 性格〉《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 , 1977, 〈高麗와 宋과의 關係〉《東洋學》7
- , 1979, 〈中世 韓中貿易形態 小考〉《韓國과 中國》, 知識産業社.
- 中村榮孝, 1927, 〈後百濟及び高麗太祖の日本通使〉《史學雜誌》, 38—8: 1965, 《日鮮關係의 研究(上)》, 吉川弘文館.
- 中村榮孝, 1965, 《日鮮關係의 研究(上)》, 吉川弘文館.
- 池田溫, 1989, 〈新羅·高麗時代 東亞地域紙張의 國際流通에 關하여〉《大同文化研究》23.
- 津田左右吉, 1913, 〈尹瓘征略地域考〉《朝鮮歷史地理》2: 1964, 《津田左右吉全集》

11, 岩波書店.

崔圭成, 1995, 〈북방민족과의 관계〉《한국사》15, 국사편찬위원회.

河宇鳳, 1995, 〈유구와의 관계〉《한국사》22, 국사편찬위원회.

丸龜金作, 1937, 〈高麗と契丹・女眞との貿易關係〉《歴史學研究》5-2.

, 1961, 〈高麗と宋との通交問題(1)〉《朝鮮學報》17.

, 1962, 〈高麗と宋との通交問題(2)〉《朝鮮學報》18.

黃寬重, 1986, 〈高麗與金・宋的關係〉《아시아문화》창간호, 한림대.

, 1992, 〈宋・麗貿易與文物交流〉《震檀學報》, 71・72합.

Peter Yun, 1998, Rethinking the Tribute System: Korean States and Northeast Asian Interstate Relations, 600-1600, Ph.D. diss., UCLA.

7. 조선시대

〈저서〉

강만길, 1973, 《조선 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학교 출판부

고동환, 1998, 《조선 후기 서울 상업 발달사 연구》, 지식산업사

김상기, 1948, 《동방문화교류사논고》, 을유문화사

김종원, 1999, 《근세 동아시아 관계사 연구—조청교섭과 동아시아국교역을 중심으로》, 혜안

박평식, 1999, 《조선 전기 상업사연구》, 지식산업사

손승철, 1999, 《근세조선의 한일관계 연구》, 국학자료원

송찬섭, 2002, 《조선 후기 환곡제개혁연구》, 서울대 출판부

송찬식, 1997,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의 연구》, 일조각

연갑수, 2001,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정책 연구》, 서울대출판부

오성, 1989, 《조선 후기 상인연구》, 일조각

오수창, 2002, 《조선 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유승주, 1993, 《조선시대 광업사연구》, 고려대 출판부

유승주·이철성, 2002, 《조선 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경인출판사

유원동, 1976,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일지사

이철성, 2000, 《조선 후기 대청무역사연구》, 국학자료원

이현종, 1964, 《조선 전기 대일교섭사 연구》, 한국연구원

장준무, 1978, 《청한중번무역(1637~1894)》,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전간 39

전해중, 1970,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 1979, 《한국과 중국》, 지식산업사

정성일, 2000, 《조선 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최소자, 《명청시대 중·한 관계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논문〉

강만길, 1972, 〈개성상인연구—조선 후기 상업자본의 성장—〉《한국사연구》8

강성조, 1981, 〈초기 조·명간의 공무역고〉《논문집》9(관동대학)

고동환, 2002, 〈조선 후기 시전의 구조와 기능〉《역사와 현실》44

고승희, 1997, 〈조선 후기 북관개시 연구〉《조선시대사학보》1

, 2000, 〈18~19세기 북관개시의 운영과 성격〉《한국사연구》109

김동철, 1991, 〈조선 후기 수유각무역과 궁각계공인〉《한국문화연구》4(부산대)

, 1993, 〈17・18세기 대일공무역에서의 공작미 문제〉《항도부산》10

, 1993, 〈19세기 우피무역과 동래상인〉《한국문화연구》6(부산대)

, 1995, 〈17세기 일본과의 교역·교역품에 관한 연구—밀무역을 중심으로〉《국사관논총》61

, 1996, 〈국제교역의 발달과 마찰〉《한국사》28(국사편찬위원회)

, 1998, 〈조선 후기 왜관 개시무역과 동래상인〉《민족문화》21

, 1999, 〈조선 후기 왜관 개시무역과 피집삼〉《한국민족문화》13,

김병하, 1972, 〈17, 8세기의 은삼문제—대일 인삼무역을 중심으로〉《정경논집》8(경희대)

김성균, 1961, 〈초기의 조청경제관계교섭 약고〉《사학연구》5

김성철, 1960, 〈연행소고—조중교섭사의 일척—〉《역사학보》12

김양수, 1998, 〈조선 후기 역관가문의 연구—변응성·변승업 등 밀양변씨가계를 중심으로〉

《손보기박사 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김용욱, 1962, 〈부산왜관고〉《한일문화》제1집 제2권

김용홍, 1976, <팔포무역에 대한 일고—청대를 중심으로—> 《대구사학》10
 김정미, 1996, <조선 후기 대청무역의 전개와 무역수세제의 시행> 《한국사론》36
 김종원, 1977, <조선 후기 대청무역에 관한 일 고찰—잠상의 무역활동을 중심으로—> 《진단학보》43
 김태명, 1998, <조정 박제가의 상업관과 해외통상론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상학연구》 제12집 제1호
 , 2000, <조공무역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상학연구》제14집 제2호
 박원호, 2002, <15세기 東아시아의 정세> 《명초조선관계사연구》, 일조각
 박평식, 1999, <개성상업의 복구와 개성상인> 《조선 전기상업사연구》, 지식산업사
 백승철, 1994, <16세기 부상대고의 성장과 상업활동> 《역사와 현실》13
 서병국, 1990, <조선 전기의 대여진관계사> 《국사관논총》14
 서혜원, 1997, <조선 후기 책문무역의 변천에 관한 연구> 《홍익사학》6
 손승철, 1992, <조선 전기 대유구 교린체제의 구조와 성격> 《조항래교수회갑기념논총》
 신동규, 1998, <17세기 네덜란드의 조선무역기도에 관한 고찰> 《사학연구》55·56
 합집
 양홍숙, 1999, <17~18세기 역관의 대일무역> 《지역과 역사》5호
 연정열, 1982, <중강후시와 무역법규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 논문집》6
 오성, 1979, <조선 후기 삼상에 대한 일고찰—사상의 대두와 관련하여—> 《한국학보》17
 , 1992, <조선 후기 인삼무역의 전개와 삼상의 활동> 《세종사학》1
 , 1994, <한말 개성지방의 호의 구성과 호주—남부 도조리 호주의 직업분포와 관련하여—>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下, 일조각
 유교성, 1965, <인삼무역의 선구자—임상옥(1779~1855)> 《인물한국사》4, 박우사
 유승주, 1970, <조선 후기 대청무역의 전개과정—17·8세기 부연역관의 무역활동을 중심으로—> 《백산학보》8
 , 1978, <17세기 사무역에 관한 일고찰—조·청·일간의 염초·유황무역을 중심으로—> 《홍대논총》10
 , 1991, <조선 후기 조청무역 소고> 《국사관논총》30

, 1994, <조선 후기 대청무역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아세아연구》37-2
 유완상, 1977, <조선시대 중강개시에 대한 일고—특히 인조대를 중심으로—> 《현대사학의 제문제》, 일조각
 유원동, 1976, <무역> 《한국사론》4 (국편위)
 , 1991, <조선 후기 상업사 연구현황>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연구입문》, 민족문화사
 이원순, 1963, <부연사행의 경제사적일고—사무역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교육》7
 , 1983, <부연사행의 문화사적 의의> 《사학연구》36
 , 1993, <조선 후기(강호시대) 한일교류의 위상> 《조선시대사론집》, 느티나무
 이철성, 1996, <18세기 후반 조선의 대청무역 실태와 사상층의 성장—모자무역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94
 , 2000, <조선 후기 무역사 연구동향과 전망> 《조선 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 2002, <Reevaluation of the Choson Dynasty's Trade Relationship with Ch'ing Dynast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3
 이태명, 2001, <조선 후기 북학론자들의 대외무역관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상학연구》제15집 제1호
 이태진, 1991, <국제무역의성행> 《한국사시민강좌》9
 , <16세기 국제교역의 발달과 서울 상업의 성쇠> 《서울학연구총서》7
 이현숙, 1997, <16~17세기 조선의 대중국 수출정책에 관한 연구> 《홍익사학》6
 이현종, 1961, <명사집대고> 《향토서울》12
 , 1964, <기유조약성립시말과 세전선수에 대하여> 《항도부산》4
 , 1964, <남양제국인의 내왕무역에 대하여> 《사학연구》18
 , 1973, <기유조약 내용의 사서별 종람검토> 《대구사학》7, 8
 , 1974, <임진왜란시 유구·동남아인의 래원(來援)> 《일본학보》2
 , 1982, <대명무역> 《한국사론》11 (국편위)
 이흥두, 1988, <17세기 대청교역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제81집
 이훈, 1997, <일본과의 관계> 《한국사》32, 국사편찬위원회

이훈섭, 2002, <개성상인의 상업기반 및 기질에 관한 연구>《한국전통상학연구》20
 장준무, 1979, <청입관전여조선적무역(1627~1636)>《동방학지》21
 전해중, 1966, <청대 한중조공관계 종고>《진단학보》29·30
 정성일, 1991, <역지병례 실시 전후 대일무역의 동향(1809~1812)>《경제사학》15
 , 1993, <조선산 인삼종자와 일본의 인삼수입대체>《춘계박광순박사화갑 기념논문집》
 , 1993, <19세기 초 조선산 재배삼의 대일수출 교섭: 예단삼을 중심으로>《국사관논총》43
 , 1995, <정묘호란과 조선의 무역정책—1629년 일본 국왕사의 상경과 관련 하여—>《사학연구》49
 , 1996, <조선 후기 대일무역에서 사용된 명문의 형식과 특징>《고문서연구》9·10
 , 1998, <조선 후기 대일무역에 참가한 상가도중의 규모와 활동(1844~49)>《한일관계사연구》8
 , 1999, <조·일간 공무역—서계별폭(1614~99)의 분석>《사학연구》58·59
 합집
 , 1999, <한·일 사무역 논쟁>《경제사학》27
 , 2002, <조선 후기 조일무역의 규모>《역사학회 창립 50주년기념 역사학 국제회의발표문》
 조기준, 1975, <인삼무역과 삼정책>《사회과학논집》4,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차수정, 1989, <조선 후기 인삼무역의 전개과정—18세기초 삼상의 성장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북악사론》1
 최근목, 1967, <조청무역소고>《논문집》6(충남대)
 최소자, 1975, <호란과 조선의 대명청관계의 변천>《이대사원》12
 최완기, 1994, <조선 후기 경제사연구의 동향과 특성>《한국사론》24
 토니 미셸, 1983, <조선 후기 경제와 무역 개방>《동방학지》40
 하우봉, 1992, <임진왜란 이후의 부산과 일본관계>《항도부산》9
 , 1994, <조선 전기의 대유구관계>《국사관논총》59
 , 1995,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관계>《한국사》22(국사편찬위원회)
 , 1995, <유구와의 관계>《한국사》22(국사편찬위원회)

, 1995, <일본과의 관계>《한국사》22(국사편찬위원회)
 한명기, 1992, <17세기 초 은의 유통과 그 영향>《규장각》15
 한상권, 1981, <18세기말 19세기 초의 장시발달에 대한 기초연구—경상도지방을 중심으로>《한국사론》7
 , 1983, <16세기 대중국 사무역의 전개—은무역을 중심으로—>《김철준 화갑기념논총》
 홍순권, 1987, <한말시기 개성지방 삼포농업의 전개양상(上)—1896년<삼포적간성책>의 분석을 중심으로—>《한국학보》49
 홍희유, 1962, <송도 4개 문서(四介文書)에 반영된 송상(松商)들의 도가(都賈) 활동>《력사과학》6

〈일본 및 해외연구 논저〉

今村革丙, 1940, 《人蔘史》, 朝鮮總督府專賣局
 浜下武志, 1997,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岩波書店
 田代和生, 1981,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水田直昌, 1929, 《李朝時代の財政》, 友邦協會
 小葉田淳, 1976, 《金銀貿易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ルイス・ジェイムス' 1992, <近世朝鮮人の日本觀>《年報 朝鮮學》2
 森晉一郎, 1986, <近世後期對馬藩日朝貿易の展開—安永年間の私貿易を中心として—>《史學》第56卷 第3號, 三田史學會
 田代和生, 1970, <近世對馬藩における日鮮貿易の一考察—特鑄銀を中心として>《日本歴史》268
 , 1974, <近世日本貿易における數量的 考察—對馬藩の貿收支帳を中心として>《日・中央大 大學院研究年報》3
 , 1987, <對馬藩の朝鮮米輸入と(倭館枅)>《朝鮮學報》124집
 , 1973, <對馬藩の朝鮮輸出銅調達について—幕府の金統制と日鮮銅貿易の衰退>《朝鮮學報》66
 鶴田 啓, 1983, <天保期の對馬藩財政と日朝貿易>《論集 きんせい》8호, 東京大 近世史研究會
 , 1990, <近世日朝貿易と日朝接觸の特質>《歴史評論》481

8. 근현대사

〈1차 자료〉

《各部請議書存案》,《各部通牒》,《各司謄錄》,《京城府史》,《京城商工業照查》,《公文編案》,《舊韓國官報》,《舊韓國外交文書》,《宮內府訓令照會存案》,《內臟院來去文》,《大韓每日新報》,《독립신문》,《東京朝日新聞》,《東亞日報》,《東洋經濟新報》,《萬機要覽》,《法部來去文》,《每日申報》,《澁澤榮一傳記資料》,《時事叢報》,《新韓國事情》,《俞吉濬全集》,《仁川府史》,《仁川港商工業照查》,《日本公使館記錄》,《日本外交文書》,《日本外交文書》,《日本人》,《日韓通商協會報告》,《雜書》,《全羅南北道檢稅官貿米成冊》,《帝國新聞》,《朝鮮紳士錄》,《朝鮮協會會報》,《奏本》,《株式會社第一銀行韓國各支店出張所開業以來營業狀況》,《總關來甲》,《度支部來去文》,《統監府文書》,《通商彙纂》,《通商彙編》,《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韓國ニ於ケル貨幣ト金融》,《韓末近代法令資料集》,《韓末外交史關係未刊文書》,《漢城府來去文》,《皇城新聞》,《訓令編案》

經濟企劃院,1971,《經濟白書》,경제기획원

,1978,《主要業務指標》,경제기획원

,1972,《물가 3%安定目標의 展望》,경제기획원

工藤三次郎,1938,《事變後の中・北支經濟と朝鮮貿易の將來》,朝鮮貿易協會

溝口敏行・梅村久次 編,1988,《舊日本植民地經濟統計》,東京:東洋經濟新報社

近藤劬一 編,1962-3,《太平洋戰下の朝鮮》1~5

金達浩,1922,〈關稅改正이 朝鮮人產業界에 及하는 影響〉《開闢》28호

堂本貞一,1930・1931,《朝鮮の關稅》

大藏省管理局 編,1946,《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朝鮮編

大韓民國 政府,1962,《第1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1962~1966)》

東亞經濟調查局 編,1930,《最近の關稅問題》,東京:東亞經濟調查局

,1933,《日滿關稅政策の研究》,東京:東亞經濟調查局

東洋經濟新報社 編,1942,《年間朝鮮》,東洋經濟新報社京城支局

,1935,《日本貿易精覽》,東京:東洋經濟新報社

朴正熙,1963,《國家와 革命과 나》,향문사

복악사학회 근현대사분과編,1991,《帝國議會衆議院議事速記錄 朝鮮關係拔萃資

料》,太山

山本美越乃,1925,《改訂 植民政策研究》,東京:弘文堂書房

商工部,1988,《貿易振興 40年》

小林行昌,1930,《關稅と物價》,東京:千倉書房

,1937,《關稅經濟論》,東京:嚴松堂書店

小早九郎編著,1959,《補訂 朝鮮農業發達史》—政策篇,東京:財團法人 友邦協會

矢內原忠雄,1941,《植民及植民政策》,東京:有斐閣

新田直藏,1930,《關稅戰上の日本》,東京:大同書院

鈴木武雄,《朝鮮經濟の新構想》,東京:東洋經濟新報社

李如星・金世鎔,1931,《數字朝鮮研究》,世光社

日本經濟聯盟會調查課,1932,《關稅問題調查資料》

日本工業協會 編,1939,《戰爭と工業》,東京:日本評論社

全國經濟聯合會 編,1986,《韓國經濟政策四十年史》,전국경제연합회

全國經濟調查機關聯合會朝鮮支部 編,1939,1940,1941・1942,《朝鮮經濟年報》,

改造社

朝鮮貿易協會 編,《朝鮮貿易協會通報》,朝鮮貿易協會

,《朝鮮貿易協會事業報告書》,朝鮮貿易協會

,1934,《對滿輸出貿易と運賃》,朝鮮貿易協會

,1936,《朝鮮貿易の現勢と其の將來》,朝鮮貿易協會

,1938,《朝鮮貿易の振興問題と中・北支經濟の動向》,朝鮮貿易協會

,1939,《朝鮮臨時輸出入許可規則解說並に手續方法》,朝鮮貿易協會

,1940,《朝鮮輸出入許可規則解說》,朝鮮貿易協會

,1943,《朝鮮貿易史》,朝鮮貿易協會

朝鮮殖產銀行 調查部 編,《殖銀調查月報》,朝鮮殖產銀行 調查部

朝鮮銀行 調查課 編,1939,《朝鮮の對支貿易に就いて》,朝鮮銀行 調查課

朝鮮銀行 調查部 編,1948,《朝鮮經濟年報》,朝鮮銀行 調查部

朝鮮總督府 編,《朝鮮貿易年表》,朝鮮總督府

,《朝鮮貿易要覽》,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朝鮮總督府

持地六三郎, 1926, 《日本植民地經濟論》, 東京: 改造社

채신부, 1966, 《전기통신80년사》, 채신부

파나이사악꼬브나 사브쉬나, 김명호 역, 1996, 《식민지 조선에서》, 한울

한국관세연구소, 1985, 《韓國關稅史》, 한국관세연구소

韓國銀行, 1970, 《韓國經濟年報》, 한국은행

黃敏湖 編, 1992, 《雜誌拔萃 日帝下 植民地時代資料叢書》經濟 I, 啓明文化社

姬野實 編, 1940, 《朝鮮經濟圖表》, 朝鮮統計協會

ANNUAL REGISTER 1892(LONGMANS, GREN, AND CO, 1910)

〈논저〉

—단행본

姜東鎮, 1980, 《日帝의 韓國侵略政策史》, 한길사

강만길 엮음, 2000,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역사비평사

姜在彦 編, 1985, 《朝鮮における日室コンツェルン》, 東京: 不二出版

高承濟, 1970, 《韓國金融史研究》, 一潮閣

古田和子, 2000, 《上海ネットワークと近代東アジア》, 東京: 東京大出版會

高村直助, 1983, 《近代日本綿業と中國》, 東京: 東京大學校出版會

구대열, 1995, 《한국국제관계사 연구 1—일제시기 한반도의 국제관계》, 역사비평사

具仙姬, 1993, 《韓國近代 對淸政策史 研究》, 혜안

堀和生, 1995, 《朝鮮工業の史的分析》, 東京: 有斐閣

宮地正人, 1973, 《日露戰後政治史の研究》, 東京: 東京大出版會

權泰億, 1989, 《韓國近代綿業史研究》, 一潮閣

羅愛子, 1998, 《韓國近代海運業史研究》, 國學資料院

渡邊利夫 著・金昌男 譯, 1984, 《現代韓國經濟分析》, 裕豐出版社

러시아대장성, 1983, 《舊韓末의 社會와 經濟》, 裕豐出版社

文一平(이광린역), 1975, 《韓美五十年史》, 탐구당

朴弼秀, 1988, 《韓國貿易論》, 法文社

浜下武志, 1997,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東京: 岩波書店

小林英夫, 1975, 《〈大東亞共榮圈〉の形成と崩壊》, 東京: 御茶の水書房

—, 1994, 《植民地への企業進出—朝鮮會社令の分析》, 東京: 柏書房

송규진, 2001, 《일제하의 조선무역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松井清 編, 1963, 《近代日本貿易史》3, 東京: 有斐閣

신용하, 1976, 《독립협회 연구》, 일조각

安藤良雄, 1979, 《近代日本經濟史要覽(第2版)》,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安秉直・堀和生, 1993, 《近代朝鮮工業化의 研究》, 一潮閣

吳斗煥, 1991, 《韓國近代貨幣史研究》, 한국연구원

李大根, 1995, 《韓國貿易論—韓國經濟, NIEs化의 길—》, 法文社

이대근・정운영 편, 1984, 《韓國資本主義論》, 까치

李鍾燾, 1979, 《韓國經濟論》, 법문사

李炯九, 1982, 《韓國經濟論》, 博英社

林炳潤, 1971, 《植民地における商業的農業の展開》, 東京: 東京大出版會

정재정, 1999, 《일제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 서울대출판부

鄭泰憲, 1996,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趙璣濬, 1973, 《韓國企業家史》, 博英社

—, 1973,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大旺社

조재곤, 2001, 《한국근대사회와 보부상》, 혜안

村上勝彦, 정문중 역, 1984, 《식민지》, 한울

崔泰鎬, 1991, 《近代韓國經濟史研究序說》, 國民大出版部

하마시다, 1997, 《홍콩》, 신서원

하오옌핑, 2001, 《중국의 상업혁명—19세기 중·서 상업 자본주의의 전개》, 소나무

河元鎬, 1997, 《韓國近代經濟史研究》, 신서원

河合和男, 1986, 《朝鮮における産米増殖計劃》, 東京: 未來社

한우근, 1970, 《韓國 開港期の 商業研究》, 일조각

해링튼(이광린 역), 1973, 《개화기의 한미관계》, 일조각

洪性囿, 1962, 《韓國經濟와 美國援助》, 박영사

황런위, 2001, 《자본주의 역사와 중국의 21세기》, 이산

黃炳峻, 1966, 《韓國의 工業經濟》,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Eckert, Carter J., 1991, Offsprings of Empire: The Koch 'ang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McNamara, Dennis L., 1990,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Enterprise, 1910~1945,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yers, Ramon H. and Peattie, Mark R. Eds, 1984,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1894~1945, Princeton University Press

—논문

姜德相, 1983, 〈이씨조선 개항직후에 있어서 朝日무역의 전개〉《甲申甲午期の近代變革과 民族運動》, 청아출판사
姜萬吉, 1983, 〈開化期の 日本側 經濟關係資料: 領事報告와 「日・韓」 通商協會報告〉《韓國學文獻研究의 現況과 展望》, 아세아문화사
, 1973, 〈大韓帝國時期的 商工業問題〉《亞細亞研究》第16卷 第2號
, 1978, 〈大韓帝國의 性格〉《創作과 批評》48, 창작과 비평사
堀和生, 1992, 〈植民地戰爭經濟の特質—1937~45年の朝鮮〉《戰時日本經濟の研究》, 東京: 晃洋書房
金敬泰, 1972, 〈開港直後の 關稅權 回復問題〉《韓國史研究》8, 한국사연구회
, 1973, 〈丙子開港과 不平等條約關係의 構造〉《梨大史苑》11
金洛年, 1994,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한국사》13, 한길사
, 1992, 〈日本の植民地投資と朝鮮經濟の展開〉, 東京: 東京大博士學位論文
, 2001, 〈조선 무역의 장기동향〉《한국경제성장사—예비적고찰》, 서울대출판부
金子文夫, 1987, 〈資本輸出と植民地〉《日本帝國主義史》2,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김보영, 1991, 〈일제하 전시국채와 조선경제〉《일제말 조선사회와 민족해방운동》, 한국근현대사회연구회
김원모, 1999, 《한미수교사》, 철학과 현실사
김윤희, 1998, 〈개항기 재정운영의 변화와 외획의 역할〉《韓國史學報》5, 고려사학회
, 2002, 〈한말 대한천일은행의 설립과 상업신용의 형성—조직운영과 자금조달을 중심으로—〉《아세아연구》108
김정기, 1989, 〈1890년 서울상인의 撤市同盟罷業과 示威투쟁〉《한국사연구》67

김정환, 1986, 〈露・日戰爭과 프랑스의 對韓政策〉《한불수교100년사》, 한국사연구협의회
박말희, 1993, 〈서양제국과의 개국조약〉《한국외교사 I》, 집문당
박일근, 1981, 《美國의 開國政策과 韓美外交關係》, 일조각
朴眞嬉, 1993, 〈解放前과 後の 貿易構造 變化에 關한 研究〉, 高麗大碩士學位論文
박찬일, 1984, 〈개항초기(1882~1886) 한독국제 경제관계에 대한 일연구〉《한독수교 100년사》, 한국사연구협의회
山本有造, 1972, 〈植民地下朝鮮・臺灣域外收支〉《人文學報》35, 京都大
, 1973, 〈日本の植民地投資—朝鮮・臺灣に關する統計的觀察〉《社會經濟史學》38・5
森山茂德, 1991, 〈日本の朝鮮統治政策(1910~1945)の政治史的研究〉《法政理論》23・3・4
서영희, 1998, 《광무정권의 국정운영과 일제의 국권침탈에 대한 대응》, 서울대박사학위논문
小林英夫, 1975, 〈會社令研究ノ一ト〉《海峡》3
孫禎陸, 1984, 〈會社令研究〉《韓國史研究》45, 韓國史研究會
宋圭振, 1997, 〈1910년대 관세정책과 수이출입구조〉《역사문제연구》2, 역사문제연구소
, 1999, 〈1920~1931년 조선총독부의 관세정책과 조선무역구조의 성격〉《韓國史學報》6, 고려사학회
, 1999, 〈日帝末(1937~1945) 朝鮮에서의 貿易政策과 貿易構造의 性格〉《역사문제연구》3, 역사문제연구소
, 1994, 〈日帝下 朝鮮에서의 關稅政策에 關한 研究〉《蒼海朴秉國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 1998, 〈日帝下 朝鮮의 貿易政策과 植民地貿易構造〉,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1999, 〈제1차 세계대전이 조선무역에 미친 영향〉《역사와 역사교육》3・4호, 웅진사학회
, 2001, 〈만주사변이 조선경제에 미친 영향—대만주국무역을 중심으로—〉《亞細亞研究》44—1
, 2001, 〈중・일전쟁시기 조선무역협회의 조선무역에 대한 인식과 그 실상〉

《韓國史學報》10, 고려사학회

, 2002, 〈일제하 식민지자본주의와 조선무역—식민지적 미국무역구조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韓國史學報》12, 고려사학회

신용하, 1974, 〈19세기말의 한국대외무역의 전개와 상권문제—독립협회와 황국 중앙총상회의 상권수호운동〉《아세아연구》17—2

, 1993, 〈한반도에서의 열강의 이권획득 외교〉《한국외교사 I》, 집문당

安秉直, 1967, 〈植民地下の 朝鮮國際收支와 資本輸出入—1910~1945〉《經濟論集》6—4, 서울대상과대학 한국경제연구소

, 1965, 〈日本植民統治의 經濟的 遺産에 관한 研究〉《經濟論集》, 서울대 상과대학 한국경제연구소

안병태, 1982, 〈조선의 경제적 개화운동과 일본제국주의 형성의 특질〉《한국근대 경제와 일본제국주의》, 백산서당

安台鎬, 1973, 〈우리나라 植民地 經濟의 形成內容과 貿易推移에 대한 考察〉《論文集》6, 한국의국어대학

우철구, 1986, 〈청·일전쟁을 전후한 프랑스와 한국〉《한불수교10년사》, 한국사연구협의회

柳承烈, 1996, 《韓末·日帝初期 商業變動과 客主》,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尹明憲, 1996, 〈朝鮮における港灣および海運業〉《論集 朝鮮近現代史》, 東京: 河合和男 外 編, 明石書店

이광린, 1969, 〈농무목축시험장의 설치에 대하여〉《한국개화사연구》, 일조각

李大根, 1984, 〈6·25의 사회경제사적 인식〉《韓國資本主義論》, 까치

이배용, 1984, 〈이권〉《한영수교 100년사》, 한국사연구협의회

이병천, 1995, 〈개항기 외국상인의 침입과 한국상인의 대응〉,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승순, 1995, 〈日帝末(1937~1945) 朝鮮의 農村經濟 變化—米穀供出을 중심으로—〉《史叢》44

이승렬, 1997, 〈1930년대 朝鮮의 수출증가와 朝鮮工業界의 동향〉《金容燮教授停年 紀念 韓國史學論叢3 韓國近現代의 民族問題와 新國家建設》, 지식산업사

, 2000, 〈일제강점 초기(1906~1919) 대한천일(조선상업)은행과 경영지역 상공인〉《역사문제연구》제5호

李潤甲, 1993, 〈韓國近代의 商業的農業 研究—慶尙北道地域의 農業變動〉,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이현창, 2000, 〈1882~1910년간 서울시장의 변동〉《서울상업사연구》, 서울학연구소

, 1985, 〈韓國 開港場의 商品流通과 市場圈—韓國開港期에서의 市場構造와 變動을 초래한 一次的 要因〉《경제사학》9, 경제사학회

全遇容, 1990, 〈1930년대 ‘朝鮮工業化’와 中小工業〉《韓國史論》23, 서울대

, 1997, 〈19世紀末~20世紀初 韓人 會社 研究〉, 서울대박사학위논문

鄭道泳, 1966, 〈日帝下の 韓國貿易〉《大東文化研究》3,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鄭文鐘, 1988, 〈産米増殖計劃과 農業生産力停滯에 관한 연구〉《한국 근대 농촌사회와 농민운동》, 열음사

鄭在貞, 1992, 〈日帝의 韓國鐵道侵略과 韓國人의 對應(1892~1945年)〉,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鄭泰憲, 1987, 〈植民地時代 朝鮮의 資本制的 租稅制度 成立에 關한 研究〉《經濟史學》11

, 1994, 〈일제하 경제사 인식의 정립을 위한 시론〉《역사와 현실》12

차명수, 2001, 〈우리나라의 생활수준, 1700~2000〉《한국경제성장사—예비적고찰》, 서울대출판부

車耕權, 1971, 〈日帝下에 있어서 韓國의 貿易政策—關稅政策을 中心으로—〉《日帝의 經濟侵奪史》2,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최덕수, 1994, 〈청일전쟁과 동아시아의 세력변동〉《역사비평》26호

崔柳吉, 1973, 〈李朝開港直後の 朝日貿易의 動向〉《아세아연구》15—3

, 1974, 〈韓國의 貿易動向 1877~1911年—輸出入物價指數の推計を中心に—〉《アジア經濟》14—1

홍준화, 1995, 〈대한제국시기 차관도입과 국제관계〉,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1년

- 앤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저자 : 앤닌 | 역주 : 김문경(해상왕장보고연구회 회장)
- 7~10세기 한·중·일 교역연구문헌 목록·자료집(비매품)
해상왕장보고연구회 편
- 해상왕 장보고의 국제무역활동과 물류(비매품)
편저 : 김형근(목포해양대학교 교수) 외 8명

2002년

- 대외문물교류연구(비매품)
대표저자 : 권덕영(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외 6명
- 해상왕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비매품)
대표저자 : 최광식(고려대학교 교수) 외 3명
- 장보고 관련 서술의 종합적 검토(비매품)
- 국사교과서와 한국사 개설서를 중심으로 -
대표저자 : 장득진(국사편찬위원회) 외 1명
- 장보고 선박복원자료연구 1차년도 문헌 및 자료 검색 결과보고서(비매품)
대표저자 : 허일(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외 6명
- 張保臯關係研究論文選集 -韓國 篇-(비매품)
해상왕장보고연구회 편
- 張保臯關係研究論文選集 -中國・日本 篇-(비매품)
해상왕장보고연구회 편

2003년

- 세계인 장보고와 지구촌 경영
저자 : 최민자(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천년을 여는 미래인 해상왕 장보고
대표저자 : 최광식(고려대학교 교수) 외 3명
- 한국 최고의 전문가 17인이 진단한 21C 장보고 정신구현
대표저자 : 김성훈(중앙대학교 교수)
-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설립 방안 연구(비매품)
저자 : 황상석(세계닷컴 대표이사)
- 청해진에 대한 종합적 고찰(비매품)
대표저자 : 윤근일(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실장) 외 2명
- 대외문물교류연구 2(비매품)
대표저자 : 권덕영(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외 6명
- 장보고 관련 유물·유적 지표조사보고서(비매품)
대표저자 : 최성락(목포대학교 교수) 외 6명
- 청해진 옛터 완도지역 지명 유래조사(비매품)
대표저자 : 김정호(전라남도 문화재위원) 외 3명
- 7~10世紀 韓・中・日 交易關係 資料 譯註 -韓國・中國 篇-(비매품)
편역 : 김문경(해상왕장보고연구회 회장)
- 7~10世紀 韓・中・日 交易關係 資料 譯註 -日本 篇-(비매품)
편역 : 김문경(해상왕장보고연구회 회장)